

2018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Ⅱ)

2018. 1.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농림축산식품부



[제 1 권]

I.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1
1. 기본규정	3
2. 기본규정 별표 및 서식	61
II. 201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주요변경사항	99
III. 2018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	181

【 농촌분야 】

I.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활성화	183
1. 귀농귀촌 일자리 창업박람회 개최	185
2. 귀농귀촌교육 지원	189
3. 귀농귀촌실태조사	197
4.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201
5. 관광농원	207
6. 농어촌민박	215
7. 농촌다원적자원활용(지자체)	221
8. 세계중요농업유산보전관리(지자체)	228
9.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	234
10. 농촌재능나눔 활성화지원(민간)	257
11. 농촌형교통모델	274
12. 일반농산어촌개발(농촌)	300
II. 농촌복지증진	397
13. 농번기 주말돌봄방 지원	399
14.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421
15.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방문콘서트)	440

16.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443
17.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447
18.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	483
19. 취약농가인력지원	487

【 농업분야 】

I. 경쟁력제고	503
20. 농업경영컨설팅(컨설팅지원)	505
21. 농촌고용인력지원	529
II. 생산기반확충	547
22.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 육성지원	549
23.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565
24.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	648
25. 유기질비료 지원	664
26. 친환경농업기반구축	691
27. 토양개량제 지원	726
III. 농가경영안정	745
28. 경영이양직불금	747
29. 농기계임대사업	759
30. 발농업직불금	777
31.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810
32. 조건불리직불금	816
33. 친환경농업직불	849
IV. 국제협력협상	863
34.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용자)	865
V. 기술개발	875
35.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877
36. 신기술시범사업	886
37. 농업현안해결 기술지원	894
38.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지원사업	902

【 식량분야 】

I. 경쟁력제고	909
39.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911
40.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953
41.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971
42. 쌀가공산업육성지원	1002
II. 생산기반확충	1023
43. 농타작물재배지원(생산조정제)	1025
44.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1038

[제 2 권]

【 축산분야 】

I. 생산기반확충	1059
45.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1061
46. 계란GP센터시설현대화	1087
47. 산지생태축산농장지원사업	1106
48.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1130
49.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	1169
50.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지원	1181
II. 경쟁력제고	1201
51.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	1203
III. 축산물안전관리	1221
52. 축산물이력관리지원	1223
IV. 가격안정 및 유통활성화	1235
53.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1237
54. 축산물유통 및 소비촉진제고	1245
55. 한국형메쓰거라이 경영컨설팅	1283
V. 축산농가경영안정	1331
56. 친환경축산직불	1333

【 식품분야 】

I. 가격안정 및 유통활성화	1345
57. GAP위생시설 보완 지원	1347
58. 발효미생물상품화지원	1366
59. 식품기능성원료 등록지원	1370
60. 식품기능성평가 지원	1377
61. 기능성 원료등록 지원	1386
62.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육성(자치단체)	1393
63. 식품외식종합자금(용자)	1414
64.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1421
65.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1430
II. 생산기반확충	1437
66. 전통주산업진흥	1439
67.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생활, 제주)	1444
68. 찾아가는 양조장	1453
69. 향토산업육성사업	1458

【 유통원예분야 】

I. 생산기반확충	1473
70.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1475
71. 화훼유통개선지원(용자)	1489
72. 공영도매시장현대화비용지원	1495
73. 과수ICT분야 시설보조	1503
74.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1530
75.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	1585
76. 과수생산유통지원(용자)	1618
77. 과수우량묘목생산 기반조성	1643
78.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비 지원	1652
79. 기존 APC 선별, 포장시설 지원	1685
80. 꽃가루생산단지조성	1713

81.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시설지원	1729
82. 산지유통시설지원(APC)(자치단체)	1775
83.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1785
84.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	1813
85.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자치단체)	1827
86. 저온유통체계구축(저온수송차량)(자치단체)	1844
87. 저온유통체계구축(화훼류습식유통)	1861
88.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민간경상)	1868
89.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자치단체자본)	1890
90. 특용작물(인삼)시설현대화지원	1901
II. 가격안정 및 유통활성화	1913
91. 공동선별비(자치단체)	1915
92. 농산물 신유통경로확산 지원	1922
93.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1928
94.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교육 및 홍보 지원	1937
95. 농산물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지원	1943
96. 농산물마케팅지원(자치단체)	1950
97. 도매유통활성화지원(용자)	1957
98. 공판장(청과) 출하촉진(용자)	1964
99. 화훼유통개선지원(용자)	1970
100. 농산물수매지원(용자)	1976
101.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1981
102. 산지유통종합자금(용자)	1990
103. 인삼특용작물계열화(용자)	2004
104. 자조금지원(단체)	2015
105. 전통시장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2024
106. 채소류생산안정지원	2030
III. 경쟁력제고	2037
107. 과실브랜드육성지원	2039
108.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자치단체)	2080
109. 원예분야 ICT 융복합 스마트팜 시설지원	2119

【 산림분야 】

I. 생산기반확충	2145
110. 조림	2147
111. 정책숲가꾸기	2152
112. 공공산림가꾸기	2157
113. 양묘시설현대화	2160
114.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2169
115.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2178
116.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2186
117. 목재산업단지 조성	2193
118. 수출기반구축	2211
II. 임가지원 및 유통활성화	2219
119.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2221
120. 청정임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2230
121.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2235
III. 경쟁력제고	2241
122.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작성	2243
123. 임산물 상품화 지원	2250
124. 산림조합특화사업	2257
125. 백두대간 주민지원	2263

축산분야

I . 생산기반확충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세부사업명	가축분뇨처리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정착촌분뇨처리 ·액비저장조 ·액비유통센터 ·액비살포비 ·액비성분분석기 ·액비부속도판정기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예산 (백만원)	47,900				
사업목적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및 환경오염 방지						
사업주요내용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기존 정화 시설 보수 지원						
국고보조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지원자격 및 요건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원한도	(단위 : 백만원/개소)						
	구 분		대 지	한 우	젖 소	닭	
						평사	케이지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개별 농가	500	300		200	
		법인체 등	2,000	800		1,000	
	· 정착촌분뇨처리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에 준함				
	· 액비저장조	신규		20(200톤 규모기준, 폭기·교반 시설 포함)			
		개보수		9(200톤 규모기준, 슬러지 제거비용 포함)			
	· 액비유통센터		200(최초 지원시)				
	· 액비살포비		200천원/ha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평가 결과 등 세부내용 별도 통보)]				
· 액비성분분석기		37					
· 액비부속도판정기		30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1.2					

	(단위 : 백만 원/톤)							
	용량(톤/일)		70	100	150	200	250	300
	공동자원화시설							
	퇴·액비화 (가축분뇨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액비화 50%이상 생산)		70	64	56	51	47	43
	퇴비화 (가축분뇨 1일 70톤 이상 처리)		70	64	56	51	47	43
	에너지화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100	92	81	73	67	62
바이오가스 연계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54	50	44	40	36	34	
<p>※ 제시되지 않은 용량의 사업비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백만원 이하 단위 절사</p> $y = y^1 - \frac{(x - x^1)(y^1 - y^2)}{(x^2 - x^1)}$ <p>x : 당해 시설용량, x^1 : 작은 시설용량, x^2 : 큰 시설용량 y : 당해 사업비, y^1 : 작은 시설용량 단가, y^2 : 큰 시설용량 단가</p>								
재원구성 (%)	국고	20~100	지방비	20~50	용자	20~70	자부담	10~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06,406	154,170	179,602	179,602			
	국 고	49,760	43,150	47,900	47,900			
	지방비	70,030	65,822	70,958	70,958			
	용 자	56,234	33,591	40,202	40,202			
	자부담	30,382	11,607	20,542	20,542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농협경제지주		축산환경복지과		사무관 김상돈 주무관 한명관		044-201-2357 044-201-2358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3.31.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1. 사업대상자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계열화 사업 주체, 농업기술센터
- 공동자원화시설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 정착촌분뇨처리 : 한센인 정착촌의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등), 축산농가, 한빛복지협회, 지방자치단체
- 액비저장조 : 전문유통주체, 축산농가, 농업경영체(단, 농업경영체는 액비유통센터주체와 3년이상 액비납품 계약서가 체결된 경우)
 - * 전문유통주체 : 액비 수거·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 농경지 면적을 확보한 자로서 액비저장조 등 시설관리 능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가 지정한 자(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경종농가 작목반,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 액비유통센터, 액비살포비 : 전문유통주체(액비유통센터)
- 액비성분분석기, 부숙도판정기,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센터 주체
 - * 관련법령: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 적용사항 》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따라 [별표6]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준수(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도 동일 적용)
 - 총출자금이 1억원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으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 공통 적용사항 》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 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 잉여금으로 한다)
 - *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등(이하 [별표10] 적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 농어업경영체등록 대상이 아닌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 단체 등은 제외
- 퇴·액비화 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양돈농가는 ‘지자체 유통협의체’에 참여 하여야함(한우, 젓소, 닭 농가는 '18년부터 적용)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법률 의무사항)
 - *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별지 제21호서식],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별지 제22호 서식]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 ①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자
- ②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 ③ 동 사업 지원을 받은 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고자 하는자
- ④ 지원대상 농가 등은 처리시설 설치와 함께 악취저감시설*을 반드시 설치할 것
 -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⑤ 악취저감용 미생물 생산·공급 시설의 경우 동 미생물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곳(자원화조직체*, 농업기술센터)
 - * 자원화조직체 :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조직
- ⑥ 악취측정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기계·장비의 경 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의 관리 계획(장비·시설 점검 및 모 니터링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 * ICT활용축산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지침은 별도 시달
- ⑦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자(2020년부터 적용)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가축분뇨(100%)를 활용하여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또는 퇴비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에너지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70% 이상)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이용 및 퇴·액비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 기존 퇴·액비화 시설에 에너지화시설을 추가(바이오가스 연계시설)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에너지 생산 이용 및 퇴·액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 에너지화시설의 경우,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국내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또는 국외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의무 참여(사업대상자 선정 후 세부계획수립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 의무 반영)
 - ※ 2개 이상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화의 경우 참여 시·군간에 협의를 거쳐 설치지역을 선정할 후 해당 시·군에서 시·도에 신청
 - ※ 가축분뇨 신속수거 사업은 가축분뇨 신속수거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 중 준설관련 장비의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장비지원 대상은 농식품부가 지원한 공동자원화사업장)

* 가축분뇨 신속수거 사업 세부지침은 별도 시달

○ 정작촌분뇨처리 : 한센인 정착촌 내에서 한센인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법인체 등

- 한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및 분뇨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 액비저장조

- 전문유통주체로서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비료생산업등록 또는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 축산농가로서 액비화시설을 갖추고 생산된 액비를 저장, 품질유지, 유통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확보하고, 시비처방을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가, 액비저장조 관리를 전문유통주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이 경우 전문유통주체는 액비저장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농가별 시비처방을 받아야 함)
- 농업경영체(일반 경종농가 또는 법인)로서 액비유통센터 주체와 3년이상 액비납품 계약서를 체결할 것

* 액비저장조 설치시 악취저감(지붕, 바이오필터, 커텐 등) 및 액비품질(폭기 시설)등 유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반드시 갖추어 것

○ 액비유통센터

- ①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200ha이상 확보(조사료 생산 농경지 50ha 이상 권장)

- ② 액비유통센터와 경종 및 축산농가간 액비유통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
 - ③ ‘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Agrix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조직 (신규 센터는 반드시 동 시스템에 의해 관리 되어야 함)
 - ④ 비료생산업 등록 권장(2018년까지)
 - ⑤ 사업주관기관은 액비유통센터에서 정부지원 또는 액비살포비를 지원받는 가축분뇨 및 액비 수거·운반·살포차량에는 실명스티커(유통센터명, 전화번호, 소유주, 비료생산업 등록번호, 성분표시 등) 부착 할 것
- 액비살포비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하고, 비료생산업 등록 또는 액비에 대한 성분분석과 부숙도 측정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전문유통주체
 - * 액비살포비 지원 세부지침은 별도 시달
- 성분분석기 및 부숙도판정기 : 액비성분 분석 및 부숙도 측정, 시비처방서를 직접발급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자원화 조직체로서 요건을 갖추고 이행 할 것
- ① 부숙판정, 성분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 ② 유지 보수가 가능한 예산을 확보할 것
 - ③ 전담자 지정, 농촌진흥청 또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년 1회) 이수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용계획 및 유지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것

3. 지원대상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 퇴·액비화시설 : 퇴비화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짓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 액비화 전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등
 - * 액비화시설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준하는 호기성 액비화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지원
 - 정화시설(낙농 세정수 정화시설 포함) : 가축분뇨법 제13조의 방류수 수질 기준(‘19년)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정화개보수(낙농 세정수 정화시설 포함) : ‘19년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기존 설치·운영시설의 개보수 및 악취저감(액비순환)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기계 등 구입·설치비(방류유량계, 적산전력계 의무설치) 등
 - 에너지화시설: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에너지 자원을 생산, 공급하는데 필요한 시설

- 부대기계·장비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 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축분발효기계·장비, 축분이송스크류, 고액분리기,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악취제거장비, 정화방류수 탈색장치, 바큇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 축분퇴비포장기, 축분처리시설 부착용 적산전력계(계량기)
-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농가로서 트랙터 등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동력을 보유하고, 왕겨의 조달이 용이한 대상자에 지원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축산농가 지원 제외 시설·장비 : 바큇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단, 전업농 이상 지원가능)*, 축분퇴비포장기, 공동퇴비장,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 스키드로더 구입기종은 중량 2톤 미만의 장비를 선택하도록 권장. 단,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2톤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나,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사업자 부담
- 트랙터 부착용 스키드로더는 반드시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 전업농기준 : 한우·육우·젖소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 양계 30,000수 이상, 오리 5,000수 이상

- 악취저감용 미생물을 배양하여 생산, 공급하는 시설
- 가축분뇨처리 시설 첨단화 및 네트워크(분뇨발생량 및 이동관리 체계 등) 구축에 소요되는 시설 설치·기계·장비 등
-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개별시설 설치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구입
- 광역축산악취개선 : 축산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신규설치 또는 개보수)
- 악취측정용 ICT 기계·장비 등(악취감지센서, 기상장비 등)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퇴비화 :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에너지화 :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시설과 남은 소화액을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개보수 : 퇴·액비 시설·기계·장비, 악취방지시설, 전력계량기, 혐기소화조 및 가스포집장치, 열병합발전기 등

※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에 필요한 등록, 모니터링 및 유량계 설치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포함

※ 가축분뇨 신속수거 사업 : 가축분뇨 고착슬러지 제거 및 신속수거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

- 정착촌분뇨처리 : 한센인 정착촌에서 가축분뇨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의 깨끗한 축산농장 구성에 해당하는 시설 설치, 기계, 장비 등

- 액비저장조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펌프식 교반시설 등), 적산전력량계(계량기) 구입비, 개보수비 등
 - 고정식 액비저장조(200톤 이상 등) 여러 개를 지원할 경우 2단 이상으로 설치(1단계 → 2단계 → 3단계 등)하도록 권장
 - 대규모(200톤 이상) 이동식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은 사업 대상자와 관내에서 5년 이상 사용계약을 반드시 체결(다만, 지방비를 시·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 예외)
 - 소규모(10톤 내외 규모) 이동식 액비저장조는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 주체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채소 등에 액비를 상시 살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종농가와 액비유통센터간에 액비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액비유통센터에서는 저장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직접 관리해야 함(예 : 200톤 기준 1기당 사업비 20백만원 이내에서 소규모 저장조 다수 지원)
 - 액비저장조 개보수 : 지붕 및 외관파손, 누수, 바닥균열에 따른 보수, 교반·폭기 시설 추가 및 교체(단, 액비저장조내 슬러지 제거조건으로 지원하는 경우, 위탁처리비용 등 처리비용을 제외한 순수하게 슬러지를 제거하는 비용만 개보수 사업비에 포함)
- * 개보수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실정에 맞게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
- 액비유통센터 : 바큇카, 액비살포차량(트랙터 포함), 액비살포기, 암롤박스 등 액비의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등 구입비 지원
- 액비살포비 : 액비의 성분분석 및 부숙도측정 등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단,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 대상 필지는 지원불가. 지자체는 액비살포비 지원시 조사료 필지는 제외하고 지급)
- 액비성분분석기 : 액비성분분석기 구입비용 지원
- 액비부숙도판정기 : 액비부숙도판정기 구입비용 지원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구입비용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 참조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비율(%)

내역사업명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용자	자부담	용자조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20	20	60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0%(단기간업등 3%)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40	30		30	
공동자위화시설 - 퇴·액비화, 퇴비화, 바이오가스 연계	40	30	30	-	
- 에너지화	50	20	20	10	
정착촌분뇨처리	50	30	20	-	
액비저장조	20	50		30	
액비유통센터	30	50	-	20	
액비살포비	50	50	-	-	
액비성분분석기	50	50	-	-	
액비부속도판정기	50	50	-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50	50	-	-	
축산환경개선	100				
자연순환농업활성화			70	30	연 2% 3년 거치 후 일시상환

- * 지방비(시·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은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하되, 시·도비는 10~50% 이내 편성하고 지방비를 자부담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지방비의 50% 이내에서 대체 가능
-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의 경우 국비용자를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음
-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우선지원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산정기준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정착촌분뇨처리는 다음 축종별 축사 m²단위 면적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적용. 단, 무허가축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나, 사업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하겠다는 조건부로 지원 가능

* 축사내 일부 무허가축사(시설)가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단위 : 천원/m²)

축종	돼지	한·육우	젖소	닭	
				평사	케이지
단가	148	60	70	42	68

- ※ ① 축사면적은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면적기준(관리사, 창고면적 제외)
 - 단, ‘개’는 「건축법」에 의한 신고된 축사면적이 없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 면적 기준
- ② 소·말 운동장의 비가림시설은 축사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리·산양(염소)·개는 닭 평사, 말·사슴은 한우기준, 메추리는 닭 기준으로 각각 지원
- ③ 사업비가 축종별 축사 m²단위면적당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

- ④ 위의 축종별 사업비단가 보다 실제 공사단가가 낮을 경우 시공단가를 적용
- ⑤ 2009.12월말 이전에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보완을 위한 지원은 축종별 사업비 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노후 시설·기계설비 교체의 실소요액을 산출하여 적용(창고형 건물은 제외)
- ⑥ 한센인 정착촌내 공동시설의 경우 사업비 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도가 확인한 정착촌내 축산 농가중 시설운용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실제 이용 농가의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적용
- ⑦ 무창돈사(또는 무창계사)의 경우 사육밀도를 감안하여 사업비 단가의 40%를 가산하여 적용가능하고 닭 케이지의 단가는 4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4단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비례적으로 가감 산출하여 적용
- ⑧ 가축분뇨의 전처리시설·장비 지원은 농가별 지원한도(축사 m²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준) 초과시 축사 m² 단위면적당 사업비 적용기준 내에서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 ⑨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은 ①~⑧을 준용하되, 사업참여농가(법인체 등 포함)의 사업비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컨설팅 후 재 산정하며,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의 개별농가 한도액을 적용

○ 사업비 지원 한도액

(단위 : 백만원/톤)

용량(톤/일)	70	100	150	200	250	300
공동자원화시설						
퇴·액비화 (가축분뇨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액비화 50%이상 생산)	70	64	56	51	47	43
퇴비화 (가축분뇨 1일 70톤 이상 처리)	70	64	56	51	47	43
에너지화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100	92	81	73	67	62
바이오가스 연계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54	50	44	40	36	34
※ 제시되지 않은 용량의 사업비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백만원 이하 단위 절사 $y = y^1 - \frac{(x - x^1)(y^1 - y^2)}{(x^2 - x^1)}$ x : 당해 시설용량, x ¹ : 작은 시설용량, x ² : 큰 시설용량 y : 당해 사업비, y ¹ : 작은 시설용량 단가, y ² : 큰 시설용량 단가						

(단위 : 백만원/개소)

구 분	돼 지	한 우	젖 소	닭	
				평사	케이지
· 깨끗한 축산 농장 조성	개 별 농 가	500	300		200
	법 인 체 등	2,000	800		1,000
· 정착촌분뇨처리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에 준함				
· 액비저장조	신규	20(200톤 규모기준, 폭기·교반 시설 포함)			
	개보수	9(200톤 규모기준, 슬러지 제거비용 포함)			
· 액비유통센터	200(최초 지원시)				
· 액비살포비	200천원/ha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평가 결과 등 세부내용 별도 통보)]				
· 액비성분분석기	37				
· 액비부속도판정기	30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1.2				

- ※ ① 사업비에 환경영향평가비, 설계비·공사감리비는 포함되나,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단, 환경영양평가비, 설계비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
-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 사업비와 상기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이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사업비를 지원대상 사업비로 산출하여 적용
- ③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1일 처리 가능물량(퇴·액비화, 퇴비화, 에너지화 70톤 이상)을 제시하되, 지원한도액 내에서 미생물배양실, 검사실, 액비성분분석기·부속도판정기, 교육장 및 조경 등 부대시설 설치 가능(악취방지 및 소독시설 의무설치)
- 퇴·액비화 시설은 액비화 50%이상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액비(원수 포함)를 4개월(생산 1개월, 저장 3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공간 확보
 - 퇴·액비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는 총사업비의 15% 이내에서 구입(단, 자원화 시설 2개소 설치시 여건에 따라 운반·살포장비 구입하고, 공동자원화시설에 액비유통센터 신규 지원 제외)
 - 공동자원화시설처리 규모는 최대 300톤/일 이내
- ④ 액비저장조 설치는 200톤 규모(폭기·교반 시설, 적산전력계 포함) 1기당 지원 기준으로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은 저장조 설치수량, 규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농가 등 신청에 의거 사업주관기관이 결정할 수 있음
- * 액비저장조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실정에 맞게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

- ⑤ 지자체가 주관하는 익산왕궁지역, 4대강유역 수계의 수변구역지정 관련 지역의 개별시설은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사업비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음
- ⑥ 액비유통센터는 기 지원 전문유통주체(공동자원화시설)에 이중지원을 금지하고, 액비살포 실적 등을 자원화조직체 평가하여 2억원 범위 내에서 장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⑦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의 경우 축종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사업비 한도액을 별도 적용 할 수 있음
- ⑧ 가축분뇨 신속수거 사업에 필요한 기계·장비는 고착슬러지 제거 장비(진공흡입준설차, 고액분리기, 발전기 등)와 신속수거 장비(운반차량, 포크레인 등)를 1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심사평가단계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부대 기계·장비의 지원 한도액

- 가축분뇨 퇴·액비처리 장비 : 10백만원 이내(다만, 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30백만원 이내)
- 정화방류수탈색장치 : 30백만원 이내
- 가축분뇨 운반·살포용 차량 : 200백만원 이내
- 축분퇴비 포장기 및 왕겨 팽연화장비 : 30백만원

※ 고액분리기 등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는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에서 제조업체별 제공한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를 기준으로 지원(책자는 별도 제공)

☞ e-나라도움 시스템이 본격 도입되어 동 시스템을 통한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집행관리, 중요재산 관리 등을 시행하게 됨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분뇨처리 관련 사업추진 방향, 사업물량 및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세부사업내용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12월말)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군·구에 위임 가능)
 - 단,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2개 이상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화의 경우)에 대한 사업 주관기관은 시·도지사(설치지역은 시·군간 협의를 통해 시·도 지사가 지정)
- 시·도(시·군)에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사업신청 공고 실시(1월초)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
- 시·군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희망자를 취합하여 2월말까지 시·도에 제출
 - 시·군은 가축분뇨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퇴·액비 이용촉진 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당해 계획 등을 고려하여 신청
- 시·도는 시·군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 공동자원화사업(퇴·액비화, 퇴비화, 에너지화)을 추진코자 하는 해당 시·군은 사업계획 수립시 환경부서와 반드시 협의하고 관내 기존의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적정 처리 규모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첨부하고, 신청자격 충족 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에 제출(2개 이상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화의 경우 시·군간 협의 내용 첨부). 시·도는 자체 검토 및 평가 후 유형별 (①퇴·액비화, ②퇴비화 또는 바이오가스 연계, ③에너지화) 1개소를 선정하여 농식품부에 신청
 - ※ 가축분뇨 신속수거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해당 시·도는 시·군의 의견을 받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동자원화사업장의 분뇨처리 여유용량, 지방비 반영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사업신청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1월말까지 시·군에 신청
- ※ 공동자원화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부지를 확보할 것('19년부터는 사업신청자 소유 부지만 인정)
- ※ 2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공동자원화사업을 신청할 경우 참여시군의 의견, 2개 이상 시군 협의결과, 시·군간 분뇨 반입, 반출 협약 체결, 사업 추진 일정 등이 반영된 사업계획 수립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대상지역(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

- ① 약취민원이 심각하고 사업참여 농가가 많은 지역
- ②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가축분뇨 신속수거사업, ICT활용축산악취관리지원사업 지역
- ③ 지역 주민의 민원을 완전히 해소한 지역(환경영향평가, 인허가 등 행정절차 완료, 자본금은 기본요건을 충족하되 많이 확보하고 있는자)
- ④ 사업 예정부지가 기존 공동처리시설(공동자원화, 공공처리장) 부지 내 또는 인근 지역(예 : 500m이내)
- ⑤ 가축사육 밀집지역, 중규모 축산농가가 많은 지역, 액비살포가 용이한 대단위 농경지가 확보된 지역
- ⑥ 4대강 유역, 5대 지류하천(미호천, 갑천, 경안천, 광주천, 금호강) 유역 및 새만금 등 간척지 유역 등
- ⑦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사업 신청시 우선 선정

○ 공동자원화사업(퇴·액비화, 에너지) : 시·도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선정 (선정을 위한 심사, 평가 업무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위탁)

- 선정방식 : 전문가들로 심사평가단을 구성하여 종합평가(서류심사, 현장확인, 발표 및 질의응답)를 통해 최종 확정

- 선정기준 : (퇴·액비화, 퇴비화)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추진 전략, 민원해결 등), 지자체장의 관심도(사업추진 기본계획, 퇴·액비 이용촉진 계획 및 유통협의체 구성 실적 등) 등

(에너지화) 가축분뇨·농축부산물 등을 활용하여 자원순환형 에너지화 계획이 명확히 수립된 자원화조직을 선정

* 평가항목 : 기본계획, 사업장 입지, 원료조달, 운영·관리계획, 퇴액비화 및 에너지 이용계획, 공법의 적정성, 환경부서와 협의자료, 시·군간 협의자료, 시·군간 분뇨 반입, 반출 협약 체결 등

⇒ 공동자원화사업자, 가축분뇨 신속수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구성 절차, 평가 및 선정 방법·기준 등은 별도세부지침으로 운영

○ 시·도별 예산배정

- 시·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요구서를 검토·조정한 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시·도별 예산배정 계획을 시·도에 통보

시·도(시·군)

○ 시·도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법인체 등)·정착촌분뇨처리·액비유통센터·액비 성분 분석기·액비부속도판정기

-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림축산심의회를 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도별 예산배정 계획을 감안,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시·군별 예산배정 계획을 12월말까지 시·군에 통보

※ 시·도는 시·군별 예산 배정시 관내 전년 예산 집행실적, 도축장 운영, 조사료 재배면적(퇴액비 활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할 수 있음.

○ 시·군·구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개별농가)·액비저장조·액비살포비

-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림축산심의회를 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2월말까지 시·도에 신청
- 시·도의 예산배정 계획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익년도 1.15일까지 확정·통보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

- ①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 시·도(시·군)는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농가, 환경친화 축산농장,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 농가,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 친환경 경축산인증농가, HACCP 인증농가, 동물복지인증농가, 축산물브랜드 참여농가·생산자 단체가 추진하는 “깨끗한 농장 가꾸기” 운동 우수농장으로 선정된 농가 및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분뇨처리시설
- ②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 내 농가에 우선 지원 (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의 4대강 유역과 새만금 지역 등)
- ③ 액비저장조 : 1순위*(전문유통주체), 2순위(전문유통주체와 저장조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농가), 3순위(액비살포 농경지를 확보하고 액비살포 능력이 있는 농가)
*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평가결과, 우수 액비유통센터에 선정된 경우 우선 지원
- ④ 액비살포비 : 1순위*(가축분뇨 발효액 비료생산등록 유통주체), 2순위(조사료 생산과 연계된 유통주체), 3순위(공동자원화시설 등의 유통주체) 등 조직체에 우선 지원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교부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시·군)를 통해 제출된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가축분뇨 신속수거사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세부사업계획서는 검토 후 필요시 보완조치(사업지침 별도 수립 통보)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6항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대출신청 자료를 함께 받아 사업대상자별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도(시·군)의 농축산식품심의회(가축분뇨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의 공개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 확정
 - 사업주관기관은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립축산과학원·농협중앙회·축산환경관리원·민간전문컨설팅기관 등 관련분야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음(단,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실시설계(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포함) 등을 포함한 세부사업계획의 검토를 받아야 함).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가축분뇨 신속수거사업, ICT활용축산악취관리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 후 사업 주관기관은 축산환경관리원의 협조를 통해 사업타당성, 사업시행상 문제점, 컨설팅 등을 반영하여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시·군은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세부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검토결과와 세부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 다만, 2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환경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한 자료 및 시·군간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제출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 ① 사업비 적정성 : 지자체의 평균 건설단가, 기계·장비 실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처리용량(내벽) 및 시설규모(액비화 120일이상, 유효용량 85% 이하(여유율 15% 이상))
- ② 시설설치 기준 : 내진 설계 및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 ③ 반입원료 :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 할 가축분뇨의 반입비율을 미리 설정하고, 액비·정화의 경우 축산농가에서 1차 고액분리 된 가축분뇨를 수거
- ④ 참여대상농가 : 기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의 개별시설에서 우선 처리하고 잉여물량을 처리코자 하는 농가 위주로 우선 참여토록 하고, 3,00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반입실태를 감안하여 후순위로 참여
- ⑤ 저장시설 확보 : 퇴비·액비 제조후 지역내 유통량(살포면적)을 감안한 저장시설 확보 등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처리방안 강구
- ⑥ 사업대상자는 참여농가, 시설 감가상각을 고려한 수거료, 농경지 확보방안 등이 포함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 ⑦ 악취저감시설, 소독시설, 안전시설(표지판, 난간 등) 등 의무 설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계획을 확정된 후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교부결정을 통지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한 내용의 보조금 교부조건을 반드시 함께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교부결정 등을 통지할 때 대출취급기관에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과 융자한도액을 함께 통지
-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사업비 지원 금액 범위내의 사업계획(부지 등) 변경은 시장·군수가, 사업비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도지사가 검토 후 변경 승인
 - 사업주관기관이 시·도인 경우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시·군에 위임된 경우 시장·군수가 변경 승인)
 - * 단, 공동자원화시설의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시·도지사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타당성 검토 후 변경승인(시설 설치비·부지·자원화율·참여농가 변경 등)
 - 시·도(시·군)에서 사업계획 변경시, 변경 승인내용을 직상위 기관에 보고

사업대상자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가축분뇨 신속수거사업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선정 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역 실정에 적합한 세부사업계획을 축산환경관리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 공동자원화시설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지역 실정에 적합한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다만, 2개 이상 시·군일 경우 시·군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법인체 등)·정착촌환경개선지원·액비유통센터·액비 성분분석기·액비부속도판정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개별농가)·액비저장조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에 통보
-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포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사업 포기서 제출
 -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포기자 및 총사업비의 30%(융자담 포함) 이상 불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2년간 지원 제외
 - * 최근 3년내 공동자원화사업 사업대상자 선정후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 포기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2년간 사업참여 제한.

[사업시행단계]

시·도(시·군), 감리기관

가.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구입 정보 제공

- 사업주관기관은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제공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절한 시설·장비를 구입·설치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지도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구매코자 하는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에 대한 제품특성 및 가격 비교 등을 할 수 있도록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에서 발간하는 가격 정보를 제공하거나, 농협중앙회에서 계통구매를 통해 판매하는 가격이 고시된 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지도

나.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기계·장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기계·장비의 규격화 촉진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합검사 등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을 구입토록 하고,
 - 3천만원(사업비) 이상의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관련 법령(약칭 : 가축분뇨법,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함. 단 1억원(사업비) 이상의 사업인 경우 축산환경관리원에서 필요성 및 시설용량, 처리방법, 설치 장소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의견을 받아 계약 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본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단 2회 유찰시 기존지원 방식을 적용
 - 다만, 3천만원(사업비) 미만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및 액비저장조 사업은 사업대상자가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직접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공동자원화시설 공사계약시 시운전기간을 공사계약기간에 포함하고 준공조건(퇴·액비 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명시하며, 준공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시 보완공사기간 및 비용부담 등 계약당사자간에 부담해야 할 조치사항을 포함하도록 조치
 - 공법사로 선정된 경우 최소 1년이상 위탁 운영·관리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을 제시하도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제조·시공·판매업체로 하여금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사업대상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소액계약 등 사업주관기관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증보험제출 생략 가능)
 - 보험가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착공·시공 및 감리

< 착공·시공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사업을 착공하게 하되,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단,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를 할 수 있음.

< 공사감리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설계전문업체(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토록 지도(공동자원화시설은 의무적으로 공사감리계약 체결. 단, 에너지화시설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설기술 진흥법)와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관기관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제시)
 - 사업주관기관은 “설계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을 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 * 관계 법령에 의한 공사감리 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대상자(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자체 감리를 하도록 하고, 한센인 정착촌은 한국농촌공사 또는 한빛복지협회에 위탁하여 감리 실시(준공 검사시 각각 확인)
- 사업주관기관 및 공사감리기관은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당해 시공업체에 공사중지, 하자보수, 재시공 명령 등을 취하고, 향후 2년간 사업참여 제한

- 준공검사는 허가청이 i)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준공검사(환경담당)를 먼저 한 후 ii) 건축물의 준공검사(건축담당)를 하고, 그 다음 iii)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완료 검사·정산 등 검정(축산담당)을 실시

사업대상자(사업주체)

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 허가·신고 및 준공검사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시공 전에 허가청(건축·환경담당부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이행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완료한 경우 허가청의 가축분뇨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시설의 준공검사 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지체없이 실시

나. 시공업체 계약체결

- 공동자원화시설 사업대상자는 공법사에게 토목·건축 등 공사 전반에 대해 일괄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공법사가 토목·건축 등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일괄발주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분리발주 가능
 - 공법업체에게 일괄발주 하는 경우 공사중 또는 완공후 하자 등 문제발생시 공법업체가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보완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급 표준계약서”나 사업주관기관이 지정한 서식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구입계약 시에도 이를 준용)
 - 공사중 또는 완공후 하자 등 문제발생에 대한 사업대상자와 공법업체, 시공업체간 명확한 책임·관리에 대한 계약사항 포함해야 함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및 감리

<설 계>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를 반드시 하고, 이 경우 “가축분뇨 자원화시설표준설계도”(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08.10)를 활용하여 설계비 절감과 건실한 시공 추진(단, 3천만원 미만의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첨부하는 서류로 같음)
- 사업대상자는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한국농촌공사 또는 설계 전문업체(건축사법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계약하여 설계 의뢰
 - 설계계약은 사업주관기관 입회하에 사업대상자와 설계업체가 계약을 체결 하고, 사업주관기관(축산·환경·건축)의 의견을 설계도에 반영

<착공·시공>

-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는 사업 착공일로부터 준공 시까지 시설현장에 현황 안내판을 표시하여 게시

< 공사감리 >

- 시공업체는 시공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서)와 공정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조치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자금배정 및 정산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비 배정 : 시·도에서 매달 20일까지 보조금과 융자한도액을 신청한 예산 요구액에 한하여 다음 달에 배정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가. 사업자금 배정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말까지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 받아 매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는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 배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부의 자금 형편상 그 달에 전액이 배정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미 배정액을 차기분에 포함하여 배정 요구

나.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자금 집행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집행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 실시
 - 사업비 검정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급금 등을 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사전 승인 조치(승인 방법 3.세부계획수립,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참고)
 - 공동자원화사업은 기성고에 따라 집행하되,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국고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금 지급이 가능(신용보증서 첨부)
 - 사업주관기관은 시험가동 후 공법사가 제시한 물량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 조치토록 하고, 조치사항 미 이행 공법사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용자를 자부담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정산전에 대체된 자부담을 용자로 조치하여야 함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보조, 지방비, 국고용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사업검정 및 정산서 내역이 포함된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및 용자한도액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실제 대출금액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시공·납품업체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납품업체의 통장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서를 제출토록 할 것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 또는 농협중앙회 계통구매 운영자 등의 계좌에 직접 입금 조치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과 용자금을 함께 지원할 때 용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하게 하고 보조금만 지원할 수 없으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용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용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단, 용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용자금을 조속히 반납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부동산담보, 제3자 담보, 후취담보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제도를 적극 활용
- 사업주관기관은 시설설치와 관련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인건비는 시·도 및 시·군에 자체 인건비 지급기준을 설정 후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 노무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증빙되고, 사업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처리
- 사업주관기관은 9.30일 현재의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변경 및 자금배정 반납 등 필요한 조치 강구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의 사업추진실적 지도·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월, 11월)
 - 점 검 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해당 시·도, 축산환경관리원 합동 현지 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 진척도, 사업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등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및 이행상태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원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강화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장부를 비치한 후, 시설투자비,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을 기재토록 지도
- 공동자원화시설
 - 시·도는 반기(5·11월)별 자체 점검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익월 10일 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17년말까지 인·허가 미획득 또는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시·도(시·군)는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체 “관리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 경영장부를 기재
 - 시·군 및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 준공 후 매년 운영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군은 사업자가 참여농가 중 계약위반 농가에 패널티 부과를 요청할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당초 계약물량을 이행하지 않는 참여농가에 대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비 등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퇴·액비가 비료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비료공정규격 적합 여부를 연 2회 이상 분석·의뢰하고, 그 결과를 비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 가축분뇨처리기계·장비	사업완료(준공)후 5년	○ 중앙관서의 장 승인 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안 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 등
○ 가 축 분 뇨 처 리 시 설 (블록조·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액비저장조시설	사업완료(준공)후 10년 (단, 블록조·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를 제외한 시설은 7년)		
○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완료(준공)후 15년		

《제 재》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가 지원자금의 상환완료기간까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장비 등을 가동하지 않거나 용도의 사용할 때 자금 회수 등 조치

- 휴·폐업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재개 및 자금회수 계획을 통보하고, 불이행시 자금 회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는 등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부당사용금액에 대한 회수조치 및 일정기간 사업 제한
-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률 위반, 감사결과 처분,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축산농가, 법인 등 2년간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 다만, 가축분뇨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별표9) 중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개별 기준 폐항)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개별기준 고항)에는 1회시 경고, 2회시 1년간, 3회 이상 2년간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
- 덜 부속된 가축분뇨 액비에 대한 반출 제한(농경지 등 살포금지), 2회이상 위반시 정책자금 2년간 지원 제외
 - 부속도 판정기준은 시·군에 보급된 액비부속도 측정 결과에 준함.

IV /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보고 사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비 고
○ 2019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대상자선정 결과보고	2018.3.31한	시·군(시·도) → 시·도 (농식품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 보고사항 * 서식은 별도 통보
○ 2019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추진실적보고	2019.1.05한		
- 회계연도 정산 보고	2019.3.05한		
○ 2017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추진완료·정산보고	2018.3.15한		
○ 축산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 이용실적보고(연)	2018.12.31한		

2. 평가

《사업평가》

- 우수 자원화조직체(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 평가 실시
 - <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
 - 평가대상 : 공동자원화시설

- 평가기간 : 2018년 1월 ~ 12월
- 평가내용 : 가동률 등 계획대비 처리실태, 자원화시설 운영·관리실태, 퇴·액비 생산·유통관리 등
- 평가방법 : 축산환경협의회위원 등 전문가로 평가팀 구성·운영, 운영실태 등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상·중·하로 분류

< 우수 액비유통센터 >

- 평가대상 : 정부지원 액비유통센터
- 평가기간 : 2018년 1월 ~ 12월
- 평가내용 : 사업장 운영실태, 시비처방서 발급실적, 액비살포 실적, 시설·장비 등 활용실태, 위탁받은 액비저장조 관리실태, 액비품질관리 실태 등
- 평가방법 : 축산환경협의회위원 등 전문가로 평가팀 구성·운영, 운영실태 등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상·중·하로 분류

《 환 류 》

-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의 핵심주체인 자원화조직체(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 조직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자금 지원
 - 우수 공동자원화시설로 선정(상위 30%)된 사업주체는 다음연도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사업(운영자금, 연 2%) 대상자로 우선 선정·지원
 - 우수 액비유통센터 선정 후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하고,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유통센터를 등급화* 하여 액비살포비 차등 지원
 - * 등급화 : A등급 : 30만원/ha, B등급 : 20만원/ha, C등급 : 10만원/ha
 - ** "C"등급 연속 3회 이상 또는 합계 5회 이상을 받은 경우 차년도 1년간 지원 제외
 - *** 운영실태 점검, 시료채취 등 거부시 당해 사업 및 차년도 1년간 사업참여 제한
 - 평가를 받지 않을 경우 "C"등급으로 하고, 당해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비료생산업 등록(가축분뇨 발효액)시 시점은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인센티브 지원(등급별로 50천원/ha)
 - 최근 3년간 선정된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에 대하여 1회(최초)에 한하여 정책자금 2년간 제한 규정 유예(부숙도 평가는 제외)
 - 최근 1년간 선정된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에 관리부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 등 기회 부여(예산 등 자체 부담)

1. 2019년도 사업수요조사

- 각 시·도에서는 2018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2019년도의 사업 계획 및 예산요구서에 시·군의 사업물량 및 예산과 이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여 2018.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수요조사를 기초로 201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18. 4월)

2. 기타 사항(예고)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 받은 자에 한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자금 지원(2020년부터 적용)
- 공동자원화시설('17년) 및 액비유통센터('18년)는 비료생산업(가축분뇨 발효액) 등록 의무화
 - *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센터 신규·공사중인 사업자는 준공 및 비료생산업 등록 후 사업비 정산, 운영 중인 시설이 비료생산업 미등록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참여 제한
-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사업신청자는 본인 소유의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야만 사업신청 가능('19년부터 적용)
- 공동자원화사업 개보수 경우 시·도지사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타당성 검토(현장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자 선정 후 신청
 - 시·도는 5년 누계 5억원 이내에서 개보수 자금이 지원되도록 관리
 - * 사업사 선정 요령은 별도 시달('18년부터 적용, '18년 사업자 신청은 '17.11월 중 실시)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및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대상은 '19년부터 축산 환경과 관련된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신청서류에 포함시켜야만 지원가능('18년 시범사업 실시 후 확대)
- 대규모(200톤 이상) 액비저장조사업은 '19년부터 신규지원을 중단하고 기존 시설 개보수 위주로 지원 전환(연구용역을 통해 개보수 지원단가 재산정)
- 밀폐공간 작업시 질식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8년부터 휴대용 유해 가스측정기 보급 지원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대상자(깨끗한 축산농장 조성)는 사업완료 후 1년 이내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에서 열거한 환경친화축산농장, HACCP인증농가 등으로 지정 또는 인증을 받도록 지도·권고(2020년부터 의무화 계획)
- 무허가 개선대책 관련 2018.3.25일 이후 무허가축사에 대하여 사업지원 제한
- 정착촌분뇨처리지원사업은 '19년부터 깨끗한축산농장조성사업으로 지원

세부사업명	축산물수급관리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계란GP센터시설현대화	예산 (백만원)	1,800					
사업목적	○ 계란의 유통과 안전관리 구조개선을 위하여 규모화·현대화된 계란유통센터를 지원하여 계란 생산·유통의 거점으로 육성							
사업 주요내용	○ 계란의 집하, 선별, 세척, 포장, 등급판정 및 위생·안전검사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신축 또는 시설보완 등을 위한 자금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지원자격 및 요건	○ 시·도의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이 승인된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참여하려는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등 조합 또는 법인							
지원한도	○ 기준사업비 - 신규 시설 : 최소 60억원 ~ 100억원 - 시설 보완 : 최소 10억원 ~ 30억원 ※ 총 사업비의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자부담하고, 사업자의 운영능력, 매출 계획량, 원료조달 능력, 지자체의 육성계획 등에 따라 사업비 조정 가능							
재원구성(%)	국고	30	지방비	30	용자	-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	6,000	154,000			
	국 고	-	-	1,800	46,200			
	지방비	-	-	1,800	46,200			
	자부담	-	-	2,400	61,6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이상훈 주무관 유해리		044-201-2338 044-201-2339		
축산물품질평가원 시도·시군구		평가관리처 축산담당(가금,계란)		송종호 사무분장에 따름		044-410-7061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계란GP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신규 시설 : 농협조직(지역 농·축협,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계란만을 취급하는 공판장의 개설자로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시설 설치와 함께 계란공판장을 운영 하려는 자
- 시설 보완 :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으로서 기존 계란유통센터(GP) 운영자
 - *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농업인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50%를 초과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사업시행기관 : 시군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자격

- 시·도의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이 승인된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참여 하려는 사업자
 - *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 : 시·도지사가 향후 5개년('18~'22년)간 관할 지역 산란계 농장으로부터 생산되는 계란의 위생·안전한 유통 및 공정한 거래 등을 위해 계란의 생산-유통에 관한 시설 설치 및 보완, 공판장 개설·운영, 브랜드 육성, 농가 계열화 및 계란 위생·안전검사 계획 등을 포함한 계란산업 종합발전계획으로 지역 계란유통 센터 육성·지원계획을 포함(농식품부의 승인 필요)
 - **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특정 법인 또는 조합을 지정하지 않을 것
- 신규 시설 : 계란만을 취급하는 공판장을 개설하려는 자로서 「축산물위생 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 및 운영기준 등을 충족하고, 영업 허가를 득하여 운영하려는 자
 - * 지자체의 직접 사업 수행 가능하며, 이 경우 사업운영은 위탁할 수 있음

- 시설 보완 : 기존 계란유통센터의 집하-선별-세척-포장 등 처리능력 향상 및 위생·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증축 및 개보수 등을 하려는 사업자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 및 운영기준 등을 충족하고, 영업 허가를 득하여 운영하려는 자

나. 지원요건

(1) 기본요건

- 시·도의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고, 사업부지(예정지 포함) 및 자부담금 등을 확보한 사업자
 - 신규 시설은 계란공판장 개설, 등급판정 시행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허가를 득하여 운영
 - 시설 보완은 계란 등급판정 시행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 및 운영기준 등을 충족하고, 영업 허가를 득하여 운영
- * 사업완료 후, 기본요건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불이행시 국고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

(2) 사업규모

- 신규 시설 : 1일 계란 취급능력이 1백만개 이상(조정 가능)의 시설을 갖추 고자 하는 사업신청자
- 시설 보완 : 시설 증축 및 개보수 등을 통해 연간 계란 취급능력을 기존 시설 대비 30% 이상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신청자
 - 전년도 계란 취급액이 60억원 미만(판매금액 기준)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

(3) 시설규모

- 신규 시설 : 총 사업비가 60억원 이상이고, 시설규모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른 도시인구별 축산부류공판장 시설기준의 50퍼센트 이상을 충족(계란 전용공판장)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 및 운영기준 등을 충족하여 영업 허가를 득하고, 연간 최소 250일 이상 운영이 가능한 시설
 - * 시간당 계란 최소 처리능력(선별기) : 총 사업비 60억원 10만개, 100억원 18만개 처리능력 보유가 원칙이나, 지역 생산여건에 따라 조정은 가능함

- 정부, 지자체 또는 자부담으로 건립된 기존 계란유통센터가 없는 지역에 우선 지원하며, 반드시 계란공판장 시설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함
- 계란 가공시설을 자부담으로 함께 설치하거나 기존 가공장과 연계 사업이 가능한 자에게는 총 사업비 지원한도액 기준으로 50%까지 증액 지원 가능
 - * 사업계획에는 계란 선별과정에서 구분되는 2등급란, 실금란 등의 가공시설에 납품 등 처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시설 보완 : 보완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최근연도 연간 가동일수가 최소 200일 이상인 시설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 및 운영기준 등을 충족하여 영업 허가·운영
 - 정부, 지자체 또는 자부담으로 건립된 기존 계란유통센터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부지를 달리하는 시설 확충을 포함)
 - 공판장 개설을 위해 시설 보완이 필요한 경우 총 사업비 지원한도액 기준으로 50%까지 증액 지원 가능
 - 개별 농장에 부속된 GP로서 다른 개인농가의 계란의 반입이 없는 시설은 제외
 - *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단순 리모델링(사무실, 식당, 회의실 등 비상품화 시설의 개보수 및 인테리어 공사) 등은 지원 제외
 - * 가동일수 산출기준 : 집하, 선별, 세척, 포장 등을 기준으로 8시간은 1일, 4시간 미만 가동일은 0.5일로 계산

다. 별도요건

- (1)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다만, '19년 사업대상 선정부터 적용
 -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 재무제표)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 * 단,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 ※ 출자금 및 조합원(농업인 주주), 운영실적 등 기준일자는 본사업 신청일 기준
- ※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생산자 지분이 50%를 초과하여야 함(생산자단체는 생산자의 지분을 계산하여 인정, 지자체 지분은 비 생산자 지분으로 간주, 사후관리 기간 동안에도 충족하여야 함)
-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 기타요건(사후관리기준 포함)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및 별표 6에 따름

(2)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된 경영체 지원

- 경영체(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된 경우에만 지원

* 관련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라. 지원제한 기준

- 대형 GP(1일 100만개 이상 처리능력)가 지원되거나 이미 설치된 지역의 경우 신규시설의 지원 불가(보완시설은 지원 가능)
 - 다만, 대형 GP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규시설 지원 가능
 - ① 전년도 처리물량이 사업 계획물량 이상 처리, ② 가동일수가 250일 이상, ③ 연간 취급액 300억원 이상(전년도 판매가격 기준), ④ 영업이익율 5% 이상
- 신규 GP 설치 지역은 향후 3년간 신규 GP 지원 불가
- 시설 보완사업자는 최종 지원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이월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는 보조금 반환하고, 적발시 영구제한

3. 지원 대상

- 계란의 집하, 선별, 세척, 포장, 보관, 출하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건물, 경매장, 주차장, 냉장실, 계란 보관창고, 쓰레기 처리장, 위생시설, 사무실, 하주대기실, 출하상담실, 계란운반차량, 중도매인 사무실, 위생검사 시설 및 사무실, 대금 정산조직 사무실, 소독시설, 실험실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 여러 농장에서 계란이 수집되므로 반드시 소독시설(차량, 도구)이 설치 되어야 하며, 필요시 자체 품질관리를 위한 실험실 설치 가능
- 설계·감리비 및 사업 컨설팅
 - 사업컨설팅은 30백만원 이내로 제한하며,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이후에 실시하는 컨설팅에 한함(초과금액은 자부담 원칙)
- 토목공사 : 부지내 기반공사(배수, 배관, 전기 및 통신선로 등), 포장공사, 부대설비공사 등
 -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초과금액은 자부담 원칙)
 - 부지매입비, 부지 기반정비(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 및 토지 형질변경(농지보전부담금 포함) 비용은 자부담 원칙
- 건축공사 : 집하장, 선별장(저온 선별장 포함), 포장장, 출하장,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경매시설·장비, 사무실, 회의실,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등은 가급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 신축의 경우 계란의 선별, 세척, 포장 등의 자동화 설비를 위하여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투자
- 여러 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란이 집하됨에 따라 차량의 입구와 출구를 달리 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차단방역시설 설치
 - * 차단방역시설은 정부·지자체의 별도 방역사업으로 추가 지원 가능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설비·장비류 설치 공사
 - 선별, 세척, 포장 시설·장비류 : 세척기, 선별기, 난각인쇄기, 자동검출장치 등
 - 유통시설·장비류 : 화물차량, 팔레트, 지게차 등
- 위생시설·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세척기, 청소기, 건조기 등
- 계란유통센터 스마트화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ICT 활용 경영시스템
 - ※ 계란유통센터 건립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나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 신규시설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란공판장을 반드시 개설·운영 하여야 함
 - ※ 계란유통센터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아야 함
 -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국고) : 축산발전기금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재원으로 시설·장비 등의 추가지원 가능
 - * 2개 이상의 시·군에서 원물을 확보하는 경우 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서 지방비 부담이 원칙. 다만, 시·도에서 조정 가능
- 사업기간
 - 신규 시설 : 2년간 사업(1년차 설계 및 건축 인허가 등, 2년차 시설공사 등)
 - 시설 보완 : 1년간 사업
- 사업 의무량 : 정한 사업기간 중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설·장비의 설계 및 설치 등 마무리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기준사업비
 - 신규 시설 : 최소 60억원 ~ 100억원
 - 시설 보완 : 최소 10억원 ~ 30억원
- ※ 총 사업비의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자부담하고, 사업자의 운영능력, 매출 계획량, 원료조달 능력, 지자체의 육성계획 등에 따라 사업비 조정 가능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1월)
 -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별 시설 지원 신청

사업자

- 예비 사업 신청 : 차년도(2019년)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이전에 해당 시·군에 예비 사업신청서 제출('18.2.10까지)
 - 제출서류는 아래의 본 사업 신청서류와 동일
- '18년도 본 사업신청서 제출
 -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이 승인된 지자체의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 및 다음의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17.12.22일까지)
 - * 농협조직은 사업계획서를 농협경제지주(축산유통부 축산유통전략팀)에도 제출
 - 도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로 제출하고, 시·도지사가 사업을 직접 수행

< 사업신청 시 구비 서류 >

- ① 사업계획서, ② 간이설계도 및 조감도(사업자가 간략히 작성한 것), ③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서(엑셀), ④ 법인등기부등본(자본금), ⑤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GP 건립 또는 개보수 의제), ⑥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⑦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⑧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 청구제도 활용), ⑨ 자기자본 및 최근 3년간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등), ⑩ 농정심의 결과, ⑪ 농업법인 추가 구비서류 :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자부담금 확보 증명서(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에금증명서 등)

- 사업부지가 미 확보된 경우 사업 신청 제외. 다만, 사업부지 확보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허용. 이 경우 사업부지 확보 계획서(토지소유주의 매매 동의서 첨부)를 제출
 - 부지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이어야 하고, 농협의 경우도 사업부지(농지 등 비 업무용 부동산일 경우)의 가계약체결 증명서 등 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 예정부지가 담보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으면 제외
 - *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됨(단, 당해 법인 명의를 아니더라도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 자부담이 미 확보된 경우 사업 신청 제외
 - 각 단계별로 일정수준 이상의 자부담을 확보한 증빙자료(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에금증서 등) 제출 의무화(법인조직)
 - * 사업신청단계 10%, 사업자 확정 50%, 사업 시행 100%
 - 자부담금은 해당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지도 및 관리(통장 인감병행 사용 등)

시·군

- '19년도 예비 사업신청서를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18.2.25까지)
 - 지원대상 사업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신청서 제출
- '18년도 본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시·도에 제출('17.12월말까지)
 - 승인된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에 반영된 GP 시설 설치 및 개보수 희망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및 관련 첨부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검토 후 제반 증빙자료(농정심의회 결과 필수)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시장·군수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사업계획을 시·도에 제출

시·도

- '19년도 예비사업신청서를 취합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18.3.10까지)
 - 지원대상 사업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신청서 제출
- '18년 본 사업계획서 검토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사업 신청서 제출('18.1.12까지)
 - 시·도는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 적정성 및 합리성, 재무구조 건전성, 투자 효율성, 운영능력, 최근 3개년 사업실적, 기본요건 충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평가하되 반드시 현장실사를 병행하여 사업자의 사전 준비 상태, 계란 유통주체로서 발전 가능성 등을 중점 점검하여 적격한 사업자에 한해 추천하여야 함
 - 특히, 신규 GP 설치 사업자의 경우 계란 공판장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운영을 위한 원물 확보 세부방안, 마케팅 계획, 운영자금 확보 계획, 자체 품질 및 위생·안전관리계획 등의 타당성 검토
 - 시·도는 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대해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적격한 사업자에 한해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사업 신청 하되, 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제출
 - 전문가 평가 시 붙임 2의 사업자 선정 평가표를 활용, 자체 평가결과 70점 이상 득한 사업신청자에 한해 추천 가능하며, 시·도지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축산물품질평가원

가. 단계별 평가절차

- 시·도에서 제출한 '19년도 예비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 등을 사전 점검(협조 : 농협경제지주 축산유통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에 통보('18. 4.30까지)

○ 시·도에서 제출된 '18년 본 사업신청서에 대해 단계별 평가 실시('18.1월)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산·학·연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 및 발표평가 실시

- 사업대상자는 평가단계별 통과기준 이상시 선정

* 서면평가(70점) → 발표평가(80점) →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

○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 및 관련 제출서류 등의 적정성 검토

< 2단계 : 서면평가 >

○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

- 주 관 : 축산물품질평가원(협조 : 농협경제지주 축산유통부)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평가내용 : 원물확보 및 가동체계구축, 투자의 적절성, 마케팅 등의 적정성

- 조치내용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3단계 : 발표평가 >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표평가

- 주 관 : 축산물품질평가원(협조 : 농협경제지주 축산유통부)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원물확보 및 가동체계구축, 투자의 적절성, 마케팅 등의 적정성

* 기본설계의 적절성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장기계획 등에 대한 심의 포함

- 평가진행 : 사업계획, 기본설계 및 산출내역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평가위원 간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비 심의·조정

나. 사업대상자 선정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단계별 평가를 완료한 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농식품부, '18.2월중)
 - 본사업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전문심사단 심의결과를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기본설계 및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포함)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18.2월까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19년도 사업
 - 사업대상자별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18.10.15. 전후)
 - 사업대상자별 예산을 시·도에 확정내시 통보('19.1월)
 - 사업대상자별 세부추진계획 검토·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19.2월)
- '18년 본 사업 대상자별 세부추진계획 검토·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2~3월)

사업자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신청, 교부신청, 자금의 집행관리, 정산보고 등은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으로 수행
- 사업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19년 사업 : '19.1.10까지, '18년 사업 : 3월중)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군 보고

- 설계 변경(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 등 : 시·군의 승인 후 시행
 - * 세부 시행계획 및 사업비 조정 시에는 사업추진 조직의 이사회에서 적정성을 검토 후 조정
- 사업부지 변경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승인 후 시행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축산물품질평가원 심의·승인)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증감)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 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다만, 입찰 시 통상 총 사업비의 80% 수준에서 낙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비의 120%를 초과한 조정은 불가함)
 - * 건축 실시설계 금액이 당초 사업예산의 120% 이내일 경우 세부사업비 조정 생략 가능(단,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총사업비의 변경이 없어야 함)
 - *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조정 건의 승인 요청은 총 사업비(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상 대분류 항목 간)되는 금액(증액분)의 합계가 총 사업비(예산)의 15%까지는 자체조정 가능, 16~30%까지는 시·군 승인, 31~50%까지는 시·도 승인, 50%를 초과 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승인 후 시행(단, 변경금액의 합계가 15% 이하라도 5억원 이상이면 시·군 승인, 15억원 이상이면 시·도, 30억원 이상이면 축산물품질평가원 승인 후 조정·시행)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필요시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지 자 체

- 시·군은 사업자의 계획서를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 포함)를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19년사업 : '19.1.20, '18년사업 : 2~3월중)
- 시·도는 관할 시·군에서 제출한 세부시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농식품부에 승인요청 및 보조금 교부결정 요청('19년사업 : '19.1월말, '18년사업 : 2~3월중)
- 세부시행계획 변경 등 계획변경 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

- 설계 변경(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 : 시·군 승인
- 경미한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 변경 : 조정 비율에 따라 해당 주체가 승인
 - * 시·군(시·도)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를 시·도(축산물품질평가원)로 제출
- 사업주체, 총 사업비의 20%이상 증감이 필요한 경우 등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사항 : 농식품부 승인
- 사업부지 변경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승인 후 시행
 - *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사업비가 남는 경우(입찰차액,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는 시·군 승인 후 시설 및 장비 확충·개선에 집행 가능(단, 기존시설 유지·보수 및 단순 리모델링, 화물차량 구입 제외)
 - ※ 사업계획 사후변경 승인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에 따른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
 -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4. 자금 집행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분기별 자금배정계획, 시·도의 자금배정 신청 등을 근거로 시·도에 자금배정

시·도/시·군

- 시·도는 배정받은 국고보조금과 함께 시·도비를 확보하여 시·군에 배정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시·도 또는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농업법인, 농협 등 민간사업자인 경우 e나라도움으로 보조금을 통해 교부하고, 민간사업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함.
 - 민간사업자는 사업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보조사업 전용카드, 기타 지출과 관련 증빙자료를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지출해야 함.
-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경우 민간사업자는 2개월 이내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군에 정산보고를 해야 함.
 - 지원받는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의 감사인을 통해 정산 보고서의 검증을 받아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부기등기를 해야 함.
 - 정산보고를 통해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시군의 확정을 받은 후 집행 잔액 및 이자는 즉시 시군에 납부를 해야 함.
- 시장·군수는 세부 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군의 사업비 정산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사업완료 다음년도 3월말까지)

5. 이행점검단계 및 사후관리 단계

《사후관리》

- 사후관리·감독 기관 : 해당 지자체(시·도/시·군)

사업자

- 시설물의 등기(법인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지자체장의 승인없이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이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주식양도(타 사업자가 GP 사업자 지분의 30% 이상을 취득하면서 최대 출자자가 되는 경우) 및 임원교체 등을 통해 실질적인 GP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에 따라 조치)

지 자 체

- 시·도 및 시·군은 계란유통센터 관련시설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조건 위반 등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시장·군수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관리하고, 매년 1회 이상 사업자가 제출(또는 열람 및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거당 설정 등 확인 및 현지 지도·점검,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치하고, 매년 3월말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소유자가 지자체인 경우 위탁운영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연간 매출액의 0.5% 범위내로 함
- 사업자가 원물조달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실행을 위해 중요재산을 활용 담보제공 승인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득해야 함(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 “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관리 기간적용”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 계란유통센터의 시설 신설·증축은 사후관리기간을 10년 적용
 - 계란유통센터의 고정식·이동식 기계 장비류와 계란유통센터의 건축물 및 부속설비에 대한 일부 개보수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기간 5년 적용
- 시·도는 사업 완료 후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보고(다음 해 3.31까지)

- 시장·군수는 계란유통센터의 건축물 및 부속설비와 시설·장비(주요 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카드(전담책임자 지정)를 비치하고,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용

축산물품질평가원

- 사업대상자와 사업관리주체(시·군)에 대해서 매 분기별로 계란유통센터 건립 및 개보수 등 추진상황 점검 실시
 - 점검항목 : GP 건립추진 공정율, 부지 및 지방비 확보, 사업비 집행실적 등

1. 성과측정 및 환류단계

- 정부지원 계란유통센터(GP)의 경영진단을 통해 우수시설에 인센티브 부여, 부진시설에 컨설팅 등을 통한 운영 활성화 도모
 - 진단기관 : 축산물품질평가원
 - 진단항목 : 총 취급액(물량), 가동일수 등 경영성과
 - 진단시기 : 매년 2/4분기
 - 사업자는 시설·장비설치공사 완료 후 사업성과 제출 의무가 있으며, 지자체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환 류》

- 사업실적 우수 GP에 대해 시설 노후시 추가적 보완 사업비 지원대상으로 우선 선정
-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도는 사업지원 제한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 사항을 환류

세부사업명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세목	자치단체보조 및 민간보조		
내역사업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생태축산농장 기계장비구입 지원 - 산지생태축산농장 초지조성 지원 - 산지생태축산농장 초지조성부담금 지원 - 산지생태축산농장 컨설팅 지원 - 산지생태축산농장조성 교육·홍보 지원 				예산 (백만원)	1,530		
사업목적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을 위한 보조 사업							
사업 주요내용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을 위한 기계장비구입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지원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생태목장으로서 아래와 같이 자격 및 요건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생태축산농가 : 축산업등록농가 - 농업경영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등 ○ 기존의 산지생태축산농가(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는 우선 지원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장비) 호당 150,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방목시 필요한 기계·장비는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추가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③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 ○ (초지조성) 30ha기준으로 1ha(10천㎡)당 신규조성은 7,137천원, 보완조성은 2,122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지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초지조성 면적이 30ha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면적에 비례하여 지원 가능 ○ (초지조성부담금) 3ha 이상의 국유림이나 공유림(사유림은 제외)을 대부하여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1ha당 10,000천원을 기준으로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1ha 미만은 절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당 부담금이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전액 자부담으로 함 ○ (컨설팅) 개소당 15,00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교육·홍보) (재)축산환경관리원이 주관으로 예산 범위 내 시행 							
재원구성 (%)	국고	1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속			
	합 계	5,500	6,630	4,320	4,320			
	국 고	1,520	2,135	1,530	1,530			
	지방비	990	1,290	840	840			
	용 자	2,000	1,915	1,110	1,110			
자부담	990	1,290	840	84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최종범	044-201-2353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산지생태목장조성사업 시행지침			

2018년도 산지생태목장조성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과 장 박홍식 사무관 노봉래	044-201-2351 044-201-2355

I. 사업개요

1. 목 적

- 유희 산지(山地)를 활용한 조사료 자급으로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친환경 축산물 생산 및 동물복지 등을 연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 * 산지생태축산 : 자연 그대로의 산지를 최대한으로 활용, 동물복지를 고려한 가축사육과 환경 친화적 축산물 생산을 추구하는 축산
- * 사육방식 : 초지, 초지와 임간방목지, 임간방목지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초지법 제13조(자금지원),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사료관리법 제3조(사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산지생태목장 조성’을 신설(’17년)하고, ①초지조성, ②초지조성부담금, ③컨설팅, ④기계·장비, ⑤기반시설, ⑥교육·홍보에 소요되는 재정투입 계획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비고
○ 산지생태목장 조성	7,125	6,300	7,755	3,540	
- 보 조	2,071	1,520	2,135	1,530	
- 용 자	2,970	2,420	2,815	2,010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축산농가, 축산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산지를 활용하여 초지를 조성(면적이 3ha 이상인 경우에 한함)하거나 임간방목 등의 방법으로 가축을 방목 사육하(려)는 자
 - * 시범사업(2014~2016)에 참여한 농가 중 방목용 초지면적이 3ha 이상인 농가는 산지생태목장으로 일괄 지정(2017년 지정, 지정기간 3년)하되, 추후 재지정 시에는 평가를 거쳐 지정여부 결정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산지생태목장으로서 아래와 같이 자격 및 요건을 적용
 - 산지생태축산농가 : 축산업등록농가
 - 농업경영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등
- 기존의 산지생태축산농가(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는 우선 지원

3. 지원대상

- 사업대상 : 산지생태축산농가,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
- 대상축종 : 한·육우, 젓소, 말, 닭, 오리, 산양(염소)·면양, 사슴, 토끼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초지조성 :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자재대, 측량수수료 등
 - 지원단가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하는 “초지조성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별 실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조정 가능하며 실투입비만 정산

《 토지등급에 따른 초지조성방법 》

- ◆ 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1-2급지로서 경운방법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 불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2-3급지로서 경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애물 제거, 지표처리 등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 임간초지 : 산림을 보존하면서 지표처리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 토지등급별 판정기준

등 급	경사도	유효토심	자갈함량	토성
1급지	20°이하	100cm	5%이하	사양토, 양토
2급지	21 - 30	99 - 50	6 - 20	식양토, 식토
3급지	31 - 35	49 - 30	21 - 30	사토, 중점토
4급지	36 이상	29 이하	31 이상	입사질토

- 초지조성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잡석·잡목 등은 목장 내의 축사, 울타리 등 부대시설용 자재로 활용하고 목장의 반출 제한(다만, 초지법에 따라 반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기성초지 보완사업은 초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하·중급 초지를 중·상급 초지로 보완하거나 상급초지를 지속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 초지조성부담금 :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관련 전문기관 용역비용, 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법정 비용 및 부담금(국유지·공유지에 한함)
- 컨 설 텅 : 초지 조성·관리·이용, 축종별 시설·분뇨처리, 생태보전 등 분야별 컨설팅
- 기계·장비 : 가축사육 및 방목에 필요한 초지 및 사료작물재배 기계·장비
- 기반시설
 - 용수개발, 전기시설, 진입도로 개설, 목장 내 도로 개설

- ◆ 용수개발 : 지하수 등 수자원이 부족하거나, 초지의 하고 현상이 심하여 관정 및 관수시설이 필요한 지역
- ◆ 전기시설 : 건초 및 사료작물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동력원으로 전기시설이 필요한 목장(초지 내 전기시설에 한함)
- ◆ 진입로 개설 : 초지의 진입도로, 목장 내 도로 신규개설 또는 기존도로의 확장, 보수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편입부지는 자체부담

- 초지·사료작물 재배부지 정지

- ◆ 초지나 사료작물의 재배지를 단지화·기계화하기 위하여 구릉지의 정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 시장·군수는 정지된 토지가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 초지용 울타리 설치 등

- ◆ 초지에 대하여 울타리를 설치하여 방목에 의한 초지의 경제성 제고
- ◆ 대상시설 : 초지 외곽 경계 울타리, 철재앵글, 콘크리트, 나무 등 지주설치 및 전기차단기, 철선 등의 시설, 수조 및 저수탱크

《 우선지원 가능 사업 》

☆ 직접지원 가능 사업 외의 기타 사업(사일리지제조비, 종자구입비, 시·도가축방역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 사업,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은 개별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반영

5. 지원형태

○ 초지조성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용자 5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⑤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과 동일

- 초지조성 지원 시 사업비는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용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용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는 없음.

- 초지조성부담금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컨 설 텅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기계·장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10%, 지방비 30%,
 용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자부담 30%
 - * 용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지자체 포함)
 -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
- 기반시설 : 축산발전기금 용자 8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자부담 20%
 - * 용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초지조성은 30ha기준으로 1ha(10천㎡)당 신규조성은 7,647천원, 보완조성은 2,199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 초지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초지조성 면적이 30ha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면적에 비례하여 지원 가능
- 초지조성부담금은 3ha 이상의 국유림이나 공유림(사유림은 제외)을 대부하여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1ha당 10,000천원을 기준으로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1ha 미만은 절사)
 - * ha당 부담금이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전액 자부담으로 함
- 컨설팅은 개소당 15,00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호당 150,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방목시 필요한 기계·장비는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추가지원 가능
 - *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
- 기반시설은 건당 지원한도 없이 총 소요액의 80%까지 용자 지원

1.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내용,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통보('18. 1월)

시·도(시·군)

- 시·도(시·군)에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사업대상자 수요조사를 실시('18. 1월)
 - 시·군은 사업대상자를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18. 1월)
 - 시·도는 시·군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8. 1월)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있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18. 2월)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

- 시·군은 사업대상자의 “산지생태목장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추천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수
- 시·도는 시·군으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8. 1월)
 - 선정방식 : 전문가를 구성하여 평가하거나 서면평가 등의 방법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 추천방식 : 축종별로 3순위까지 추천하되, 지역별 경쟁력이 있는 소수가축은 우선적으로 추천

* 산지생태목장 지정평가 기준 : [별지 제2호서식]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검토 후 서면심사,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심사(필요시 선정평가위원회 설치·운영) 평가('18. 2~4월)
 - * 현장조사는 [별지 제3호서식] 산지생태축산 시범농장 선정 현장조사표를 활용하고, 필요시 사후관리 참여기관 관계자 및 자문단 위원을 현장조사에 참여시킴.
-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18. 4월, 이후 수시)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자문단의 위원을 현장조사에 참여토록 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음.
- 산지생태목장 지정은 예산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본 지침서의 기준에 적합한 농장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지정할 수 있음.
 - 다만, “산지생태목장 지정 현장평가표”에 의한 평가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산지생태목장으로 지정(지정서 발급)
 - * [별지 제4호서식] 산지생태목장 지정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

- 시·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 본 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후 사업대상자(보조사업자)에게 통지
- 각 시·도 책임 하에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별 지원
 - 지원 단가 및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추진
 - 시장·군수는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 경우 1회 보완 조치하고, 미보완 시는 시·군 판단 하에 「축산발전기금 운영 요령」 등에 따라 자금지원 중단 및 기지원분 회수 조치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사업비 배정 통보('17. 1~2월)

시·도(시·군)

- 시·도는 자체 계획에 따라 시·군별 사업비 배정('17. 2월), 시·군은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사업비 집행

5.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제와 연계하여 분뇨처리, 질병 및 위생관리를 통해서 산지생태 축산농장을 운영
 - (분뇨처리) 방목축산에 따른 분뇨의 자연순환 처리 또는 퇴·액비 전환을 통한 적정하게 관리
 - (방역관리) 사람과 차량출입 등에 대한 차단방역 및 방목사육에 따른 질병피해를 방지
 - (위해요소중점관리)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위해요소 사전관리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 친환경·동물복지를 고려한 고품질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
 - (친환경축산물 생산)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한 자연순환형 축산(유기사료, 무항생제)을 통한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
 - (동물복지) 동물의 5대 자유원칙(배고픔, 불편함, 질병, 고통, 행동표현)에 따른 사육환경 및 관리 추진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지급신청 시 인센티브를 받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산지생태목장 지정서 사본 제출(대상자로 선정된 것만으로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음)

시·도(시·군)

- 사업계획서에 맞게 사업추진을 하는지 수시로 현장점검(반기 1회 이상)하고,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지원 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확인
- 시·군에서는 사업 진척도를 수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용자기관에 통보, 사업비 집행(매월 소요액을 시·도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사업완료시 개별사업에 따라 정산하고,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자부담분 포함)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함. 관련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자금회수 또는 미집행 처리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관리
- 사업대상자가 산지생태목장을 운영하면서 분뇨처리, 질병·위생관리, 친환경·동물복지 등의 이행여부를 준수하는지 현장점검 확인(반기 1회)
- 보조금(용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사후관리기간에 따름.
- 보 고
 - 산지생태목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직접사업 또는 연계사업에 대한 집행실적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고(사업종료 즉시)
 -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의 정산은 개별사업에 따라 보고
 - *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 시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규정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정산결과를 함께 보고

농협경제지주

- 시·도(시·군)와 협조하여 산지생태목장 지원사업 기계·장비 구입비에 대한 보조 및 용자 이중지원 등을 지도·점검하고, 필요시 지원자금 회수 등 조치

(재)축산환경관리원

- 산지생태목장 운영실태 점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
- 컨설팅지원팀을 구성하여 부실관리농가, 회원 및 신청농가에 상시기술지원 등 경영·기술·제도 등 컨설팅 지원
- 산지생태목장 대상 가축분뇨 자원화(퇴비, 액비) 및 악취저감에 관한 컨설팅 및 모니터링 실시

산 립 청

-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국유림 사용허가(대부) 등 제도개선 추진
 - 요존국유림 내 가축방목을 위한 허용범위 검토(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등과 협의)
- 산지초지 조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지원

농촌진흥청

- 산지초지 조성 및 관리 이용기술, 축종별 산지초지 방목 이용기술, 산지축산 환경보전 및 방목가축 질병관리기술 등 연구
- 현장적용 기술의 보급 및 컨설팅 등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지급 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산지생태목장으로 지정받은 농가는 인센티브 부여([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 확인)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
-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일정
 - 점검 대상 및 일정 : 시·군(도별 1개 이상), 연 1회 이상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직접지원, 연계사업 항목별 사업비 적정 집행여부와 사후관리실태 확인

나. 제재조치

시·도(시·군)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취소 등 조치
- [별지 제6호서식]의 “산지생태목장 지원사업 관리카드”를 작성·비치(시·군)하고, 연 1회 이상 관리실태 조사 실시
- [별지 제7호서식]의 “산지생태목장 운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산지생태목장 지원사업의 기계·장비 용자 및 보조에 대한 이종지원에 대해서는 동 사업에서 제외시키고 보조금 또는 용자금을 회수 조치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에서는 농협경제지주와 협조하여 연 1회 이상 이종지원에 대한 점검 실시
 - * 시·도(시·군)는 보조지원 받은 산지생태목장에 대한 상호명 등 관련 정보를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은 보조지원 받은 산지생태목장이 용자를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시·도(시·군)에 통보하고 해당 시·도에서는 경고 조치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규정 준수

IV. 201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2019년도 산지생태목장 조성사업 지원 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른 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신청기관에 제출
 -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축산담당부서
- 시·군에서는 시·도를 통해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시·도별 사업수요를 기초로 201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산지생태목장 사업계획서

I. 일반현황

- 대표자 : _____ (HP : _____)
- 설립연도 : _____
- 소재지 : _____

초지면적 (㎡)	계	초 지		임간방목지	
		자가	임차 (국·공·사유지)	자가	임차 (국·공·사유지)
보유현황 (㎡/동/대)	관리사	축사	축산시설	기계·장비	기타
	0 동 (_____ ㎡)	0 동 (_____ ㎡)	0 동 (퇴비사 _____ ㎡) (_____ ㎡)	_____ 대 _____ 대 _____ 대	
현재사육 축종 (마리수)	한우·육우·젓소	닭	오리	염소·산양·면양	토끼 등 (소수가축)
	한우 마리 육우 마리 젓소 마리			염소 마리 산양 마리 면양 마리	
매출현황 (1년간, 백만원)	매출금액	순이익금액	자산 규모		
			자산	부채	

II. 사업계획서

가. 개요

-
-

나. 투자계획

-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18	'19	'20	'21
국비	보 조					
	용 자					
지 방 비						
자 부 담						
추가 자부담						
계						

다. 예산확보 방안

-
-

III. 세부사업 계획

가. 사업대상 초지 분포도

-
-

- * 전체 도면(관련자료 첨부)
- *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장기임대계약서 등(관련자료 첨부)
- * 예정부지에 대한 시장·군수의 인허가 등

나. 초지·임간방목지(신규·보완) 조성계획

-
-

구분	면 적(m ²)	금액(천원)

* 조성계획 도면 (관련자료 첨부)

* 조성계획 현황자료

다. 향후 사육두수 계획

-
-

축종	현 재 사육두수	향후 사육두수				
		'17	'18	'19	'20	계

라. 컨설팅 계획

-
-

마. 기계장비 구입 계획

-
-

기계·장비명	회사명	제작년도(번호)	치수	금액(천원)

바. 기반시설조성 계획

-
-

기반시설명	사업내용	금액(천원)
목로개설(km)		
용수개발(공)		
전기시설(km)		
부지정리(ha)		
기타		

사. 타 사업과 연계추진 계획

-
-

사업명	지원규모(천원)					지자체 관심도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아. 조사료 확보 계획

- 산지생태목장 농가는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므로 조사료 업체(TMR 업체, 조사료유통센터, 조사료경영체 또는 재배농가)와의 공급계약 체결내용을 기재

업체명 (농가명)	주 소	종류(품목)*	계약물량 (면적)	계약기간

* TMR 사료, 조사료, 사일리지, 건조 등

IV. 사업효과(예상수익 등)

-
-
-
-

* 예상 수익성 분석 등 포함하여 설명

V. 향후 운영방안

- 조사료 확보 계획, 가축사육환경, 사업의지(초지 확보, 사육두수 확대, 자부담 계획 등), 타사업과 연계추진, 지자체 관심도 등 사업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
-
-
-

* 실현성 또는 가능성 위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수반되어야 함.

산지생태목장 지정 평가표(지자체 평가)

업체명		대표자명	
지역		주요축종	

구 분	세부항목	배점	특점	특점근거						
조사료 확보	○ 면적 m ²	200		한우, 육우, 젓소, 말	염소, 유산양	소수가축	배점			
	- 자가지 m ²			10만m ² 이하	5만m ² 이하	5만m ² 이하	50			
	- 임차지 m ²			10~15만m ²	5~10만m ²	5~7만m ²	100			
	·국유지 m ²			15~20만m ²	10~15만m ²	7~10만m ²	150			
	·공유지 m ²			20만m ² 이상	15만m ² 이상	10만m ² 이상	200			
	·사유지 m ²									
	○ 조사료 자급률	200		· 40% 이하 : 50 · 40~60% : 100 · 60~80% : 150 · 80% 이상 : 200						
가축 사육환경	○ 가축사육 밀도 (두/ha)	200		점수	200	150	100	50		
				한우·젓소	3이하	4~5	6~7	8~		
				염소·유산양	30이하	30~50	50~70	70~		
				엘크사슴	6이하	8~10	12~14	14~16		
				사슴	15이하	20~25	30~35	40~		
	* 소수가축 : 선정평가단의 현장심사 등 적정두수 평가									
	○ 개발부지의 적합성	100		구분	0~8°	8~15°	15~25°	25°이상		
				경운초지	·적 정 : 100					
				불경운초지	·보 통 : 70					
				임간초지	·미 흡 : 50					
					·매우미흡 : 30					
	○ 시설설치 확충 정도	50		· 분뇨처리시설 : 50 · 용수시설,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 : 30 · 진입로 개설 등 : 10 * 여러 가지인 경우 최고점수 택일						
사업확대 의지	○ 사업계획서 (재정상태, 사업성 등 종합평가)	150		· 우수 : 150 · 보통 : 100 · 미흡 : 50						
	○ 타 사업과의 연계 추진	100		· 우수 : 100 · 보통 : 70 · 미흡 : 50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산지생태목장 지정 현장조사표

조사일자 : 20 . . .

업체명		대표자명	
지역		주요축종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지자체 평가의 적정성 확인	<input type="checkbox"/> 세부항목에 대한 득점 및 득점 근거의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부지면적 공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조사료 자급률 증빙자료 확인(생산실적 등) <input type="checkbox"/> 개발부지 적합성 확인(경사도, 환경, 기후 등) <input type="checkbox"/> 시설설치 확충정도 확인(현행 및 계획 비교) <input type="checkbox"/> 가축사육밀도 확인(기타가축 경우 현장확인 필요)	100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평가한 점수를 백분위로 환산하여 적용)					
	소계(A)	100					
사업계획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사업계획서의 구체성 및 적정성, 실현가능성, 추진일정, 사업점검 및 사후관리방안, 추진 인력 구성, 기대효과 등 종합검토	40	32	24	16	8	
농가 운영사항	<input type="checkbox"/> 재무상태, 사업수행 의지, 이해도, 준비상황, 사업 여건, 사업실적 및 업체운영 체계 등	20	16	12	8	4	
개별 평가항목	<input type="checkbox"/> (법적적합성) 축산법, 환경관련법, 초지법, 낙농진흥법, 사료관리법 등 관련 법규와의 적합성 <input type="checkbox"/> (합목적성) 사업내용의 목적달성 가능정도 <input type="checkbox"/>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생산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동물복지 사육환경 조성도 <input type="checkbox"/> 분뇨 등 자연순환 처리계획 <input type="checkbox"/> 방역위생관리 적합도	40	32	24	16	8	
	<input type="checkbox"/> (사업수행) 사업규모 대비 사업비의 적정성, 축산환경 개선노력, 사육두수의 적정성, 체험·관광 등을 연계한 6차산업화 가능성 등 <input type="checkbox"/> (지속가능성) 사업 연속성, 주변으로 확대가능성, 타사업과 연계 추진도 등						
	소계(B)	100					
평가자의견							
최종점수	(A+B)/2	100					

조사자 : 소속 _____ 직 _____ 성명 _____ (서명)

산지생태목장 지정서(안)

농림축산식품부 제○○호

산지생태목장 지정서

농장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 농장을 산지초지를 이용한 방목사육과
친환경 및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산지생태
목장으로 지정합니다.

(유효기간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2017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년 산지생태목장 지원사업 계획 및 실적

구분	사업량	계 획						실 적						
		사업비(천원)						사업비(천원)						
		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소계				보조	용자	소계				
①초지조성(ha) -신규조성 -기성보완														
②초지조성부담금 -내역														
③컨설팅 -내역														
④기계·장비 (대/트랙터 기준) -경영체, 생산단체 등 -농업인														
⑤기반시설 -용수개발(공) -전기시설(km) -진입로개설(km) -목로개설(km) -부지정리(ha) -울타리설치(km)														
합 계														

산지생태목장 지원사업 관리카드

1. 대표명												
2. 설립연도 (지정연도)												
3. 구성인원												
4. 소재지												
5.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6. 기계장비 지원실적												
가. 사업비(천원)												
		구분	'14	'15	'16	'17	'18	계				
추발 기금	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										
나. 사업량(대)												
		구분	트랙터		예취기	집초기	결속기	피복기	적재기	트레일러	기타	계
			마력	수량								
		'14										
		'15										
		'16										
		'17										
		'18										
		계										
7. 초지(임간방목) 재배면적(ha)												
		구분	'14	'15	'16	'17	'18	계				
		계										

산지생태목장 운영 지도·점검

구 분	점검내용	조치결과
○ 분뇨처리시설	○ 분뇨처리 적정관리 여부 등	
○ 방역·질병관리	○ 차단방역, 피해방지 등	
○ HACCP	○ 위해요소 사전관리 등	
○ 환경보전 등	○ 가축 등에 의한 환경훼손 등 ○ 유기사료, 무항생제 축산 추진	
○ 사육환경 및 관리	○ 밀식, 방목 등 환경여건	
○ 기타	○ 운영상 보완·추가할 내용 등	

세부사업명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 조사료용 종자 구입 지원 -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 가공·유통시설 지원 -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예산 (백만원)	80,435			
사업목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사업 주요내용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을 위한 기계장비구입 지원사업								
국고보조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지원자격 및 요건	○ 산지생태목장으로서 아래와 같이 자격 및 요건을 적용 - 산지생태축산농가 : 축산업등록농가 - 농업경영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등 ○ 기존의 산지생태축산농가(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는 우선 지원								
지원한도	○ 호당 150,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방목시 필요한 기계·장비는 지자체 장이 판단하여 추가지원 가능 *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								
재원구성 (%)	국고	1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속				
	합 계	119,608	104,263	97,093	계속				
	보 조	81,326	81,839	80,435	계속				
	용 자	38,282	22,424	16,658	계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최종범		044-201-2353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17년도 산지생태목장조성사업 시행지침								

<공통>

※ 아래 내용은 이하 세부사업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동일하게 적용된다.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 농업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사일리지제조비, 장거리유통비에 한함)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표2>의 생산표시제 스티커를 포장단위별로 부착하여야 한다.(자가소비용은 제외한다)

3. 지원조건

내역사업명		기금보조	지방비	기금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30	60	-	10	-
	종자·볍짚 처리비	30	-	-	70	-
	초지조성 (보완)	50	-	50	-	연리2%(3년거치 7년상환)
	경영체 기계·장비	10	30	30	30	연리2%(2년거치 3년상환)
○ 기계·장비	농가	-	-	80	20	연리2%(2년거치 3년상환)
○ 가공유통 및 품질 관리	가공·유통시설	30	30	-	40	-
	조사료 품질관리	50	50	-	-	-

내역사업명		기금보조	지방비	기금용자	자부담	용자조건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	-	-	100	-	연리2%(2년거치 일시상환)
◦ 조사료 공급 활성화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30~40	-	-	60~70	-
	교육·홍보	100	-	-	-	-
◦ 전문단지 조성	사일리지제조	50	40	-	10	
	종자구입	40	-	-	60	
	기계·장비	20	30	30	20	연리2%(2년거치 3년상환)
	퇴·액비	40	60	-	-	
	입모중과중	30	30	-	40	

* 지방비(시·도비, 시·군비) 분담 비율은 1:1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비는 10~50% 범위 내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

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 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헤일리지 또는 건초로 제조하는 자
 - * 사료작물(forage crop) : 옥수수, 보리, 호밀, 귀리,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아나라이그라스, 총채벼 등(목초 포함)
 - * 사일리지(silage) : 사료작물을 비롯한 각종 유기물재료를 혐기적 상태에서 젖산 발효시킨 다즙성 발효사료
 - * 헤일리지(haylage) : 사료작물을 비롯한 각종 유기물재료를 혐기적 상태에서 젖산 발효시켜 수분 45%이하인 조사료 저장형태
 - * 건초(hay) : 사료작물의 수분함량이 15~20%이하가 되도록 물리적으로 건조시킨 조사료의 저장형태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은 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 계약 체결 (자가소비목적으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자체생산계획으로 같음)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계획서(농림축산식품자율사업신청서 활용)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고 사일리지제조비 지원기준 중 자부담 10%의 집행내역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전까지 제출

-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아 생산한 작물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경우 사일리지제조비 집행 제한
- 농업경영체의 경우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일 경우도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및 건조 사후관리 비용, 보온덮개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비닐 또는 장비 등을 이용, 사일리지 등을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단거리(100km 미만)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수확 후 사일로 및 톤백 보관분 포함)

5. 지원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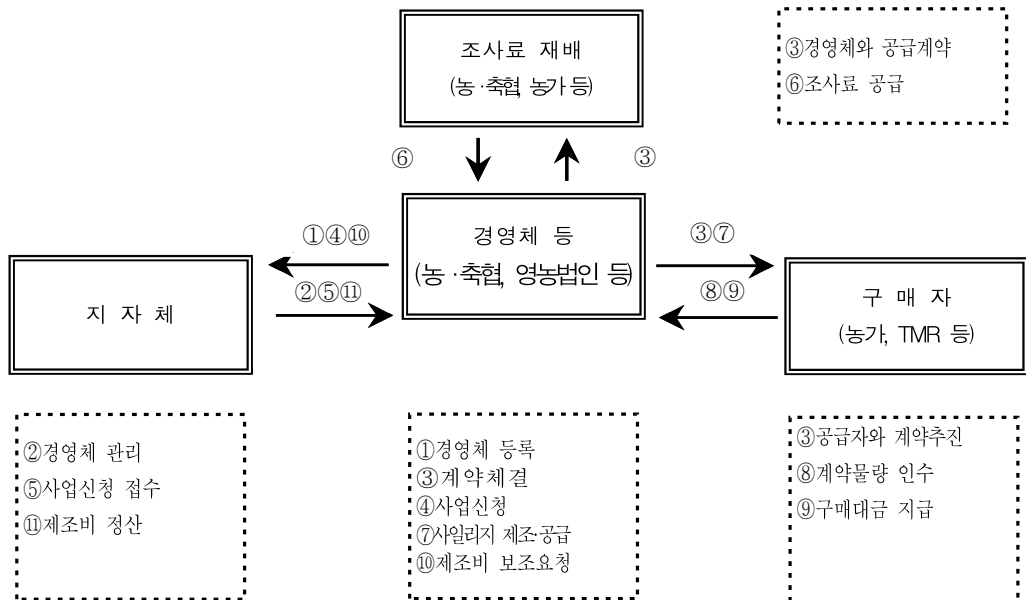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지급방법

- 지원단가 : 6만원/톤(18톤/ha)
- 지급방법 : 지급방법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참여 시·군은 세부실시요령에 의거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단, 자가소비용은 제외)
 - 등급판정을 위해서는 1일 제조량의 2%(최소 5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중량계급 병행)하여 관할 품질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품질등급에 따른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사일리지제조비 차등 지원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재배면적(사료작물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 야생풀 등)에 따라 지원기준의 50%이내에서 사일리지 등 제조 전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제조 후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정산 가능
 - * 예시) A 경영체가 10ha 사료작물 재배시 먼저 지원단가의 50%(540만원)를 제조 전 지원하고 품질검사 및 등급(A~E) 확정 후 전체 비용에서 선급금 제외금액 정산
 - 이 경우 시·군에서는 4월말까지 지번별 재배면적, 작물종류, 작황 등 재배면적을 확인(GPS탑재 기계장비 등 활용 확인 가능)한 이후 제조비 지원 가능
 - 자가소비용은 품질검사 및 등급제에서 제외하며, 기존 중량계급방식으로 지원
 - * 표본계급시 공인기관의 영점 등 검증을 필한 이동식 계급장비를 이용, 현장에서 계급 가능

- * 트렌치사일리지 계근 : 밀면적과 높이를 확인하고, <별표1> 트렌치사일리지 중량표에 따라 중량 산출
- 자부담 10% 집행내역은 사일리지제조비 지급 전까지 제출하며, 등급별 지원단가 및 추진절차 등은 별도 세부추진요령으로 통보
- * 18톤/ha는 예산편성기준이며, 시·군 예산범위내에서 실제 생산량에 따라 지원 가능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운영방법 예시】



○ 경영체 운영방법

- 재배농지 소재 시·군이 지방비 확보 및 경영체 선정 원칙
 - * 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이외에 타 시·군 소재의 경영체에 대해서는 재배농지 소재 시·군이 사일리지제조비 지원(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 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이외에 소재하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경영체 소재 시·군이 사일리지제조비 지원 의사가 있을 경우 당해 시군에서 지원 가능
- 경영체는 사료작물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 등 농업인과 생산·공급 계약
- 경영체는 사일리지 제조·운송 등의 작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 * 지자체는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해 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여 경영체에 공급

②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공급 또는 구매하는 자 및 국내산 조사료를 이용하는 섬유질 배합사료가공장(TMR 및 TMF, 이하 'TMR업체'라 한다)

2. 지원자격 및 요건

- 품질 C등급 이상(품질 C등급 이상은 동계사료작물에 한함) 국내산 조사료(짚류 제외)를 50km 이상의 거리에 있는 타 지역으로 유통(다만, 사료작물 주 생산지간 유통은 제외)하고자 하는 자는 조사료 공급·구매 계획과 실적을 농협경제지주, 축산단체(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조사료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에 한함. '유통비 지원사업'에서 이하 같다) 및 관할 시·군에 제출
- * 농업인은 한우·젓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등록농가, TMR은 농·축·낙협 TMR 및 축산단체(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조사료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TMR 또는 시·도에 등록된 업체에 한함

3. 지원대상

- 장거리 운송비, 생산구축비, 유통촉진비

4. 지원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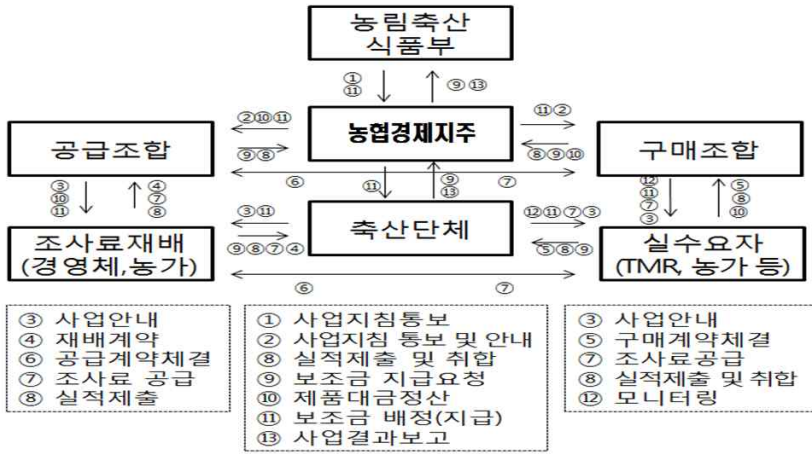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40%, 자부담 60%~7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분	대상	지원조건	지원기준
장거리운송비	단체, 경영체 등	타 시·군 50km 이상 유통	50km~100km미만 실운송비의 30% 100km이상 실운송 비의 40% (30원/kg 한도)
생산구축비	단체, 경영체 등	연간 1천톤 이상 타 시·군으로 100km 이상 유통	5원/kg
유통촉진비	TMR 업체	연간 5백톤 이상 구매 * 신규시설 지원받은 TMR은 제외	10원/kg

- * 유통되는 조사료에는 <별표2>의 생산실명을 표기하고 미표기 제품은 보조 제외
- * 지원단가 및 추진절차 등은 세부추진요령을 참고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운영방법 예시】



○ 사업대상

- 생산자 : 지역 농·축·낙협, 경영체, 농가 등
- 수요자 : 지역 농·축·낙협, TMR, 경영체, 축산농가 등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3. 지원대상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제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 상세내용은 <별표3> 참조
- 농업인에 한해 농가용 조사료 저장용 사일로 및 조사료 배합기 지원 가능
 - 사일로 유형 : 철근콘크리트 트렌치, FRP 사일로 등
 - 사일로 용량(1기당) : 50톤(78m³)기준으로 하되 농가여건에 따라 조정 설치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

5. 지원형태

- 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 : 축산발전기금 보조 10%, 지방비 30%, 융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30%
 - *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지자체 포함)
 - * 시·군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위임받아 공급업체에 지급 가능(서식 10)
- 농업인 : 축산발전기금 융자 8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20%
 - *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농업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전문단지 : 축산발전기금 보조 20%, 지방비 30, 융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20%
 - * 융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1개 선택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조지원
 - (경영체) 150백만원(재배면적 30ha당 1set 기준이며, 10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옥수수, 총채벌 등 하계 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지원한도 300백만원(재배면적 30ha당 1set 기준이며, 10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예시) 사업대상자 확보면적이 20ha일 경우 30ha당 사업비를 기준으로 확보비율 만큼 사업비를 조정(100백만원)하여 지원금 산정
 - 경영체 평가 결과 우수 농업법인·생산자단체에 1.5억원 추가 지원, 지자체 참여시 3억원, 조사료 생산 거점 농·축협·낙협에서 50ha이상을 직접재배(작업)하는 경우 3억원 이내 지원
 - 지원 받은지 5년이상 경과(소유자 변경 없이, 기존 재배면적이 유지된 경우에 한함)된 부속장비(부속작업기, 결속기(베일러) 등)의 경우 추가면적 확보 없이 교체 및 추가 지원 가능
 - 지원 받은지 8년이상 경과(소유자 변경 없이, 기존 재배면적이 유지된 경우에 한함)된 트랙터의 경우 추가면적 확보 없이 교체 및 추가 지원 가능
 - 기계장비를 기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영체가 이동식계근장비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가능
 - 트랙터는 기본적인 곤포장비와 반전기(<별표3> 참조)를 구비한 경우에만 지원

- 용자지원 : 기 용자지원분(농업종합자금 및 축산정책자금)을 포함한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 포함) : 5억원 이내
 - 경영체 : 자기자본의 200% 이내
 - 생산자단체 : 자기자본의 400% 이내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 대상자 선정에 따른 기계·장비 구입시 농협경제지주 및 시중 은행 본점에 사전 확인하여 이중으로 지원(보조·용자)되지 않도록 조치
 - 시·도(시·군·구)는 기계·장비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시 농협 등의 용자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집행 여부를 결정하고, 농협경제지주는 일선 지역조합에서 기계·장비 보조내역 및 기대번호 등을 확인한 후 용자 집행 여부 결정
- 기계·장비 공급자는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기관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를 발급받아 기계·장비와 함께 공급
 - 용자지원사업은 농업종합자금사업의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별표2>에 등재된 용자지원 한도액 범위내 실거래 가격 준용
 - 기계·장비는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의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의 지원을 권장하며, 사업 추진상 정부지원대상이 아닌 일부 대형 농기계가 필요한 경우 지원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지원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담 처리)
 - 기계·장비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안전관리)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정 등을 받아야 하되, 검정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안전장치 부착 확인
- 보증기관은 지원대상 기계·장비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체계를 구축하고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12월)
 - 보증기관은 우수한 기계·장비 공급, 효율적인 사후관리, 품질향상 등을 위해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 관리대장”을 상시 비치하여야 함
 - * 기계·장비의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중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시행지침”을 준용(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 참조)
- 제조·수입업자는 지원 기계·장비의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부착(<별표 4>, <별표5> 참조)
- 보증기관은 조사료용 기계·장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별도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연 1회 이상 관리실태를 조사
 - 위반사항 등 발견시 조치결과 등을 농식품부에 보고

④ 조사료용 종자 구입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적용하고,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종자를 파종하고자 하는 자

3. 지원대상

- 옥수수, 보리, 호밀(호맥), 귀리(연맥),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아안 라이그라스, 총채벌레, 사료용 콩 등 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자부담 70%
- * 자부담분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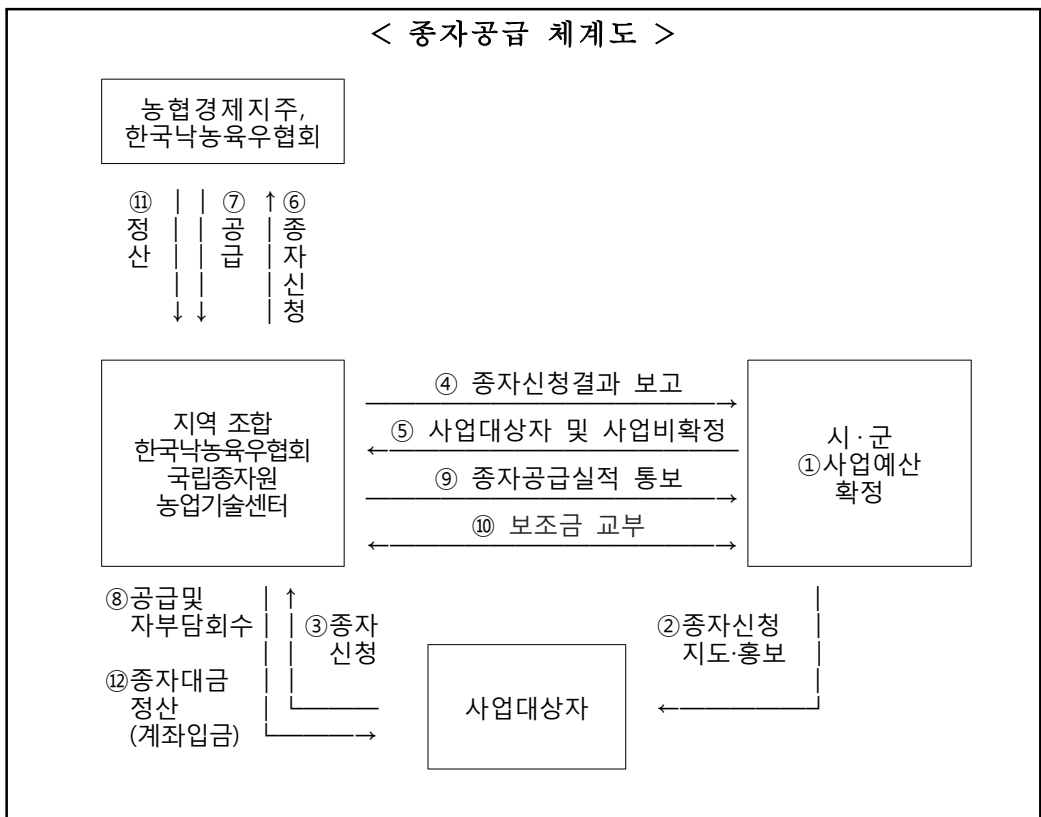
- 보리 종자구입비 지원은 보증받은 전용품종에 국한
- 농가 자가생산 종자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 적응성 인증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농업기술센터 (국내 생산 종자분), 지역 농·축협(농협경제지주 계통 구매분) 또는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 (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농가의 종자신청이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이중 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확인
- 다른 사업에서 종자를 지원받는 경우 종자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종자공급 절차

- | | |
|------|---|
| 종자신청 | ·사업대상자가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 |
|------|---|
- | | |
|------|---|
| 종자공급 | ·국립종자원, 지역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가 사업대상자에게 공급 |
|------|---|
- | | |
|-------|--|
| 종자대지급 | ·농가자담분 :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납부
·보조분 : 시장·군수의 종자공급 완료 확인후 보조금 지급 |
|-------|--|

○ 종자대 정산시 유의사항

- <자담분> 사업대상자는 종자 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납부
- <보조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농가별 종자공급실적을 확인(인수증 또는 현지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이중으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원금액이 적은 1개 기관 공급분에 대해서만 지원



⑤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
- 산지생태복원조성사업 초지조성과 별개로 운영

3. 지원대상

- 초지조성 : 초지법령에 의한 초지적지조사에 따라 초지조성 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신규로 초지조성을 하거나, 기성 초지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기반시설 : 소, 염소, 사슴 등 초식가축 사육목장 및 초지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초지조성>

-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자재대·측량수수료 등
 - 지원단가는 매년 농식품부에서 고시하는 “초지조성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별 실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조정 가능하며 실투입비만 정산
- 토지등급에 따른 초지조성방법
 - 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1-2급지로서 경운방법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불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2-3급지로서 경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애물 제거, 지표처리 등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임간초지 : 산림을 보존하면서 지표처리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토지등급별 판정기준

등 급	경사도	유효토심	자갈함량	토성
1급지	20°이하	100cm	5%이하	사양토, 양토
2급지	21 - 30	99 - 50	6 - 20	식양토, 식토
3급지	31 - 35	49 - 30	21 - 30	사토, 중점토
4급지	36 이상	29 이하	31 이상	입사질토

- 초지조성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잡석·잡목 등은 목장내의 축사, 울타리 등 부대시설용 자재로 활용하고 목장의 반출 제한(다만, 초지법에 의거 반출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기성초지 보완사업은 초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하·중급초지를 중·상급초지로 보완하고자 하거나 상급초지를 지속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기반시설>

- 용수개발, 전기시설, 진입도로·목장내 도로 개설
 - 용수개발 : 지하수 등 수자원이 부족하거나, 초지의 하고 현상이 심하여 관정 및 관수시설이 필요한 지역
 - 전기시설 : 건초 및 사료작물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동력원으로 전기시설이 필요한 목장(초지내 전기시설에 한함)
 - 진입로 개설 : 초지의 진입도로, 목장내 도로 신규개설 또는 기존도로의 확장, 보수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편입부지는 자체부담
- 초지·사료작물재배 부지 정지
 - 초지나 사료작물의 재배지를 단지화·기계화하기 위하여 구릉지의 정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시장·군수는 정지된 토지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 초지용 울타리 설치
 - 초지에 대하여 울타리를 설치하여 방목에 의한 초지의 경제성 제고
 - 대상시설
 - 초지 외곽 경계 울타리
 - 철재앵글, 콘크리트, 나무 등 지주설치 및 전기차단기, 철선 등의 시설
 - 수조 및 저수탱크

5. 지원형태

- 초지조성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용자 50%(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 기반시설 : 축산발전기금 용자 80%(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자부담 20%
 - * 용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1개 선택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용자금 지원기준은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
- 초지조성 지원시 사업비는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용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용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 없음

⑥ 가공·유통시설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지역의 원활한 조사료 및 농산부산물 수급을 위한 허브(hub) 역할인 유통센터 또는 TMR 가공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
- (보완지원) 기존 TMR 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시설보완 및 개보수, 기계·장비 보완 및 수리 등을 필요로 하는 자
- (운영지원) 기존 TMR 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원재료구입 등 가공시설 및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충족하고, TMR업체는 ②조사료장거리유통비 지원사업의 요건을 적용한다.

- 지원요건

<유통센터> 조사료 또는 농산부산물 생산·배출자(농업인, 경영체 등)와 공급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방법을 개별적 또는 혼합적으로 활용하여 **국내산 조사료 또는 농산부산물을 유통**

- 생산된 대형 곤포사일리지 등을 일정 규모를 가진 특정 장소에 보관 후 공급
- 생산된 국내산 조사료를 대형 저장시설(사일로)에 보관 후 공급
- 생산된 대형 곤포사일리지 등 또는 저장시설 보관 조사료를 소포장 등 형태로 제조하여 TMR 업체의 원료로 공급하거나 양축농가에 공급
 - * 단, 소포장 등 제조를 위해 지원된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섬유질 배합사료의 제조는 불가하며**, 제조 내용물은 국내산 조사료에 한함
- 생산·배출된 농산부산물을 저장시설에 보관후 공급하거나, 소포장 등으로 제조하여 TMR 업체의 원료로 공급하거나 양축농가에 공급

<TMR 가공시설>

- 신규지원 : 조사료 생산자와 공급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
 - * 조사료 소요량의 80%이상을 국내산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낙농용 TMR 사료인 경우 국내산 이용 비율을 30%이상으로 하되, 국내산 이용을 별도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 보완지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정을 받았거나, 받고자하는 업체(HACCP인증 신청 업체를 말한다)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원재료로 사용
 - * 다만, HACCP 인증(또는 인증계획)이 없는 업체가 국내산 조사료를 원재료로 사용하고자 절단기, 파쇄기 등을 추가설치 하고자 할 경우에도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공장, 사무시설, 저장·보관시설, 포장제조설비, 계근·방역시설, 특수운반차량 (농산부산물에 한함), 기계·장비 및 기타 가공·유통센터 설비·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트랙터 등 조사료 생산장비, 일반차량은 지원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공·유통센터 설비·운영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 시설 건축비 등
 - 부지 구입비는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타 가공·유통센터 설비 및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운영자금 : 축산발전기금 융자 100%(연리 2%, 2년 거치 일시상환)
 - * 융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1개 선택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신규지원은 개소당 9억원 이내(총사업비 30억원 기준)
- 기존 TMR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 보완지원은 개소당 2.7억원 이내 (총사업비 9억원 기준)
- 기존 TMR 업체 및 유통센터 운영지원은 개소당 4억원. 다만, TMR 및 유통센터 동시 운영업체는 8억원까지 지원 가능
 -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대출가능 등을 검토하여 융자 실행이 가능할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7.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세부 추진요령 참고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지정이후 5년이상 조사료재배 가능 지역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적용하고, 지정된 이후 5년이상 조사료 생산(조사료용 종자 생산 포함)이 가능한 지역
- 지원요건
 - (광역단지) 동일 시·군내에서 조사료 재배면적(동계, 하계 작물을 별개로 하여 산정)을 400ha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30ha이상으로 확보한 지역
 - * 작업구역이란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가 구역내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하는 거리가 1km 이내로 집단화된 구역을 말함
 - (특화단지) 동일 시·군내에서 조사료 재배면적(동계, 하계 작물을 별개로 하여 산정)을 100ha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20ha 이상으로 확보한 지역(광역단지 지정이 곤란한 들녘화단지, 간척지, 하천부지 등)
 - (중소단지) 조사료 재배면적이 협소하고 지형이 불리하여 광역 및 특화단지로 지정이 곤란하나 동일 시군내에서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10ha 이상으로 확보한 지역
 - (종자단지) 조사료 종자 생산을 위한 재배면적을 최소 10ha이상 확보한 지역(기존 또는 신규 광역단지는 연계하여 사업참여 가능)

3. 지원대상

- 사일리지제조비, 조사료용 기계·장비, 조사료용 종자, 조사료 재배용 퇴·액비, 입모중과중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등 제조를 위한 사일리지제조비, 기계·장비 구입비,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퇴·액비 구매비 등으로 사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사일리지제조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기계·장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용자 30% (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 종자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자부담 60%
- * 자부담 중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 퇴·액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지방비 60%
- 입모중 파종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 의무량

- 연속하여 5년 이상을 조사료 재배 및 채종단지로 활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별 사업의 기준 및 범위를 준용한다. 다만, 기계장비의 경우 set당 지원 한도는 300백만원(재배면적 100ha당 1set 기준이며, 기존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을 받고 사후관리기간내에 있는 필지는 지원 제외)
- 단, 옥수수, 총채벼 등 하계 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지원한도 500백만원 (재배면적 100ha당 1set 기준이며, 기존 경영체 기계장비지원을 받고 사후관리기간 내에 있는 필지는 지원 제외)

7.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세부 추진요령 참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 세부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통보(1월)
 - 품질검사 및 등급제, 조사료 장거리운송비 지원사업,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전문단지 지원사업

시·도(시·군)

- ※ 사업신청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1권에 의한 자율사업신청서를 활용하되, 내역사업별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을 제출
 - 가공·유통시설, 전문단지 등 농식품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내역사업의 경우는 각 세부실시요령에 따름.
- 시·도는 농식품부의 가내시 사업비 내에서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전년도 10월)
 - 지방비 확보, 사업신청·선정 및 계약체결기간 등 명시, 농가교육·지도 실시
- 시·군은 사업수요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10~11월)
- 시·도는 시·군의 사업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2월)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를(필요시 사업계획서 포함) 관할 시·군·구에 제출(1월말까지)
- 경영체는 농가와 사료작물재배 및 사일리지 제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시·군에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장비 지원 신청
 - 신청 및 계약기간(권장) : 9월중순~10월말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축산단체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 사업희망 생산자단체(지역농·축·낙협, 경영체) 및 축산농가는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농협경제지주, 축산단체 및 관할 시·군에 청보리 등 사료작물 곤포사일리지 등 생산 및 구매 수요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가공·유통시설》

- 농식품부는 예산범위 내에서 시·도의 평가서 및 사업계획을 검토 후 사업대상자 선정
 - TMR가공시설 지원시 국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조사료 소요량의 80%이상 (낙농용 30%이상)을 국내산으로 이용 한다”를 명시(신규지원에 한함)

시·도(시·군)

- 시·군은 사업신청서류에 대한 적합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가축사육두수 및 사료포 확보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가 적합한 수준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정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실시
- 농식품부의 시·도별 사업비 배정(1월)에 따라 시·군은 예산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후 지원대상자 확정
- 시·군은 사업자 선정결과를 시·도에 제출, 시·도는 취합하여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월말까지)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내역사업 이행 결과를 Agrix시스템(농림사업통합 정보시스템)에 입력 병행(시스템 매뉴얼 참고)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축산단체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 농협경제지주는 조사료 유통비(장거리 운송비, 생산구축비, 유통촉진비) 지원시 판매 및 구매조합의 수요·공급량을 파악하고, 사업량·운송단가·사업대상자 등 확정
- 축산단체는 회원 축산농가로부터 관외 공급·구매신고서, 조사료 공급(구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운송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사업대상자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

- 시·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후 사업대상자(보조사업자)에게 통지
- 각 시·도 책임하에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별 지원
 - 지원단가 및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추진
 - 시장·군수는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 경우 1회 보완 조치하고, 미보완시는 시·군 판단하에 축산발전기금운영요령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 및 기지원분 회수 조치
- 경영체는 재배농가와 축산농가로부터 받은 영수증 및 기계·장비 구입 영수증, 사진,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 보조금 지급 신청
- 경영체는 축산농가로부터 곤포사일리지 등 공급비용을 수령하여 재배농가에 지급(각각의 농가로부터 수량과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수령)
- 시·군은 사업추진실적을 매 반기말 기준으로 익월 중순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www.agrix.go.kr)에 입력 병행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축산단체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 농협경제지주 및 축산단체는 사업량 및 판매·운송단가 등 대상자별 구매 및 판매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 공통사항 :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비 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 또는 사업포기 등 사유로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시·군 사업비 범위 내에서는 시장·군수가 승인하여 사업 변경
 - 시·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승인하여 사업변경
 - 시·도간의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 시·군 및 시·도의 조정변경 내용은 직 상위기관에 사후 보고

- 다만,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대상자가 조사료 및 부존자원의 확보 및 이용과 관련한 주요 변경사항은 농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계획변경 가능
- 기계·장비 구입 등에 대한 자금집행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을 준용
 - 시·군은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시
 - 보증기관에서 발급한 보증서 첨부 및 보증서와 기계·장비(품명, 형식명, 기대번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 기계·장비의 제조번호를 농협경제지주 및 시중은행 본점에 통보하고, 이미 자금 지원 되었던 기계인지 여부를 검색·확인
 - 자금 지원을 신청한 기계·장비와 농가에게 공급된 기계의 일치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 협조사항

《지방자치단체》

-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추진에 따른 정부시책방향 등에 대한 교육·홍보
- 사료작물재배 대상지에는 퇴·액비를 사용토록 지도하고 액비를 살포할 경우 농업기술센터는 살포대상지 토양분석, 시비처방서 발급, 살포량 및 살포방법 지도
-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인·허가 등의 제한사항 해소에 적극 협조
 - 대규모 휴경지, 간척지, 하천부지, 벼 채종포, 미활용 공단부지 등의 확보 등
- 관내에 보급된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가능한 임대 활용하도록 조치
- 경영체가 한우회, 낙우회 등과 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알선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농협경제지주 등 생산자단체》

- 사업수행에 필요한 종자 등 기자재 구매 알선 및 지도
- 종자공급은 ⑤의 종자공급체계를 참조하여 추진

《농촌지도기관(축산과학원 등) 및 관련단체》

-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료생산이용 기술교육 및 경영지도 실시
- 사료작물의 파종·시비, 조사료 생산 및 이용, 기계·장비의 사용 방법, 곤포 사일리지 제조방법 등에 관한 기술지도 실시
- *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시 퇴·액비를 사용토록 유도

4. 자금배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농협경제지주에 사업비 배정 통보(1월)

시·도(시·군)

- 시·도는 자체 계획에 따라 시·군별 사업비 배정(1월), 시·군은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사업비 집행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축산단체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 (축산단체) 매분기별로 정산하여 농협경제지주에 자금배정 요청 및 자금집행
- (농협경제지주) 매분기말 사업종료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자금배정 요청 및 자금 집행

5. 이행점검단계(사후관리 및 제재조치)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
-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일정
 - 점검 대상 및 일정 : 시·군·구(도별 1개 이상), 연 1회이상
 - 점검반 : 농식품부, 시·도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세부사업 항목별 사업비 적정 집행여부와 사후관리실태 확인
 - 사업추진실적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시·도(시·군),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축산단체

- 사업계획에 맞게 사업추진을 하는지 수시로 현장점검(반기 1회 이상)하고,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 사료작물 파종 및 재배실적 확인
 - 사일리지제조비 지급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 및 실적 파악 보고

- 시·군에서는 사업진척도를 수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용자기관에 통보, 사업비 집행(매월 소요액을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신청)
- 사업완료시 <서식 3>또는 농식품부 별도 제공 양식에 따라 정산하고,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자부담분 포함)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함. 관련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자금회수 또는 미집행 처리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조건을 미준수하거나, 부득이한 이유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 회수 또는 사업취소 등 조치
- 보조(용자)금 부정수급, 안전성 문제에 따른 적정조치 미이행*시 동 사업에서 제외 및 보조(용자)금 회수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 사업대상자가 유통·공급한 조사료(볏짚 포함)에서 안전성문제 발생시 행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시·도에서는 연1회 이상 이중지원에 대한 점검 실시(농협경제지주 협조)
 - * 시·도(시·군·구)에서는 보조지원 받은 경영체에 대한 상호명 등 관련 정보를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은 보조지원받은 경영체가 용자를 받으려 할 경우 해당 시·도(시·군·구)에 통보하고 해당 시·도에서는 경고조치
-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사료작물용으로 재배한 보리를 곡식용으로 수확하는 경우 “축산발전기금운영요령”에 의거 사업취소, 기지원금 회수 및 차기년도 지원 중단 조치
 - 재배농가가 생산한 사료작물을 이용하기로 계약한 축산농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종 농림축산사업지원대상 및 수입조사료 쿼터배정시 제외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영체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관
- (기계·장비) 조사료 재배면적이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때보다 특별한 이유없이 감소하거나, 재배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유서 징구 및 재배목표 부여 관리
 -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서식 2. 경영체별 관리카드)을 작성·비치하고, 연 1회이상 관리실태 조사
 - * 조사료 재배의지가 없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비 회수 방안 등 강구 조치

○ (가공·유통시설) 시·도(시·군)는 연 2회 이상 연차별 국내산 조사료 및 부존 자원 확보·이용계획 등의 이행여부 및 원료사용실적 등을 지도·점검하고,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미준수할 경우 자금회수 등 조치**

- 시·도(시·군)는 가공시설(신규) 사업대상자의 국내산 조사료 의무사용비율 준수여부와 조사료유통센터 사업대상자의 수입조사료 사용여부와 제조시설을 이용 TMR 제조여부 점검하여 불이행시 자금회수 등 조치

* 시·군은 <서식 8, 9> 를 작성·비치

○ 기타 사후관리 및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비 고
	부터	까지		
○ 초 지 - 조성및보완	보조금교부일	5년	초지전용	○ 지진, 산사태 등 천재·지변 및 사업자의 질병 및 사망, 전업·폐업 등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유지·관리가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 준용 처리
○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보조금교부일	5년 (트랙터 8년)	양도	
○ 가공유통시설	보조금교부일	시설·건축물 10년 기계장비 5년	담보·양도	

○ 보 고

- 시·군은 <서식1~10>을 작성·관리하고, 농식품부에서 자료요구시 성실히 제출토록 한다.

보고 사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결산 보고 (기계·장비 등 세부사업별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계획 대비 실적) * <서식 1>, <서식 2>, <서식 3> 	사업 다음연도 1월	시·도, 농협경제지주

* ①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시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규정 등에 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정산결과를 함께 보고,

* ② 사업추진실적 보고시 본사업과 이월사업을 별도 보고

※ 사업내용, 지원조건 및 단가 등은 변경될 수 있음

1. 201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9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참여희망자는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신청기관에 제출('18.1월말까지)
 -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시·군) 축산담당과 또는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 시·군에서는 시·도를 통해 '1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8.2월말)
- 농식품부에서는 시·도별 사업수요를 기초로 201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또는 일선조합
 -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 2017년도 지원대상과 같음
 - 신청 및 선정절차 : 사업참여 희망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사업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신청기관에 제출('18.1월말까지)
 - 시·군에서는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인허가 등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 농정심의회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시·도에 보고
 - 시·군은 시·군별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8조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농가>

- 초식가축 사육규모에 따른 초지·사료포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사료생산을 규모화·단지화 할 수 있는 자
- 답리작 재배 및 옥수수사일리지 이용농가
-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 중 한우, 젓소 등 초식가축 대상자의 우선 순위자
- 농업통계조사 표본농가로서 농업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자

<영농조합법인·축협조합 등 생산자단체>

- 초지·사료포 등 조사료생산기반을 많이 확보한 생산자단체
-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사업 대상 경영체
- 조사료 생산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 공동구매·판매, 경영기록 등 사업실적과 조직운영이 좋은 생산자단체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 청보리 등 국내부존 사료자원의 확보·이용을 위한 경종농가 등과의 협약 등 구체적인 추진실적 또는 계획이 있는 생산자단체
- 조사료 소포장 제품을 생산·공급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사업 대상 업체

<공통사항>

- 재배지에 퇴·액비 사용농가(경영체 등 포함) 우선 지원
- 도축장이 있는 시·군의 사업대상자를 우대

○ 구비서류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및 사업계획서(관련서식은 시·도에 별도 시달)
- 시장·군수가 필요로 하는 서류 등

<별표1>

트렌치사일리지 중량표

(단위 : 톤)

사일리 높이 (m)	밀 면 적 (㎡)											
	6	7	8	9	12	15	18	25	50	75	100	120
1	3	3.5	4	4.5	6	7	9	12	25	37	49	99
2	6	7	8	9	12	16	18	26	52	78	104	208
3	10	12	13	16	20	25	30	42	83	125	166	332
4	14	16	18	21	27	34	41	57	114	172	229	458
5	18	21	24	27	36	45	54	75	150	224	299	598
6	22	26	30	34	45	56	67	94	187	281	374	749
7	27	32	36	41	54	68	81	113	226	339	452	904
8	32	38	43	48	64	80	96	134	268	401	535	1,070
9	37	44	50	56	75	93	112	155	311	465	621	1,242
10	43	50	57	64	86	107	128	179	358	536	715	1,430

<별표 2>

생산실명 표기[양식]

생 산 이 력 현 황(상세)			
품질등급	<i>글씨표기</i> 150포인트 이상	품 명	() - 작물명 사일리지(롤/소포장)·헤일리지·건초
		중 량	
생산자명 (연락처)		생산지역	()시·군 ()읍·면·동 ()통·리
생산일자	년 월 일	첨가제	사용, 미사용
유통(공급)업체 (연락처)		주 소	
주의사항	부주의나 들짐승에 의한 구멍 등 파손시 부패방지를 위해 밀봉하세요.		

생 산 이 력 현 황(약식)			
품질등급	글씨표기 150포인트 이상	품 명	() - 작물명 사일리지(롤/소포장)·헤일리지·건초
생산자명 (연락처)		생산연월	년 월
주의사항	부주의나 들짐승에 의한 구멍 등 파손시 부패방지를 위해 밀봉하세요.		

- * 곤포 사일리지의 초종별 1일 제조량의 최소 5%이상 생산이력현황(약식)을 부착하되, 생산자(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생산이력현황(상세) 관련 정보를 별도로 제공
- * 규격 : 가로 30cm × 세로 20cm 이상 권장
- * 표시방법 : 인쇄 또는 PE 필름 부착, 열전사, 프린팅 필름, 스탬프 방식
- * 기존 스티커로 제작한 재고물량이 있을 경우는 소진 후 상기 변경된 스티커 사용

<별표 3>

조사료용 기계·장비(예시)

작 업 명		기계·장비명(규격)	비 고
동 력 원		농용트랙터(135HP내외)	
곤포 장비	결 속 기	원형베일러(드럼폭174cm내외)	
	랩피복기	랩피복기(100cm*100cm 내외)	
	적 재 기	적재기(로더, 그레플 포함)	
부속 작업기	경운	플라우(4연)	
	파종	파종기(12조), 진압기	
	시비	퇴·액비살포기(4톤), 비료·농약살포기	
	예취	모우어(2.4m) 및 컨디셔너	
		하베스트(1~3조)	
	정지	로타베이터리(80HP이상)	
	방제	동력분무기(주행형, 600ℓ)	
운반	트레일러(4톤), 로다 등		
반전 및 집초	반전기(2로터 이상), 레이크(3.0m)		
기 타		수확기, 절단기, 곤포사일리지 커터, 농가용 조사료 배합기, 농기계 및 조사료 보관창고 등	

* 본 표는 예시로서 기계·장비 및 규격은 조사료 재배규모 등에 따라 선택 가능

<별표 4>

제조번호 명판 및 형식표지판 사양

1. 대상 농업기계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을 통해 지원된 기계·장비
2. 재 질 : 테이프론 스티커
3. 주요 사양

작업기명		6cm
형식명 (규격)	○○○○○ (○○○○○)	
제조번호		
제조업체 (공급업체)	제조업체명(국명/주소) 국내 공급업체명	

4. 부착위치 및 색상 :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의 부착위치, 색상을 통일함
 - 부착위치 : 별표 5 참조
 - 색 상
 - 바탕 : 노란색, - 글자 : 검정색(견고딕체 18p 굵게)
 - * 수입농업기계는 외국의 제조업체명(국명/주소)과 국내 공급업체명을 동시에 표기

<별표 5>

조사료생산 기계·장비별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 부착위치

기종명	부착위치
트랙터	핸들지지대 중앙, 엔진룸(정면 우측)중앙
플라우	주프레임 상단
로타베이터	동력전달부(체인, 기어) 반대 측면
퇴비살포기	적재함프레임 전면
과종기	주프레임 중앙 전면
트레일러	적재함프레임 전면
모우어	주프레임 중앙 전면
하베스트	주프레임 중앙 전면
레이크	주프레임 중앙 전면
베일러	중앙프레임 우측
랩피복기	주프레임 중앙 전면
적재기(로더포함)	운전석을 기준으로 우측 뿔지지대 측면

* 이외 장비는 유사기계·장비를 준용하며 쉽게 보이는 곳에 부착

<서식 1>

2018년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계획 및 실적

	계							실						
	물 량	사업비(천원)						물 량	사업비(천원)					
		추발기금			지방비	자담	계		추발기금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용자	계					보조	용자	계			
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톤 (ha)							톤 (ha)						
② 조사료 유통비	톤							톤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 경영체, 생산자단체 등 - 농업인	(트랙터기준) 대 대							(트랙터기준) 대 대						
④ 초지조성 - 신규조성 - 기성보완	ha ha							ha ha						
⑤ 기반시설지원 - 목로개설 - 용수개발 - 전기시설 - 부지정리 - 진입로 개설	km 공 km ha km							km 공 km ha km						
⑥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	톤 (ha)							톤 (ha)						
⑦ 조사료 가공장 시설 신규지원	개소							개소						
⑧ 조사료 가공장 시설 보완지원	개소							개소						
⑨ 조사료 가공장 운영자금지원	개소							개소						
합 계														

※ 사업대상자수 계란은 중복 대상자수와 관계없이 각 사업별 총대상자수를 기재하되, 합계란은 실 대상자수만 기재(중복 대상자 제외)

※ 이월사업이 있을 경우 실적보고서를 별도 작성

<서식 2>

조사료 생산 · 유통 경영체 지원사업 관리카드

1. 법인명(대표명)												
2. 설립연도												
3. 구성인원(명)												
4. 소재지(주소)												
5.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6. 기계장비 지원실적												
가. 사업비(천원)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
	축발기금											-
	지방비											-
	자담											-
	계	-	-	-	-	-	-	-	-	-	-	-
나. 사업량(대)												
		트랙터		예취기	집초기	결속기	피복기	적재기	트레일러	기타	계	
		마력	수량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계	-	-	-	-	-	-	-	-	-	-	
7. 제조 운송비 지원실적												
가. 사업비(천원)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
	축발기금											-
	지방비											-
	계	-	-	-	-	-	-	-	-	-	-	-
나. 사료작물 생산량(톤)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
	생산량											-
다. 사료작물 재배면적(ha)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
	청보리											-
	호밀											-
	라이프스											-
	귀리											-
	기타											-
	계	-	-	-	-	-	-	-	-	-	-	-

<서식 3>

0000 사업 완료 및 정산서

(시·군 보관)

1. 작성년월일 :
2. 작성자 직·성명 :
3. 사업대상자 성명·주소 :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산자단체 등록번호)
4. 사업비 집행명세
 - 총괄표

사 업 계 획				집 행 액				비 고
계	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천원 (100%)	()	()	()	()	()	()	()	

※ 합계는 세부명세 금액의 합계와 같아야 함

◦ 세부명세(집행액 기준으로 작성)

세부시설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기 타
○○○○	계 ○○○○ ○○○○ ·						◦거래처 및 전화번호 등 필요 사항 기재 - 자재구입·인건비 지출 등 각종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등) 별도 첨부
○○○○	계 ○○○○ ○○○○						
합 계							

※ 합계는 총괄표 합계와 같아야 함

<서식 4>

'18년 조사료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장비 지원 수요조사결과

(○○ 시·도)

(단위 : ha, 기, 백만원)

시·군	제조비 지원		기계·장비 지원		계 (A+B)
	사업량(ha)	사업비(A)	사업량(기)	사업비(B)	
계					

<서식 5>

사일리지제조비 지원계획 및 실적

시군명	경영체명	재 배 면 적 (ha)										생산·구매량 (톤)			소 요 사 업 비 (천원)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보리	호밀	이탈리안 라이그 라스	기타	계	보리	호밀	이탈리안 라이그 라스	기타	계		물량	ha당 생산량	축발 기금	지방비	계	축발 기금	지방비	계		

※ 실적보고시 경영체 수는 당초 계획보고시와 같아야 함(사업추진중 사업을 포기한 경영체 포함 작성)

<서식 6>

기계·장비 지원계획 및 실적

시군명	연결체명	지 원 실 적												
		사 업 비 (천원)				사 업 량 (대)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계	트랙터		예취기	집초기	결속기	피복기	적재기	트레일러 등	계
마력	수량													
	소 계													
	소 계													
합계	개소													

<서식 7>

2018년도 사료작물 · 목초종자 공급 실적

○○ 시·도

(단위 : kg)

구 분	정 책 지 원 분				자 가 확 보 분			계 (A+B)	
	농협 경제지주	낙농 육우협회	국립 종자원	기타	소 계 (A)	자 가 채 중	자 체 구 입		소 계 (B)
◦ 전작(하계)									
- 옥수수									
- 수단그라스									
- 연 맥									
- 유 채									
- 기 타									
◦ 답리작(동계)									
- 호 밀									
- IRG									
- 청보리									
- 기 타									
합 계									

섬유질배합(가공)사료 등록업체 관리카드

1. 법인명(대표자)											
2. 설립연도											
3. 종사원(명)											
4. 소재지(주소)											
5.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6. 지원실적											
가. 사업비(천원)											
구 분	'11까지	'12	'13	'14	'15	'16	'17	'18	'19	계	
축발기금											
지 방 비											
자 담											
합 계											
나. TMR 사료 생산 실적(단위 : 톤, %)											
생산능력 : 톤/일			생산량	가동율	조사료사용량			국내산 조사료비율	비 고		
					국내산	수입산	계				
	'15	상반기									
		하반기									
		계									
	'16	상반기									
		하반기									
		계									
	'17	상반기									
		하반기									
		계									
	'18	상반기									
		하반기									
		계									
	'19	상반기									
		하반기									
		계									
	'20	상반기									
		하반기									
		계									
합 계											

※ 사업대상자 선정시부터 사후관리기간(10년) 동안 비치·관리 함.

<서식 9>

조사료유통센터 등록업체 관리카드

1. 법인명(대표자)								
2. 설립연도								
3. 종사원(명)								
4. 소재지(주소)								
5.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6. 지원실적								
가. 사업비(천원)								
구 분	'14	'15	'16	'17	'18	'19	계	
축발기금								
지 방 비								
자 담								
합 계								
나. 조사료유통센터 사업실적 (단위 : 톤, %)								
소포장조 사료생산 능력 : 톤/일			소포장		원형배일		계(A+B)	비 고
			생산량(A)	가동율	생산량(B)	가동 율		
	'14	상반기						
		하반기						
		계						
	'15	상반기						
		하반기						
		계						
	'16	상반기						
		하반기						
		계						
	'17	상반기						
		하반기						
		계						
	'18	상반기						
		하반기						
		계						
	'19	상반기						
		하반기						
		계						
합 계								

※ 소포장조사료 생산량과 원형배일 생산량이 이중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

위 임 장

금 액	일금 원정(W)			
수임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상기 금액을 2018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기계·장비) 보조금 청구 및 지급을
상기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2018년 월 일

위 임 자 경영체(업체)명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시장·○○군수 귀하

세부사업명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축산물직거래판매장설치지원			예산 (백만원)	6,000 (보조·용자 각 3,000)			
사업목적	○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소비기반 확대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 주요내용	○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등 축산물직거래판매장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협약 체결)를 구축한 도축장, 협동조합							
지원한도	○ 개소당 6억원(보조 3, 용자 3) 이내							
재원구성(%)	국고	30	지방비	-	용자	30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0,000	13,300	10,000	10,000			
	국 고	6,000	4,000	3,000	3,000			
	용 자	6,000	4,000	3,000	3,000			
	자부담	8,000	5,300	4,000	4,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축산경영과 축산관련과		조재성		044-201-2332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1.15.일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축산물직거래판매장설치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으로서 1년 이상의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조합
 - 단, 설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업성검토(별지 제3호서식)를 거쳐 확인
-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협약 체결)를 구축한 도축장,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의해 설립·인가된 조합(지역특화)에 한함)
 - * 지역조합은 신규 직거래판매장, 도축장은 직영 직거래판매장을 설치할 경우에 한함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한
 -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및 별표6의 요건을 갖추고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하여야 함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식육판매점포(점업 음식점 포함) 건축, 기존건물의 매입(대지 구입비는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외로 매입), 건물임차료(융자금에 한함)
- 냉장, 냉동 판매(진열장), 포장, 인테리어시설,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 소 부산물 추출(사골엑기스 등)시설, 기타 부대시설 및 부대비용 등

3. 지원형태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기준 : 보조 30%, 융자 30%(금리 2~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자부담 40%
 - * 변동금리 선택가능(대출시점에서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 매 6개월마다 변동됨)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 지원한도 : 개소당 6억원(보조 3, 융자 3) 이내
- 2) 지원규모

- 연 20개소(예산규모에 따름)
 - 지자체별 사육규모를 고려하여 지역별 지원 개소수 배분

3) 자금용도 세부항목별 기준

- 직거래 판매장 시설 기준
 - 식육판매 점포면적 33.0㎡(10평형) 이상
 - 식육판매 진열장·냉장숙성실·냉동실·냉장육절기, 소 부산물 추출(사골 엑기스 등)시설 설치
 - 기타 시설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별표 10]의 “7.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에서 정하는 시설
 - 겸업 음식점의 경우 면적은 132.2㎡(40평형)이상(식육판매장소 포함)으로 하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의한 시설기준을 준수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지자체)

시·도, 시·군·구

- 사업광고 및 홍보 추진

사업대상자

- 사업 희망자는 직거래판매장 설치 예정장소 및 주소지 시·군·구에 신청 ('17.11.15까지)

* 지원 희망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부지매입·건물 매입·건물임차 관련 계획서, 판매장 위치, 공사기간, 운영주체, 운영방법, 용도별 자금소요액 등 명시)

* 사업자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 등),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구

- 사업대상자의 사업내용을 확인(현지실사보고서) 후 1차로 선정하고, 시·도에 제출('17.11월말)
 - 관련 증빙서류는 시·군·구에서 보관(농림축산식품부에 사본 제출)

시·도

- 시·군·구의 신청서류를 심의 후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표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신청('17.12.15까지)
 - 검토 및 추천을 위한 실사 시 시·군·구와 협조 추진
 - * 우선순위 : 법인 및 조합 등의 사육 및 출하규모 > 법인 경영실적 및 자본규모 > 농촌 관광, 6차산업 등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또는 지역농산물 활용 여부 > HACCP 인증 및 친환경인증 여부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별 우선순위와 지역별 안배를 감안하여 대상자를 선정·통보('17.12월말)
 - 사업대상자가 사업규모보다 적을 시 사업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음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매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을 작성 발표

시·도, 시·군·구

- 사업비 검정·정산 및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한 경우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비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변경사항을 농식품부에 제출

사업대상자

- 시공업체 선정·착공, 사업완료 신고·사업비 신청
 - 사업대상자는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를 사후관리 기간 동안 보관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자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에 의거 사업비를 집행하고, 자금의 용도 및 사업기간내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실적에 따라 시·군·구에 사업비 요청
 - 사업비 요청시 또는 최종 정산시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사업 완료, 회계연도 종료 등으로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를 시·군·구에 제출
 - 보조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최종 정산 시 등기서류에 부기등기를 기재하여 제출

시·도, 시·군·구

- 보조사업의 규모가 2억원 이상(물품 및 용역구매는 5천만원이상)인 경우 지자체·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하거나 보조사업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업체 선정
- 시·군·구는 보조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을 확인 후 자금집행
 - 용자사업비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대출 실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비율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 승인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축산발전기금 운영규정」 등을 준용함

농림축산식품부

- 지자체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자금 배정 및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한도액 배정

5. 이행점검단계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준수사항
 - 「축산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준수사항
 - 음식점 겸업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의 원산지 표시제 실시
 - 직거래를 통해 유통마진을 최소화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축산물을 공급하고,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착한식당” 등 지정에 노력

시·도, 시·군·구

- 사업추진기간 중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및 지도실시
 - 사업 추진내용 점검 : 관리·점검 및 운영지도
 - 건설추진상황(부진시 사유 및 해소방안 강구) 등 정상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 사업 추진상황을 확인·지도하고, 사업 완료시 3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사업비를 정산한 후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사후관리 실시
- 사업완료 후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본 사업자가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 강구

·추진실적 보고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완료보고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담당자는 필요시 년2회 이상 지자체와 합동으로 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
 - 사업자 추진 및 지원 자금 사용의 적정성 등

6. 사후관리단계

《사후관리》

사업대상자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중요재산을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에 의거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S)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관리
-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시설·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지자체의 검토를 거쳐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처분

시·군·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기계·장비	○ 5년	시설·기계·장비 양도 등
○ 건축물	○ 10년	

- 처분제한기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내용 명시

《제재 및 처벌내용》

- 보조사업자가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지원의 제한을 받음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축산업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업명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사업비 (천 원)	합계	정부지원(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p>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p> <p>○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p> <p>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p>							

-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4.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91조 관련 별표 10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계획서

1. 현 황

시 설 규 모 (㎡)		건물(㎡)	대지(㎡)					계
	소유							
	임차							
	계							
사 육 현 황 (마리)		한우	육우					계
	소유							
	임차							
	계							
시 설 현 황	공동	판매시설	정육식당	운반시설	주차장	기 타		
	시설	㎡	㎡		㎡			
기 타 사 항	* 사업예정지 :							

2. 사업계획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모 (㎡)	사 업 비					지방비	자담
		합계	정부지원(축산발전기금)			계		
			계	보조	융자			
계								
건 물								
판매시설								
정육식당								
기타시설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판매시설				
정육식당				
기타시설				

* “ ← → ”로 표시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등· 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천원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사업성검토서

1.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참여농가수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축산물직거래 활성화지원	사업비 (백만원)				
	사업규모	(㎡)	합계	정부지원(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담
	사업예정지			계	보조		

2. 사업검토

구분		확인	검토의견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사업능력	○운영능력 적정여부		
	○사육 규모		
	○사육 농가수		
	○년간 출하규모		
운영여건	○사업예정지 점용허가 또는 소유 여부		
운영방안	○유통마진 최소화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 의지		
기타	○사업수행 의지 등		

* 도축장 및 협동조합은 MOU 체결한 생산자단체의 사육·출하규모, 농가수 확인

3. 종합의견

○

년 월 일

세부사업명	가축분뇨처리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지원	예산 (백만원)	1,560					
사업목적	○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우량비료 생산 기반 구축							
사업 주요내용	○ 퇴비 생산 시설 개보수 및 관리장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4조(농어업 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 계화·시설현대화 촉진) 및 제38조(친환경농어업 등의 촉진)							
지원자격 및 요건	○ 정부지원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 광역친환경단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및 축산분뇨처리 등 관련 사업을 최근 3년내 지원받은 업체 배제							
지원한도	○ 개소당 지원한도 : 300백만원/개소							
재원구성 (%)	국고	20	지방비	20	용자	30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8,400	8,400	7,800	7,800			
	국 고	1,680	1,680	1,560	1,560			
	용 자	2,520	2,520	2,340	2,340			
	지방비	1,680	1,680	1,560	1,560			
자부담	2,520	2,520	2,340	2,34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안치홍 박유천		010-2373-0623 010-6796-0628			
신청시기	2018년 1월 중			사업시행기관		시군구		
관련자료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법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정부지원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 정부지원 유기질비료지원 미참여 업체도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가능

- 광역친환경단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및 축산분뇨처리 등 관련 사업을 최근 3년내 지원받은 업체 배제

* 단, 사업신청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최근 4~5년내 지원받은 업체는 후 순위로 선정 검토

3.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 지원대상

- 생산시설 : 발효시설(교반식, 통풍식), 축분전처리장(신축, 증·개축), 후숙창고(신축, 증·개축), 악취방지시설, 포장시설(자동 포장라인 및 상차로봇) 등 품질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와 관련된 시설
- 제품생산·관리장비 : 부숙도측정기, 수분측정기, 살포기, 휠로더, 페이로다, 스키로다, 굴삭기, 지게차 등 생산현장 장비로써 생산과정, 품질관리, 환경오염 저감에 사용되는 장비

* 지원 제외 : 압롤카, 압롤박스, 차량, 크레인 등 운반장비 및 이 사업의 목적과 관련 없는 시설, 장비

- 최근 3년('13~'15) 사업실적, 필요성(주위 민원 및 환경오염 저감 등),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

4. 지원형태(조건)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축산발전기금(가축분뇨처리지원 내역사업)

- 사업규모

- 사업량 및 사업비 : 26개소 이상, 7,800백만원(국비보조 1,560, 국비용자 2,340, 지방비 1,560, 자부담 2,340)

- 지원비율(%) : 국비보조 20%, 국비용자 3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용자조건 :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농·축협 연리 2.0%(3년 거치 3년 상환), 민간(개인)업체 연리 3.0%(3년 거치 3년 상환)
 - * 예산 여건에 따라 국비 용자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지원한도 : 300백만원/개소

구분	국비보조	국비용자	지방비	자부담
300백만원 (100%)	60 (20)	90 (30)	60 (20)	90 (30)

* 정부지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미참여업체 지원한도 100백만원

- ① 사업대상자는 개소당 지원한도 범위내에서 필요한 개·보수시설 신청
 - 시설규모가 개소당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으로 설치 가능
 - 시설 개체 시 한도액의 100%를 지원하고 보수의 경우는 한도액의 80%이상 지원할 수 없으며, 기존시설 철거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② 사업주관기관은 개소당 한도액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 신청에 따라 사업량(개소)증가,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③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 사업비와 실제 설치비용과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사업비를 지원대상 사업비로 적용
- ④ 사업주관기관의 건축 및 토목기술직 공무원이 감독 및 공사감리 실시
 - 시설 개·보수 사업임을 감안 별도로 설계비 및 공사감리비는 사업비에 책정되어 있지 않으며, 외부 전문가 의뢰 시 비용은 사업대상자가 부담
- ⑤ 사업주관기관은 제품의 종류, 사양 등에 따라 설치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등에서 제품의 가격 및 사양 정보와 기준 등을 종합하여 사업대상자에게 제공하되 시설 및 장비는 품목별로 발효시설 3억원, 후숙시설 2억원, 약취방지시설 1억원, 포장시설 2.5억원(로봇시설 2억원)범위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달청 구매 입찰 단가 등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 초과 사용 가능
 - 품질관리를 위하여 부숙도 측정기, 수분 측정기가 없거나 내구 연한이 지난 경우 반드시 사업에 포함토록 할 것
 - 살포기, 부숙도 측정기 등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관련 사업목적, 사업량 및 세부사업내용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12월)
 - *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사업 수요 업체수, 소재 업체 수 등을 감안하여 정부 예산에 대하여 시도별 가내시

시·도(시·군)

- 시·도(시·군)에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사업신청 공고(12월 중순)
 - 주요 신청내용 : 목적, 신청기간, 대상자 자격,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
- 시·군은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희망자를 취합하여 1월 중순까지 시·도에 신청
- 시·도는 시·군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1월 하순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 시·도별로 가급적 농식품부의 가내시를 준용하되 가내시 이상 신청 가능

보조사업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사업신청서(붙임 서식 1)를 작성하여 1월 상순까지 시·군에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추천 →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 선정방식 : 예산 범위 이내일 경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시·도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되, 초과될 경우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등의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현장 등의 방법으로 최종 선정

- 선정기준 : 최근 3년('14~'17) 사업실적, 필요성, 자부담 능력 등 양질의
 퇴비생산 계획이 명확히 수립된 대상자를 선정

○ 시·도별 예산배정

- 시·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요구서를 검토·조정한 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도별 예산배정 계획을 도에 통보

시·도(시·군)

- 시·군·구에서는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정심의회를 통해
 우선 순위를 정하여 1월 중순까지 시·도에 신청
- 시·도에서는 시·군·구 추천에 따라 1월 하순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농식
 품부에 신청
 - 선정방식 : 시·도 농정심의회를 통하여 서면·현장평가 등의 방법으로 선정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추진 전략, 자부담 능력 등)
 - 농식품부 신청 :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 순위를 정해 1월 하순까지 신청

3. 세부계획수립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시·군)를 통해 제출된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 사업계획서는
 검토 후 필요시 보완 조치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붙임 서식 1)에 따라 대출신청 자료를 받아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군 농정심의회에 공개 심의를
 거쳐 확정
 - 사업주관기관은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등과 협조(현장 및 심의회 참석)
- 사업시행 중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포기서가 제출되면 시·
 군·구에서는 사업변경계획을 검토하여 시·도에 변경승인요청을 하고, 시·
 도에서는 변경 승인을 하며,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의 포기로 보조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하는 경우는 시·군·구에서 농정심의회를 거쳐 신청을 하고, 시·도에서는 농정심의회를 거쳐 확정

* 단, 연초 사업자선정 절차의 차순위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음

보조사업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자부담 우선 집행계획 등 자금조달 계획 등 포함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사업 포기서를 제출

4. 사업시행

시·도(시·군)

가. 친환경퇴비 시설·장비 등의 구입 정보 제공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구매코자 하는 시설·장비에 대한 제품특성 및 가격 비교 등을 할 수 있도록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제조업체별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와 기준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제공

나.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재)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과 농촌진흥청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받은 제품을 우선 구입토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시 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하며, 유찰시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설치업체로 하여금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사업대상 업체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 보험가입금액은 계약금액의 2% 이상, 보험기간은 최소 1년 이상

다. 착공·시공 및 감리

< 착공·시공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 또는 설치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사업을 착공토록 함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를 할 수 있음

< 공사감리 >

- 사업주관기관의 건축 및 토목기술직 공무원이 감독 및 감리
- 사업주관기관은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당해 설치업체에 대해 설치중지, 하자보수, 재설치 명령 등을 취하고, 향후 사업참여 제한
- 사업주관기관은 설치 등 사업이 완료되면 완료 검사 및 정산 실시

보조사업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 시행전 해당 시·군을 통해 신고 등의 필요한 절차 이행
- 사업대상자는 설치업체와 계약체결 시 사업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계약서 작성

5. 자금배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비 배정 : 시·도에서 매달 20일까지 보조금과 융자한도액을 신청한 예산 요구액에 한하여 다음 달에 배정

도(시·군), 대출취급기관

가. 사업자금 배정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 받아 매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도는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 배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부의 자금 형편상 그 달에 전액이 배정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미 배정액을 차기분에 포함하여 배정 요구

나.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자금 집행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집행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 정산 실시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용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은 정산서 내역이 포함된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
- 사업주관기관은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되 시험가동 후 하자가 발생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 조치토록 하고, 조치사항 미이행 시 보조금 회수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및 용자한도액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실제 대출금액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설치업체 등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설치업체 등의 통장에 대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서를 제출토록 할 것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설치업체 등의 계좌에 직접 입금 조치할 수 있음
- 보조금과 용자금을 함께 지원할 때 용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하게 하고 보조금만 지원할 수 없으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용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용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단, 용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용자금을 조속히 반납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부동산담보, 제3자 담보, 후취담보 및 농림축산업자 신용보증 제도를 적극 활용
- 사업주관기관은 9.30일 현재의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변경 및 자금배정 반납 등 필요한 조치 강구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의 사업추진실적 지도·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5월, 11월)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해당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 진척도, 사업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등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4조에 의거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등을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원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강화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자체 “관리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터	까지		
○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시설	2018	2027	○ 중앙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안 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 등
○ 제품관리 장비	2018	2022		

○ 보 고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비 고
○ 2018년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선정 결과 보고	2018.1월초	시·군(도) → 도 (농식품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 보고사항 * 붙임 서식 2, 3
○ 2018년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실적보고	2018.12.31한		
○ 2018년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완료·정산보고	2019.2.15한		

《제 재》

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가 지원자금의 상환완료기간까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장비 등을 가동하지 않거나 용도의 사용할 때 자금 회수 등 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는 등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 및 제63조의4에 따라 부당사용금액에 대한 회수조치 및 일정기간 사업 제한

7. 성과측정 단계

- 1등급이상 퇴비 생산업체비율(%)
 - 생산업체의 1등급이상 가축분퇴비 및 퇴비 비율 측정
 - 1등급이상 퇴비생산업체수/전체지원업체수×100
 - 측정시기 : 12월(조사 : 농진청)

IV / 평가 및 환류

《사업평가》

- 지원업체 평가 실시
 - 평가대상 : 사업대상업체
 - 평가기간 : 2018년 1월~12월
 - 평가내용 : 퇴비 공급계획 대비 실적, 품질 및 유통관리, 운영실태 등
 - 평가방법 : 농식품부 및 시·도의 연 2회 점검결과(40% 반영)와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평가결과(60% 반영)를 종합하여 상·중·하로 분류

《환 류》

- 평가결과 상위 20%업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퇴비 지원물량 10% 증량 배정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개선 사항을 환류

1. 201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2. 201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 : 201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 지원대상 : 생산시설, 제품생산·관리장비 등 2018년도 지침에 의함

[서식1]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생산경력	년	품질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농업법인,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업명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사업비 (천원)	계	정부지원(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조	융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p>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p> <p>○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p> <p>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1부</p>							

(주)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91조 관련 별표 5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 사업 계획서

1. 현 황

시 설 및 생 산	생산 시설	발효시설	후숙창고	약취방지시설	포장시설	
		(규격)				
		(능력)				
		(설치비) 천원				
장 비	힐로더	페이로다	부숙도 측정기	수분 측정기		
	대	대	대	대		
연간 생산능력 : 톤(가축분퇴비 톤, 일반퇴비 톤) - 주요 사용원료 및 비율 : (원료별 비율 적시)						
정 부 지 원 실 적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2017
	물량	톤				
	금액 계	천원				
	-국 고	천원				
	-지방비	천원				
	공급단가	원/포				
	등 급	특~2등급				

2. 사업계획

○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계									
시설	○○○○								
	○○○○								
	○○○○								
장비	○○○○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로 표시

○ 양질퇴비 생산계획

<첨부 2>

대출 신청 자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생산자단체등의 형태		종업원수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합계	정부지원 (촉발기금)		
	계	보조		융자		
	퇴비생 산시설 현대화	<시설 계> - - <장비 계> - - <합 계>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금 현황			융자금 현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계	예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서식2 : 엑셀]

()년도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 추진실적보고

< 대상자 선정, 사업추진실적 : 완료 및 정산 >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 자수 (개소)	사업계획		사업비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실 적(정산)									
		단 위	사업 량	국 비 보 조	국 비 용 자	지 방 비	자 담	소 계	국 비 보 조	국 비 용 자	지 방 비	자 담	계	국 비 보 조	국 비 용 자	국 비 보 조	국 비 용 자	
합계	시 설																	
	장 비																	
	합 계																	
시설																		
	소 계																	
장비																		
	소 계																	

[서식3]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완료, 연도말) 검정 및 정산서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5. 사업비 집행명세 :

○ 총괄표

사 업 명	사 업 비 집 행 액(천원)				
	합 계	국비보조	국비용자	지방비	자부담
합 계					
(시설 계)					
-					
-					
(장비 계)					
-					
-					

○ 세부명세

세부사업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천원)	금액(합계) (천원)	비 고
합 계						
(시설 계)						
-						
-						
(장비 계)						
-						
-						

축산분야

Ⅱ . 경쟁력제고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세부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지원	예산 (백만원)	3,000 (보조 500, 용자2500)					
사업목적	○ 우량 송아지 생산단지 및 사육시설을 지원하여 지역 농가에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공급토록 함으로써 품질고급화 및 송아지 생산비 절감 등 도모							
사업 주요내용	○ 축사, 축사시설 및 내부기자재 등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축산법」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 기관, 육종농가, 브랜드 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지원한도	○ 보조 10%(100백만원), 용자 50%(500백만원) ○ 개소당 1,200백만원(한도내 2년차 사업으로 추진 가능)							
재원구성(%)	국고	10	지방비	20	용자	5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5,000	5,000	5,000	5,000			
	국 고	500	500	500	500			
	지방비	1,000	1,000	1,000	1,000			
	용 자	2,500	2,500	2,500	2,500			
	자부담	1,000	1,000	1,000	1,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축산경영과 축산관련과		조재성		044-201-2332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1.30.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한우 : 한우암소검정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한우육종농가사업에 참여하는 육종농가, 브랜드 운영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육우 : 브랜드 운영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53호) 제28조(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검토) 제8항 및 제63조(지원의 제한)제1항에 따라 부당사용 등 법인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한
 -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53호)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고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하여야 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 기관, 육종농가, 브랜드 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3.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경영체)의 송아지생산비육시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 축사, 축사시설 및 내부기자재(급이·급수·소독·환기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등), 퇴비시설 및 관리자, 기반시설 조성비용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FTA기금 민간경상보조 및 국고용자 정액지원
- 조건 : 국고보조 10%, 국고용자 50%, 지방비 20%, 자부담 20%
 - 용자조건 : 연리 2.0%,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 지방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자부담 추진 가능
- '18년도 사업물량 : 5개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국고지원기준 : 보조 10%(100백만원), 융자 50%(500백만원)
- 국고지원한도 : 개소당 1,200백만원(한도내 2년차 사업으로 추진 가능)
 - *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 추진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지자체)

시·도(지자체)

- 사업 주관 시·도는 사업공고 및 홍보 추진

브랜드 운영주체, 농가조직체, 영농조합 등

- 사업희망자는 시·도에 사업 신청('17.11월말)

※ 사업자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사업내용, 견적서 등),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지자체)

- 사업주관기관(시·도)에서는 사업내용 확인(현지실사보고서) 및 심의
 - 별지의 선정기준표(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표(별지 제3-2호 서식)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17.12.12까지)
 - 관련증빙서류는 시·도지사가 보관(농림축산식품부 사본 제출)
 - 검토 및 추천을 위한 실사 시 시·군·구 또는 지역축협과 협조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선순위에 따라 시·도별 대상자를 선정·통보('17.12월말)
 - 동점자가 있을 경우 별도로 세부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매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을 작성 발표

시·도(지자체)

- 사업비 검정·정산 및 확인(시·군·구 협조 가능)
- 시·도는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한 경우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비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브랜드 운영주체, 농가조직체, 영농조합

- 시공업체 선정·착공, 사업완료 신고·사업비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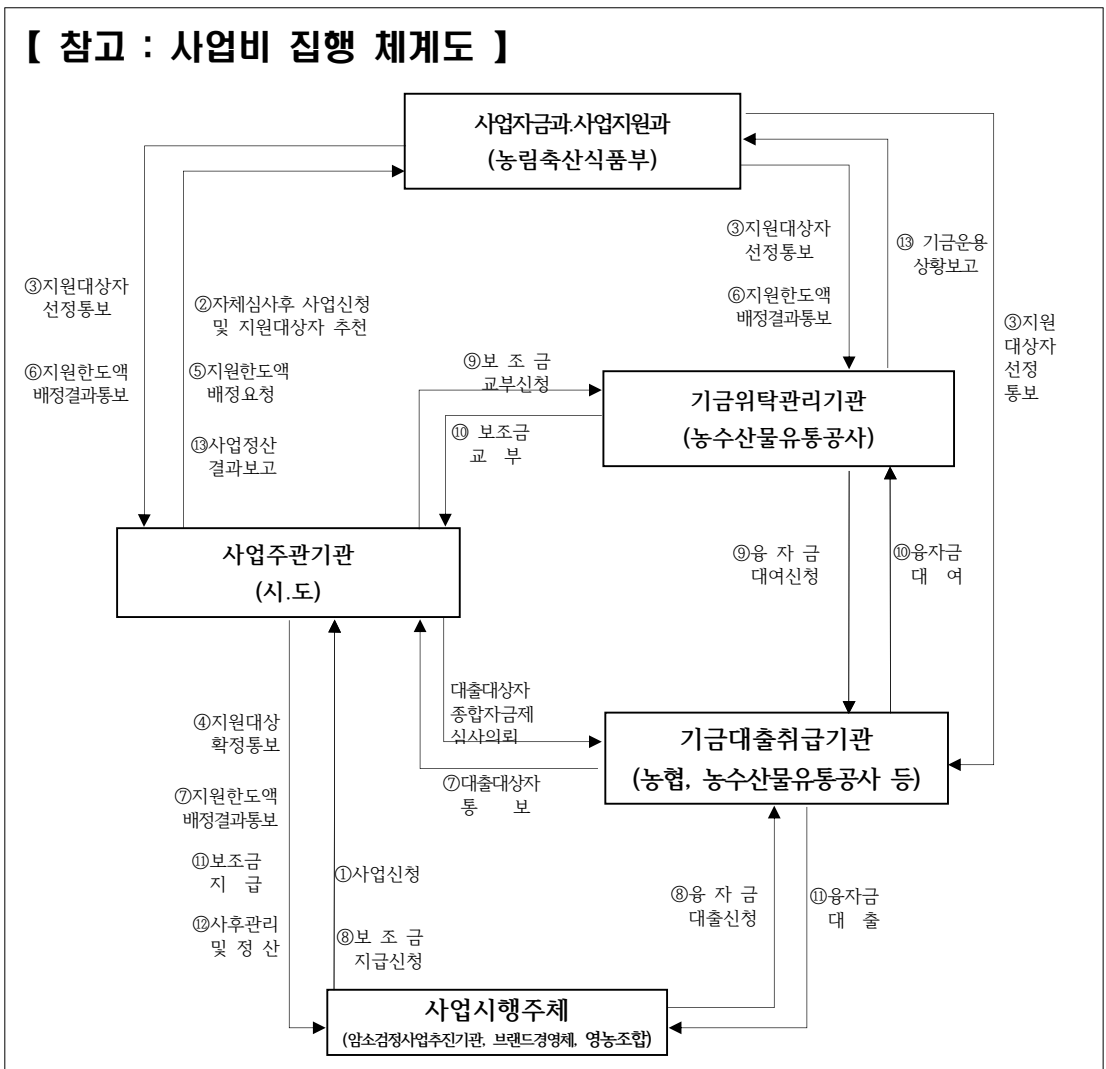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시·도(지자체) 및 농림축산식품부

- 융자사업비는 사업주관기관(시·군협조)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대출취급 기관에서 집행
 - 사업주관기관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 취급기관은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대출 실행
- 보조사업비는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시·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요청 신청 및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금배정 추진
 - 사업주관기관은 관할구역 사업추진 경영체의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자금 배정 신청을 받아, 타당성 검토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 배정 요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금지원 한도액 이내(1년차 50%)에서 자금배정
- 보조사업의 규모가 2억원 이상(물품 및 용역구매는 5천만원이상)인 경우 지자체·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하거나 보조사업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업체 선정

- 사업 완료, 회계연도 종료 등으로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를 지자체에 제출
 - 보조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최종 정산 시 등기서류에 부기등기를 기재하여 제출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축산발전기금 운영규정」 등을 준용함

【 참고 : 사업비 집행 체계도 】



5. 이행 점검 단계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추진기간 중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및 지도 실시
 - 사업추진내용점검 : 사업주관기관은 관리·점검 및 운영지도
 - 건설추진상황(부진시 사유 및 해소방안 강구) 등 정상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상황을 확인·지도하고, 사업 완료시 3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사업비를 정산하고,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사후관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년2회 이상 농협중앙회 합동으로 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
 - 사업자 추진 및 지원 자금 사용의 적정성 등

6. 사후 관리 단계

사업대상자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중요재산을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제2항에 의거 시군 등의 사업 부서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S)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 이력을 등록·관리
-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시설·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지자체의 검토를 거쳐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처분

사업관리주체(시·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업명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우량송아지생산 비육시설	○ 기계·장비 ○ 건축물	○ 5년 ○ 10년	시설·기계·장비 양도 등

- 처분제한기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내용 명시

○ 사업완료 후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본 사업자가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추진상황보고

- 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별지 제4호서식)
- 완료보고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별지 제4호서식)

《제재 및 처벌내용》

- 보조사업자가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지원의 제한을 받음

IV / 평가 및 환류

《사업평가》

- 평가주관기관 : 시·도(지자체)
- 평가기간 및 제출기한 : '19. 2월말까지
- 평가대상 : '18년도 지원 사업자
- 평가기준 : 고등 등록우 현황 및 사업 추진정도
 - 고등 등록우 두수 증가율[(당년말 등록우 두수-전년말 등록우 두수)/전년말 등록우 두수], 사업계획 대비 추진정도
 - 고등 등록우 두수 증가율 : 사업 추진정도 = 50 : 50 비율로 점수를 산정하고 사양관리는 참고사항으로 명시할 것
 - * 육우의 경우는 고등등록우 평가 부문은 제외
- 자금 운용의 적정성(타 용도 사용 등 점검)에 대하여도 점검 추진

《환 류》

- 사업성과와 관련하여 경영체 인센티브 부여 등은 '18년도 사업진행이 2년차로 진행됨에 따라 '19년부터 성과 결과에 대한 조치여부 검토
 - 고등 등록우 증가 등 사업성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경영체는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성과달성 촉진
- 자금 운용상 적절하지 못하게 진행되어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문제가 발생한 경영체에 대하여 용자금 회수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과의 검토에 따라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 사업시행체계

경영체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17.4.20) 	지원신청 → ← 지원/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서 실사·확인 (농협 지역본부와 협조) · 농림축산식품부 추천 ('17.4.30) 	추천 → ← 지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실사(농림축산식품부 자체 실시 또는 농협에 실사 요청) · 사업대상자 심의·선정 ('17.5.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서식 “추후 통보”) 	제출 → ← 통보/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검토·확인 후 제출 	제출 → ← 통보/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검토 및 현지실사 (지자체 또는 농협과 합동조사)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개소당 지원액의 50% 범위 내에서 보조·용자 동시 지원(2년차 사업추진)

2018년도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지원 사업계획서

1. 사업자

- 사업자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사업자 주소 :
- 조직체명 :
 - 주소 :

2. 사업 경영체 현황

- 법인 현황 : 설립일, 회원수, 전담직원수(직책 및 인원수)
- 회원 농가 총 사육두수 : 총 두
 - 비육 두, 번식 두, 송아지 두
- 1등급 출현율 : 출하 두, 1등급 출현 두(%)
- 연간 매출액 :
- 고등 등록우 확보 계획

(단위 : 두)

구분	'17	'18	'19	'20
고등 등록우 두수				

3.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내용	사업비																
		'17					'18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축사																		
기자재																		
계																		

* 지방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자담추진 가능

- 현재 시설현황(동수 및 축사면적 등) : 시설이 있는 경우
- 개보수 또는 신축내용 :
 - 첨부 : 평면도, 견적서 등
- 연차별 상환계획

4. 사업 추진 일정

세부내용	2018년도(1년차)												2019년도(2년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 색 채우기 또는 화살표로 표시

5. 별첨 : 기타 관련 증빙자료(사본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 번호 -)
생산자단체등 회사.기타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신 청		자 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천원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인)

(인)

2018년도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 선정기준표

(사업신청 경영체 작성용)

참여 경영체명 :

신청자명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고등 등록우 보유 두수 (60)	○2,000두이상	60		*'17.4.1일 기준 현재
	○1,500두이상 ~ 2,000두미만	50		*증빙서류 확보
	○1000두이상 ~ 1,500두미만	40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500두이상 ~ 1,000두미만	30		*종축개량협회 확인서류
	○500두미만	20		*육우는 동 항목 평가 제외
사육규모 (50)	○30,000두이상	50		
	○20,000두이상 ~ 30,000두미만	40		*'17.4.1일 기준 현재
	○10,000두이상 ~ 20,000두미만	30		*증빙서류 확보
	○5,000두이상 ~ 10,000두미만	20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5,000두미만	10		
HACCP 관련 (10)	○HACCP 지정 신청 또는 컨설팅 계약 농가 비율(비율에 따라 배점) - HACCP 지정 신청 또는 컨설팅 계약 / 회원농가 사육두수 ×100×0.1 * HACCP 또는 컨설팅 계약도 사육 두수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의 지정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확보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특점	비고
추진가능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부지가 선정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선정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선정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선정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30 20 10 0		*신청시점 기준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수상경력 (3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등)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중앙관서) 30 시 도 10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브랜드 출하두수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00두 이상 ○4,000두 이상 ~ 5,000두 미만 ○3,000두 이상 ~ 4,000두 미만 ○3,000두 미만 	20 15 10 5		*'17.4.1일 기준 현재 *증빙서류 확보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연간공급능력 고려 *축산물품질평가원 확인서류
계(200)				

주) 관련 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2018년도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 우선순위표

(시·도지사 작성용)

□ 우선순위표

연 번	경 영 체 명	농 장 소 재 지	평 가 점 수						
			고 등 등 록 우 보 유 두 수 (60)	사 육 규 모 (50)	HACCP (10)	추 진 가 능 성 (30)	수 상 (30)	브 랜 드 출 하 두 수 (20)	계 (200)
1									
2									
3									
4									
5									
계									

○ 작성자 : 부서명 , 직함 , 성명
 - 연락처 : 사무실 , Mobile

※ 작성방법 : 반드시 Excel로 작성하고, 한우와 육우를 분리하여 작성

사업 신청 경영체 시.도지사 의견서

순위	경영체명	검토항목 적정성 여부			
		인·허가에 따른 사업일정	민원여부	용자실행 가능성	지침서상 각 요건 적합여부
1					
2					
3					
4					
5					
;					
계					

주1) 지침서상 각 요건 적합여부는 사업대상자, 지원내용, 지원한도액(지원조건 비율, 축사 면적당(m²) 최대 지원한도액, 개소당 최대 총 지원한도액 등), 순위 등의 적합여부임

주2) 적합여부는 적합, 보통, 부적합 중 하나로 작성

위와 같이「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지원」사업을 위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시.도지사(인)

()분기 추진실적(완료) 보고

사업개요

- 사업자 성명(사업기관 명) :
- 주소 :

추진(완료)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 자명	사업계획	사 업 량			사 업 비										B/A		
			계획	실적	%	계 획					실 적							
						계 (A)	보 조	응 자	지 방	자 담	계 (B)	보 조	응 자	지 방	자 담			
		○ 축사시설 : ○ 퇴비사 : ○ 관리사 : ○ 전기시설 : ○ 용수시설 :																
		소 계																

※ 사업자의 실제 집행액(대출액) 기준으로 작성

기타

- 사업완료시 건축물.시설 사진, 건축물 준공허가서류, 등기서류, 준공된 사업장 평면도 등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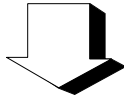
[참고 : 사업신청시 기관별 제출서류]

구 분

작성 및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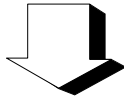
사업대상 경영체

사업대상 경영체 사업신청서, 사업대상 경영체 선정기준표 및 관련증빙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 등



시.도

사업대상 경영체 사업신청서, 사업대상 경영체 선정기준표 및 관련증빙서류, 사업대상 경영체 선정 우선순위표, 사업신청 경영체 시·도지사 의견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 등 사본제출
* 원본은 시·도지사가 보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분야

Ⅲ. 축산물안전관리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세부사업명	축산물품질관리				세목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내역사업명	- 축산물이력관리 장비지원 - 축산물이력관리 지원(민간) - 축산물이력관리 지원(자치단체)				예산 (백만원)	23,068		
사업목적	○ 소, 돼지의 이력정보를 사육부터 판매까지 기록관리하여 방역의 효율성,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사업 주요내용	○ 축산물 이력관리에 필요한 장비 등 구입							
국고보조 근거법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비용의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민간이전(경상·자본) 100% ○ 자치단체지원 5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50/100	지방비	50	용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5,615	24,118	27,300	27,300			
	국 고	20,377	19,519	23,068	23,068			
	지방비	5,238	4,599	4,232	4,232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권병운		044-201-2347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4.30.일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관련자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2017년도 축산물이력제사업 시행지침							

1. 사업대상자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비용의 지원 등), 동법 시행규칙 제12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 시·도,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중앙회, 한국중축개량협회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없음

3.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시·도,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중앙회, 한국중축개량협회)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사업운영비 등 비용 지원
 - 인건비, 운영비(귀표구입비, 이력관리비, DNA동일성검사비, 용역비, 시설장비 및 쇠고기이력시스템유지비, 출장여비 등), 예비비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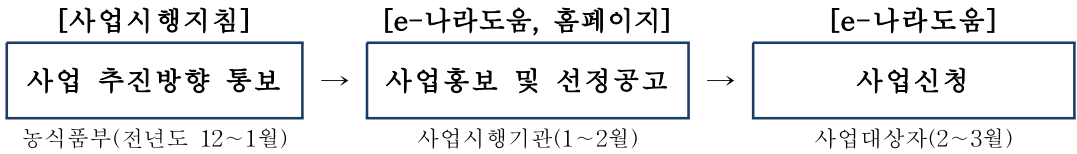
- 국내에서 사육중인 모든 소와 돼지의 사육부터 유통단계까지의 이력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대상자별 지원
 - (시·도) 소 위탁기관의 귀표부착, 소 사육단계 DNA동일성검사 등
 -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관리, DNA동일성검사 등
 - (농협중앙회) 소 귀표의 공급, 사육단계 교육 및 현장 지도·점검 등
 - (한국중축개량협회) 종돈의 등록·폐사·양도·양수, 이동 및 변경신고 접수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금의 재원) 축산발전기금, (지원형태) 자치단체경상보조 50%, 민간보조 100%
 - (사업대상자 역할)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 시행 → 자금(지출한도액) 신청 → 보조사업 수행 및 실적 보고 → 보조금 반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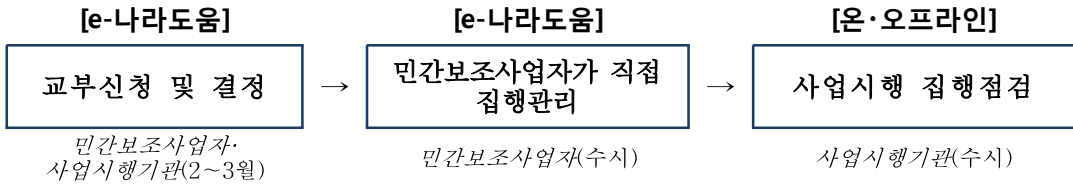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없음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부터 금년도 1월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 농식품사업이 융자사업 등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공고시스템(또는 Agrix) 활용하고 신청 접수할 수 있다.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한다.
 - ※ 사업대상자가 정보취약계층 등 e나라도움을 사용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침'을 참조

2.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비용의 지원 등)를 근거로, 민간보조사업자(시·도,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 한국중축개량협회)에 교부

* 지원 예산의 용도 : 시·도(소 위탁기관의 귀표부착, 소 사육단계 DNA동일성검사 등)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관리, 현장교육·홍보, DNA동일성검사 등) 농협중앙회(소 귀표의 공급, 사육단계 교육 및 현장 지도·점검) 한국중축개량협회(종돈 등록·폐사·양도·양수·이동 및 변경신고 접수 등)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 집행관리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을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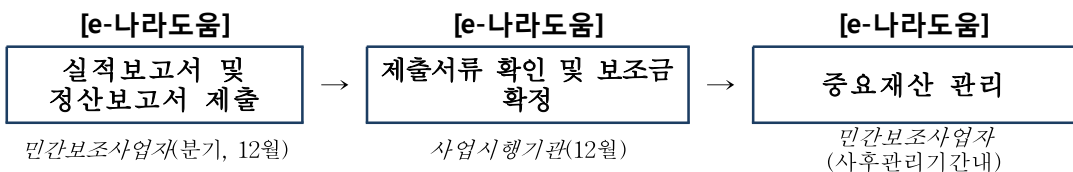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의 시기와 방법을 명시

3.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 등록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식품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의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9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 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 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1. 사업 수행 및 실적 보고

-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개월(민간) 또는 3개월(지자체) 이내 제출
 - 시·도는 귀표부착 및 DNA동일성검사 실적, 유통단계 이행주체에 대한 교육·홍보 및 지도단속 실적(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포함) 등을 제출
 - 농협중앙회는 소 사육농가 등에 대한 교육·홍보 실적, 귀표의 구매·배부, 이력관리실적 등 관리 현황 등 사업추진실적을 제출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가축식별대장 및 이력시스템 운영, 유통단계 이행주체에 대한 현장교육·홍보, DNA동일성검사 추진현황 등 사업추진실적을 제출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종돈 출생·이동·폐사신고, 귀표 구매·배부 및 이력관리실적, 교육·홍보 실적 등 사업추진실적을 제출

2. 평가 및 환류

- (사업평가) 사육, 유통단계의 이력제 이행실태를 지자체, 위탁기관별로 평가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 (환류) 축산물이력제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한 공로자 포상, 이행실태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 등

(첨부1)

축산물이력제 사업계획서 (시.도용)

1. 보조사업자명 : ○○○ 시.도

2. 사업 내용

가. 위탁기관별 귀표부착 계획량

위탁기관별	소 사육 농가 수	'15.12.1.기준이력시스템 등록두수				'16년 귀표부착 대상두수(추정치)			
		계	한우	육우	젖소	계	한우	육우	젖소

* 귀표부착 대상두수는 가임암소(15개월)의 출산율(63%)을 고려, 산출

나. '16년 귀표 소요량

위탁기관별	'15.12.1.기준 귀표재고량(전산시스템 기준)		'16년 소요 예상량	
	인쇄형	재부착용	인쇄형귀표	재부착용귀표

다. '16년 DNA동일성 검사량

검사기관별	'16년 검사 예상량			비고
	한우	육우	젖소	

3. 사업추진계획

- 소 위탁기관별 귀표부착.전산등록 및 등록정보 검증계획, 이행주체 및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 계획, 위탁기관 점검 및 이력관리 현장 지도 단속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4. 예산집행 계획

- 이미 제시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체관리비 등의 집행계획을 작성

(첨부2)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자명 :

2. 보조사업자 : 주소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나. 사업내용 :

4. 사업기간 :

5. 보조금 신청액 : 원

6. 보조사업 소요경비 내역

(단위 : 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금	자 부 담	기 타
금 액				
부담율(%)				

7. 사업계획 : 별첨

위와 같이 ○○○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 인

(첨부3)

2018년 ()분기 축산물 이력제 추진 실적

<기관명 : >

사육단계

사육농가 교육, 점검 및 위반사항 처분실적

구 분	사육농가 교육		점검 및 처분실적(건)			
	횟수	인원	점검 농가수	시정명령	과태료처분	금액(천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위탁기관 교육, 점검 및 처분내역

구 분	위탁기관				처분내역
	기관수	교육횟수	교육인원	점검횟수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 처분 내역란의 작성공간이 부족할 경우 적발실적(00건)을 간략히 표기하고 상세 내역은 아래 빈공간 또는 별첨으로 작성

소 거래 중개상과 수집상 교육, 점검 및 위반사항 처분실적

구 분	가축시장		중개상, 수집상			처분실적(건)		
	개소수	점검횟수	상인수	교육횟수	교육인원	시정명령	과태료처분	금액(천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 중개상, 수집상은 시군별로 파악하고 있는 소 브루셀라병 분기별 정기검사대상농가 등

□ 도축장 교육 및 단속 실적

구 분	도축장				처분실적(건)		
	업소수	점검업소수	교육횟수	교육인원	시정명령	과태료처분	금액(천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 유통단계 교육 및 단속실적

○ 포장처리업소 교육 및 단속실적

구 분	포장처리 업소				처분실적(건)		
	업소수	점검업소수	교육횟수	교육인원	시정명령	과태료처분	금액(천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 식육판매업소 교육 및 단속실적

구 분	식육판매업소				처분실적(건)		
	업소수	점검업소수	교육횟수	교육인원	시정명령	과태료처분	금액(천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교육 및 단속실적

구 분	축산물유통전문업소				처분실적(건)		
	업소수	점검업소수	교육횟수	교육인원	시정명령	과태료처분	금액(천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 축산물수입판매업자 교육 및 단속실적

구 분	축산물수입판매업소				처분실적(건)		
	업소수	점검업소수	교육횟수	교육인원	시정명령	과태료처분	금액(천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기타 사항

축산분야

Ⅳ. 가격안정 및 유통활성화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세부사업명	축산물수급관리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예산 (백만원)	700		
사업목적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을 유도						
사업 주요내용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및 관리 수수료 지급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지원한도	○ 농가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한도내에서 지원						
재원구성(%)	국고	100	지방비		용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468	1,850	1,850	1,850		
	국 고	1,318	700	700	700		
	지방비	575	575	575	575		
	자부담	575	575	575	57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영과 축산지원부		조재성 박철진		044-201-2332 02-2080-6553	
신청시기	정기(매년 5.31.일까지)			사업시행기관		농협경제지주	
관련자료	송아지생산안정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대상” 농가임에도 미등록한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3. 지원대상

-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한 농가의 보전금 및 사업관리 수수료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리수수료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보전금
 - 계약대상자는 계약신청기간 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사업시행기관에 계약 신청
 - 계약암소 1두당 계약자 및 지자체 부담금 각 10천원씩 납부
- 관리수수료 등(축발기금 부담)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한도내에서 지원
 - 전년도말 기준 가입암소수(통계청 가축동향)를 기준으로 보전금을 차등 지급

< 단계별 가입암소 사육두수 및 최대 보전액 >

	확대 단계	적정 단계	위험 단계	초과 단계
가입암소두수	90만마리 미만	90~100만 미만	100~110만 미만	110만 이상
최대보전액(천원)	400	300	100	0

- 안정기준가격 : 1,850천 원/마리(6~7개월령)

1. 사업신청 단계

- 계약신청 기간 : 2018. 1. 1.~2018. 5. 3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안정기준가격, 보전금 지급 기준 등 사업기본방침 확정 발표
 - 농협중앙회,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에 시달

시·군(지자체)

- 사업 주관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기관과 함께 사업공고 및 농가홍보 실시
 - * 사업시행기관은 농협(지역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한우협동조합, 한우협회)를 말함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기본방침에 따라 세부사업실시요령을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사업시행기관

- 사업공고 및 농가홍보 실시

2. 사업자 선정 단계

시·군(지자체)

-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자 부담금(10천원)과 동일한 금액을 사업시행기관에 납입(해당사업년도내)
 - * 지자체가 해당 사업년도 내에 지자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익년도부터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지자체 소속농가에 보전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 한우조합 및 한우협회지부가 사업시행기관으로 선정 요청 시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사업시행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관은 해당 지자체(시·군)의 승인 필요(지역 농·축협 제외)

사업시행기관

- 농가의 사업 참여 신청 시 계약을 체결(농가는 계약 체결시 계약자 부담금 납입)
 - 전년도 사업 참여시 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당해연도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당해연도 1.1일부터 안정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 참여 기간 : 2018.1.1(계약일)~2018.12.31(1년간)

농림축산식품부

- 매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시행지침 작성 발표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발표 일정에 따름

농협중앙회 / 사업시행기관

- 농협중앙회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사업 실시요령을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 농협중앙회와 사업시행기관은 안정사업자금계정을 설치하고 시·군별, 재원별 구분 계리
 - 농협중앙회는 부담금 관리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함
 - 지역축협은 계약자 부담금은 청약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지자체 부담금은 수납 완료 후 7일 이내에 농협중앙회에 납입
 - 지역축협의 사업시행기관은 수납된 계약자 부담금을 주간단위로 시군관할 지역축협 안정사업자금계정에 납입, 지자체부담금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직접 시군관할 지역축협 안정사업계정에 납입토록 조치
- 농협중앙회장은 매 기(2개월)별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을 통보하고, 안정사업 담당자 교육 및 사업홍보 추진

※ 평균거래가격의 산출·공고

- 농협중앙회장은 매기(2개월)가 끝난 다음달 20일까지 천원 단위로 평균거래가격을 산출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시장·군수), 농협지역본부(사업시행기관) 등에 통보
- 농·축·수산물 유통통계조사 지침에 의한 지정가축시장에서 해당 기내에 매매된 6~7개월령 송아지거래금액을 거래두수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암·수 송아지 별로 각각 산출한 후 평균하여 산출

- 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 내에 송아지가 생산된 때 농가는 사업시행기관에 생후 30일 이내에 송아지 생산을 신고해야 함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 자금 배정 등의 보전금 지원은 참여기간 내에 6~7개월령 송아지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 보다 낮을 경우 계약농가에 자금 배정 추진

사업시행기관/시·군(지자체)

-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시·군별 보전금 지급 소요액을 계산하여 시·군에 통보
- 시·군은 보전금 소요액을 점검 확인하고 사업시행기관에 통보
 - 사업시행기관이 다수일 경우 각 사업시행기관 각각에 통보

※ 보전금 소요액 산출

- 총소요액 = 총지급두수 × 두당보전금지급액
- 정부부담액 = 총 소요액 - 농가·지자체 부담금 적립액
 - * 보전금 지급 소요금액이 농가·지자체 부담금 적립금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부담
- 시·군의 보전금 지급 통지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같음

- 사업시행기관은 농협중앙회장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자금배정 요청
-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자금을 배정받은 사업시행기관은 계약농가에게 보전금을 지급하고 시장·군수에게 지급결과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군별 소요자금을 농협중앙회장에게 배정하고 시장·군수에 통보

※ 보전금 지급조건

- 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 내에 태어난 계약생산송아지(귀포부착 완료)가 만 6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기(2개월 단위)의 6~7개월령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지급

※ 보전금 지급제한

- 전쟁, 변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 시는 보전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정상 회복시 까지 지급 유보
- 지방자체단체 부담금을 당해 년도말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익년도부터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지자체 소속농가에 보전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 보전금 지급총액이 당해연도 예산액을 초과하거나 WTO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보조금 최소허용 한도액(De-minimis)이 초과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

○ 사업관리 수수료

- 사업관리 비용은 농협의 요청에 따라 별도 지급

- 사업시행기관은 계약암소 두당 1,500원, 농협중앙회는 계약암소 두당 250원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군)

○ 시장·군수는 농가의 안정사업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자금소요액의 적정성 검토

○ 반기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자금 관리현황 보고

- 시·군별 자체 점검결과 보고(계약신청기간 만료 후, 2018.11.30일 이후)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사업시행기관)

○ 사업시행기관장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자금의 기별 지급액을 매기가 끝나는 익월 15일까지 시장·군수 및 농협중앙회장에게 통보

○ 농협중앙회장은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별 보전금 배정을 농식품부에 요청하고, 송아지생산안정사업자금 관리 현황 보고(반기)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사업관리수수료 지급을 농식품부에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사업추진사항을 점검

- 계약신청기간 이후 : 계약관련 전산 데이터 정리 완료 후

- 점검 사항

- 사업추진관련 사항 : 농가 계약관리 점검

- 자금집행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 자금 관리 전반(농협중앙회 납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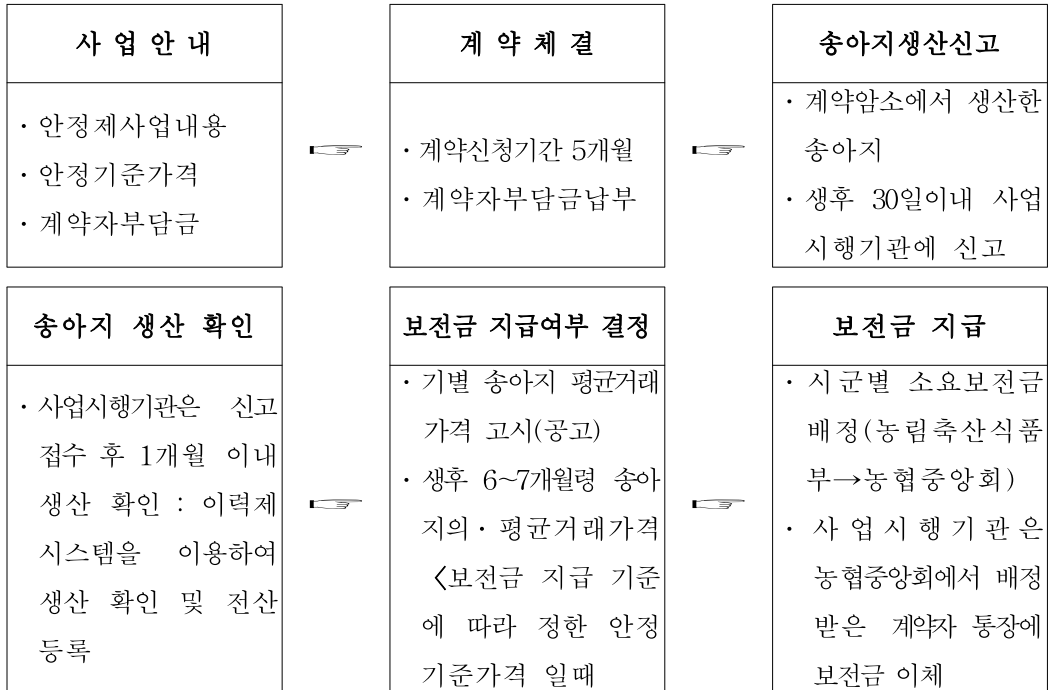
- * 송아지생산안정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하게 변경된 사항(수급 등의 여건 변화에 따른 안정 기준가격 조정 등이 있을 경우, 필요시 가축시장 가격 동향 조사를 통해 산지가격 안정 상황 점검으로 대체 가능

《제재 및 처벌내용》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사업시행기관)

- 보전금의 지급 중지 및 회수
 - 계약압소 및 계약생산 송아지의 귀표를 조작했거나 다른 것과 교체한 경우
 - 각종 조사표 및 기타 각종 신고(서)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송아지생산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았거나 포기한 경우
 - 계약생산송아지에 바코드귀표 부착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압소 또는 계약송아지에 소유권 등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 단, 계약압소의 폐사 시 수의사의 검안서 또는 귀표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체사진 등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안정사업자금의 구분관리
 - 농협중앙회는 계약자와 지자체의 부담금(기존 부담금 포함)을 총괄 관리
 - 사업시행기관은 별도계정을 설치하되(지역축협외 사업시행기관은 농협중앙회가 별도 설치), 계약자와 지자체로부터 납입된 부담금을 농협중앙회의 안정사업계정에 납입
 - 농협중앙회는 부담금 관리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함
 - 시·군별, 재원별 별도 구분계리
- 안정사업자금의 사용·운용
 - 안정사업자금은 보전금 지급용도로만 사용
 - 시장·군수의 확인 및 보전금 지급통보에 의하여 사업시행기관에서 지급
 - 보전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안정사업자금 잔액은 계속 적립
 - 농협중앙회장은 안정사업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세부지침 작성
- 동 사업에 관한 업무를 「축산법」 제51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3항에 의하여 농협중앙회에 위탁함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은 농가계약을 위한 계약서·사업관리를 위한 각종서식 및 작성요령 등 세부실시요령을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기관(시·도, 시·군, 사업시행기관)에 통보

※ 업무추진절차



세부사업명	축산물수급관리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축산물유통 및 소비촉진제고			예산 (백만원)	860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및 신뢰 확보를 통해 축산물 소비촉진 및 합리적인 소비생활 유도 ○ 도축장, 집유장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수준 향상과 사후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사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단위 조직을 갖춘 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단체 등 13개 단체에서 축산물 소비촉진, 축산 시책 관련 홍보, 교육, 조사 사업 등을 수행 ○ 전국 도축장 및 집유장 대상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사항을 소비자 단체를 통해 평가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지원자격 및 요건	○ 전국단위 회원, 지회, 지부 등을 보유한 13개 소비자단체 *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서울YWCA,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 교육중앙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한영양사협회,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단체협력사업 : 단체별 사업비 55백만원, 평균운영비 20백만원 *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2개 단체 10백만원 인센티브, 하위 2개 단체 10백만원 패널티 배정 ○ 도축장·집유장 HACCP 운용수준 평가 : 1개 소비자단체 70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801	1,981	860	860			
	국 고	1,801	1,981	860	86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위생방역본부		축산정책과 고객홍보팀 방역정책과 위생검역부		홍성현 김태성 이동식 반광훈		044-201-2329 044-410-7082 044-201-2541 044-550-5573		
신청시기	정기(매년 상반기)			사업시행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본부		
관련자료	축산물유통 및 소비촉진제고 시행지침서 참조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www.ekapepia.com)							

1. 사업대상자

- 전국단위 회원, 지회, 지부 등을 보유한 13개 소비자단체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 :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서울 YWCA,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부인회총본부
 - 기타 전국단위 3개 소비자단체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한영양사협회,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전국단위 회원, 지회, 지부 등을 보유하여 축산물 소비촉진 및 축산 시책 홍보, 교육, 조사 사업을 자체 지역단위 조직과 협력하여 수행이 가능한 소비자단체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 :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서울 YWCA,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부인회총본부
 - 기타 전국단위 3개 소비자단체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한영양사협회,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 선정우선순위
 - 전년도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성과평가 결과 우수 소비자단체(상위 2개)

3. 지원대상

- (소비자단체협력사업) 전국 소비자대상 홍보, 캠페인, 교육, 조사 사업비용
- (도축장·집유장 HACCP 운용수준 평가) HACCP 운용수준 평가 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소비자단체협력사업) 소비자교육, 홍보, 캠페인, 조사 비용 등
- (도축장·집유장 HACCP 운용수준 평가) 도축장·집유장 HACCP 운용 실무평가단 선정 및 운영, 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비용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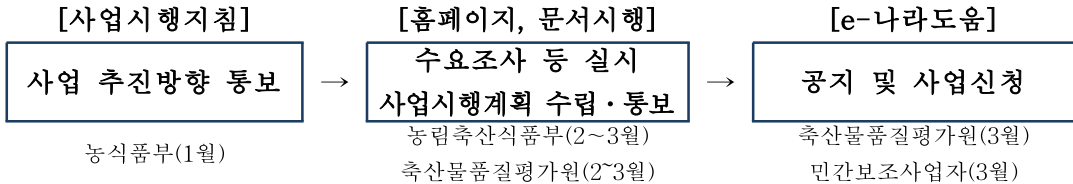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기준 : 국고보조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소비자단체협력사업) 소비자단체당 55백만원 내외(공동홍보사업 포함 14개 과제)
 - 전년도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2개 단체는 65백만원 내외, 하위 2개 단체는 45백만원 내외로 증감 조정(인센티브 및 패널티)
 - 평균운영비(사업시행기관) 20백만원 내외
- (도축장·집유장 HACCP 운용수준 평가) 1개 소비자단체 70백만원 내외

Ⅲ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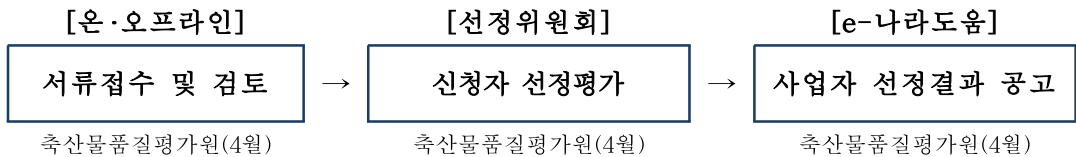
1. 사업신청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1월) 및 사업기본계획(2월) 통지
-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과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대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6명)하여 과제 주제 우선순위 선정(2~3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부 검토를 통해 과제 주제를 선정하고,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기관에 통보(3월)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13개 소비자단체에 과제 주제 등 사업시행계획을 통보하고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 추진(3월)
 -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 안내)
- 사업대상 단체(이하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서 등을 제출(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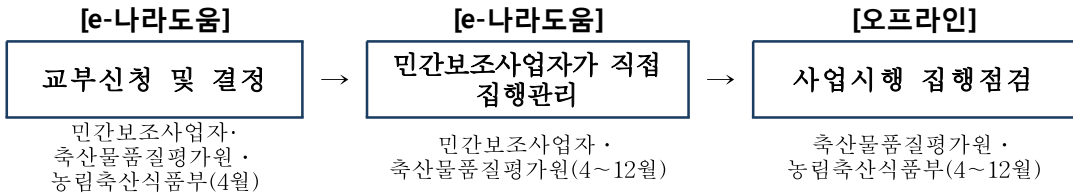
-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신청 등 작성
 -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 규정」 제35조제6항에 따른 선정제의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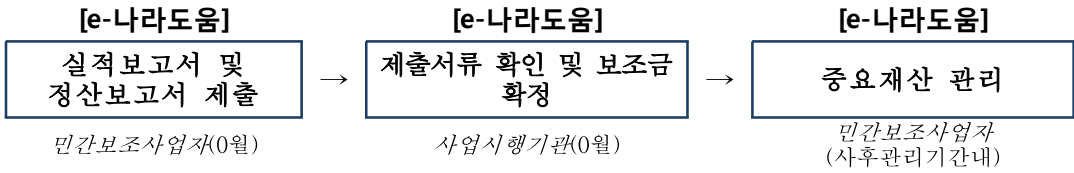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 신청 단체의 지원자격 및 요건 등 검토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정부,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학계 등 대내·외 전문가 6인으로 구성
 - 평가 내용 : 과제기획능력(10), 사업추진계획 적정성(50), 사업성과 가능성(20), 수행단체 적합성(10),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가점)
 -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총사업비 10%이상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변경제출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기관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사업시행기관은 교부조건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예탁형)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을 사업완료 전까지 2회 이상 실시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사업시행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보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 확정 및 정산완료 통보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 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그 외 사항 등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법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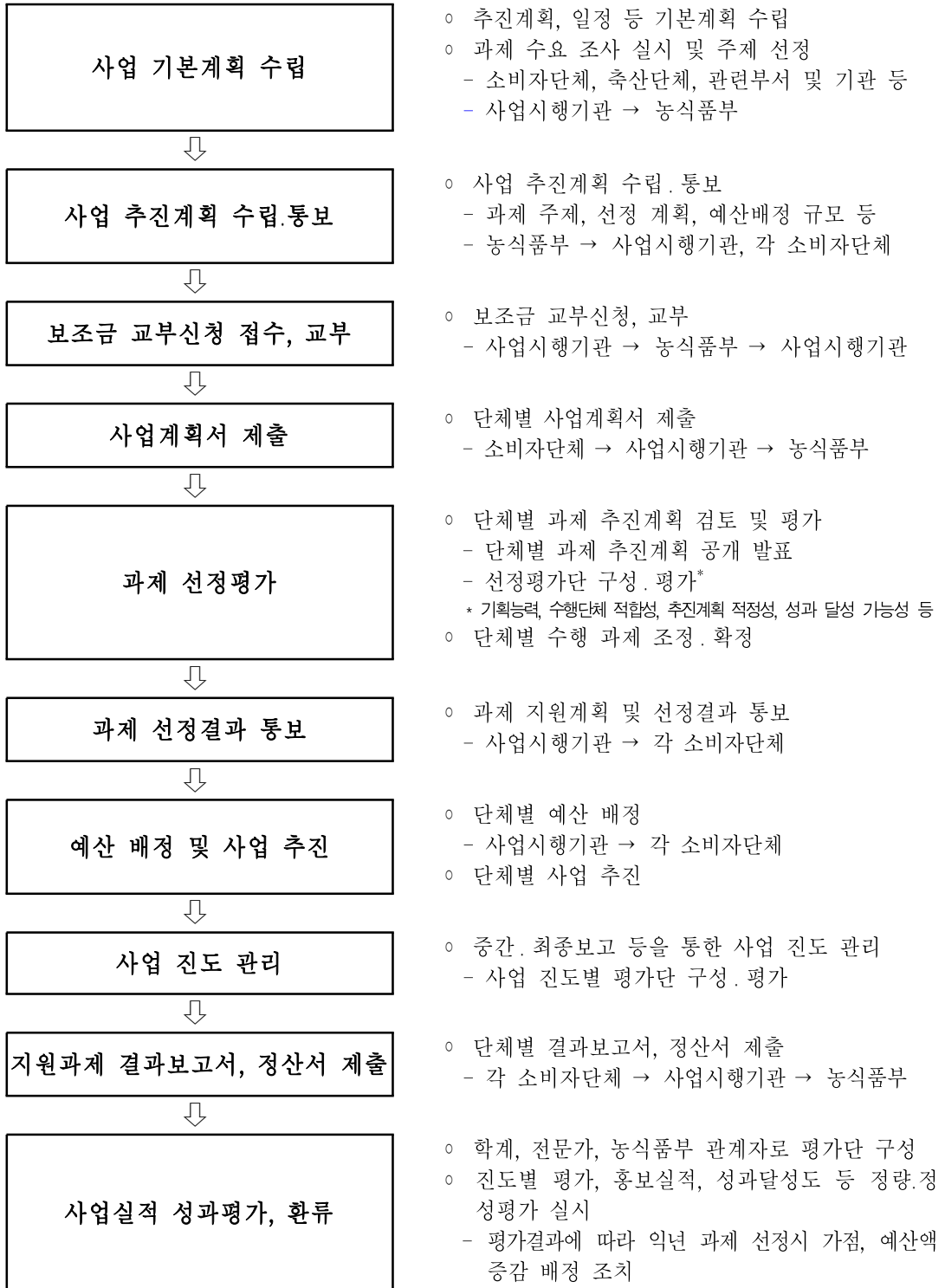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 실적,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사업 추진 결과를 사업 실적보고서로 사업시행기관으로 제출(12월)

2. 평가

- 중간 평가 : 사업 착수~3개월내 평가위원회를 구성(3인 이내)하여 현장점검 및 중간 평가 실시
 - 평가결과 보완사항 이행 등 필요시 재점검 실시(중간평가 이후 1개월 이내)
 - 평가 항목 : 사업목표의 달성도(50),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20), 사업 결과의 활용가능성(30), 홍보실적 및 운영관리(±10), 종합의견
- 성과 평가 : 사업 완료 후 평가위원회를 구성(6인 이내)하여 최종 평가(완료 보고, PT평가)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지적사항 등에 대한 보완 후 최종보고서 제출(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 평가 항목 : 사업목표의 달성도(50),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20), 사업 결과의 활용가능성(30), 홍보실적 및 운영관리(±10), 종합의견
- 만족도 조사 : 사업 참여 소비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프로그램별 실시)
 - 사업시행기관은 전문조사업체를 선정하여 사업 참여 소비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단체당 100명 이상)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 프로그램별 참여 소비자대상 시행 전·후 만족도 조사 실시(프로그램별 계획에 따른 참여 인원)
- 성과 평가 결과가 우수한 2개 단체는 차년도 사업 신청 및 과제 선정 시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10백만원 인센티브 증배정
 - 성과 평가결과 미흡한 2개 단체는 차년도 사업 신청시 10백만원 패널티 감배정

<참고>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추진절차



서식 1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공모과제 선정 평가표

과제명	
신청단체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	------	------	------

1. 평가 항목별 점수

항 목	배점	세부평가사항	가중치 (A)	평가등급 (B)*	평가점수 (A×B)
과제 기획능력 (20)	10	과제와 관련이 있는 현황 및 문제점 등 여건과 상황 파악여부	2	⑤ ④ ③ ② ①	
	10	과제의 추진 필요성과 현황 및 문제점과의 인과관계 형성도	2	⑤ ④ ③ ② ①	
사업 추진계획 적정성 (50)	30	사업추진계획의 명확성, 구체성, 창의성, 차별성	6	⑤ ④ ③ ② ①	
	20	추진 일정 및 사업비 지출계획의 적정성, 사업계획 추진상 문제 발생 여부	4	⑤ ④ ③ ② ①	
사업 성과 가능성 (20)	20	과제 수행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의 달성 가능성	4	⑤ ④ ③ ② ①	
수행단체 적합성 (10)	5	해당 단체의 조직 및 수행인력 구성의 과제추진 적합도	1	⑤ ④ ③ ② ①	
	5	해당 단체의 그 동안 수행한 사업과 추진과제와의 연계성	1	⑤ ④ ③ ② ①	
성과평가	가점10	전년도 추진과제 성과평가 결과 최상위 2개 단체			
	가점 5	전년도 추진과제 성과평가 결과 상위 2개 단체			
합계 (각 항목별 평가점수의 합계점수와 가감점의 합계점수)					

* 평가등급 (B) : 탁월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미흡 1

2. 종합 의견

※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의견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시)

서식 2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중간성과 평가표

과제명	
신청단체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	------	------	------

1. 평가 항목별 점수

항목	배점	세부평가사항	가중치 (A)	평가등급 (B)*	평가점수 (A×B)
사업목표의 달성도 (50)	30	사업계획서상 사업목표의 달성도	6	⑤ ④ ③ ② ①	
	20	최종 성과의 질적·양적 수준	4	⑤ ④ ③ ② ①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20)	10	사업 추진일정 및 예산사용 준수 여부	2	⑤ ④ ③ ② ①	
	10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정도	2	⑤ ④ ③ ② ①	
사업 결과의 활용가능성 (30)	20	최종 성과의 파급효과	4	⑤ ④ ③ ② ①	
	10	최종 성과의 활용방안	2	⑤ ④ ③ ② ①	
홍보실적 및 운영관리 (내부평가) (±20)	가점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홈페이지 활용·홍보 실적 - 교육·홍보·연구 실적* 제공(최대 20점) * 보도(TV 2점, 일간지 1점, 전문지 0.5점, 보도매체별 아님) * 책자(리플릿, 정보지(온·오프라인) 등 포함), 보고서(연구·조사, 교육자료 등 포함) 제공(건별 1점) * 당해 사업기간 내 홍보 실적에 한하여 내부평가 후 성과평가 결과에 반영 			
	감점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적 언론보도 및 사업 지침 준수 여부 - 정부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보도 * 보도내용별 -5점(최대 -10점, 보도매체별 아님) - 사업추진관련 민원 제기시(보조금 집행관리 소홀, 보고서(정산, 실적) 등 제출기한 미준수 등) * 사안별 -5점(최대 -10점) 			
합계 (각 항목별 평가점수와 가감점의 합계점수)					

* 평가등급 (B) : 탁월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미흡 1

2. 종합 의견

※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의견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시)

서식 3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현장점검표

단체명	
-----	--

점검사항	점검결과			
	양호	미흡	불량	기타의견
1. 사업목적 외 사용 여부				
2. 담당자의 적극성				
3. 사업관련 서류 적정성 (세부 사업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4. 자료관리 적정성	회계서류			
	전용계좌 관리			
5. 대외 홍보				
6. 사업 진행율				
7. 기타 건의사항 등				

점검일		점검자	직 성명 :
			직 성명 :

관	련	사	진
---	---	---	---

서식 4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과제 신청서 서식

<서 식 1 : 사업 신청서>

○ 단체명 :

사 업 계 획 서	
과 제 명	<input type="checkbox"/> 조사 / <input type="checkbox"/> 교육·홍보]
공동수행단체	
사업 목적 (현황 및 문제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업 개요	<input type="checkbox"/> 기본방향 ○ - ○ - <input type="checkbox"/> 추진계획 ○ ○ ○
기대 효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연 락 처	<input type="checkbox"/> 대표 : (Tel :) <input type="checkbox"/> 담당 : (Tel :), (Fax :) (이메일 :)

<서 식 2 : 기관 · 단체 소개서>

기 관 · 단 체 명

설립일자	년 월 일	설립근거	관련 법규 등 기재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FAX)	
설립목적			
대표자		직원 수	명(정규 -명, 임시 -명)
임원현황	이사 - 명(상근 - 명), 감사 - 명(상근 -명)		
조직구성		기본재산 (정부출연금)	백만원 (-)
최근 2년간 활동실적	○ 기재난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기 타 증명서류	○ 필요시 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첨부서류 : 정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서 식 3 : 사업계획서>

2018년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수행계획서

2018.

단체·기관명

[제안개요]

사업명				
단체명				
제안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조식으로 작성 유도 - 간결한 작성 유도 			
성과목표	- 계량, 비계량 부문으로 나뉘서 작성 (목표치 간략 기재)			
주요내용				
담당자	직 책		성명	(인)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주소			

※ 작성요령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개조식(간단정리)으로 작성

목 차

1. 사업개요	1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1.	3
2.	4
3. 과제 현황	
1.	
4. 사업 세부 추진방안	
1.	0
2.	0
5. 추진일정	
1. 추진일정	0
6. 사업수행인력	
1. 사업수행인력	0
7. 소요예산	
1. 소요예산	0
[붙임 #1]	0
[붙임 #2]	0
[붙임 #3]	0

사업명

- 소제목 -

중고덕 15p, 글상자선 이중테두리

(본문에 문서 취지가 포함될 시 본 글상자는 생략 가능)

1. 사업개요

추진배경 및 목적

○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등에 관해 자세히 기술, (휴면명조, 16p)

○

기관(단체)명 :

사업명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사업 성과목표

○ * 기대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성과목표	* 다음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할 것
	- 교육, 캠페인, 홍보, 행사 : 총 00회, 000 명 실시, 00% 인식변화
	- 공동구매, 소비촉진 : 00% 이용 증가, 000개 판매 등
	- 연구조사, 모니터링 : 총 00회, 00개소, 000명 대상으로 실시
	* 향후 과제평가지 단체가 설정한 성과목표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 평가

추진체계와 추진방향

- * 사업추진기관의 역할과 책임, 업무의 흐름 등 기술

기대효과 * 기대되는 결과(비계량 위주)를 구체적으로 기술

-

3. 과제 현황

* 과제분야에 대한 일반적 현황 및 주위여건, 관련 정책 및 지원사업 등 기술

-

-

4. 사업 세부 추진방안

-

-

해당부서와 협업계획

- * 사업수행과정과 사업종료후 해당 부서와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계획 제시 (구체적인 정부 사업이나 정책 명기)

사업 홍보계획

- * 사업진행사항과 결과를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

5. 추진일정

주요내용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①												
②												

6. 사업수행인력 (담당자, 관리자 등 기재)

업무 구분	성명	성별	소속/직위	연락처	주요 활동 경력
○					
○					
○					

7.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 액	세부산출내역 (예시)	
총 계				
	직접사업비			
	운영경비			
〇〇사업 프로젝트	계			
직접사업비	소계	강사수당	〇〇원×〇〇명×〇회	
		체험비	〇〇원×〇명×〇회	
		식비	〇〇원×〇〇명×〇식×〇회	
		교재비	〇〇원×〇〇부×〇회	
	운영경비	소계		
		출장비	〇〇원×〇명×〇회	
		회의비	〇〇원×〇회	
	〇〇사업 프로젝트	계		
	직접사업비	소계	책임연구원	〇〇원×〇명×〇개월
담당연구원			〇〇원×〇명×〇개월	
연구보조원			〇〇원×〇명×〇개월	
보조원			〇〇원×〇명×〇개월	
면접원 수당			〇〇원×〇〇명	
자료코딩비			〇〇원×〇명×〇일×〇회	
인쇄비			〇〇원×〇〇부×〇회	
운영경비			소계	
		면접원 교육비	〇〇원×〇〇명×〇회	
		회의비	〇〇원×〇회	

<작성 유의사항>

- ① 소요되는 경비 정액 지급을 기본원칙으로 함
- ② 예산 비목은 사업 프로젝트별로 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직접사업비와 운영경비로 구분하여 기재
- ③ 직접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하고 운영경비는 가급적 필수 불가결한 비용만 반영
- ④ 재료비는 소모성 재료비 위주로 편성하고, 비품을 포함한 자산성 재료비나 소요 비용이 과다한 경우는 기관 단체부담 또는 후원 등으로 계획 수립
- ⑤ 산출내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지원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음

2018년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결과 보고서

2018.

단체·기관명

[사업 추진 개요]

사업명				
단체명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조식으로 작성 유도 - 간결한 작성 유도 			
성과달성	- 계량, 비계량 부문으로 나뉘서 작성 (목표치 간략 기재)			
주요내용				
담당자	직 책		성명	(인)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주소			

※ 작성요령 : 개조식(간단정리)으로 작성

목 차

1. 사업개요	1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1.	3
2.	4
3. 과제 현황	
1.	
4. 사업 세부 추진 결과	
1.	0
2.	0
5. 추진 일정	
1. 추진일정	0
6. 사업수행인력	
1. 사업수행인력	0
7. 소요예산	
1. 소요예산	0
[붙임 #1]	0
[붙임 #2]	0
[붙임 #3]	0

사업명

- 소제목 -

중고덕 15p, 글상자선 이중테두리

(본문에 문서 취지가 포함될 시 본 글상자는 생략 가능)

1. 사업개요

추진배경 및 목적

○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등에 관해 자세히 기술, (휴면명조, 16p)

○

기관(단체)명 :

사업명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사업 성과목표 달성도

○ * 사업 추진 성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성과목표	* 다음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할 것
	- 교육, 캠페인, 홍보, 행사 : 총 00회, 000 명 실시, 00% 인식변화
	- 공동구매, 소비촉진 : 00% 이용 증가, 000개 판매 등
	- 연구조사, 모니터링 : 총 00회, 00개소, 000명 대상으로 실시
	* 향후 과제평가지 단체가 설정한 성과목표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 평가

추진체계와 추진방향

- * 사업추진기관의 역할과 책임, 업무의 흐름 등 기술

기대효과 * 기대되는 결과(비제량 위주)를 구체적으로 기술

-

3. 과제 현황

* 과제분야에 대한 일반적 현황 및 주위여건, 관련 정책 및 지원사업 등 기술

-

-

4. 사업 세부 추진 결과

-

-

해당부서와 협업

- * 사업수행과정과 사업종료후 해당 부서와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결과 제시 (구체적인 정부 사업이나 정책 명기)

사업 홍보 결과

- * 사업진행사항과 결과를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

5. 추진일정

주요내용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①												
②												

6. 사업수행인력 (담당자, 관리자 등 기재)

업무 구분	성명	성별	소속/직위	연락처	주요 활동 경력
○					
○					
○					

7.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 액	세부산출내역 (예시)
총 계			
	직접사업비		
	운영경비		
○○사업 프로젝트	계		
직접사업비	소계	강사수당	○○원×○○명×○회
		체험비	○○원×○명×○회
		식비	○○원×○○명×○식×○회
		교재비	○○원×○○부×○회
		운영경비	소계
	출장비	출장비	○○원×○명×○회
		회의비	○○원×○회
		○○사업 프로젝트	계
	직접사업비	소계	책임연구원
담당연구원			○○원×○명×○개월
연구보조원			○○원×○명×○개월
보조원			○○원×○명×○개월
면접원 수당			○○원×○○명
자료코딩비			○○원×○명×○일×○회
인쇄비			○○원×○○부×○회
운영경비			소계
면접원 교육비		면접원 교육비	○○원×○○명×○회
		회의비	○○원×○회

헤드라인M, 22p

- 글상자 테두리선 0.3mm -

중고딕 15p, 글상자선 이중테두리

(본문에 문서 취지가 포함될 시 본 글상자는 생략 가능)

1. 헤드라인M, 1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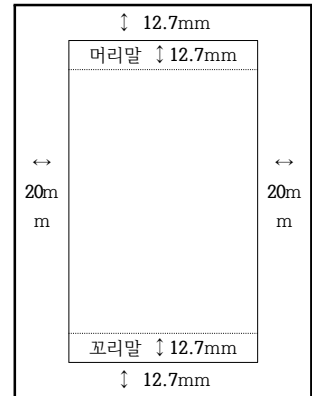
□ 휴먼명조, 16p, 1칸 들여쓰기

○ 휴먼명조, 16p, 2칸 들여쓰기

- (하이픈) 휴먼명조, 16p, 3칸 들여쓰기

. (점) 휴먼명조, 16p, 4칸 들여쓰기

* 중고딕, 14p, 3~7칸 들여쓰기



< 기본값 >

① 기본글자체 : 휴먼명조, 16p (제목 : 헤드라인M)

② 목차체계 : 보고서가 길지 않은 경우(□, ○, -, .)

보고서가 길어 항목구분이 필요한 경우(I, 1, 1), (1), ①)

③ 편집여백 : 위.아래 12.7mm, 좌.우 20mm, 머리말.꼬리말 12.7mm

- 머리말, 10p(날짜, 보고서 목적, 작성부서), 꼬리말(페이지) 기재

④ 줄간격 : 150~160%(페이지당 18줄~20줄), 장평(100), 자간(0)

⑤ 문단간격 : □ 문단위 20mm, ○ 문단위 10mm, * 문단위 5mm

⑥ 숫자와 일시 : 연, 월, 일은 생략하고 온점(.)표기, 시간은 24시 기준(예; 15:30)

⑦ 중요한 부분은 진하게 표시

※ 모든 표와 그림 등은 “개체속성”설정을 통하여, ‘일반글자처럼 취급’으로 설정

서식 5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정산 보고서 서식

축산발전기금 보조금 집행 내역(총괄)

- 보조사업명 : (수행 과제명)
- 보조사업자 : (수행 단체 명칭)
- 보조금 집행내역
 - 집행총괄표

(단위 : 원)

교부결정액	수령액(A)	집행액(B)	집행잔액(A-B)
80,000,000	80,000,000	80,000,000	0

※ 이자발생액 : 3,560원

- 세부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비목	지출세목	계획	지출	잔액
사업 자문회의	전문가 자문비			
	회의준비			
	회의식대			
	소 계			
소매단계 가격조사	조사원 활동비			
	조사업체 사례비			
	조사원 교육비			
	조사 분석비			
	소 계			
담당자 워크숍	워크숍 진행비			
	회의비			
	강사비			
	소 계			
합 계				

【양식1, 지출비목별 간지】

사업 자문회의

(총 245,000원)

(수행단체 명칭)

【양식2, 지출세목별 내역】

○ 지출세목별 집행내역(사업 자문회의)

(단위 : 원)

지출세목	일자	내역	금액
전문가 자문비	10.24	한국대학교 김교수 외 2명	300,000
회의 준비	10.22	현수막 제작(프린트 인쇄소)	30,000
	10.23	회의용품 구매(가나다 문구점)	38,000
	10.23	다과 구매(홈플러스)	145,000
	10.24	간식(김밥나라)	5,000
	10.24	장소사용료(문학회관)	200,000
	:	:	:
	10.24	000회장 외 45명(불고기씨스터)	460,000
회의 식대	:	:	:
계			

□ 일반지침

- 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게시물 및 자료에는 주최 기관을 표시하는 등 표준양식 적용(현수막, 안내문, 책자 등 홍보물 등)
 - 표기 방법(현수막 예시)

2018년 000소비자 교육 · 홍보 사업

- 주 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 주 관 : 〇〇단체

- 교육, 체험, 홍보캠페인, 토론회 등의 행사 시 현수막을 포함하여 사진 촬영 후 증빙자료 제출
- 교육, 체험, 홍보캠페인, 토론회 등의 참석자 증빙은 방명록을 첨부하여 근거자료로 제출(성명, 연락처, 서명)
- 교육 교재, 기념품 등은 책자화하여 사업결과물로 제출(2부)
- 리플렛, 홍보물 등 제작 시 게재 내용은 농식품부 및 축평원과 사전 합의하며, 사업결과물로 제출

□ 현장 점검

- 사업 추진 현장 점검 실시(농식품부와 합동 점검)
 - 과제별 특성에 맞는 현장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는 사업완료 후 사업평가에 반영

□ 산출물 제출

- 문서 산출물 : 파일 제출
 -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작업하여 제출할 것
 - * (1) 공문, (2) 결과보고서, (3) 정산내역서, (4) 영수증집계표, (5) 정산증빙자료(영수증 모음), (6) 계좌이체 의뢰서, (7) 통장사본, (8) 추진실적 증빙자료 사본(사진, 교육생 명단, 교육 및 홍보자료, 언론보도현황 등)

□ 사업평가 및 환류

- 사업 완료 후, 결과보고 및 사업 성과 평가회 실시를 통해 우수 단체에 대해 다음 연도 사업 공모시 인센티브 부여

□ 실적 보고(2회)

- 중간보고 :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간략 보고

< 중간보고(안) >

단체명	추진 내용
○○○	<input type="checkbox"/> ○○ 행사명(교육, 체험, 홍보 등) - 일 시 : - 장 소 : - 참석자 : - 주요내용 : <input type="checkbox"/> 이슈사항
	향후 추진계획
○○○	<input type="checkbox"/> ○○ 행사명(교육, 체험, 홍보 등) - 일 시 : - 장 소 : - 참석자 : - 주요내용 : <input type="checkbox"/> 이슈사항

- 결과보고 : 과제별 사업결과 및 보조금 집행결과에 대한 최종보고
 - 결과보고서, 추진실적 증빙(사진, 교육생 명단, 교육자료 등), 집행 실적 세부내역, 정산증빙자료 등 점검

1. 국고보조금 관리 기본원칙 및 준수사항

□ 기본원칙

◆ 국고보조금은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여 관리***함

* 보조금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법률 제34조

◆ 국고보조금이 구분되도록 회계 관리

- 자부담 우선 집행 후 국고 집행을 원칙으로 함
- 사업잔액 발생액은 전액 국고 반납

□ 국고보조금 관리 준수사항

- 동 집행·관리지침은 ‘17년 농식품부 소비자단체협력사업 공모사업비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원칙과 공통된 기준을 정한 것임
- 정부의 예산 절감 노력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일회성·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지양하고, 실용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비를 집행함
- 국고 보조금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한 사업 계획서(최종 승인)에서 제시한 사업범위 내에서만 집행 가능함
- 당초 계획에 없는 분야는 집행할 수 없으며, 예상치 못한 사정 등으로 제출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사전 승인 후 집행(공문처리)

□ 국고보조금 관리

- 사업 수행기관은 사업비에 대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별도 통장, 신용카드(법인용 클린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관리

- 모든 사업비의 지출은 신용카드(법인용), 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명세서, 견적서(용역 등), 세금계산서, 영수증 및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함
 - *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 사업운영 기관은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사용 항목별, 일자별로 기록 유지하고, 감독기관(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

□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절차

- 사업비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정산 내역을 확인·점검
 - 감독기관은 사업 평가, 모니터링 등의 목적으로 사업운영기관에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 실시
 - 감독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 또는 목적 외에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조치

□ 국고보조금 통장관리

- 단체·기관 소유 법인통장 외 별도 개설하며 타사업 통장과의 분리

□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개산금 집행
- 집행시기 : 사업 선정·착수 시 총예산의 50%* 청구·집행, 나머지 중간발표 후 배정(50%)
 - * 집행계획에 따라 최초 총예산의 최대 70%까지 신청 가능(사전 협의 필요)

- 사업시행기관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17년 11월 15일까지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정산 실시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17년 12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보고” 실시

□ 국고보조금 증빙서류

○ 영수증 증빙 방법

-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카드 및 무통장입금(계좌이체)을 원칙으로 함
- 강사비 : 강사비 수령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 물품구입 등 : 카드영수증 · 계산서 ·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 회의비 : 카드영수증 · 계산서 ·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식사비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음

○ 현금 지급

- 카드 및 무통장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 * 간이영수증 : 간이사업자에 한하여 3만원 이내의 거래내역만 인정
- * 현금영수증(개인 현금영수증 첨부 불가) 제출

□ 국고보조금 사용 제한

○ 다음 업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의 사용을 제한함

- 유흥 업종 :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카바레, 요정 등
- 위생 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등

2. 보조금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집행 기준

사업비 집행기준

항	목	산출내역 및 지급단가	
직접사업비	강사수당 (회의비포함)	◦ 아래 「강사료·원고료 지급 기준」에 근거하여 집행	
	강사여비	◦ 원거리(타시도) 강사인 경우 교육기관 내규에 따라 예산 내에서 여비 지급 가능(1인당 10만원 이내 또는 실비지급) * 제주도의 경우 실비 지급(예산범위 내) * 해당 지역(해당지역단체)의 내부강사의 경우 여비 지급 불가	
	인쇄비 및 교재구입비	◦ 소요되는 경비 정액 지급(예산범위 내)	
	실습재료(체험)비	◦ 체험 및 실습에 소요되는 비용 * 체험 및 소모성 기자재 구입시 기수별 1인 25,000원 이내	
운영경비	직접경비	출장비	◦ 소요되는 경비 정액 지급(예산범위 내) - 출장비 : 직접교육비 내의 교육운영 시 집행하는 식비, 숙박비와 중복지급 불가 * 세부예산계획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의 후 추진
		교육장 사용료	
		홍보(현수막 등)	
		사무용품비	
	보험료		
기타 운영비	◦ (직접사업비+직접경비) × 10% 이내 * 직접경비를 제외한 사업운영 경비 * * 임시적으로 필요한 보조인력 인건비 지출 가능		

강사료·원고료 지급 기준

강사료			비고
등급	기본[hr]	초과[hr]	
특강1	500,000원 이내		국내·외의 해당분야 저명인사로 교육 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특강2	300,000원	200,000원	전·현직 장·차관(급) 및 대학총장(급), 전·현직 국회의원, 기업·기관·단체의 장, 인간문화제, 유명예술인 및 종교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
1급 강사	230,000원	120,000원	해당분야 전문가, 실·과장(급) 공무원,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공인감정사로서 5년 이상 경력자,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
2급 강사	120,000원	100,000원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4·5급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이하 공무원, 기업·기관·단체의 임·직원, 중소기업체의 임원급, 체육·레크리에이션 강사, 프리랜서, 농업인 등 일반 강사
3급 강사	90,000원	50,000원	6급 이하 공무원,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
원고료	<p>한국어 원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글』: 12,000원 / 매(시간당 5매 기준) - 파워포인트 : 12,000원 / 면(시간당 15면 기준 - 3면을 A4 1매로 선정) <p>외국어 원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글』: 15,000원 / 매(시간당 5매 기준) - 파워포인트 : 15,000원 / 면(시간당 15면 기준 - 3면을 A4 1매로 선정) <p>원고료는 개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지급</p>		

세부사업명	중소식품기업경쟁력강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한국형 메쓰거라이 경영컨설팅	예산 (백만원)	100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지방부위 소비 활성화를 통한 축산물 유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식육즉석판매가공업 활성화 추진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의 업종전환 및 신규창업자 등에 대해 영업 초기 매장설계와 제품생산 및 운영에 관한 기술적 애로사항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지원하여 경영안정화 및 조기정착 구현 							
사업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및 기존사업자(식육판매업자 등)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창업 및 업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및 기술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뉴얼 기반 이론, 실습 등 집합컨설팅과 기존 영업점 또는 신규개설 영업점에 대한 현장 컨설팅 수행 - 컨설팅 지원자에 개별맞춤형 매장설계, 설비, 제품생산 및 조리, 매장운영, 마케팅 등에 관한 경영컨설팅 비용 50% 국고지원 							
국고보조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식품산업진흥법」 제15조							
지원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수행기관 : 컨설팅 수행기관 자격기준(공고)을 갖춘 법인(기업) ○ 컨설팅 신청업체 : 식육판매점 사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전환 및 창업자 (개인 및 업체)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신청업체별 2백만원(국고보조 50%) ○ 컨설팅 사업운영비 6백만원(국고보조 100%) 							
재원구성(%)	국고	51.5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48.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410	390	194	533			
	국 고	210	200	100	273			
	자부담	200	190	94	26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사)한국육가공협회		축산정책과 한국육가공협회		홍성현 최진성		044-201-2329 02-588-1264		
신청시기	- 컨설팅 수행기관 : 정기(매년 2~4월) - 컨설팅 신청업체 : 수시			사업시행기관		(사)한국육가공협회		
관련자료	한국형메쓰거라이 경영컨설팅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사)한국육가공협회 홈페이지(www.kkkk.go.kr)							

1. 사업대상자

- 컨설팅 수행기관 : 경영컨설팅 수행기관 자격기준을 갖춘 법인(기업)
- 컨설팅 신청업체 : 식육판매업 사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전환 및 창업 사업자(희망자 포함, 개인 및 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컨설팅 수행기관 지원 자격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 ② 신청자는 법인(기업)으로서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 장소를 갖춘 사업자
 - ③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관련분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시작~종료까지 1회 인정, 동일프로그램 반복 운영시 횟수 인정)을 최근 2년간 1회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자
 -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관련분야 :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식육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과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주요 판매제품이 식육가공품인 경우)으로 한정
 - ④ 자체 상근 임직원이나 외부 법인(기업)·학계·공공기관, 단체 등의 소속 근무자, 개인사업자를 컨설팅 수행인력(전문컨설턴트, 컨설턴트)으로 구성하여 신청가능

<컨설팅 수행인력 구성 및 자격기준>

① 컨설팅 수행인력 구성

- 기본 수행인력 : 총 4인 이상(분야별 구분 없음, 전문컨설턴트 2인 이상, 컨설턴트 2인 이상)
- 참여 범위 : 전문컨설턴트 및 컨설턴트 구분 없이 2인 이내, 2개 매뉴얼항목에 대해 컨설팅 가능
 - * 컨설팅 수행기관장 중복 구성시 : 2인 이내, 2개 컨설팅 사업자내에서만 중복가능

② 컨설팅 수행인력 자격기준 : 각 호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가. 전문컨설턴트 자격기준

- 식품분야 기술사 또는 독일 메쯔거 마이스터 자격소지자로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관련 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인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관련분야 근무경력 20년 이상인자로, 최근 2년간 2건 이상 컨설팅 실적이 있는 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관련분야에 대한 컨설팅 경력 15년 이상인자로, 최근 2년간 2건 이상 컨설팅 실적이 있는 자
- 경영 및 마케팅 전문 관련분야 15년 이상 경력자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관련분야에 최근 2년간 2건 이상 컨설팅 실적이 있는 자

나. 컨설턴트 자격기준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관련분야 또는 매뉴얼 항목 관련직종 5년 이상 경력자로, 최근 2년간 2건 이상 컨설팅 실적이 있는 자
- 학계·공공기관, 단체 등에서 매뉴얼 관련분야에 대한 컨설팅 경력 5년 이상인자로, 최근 2년간 2건 이상 컨설팅 실적이 있는 자

○ 컨설팅 신청업체(개인 포함) 자격 조건

- 식육판매업 사업자 및 종사자, 식육판매업에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업종 전환을 완료한 사업자 및 종사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창업한 사업자 및 종사자(희망자 포함)
- 기 경영컨설팅 실시업체(개인 포함, '15~'17년)는 지원 제외 대상
- 컨설팅 신청업체(개인 포함)은 컨설팅 수행기관의 컨설팅 수행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희망 컨설팅 수행기관을 선택 신청 후 선정

3. 지원대상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매뉴얼 기반 이론, 실습 등 집합컨설팅(교육)과 기존 영업점 또는 신규개설 영업점에 대한 현장 컨설팅(전환·창업) 수행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매뉴얼(2개 분야 총 7개 매뉴얼 항목 교육·컨설팅)

분야	항목	주요 내용
생산 및 운영	1. 정육진열상품	매장규모별 표준진열 및 우육, 돈육, 가금육(닭고기, 오리고기), 꿩, 말, 사슴육의 상품화 방법
	2. 식육즉석가공제품	매장규모별 취급품목 및 원,부재료 사용방법, 제품 레시피(30품목 : 한국형 발효육, 친환경, 부산물 활용, 전통육류제품)
	3. 즉석메뉴조리	매장규모별 조리메뉴 레시피(40품목 : 밥류, 면류, 구이류, 볶음류, 찜류, 국·탕·전골류, 튀김류, 샐러드류, 샌드위치류)
	4. 생산관리	매장내 생산관리실무(입·출고 재고관리, 자재발주 및 입고, 생산계획, 즉석가공 및 즉석조리, 생산일보, 원가절감 등) 및 판매업무, HACCP관리요령
	5. 매장운영 및 홍보마케팅	개업(사업계획서, 상권분석, 점포준비, 상품 및 메뉴구성, 판촉), 매장운영(매장연출, 고객관리, 특화운영, 영업관리), 원가관리, 홍보마케팅 요령
매장 설계	6. 인테리어	매장규모별 진열상품 및 공간구성(냉장·냉동실, 작업장, 판매장)에 따른 평면도, 천정도, 입면도, 조감도 및 투시도, 예상시공비
	7. 가공·판매설비	매장규모별 생산가능제품에 따른 설비(가공, 판매, 조리, 검사, 공기구 및 비품) 선정기준 및 예상 가격, 설비운전매뉴얼

- 컨설팅 지원자(신청업체)에 개별맞춤형 매장설계, 설비, 제품생산 및 조리, 매장운영, 마케팅 등에 관한 기술교육 및 경영컨설팅 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집합컨설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매뉴얼(7개 항목)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
- 현장컨설팅 : 컨설팅 신청업체의 기존 영업점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신규 개설(예정 포함) 영업현장을 방문하여 매뉴얼에 대한 컨설팅 지원
- 과정별 지원 기준(컨설팅 신청업체가 선택 신청)

구분	기본과정	심화과정
집합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0시간 이상(이론+실습+워크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론 : 50시간 이상 - 실습 : 60시간 이상 * 해외연수(별도) : 40시간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2시간 이상(실습+워크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 : 72시간 이상 * 해외연수 : 없음
현장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영업점 또는 신규 개설(예정) 영업장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회 이상/1개소 * 컨설팅 전문가 1인, 2시간 기준(1회) 	

* 해외연수 : 교육생 1인당 사업비용(4백만원)의 15%이내 사용(이외 본인부담)

- 일반관리비 : 컨설팅 수행기관 및 신청업체 공모, 선정, 평가, 홍보 등 사업 관리에 필요한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경영컨설팅 지원 : 국고 50%(컨설팅 수행기관) + 자부담 50%(컨설팅 신청업체)
 - 신청업체 개소당 총사업비(4백만원) 한도를 초과한 계약의 경우 국고보조 한도액(50%, 2백만원, 부가세포함)까지만 지원하며, 초과부담에 대하여는 컨설팅 수행기관의 자부담을 투입하여 사업추진 가능
- 경영컨설팅 사업운영비 : 국고 100%(사업시행기관, '18년 6백만원 이내)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컨설팅 수행기관 : 컨설팅 신청업체 당 국고보조 50%(200백만원, 부가세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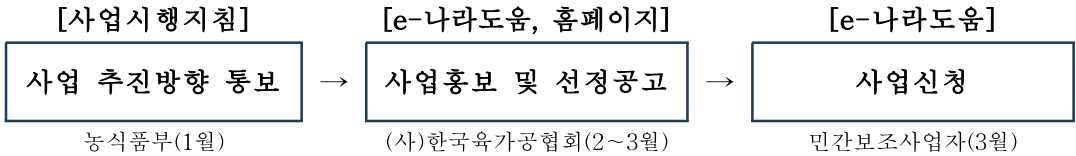
사업비	지원구분	지원내용(부가세포함)	지원조건
1개소당 4백만원	컨설팅 신청업체	자부담금 50%(200만원)	자부담금 50%전액 납입후
	컨설팅 수행기관	국고보조 50%(200만원)	선금 25%(중간점검 후) 잔금 25%(완료보고 후)

- 컨설팅 수행기관별 신청업체 배분계획*에 따라 컨설팅 신청업체 선착순 선정('18년 47개소)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컨설팅 수행기관은 사업시행기관-컨설팅 수행기관 간 사전협의를 통해 컨설팅 신청업체 배분·공지

- 컨설팅 사업운영비(일반관리비) : 총 국고보조 한도 6%(6백만원) 이내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1월) 및 사업기본계획 통지(2월)
- (사)한국육가공협회는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2월)
- (사)한국육가공협회는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2~3월)
 -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 등록(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 안내)
- 민간보조사업자(컨설팅 수행기관)은 (사)한국육가공협회에 사업신청서 등을 제출(3월)
 - 신청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신청 등 작성
 -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 별도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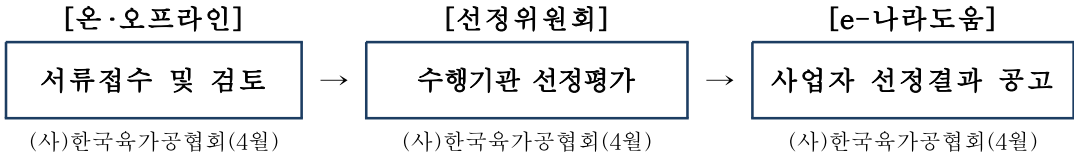
①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경영컨설팅 사업신청서

<해당 첨부서류> 각 1부

- 가. 신청 법인(기업)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사본,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나. 신청 법인(기업)의 상근 임직원 또는 외부 컨설팅 수행인력(전문컨설턴트, 컨설턴트)으로 구성 참여시 개별 제출서류
 - 개인인감증명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명함
- ②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경영컨설팅 사업제안서
- ③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경영컨설팅 발표(PT) 자료 : 8부(파워포인트 작성)
- ④ 위 ②, ③항 저장파일 : USB(1개)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한국육가공협회는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등 검토
-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자단체, 학계, 언론, 유관단체 등 7인이내 구성
 - 선정위원회에서 컨설팅 수행기관의 사업제안서 심의평가 및 선정(PT 평가)
 - 심의평가 내용
 - ①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매뉴얼 2개 분야 2개 항목 위주 컨설팅 계획
 - ② 컨설팅 추진 절차, 일정, 인력 및 비용
 - ③ 현장컨설팅 추진 계획
- * 컨설팅 수행기관 평가 선정 : 선정위원회 심의평가 평균점수 60점 이상 선정
- (사)한국육가공협회는 컨설팅 수행기관을 확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안내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변경제출
- 선정된 컨설팅 수행기관은 최종 컨설팅 수행계획서를 (사)한국육가공협회로 제출하고, (사)한국육가공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컨설팅 수행기관은 선정위원회 보완요구 사항 반영하여 수행계획서 제출
- (사)한국육가공협회 및 컨설팅 수행기관은 컨설팅 신청업체를 공모(4월~12월, 수시)
 - 컨설팅 신청업체는 컨설팅 수행기관 수행계획서를 참고하여 컨설팅 지원 신청((사)한국육가공협회 및 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지원신청서 등 제출)

- 제출 서류

- ① 컨설팅 지원신청서, 신청자현황 및 향후계획, 정보제공동의서
- ② 신청인 신분증사본(공통)
- ③ 기존영업자의 경우 관련 영업신고증 사본(일반인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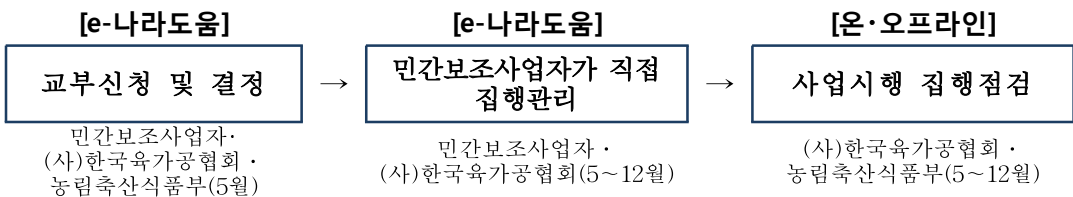
<'18년 컨설팅 신청업체 접수 및 운용 계획>

구분	접수 기한	운용 계획
선착순	공고기한내 선착순 47명 선정	신청자가 희망 컨설팅 수행기관별 지원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후보등록 · 접수처 : 사업시행기관(한국육가공협회) 및 컨설팅 수행기관
미달시	47명 한도내 수시접수	수행기관별 지원인원 내에서 신청가능 · 접수처 : 희망 컨설팅 수행기관

- 컨설팅 신청업체 공모 결과에 따라 지원자 확정 및 컨설팅 수행기관 배분
- 컨설팅 신청업체는 컨설팅 신청서 제출시 자부담금(2백만원) 입금
- (사)한국육가공협회-컨설팅 수행기관-컨설팅 신청업체 3자간 계약 체결
- 컨설팅 수행기관은 자부담금 입금내역을 (사)한국육가공협회로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계약금액(컨설팅 지원인원×4백만원)의 10%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제출(보험기간은 계약기간에 60일 추가, 부가가치세 포함)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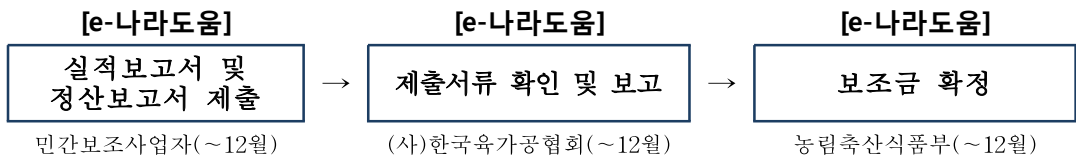


- 민간보조사업자(컨설팅 수행기관)는 (사)한국육가공협회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 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약교부 신청

* e나라도움을 통해 예약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농림축산식품식품부는 (사)한국육가공협회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사)한국육가공협회는 교부조건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예탁형)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 (사)한국육가공협회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한국육가공협회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 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사)한국육가공협회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 지급
 - 중간평가(6~7월) 이후 컨설팅 지원 인원기준 국고보조금 중 50% 지급
 - 최종평가(11~12월) 이후 컨설팅 지원 인원기준 국고보조금 중 50% 지급
- (사)한국육가공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보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 확정 및 정산완료 통보
- (사)한국육가공협회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 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그 외 사항 등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법에 따름

IV /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컨설팅 수행기관은 사업추진 실적,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사업 추진 결과를 사업 실적보고서로 (사)한국육가공협회로 제출(12월)
- (사)한국육가공협회는 평가위원회의 중간 및 최종평가 내용을 포함한 최종 사업실적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12월)

2. 평가

- 중간 평가 : 컨설팅 착수~3개월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점검 및 중간 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보완사항 이행 등 필요시 재점검 실시(중간평가 이후 1개월 이내)
 - 평가 항목 : 수행 달성도(25), 컨설팅 성실성(25), 매뉴얼 활용성(25), 종합적 만족도(25) / 총 100점 만점(항목별 5~25점 평가)
- 최종 평가 : 컨설팅 완료 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평가(완료보고, PT평가)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지적사항 등에 대한 보완 후 최종보고서 제출(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 평가 항목 : 수행 달성도(25), 컨설팅 성실성(25), 매뉴얼 활용성(25), 종합적 만족도(25) / 총 100점 만점(항목별 5~25점 평가)
- 만족도 조사 : 컨설팅 수료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컨설팅 완료 후)
- 사후관리 : 컨설팅 수행기관 및 (사)한국육가공협회는 사업종료 후 6개월~2년 이내 컨설팅 수료자의 매장개설(변경전·후 사진 포함), 매출액 변화 등 지원효과 자료 제출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컨설팅 수행기관이 제출한 사업 실적보고서를 평가 결과가 우수(평균 80점 이상)한 컨설팅 수행기관은 차년도 사업 신청 및 선정 시 우선 순위 부여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미흡(평균 60점 이하)한 컨설팅 수행기관은 차년도 사업 신청시 선정 제외

201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경영컨설팅 사업신청서 (신청분야 : <input type="checkbox"/> 기본과정 <input type="checkbox"/> 심화과정)					
관련 공고		공고번호 : 제2018-?호(2018.?.??.)			
		201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경영컨설팅 수행기관 모집			
신청인	기관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교육 과정장	성명		연락처	H.P	FAX
	직위		이메일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명 :	(인)	사용인감	(인)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201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경영컨설팅 수행기관 모집에 참가하고자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모집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2018 . . .					
기 관 대 표 자 : (인)					
(사)한국육가공협회장 귀하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사)한국육가공협회 회장 귀하

- 본인은 「201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경영컨설팅 사업신청서」 및 제반서류(기업현황표, 분야별 사업계획서, 기타 기업 진단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 및 관련된 기업(신용)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등 금융정보 포함)를 수집, 이용, 조회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기타 금융관계기관 등에게 제공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신용도 등 판단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거나, 경영 컨설팅 사업 관련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과 2017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경영컨설팅 수행기관으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한국육가공협회 홈페이지(<http://www.kmia.or.kr>)에 공개하는 경우에도 동의합니다.
- 위 기관에 경영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 제안서 등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컨설팅 수행기관 취소,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와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 년 월 일

기관(업체명) :

법인(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 신용정보업자를 통한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기관(귀사)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경영컨설팅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I.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조직 및 인원현황 등 ○ 최근 2년간('15~'16) 재무현황 : 자산, 부채, 매출액 등 	【첨부 1】 【첨부 2】
2. 사업의 이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의 이해 및 추진방향, 제안사 강점 소개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관련분야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첨부 3】
II. 수행인력 구성 및 전문성		
1. 수행인력 현황 및 컨설팅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컨설팅 수행인력 현황 및 평균 컨설팅 실적 	【첨부 4】
2. 수행인력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뉴얼 항목별 컨설팅담당 근무경력 및 컨설팅 실적 ○ 전문컨설턴트 및 컨설턴트 개인별 프로필 소개 ○ 컨설팅 실적증명서 	【첨부 5】 【첨부 6】 【첨부 7】
III. 컨설팅 수행계획		
1. 컨설팅 세부 지원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컨설팅 커리큘럼(이론 및 실습, 현장컨설팅) 구성 및 컨설팅 운용비중 ○ 현장컨설팅 세부계획 ○ 경영컨설팅 수행일정 및 수행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턴트의 투입인력, 매장규모별(소,중,대) 효과적인 컨설팅 지원방법, 다품목 소량생산 및 판매(매출증대)를 위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술적 지원 방법 포함 제시 ○ 경영컨설팅 교육장 소개 	【첨부 8-1, 2】 【첨부 9】 【첨부 10】 【첨부 11】
2. 성과 기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컨설팅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3. 소요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컨설팅 지원비용 산출내역 	【첨부 12】

※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평가 내용임

<첨부 1>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제안기관(업체)명 :

주 소			
전 화 번 호		F A X	
총 인 원		업 종	
자 본 금			
<input type="checkbox"/> 주 요 연 혁			
<input type="checkbox"/> 조 직 및 인 원 현 황			
<input type="checkbox"/> 특 허 및 특 정 사 업 추 진 내 역, 정 부 표 창 등			

2018. . .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기관대표자 (인)

(사)한국육가공협회 귀중

<첨부 2>

최근 2년간 재무현황

□ 제안기관(업체)명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합계	평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9. 자기자본 이익률 $\frac{\text{당기순이익}}{\text{자기 자본}}$				
10. 부 채 율 $\frac{\text{유동부채+고정부채}}{\text{자기 자본}}$				

주)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단, 당해년도 결산보고 또는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서류제출

2018. . .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기관대표자 (인)

(사)한국육가공협회 귀중

<첨부 3>

식육즉석판매공업 관련분야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최근 2년)

□ 제안기관(업체)명 :

1. 교육대상 및 교육인원

연도	교육대상	교육인원	교육비(천원)		비고
			1인당	전체	
'15					
'16					
계					

비고란 : 외부위탁교육(위탁업체명), 정부기관 지원사업(기관명)

2. 교육내용 및 방법

연도	교육내용	교육방법
'15		
'16		

2018. . .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교육과정장)

(인)

(사)한국육가공협회 귀중

<첨부 4>

경영컨설팅 수행인력 현황 및 평균 컨설팅실적

□ 제안기관(업체)명 :

구 분	현 황	최소기준
전문컨설턴트 인원	명	2명
컨설턴트 인원 (프로필 및 실적증명서)	명	2명
*전문컨설턴트 총 인원의 최근 2년간 컨설팅 평균실적 (컨설팅 실적증명서)	건	평균 2건
*컨설턴트 총 인원의 최근 2년간 컨설팅 평균실적 (컨설팅 실적증명서)	건	평균 2건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관련 최근 2년간 교육프로그램 운영 총 횟수 (자사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회	1회

* 최근 2년간 컨설팅 평균실적(예시) : 2년간 2명이 총 10회/총인원 2명 = 5회

2018. . .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교육과정장)

(인)

(사)한국육가공협회 귀중

<첨부 5>

매뉴얼 항목별 컨설팅담당 근무경력 및 컨설팅 실적

□ 제안기관(업체)명 :

매뉴얼 분야	매뉴얼 항목	구분	성 명 (직위)	학교명 (전공)	최종학위 (학교)	근무경력		컨설팅실적			
						근무처	(년 월)	주관기관	사업명 (수행기간)	컨설팅 일수 (건수)	이론/ 실습
생산 및 운영	정육진열상품										
	식육즉석가공 제품										
	즉석메뉴조리										
	생산관리										
	매장운영 및 마케팅										
매장 설계	인테리어										
	가공·판매설비										
계	전문컨설턴트 : 명 컨설턴트 : 명								전문컨설턴트 총 컨설턴트 총	건 건	

※ 전문컨설턴트 및 컨설턴트는 각각 2인 이상이며, 매뉴얼 분야별 구성제한은 없음

※ 구분란에는 전문컨설턴트 또는 컨설턴트 명시, 1인이 2개매뉴얼 참여시 다른 해당매뉴얼에는 "구분" 및 "성명(직위)"까지만 표시

※ 컨설팅일수(건수) - 5일/1건 기준(예 : 컨설팅 일수 23일, 4건), 이론/실습(구분표시), 필요시 페이지 추가 가능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 . . (교육과정장)

(인)

<첨부 6>

프로필 (□전문컨설턴트 □컨설턴트)

※ 해당분야 체크

제안기관(업체)명 :

근무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급		담당보직명	
	전 화		Fax	
	주 소			
	e-mail		HP	
자 택	우편 번호		전화 번호	

학력· 연구경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논문 및 연구내용
근무경력	기 간	근 무 처	근무 부서	직 위	담당직무
컨설팅경력	기 간	주관기관	업 체 명	일 수	과제(상세히)
자격 및 면허					
매뉴얼 컨설팅 분야					

* 칸 부족시 페이지 추가 작성

2018. . . .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교육과정장)

(인)

<첨부 7>

컨설팅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신청기관(업체)		대 표 자		
	기관(업체)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FAX 번호		
	증명서용도	실적 증명용	제 출 처		한국육가공협회
컨설팅 이행 실적	사업명				
	주요 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참여 컨설턴트	비고
	20 . .	20 . . . ~	원		
증 명 서 발급처	위 사실을 증명함				
	2018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FAX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 :)		

경영컨설팅 커리큘럼 구성 및 컨설팅 운용비중

(기본과정)

□ 제안기관(업체)명 :

가. 커리큘럼 : 기본과정

	집합컨설팅			현장컨설팅(평균/1개소당)	
	이론교육	실습교육	계	방문횟수	컨설팅 시간
교육일수					
교육시간				-	-
교육시간 구성비율	%	%	100%	-	-
권장기준	○ 110시간 이상 (이론+실습+워크샵) - 이론 : 50시간 이상 - 실습 : 60시간 이상 * 해외연수(별도) : 40시간 내외			○ 기존 영업점 또는 신규 개설 (예정) 영업장 대상 - 4회 이상/1개소 * 컨설팅전문가 1인, 2시간 기준(1회)	

나. 해외연수 수행계획(해당시 기재)

대상국가(지역)	일정	1인당 총액(원)
	2018. . . ~ . . (일)	

※ 해외연수 : 교육생 1인당 사업비용(4백만원)의 15%이내 사용(이외 본인부담)

※ 해외연수 세부계획(첨부)

다. 업종분야별 컨설팅 운용비중(계획)

업종분야	컨설팅 운용비중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휴게음식점영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일반음식점영업	%
계	100%

2018. . .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교육과정장)

(인)

<첨부 8-2>

경영컨설팅 커리큘럼 구성 및 컨설팅 운용 비중

(심화과정)

□ 제안기관(업체)명 :

가. 커리큘럼 : 심화과정

집합컨설팅		현장컨설팅(평균/1개소당)	
	실습교육	방문횟수	컨설팅 시간
교육일수			
교육시간		-	-
권장기준	○ 72시간 이상(실습+워크샵) - 실습 : 72시간 이상 * 해외연수 : 없음	○ 기존 영업점 또는 신규 개설 (예정) 영업장 대상 - 4회 이상/1개소 * 컨설팅전문가 1인, 2시간 기준(1회)	

나. 업종분야별 컨설팅 운용비중(계획)

업종분야	컨설팅 운용비중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휴게음식점영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일반음식점영업	%
계	100%

2018. . .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교육과정장)

(인)

<첨부 9>

현장컨설팅 세부계획

□ 제안기관(업체)명 :

구분	세부계획(구체적)
□ 컨설팅 기간내 현장컨설팅 지원매장이 준비된 신청자가 현장컨설팅 병행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 컨설팅 기간내 컨설팅 신청자가 현장컨설팅 지원매장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2018. . .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교육과정장)

(인)

<첨부 10>

경영컨설팅 수행일정 및 수행체계

- 수행기관명 : (대표 :), 교육과정장()
- 컨설팅 지원인원 : 명

1. 개요

컨설팅 구분	기간	총 회차(횟수)	비 고
이론 및 실습	'17. . . ~ (주)		주 2회 이론(요일), 실습(요일)
현장컨설팅	'17. . . ~ (주)		회/1개소

※ 현장컨설팅 1회 : 1인, 2시간 기준

2. 커리큘럼 : 과정

	집합컨설팅			현장컨설팅(평균/1개소당)	
	이론교육	실습교육	계	방문횟수	컨설팅 시간
교육일수				-	-
교육시간				-	-
교육시간 구성비율	%	%	%	-	-
권장기준	○ 110시간 이상 (이론+실습+워크샵) - 이론(50시간 이상), 실습(60시간 이상) * 해외연수(별도) : 40시간 내외			○ 기존 영업점 또는 신규 개설(예정) 영업장 대상 - 4회 이상/1개소 * 컨설팅전문가 1인, 2시간 기준(1회)	

3. 컨설팅 수행인력 및 수행계획

	성명	총 교육시간			인건비 지급액(원)	산출근거
		이론교육	실습교육	현장컨설팅		
전문컨설턴트 (명)						전문컨설턴트(명)×단가×총시간
계						
컨설턴트(명)						
계						
보조인력(명)		-	-	-		
합계(명)						

※ 보조인력 인건비 지급상한액 : 월 55만원×5개월이내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준단가 - 보조원 월임금×참여율 45%적용

※ 인건비 : 첨부12 및 첨부12(붙임) 인건비 지급액과 일치할 것

4. 커리큘럼 세부일정 (수행기관명 :)

주	회차	일자	교육시간			과목명 및 교육내용	식육즉석판매 가공업 매뉴얼 해당분야	강사		교육장소
			이론	실습	워크숍			전문 컨설턴트	컨설턴트	
1	1	5.19(금) (18:00~21:00)	3			<input type="checkbox"/> 과목명 : 식육학 개론 - 미생물과의 전쟁 - 식육의 사후변화 - 식육의 조성 및 영양				
	2	5.20(토) (09:00~12:00)		3						
2	3									
	4									
3	5									
	6									
4	7									
	8									
	계				이론(시간), 실습(시간), 워크숍 (시간)					

2018. .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교육과정장) (인)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매뉴얼 해당분야 : 아래사항중 해당 매뉴얼항목 기재

- 7개 매뉴얼 항목별 주요내용

매뉴얼 분야	매뉴얼 항목	주요 내용
생산 및 운영	1. 정육진열상품	매장규모별 표준진열 및 우육, 돈육, 가금육(닭고기, 오리고기), 꿩, 말, 사슴육의 상품화 방법
	2. 식육즉석가공제품	매장규모별 취급품목 및 원,부재료 사용방법, 제품레시피(30품목 : 한국형 발효육, 친환경, 부산물활용, 전통육류제품)
	3. 즉석메뉴조리	매장규모별 조리메뉴 레시피(40품목 : 밥류, 면류, 구이류, 볶음류, 찜류, 국·탕·전골류, 튀김류, 샐러드류, 샌드위치류)
	4. 생산관리	매장내 생산관리실무(입·출고 재고관리, 자재발주 및 입고, 생산계획, 즉석가공 및 즉석조리, 생산일보, 원가절감 등) 및 판매업무, HACCP관리요령
	5. 매장운영 및 마케팅	개업(사업계획서, 상권분석, 점포준비, 상품 및 매뉴구성, 판촉), 매장운영(매장연출, 고객관리, 특화운영, 영업관리), 원가관리, 홍보마케팅 요령
매장 설계	6. 인테리어	매장규모별 진열상품 및 공간구성(냉장·냉동실, 작업장, 판매장)에 따른 평면도, 천정도, 입면도, 조감도 및 투시도, 예상시공비
	7. 가공·판매설비	매장규모별 생산가능제품에 따른 설비(가공, 판매, 조리, 검사, 공기구 및 비품) 선정기준 및 예상가격, 설비운전매뉴얼

<첨부 11>

경영컨설팅 교육장 소개

제안기관(업체)명 :

현황

	면적(m ²)	소재지	비고
이론교육장			자가 / 임대
실습교육장			자가 / 임대

실습교육장 설비목록

	기기명칭(설비용량 등)	용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내외부 사진(내외부 각각 4컷 이상, A4용지에 4컷씩 총 2매)

경영컨설팅 지원비용 산출내역

□ 제안기관(업체)명 :

□ 경영컨설팅 지원비용산출

○ 전문컨설턴트 인건비(1인당, 1시간 기준) : 원

○ 컨설턴트 인건비 (1인당, 1시간 기준) : 원

○ 경비중 실습식재료비(총액) : 원

○ 종합내역 (단위 : 원)

		금 액	(%)	산출내역	비고
① 컨설팅 인건비	이 론			전문컨터트(총액) : 컨설턴트 (총액) :	전문컨설턴트(명)×단가 ×총시간 컨설턴트(명)×단가× 총시간
	실 습			전문컨터트(총액) : 컨설턴트 (총액) :	
	현장컨설팅			전문컨터트(총액) : 컨설턴트 (총액) :	
	계				
	행정보조				인원×단가×총시간
	인건비소계				
② 해외연수비					(예)1인당600천원×25명 (해당시 기재)
③ 경 비					실습식재료비, 소모품비, 홍보비 등
④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율 3% 이내
합계(①+②+③+④)					
⑤ 부가가치세					
총계 (①+②+③+④+⑤)		100,000,000	100.0		

※ 총계비용산정(지원 인원기준)

(예시) 총계 100,000,000원 : 1인당 4,000,000원×25명 기준(100.0%)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경영컨설팅 비용산출 세부내역(붙임)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교육과정장)

(인)

<첨부 12-붙임>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경영컨설팅 비용산출 세부내역

□ 제안기관(업체)명 :

(단위 : 원)

구분	금액	구성비(%)	산출근거
① 인건비	이론		
	실습		
	현장컨설팅		
	계		
	보조인력		
	인건비 소계		
② 해외연수비			(예)1인당 600천원×25명(해당시)
③ 경 비			
	계		
④ 일반관리비			
합계 (①+②+③+④)			
⑤ 부가가치세	%		
총계 (①+②+③+④+⑤)		100,000,000	100.0

※ 경비내역 기재순서(필히 준수)

- ① 실습식재료비 ② 실습소모품비 ③ 시설사용료 ④ 홍보비 ⑤ 유니폼제작비
⑥ 국내견학경비 ⑦ 워크샵 비용 ⑧ 사무용품비 ⑨ 다과비 ⑩ 통신비 ⑪ 식대

※ 해외연수 : 교육생 1인당 사업비용(4백만원)의 15%이내 사용(이외 본인부담)

※ 홍보비(컨설팅 지원인원 모집홍보) : 총계×3% 이내

선 정 평 가 서

평가과제명	2017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경영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주관사업자	
사업기간	
사업추진형태	모집공고

1. 종합평가

평가지표	평 가 항 목	가중치 (A)	점수(B)					계 (A×B)
			5	4	3	2	1	
1. 사업의 이해도 및 사업자격의 충분성 (10)	- 사업목적의 충분한 이해 및 컨설팅 사업 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한가	2						
2. 수행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20)	- 수행인력(전문컨설턴트 및 컨설턴트) 구성 및 근무경력, 컨설팅 실적(내용)이 매 뉴얼 수행에 전문가적 수준인가?	4						
3. 수행계획의 충실성 (30)	- 7가지 매뉴얼에 대한 커리큘럼(이론 및 실습, 현장컨설팅)의 구성 및 수행체계, 수행일정이 충실한가?	3						
	- 매장규모별(소,중,대) 효과적인 컨설팅 지원계획이 충실한가?	3						
4. 현장중심의 기술적 지원 및 활용가능성 (25)	- 다품목 소량생산 및 판매(매출증대)를 위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술적 지원과 현장컨설팅 사후관리 계획이 충분한가?	3						
	- 컨설팅 지원후 효과적인 성과가 기대되는가?	2						
5. 비용의 적정성 (15)	- 컨설팅 수행계획에 따른 컨설팅 비용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가?	3						
평가총점(A×B의 합계, 100점 만점)								

2. 평가 종합의견 및 제안사항

2018년 월 일 심사위원 : _____ (서명)		

2017년도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계약서

- 사업명 : 2018년도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 관련공고 :
- 사업목적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업종변경 또는 신규개설 희망자에 대한 전문가의 경영컨설팅 지원
- 지원내용 : 7개 메뉴얼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현장컨설팅 포함)
- 생산 및 운영분야(정육진열상품, 식육즉석가공제품, 즉석매뉴조리, 생산관리, 매장운영 및 마케팅) 및 매장 설계분야(인테리어 및 가공·판매설비)
- 계약기간 : 2018. . . ~ 2018. . . 까지
- 비용분담 - 발주기관(국고보조금, 50%) : 일금 이백만원 정(₩ 2,000,000)
(1인기준) - 컨설팅신청자(자부담, 50%) : 일금 이백만원 정(₩ 2,000,000)
- 발주기관(한국육가공협회) 계약사항(부가세 포함)
- 계약금액 : 총 백만원 정(₩)
- 사업비 분담액
- ① 발주기관(한국육가공협회) 국고보조금(50%) 지급액 : 일금 만원 정(₩)
▪컨설팅 신청자(명) × 발주기관 국고보조금(50%, 2백만원)
- ② 컨설팅 신청자 자부담금 납입액 : 일금 백만원 정(₩)
▪컨설팅 신청자(명) × 자부담(50%, 2백만원)
- 계약당사자
- ◆ 발주기관(한국육가공협회) 회장 이 문 용 (인)
주 소 :
- ◆ 컨설팅 수행기관(계약상대자) [기관(업체)명]
(대표자) (인)
주 소 :
- ◆ 신청자(계약상대자)
1. 컨설팅 신청자 : (서명)
주 소 :

2. 컨설팅 신청인 : (서명)
주 소 :
3. 컨설팅 신청자 : (서명)
주 소 :
4. 컨설팅 신청자 : (서명)
주 소 :
5. 컨설팅 신청자 : (서명)
주 소 :
6. 컨설팅 신청자 : (서명)
주 소 :
7. 컨설팅 신청자 : (서명)
주 소 :
8. 컨설팅 신청자 : (서명)
주 소 :
9. 컨설팅 신청자 : (서명)
주 소 :
10. 컨설팅 신청자 : (서명)
주 소 :
11. 컨설팅 신청자 : (서명)
주 소 :
12. 컨설팅 신청자 : (서명)
주 소 :
13. 컨설팅 신청자 : (서명)
주 소 :
14. 컨설팅 신청자 : (서명)
주 소 :

15. 컨설팅 신청자 : (서명)
주 소 :
16. 컨설팅 신청자 : (서명)
주 소 :
17. 컨설팅 신청자 : (서명)
주 소 :
18. 컨설팅 신청자 : (서명)
주 소 :
19. 컨설팅 신청자 : (서명)
주 소 :
20. 컨설팅 신청자 : (서명)
주 소 :
21. 컨설팅 신청자 : (서명)
주 소 :
22. 컨설팅 신청자 : (서명)
주 소 :
23. 컨설팅 신청자 : (서명)
주 소 :
24. 컨설팅 신청자 : (서명)
주 소 :
25. 컨설팅 신청자 : (서명)
주 소 :

2018 년 월 일

□ 2018년도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계약 세부내용(첨부)

2018년도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계약 세부내용

「2018도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칭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인 한국육가공협회(이하 “협회”라 칭한다)가 주관하고, 컨설팅 수행기관(계약상대자)과 컨설팅 신청자(계약상대자)에 대한 제반사항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지원 목적)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매뉴얼을 기본서로 활용하여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매장을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제품생산 및 운영요령과 매장설계에 관한 전문가 경영컨설팅을 지원하여 업종변경 및 신설을 통한 매장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매뉴얼”이라 함은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으로 제작된 경영컨설팅 기본서로서, 컨설팅 사업자가 수진업체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하는 내용을 수록한 교재를 말한다.
- ② “집합컨설팅”이라 함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매뉴얼(7개항목)에 대한 이론과 실습교육, 워크샵, 해외연수(모집분야별 해당시)를 포함한다.
- ③ “현장컨설팅”이라 함은 식육판매점 영업자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개설하려는 매장, 기존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매장 등의 현장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 ④ “평가위원회”라 함은 컨설팅 수행기관의 선정평가 및 컨설팅 완료평가 심의, 분쟁의 조정, 사업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협회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컨설팅 지원범위)

- ① 컨설팅 수행기관은 “협회”에 제출한 최종 컨설팅 수행계획서에 의거하여 컨설팅 신청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 ② 컨설팅 수행기관이 지원하는 컨설팅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매뉴얼에 관한 기법을 전수하는 것으로서 향후 컨설팅 신청인의 매출결과는 신청인의 노력, 환경여하 등에 따른 것으로 컨설팅 수행기관에 매출 등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② 컨설팅 수행기관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컨설팅 수행기관 부담으로 한다.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 ① 컨설팅 수행기관과 컨설팅 신청인은 본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고 지원받는 신의, 성실, 근면의 의무를 갖는다.
- ② 컨설팅 수행기관과 컨설팅 신청인은 본 사업과 관련된 지원업무와 비용 등에 대해 어떠한 타협이나 리베이트 제공 등 불성실한 업무추진과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적발 시에 어떠한 처분도 감수해야 한다.

제5조(컨설팅 수행일지 기록 및 비치) 컨설팅 수행기관은 컨설팅 수행일지를 작성하고 협회에서 요구시 언제든지 제출 또는 열람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제6조(컨설팅 중간점검 및 평가)

- ① 중간점검은 평가위원이 컨설팅 수행기관의 교육장소를 방문하여 수행계획서에 의한 진행도, 컨설팅의 적정성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서면평가 및 후속조치를 목적으로 한다.
- ② 컨설팅 수행기관 및 컨설팅 신청인은 평가위원의 중간점검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평가위원의 면담, 현장확인,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평가사화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7조(최종보고서 제출 및 발표보고)

- ① 컨설팅 사업자는 계약기간내 컨설팅 지원을 완료한 후, “협회”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그간 성과에 대해 평가위원회에 발표보고를 해야 한다
- ② “협회”는 제①항의 평가결과를 통해 다음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컨설팅지원 변경승인) 컨설팅 수행기관의 컨설팅 수행계획에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회에 수행계획 변경 요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계약효력의 발생)

- ① 본 사업에 관한 계약 당사자(협회, 컨설팅 사업자, 컨설팅 신청자)간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컨설팅 수행기관은 선정심사후 최종 컨설팅 수행계획서 제출시 계약금액(컨설팅 지원인원×4,000,000원)의 10%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계약종료일에 60일을 추가한다(부가가치세 포함)

제10조(컨설팅 신청인 자부담금 납입)

- ① 컨설팅 신청인은 희망하는 컨설팅 수행기관의 지정계좌에 자부담(50%, ₩ 2,000,000)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 ② 컨설팅 신청인이 자부담금(50%)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컨설팅 지원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국고보조금 지급)

- ① “협회”는 컨설팅 수행기관에 대한 중간점검 및 평가를 통해 국고보조금 중 선금50%(1백만원/1인기준)를 컨설팅 수행기관의 지정계좌로 지급한다.
- ② “협회”는 컨설팅 수행기관의 완료보고 및 최종평가를 통해 국고보조금 중 잔금 50%(1백만원/1인기준)를 컨설팅 수행기관의 지정계좌로 지급한다.
- ③ 컨설팅 수행기관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선금 및 잔금 수령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협회로 제출해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및 정산)

-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컨설팅 수행기간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 사업의 착수가 지체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중간점검 후 컨설팅 수행계획 이행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거나 개선조치에 불응할 경우
 - 다.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하도급 주는 경우
 - 라.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마. 경영상 문제 등으로 본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및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 ② 컨설팅 신청자는 제①항의 “가~라”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컨설팅 수행기관이 제①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회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제①항에 따른 계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귀책사유에 따라 전액 반환하거나 “협회”와 상호 협의하여 정산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제16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처리한다.
- ⑤ 협회는 부당한 이유로 계약 해지를 발생시킨 컨설팅 수행기관에게는 향후 협

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참여 제한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

- ① 컨설팅 수행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획득한 컨설팅 신청인의 사업상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 ② “협회”는 본 사업에 따른 보고서를 공익목적 및 컨설팅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 및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사후관리 의무)

- ① 컨설팅 수행기관은 본 사업종료후 6개월~2년 이내 컨설팅 신청자의 매장개설 (변경전후 사진 포함), 매출액 변화 등 지원효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①항에 대해 불성실할 경우 차년도 수행기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관련자료의 보관 등)

- ① 컨설팅 수행기관은 본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제반 관련문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협회”, 평가위원회, 평가점검반의 사업현장 확인, 관련서류의 열람 및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② 제①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컨설팅 수행기관이 증거능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제16조(손해배상책임)

컨설팅 수행기관과 컨설팅 신청인은 각각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 수행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기타 상거래상의 관습에 의한다.

제17조(준수사항)

동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급 및 사업비정산, 결과보고 등 절차는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준수한다(2017년부터)

제18조(관할법원)

이 협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협회” 소재지 관할법원을 분쟁해결기관으로 한다.

제19조(기타사항)

201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경영컨설팅 수행기관 모집공고(공고번호 제2017-호. '18..) 및 201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경영컨설팅 신청자 모집공고(공고번호 제2017-호. '18..)에서 정한 내용도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한다.

4. 컨설팅 매뉴얼 항목에서 관심순위

(7개 매뉴얼 항목에 대한 관심순위를 기재 1~7까지 기재)

분야	매뉴얼 항목	관심순위
생산 및 운영	① 정육진열상품 매뉴얼	
	② 식육즉석가공제품 매뉴얼	
	③ 즉석메뉴조리 매뉴얼	
	④ 생산관리 매뉴얼	
	⑤ 매장운영 및 마케팅 매뉴얼	
매장설계	⑥ 인테리어 매뉴얼	
	⑦ 가공·판매설비 매뉴얼	

5. 컨설팅 지원에 따른 향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업종변경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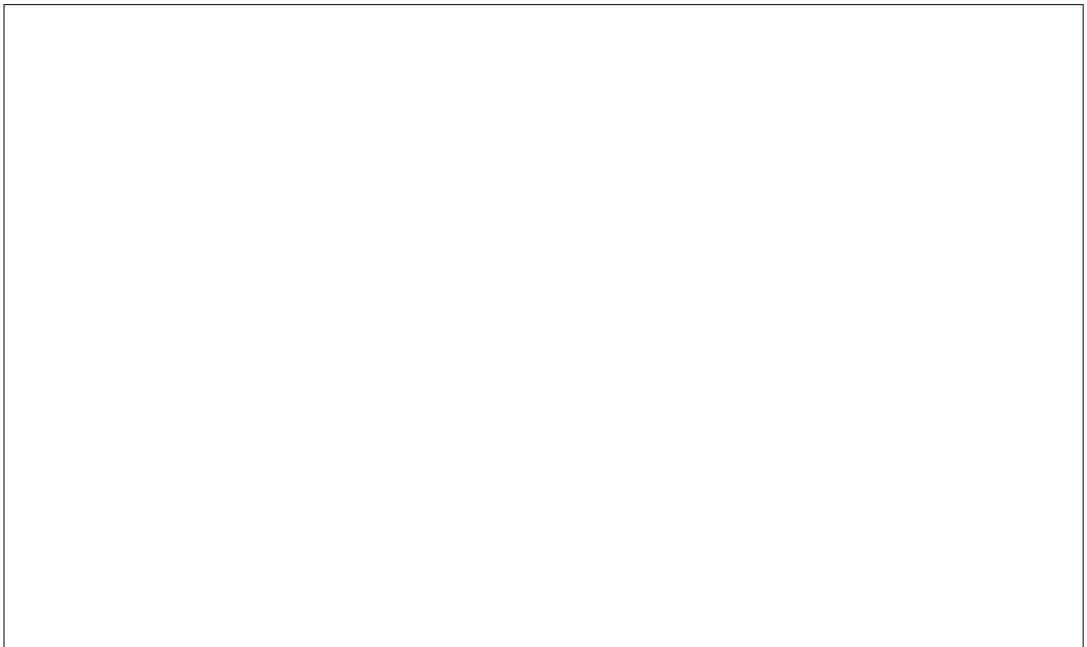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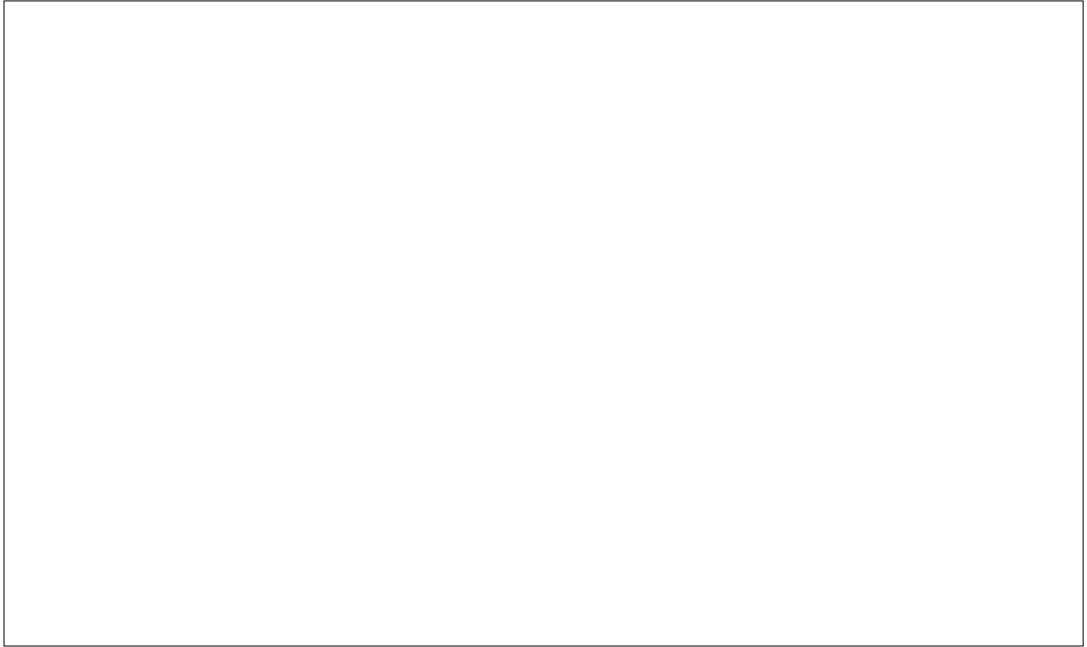
구분	향후계획
현장컨설팅 요청장소	<input type="checkbox"/> 현 매장에서 업종변경 (주소 : <input type="checkbox"/> 장소 이전후 업종변경 또는 개설 (주소 :
이전시 자가/임대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임대
매장확대시 (실평수)	<input type="checkbox"/> 26.4㎡미만 <input type="checkbox"/> 33.1㎡내외 <input type="checkbox"/> 49.6㎡내외 <input type="checkbox"/> 66.1㎡내외 <input type="checkbox"/> 82.6㎡내외 <input type="checkbox"/> 99.2㎡내외 <input type="checkbox"/> 115.7㎡내외 <input type="checkbox"/> 132.2㎡ 이상
추가 신고업종	<input type="checkbox"/>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만 변경 영업 <input type="checkbox"/> 휴게음식점영업 <input type="checkbox"/> 일반음식점영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향후 판매제품	<input type="checkbox"/> 양념육 <input type="checkbox"/> 돈가스 <input type="checkbox"/> 햄 <input type="checkbox"/> 소시지 <input type="checkbox"/> 식육가공품(햄, 소시지 등)을 반입하여 분할판매(26.4㎡ 미만에서도 가능) <input type="checkbox"/> 햄 소시지 등 반제품을 반입하여 가공조리후 판매 (26.4㎡ 이상에서만 가능)
업종변경 완료예상	<input type="checkbox"/> '17년말까지 <input type="checkbox"/> '18년 월까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 현장컨설팅 요청장소 : 향후 컨설팅 신청인이 업종변경 또는 신규로 개설(장소 이전 포함)코자 하는 장소로서 컨설팅 사업자가 방문하여 현장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매장

※ 이외 계획 :

6. 현재 매장사진(총 8컷)

- 내부사진(4컷 이상), 외부에서 매장쪽 사진(2컷), 매장 주변사진(2컷)
 - 사진은 A4용지에 사진 각 2컷씩, 총 4매를 신청서에 첨부하거나, 이메일 (kmia@korea.com)로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컨설팅 매뉴얼 항목에서 관심순위

(7개 매뉴얼 항목에 대한 관심순위를 기재 1~7까지 기재)

분야	매뉴얼 항목	관심순위
생산 및 운영	① 정육진열상품 매뉴얼	
	② 식육즉석가공제품 매뉴얼	
	③ 즉석메뉴조리 매뉴얼	
	④ 생산관리 매뉴얼	
	⑤ 매장운영 및 마케팅 매뉴얼	
매장설계	⑥ 인테리어 매뉴얼	
	⑦ 가공·판매설비 매뉴얼	

5. 컨설팅 지원에 따른 향후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창업 계획

구분	향후계획
현장컨설팅 요청장소	<input type="checkbox"/> 주소 :
창업시 자가/임대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임대
매장면적 (실평수)	<input type="checkbox"/> 26.4㎡미만 <input type="checkbox"/> 33.1㎡내외 <input type="checkbox"/> 49.6㎡내외 <input type="checkbox"/> 66.1㎡내외 <input type="checkbox"/> 82.6㎡내외 <input type="checkbox"/> 99.2㎡내외 <input type="checkbox"/> 115.7㎡내외 <input type="checkbox"/> 132.2㎡ 이상
추가신고 업종	<input type="checkbox"/>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만 변경 영업 <input type="checkbox"/> 휴게음식점영업 <input type="checkbox"/> 일반음식점영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향후 판매제품	<input type="checkbox"/> 양념육 <input type="checkbox"/> 돈가스 <input type="checkbox"/> 햄 <input type="checkbox"/> 소시지 <input type="checkbox"/> 식육가공품(햄, 소시지 등)을 반입하여 분할판매(26.4㎡ 미만에서도 가능) <input type="checkbox"/> 햄 소시지 등 반제품을 반입하여 가공조리후 판매 (26.4㎡ 이상에서만 가능)
창업 완료시기	<input type="checkbox"/> '17년말까지 <input type="checkbox"/> '18년 월까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 현장컨설팅 요청장소 : 향후 컨설팅 신청인이 신규로 매장을 창업 개설코자 하는 장소로서 컨설팅 사업자가 방문하여 현장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매장

※ 이외 계획 :

축산분야

V. 축산농가경영안정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세부사업명	친환경농업직불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친환경축산직불			예산 (백만원)	17,153			
사업목적	○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사업 주요내용	○ 신청일 현재 HACCP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인증종류별(유기, 무항생제) 직불금 지급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3조의2~제23조의8							
지원자격 및 요건	○ HACCP 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안전축산물소득보조금(이하 "친환경축산보조금"이라 한다) 지급 시까지 인증이 유효한 자 - 동일 농장에 대하여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의 가족 또는 동업자 명의로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 중 관리기관으로부터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지원한도	○ 농가당 연간 지급한도액 : (유기) 3천만원, (무항생제) 2천만원 -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지정서 발급)은 보조금 지원액의 20%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지정기간이 보조금 지급기간('16. 11. 1. ~ '17. 10. 31.) 보다 짧을 경우 지정기간 안에 출하된 물량에 대해서만 20%를 가산함(보조금 지급 시점에 지정이 유효할 필요는 없음) * 최종 지급액 산정 시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속			
	합 계	17,757	17,153	17,153	17,153			
	국 고	17,757	17,153	17,153	17,153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과 장 박홍식 사무관 이수환 주무관 박수연		044-201-2381 044-201-2382 044-201-238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정보과		과 장 박은엽 사무관 김현태 주무관 배승호		054-429-4071 054-429-4072 054-429-4079		
친환경 민간인증기관				인증담당자				
신청시기	매년 별도 공지			사업시행기관		농산물품질관리원		
관련자료	친환경축산직불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 2018년 3월 1일부터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 202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로 인증한 농업인 및 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HACCP 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안전축산물소득보조금(이하 “친환경축산보조금”이라 한다) 지급 시까지 인증이 유효한 자
 - * HACCP 농장인증의 경우 업종이 ‘가축사육업’이어야 한다.
- 동일 농장에 대하여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의 가족 또는 동업자 명의로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 중 관리기관으로부터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3. 지원기준 및 지급기간 산출방법

- 지원기준
 -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유기는 5년, 무항생제는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무항생제는 3회 지급)
- 지급기간 산출방법
 - 동일농장에서 친환경인증의 종류를 달리한 경우에도 3~5년간만 지급
 - 인증농가가 2개의 농장을 인증 받은 경우 합산하여 3~5년간만 지급
 - 3~5년간 친환경축산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후 농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가족이 3~5년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 다만, 가족일 경우라도 개별적으로 친환경인증 및 HACCP인증을 받고 독립 축사를 관리·운영시 각각 보조금 지급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재원 : 농특회계(농특세 사업계정)
- 지원형태 : 국고 보조 100%
- 지급대상 기간 : '17. 11. 1. ~ '18. 10. 31.
 - HACCP 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지급대상 기간 동안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판매한 거래내역서(정산서, 판매내역서 등)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 다만, 근거자료에는 친환경인증 여부를 알 수 있는 문자(유기인증, 무항생제인증)나 인증도형 표시가 있어야 함
 - 토종닭의 경우 토종닭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농촌진흥청, 대한양계협회 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종축, 종란(계란, 오리알, 메추리알)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급단가
 - 한 우 : 유기 170,000원/마리, 무항생제 65,000원/마리
 - * 육우는 한우 지급단가 보다 50% 감액 지급
 - 젖 소(우유) : 유기 50원/L, 무항생제 10원/L(우유 1ℓ 는 1.03kg임)
 - 돼 지 : 유기 16,000원/마리, 무항생제 6,000원/마리
 - 산란계(계란) : 유기 10원/개, 무항생제 1원/개
 - * 다만, 출하량 입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따라 지급 할 수 있음.
 - 산식 : $\{(인증 마리수 \times 20개 \times 단가 \times 개월 수) - (입증량 \times 단가)\} \times 0.5$
 - 육 계 : 유기 200원/마리, 무항생제 60원/마리
 - * 토종닭은 육계 지급단가 보다 30% 증액 지급
 - 오 리 : 유기 400원/마리, 무항생제 120원/마리
 - 오리알 : 유기 20원/개, 무항생제 2원/개

- 메추리알 : 무항생제 4원/10개 혹은 4원/100g
 - * 다만, 출하량 입증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따라 지급 할 수 있음.
 - 산식 : $\{(인증 마리수 \times 20개 \times 단가 \times 개월 수) - (입증량 \times 단가)\} \times 0.5$
- 산 양 : 무항생제 4,584원/마리
- 산양유 : 무항생제 34원/리터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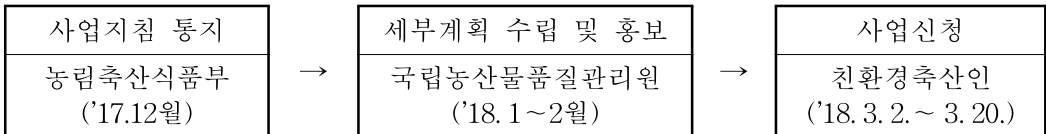
- 농가당 연간 지급한도액 : (유기) 3천만원, (무항생제) 2천만원
 -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지정서 발급)은 보조금 지원액의 20%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지정기간이 보조금 지급기간('17. 11. 1.~'18. 10. 31.) 보다 짧은 경우 지정기간 안에 출하된 물량에 대해서만 20%를 가산함(보조금 지급 시점에 지정이 유효할 필요는 없음)
 - * 최종 지급액 산정 시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
- 지급 방법
 - '17. 11. 1.부터 '18. 10. 31.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18. 12월 지급
 - * 다만, 산란계는 지급조건을 충족한 기간에 대하여 월단위로 산출하여 지급(1개월 미만은 제외)
 - 신청기간 이후 인증종류가 변경될 경우에도 출하된 인증종류에 따라 지급 (무항생제에서 유기로 변경된 경우만 해당)
 - * 유기에서 무항생제로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무항생제 지급단가로 지급
 -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보조금 지급 시에 친환경 및 HACCP 인증이 취소되거나 포기한 경우 또는 인증을 연장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당해연도에 종료된 경우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 보조금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은 유효하나 당해연도 기간(사업신청일로부터 보조금 지급 시까지) 중에 인증 유효기간이 연속되지 못하고 인증기간의 공백이 생긴 경우에도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표시정지를 받은 기간 중에 출하한 실적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

1.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생산·판매실적을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관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2. 사업신청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홈페이지 공고 및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전체 농업인에게 개별 통보 등 홍보 실시('18. 1~2월)
- 사업신청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장소재지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서 제출('18. 3. 2. ~ 3.20.)
- 신청서 양식 : 별지 서식 참조
 -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신청서 접수 시 필요한 서류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이 교부한 HACCP 인증서 사본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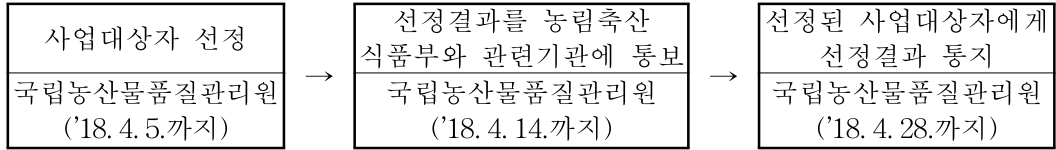
3. 사업자 선정단계

가. 사업대상자 선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신청 금액의 합이 전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① 유기축산농가
- ②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농가
- ③ 친환경인증과 HACCP인증을 모두 받은 일자가 빠른 날짜
(두가지 모두 충족 되어야 함)
- ④ ‘③’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일자가 같은 경우 친환경인증 일자가 빠른 농가
- ⑤ ‘③’과 ‘④’가 모두 같은 경우 사육규모가 큰 농가

-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는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기자로 선정·관리
- 불용예산 발생 시 사업대기자 중에서 추가 선정
 - 사업대기자 중 위의 사업대상자 선정순위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통지양식 :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나. 신청내용 변경

- 변경대상
 - (사업대상자 변경)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 농지(축사)의 매도·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를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
 - * 사업대상 축사(농장)의 경영주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인증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승계한 농업인에게 지급함.
 - (인증기관)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인증종류) 사업신청 후 인증종류(유기·무항생제)가 변경된 경우
 - (농지현황) 사업장소재지의 주소(지번)변경, 인증품목 축소, 필지수 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에 기재된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 * 인증대상자, 인증기관 등 인증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과 변경된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이 연속되어야 함.
- 변경신청 기간 : 인증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사무소에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친환경축산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변경신고서 제출
 - * 변경신고서에는 ‘인증서 사본 등 승계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4. 이행점검 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민간인증기관에서는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제40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친환경축산업 이행여부 및 인증변동사항 유무 등을 확인

- 이행점검 요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인증기관(지원·사무소 포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본원)은 보조금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인증기관(HACCP 및 친환경 인증기관)에 통보하여 이행점검을 요청('18. 4. 28.까지)
 - * 민간인증기관의 이행점검과는 별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선정된 사업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행점검 실시
- 이행점검 기간 : '17. 11. 1. ~ '18. 10. 31. (1년간)
- 점검내용 : 인증번호, 인증농장·축종 등 일치여부, 인증기준 준수 여부(현장조사), 농업경영체등록 여부, 중복신청 여부 등
 - 인증기관에서는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별표5(인증품 사후관리 조사요령)에 따라 연 1회 이상 생산과정조사를 실시
- 점검결과 통보(인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인증기관에서는 이행점검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18. 11. 10.까지)
 - * 점검결과는 Agrix 시스템(인증기관에서 직접 입력)을 통해서 제출

5.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가.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요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은 농업인은 거래내역서(정산서, 세금계산서 등) 등 생산·판매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에 보조금을 신청('18. 11. 1.~11. 10.)
 - 신청서 양식 : [별지 제4호서식] 친환경축산보조금 지원 자금 신청서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업대상자의 자금 신청결과 보조금의 불용이 예상될 경우 사업대기자 중에서 추가 지급대상자를 선정·통보하고, 해당 지원·사무소로 세금계산서 등 생산·판매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
 - ** 보조금 신청 기간 내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인증기관이 제출한 이행점검 결과와 자체 점검결과를 토대로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18. 11. 17.까지)
 - 인증취소, 인증기간만료, 신청포기, 사업장소재지 및 인증품목 불일치 등 부적격자 제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가에서 제출한 보조금 신청서, 자격요건 및 생산·판매실적 확인('18. 11. 13.~11. 30.)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및 생산·판매실적 확인 결과 지급소요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청('18. 12. 8.까지)

나. 사업비 배정 및 보조금 지급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사업비 배정('18. 12. 15.까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축산농가에게 보조금 지급('18. 12. 15.까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업비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에게 지급대상 기간 내 입증된 생산·판매 실적에 대한 보조금 지급

6. 자금집행 후 관리단계(제재)

- HACCP 인증이 취소되거나, 보조금 신청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취소 또는 포기한 날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인증기관은 이행점검 종료(10. 31.) 후에도 보조금 지급 시까지 지급대상자에 대한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에 통보
- 농업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하고, 향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참여를 제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7. 이행점검 등 전(全)단계 협조사항

-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및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

IV

201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2019년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붙임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농장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제출('19. 3. 2.~ 3. 20.)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자 택 전 화			
	주 소					휴 대 전 화			
						e-mail			
농장현황	농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농장전화					대 표 자	성 명		
	Fax						생년월일		
	설 립 일	년	월	일	전화번호				
	구성원수	명					e-mail		
축 종	인증 종류	농 장 소 재 지				사육 두수	인증 두수	예 상 출하량 (단위)	예 상 금 액 (천원)
		시·군·구	읍·면	리·동	지번				
합 계									
<p>※ 향후 이행점검 결과 등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급대상 기간 중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반드시 인증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대상자·인증기관·인증종류 등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p>「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3조의6제1항과 같은 영 시행규칙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padding: 10px; display: inline-block;"> 직인 </div>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 택 전 화	
		휴 대 전 화	
		e-mail	

변경사항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일자
사 업 대 상 자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종류	인증종류		
	인증번호		
농지현황	농지(축사)주소		
	인증품목		
	사육두수		

※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등 변경에 따른 신청농지 변경내용은 별지로 작성 가능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	--------

친환경축산보조금 신청내용(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동의하는 경우 네모(□) 안에 ✓표시)합니다.

-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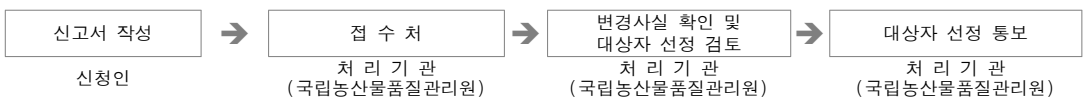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안전관리인증농장(HACCP) 인증서 사본 1부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1부 3. 사업대상자 승계 관련 서류(사업대상자 변경에 한함) 1부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식품분야

I . 가격안정 및 유통활성화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세부사업명	국가인증 농식품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 보조					
내역사업명	GAP위생시설 보완 지원	예산 (백만원)	1,050					
사업목적	○ GAP 인증시설 확대로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사업 주요내용	○ 농산물 처리시설에의 위생관리시설 보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조(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등), 제110조(자금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p>○ 지원대상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농산물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농가보유시설을 갖추었거나 희망하는 자</p> <p>○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p>* 생산자단체와 일반유통업체가 공동투자(단,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연합이 지분의 50%이상 점유)하는 산지유통시설은 이 지침에서 생산자단체가 사업자가 되는 산지유통시설로 봄</p> <p>○ 우선지원 - '17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대상자 - '17년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대상자 - GAP 농산물의 취급물량 및 확대계획을 통해 GAP 면적을 확대하려는 자 - 참여의지와 품질관리능력, 가동일수, 손익현황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단체</p>							
지원한도	○ 300백만원 이내/개소							
재원구성(%)	국고	30%, 50%	지방비	20%, 50%	융자	-	자부담	50%
	* 국고 : (생산자단체) 30% (시장군수) 50% * 지방비 : (생산자단체) 20% (시장군수) 50% * 자부담 : (생산자단체) 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5,000	3,500	3,500	(계속)			
	국 고	1,500	1,050	1,050	-			
	지방비	1,000	700	700	-			
	자부담	2,500	1,750	1,750	-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과	식생활소비정책과	담당자	과 장 정혜련	연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		사무관 이원형	044-201-2271		
					사무관 조용준	044-201-2278		
						054-429-4172		
신청시기	정기(당해연도 2.28.일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GAP위생시설 보완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조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 농산물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농가보유시설을 갖추었거나 희망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 * 생산자단체와 일반유통업체가 공동투자(단,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연합이 지분의 50%이상 점유)하는 산지유통시설은 이 지침에서 생산자단체가 사업자가 되는 산지유통시설로 봄
- 시장·군수(자치구 포함)

[우선 지원]

- '18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대상자
- '18년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대상자
- GAP 농산물의 취급물량 확대를 통해 GAP 면적을 확대하려는 자
- 참여의지와 품질관리능력, 가동일수, 손익현황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단체
 - * 다만, 동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5년간) 또는 동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을 포기한 자(3년간)는 제외

3. 지원대상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구 분	주 요 시 설 내 용
시 설 물	작업장 청정도 관리에 필요한 설비(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등)
건조저장	통풍, 냉각 등을 통해 곡온(穀溫)을 낮출 수 있는 장치, 쥐 등 침입방지 장치
가 공 실	가공단계별 분리·구획을 위한 칸막이, 창문 밀폐 장치, 방충망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견고, 금속검출기 등 이물질 제어 장비
잡진 및 부산물실	부산물 처리시설(미생물제조기, 액비제조기 등)
수처리 시설	용수저장 탱크 밀폐가 가능한 덮개 등
위 생 실	화장실(손세척시설과 건조시설), 위생소독실(에워샤워기, 소독실, 이물질 제거, 작업복 등), 청소설비 전용 보관함 등
수송운반	물류기기 세척시설
기 타	○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위생시설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가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전체사업비 5%내에서 시설설치 타당성 진단비용으로 사용 가능 * 설비는 전문기관(한국식품연구원 등의 기준설계도를 기본으로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시공
제 외	○ 물류장비(운송차량 등), 판매장, 원료구입, 토지매입 경비 ○ 홍보, 연구개발 등 경상적 경비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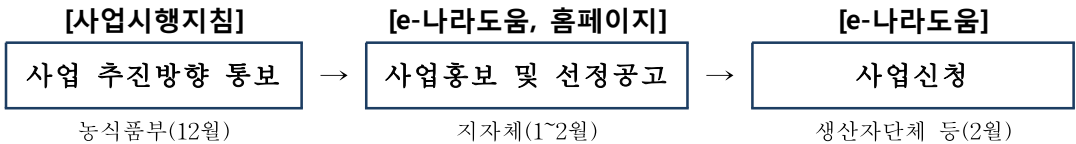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생산자단체 등)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시장·군수)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300백만원 이내/개소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함) 및 시·도에 통지
 - 지자체 배정기준에 의거 사업비 통보(수요량 60%, GAP 면적 20%, GAP 시설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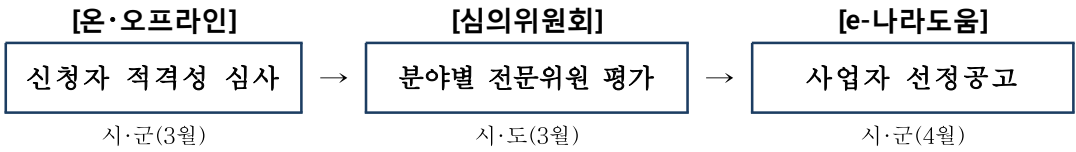
지자체(시·도, 시·군·구)

- 시장·군수는 사업 신청 대상을 사업성 1차 진단(별지 3호) 후 신청서, 계획서 및 구비서류 등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신청품목을 주 사업품목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생산유통시설(APC, RPC, 수확 후 자가 보유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등이 운영하는 조직 중 다음의 신청 대상자에 대하여 우선 선정

사업 대상자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GAP 위생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별지 1, 2호)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구비서류를 편철순서에 의해 작성·제출
 - * 모든 제출서류는 최종 사업대상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 선정내역을 검토
 - 시·도의 사업대상 선정결과가 지원목적, 지침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사업대상자가 확정된 후 지자체 담당자, 사업대상자 집합교육 실시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을 구성하여 평가 실시(평가표 별지 4호)
 - 전문위원은 건축, 세무, 유통·홍보 등 그 분야에 전문가로 구성하되, GAP 인증시설 지정기관인 농관원 GAP 시설 담당자는 필히 1명 포함할 것
- 사업평가 후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 및 시·군에 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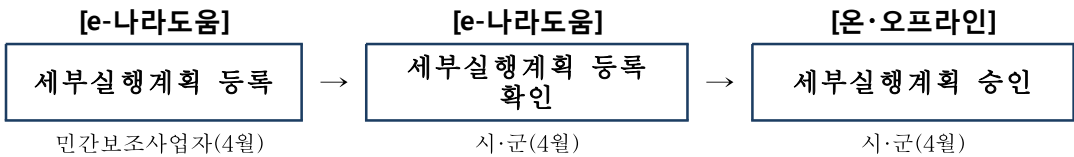
[주요 점검사항]

- 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의 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사업성 진단을 실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78조제1항에 근거한 부정수급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 사업성 진단서는 심사기준표의 심사항목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6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을 판단해 지원유무 판단

시·군

- 시·도의 사업성 평가 시 구비서류 준비 및 현지 평가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대상자에게 일정 및 계획 등을 사전 통보
- 시도에서 사업대상자 확정내역이 통보되면 사업대상자에 선정결과 통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 및 사업관리 등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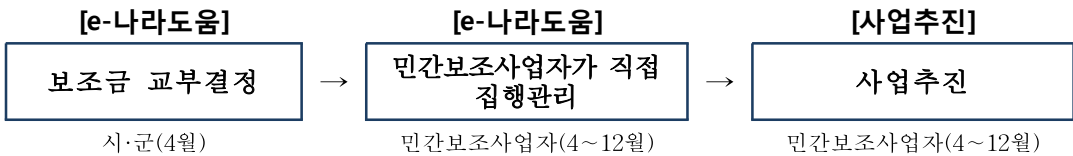
지자체(시·도·시·군·구)

- 시장·군수는 세부실행계획 승인, 월별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세부실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할 수 있음
- 승인을 받은 세부실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 내의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 단, 지자체장은 자체 사업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고, 사업대상자의 변경요청사유 및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을 실시하여 대상 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사업 대상자

- 사업계획 및 월별 공정계획 수립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세부실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의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자금 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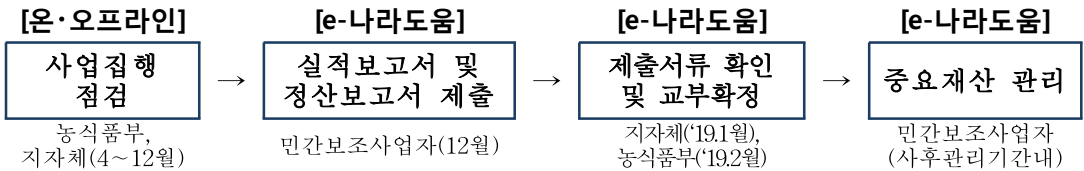
지자체(시·도·시·군·구)

- 시·도에서는 시·군의 보조금 교부 신청내역의 적정성 여부와 예산확보 현황을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에서는 사업비를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시·군에 자금 교부
- 시·군은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집행) 한 후 사업시행 지침에서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 시 전문기관(한국식품연구원 등)의 감리보고서를 첨부하고, 감리비는 사업비 정산 시 시장·군수 책임 하에 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보조금에서 감리 기관에 직접 지급

사업 대상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자부담을 우선집행
-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
 - 다만,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 가능
 - * 사업계획을 변경한 후 환급금 재투자 규정 마련('13.7.16.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 ** 사업계획 수립시 당시 부터 환급금 재투자 규정 마련('15.1.1)

5.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와 사업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연 2회 사업추진 실적 등을 농관원과 합동점검 실시
 - 점검항목 : 사업계획 시행절차, 사업비 집행실적, 운영현황 등

지자체(시·도·시·군·구)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 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시·군(시·도)은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자가 제출(또는 열람 및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거당 설정 등 확인

- 지자체장은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에 의거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관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사업 대상자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자체장은 지도·감독
- 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의 승인 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또는 구조변경 등 안됨
 - *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생산·유통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유통정책과)에서 실시하며, 종합평가지 시·도는 협조하여야 함.

《 제 재 》

- 보조사업자가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지원의 제한을 받음

《 기타사항 》

- 이 지침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부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시행
- 지원내용 세부사업추진일정 등은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 201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8년도 10월 이전 조사

2. 201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및 제출기한 : 시장·군수, 2019년 2월말까지
- 신청자격 : 2018년도 신청자격과 동일

3. 기타사항

- 본 지원사업 이외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 사업(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을 통해서도 GAP위생시설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등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 사업 시행지침을 참조
-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 사업추진요령은 2018년 사업내용을 참조바라며, 여건 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 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구비 서류]

유의사항

※ 신청대상자별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순서별로 정리하여 제출할 것
(시군은 기본요건점검표 별지 3호서식을 추가하여 시·도에 제출)

1. 사업신청서(별지 1), 사업계획서(별지 2) 각 1부.
2.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각 1부.
3. 자부담금 조달계획서 1부.
4.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관련 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본 각 1부
 - ②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④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2년간/국세청) 1부.
 - ⑤ 최근년도 2년간 재무제표 1부(세무사 또는 공인회계기관 확인) 1부.
 - ⑥ 신용조사서 1부.
 - ⑦ 정관
5. GAP 취급실적(최근 2년간/농가, 면적 포함)

시설 개·보수 계획

1. 시설 개·보수 기간 : 20 ~ 20

2. 시설 개·보수 내용

시설 개·보수 내역	세부내용	소요금액(천원)	비고
계			
사진 (시설개보수 사업내역)	세부공사 내용 기재 예) 바닥공사, 칸막이 공사 등		
※ 공사 계약건 단위로 기재			

[별지 2(생산자단체용)]

‘18년 GAP 시설보완 사업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단체명) :

2. 현 황

가. GAP 참여농가 : 명(참여농가 현황 첨부)

나. 운영실적 : 설립일(‘00.00.00), ○○년 경영

< 그간 경영체 우수 운영실적 등 기재 >

-
-
-

다. 사업실적(전년도)

품 목	상표명	취급물량(톤)				매출액(백만원)				주 요 출하처
		계	친환경	GAP	기타	계	친환경	GAP	기타	
계										

- (주) 1. 상표명 : ○○ 딸기, ○○ 사과 등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2.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라. 주 품목 원료매입(자체생산도 포함) 실적 및 계획

품목명	‘16년도(톤)				‘17년도(톤)				증감(톤)			
	계	친환경	GAP	기타	계	친환경	GAP	기타	계	친환경	GAP	기타
계												

마. 유통시설 보유현황

집하시설	선별(과)시 설	저 온 저장시설	일반창고	예냉시설	선별(과)기	기타공동 시설 및 장비
동 m ² ()	동 m ² ()	동 m ² ()	동 m ² ()	동 m ² ()	동 m ² ()	조 ()

(주) ()안에는 유통시설 처리능력(일시저장능력, 1일 처리능력)을 기재.

3. 시설설치계획

가. 총사업비(생산자조직)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00%)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시설·장비 등)				

(주) 생산자단체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나. 사업장 현황

구 분	내 용	
주 소		
소유자		
면 적	m2 (기 건물 : m2)	
사 진	[위치도]	[사진]

다. 시설 설치계획

구 분	단위	사업량	단 가 (천원)	사업비 (백만원)
계				
세부사업명 기재				

(주) GAP 위생시설·장비설치 기본설계서(안) 첨부(기기제원 제시)

라. 사업추진일정(계획)

- 설계보완 :
- 착 공 :
- 준 공 :
- 정 산 :

4. 사업계획

가.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운 용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자부담금		○ 자체자금	
○ 운영비		○ 신규출자	
- 매취자금		○ 외부차입	
- 관리비 등		○ 기 타	

나. 손익 추정

(단위 : 백만원)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계		
○ 매출액		○ 매출원가		
-매취판매액		- 매입원가		
-선별포장수입		- 선별포장비용		
○ 기타		○ 관리비		

다. 사업기반 강화계획

-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출하처 확보 및 개발 방안
- GAP 사업 참여 및 품질관리계획 등 인증농산물 확대방안(구체적기재)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5. 기대효과

< 사업추진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정량적, 정성적 기대효과 설명 >

- GAP 인증 취급물량 증대, 매출액 증대, GAP인증시설 획득 등
-
- * 사업년도, 사업 후 향후 3년간 목표 기재

6. 기 타

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
- 연도 :
- 사업품목 :
- 세부사업 : 내용 및 규모 등 기재
- 사업비(예산기준)

계	사업비 (백만원)			
	국고보조	국고용자	지방비	자부담

나. 기타 특기사항

[별지 3(시군용)]

'18년 GAP 시설보완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농협 / ○○○법인 등]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법인)	과세표준증명원상 매출액이 총 사업비보다 높습니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총 출자금 1억 원 이상입니까? * 부동산이 법인명의 소유권 보존등기, 현금이 법인명으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된 경우 인정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된 법인입니까?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입니까?(최근 결산재무제표 유무)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5명 이상입니까?(농업경영체등록유무 등) * 영농, 영여조합경우만 해당		
대상품목	대상품목에 대해 GAP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입니까?		
시군비	시군비 예산에 확보 가능합니까?		
구비서류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시설검토	농산물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농가보유시설을 갖추었거나, 갖추 수 있는 대상자입니까?		
	사업완료 후 GAP 인증 면적이 늘어 날 수 있습니까? * 연도별 계획 : '16년(농가 ha), '17년(농가 ha), '18년(농가 ha)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을 검토하였습니까?		
	시설·개보수 관련 관련기관(지자체 등)가 사전 협의가 되었습니까?		
	사업내용 중 지원제의 대상 사업이 포함되었는가?		
지원 제한 기준	동일사업으로 5년 이내 지원을 받은 업체입니까?		
	대표자 및 법인 구성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제재) 중인 업체입니까?		
	동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3년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인가요?		
가 점	사업대상자 가점 부분 확인 1. '16, '17년, '18년 주산지 GAP 토양용수검사 대상(○)		

* 예, 아니오 체크에서 노란색에 표시 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자에 제외

[별지 4(시도용)]

'18년 GAP 시설보완 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

평가분야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평 가 점 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부족
계			105					
GAP인증 참여농가 (10점)	참 여 율 (10)	참여 농가수	10	30명 이상	29~20	19~10	9~5	4명 이하
				(10)	(8)	(6)	(4)	(2)
유통시설 운영실적 (10점)	시설능력 (10)	선별장, 예냉실, 저온 저장고, 일반창고 등 * 계획서의 유통시설 보유현황 확인	10	4종 이상	3종	2종	1종	0
				(10)	(8)	(6)	(4)	(2)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타당성 (30점)	구 체 성 (15)	사업내용의 구체성·타당성	15	(15)	(12)	(9)	(6)	(3)
	비용책정의 적 정 성 (15)	세부 항목별 비용의 과다 계상 여부	15	(15)	(12)	(9)	(6)	(3)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20점)	경영체의 역량수준 (10)	경영체 사업경험 및 역량	10	10년 이상	9~7	6~5	4~3	2년 이하
	자 부 담 (10)	자부담능력	10	(10)	(8)	(6)	(4)	(2)
성과창출 가능성 (20점)	사업성과 기 여 도 (20)	사업내용이 경영체의 GAP 인증면적 및 매출액 증가 효과 등	20	(20)	(16)	(12)	(8)	(4)
정부지원의 필요성 (10점)	지원필요성 (10)	사업내용이 경영체의 재무상황, 공공성을 감안할 때 정부지원 필요성	10	(10)	(8)	(6)	(4)	(2)
가점(5점)			5	'16년, '17년, '18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신청대상				
<p>< 평가자의 종합의견 ></p> <p style="font-size: 1.2em; margin-top: 20px;">심사자 서명 :</p>								

세부사업명	전통발효식품육성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발효미생물상품화지원		예산 (백만원)	200				
사업목적	○ 전통방식으로 제조된 발효식품으로부터 추출한 유용균주를 업체에 보급하고 한국형균주를 활용한 전통식품 개발지원을 통해 발효식품산업 발전 도모							
사업 주요내용	○ (보급) 전통식품 제조업체에 맞춤형 유용균주 보급 ○ (제품화) 공급받은 유용균주를 활용하여 전통식품 개발 및 상품화							
국고보조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유용균주를 확보한 기관 및 유용균주를 활용할 수 있는 전통식품 업체							
지원한도	○ 자치단체경상보조 50%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100	200	200			
	국 고	-	100	200	2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진흥과 식품산업진흥부		조주현 문재훈	044-201-2134 061-931-0732			
신청시기	'18.2~3월			사업시행기관	지자체			
관련자료	발효미생물상품화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전통발효식품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식품업체(수산물, 주류 제외)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첨가물로 고시된 산업화 가능한 유용균주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유용균주에 대한 품질관리, 제품개발, 기술지원 등이 가능한 정부 및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사업자 단체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장류, 식초류 등 국내산 발효종균을 보급기관을 통해 기존 제품에 접목 또는 신제품을 개발하여 시중에 출시하고자 하는 업체
 - * 장류, 식초류 등 해당 식품제조업 등록을 완료한 업체

<사업신청 제한>

- 최근 3년간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분야의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업체
- 연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체
- 신청일 현재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사업체

3. 지원대상

- 종균을 활용하여 제품을 개발, 상품화하고자 하는 전통발효식품 제조 중소기업
 - 유용종균 보급기관을 선정해 종균보급 및 제품화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직접생산비(원료구입, 임가공비, 디자인 개발 등)
- 연구재료비(테스트베드상품 평가, 시험분석비 등)
 - * 기관 운영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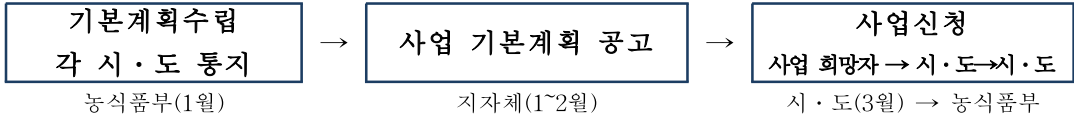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 종균사용 및 기술료는 종균보급 기관과 업체간 별도 협의결정(전체 사업비의 25%를 초과할 수 없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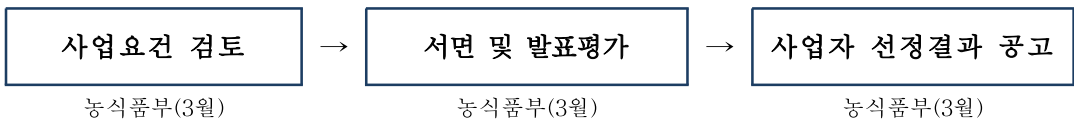
- 업체별 5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사업성,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

1. 사업신청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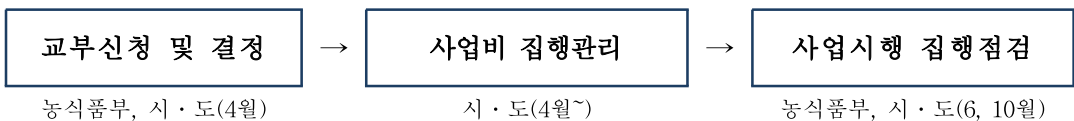
- 농식품부는 2018년 1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시·도는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2. 사업자 선정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절차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되, 선정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요건검토, 선정위원회를 통한 서면 및 발표평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개소별 사업비 조정
- 사업자(기관, 업체) 매칭
 - 선정된 종균보급 기관과 제조업체 간의 맞춤형 종균 및 기술료 협의를 통해 매칭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단계



- 각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
- 각 시·도는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종균보급기관과 제조업체는 종균보급 및 제품화 사업시행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추진기관의 개산금 교부 신청에 의해 예산 범위의 70% 이내에서 교부 가능하며,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결과보고서 및 정산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

* 집행목적 및 방법의 부적정성, 증빙미비, 세무처리 미흡 등에 인한 사업비 불인정

IV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결과보고서 및 관련 증빙 제출
 - 결과보고서 : 종균 보급 및 제품화 실적·성과 등
 - 증빙 : 종균 보급 확인서(추진기관), 품목제조보고서 및 생산실적보고서(수혜업체)

2. 평가

- 제조업체별 균주의 적합성 및 기술지원, 제품화 결과에 따른 보급기관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우수 종균보급기관은 익년도 종균보급기관선정시 인센티브 부여
- * 매출액 성과는 익년 3월말까지 제출 가능

세부사업명	기능성식품산업육성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기능성 원료등록 지원	예산 (백만원)	125					
사업목적	○ 농업과 식품사업간 연계발전 및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육성을 위해 국내농산물 유래 우수소재의 기능성 원료 개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업 주요내용	○ 기능성 개별인증등록(식약처)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컨설팅 등 지원 ○ 기능성소재 발굴을 위한 컨설팅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 「식품산업진흥법」 제8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식품사업자, 농업법인, 농업인 등 -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 식품 소재로 인체적용시험을 완료한 사업자 -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 식품 소재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안전성 및 표준화자료 등)가 구비되어 있는 사업자							
지원한도	○ 과제당 지원규모 25백만원(국고보조는 12.5백만원)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254	250	1,530			
	국 고	-	129	125	780			
	자부담	-	125	125	75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산업진흥과 대사영양연구본부		김성만 양혜정		044-201-2132 063-219-9341		
신청시기	상시			사업시행기관		한국식품연구원		
관련자료	식품기능성원료등록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ood.kr)							

1. 사업대상자

- 식품기업, 농업법인, 농업인 등
 - *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 운영 지침 참조

2.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 식품 소재로 인체적용시험을 완료한 사업자 또는 국내 농산물 유래 식품 소재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안전성 및 표준화자료 등)가 구비되어 있는 사업자

3. 지원대상

- 기능성 원료의 개별인정(식약처)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사례, SCI급 논문 검색, 보완자료 검토 등 컨설팅 지원
- 안전성이 확보된 국내 농산물 유래 식품 소재를 활용하여 개별인정 등록을 받기 위한 관련 기능성 논문 특허 수집 및 분석, 인체적용전·인체적용시험의 프로토콜 수립 등 컨설팅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컨설팅비
 - 인건비(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접비(전산처리비, 여비, 수송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간접비(간접경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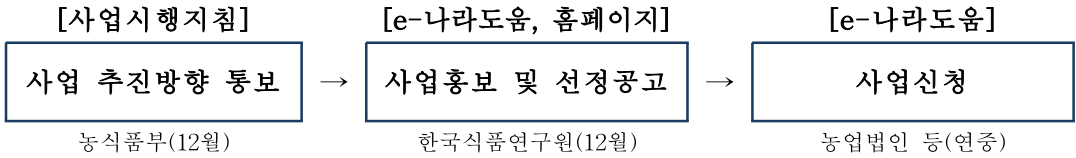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 자부담의 현물/현금 비율 등은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 운영 지침 참조
- 사업범위 : 8개 품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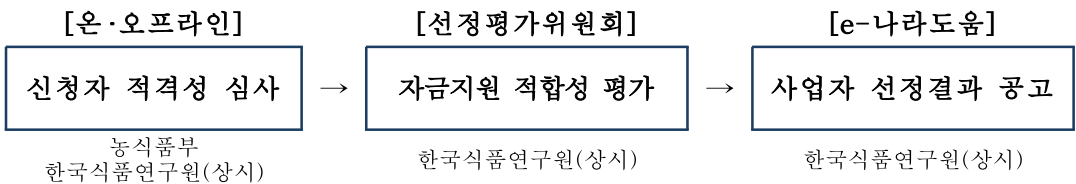
- 품목당 지원규모 25백만원 내외(국고보조는 12.5백만원)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을 해야 한다.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신청서 등록)해야 한다.
 -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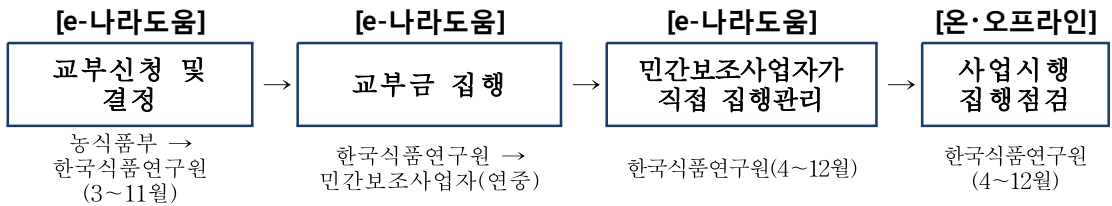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야 한다.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평가위원회 또는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의 적합성 여부 평가
 - 선정평가위원회 또는 검토위원회 구성원 중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 필요한 경우 평가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정 취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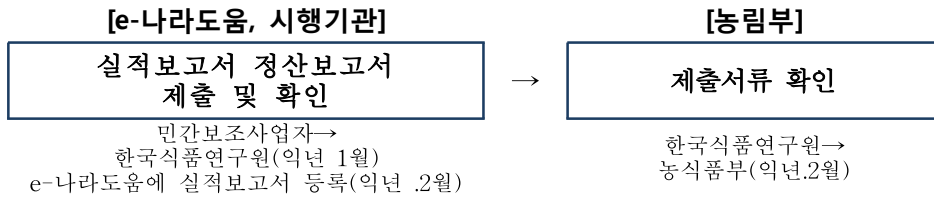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의 시기와 방법을 명시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 의뢰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확인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 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 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 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IV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자는 2018. 2. 28까지 보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결과(증빙서류 첨부)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함

2. 평가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사업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감점 부여
- 농식품부는 평가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익년도 추진계획에 반영

세부사업명	기능성식품산업육성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식품기능성평가 지원	예산 (백만원)	1,981					
사업목적	○ 농업과 식품사업간 연계발전 및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육성을 위해 국내농산물 유래 우수소재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지역 농특산물 및 농산물 유래 식품 소재의 기능성등록에 필요한 인체적용 前시험(세포·동물시험/안전성평가) 및 인체적용시험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 「식품산업진흥법」 제8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식품 소재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등)가 구비되어 있는 식품사업자, 농업법인 등							
지원한도	○ 과제당 지원규모 1억원(국고보조는 6천만원)							
재원구성 (%)	국고	6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880	3,482	3,081	10,782			
	국 고	2,740	2,507	1,981	6,582			
	자부담	1,140	975	1,100	4,2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산업진흥과 대사영양연구본부		김성만 양혜정		044-201-2132 031-780-9341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2.31일까지)			사업시행기관		한국식품연구원		
관련자료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ood.kr)							

1.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농업법인, 농업인 등
 - 단,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 농기평(IPET) 등 관계기관 연구와 중복되는 과제 및 우리농산물로서의 토착성이 인정되지 않은 소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 운영 지침 참조

2.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 식품 소재로 지원받아 연구하고자 하는 품목의 유형, 해당기능, 제품형태 등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및 표준화자료 등)가 구비되어 있는 사업자
- 우선 지원 대상
 - 착수 1~2년내 기능성 연구성과 도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
 - 국내외 기존 연구자료가 잘 축적된 품목
 - 농업 부가가치화 등 파급효과가 큰 품목
 - *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 운영 지침 참조

3. 지원대상

- 지역 농특산물 및 농산물 유래 식품 소재의 기능성 등록에 필요한 인체적용 前시험(기능성평가(세포·동물시험)/안전성평가) 및 인체적용시험 연구비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인체적용 前시험
 - 인건비(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접비(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여비, 수송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간접비(간접경비)
- 인체적용시험
 - 인건비(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접비(검사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여비, 피보험자보상비, 수송비 및 수수료, 통계처리비, 시료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간접비(간접경비), 기타비(임상시험 수탁기관 비용, IRB심사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 국고보조 60%, 자부담 40%

* 단, '17년 이전 인체적용시험시험 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속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고 보조 70%, 자부담 30% 적용

○ 사업범위 : 인체적용前시험 10개품목, 인체적용시험 1년차 10개품목

* 자부담의 현물/현금 비율 등은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 운영 지침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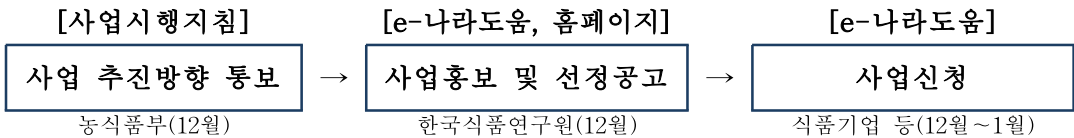
* 최종 선정 품목수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품목당 지원규모 1억원 내외(국고보조는 6천만원)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 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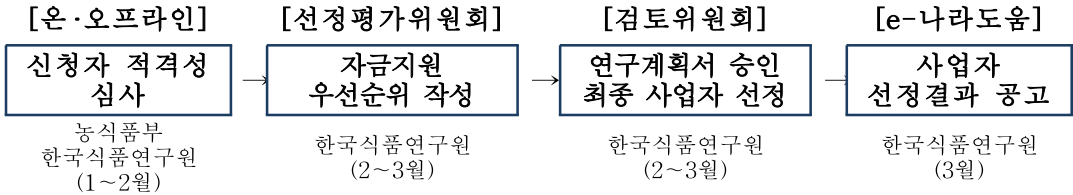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을 해야 한다.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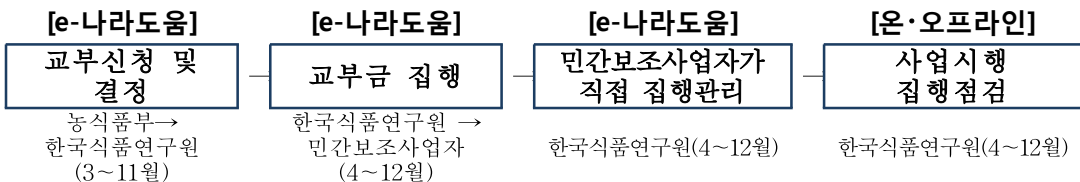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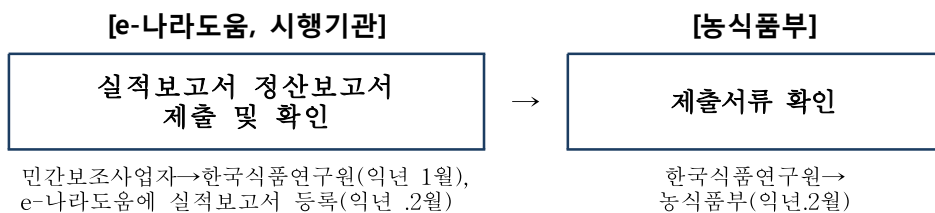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평가위원회 상정을 해야 한다.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평가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원 중 평가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 필요한 경우 평가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
 - 선정평가위원회의 자금지원우선순위 결과는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최종 확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1차 선정된 사업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행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이 완료되면 최종 사업자로 확정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42조제2항)
 -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3조의2제8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의 시기와 방법을 명시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 사업기간이 2년인 인체적용시험의 경우 통상적으로 1년차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소진이 지남하므로 협약서(수행기관/기업)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이월 가능
 -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 시기 지연 등으로 이자가 발생한 경우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이자 발생 금액을 반납토록 해야 함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 의뢰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확인
- * 사업기간이 2년인 인체적용시험은 최종년도에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총 2년에 해당되는 정산관련서류를 시행기관에 제출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의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61조제3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9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 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자는 2018. 2. 28까지 보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결과(증빙서류 첨부)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함

2. 평가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사업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감점 부여
- 농식품부는 평가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익년도 추진계획에 반영

식품기능성평가 인체적용前시험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	--

1. 기관명	2. 사업자등록 (법인등록번호)	
3. 주소		
4. 대표자	5. 전화번호	
6. 주담당자	성명	직 위
	전화	휴대전화
	FAX	전자우편
7. 지자체		8. 생산자단체
9. 품목정보	① 소재/물질 또는 제품명 (국문, 영문, 화학명)	
	② 평가 지원항목	<input type="checkbox"/> 기능성평가 (당뇨, 비만 등..) <input type="checkbox"/> 안전성평가
	③ 시험평가 근거자료 (해당되는 것에만 표시)	<input type="checkbox"/> 소재/품목에 대한 자료 <input type="checkbox"/> 역사적우수성 자료 <input type="checkbox"/> 지리적 우수성자료 <input type="checkbox"/> 시험물질 성적서 등 <input type="checkbox"/> 기능성자료 <input type="checkbox"/> 안전성자료 <input type="checkbox"/> 관련 논문 및 특허 <input type="checkbox"/> 지리적표시제 등록 또는 지자체 추천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
	④ 기타 특이사항	
10. 기업현황	업태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input type="checkbox"/> 농업법인 <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 <input type="checkbox"/> 기업 <input type="checkbox"/> 연구소
	인원	명 매출현황 천원
이상과 같이 식품 기능성평가 인체적용前시험 지원사업에 응모합니다. 2018년 월 일 기관명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농림축산식품부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신청서 5부 2. 추가 근거자료 2부 3. 파일 1부		

세부사업명	기능성식품산업육성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기능성 원료등록 지원	예산 (백만원)	125					
사업목적	○ 농업과 식품사업간 연계발전 및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육성을 위해 국내농산물 유래 우수소재의 기능성 원료 개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업 주요내용	○ 기능성 개별인증등록(식약처)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컨설팅 등 지원 ○ 기능성소재 발굴을 위한 컨설팅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 「식품산업진흥법」 제8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식품사업자, 농업법인, 농업인 등 -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 식품 소재로 인체적용시험을 완료한 사업자 -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 식품 소재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안전성 및 표준화자료 등)가 구비되어 있는 사업자							
지원한도	○ 과제당 지원규모 25백만원(국고보조는 12.5백만원)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254	250	1,530			
	국 고	-	129	125	780			
	자부담	-	125	125	75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산업진흥과 대사영양연구본부		김성만 양혜정		044-201-2132 063-219-9341		
신청시기	상시			사업시행기관		한국식품연구원		
관련자료	식품기능성원료등록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ood.kr)							

1. 사업대상자

- 식품기업, 농업법인, 농업인 등
 - *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 운영 지침 참조

2.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 식품 소재로 인체적용시험을 완료한 사업자 또는 국내 농산물 유래 식품 소재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안전성 및 표준화자료 등)가 구비되어 있는 사업자

3. 지원대상

- 기능성 원료의 개별인정(식약처)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사례, SCI급 논문 검색, 보완자료 검토 등 컨설팅 지원
- 안전성이 확보된 국내 농산물 유래 식품 소재를 활용하여 개별인정 등록을 받기 위한 관련 기능성 논문 특허 수집 및 분석, 인체적용전·인체적용시험의 프로토콜 수립 등 컨설팅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컨설팅비
 - 인건비(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접비(전산처리비, 여비, 수송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간접비(간접경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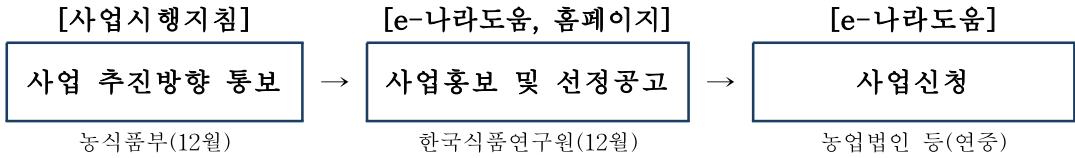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 자부담의 현물/현금 비율 등은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 운영 지침 참조
- 사업범위 : 8개 품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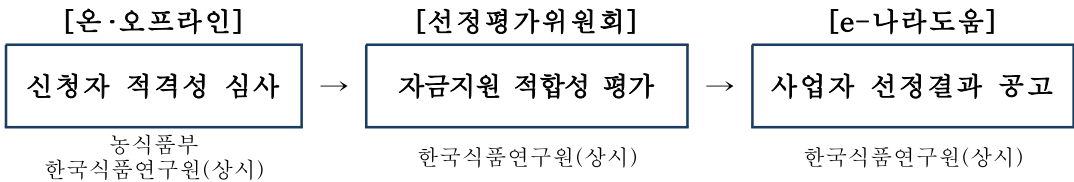
- 품목당 지원규모 25백만원 내외(국고보조는 12.5백만원)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 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 신청을 해야 한다.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신청서 등록)해야 한다.
 -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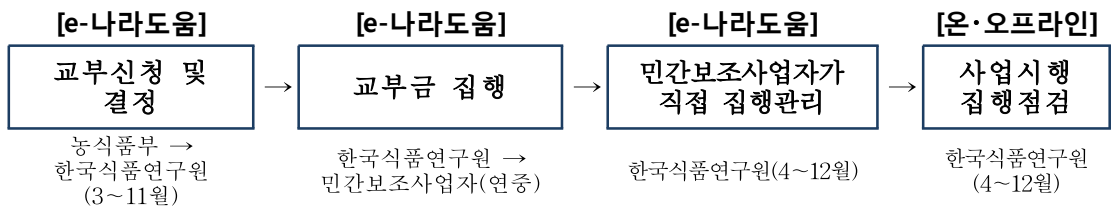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야 한다.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평가위원회 또는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의 적합성 여부 평가
 - 선정평가위원회 또는 검토위원회 구성원 중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 필요한 경우 평가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정 취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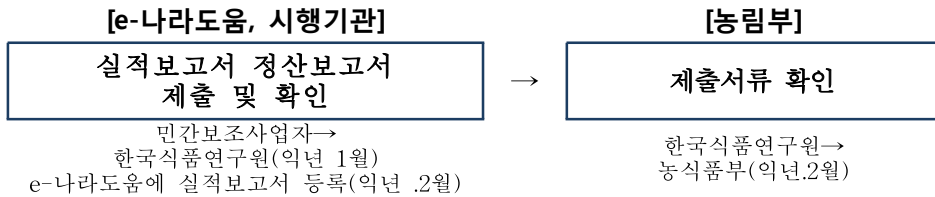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3조의2제8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 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의 시기와 방법을 명시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 의뢰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확인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의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61조제3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9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
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IV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자는 2018. 2. 28까지 보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결과(증빙서류 첨부)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함

2. 평가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사업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감점 부여
- 농식품부는 평가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익년도 추진계획에
반영

기능성원료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	--

1. 기관명			2. 사업자등록 (법인등록번호)		
3. 주소					
4. 대표자			5. 전화번호		
6. 주담당자	성명			직 위	
	전화			휴대전화	
	FAX			전자우편	
7. 지자체	해당되는 경우 기재		8. 생산자단체	해당되는 경우 기재	
9. 품목정보	① 소재/물질 (국문, 영문)				
	② 등록 기능성 (표1 참조)		<input type="checkbox"/>		
	③ 근거자료 (해당되는 것에만 표시)		<input type="checkbox"/> 기원 개발경위 국내외 인정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input type="checkbox"/> 제조방법 관한 자료 <input type="checkbox"/>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input type="checkbox"/> 기능성분(지표성분)에 대한 규격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input type="checkbox"/> 유해물질에 대한 규격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input type="checkbox"/> 안전성에 관한 자료 <input type="checkbox"/> 기능성 내용 및 그에 관한 자료 <input type="checkbox"/> 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및 그 설정에 관한 자료 <input type="checkbox"/>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자료 <input type="checkbox"/> 동일 소재 및 기능성 관련 논문 <input type="checkbox"/> 기타 ()		
	④ 기타 특이사항				
10. 기업현황	업태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input type="checkbox"/> 농업법인 <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 <input type="checkbox"/> 기업 <input type="checkbox"/> 연구소			
	인원	명	매출현황	천원	
이상과 같이 식품 기능성평가 기능성원료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에 응모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2017년 월 일 기관명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div>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축산식품부 귀하</p> <p>※ 첨부서류 1. 사업신청서 5부 2. 추가 근거자료 2부 3. 파일 1</p>					

세부사업명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육성(자치단체)		예산 (백만원)	2,150				
사업목적	○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농산물 수급조절 도모							
사업주요내용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 지원							
국고보조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2(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시책의 마련) 및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지원자격 및 요건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 농업경영체DB에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 실적 1년 이상 등							
지원한도	○ 지원기준 : 개소당 700백만원(국고기준 210백만원) - 지원(사업신청) 한도 : 개소당 최대 1,500백만원(국고기준 450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5,000	7,000	7,000	7,000			
	국 고	1,500	2,100	2,100	2,100			
	지방비	1,500	2,100	2,100	2,100			
	자부담	2,000	2,800	2,800	2,8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자치단체		식품산업진흥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경기 농식품유통과 충북 원예유통식품과 충남 농업정책과 전북 농식품산업과 전남 농식품유통과 경남 농산물유통과 경북 FTA농식품유통대책단 강원 유통원예과		사무관 광기형 주무관 이희연 차 장 문재훈 주무관 이대운 주무관 윤명상 주무관 조민구 주무관 김철성 주무관 김송원 주무관 이명근 주무관 심재용 주무관 김대혁		044-201-2138 044-201-2139 061-931-0732 031-8008-4445 043-220-3673 041-635-4002 063-280-3675 061-286-6461 055-211-6433 054-880-3349 033-249-2716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8월말~9월중)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자치단체		
관련자료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그 중앙회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 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¹⁾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72호》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4.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6.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 식품기업(아래에 해당하는 업으로 등록을 완료한 기업)

산업분류	세분류
일반식품 소재(19)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과일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기타 과일·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동물성 유지 제조업, 식물성 유지 제조업,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곡물 제분업, 제과용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설탕 제조업, 식초·발효 및 화학조미료 제조업,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장류 제조업,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주정 제조업
기능성 식품소재(3)	인삼식품 제조업,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식품첨가물(1)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 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별표6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

* 가, 나, 라, 마 항목은 식품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

-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으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 마.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
- 바. 농업법인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할 것
- 사.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 사업부지 사전 확보

- 사업신청 법인 명의로 사업부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사업신청 가능
- 사업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경영정보 등록

- *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농업경영체 등록 DB를 확인하여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의 사업신청 제외 등 기본규정 제35조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1.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2.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3.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자 선정시 제외기준 확대

- *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1.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제79조에 따라 농림사업자금의 교부를 제한받는 자 또는 단체
2. 농림사업자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되어 제79조에 따라 지원의 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또는 단체
3.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4. 농림사업자 또는 단체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제재부가금, 가산금, 환수금액, 회수 대상 대출금 또는 반납 대상 대출금 등을 모두 변제하거나 반납하지 아니한 자
- ⑨ 사업시행기관은 농업인, 농업법인이 농림사업자금 지원신청을 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확인 결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림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 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지원제한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한 지자체는 사업선정 다음연도부터 5년간 지원제한
- 사업대상자 선정시 제출한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없이 변경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제한
- 사업신청시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업전 이행의무사항을 완료하지 못한 지역 및 사업자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제한

3. 지원대상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 * 생산·유통 분야의 비중이 총사업비의 50% 이상이어야 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설계 및 감리
- 건축공사(기존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 : 집하장, 선별장(저온선별장 포함), 포장장, 출하장, 저온저장고(예냉고 및 냉동창고 포함), 전처리장(반가공공장 포함), 품질검사실,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 저온저장고는 ①화재 및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②안정적인 저장을 위하여 CA저장(Controlled Atmosphere Storage) 방식 도입(다만, 품목에 따라 CA저장이 상용화되지 않았거나 필요없는 경우 다른 저장방식 가능)
 - *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항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설비·장비류 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 선별기, 결속기, 봉합기, 제함기, 컨베이어, 프렛타이저 등
 - 가공시설·장비류 : 전처리시설(세척 등), 반가공시설(농축, 분말, 추출 등), 급속냉동기 등
 - 유통시설·장비류 : 펠릿, 운반상자, 지게차 등
 - * 승용·승합차량 및 범용 트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위생시설·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집진기, 세척기, 청소기, 건조기 등
 -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1항(별표5)에 의한 우수관리시설(GAP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구축시설의 스마트화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ICT 활용 시스템
- 회계감사비
 - * 지원되는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 전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부터 집행내역 등을 검증받은 후 제출

- * 식품소재·반가공 산업화 시설구축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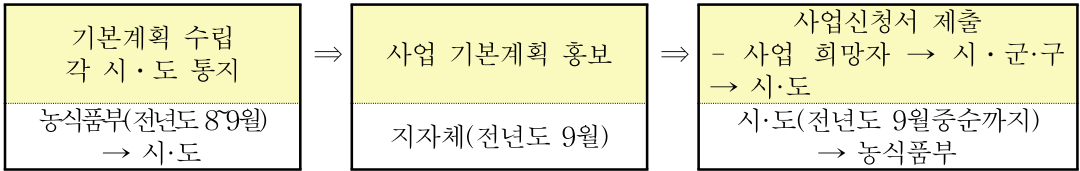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 지원형태 : 보조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기간 : 1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기준 : 개소당 700백만원(국고기준 210백만원)
 - 지원(사업신청) 한도 : 개소당 최대 1,500백만원(국고기준 450백만원)

1. 사업신청 단계



사업희망자

- 사업신청서 작성(덧붙임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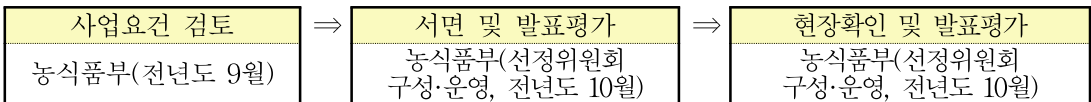
시·군·구

- 사업신청서 검토 및 요건확인서(덧붙임5) 작성
 - *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사업신청요건을 미충족한 사업계획서는 시·도로 사업신청 시 제외

시·도

-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 검토
 - *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사업신청요건을 미충족한 사업계획서는 농식품부로 사업신청 시 제외

2. 사업자 선정 단계



시·군·구, 시·도

- 사업여건 현장 확인 참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절차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되, 선정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요건검토, 선정위원회를 통한 서면 및 발표평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개소별 사업비 조정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절차】

-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16년 신규사업 신청공고
 - 공고단계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 ② 사업신청서 제출
 - 제출단계 : 생산자단체·식품기업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
- ③ 기본요건 검토
 - 사업 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점검
- ④ 사업대상자 선정평가(선정위원회)
 - <서면평가>
 -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선정규모의 2배수 이내로 현장확인 및 발표평가 대상 선정
 - <사업여건 현장확인>
 - 사업대상자에 대해 사업신청서와 동일 여부 확인 및 사업성 검토 실시
 - <발표평가>
 -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을 발표,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 최고·최저점 제외 후 평균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 * 총점 100점 기준 70점 미만은 제외(평가항목별 부문점수 60점(C등급) 미만시 과락)
 - 예산규모에 맞춰 선정된 사업대상자별 사업비 조정 실시
- ⑤ 예산 확정 후 확정예산에 따라 개소수 및 사업비 조정 후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조건부 사업대상자 선정>

- 평가과정에서 미비점 보완을 조건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사업 선정결과 통보 후 1주일 이내에 보완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비점 보완을 완료했을 경우 자금배정(보조금 교부신청 시 미비점 보완 증빙자료 제출)

<사업 포기자에 대한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기본 규정 제79조에 따라 사업자금 지원을 제한

3. 자금배정단계

시·도(시·군·구)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등의 절차를 이행 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지방비 확보 및 자부담금 확보 확인 후 농림 축산식품부에 보조금교부 신청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기본규정 제57조에 따라 보조사업 규모가 2억원(물품 및 용역구매 등은 5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은 조달청 또는 지자체가 입찰을 통해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거나 보조사업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선정하여야 함
- 기본규정 제57조제5항에 따라 보조금 집행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는 사업수행자 선정을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 등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등은 예외)
- 기본규정 제59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 전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부터 집행내역 등을 검증받은 후 제출
- 기본규정 제63조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
- 기본규정 제61조에 따라 사업 완료, 회계연도 종료 등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내(지방자치단체는 3개월) 실적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보조사업자의 타 보조사업 보조금을 삭감

제61(농식품사업자금 확정 등)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9조제1항 및 제59조제3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적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연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참고하여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농식품사업자금 지원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보조금 삭감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이내 보조금 삭감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이내 보조금 삭감

4. 사업시행단계

- 직접·간접보조사업자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주체, 지역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 요청

【사업계획 변경절차】

- 사업비의 10%미만 변경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 후 그 결과(검토의견 포함)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2회이상 사업변경으로 변경액이 사업비의 10%이상인 경우 시도지사는 농식품부 장관에게 변경승인 결과(검토의견 포함) 제출
- 사업비의 10%이상, 30%미만 변경시 : 시·도지사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 후 그 결과(검토의견 포함)를 농식품부 장관에게 제출
- 사업비의 30%이상 변경시 : 시·도지사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농식품부 장관에게 변경승인 요청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집행단계 중간점검

- 집행점검 : 사업추진 실적 및 실행실적 점검(연 3회 이상)

(사업자→시·군·구→시·도→농식품부로 집행실적 제출)

* 필요시 증빙자료 점검 및 현장 점검 실시

- 현장점검 :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점검(연 1회 이상)

《제재》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기본규정 제79조(지원의 제한)에 따라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주요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시·도(시·군·구)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설물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승인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군·구를 달리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 추진현황, 자금집행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 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후관리 시기, 방법 및 점검항목
 - 방법 : 연1회(익년 3월31일까지) 운영실적보고서 제출(시·도→농식품부)
 - 점검항목 : 생산 및 공급실적, 중요재산 현황 및 관리, 사업추진효과 등
 - 운영실적보고서 제출기간 : 사업 완료 후 5년간
- * 건물 등 관리기간이 10년인 중요재산은 10년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제 재》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에 따라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동 시행지침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

IV 평가 및 환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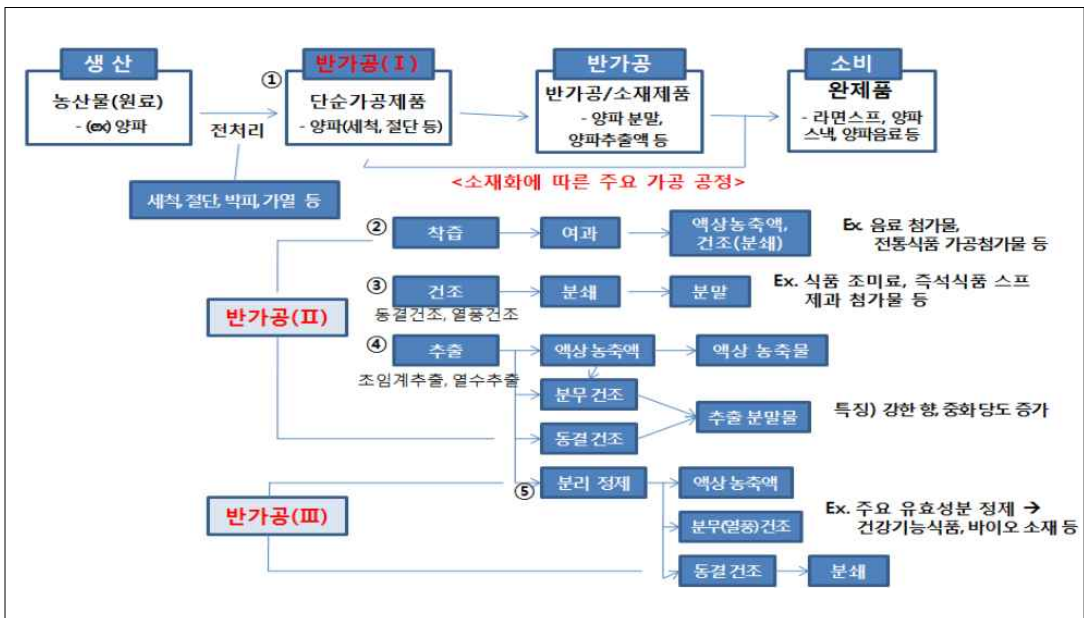
□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연1회(익년 3월31일까지) 운영실적보고서 제출(시·도→농식품부)
 - 점검항목 : 생산 및 공급실적, 중요재산 현황 및 관리, 사업추진효과 등
 - 운영실적보고서 제출기간 : 사업 완료 후 5년간
- * 건물 등 관리기간이 10년인 중요재산은 10년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덧붙임 1]

식품소재 · 반가공업의 개념

- (개념) 원료 농축수산물과 완제품(BtoC)을 제외하고,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중간재로 투입되는 반가공품과 식품첨가물을 포함(BtoB)
- (유형별 분류) 원료의 반가공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i)식자재형, ii)농축·분말형(범용소재), iii)첨가물 소재형(특정용도소재) 등으로 구분
 - ① 식자재형 : 기존 원료를 전 처리한 단순 가공상태(식재료 및 소재 전단계)
 - ② 농축(착즙형) : 과실류의 소재화 제조 관련 저비용 공정(음료 첨가물 등)
 - * 경북 능금농협(사과), 충북 원예농협(사과, 배, 딸기, 당근 등), 고창 복분자농협(복분자, 블루베리 등)
 - ③ 분말형 : 건조 후에 분쇄하는 공정으로 모든 식품의 첨가물로 활용(식품 조미료, 즉석식품 스프, 제과 첨가물 등)
 - * 무안 FND(곡류, 야채류, 과일류, 버섯류 분말 등), 고흥 푸른터(단호박, 고구마, 함초 등)
 - ④ 추출(농축·분말형) : 원료의 강한 향과 저장성 및 유통 편리
 - ⑤ 첨가물 소재형 : 주요 유효성분을 정제·선별→건강기능식품, 바이오소재 활용
 - * 에코바이오텍 : 조개껍데기(→고활성 칼슘 분말) / Ginsana(→인삼의 사포닌 성분 추출) 등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식품소재 · 반가공업육성 사업계획서

1. 사업 신청자 :

※ 지원자격 및 요건 해당 여부

○ 지원자격 및 요건에 해당함/미해당함

* 지자체는 사업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첨부2) 제출

2. 보조사업자 현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사업자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나. 출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다. 재정현황(17.8월말 기준) : 사업비(자부담) 확보능력 충족 확인

(단위 : 백만원)

재정현황 (C=A-B)	자 산(A=a+b)			부 채(B)	비 고
	계	동산(a)	부동산(b)		

※ 총 사업비 중 자부담 이상 여유자금 확인 가능자료(법인 계좌 잔액 확인서 등) 별도 첨부

라. 사업추진실적

○ 판매실적 * 증빙자료 제출 또는 현장점검시 확인가능토록 제시

[2014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상호명 기재)	매출액(백만원)			
			계	직접판매	위탁판매 (대리점)	주문자생산 (OEM/ODM/FB)
계						

[2015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상호명 기재)	매출액(백만원)			
			계	직접판매	위탁판매 (대리점)	주문자생산 (OEM/ODM/FB)
계						

[2016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상호명 기재)	매출액(백만원)			
			계	직접판매	위탁판매 (대리점)	주문자생산 (OEM/ODM/FB)
계						

[2017년도 상반기]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상호명 기재)	매출액(백만원)			
			계	직접판매	위탁판매 (대리점)	주문자생산 (OEM/ODM/FB)
계						

○ 경영실적 * 증빙자료 제출 또는 현장점검시 확인가능토록 제시

[2014년도]

- 순이익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	
○		○	

[2015년도]

- 순이익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	
○		○	

[2016년도]

- 순이익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	
○		○	

라. 식품소재·반가공 산업화시설 보유현황

구 분	단순가공시설 (세척, 절단 등)	착즙, 여과, 농축시설	건조, 분쇄시설	추출, 분리·정제시설	기타 가공시설
종 류					
수 량	0동(m ²)	0동(m ²)	0동(m ²)	0동(m ²)	0동(m ²)
시설확대, 개보수 현황	'14년 (세척 1식 확대)				
작업 능력 (연간 생산량 등)	'14년	톤, kl 등 기재	톤, kl 등 기재	톤, kl 등 기재	톤, kl 등 기재
	'15년				
	'16년				
	평균				

마. 사업추진 여건

- 현재 지역(시·군·구 및 시·도)내 식품소재·반가공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
- 현재 지역(시·군·구 및 시·도)내 원료조달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 기타 지역특성, 입지여건, 납품대상 기업의 선호도 및 인지도 등
-

3. 시설설치계획

가. 시설보유 현황

- 위 치 : 도로명 주소 기재
- 시설면적 : m²
- 담보제공 여부 및 대출현황 :

나. 시설설치계획

- 세부사업내용(사업비 사용내역)

(단위 : 백만원)

구축 시설명	구분(용도) *	주요 사용품목	사업량 (규격)	단 가	사업비	구축 기대효과	
						기존시설 연계여부	경제적 효과
자동포장기	포장설비 (제품포장)	00분말 (소재 : 00)	1식 (3~5kg, 개별포장)			건조·분쇄기 라인과 연계설치를 통한 생산 공정단축	00반가공품 제조공정 중 포장단계 인건비 절감을 통한 생산비용 인하 등
계							

* 설계, 건축, 소방·전기·통신, 가공설비, 위생설비, 포장설비, 저장·유통설비, 기타(용도 기재)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비 합계는 사업신청서 상의 사업비(국고+지방비+자부담)와 일치시킬 것

○ 제품생산 흐름 및 시설설치 개념도(분량 3페이지 이내)

* 원료구입부터 소재·반가공 제품이 생산·공급되는 과정을 모식도, 그림 등으로 나타낸 후 동 사업을 통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필요할 경우 2개 이상의 그림 사용)

** 사업계획을 한 눈에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부실하게 작성될 경우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세부사업(공정)명	1/4분기	2/4	3/4	4/4

* “ ←→ ”로 표시

라.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1) 시설 설치자금 계획(2017년)

(단위 : 백만원)

수 요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 자부담	
○		- 기존출자액	
		- 신규출자액	
		○ 보조금	
		○ 기타	
		- 외부차입	
		- 이익잉여금	

2) 운영자금(원료조달 등) 확보계획(2017년 또는 2018년)

(단위 : 백만원)

수 요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 자체자금	
○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5. 시설설치 전·후 운영계획

가. 생산목표 및 원료사용계획

○ 생산현황 및 목표

구 분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 실적 및 목표		
	생산품목	매출액 (억원)	판매물량 (톤)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8월말까지)			
2017년(9~12월)			
2018년			
2020년			
2022년			

* 사업 전, 사업 완료 시와 사업완료 후 3년, 5년 후의 비전 제시

** 금액 단위는 ‘억원’ 또는 ‘백만원’으로 표시

○ 원료사용현황 및 계획

구 분	생산 품목	사용 원료	원료사용계획					해당지역 (시·군)의 해당원료 생산량(톤)(B)	지역생산량 대비 해당업체의 원료사용비율(%) (AB)
			국내산(톤/억원)				외국산 (톤/억원)		
			계 (톤/억원) (A)	직접 생산	계약 채배	일반 구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1~8월)									
2017년(9~12월)									
2018년									
2020년									
2022년									

* 사업 전, 사업 완료 시와 사업완료 후 3년, 5년 후의 비전 제시

** 금액 단위는 ‘억원’ 또는 ‘백만원’으로 표시

나. 추진전략

- 식품소재 산업화 시설의 규모화, 전문화 전략
- 신제품 개발 및 홍보·판매전략
- 생산·유통·가공·수출 연계전략
- 타 사업, 기관간 연계전략 등

다. 사업기반 강화계획

- 인력확보 계획 및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판매처 및 국산원료 확보 방안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등

6.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 실적 : 있음/없음

- 사업명, 사업년도 및 보조금액(국고기준)

-

※ 실적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 이력서(덧붙임4) 제출

세부사업명	식품외식종합자금(용자)		세목	용자금				
내역사업명	가공원료매입·시설현대화·외식업체육성·농공상용합형중소기업육성		예산 (백만원)	115,280				
사업목적	○ 식품제조·가공·외식업체의 시설현대화와 국내산 농산물 매입지원으로 농식품 제조·가공업계의 경쟁력 제고 및 농업과 식품산업간의 연계 강화							
사업 주요내용	○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시설현대화 및 가공원료 매입 지원 등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 소비 및 판로확대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지원한도	○ 농식품시설현대화 : 업체당 최대 50억원 ○ 외식업체육성지원 : 업체당 최대 시설자금 1억원 ○ 운영자금 5억원 ○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 : 업체당 최대 30억원 ○ 농공상용합형기업지원 : 업체당 최대 40억원(운영자금만 지원 시 20억원)							
재원구성 (%)	국고	-	지방비	-	용자	8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57,440	144,336	138,336	157,440			
	용 자	131,200	120,280	115,280	131,200			
	자부담	26,240	24,056	23,056	26,24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외식산업진흥과		과 장 하경희 사무관 광기형 과 장 이규민 사무관 안정은		044-201-2131 044-201-2138 044-201-2151 044-201-2158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정책금융부		부 장 김용광		061-931-1140			
농협경제지주	식품사업부		과 장 임선국 팀 장 조현중		061-931-1141 02-2080-8551			
신청시기	정기(당해연도 2월~4.30.일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경제지주			
관련자료	식품외식종합자금(용자)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 포함
 -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중 지원자격과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식품시설현대화지원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중 공인된 식품안전 및 농식품인증을 받은 업체나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
 -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음식료품 제조업에 속하는 업체 및 신선편이식품 제조업체
 - ※ 식품안전인증 : HACCP, GMP, ISO22000 등
 - ※ 농식품인증 : 전통식품품질인증, 술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등
 - 시설 현대화 계획이 있는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로 주원료의 국내산 원료 농산물 구매액 비율이 30%이상인 업체
 - 사업자 등록 및 운영이 1년 미만인 소규모 창업 식품제조·가공업체의 경우, 지원자격 및 요건은 별도 세부지원계획에 따름
 - ※ 소규모 창업 식품제조·가공업체 : 1인 이상 10인 이하 규모의 식품·제조가공업체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거한 소기업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
- 외식업체육성
 - 외식업체(개인사업자, 프랜차이즈 직영 및 가맹사업자, 단체급식사업자)
 - ※ 단체급식사업자 중 학교급식 지원센터 및 공급업체 제외
 - ※ 주류전문점(전통주류 제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숙박업 등 타 업종과 겸영하는 업체 제외
- 식품가공원료 매입지원
 - 국내산 농산물 제조·가공업체(전통주류 포함) 및 전처리업체

○ 농공상용합형중소기업육성

- 농식품부·중기청이 공동 선정한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참가경영체 포함)으로 농수축산식품(농수축임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 포함) 취급업체
- '09년~'11년 생산자용복합형 식품제조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 선정(배정)우선순위

-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금배정 시 업체당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신청액 우선 배정
- 「외식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른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우수외식업지구 회원 외식업체는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경우 외식업체육성 자금배정 시 업체당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신청액 우선 배정

○ 지원 제외기준

- (식품가공원료 매입지원)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농식품원료구매자금) 등 유사사업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
- (농식품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신청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거짓표시)으로 적발된 자
- (농식품시설현대화 지원 및 농공상용합형중소기업 육성)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3. 지원대상

- 식품가공원료 매입지원 : 국내산 원료 농산물 매입 및 원료의 저장·가공·운송비
- 농식품시설현대화지원 : 건물 신축·증축·개축, 기계기구(설비) 도입, 가공공장 매입
- 외식업체육성 : 외식업체 개설·개보수와 관련된 임차 보증금·매장 신축·인테리어 공사비·주방시설·설비비·비품 집기 구입, 국내산 식재료 구매
- 농공상용합형중소기업육성 : 시설 및 원료구입, 저장, 가공, 운송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자금 :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 운영자금 : 국내산 원료 농산물 및 식재료구입, 저장·가공 등 기업경영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용자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용자금리 :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2.5%(시설자금 2.0%), 조합등 일반업체 3.0%
 - (변동금리) 농협은행 고시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 (금리변경은 최초 대출 후 6개월 주기)

* 단, 대출시점에서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고정 또는 변동)은 해당 대출기간중 변경 불가
- 용자기간
 -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 : 운영자금 1년(전통주류는 2년)
 - 농식품시설현대화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농공상용합형중소기업육성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2년)
 - 외식업체육성 : 시설자금 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운영자금(1년)
- 지원기준 : 총 사업소요액의 80%이내 용자, 자부담 20% 이상
- 사업의무
 - 운영자금 : 사업실적이 지원액의 125%이상
 - 시설자금 : 시설완료 및 인증취득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 및 기준, 범위 등을 명시
-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 : 업체당 최대 30억원
- 농식품시설현대화 : 업체당 최대 50억원
- 농공상용합형중소기업육성 : 업체당 최대 40억원(운영 20억원, 시설 20억원)
- 외식업체육성 : 업체당 최대 6억원(운영 5억원, 시설 1억원)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사업시행지침 및 예산액 통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경제지주

- 농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담당과)에 보고하고, 지원계획 공고·홍보 추진
 - * 세부시행계획 승인 전이라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 모집(공고 포함)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사업의 경우 일반 식품가공업체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신청하고, 지역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은 농협경제지주에 신청
- 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육성,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지원 희망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로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경제지주

- 농식품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주관기관의 세부지원계획에 따라 사업자 선정
 - * 농식품시설현대화 사업자 선정 시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거짓표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과 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자 공표시스템에서 확인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자금소요 시기별 자금배정 결과를 토대로 지출한도 배정 요청을 받아 한도 배정 승인
- 사업지원기관은 사업주관기관이 대출한 자금의 적정 사용여부와 사업주관기관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 및 하반기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경제지주

- 사업주관기관은 세부지원계획에 따라 자금을 배정하고 농식품부에 보고
- 자금배정은 연 1회 신청하여 매년 상반기 연간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포기 자금, 추가자금, 신규업체 신청자금에 대하여는 수시 배정 가능

- 사업주관기관은 세부지원계획에 의거 대출한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위약 등 대출업체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
- 사후관리기간 : 대출일로부터 용자금 상환 시 까지
 - 사후관리 기간 내 사업목적에 벗어나는 용도로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경제지주

- 사업대상자의 부당한 행위 및 사업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등에 대한 제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에 의함
 - 상기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관기관의 세부시행계획에 의함

《제재 및 처벌내용》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규정,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구

IV 평가 및 환류

《사업평가》

- 사업주관기관은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사업평가를 실시
- 사업별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는 사업주관기관에서 별도로 설정하여 추진 할 수 있음

《환 류》

- 사업평가결과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차년도 사업시행지침 및 관련 규정 개선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 또는 배정액 차등지원 가능
 - 차등지원 기준은 사업주관기관의 세부시행계획에 의함

세부사업명	푸드서비스 선진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예산 (백만원)	700			
사업목적	○ 외식 창업 지원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주요내용	○ 외식 창업에 앞서 시범운영 할 수 있는 영업장소 및 시설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외식산업진흥법 제13조(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외식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또는 예비 창업자							
지원한도	○ 총 집행금액의 70% 지원							
재원구성 (%)	국고	70	지방비		융자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0	200	1,000	1,000			
	국 고	0	100	700	700			
	자부담	0	100	300	3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외식산업진흥과 외식진흥부		정성문 유명근		044-201-2154 061-931-0721		
신청시기	정기(전년 11월까지)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관련자료	외식창업인큐베이팅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대학생

2. 지원자격 및 요건

-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운영(사업장 확보, 참가팀 선발, 컨설팅 등) 가능한 법인·단체, 농식품부 지정 외식산업전문교육기관(71개소, '12~'15지정)
 - * 공공부문(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 등)은 상기 법인·단체와 참여기관 형식으로 컨소시엄 체결 시 사업 참여 가능하나, 단독으로 참여 불가
 - * 컨소시엄 참여기관은 별도 신청이 불가하며, 사업전체에 대해 신청기관이 직접 주관하지 않고 외부 위탁 불가(보조금 재교부 금지)

3. 지원대상 및 사용용도

- 사업장 임차료, 설비·비품, 창업 컨설팅·교육, 홍보, 운영관리(인건비·경비) 등
 - * 사업장 임차료 年 6천만원 이내 지원, 자본적 경비는 지원 불가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국비 70%, 자부담 30%
- 사업의무량 : 회계연도내 9개월 이상 사업 운영
- 사업자 수행사항
 - 사업장 확보 : 상권·입지분석, 임차보증금·권리금 확보, 사업장 설비공사 (인테리어, 주방, 외장)
 - * 임차보증금·권리금은 국고 지원이 불가하며, 자체예산을 활용
 - 사업자 등록, 영업신고, 결제시스템 확보 등 운영 전반 관리
 -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 매장운영 컨설팅·교육(자문단 운영) 및 식재료 구입·관리 지원
 - 세무관리(부가세 신고,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 매출관리(수입·지출관리, 팀별 운영비 정산 등)
 - 참가팀 확보·관리 : 팀별 4주~3개월 운영기준으로 공개모집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국고지원 : 개소당 총사업비(최대 2억원)의 70% 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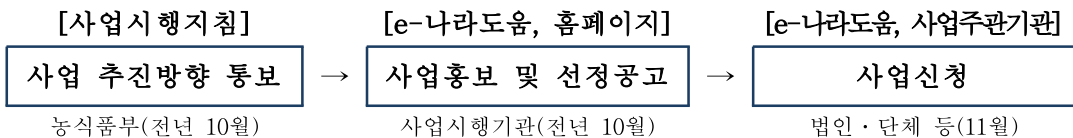
* 운영 역량·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행자별 사업비 차등 지원(개소당 최대 140백만원)

○ 자부담(30%) : 사업대상자의 인건비, 식재료비, 수도광열비, 세금, 카드수수료, 보험료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계획에 따름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전년도 10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기본계획을 시달하고, 사업시행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은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로 보고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모집을 위해 e-나라도움 또는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 모집 공고한다.

○ 사업시행기관 자체공모의 경우,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기간 내에 소정의 신청서 및 부대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신청방법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에 신청한다.

○ 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의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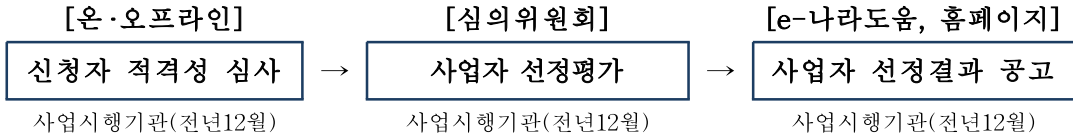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사업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 파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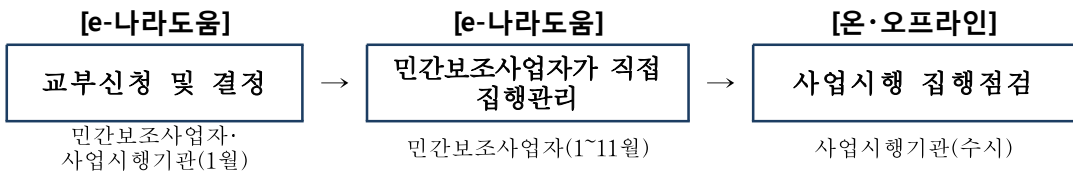
* 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5인이상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장 확보여부, 교육·컨설팅 역량, 사업대상자 확보방안, 사업비 운영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사업시행기관 자체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등록한다.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지원자격 부적합,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선정된 사업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추가 사업자 선정방법 결정
 - 선정된 사업자는 총사업비 10%이상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변경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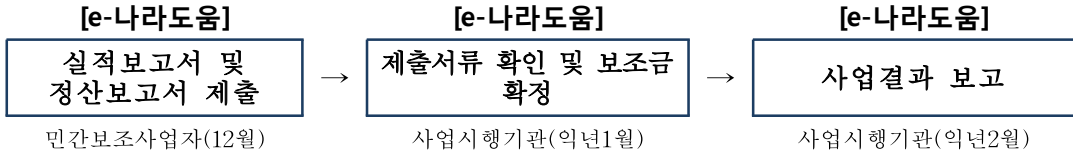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
 - * e나라도움을 통해 예약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위하여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보조금은 2차로 나누어 지급할 예정이므로 국고보조금 교부와 관련된 서류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제출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선정을 취소 할 수 있음
 - 민간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 지원 결정액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권을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해야 함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시행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 시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참여인력 개인정보, 사업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 조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보안조치 소홀로 인해 참여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자 뿐만 아니라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농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연 2회이상 사업자의 사업 운용실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애로사항 발굴 해소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1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취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와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 부서에 반드시 통보
- 사업 운영 중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의해 사업이 중단될 경우 교부된 국고 보조금 전액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3년간 동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 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그 외 사항 등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법에 따름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민간보조사업자는 10월말까지 사업운영실적, 주요성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최종보고서는 사업 종료후 e나라도움에 등록)

2. 평가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사업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운영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사업자 선정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서식1]

**2018 외식창업인큐베이팅사업
지 원 신 청 서**

1. 기관명	(컨소시엄 구성 참여시 대표기관명 및 참여기관명 모두 기재)		
2. 총사업비 (단위 : 원)	(A+B) (A+B+C) 원 원	국 고(A)	원
		참가팀자부담(B)	원
		자체예산(필요시, C)	원
3. 사업기간	※ 2018.12월까지 완료	4. 참가인원	※ 예상 참가팀수와 연인원 기재
5. 신청기관명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도로명주소 : 우() ○ 홈페이지 : ○ 전화번호/FAX : () - / () -			
6. 실무담당자명 : ○ 소속/직급 : ○ 전화번호 : ○ 휴대폰 : ○ 이메일주소 : @			
<input type="checkbox"/> 유의사항 ○ 신청하신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시 선정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기 국고보조 사업을 수행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17년 월 일			
(대표)신청기관명 :		(직인)	

[서식2]

컨소시엄 추진계획서
[※ 필요시만 추가작성]

☞ 대표 기관이 작성 (3page 내외 분량)

I. 컨소시엄 참여기관

대표 기관(법인·단체)명	
컨소시엄 참여기관(법인·단체)명	
컨소시엄 참여기관(법인·단체)명	

II. 컨소시엄으로 추진 필요성

○

III. 컨소시엄 추진에 따른 기대 효과

○

IV. 사업 추진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

기관 사업내용	대표기관 역할 및 내용	컨소시엄 참여기관 역할 및 내용

V. 대표기관의 사업 총괄관리 방안

세부사업명	푸드서비스 선진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예산 (백만원)	250		
사업목적	○ 외식산업을 통한 국산식재료 소비확대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지원, 레스마켓 설치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외식산업진흥법 제16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외식업체, 국산 식재료 소비확대 실적(또는 계획) 평가				
지원한도	○ 총 집행금액의 50% 지원 - 레스마켓 설치지원 사업 : 250만원 한도 -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 : 500만원 한도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용자	자부담 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0	400	400	400
	국 고	0	200	200	200
	자부담	0	200	200	2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외식산업진흥과 외식진흥부		정성문 손근용	044-201-2154 061-931-0728	
신청시기	정기(2~3월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관련자료	우수식재료 소비확대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외식업 경영주, 외식 관련 단체·협회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레스마켓 설치지원 : 업소 내 국산 농식품 판매가 가능한 외식업 경영주
-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 국산 농식품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복수의 외식업소로 구성된 단체(임의단체 포함)

3. 지원대상 및 사용용도

- 레스마켓 설치지원 : 외식업소 내 국산 농식품 판매용 진열장 구입·설치 비용 및 홍보비
-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 식재료 공동구매 및 공동구매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물류비, 창고임대비, 컨설팅비, 인건비 등)
* 식재료 물품대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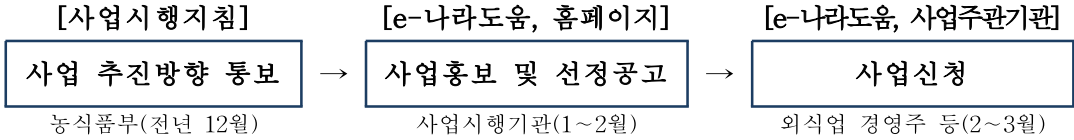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국비 50%, 자부담 50%)
- 사업의무량
 - 레스마켓 설치지원 : 로컬푸드 판매(특·광역시 제외)
 -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 국비 지원액의 200% 이상 국산 식재료 구매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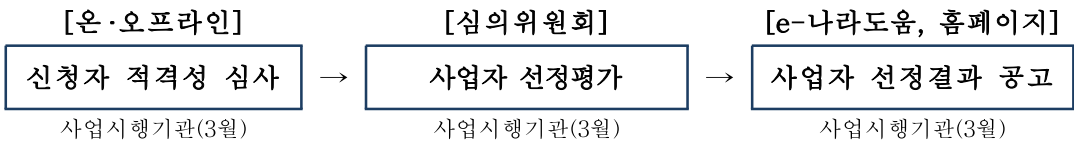
- 레스마켓 설치지원 : 개소당 총 사업비의 50% 보조(250만원 한도)
-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 개소당 총 사업비의 50% 보조(500만원 한도)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을 시달하고, 사업시행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은 사업시행지침을 바탕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로 보고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모집을 위해 e-나라도움 또는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 모집 공고한다.
- 농식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을 해야 한다.
 - 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의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 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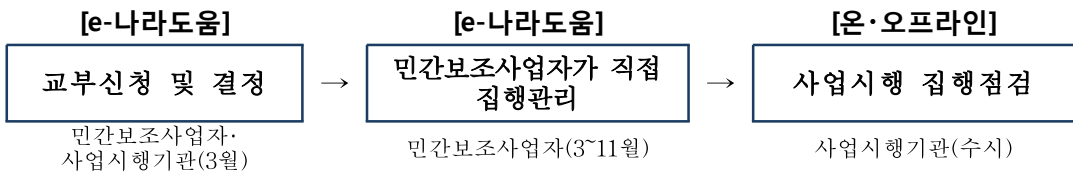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비 운영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지원자격 부적합,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선정된 사업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추가 사업자 선정방법 결정
 - 선정된 사업자는 총사업비 10%이상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변경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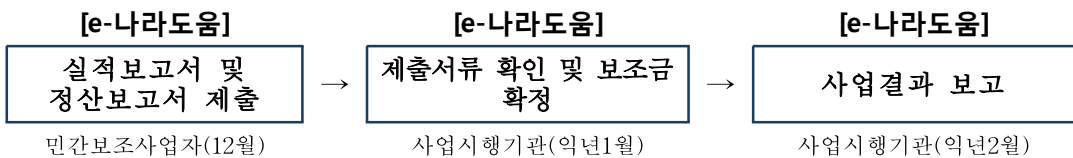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
 - * e나라도움을 통해 예약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위하여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보조금은 2차로 나누어 지급할 예정이므로 국고보조금 교부와 관련된 서류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제출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민간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 지원 결정액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권을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해야 함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시행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 시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농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연 2회이상 사업자의 사업 운용실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애로사항 발굴 해소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1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의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 부서에 반드시 통보
- 사업 운영 중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의해 사업이 중단될 경우 교부된 국고 보조금 전액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3년간 동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그 외 사항 등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법에 따름

IV /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운영실적, 주요성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해야 한다.

2. 평가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사업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운영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사업자 선정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식품분야

Ⅱ. 생산기반확충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세부사업명	전통발효식품육성	세목	지자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전통주 산업진흥	예산 (백만원)	3,820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주 산업 경쟁력 강화, 소비 저변 확대 ○ 지역 우수 전통주 업체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 농산물 사용 확대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산업정보실태조사, 발효제 보급사업, 전통주 전문가 세미나, 전통주 유통 활성화,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대축제), 전통주 갤러리, 전통주 용기·표시·기술 연구, 우리술 사이트 운영 							
국고보조 근거법령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지원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전통주 제조 업체, 관련 협회, 컨설팅 업체, 지자체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계획에 따름 							
지원한도	○ 사업계획 수립 시 배정된 세부사업별 예산에 따름							
재원구성(%)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4,000	3,682	3,820	4,000			
	국 고	4,000	3,682	3,820	4,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진흥과 식품진흥부		권준범 전민형		044-201-2137 061-931-0731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관련자료	나라일터 홈페이지 및 전통주산업진흥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국내 전통주 제조 업체, 관련 협회, 컨설팅 업체, 지자체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계획에 따름
 -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전통주 산업진흥 세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자격(관련 사업실적 등)을 갖춘 사업자
- 선정우선순위 : 별도의 선정우선순위 없음

3. 지원대상

- 전통주 산업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사업 추진
 - 각 사업별 세부계획에 따름(예. 통계조사용역비, 전통주 홍보사업비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주류산업정보실태조사, 발효제 보급사업, 전통주 전문가 세미나, 전통주 유통 활성화,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대축제), 전통주 갤러리, 전통주 용기·표시·기술 연구, 우리술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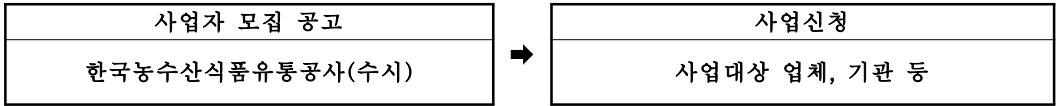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민간경상보조(국고 100% 지원)
 - 사업 의무량 : 세부사업별 계획에 따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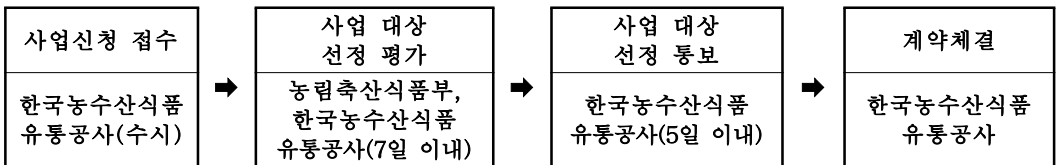
- 사업계획 수립 시 배정된 세부사업별 예산에 따라 사업 수행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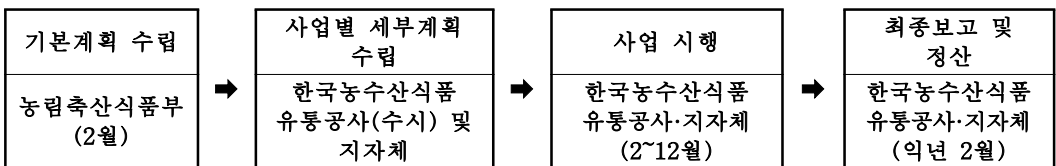
- 세부 사업별로 사업자 모집이 필요한 경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자 모집 공고 추진(사업기간에 따라 공고 일정은 유동적)

2. 사업자 선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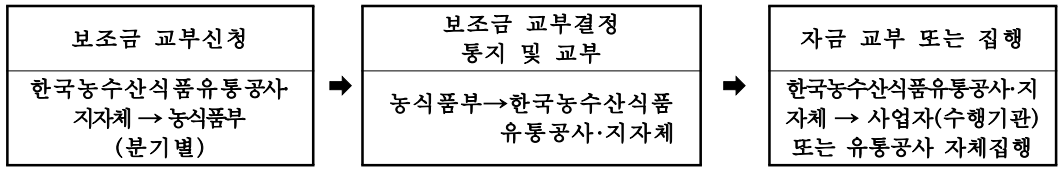
- 사업주관기관은 접수된 사업신청서를 검토·평가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선정된 사업자(수행기관 포함)와 사업추진 계약을 체결
- 세부계획 수립 전이라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 모집(공고 포함) 등을 실시할 수 있음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업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시달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시행 중 세부계획을 벗어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

4. 자금배정단계



- 사업주관기관은 분기별(또는 수시)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교부 신청
- 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자부담 우선집행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자는 2018. 1. 31.까지 보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결과(증빙서류 첨부)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의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8. 2. 28.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함

6. 사후관리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의 운영실태, 사업집행의 적정여부 등을 연 3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의 운영업무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보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의 자금집행 실태, 사업집행의 적정여부 등을 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 종료 후 1개월 안에 운영실적보고서 제출(사업자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식품부)
 - 점검항목 : 과업지시 별 추진 실적, 사업추진효과 등

2. 평가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사업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감점 부여
- 농림축산식품부는 평가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익년도 추진계획에 반영

세부사업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생활, 제주)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생활, 제주)				예산 (백만원)	6,797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 특화된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지역농축산업 주체(농·산·학·연·관)들의 역량을 집중하여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을 통한 소득 증대 일환으로 농식품경영체 육성 							
사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체계 구축 네트워킹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클러스터 주체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컨설팅 ○ 산업화 및 마케팅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 개발, R&D지원, 홍보 및 공동이용시설 구축 							
국고보조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 							
지원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 : 복수 사군, 도 단위의 농산학연관으로 구성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간 30억원(국고) 내외 ○ 재원별 : 국비 50%, 지방비 50% (단 시설비의 경우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	자부담	20 (시설비)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7,628	12,948	13,594	계속			
	국 고	8,814	6,474	6,797	계속			
	지방비	8,814	6,474	6,797	계속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생활, 제주) 통합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지역전략식품 담당과		김양일 지자체별 상이		044-201-2184 지자체별 상이		
신청시기	정기(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기한내)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사도, 사군구)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1.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단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법인

-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단(본 지침에서는 사업단으로 일원화)
 - 구성범위 : 복수 시·군, 도 단위의 농·산·학·연·관으로 구성(사단법인 권장)
 - 역할 : 사업단 사업계획 수립(다수의 주체 및 기관 참여) 및 추진
 - 사업단 최고 의사 결정은 총회를 통하여 결정하며 주요 의사 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농·산·학·연·관 관계자로 구성(단, 농민이 '산'과 동등이상 참여)
 - 총회는 중요재산의 매입·매각결정 및 사업책임자, 이사를 선임하며, 이사회는 총회에 사업책임자 추천,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등 사업과 관련된 주요 의사 결정을 하도록 사업단 정관에 명시
- ◆ 농가 계열화, H/W이용 제품생산, 마케팅·유통 등을 전담할 자회사(주식회사 등) 권장

3. 지원대상

-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사업단 설치 및 운영지원, 전문경영인 지원, 참여주체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킹 구축, 각종 컨설팅 등)
- 산업화 및 마케팅 지원
 - 브랜드 개발 및 관리, R&D, 홍보 및 공동마케팅, 유통전문조직 구축 등(S/W)
 - 제조가공 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 구축 등 공동이용시설(H/W)

< 지원 배 제 >

- 부지매입비, 개별 소유시설, 음식점(6차산업 연계시설 부분인정), 숙박시설 설치비
- 소모성 농자재(농약, 비료, 종자, 농기계 등), 생산시설현대화(관정, 축사 등)
- 타 농림수산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APC, RPC, DSC, 농기계임대, 가축수송 차량 등)
- 동일한 목적일지라도 타 사업에서 추진되는 건물, 시설과 그에 부속되는 시설 등
 - 단, 사업단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건물 및 시설장비는 제외
- 농업·농촌과 연계되지 않고 단순히 식품업체가 참여업체로만 구성된 사업단, 1차 농산물 원물만 유통하는 사업단, 가공품을 생산하지 않는 사업단
- 행사, 홍보 등 추진 시 주체로서 공동참여는 가능, 단순 예산지원 등은 배제
- 홍보관, 박물관 등은 타 농촌관광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혁신체계 구축 네트워크 분야(농·산·학·연·관 결집체 육성 및 혁신체계 구축)

사업내용(세부사업)	세부내역(내역사업)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참여 농어가 교육, 우수사례 벤치마킹
클러스터 주체 간 네트워크 촉진	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자문단 운영, 사업단 운영
사업단 CEO 등 인건비	사업단 전담인력 비용
사업단 컨설팅 용역	사업단 경영, R&D, 홍보·마케팅 중간 및 완료 평가

- 산업화 및 마케팅 분야(지역 농식품경영체 육성 및 특화품목 산업화 촉진)

사업내용(세부사업)	세부내역(내역사업)	
S/W	브랜드 개발 육성	브랜드 개발(브랜드경영체사업과 중복은 제외) 및 관리
	R&D 지원	현장애로 기술지원, 상품개발 기술지원 등
	홍보 및 공동 마케팅	홍보프로그램 운영, 유통전문 조직 구축 펀딩 등 공동 마케팅
H/W	공동이용시설	체험관, 전문판매장 등 6차 산업관련 시설, 제조가공 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 구축 등 공동이용시설

* H/W분야 : 해당 품목 등을 2·3차 산업화 할 수 있는 시설로써, 건립 기간이 2년 이내인 공동이용시설로 전체사업비(국비기준)의 60%미만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 원 :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제주특별자치도계정(시·도 자율편성사업)
- 지원기간 : 5년 지원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단 시설비의 경우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단별 5년간 평균 30억원(국고) 내외로 지원

* 국고지원 연부액 : 8억원(1년차), 10억원(2년차), 7억원(3년차), 3억원(4년차), 2억원(5년차)

☞ e-나라도움 시스템이 본격 도입되어 동 시스템을 통한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집행관리, 중요재산 관리 등을 시행하게 됨

1. 사업신청단계

가.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도에 시달 : 지원 전년도 1월
- 사업계획서(5년) 작성 요령, 신규사업단 평가 기준 등

나. 사업단

- 신청사업단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계획서를 작성(작성요령 참고)하여 해당 지자체에 전년도 2월말까지 신청
- 광역범위 : 해당 시·도에 신청, 복수 시·군 범위 : 주관 시·군에 신청
- 제출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신청서

2. 사업자 선정단계,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가. 시·도

- 시·도별 신청 예산한도 배정(기획재정부) 범위 내에서 시·군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단계별로 심사·평가 : 전년도 3월
- (신규) 사업단 선정 결과 및 사업계획서(5년)를 농림축산식품부에 3월말까지 제출하여 사전검토
 - * 심사·평가 위원회는 시·도 농정심의위원회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이 50%이상 참여
 - * 향토산업육성사업 이수 사업단 및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관리시설 요건을 사업계획에 포함한 사업단, 6차 산업지구 지정 사업단은 가점부여
- (계속) 전년도 선정된 신규 사업단 사업계획서(5년)를 검토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2월말까지 승인 요청하고 계속 사업단 세부사업계획서는 시·도에서 검토 승인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2월말까지 보고
- 시·도는 신규 사업단 사업계획서(5년)에 대한 농식품부의 보완지시 사항을 보완하여 6월말까지 제출
- 시·도는 확정된 사업대상지역, 시행주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나. 농림축산식품부

- 신규 사업단 사업계획서(5년)를 검토하여 시·도에 결과 통보 : 3~5월
- 사업계획서 최종 검토결과 및 사업비를 기획재정부에 통보 : 6월
- * 기획재정부가 검토 요청한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및 사업비를 통보

다. 사업단(자회사)

- 사업단 자회사가 사업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직접 집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전 승인(사업계획에 포함)을 받아야 함
- 부득이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 주관기관(시·도, 시·군)에 사업계획변경을 요청
 - 시·도는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고, 지원기준 등 지침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다만, 사업기간동안(5년)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세부사업비의 30%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를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전협의 후 변경·집행

3. 자금배정 단계

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시·군)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시·도로 자금을 배부하고 시·도는 사업단으로 자금을 교부

나.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 다만, e나라도움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자부담 우선집행원칙 제외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교부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자체점검 실시(년 1회 이상)

4. 이행점검단계

가. 사업단(자회사)

- 자체 추진하는 용역(컨설팅, R&D, 홍보·마케팅 등)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 및 평가를 받음
- 2,0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기계·장비·물품 구입 시 자치단체의 일상감사 또는 원가심사를 받은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계약하며, 지자체가 이를 검수
- 반기별 집행결과(장부사본)를 사업 주관기관을 통하여 시·도에 제출
-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건물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하여는 자회사에 출자한 후 지분 또는 사업단(지자체)으로 등기를 통한 소유권 확보
 - 기존의 시설물의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공동등기 가능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기등기'를 실시하여야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나.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시·군)

- 지자체는 사업계획 확정 이후라도 사업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후 사업단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단 집행내역을 검증하고 필요시 관련자료 요청, 확인결과 법규, 시행지침을 위반한 사업단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사업비 조정 등)를 마련하여 시·도에 통보

5. 사후관리단계

- 사업단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회계법인에서 실시한 회계검사결과를 첨부한 사업실적 및 정산자료를 제출하여 시·도(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시·도(시·군)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3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서식 별도통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1. 지표작성

사업단(자회사)

- 매년 사업계획(5년)에 의한 추진실적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성과지표(서식 별도 통보)를 작성하여 세부사업계획서에 포함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단의 평가지표를 검토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 시·도를 통하여 보완 지시

2. 사업평가(모니터링)

사업단(자회사)

- 사업단은 성과지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및 근거자료(추진실적)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확인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상반기 실적 제출기한(9월 5일)
 - 상·하반기 실적 제출기한(익년 4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시·도

- (상반기) 시·도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사업단 자체평가결과 및 근거자료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지도 실시 및 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상·하반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시·도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사업평가 실시(시·도가 실시한 경우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시·도는 전문평가단(민간전문가 포함)을 구성하여 추진 상황 평가 및 컨설팅 등 지원

3. 환 류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시·도

- 추진실적 점검결과 사업부진 사업단에는 지원중단, 사업계획 변경·보완, 사업비조정 등 패널티 부여
- 지원 종료 사업단에 대한 운영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부진 시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신규 사업단 선정시 총 사업비의 일정부분 감액(최대 20%) 등 패널티 부여

* 세부 평가기준 등은 별도 통보

세부사업명	전통발효식품육성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찾아가는 양조장	예산 (백만원)	96					
사업목적	○ 지역 우수 양조장을 발굴하여 인근 농촌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체험형 양조장으로 육성하며 지역의 융복합 농업자원으로 육성							
사업 주요내용	○ 양조장의 농촌관광 연계 컨설팅 및 인테리어 사업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내 전통주 생산업체							
지원한도	○ 업체별 48백만원(국비, 지방비 포함) 한도 내 지원(4개 업체 선정)							
재원구성(%)	국고	40	지방비	40	용자	-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	96	96			
	국 고	-	-	96	96			
	지방비	-	-	96	96			
	자부담	-	-	48	48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진흥과 식품진흥부		권준범 전민형		044-201-2137 061-931-0731		
신청시기	2분기(4~6월) 예정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나라일터 홈페이지 및 찾아가는 양조장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전통주 제조 업체(지역에서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계획에 따름
 -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지원자격 및 요건

- 찾아가는 양조장 세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자격(관련 사업실적 등)을 갖춘 사업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계획에 따름
- 별도의 선정 우선순위 없음

3. 지원대상

- 전통주 제조 업체(지역에서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계획에 따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양조장 기념품 및 인테리어, 운영 컨설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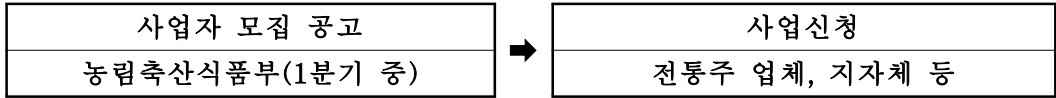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 국고 보조 40%
- 사업 의무량 : 세부사업별 계획에 따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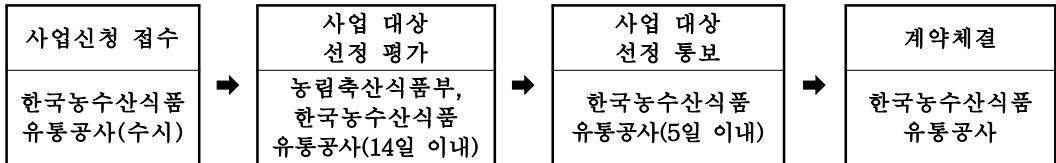
- 총 96백만원(예산한도), 각 업체별 국고 지원 24백만원 한도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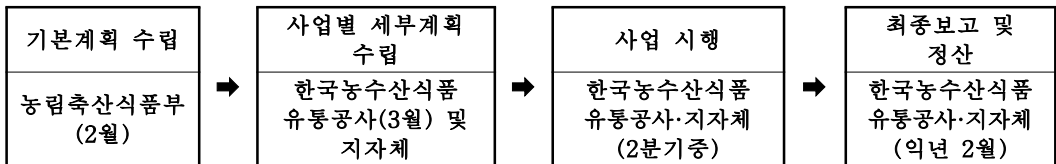
- 세부 사업별로 사업자 모집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대상 공모(공문 시행 예정) 사업자 모집 공고 추진(사업기간에 따라 공고 일정은 유동적)

2. 사업자 선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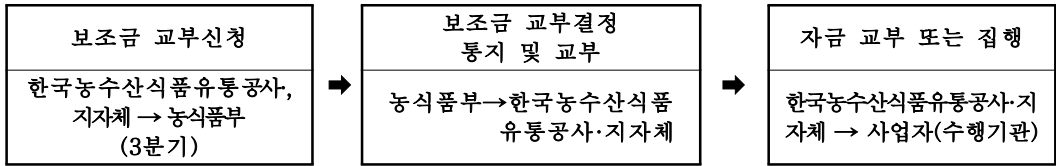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사업주관기관)는 접수된 사업신청서(지자체, 전통주 제조 업체)를 검토·평가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선정된 사업자(수행기관 포함)와 사업추진 계약을 체결
- 세부계획 수립 전이라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 모집(공고 포함) 등을 실시할 수 있음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업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시달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시행 중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세부계획을 벗어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

4. 자금배정단계



- 사업주관기관(aT)와 지자체는 3분기 중 농림축산식품부에 교부 신청
- 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자부담 우선집행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자는 2018. 1. 31.까지 보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결과(증빙서류 첨부)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의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8. 2. 28.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함

6. 사후관리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의 운영실태, 사업집행의 적정여부 등을 연 3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의 운영업무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보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의 자금집행 실태, 사업집행의 적정여부 등을 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 종료 후 1개월 안에 운영실적보고서 제출(사업자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식품부)
 - 점검항목 : 과업지시 별 추진 실적, 사업추진효과 등

2. 평가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사업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감점 부여
- 농림축산식품부는 평가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익년도 추진 계획에 반영

세부사업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생활, 제주)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향토산업육성사업(생활, 제주)			예산 (백만원)	16,680			
사업목적	○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1.2.3차 연계한 지역복합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 주요내용	○ 참여 농어가교육, 우수사례 벤치마케팅, 토론회 및 워크숍개최, 자문단운영, 사업단 운영, 사업단 전담인력 비용, 사업단 경영, R&D,홍보마케팅중간 및 완료평가, 브랜드개발및 관리, 현장애로기술지원, 상품개발등 홍보프로그램운영, 유통전문조직구축 등 공동마케팅, 6차산업관련시설, 제조가공할수 있는 인프라 구축							
국고보조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향토기업체(협동조합 포함), 연구단체 등 ○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자부담 20%이상)							
지원한도	○ 지구당 30억원(국고 50%, 지방비 등 50%)을 4년간 지원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30	용자	-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44,886	43,718	33,360	계속			
	국 고	22,443	21,859	16,680	계속			
	지방비· 자부담	22,443	21,859	16,680	계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시·도/시·군)		농촌산업과 지자체별 상이		신동원 지자체별 상이		044-201-1581 지자체별 상이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3월 중),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조직,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향토기업체 등

- * 가공업체 등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해 시·도 또는 시·군별 자체 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 관련법령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 「농어촌정비법」 제72조
-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산·학·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복합형 사업추진단 구성 의무화

- 사업 참여주체별 역할, 국고보조에 수반되는 지방비·자부담의 확보, 소유권 등에 대한 협약 체결

○ 농업법인·조직의 경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작목반,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 비법인이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 농어업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기본규정 상의 농수산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준하여 적용

- 다만, 사업단이 비영리법인 등을 구성하였을 경우, 1년 미만 일 경우에도 지원 가능(단, 신규지구 선정지침 내 신규법인 설립 기준* 준수)

- * 최고 출자한도 1인 최대 총출자액의 30% 미만, 출자인 10인(법인의 경우, 1인으로 간주) 이상으로 구성(농업 인 5인 이상)

3. 지원대상

- 농촌지역 및 전후방 산업 전반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지역자원
- 1·2·3차 산업이 연계되어 복합산업으로 육성 가능한 자원
 - 단, 해당자원의 지역내 생산량·면적(전국 내 지역비중), 생산농가 수 및 기타 산업화도 등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생산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자원
- 전통적인 농업자원, 전래기술·문화·관광·자연자원 등
- 지리적 표시 등록, 지역특화발전특구 등과 관련된 경우 선정 시 가점 부여
-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 신청 시 가점 부여
- 경영체(들녘별경영체 등)나 생산자조직과 연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신청하는 경우 선정 시 가점부여
- 6차산업 지구조성,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단위 6차산업 후보군에 선정된 시군의 특화품목과 연계 추진코자 할 경우 선정시 우대

<지역단위 6차산업 후보군('17.12말 기준) >

시도	시군	품목	지역 및 품목		
계	104	174			
경기	8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주(쌀) • 화성(포도) • 김포(새싹인삼+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천(돼지,쌀밥) • 평택(쌀) • 파주(산머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평(쌀가공식품) • 안성(쌀)
강원	13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고구마,토종다래) • 동해(포도,찰옥수수) • 인제(오미자,곰취) • 횡성(더덕,한우) • 홍천(갯,인삼,한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창(황태,한우,약콩,배추) • 양구(시래기) • 강릉(한과,감자,산채) • 태백(곰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월(장류,곤드레,포도) • 정선(황기,사과) • 양양(산채,꽃감,떡) • 화천(토마토)
충북	1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주(당뇨 바이오) • 제천(약초) • 보은(대추) • 영동(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평(인삼) • 단양(아로니아) • 옥천(한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괴산(친환경잡곡) • 청주(사슴) • 음성(들깨)
충남	11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안(고추) • 예산(사과) • 당진(쌀) • 공주(알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령(돼지) • 서천(소곡주) • 논산(장류, 딸기) • 아산(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호두과자) • 금산(인삼,곶잎,흑삼,약초) • 청양(구기자,맥문동)
전북	13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흰찰쌀보리) • 완주(로컬푸드) • 김제(로컬푸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산(과채류,고구마,쌀,보리) • 정읍(귀리,구절초,수박,지황) • 장수(레드푸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안(로컬푸드,김치) • 부안(양파,오디) • 전주(미나리)

시도	시군	품목	지역 및 품목		
			• 순창(장류,무·매실절임) • 고창(복분자)	• 임실(치즈,로컬푸드)	• 무주(천마)
전남	14	21	• 여수(갯,썩) • 순천(야생차) • 나주(배) • 광양(매실) • 곡성(멜론,매실)	• 고흥(유자) • 영광(쌀모시,찰보리) • 보성(녹차) • 장흥(표고버섯) • 장성(컬러푸드,편백,사과)	• 해남(밤호박) • 영암(무화과) • 강진(백주보리,장류) • 진도(울금,검정쌀)
경북	15	30	• 경북(사과) • 김천(포도,자두) • 안동(사과,마,콩,생강) • 영주(인삼,사과) • 경산(대추,복숭아)	• 영천(포도,복숭아) • 문경(사과,오미자) • 의성(마늘,한우) • 청송(사과) • 고령(딸기)	• 청도(감(반시),미나리) • 성주(참외) • 예천(사과,곤충,참깨) • 상주(쌀,오이,곶감,포도) • 봉화(로컬푸드)
부산 · 경남	18	32	• 부산(대저토마토) • 진주(딸기) • 함안(연근,참외) • 창녕(양파) • 통영(고구마,유자) • 양산(딸기,사과)	• 남해(시금치,마늘) • 합천(양파) • 김해(단감,산딸기) • 산청(쌀,양잠,딸기) • 밀양(사과) • 함양(산양삼,여주,오미자)	• 의령(망개떡) • 거창(사과,산양삼) • 하동(매실,녹차,딸기,배) • 창원(단감) • 거제(유자) • 고성(단감,쌀보리)
제주	2	4	• 서귀포(감귤)	• 제주(청귤,블랙푸드,당근)	

○ (시군별 보조사업자 선정 시)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 신청 시 가점 부여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관련 사업 포괄 지원(S/W, H/W 포괄지원)

- 기존 특산제품의 고급화 및 다양화
- 전통농업자원, 토종 동·식물 등을 활용한 상품개발
- 전통전래양식의 상품화
- 농·축·임산물의 효능 및 약효를 이용한 신소재 상품개발
- 향토자원을 활용한 문화상품의 개발 등

○ 지원분야별 사용용도

- S/W 분야 : 홍보·마케팅, 디자인·브랜드 개발, 제품 및 기술 개발, 지적 재산권 등록, 사업추진단 전담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 역량강화 등 교육시행, 고객관리 프로그램 도입, 온라인 거래 도입 및 운영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 H/W 분야 : 제품 개발·생산시설, 판매시설, 체험시설 등

* 차량(탑차 등), 지게차 등의 장비는 보조율 별도 적용하여 제한적 지원 허용(지원조건 : 국비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 지원배제 사항 >

- 투입에 비해 효과가 미약하거나 단순 배분하는 주민 보조사업
- 과잉생산 또는 폐원보상 하는 특정 농산물(예 : 소 입식, 인삼, 녹차,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등)에 대한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
- 토지·부지의 매입 또는 임차,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또는 임차
 - *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여러 1·2·3차 개별경영체가 공동출자, 참여 등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융복합화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점·숙박시설을 예외적으로 인정
- 향토산업육성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업무추진 비용
- 개별 농가단위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
-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사업
- 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인건비 등의 운영비 지원
- 향토산업육성사업 외의 타 보조사업 참여에 필요한 자부담금으로의 사용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과 배치되는 지원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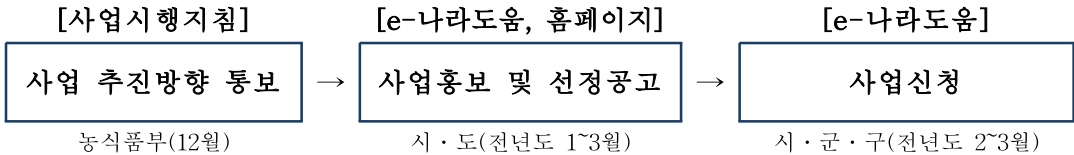
- 재원 :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제주계정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자부담 20%이상)
 - 지방비 부담의 경우, 부담액의 일부를 사업수혜자가 부담하도록 지자체에서 자율 시행 (예시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 세부단위 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율 결정
 - ** 시·도 및 시·군·구는 2년차 이후 사업비는 예산 편성시 우선 반영하여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구당 30억원(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4년간 지원
 - 연차별 국고지원 : 3.5억원 → 5.5 → 4 → 2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집행 관리, 중요재산 관리 등을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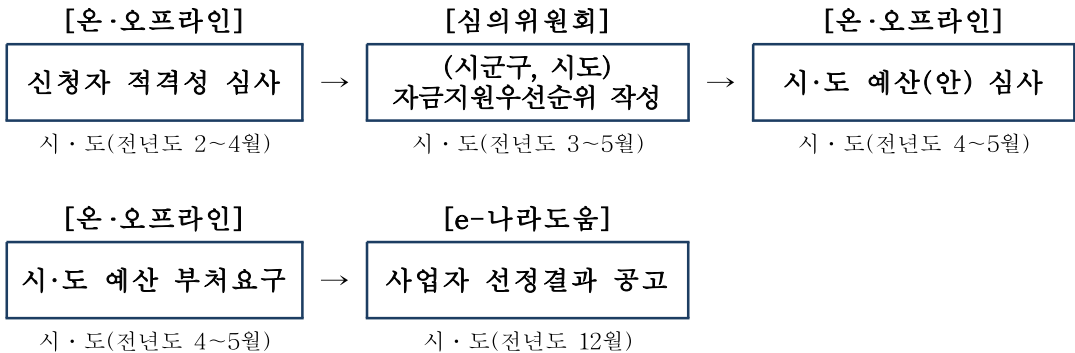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매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지자체(시·군·구 또는 시·도)는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
 - 시·도 등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시·군·구는 포괄보조사업 5개년계획상의 향토산업육성사업 계획에 포함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신청(사업계획과 다른 예산신청은 자제)
 - * 개별법령 등에 따라 세부내역사업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해당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군·구는 타 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중복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시·도는 시·군·구의 검토의견서 적정여부를 평가하여 중복되는 사업은 예산 신청을 제외하여야 함
- 시·군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별지 제1호 서식] 작성·제출 : 전년도 3월
 - 시·군 → 시·도
 - * 시·군에서는 타 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중복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시·군·구에서 S/W 또는 H/W 보조사업자 선정시에도 상기 공모방식을 준용(입찰공고 원칙)을 준용하여 사업신청을 받음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자체의 선정일정에 따라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을 해야 함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함
 -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 농식품사업이 용자사업 등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공고시스템(또는 Agrix) 활용하고 신청 접수할 수 있음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함.
 - ※ 사업대상자가 정보취약계층 등 e나라도움을 사용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침’을 참조

2. 사업자 선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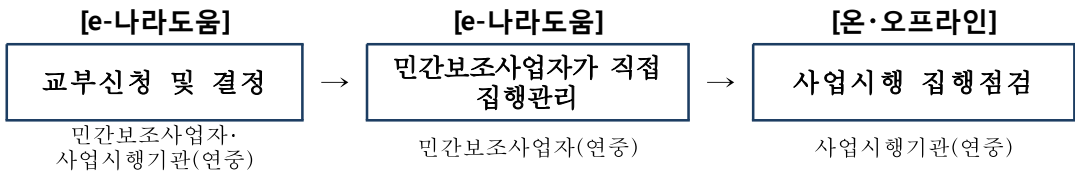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된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에 대해 사업타당성, 적정성 등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후 「전문평가단」을 통해 선정하여야 함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지자체는 농업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 사업시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농업기술센터, 대출취급기관 등의 사업검토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음
- 시·도는 「전문평가단」을 통해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전문평가단 구성은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사업분야별 심의위원을 차별화하여야 함
 - * 전문가 : 대학 및 연구소 소속 관련 전문가, 경영·유통 분야 전문가 등
 - 전문평가단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사업계획 평가기준은 농식품부 표준기준(별도 통보)과 자율적 판단사항 포함하여 기준 마련
 - 전문평가단을 통해 지원대상 예비선정 : (1차) 서면평가 → (2차) 현장평가 (필요시 공개발표 평가 병행)
 - 예비선정 이후, 시군단위의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계획 보완(전년도 4~5월)
 - 전문평가단 심의·의결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시·군·구에서 S/W 또는 H/W 보조사업자 선정시에도 상기 선정방식을 준용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 시·도는 사업대상 시·군에서 제출한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계획을 최종 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와 협의(전년도 4~5월)
 - * 심의위원 중 농식품부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30% 포함, 심사계획 보고
- 시·도는 농식품부 협의결과 및 자금지원우선순위 등에 따라 시·도별 포괄보조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전년도 4~5월)
- 사업확정 이후, 시·군 단위의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계획 수립시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지원 실시(전년도 5월~11월)
- 시·도는 시·군의 세부실행계획에 대한 시·도 컨설팅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을 보완·수정하여 사업계획 최종 확정후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2월)
 - * 컨설팅 위원 중 농식품부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30% 포함, 컨설팅 계획 보고

- 시·도 및 시·군·구는 국회예산이 확정되면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51조)
 -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경영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총사업비 10%이상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변경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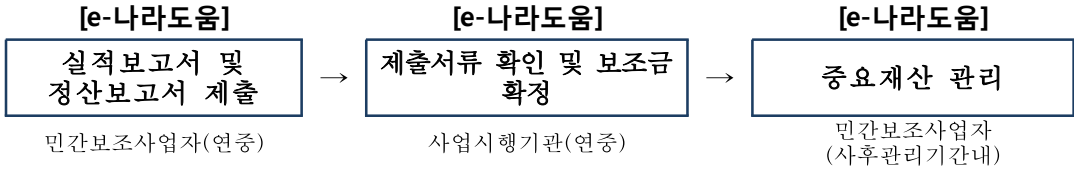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지자체 등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의 시기와 방법을 명시
- 시·군은 여건이 변화되어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변경승인 신청
- 시·도는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고, 지원기준 등 지침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 성과목표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변경신청 후 승인을 득해야 함
- 시·군은 사업지구별로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시·도에 제출(매년 1월)
- * 세부시행계획에는 전년도 사업평가에 대한 환류, 조치사항을 반드시 포함.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
- 시·도는 매년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지구별 세부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매년 2월)
- R&D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전 타당성·효과성 평가실시후 추진
- 사업시행자(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단)는 R&D 추진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연구과제 사전 타당성 평가를 신청(상시)하고, 통보된 결과를 바탕으로 R&D 추진여부 판단
-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R&D 평가 안내 및 신청서 접수, R&D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 결과통보를 실시하고 매년 평가추진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익년 1월중)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사업단 요청 시 신규 사업단의 사업초기 R&D 종합 계획에 대한 선행 유사기술 및 연구정보, 연구개발동향 등 조사·분석 서비스 제공
- 시·도 및 시·군은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R&D 추진상황 점검·관리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면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 등록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식품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의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 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 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함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선정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지역원물 확보 등) 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시·군·구는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항상 공시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는 사업종료 후 사업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만큼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및 경영실적(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등)을 시·군에 제출, 시·군은 이를 시·도에 보고하여야 함
- * '13년 착수지구까지는 사업종료 후 3년간 재산 및 경영실적 보고, '14년 착수지구부터는 4년간 재산 및 경영실적 보고
- 제조·가공분야 보조사업자는 선정된 후 관련분야 창업·보육교육 및 경영 컨설팅을 이수하여야 하며, 시·군·구는 이를 확인하여야 함
- * 보조사업자 선정전에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하였거나 교육이수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1. 사업 성과측정

- 시·군은 반기별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서」를 작성,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8월말, 익년 2월말(서식 별도 통보)
 - 시·도는 시·군의 자료를 확인·검토하고, 진행상황 등을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수시로 시·군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익년 1월말
 - *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 유형으로 시·도 자체편성 의무화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서를 취합, 사업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필요시 컨설팅 등을 추진하도록 시·도에 지시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의 수정 등을 해당 지자체 요구

2. 평가 및 환류

- 시·군은 사업추진 완료 후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를 작성(서식 별도 통보),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익년도 1월까지
 - 시·도는 시·군 사업결과보고 자료에 대한 확인 절차를 종합 검토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에서 제출한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를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방식에 의해 성과평가 실시
 - 평가방법 :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를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서식 별도 통보)
- 성과평가 결과 우수 시·군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자 정부포상 추천, 사업단 생산 제품 판촉·홍보, 예산 추가(지자체 협조사항) 등 인센티브 지원
- 사업 부진 시에는 사업계획 수정·보완, 예산 삭감 등 페널티 부여
 - 특히, 모니터링, 성과평가결과 사업의 지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지원 중단 등 조치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서(안)

I. 사업개요

1. 추진배경
 - 지역여건, 현재까지 추진실적, 그간의 성과·문제점, 사업 필요성·목적 등
2. 향토자원 현황
 - 가. 향토자원의 성격
 - * 해당 자원의 생산량·면적(전국 내 지역 비중), 생산농가 수 등
 - 나. 산업화 가능성
 - * 명확한 근거 제시 필요
3. 사업목표(성과목표)
4. 성과지표
5. 추진전략
6. 중장기 투자계획

II. 사업추진 체계

- 사업추진단, 지원조직, 외부자문단 구성·운영 등

III. 세부실행계획

1. 사업내용
2. 사업기간
3.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4. 기대효과
5. 연차별·보조사업별 투자계획
6. 단위사업별 설명자료

< 붙임 > : 연관사업 현황, 지방자치단체·사업단·참여기관 협약서, 각종 증빙자료 등

유통원예분야

I . 생산기반확충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세부사업명	원예시설현대화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예산 (백만원)	6,400					
사업목적	○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및 자급기반 확보							
사업 주요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지원한도	○ 기준면적: 시설면적 660㎡ 이상 ○ 기준단가: 22천원/㎡							
재원구성 (%)	국고	2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40,000	40,000	32,000	32,000			
	국 고	8,000	8,000	6,400	6,400			
	용 자	6,000	4,800	3,840	3,840			
	지방비	12,000	12,000	9,600	9,600			
	자부담	14,000	15,200	12,160	12,16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원예산업과 사·군·자치구 원예담당		사무관 김 상 업 -		044-201-2236 -		
신청시기	매년 1월			사업시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관련자료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 단, 기존 건고추용 고추 재배 농업인 외 귀농업인 및 타 작물 재배경험 농업인의 경우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한 건고추 재배기술교육 등 이수 여부 확인
 - 사업주관기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지자체)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따라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충족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의무자조금 도입시)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고추용 고추를 재배하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우선 지원(평가 시 가점 부여)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고추종합처리장·농협과 계약재배 실적 우수
 - 밭기반정비사업지구 또는 사업계획지구 내 사업희망
 - 친환경농산물·GAP 인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3. 지원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난방·보온시설 제외)
 - * 「고추비가림하우스 설계도서(농촌진흥청)」 또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6-180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에 적합한 시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으로만 사용
 - 다만, 의무사용 기간 중 연작장해 방지 또는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타 작물 재배는 가능하나 해당 기간만큼 의무사용 기간 연장 적용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보조 20%, 용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용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국고채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단위 지원면적: 시설면적 660m²* 이상
- 사업비 기준단가: 22천원/m²
 -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 계산서 등)을 거쳐 사업비 집행시 실 단가 적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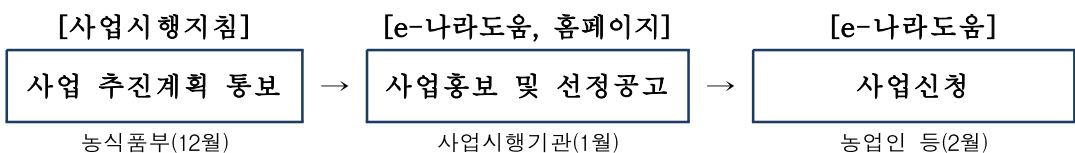
III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병행 관리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시행지침 시달('17.12월)

시·도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에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달('17.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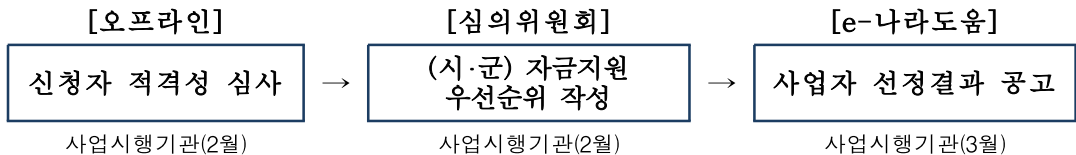
시·군

- 고추 재배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신청방법, 제재사항(중도포기 및 목적 외 사용 등) 등 안내, 교육 및 홍보 병행('18.1월)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접수·검토('18.1월)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시·군 제출('18.1월)
- 융자금 대출 희망자는 거래 농협은행(지역 농·축협 포함)으로부터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사전 확인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18.3월)

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의 지원자격 및 요건 준수여부 등을 검토한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별지 제3호 서식)를 농식품부에 보고('18.2월)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 예산 확정 통보('18.3월)

시·군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18.2월)
- 시·도로부터 배정 받은 예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18.3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3.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단계

《세부계획 수립》

사업착수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즉시 통지하고 사업 착수 조치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시·도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또는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자금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배정,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 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장·군수는 보조금 집행시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 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 발급 여부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등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
- 시장·군수는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의 적합여부(지침 및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검토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 발급
 -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토록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이 지침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에 따라 수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제2항(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 관련규정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안내
 - *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자부담능력 등을 고려, 자부담 비율(20% 이상)·금액(2억원 이상) 충족 시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면 기성고 및 자부담 금액 등을 감안하여 국고 집행 가능
 - 사업비 지원형태에 따른 보조·융자·자부담 비율에 따라 보조금 우선집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어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매월 10일까지 전월 말일 기준으로 시·도별 융자금 대출실적을 농식품부에 제출
-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만 지급 가능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통해 고추 재배여부를 확인하되, 연작장해 방지 등을 위해 타작물 재배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수정으로 보조금 교부목적 외 사용에 대한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여부 확인, 미재배시 보조금 환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사업대상자

-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IV 201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19년도 추진할 사업을 농식품부에 예산 신청('18.3월)
-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예산요구안을 기초로 201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시장·군수
- 신청자격: '18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 '19년도 사업추진 절차 및 방법 등은 '18년도 사업시행지침 참조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신청자 개요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e-mail)

나. 고추재배 현황

(단위: m²)

합계	시설별 재배형태			
	비닐온실	비가림시설	육묘·육종장	노지재배
m ²	m ²	m ²	m ²	m ²

2. 사업계획

가. 비가림 재배시설 신청농지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	부 지번	면적	발기반정비사업지구 ·사업계획지구 여부
농지1						m ²	
농지2						m ²	
농지3						m ²	
농지4						m ²	
농지5						m ²	
계	-	-	-	-	-	m ²	

나. 세부 사업내역

형태	규모(m ²)	소요액(백만원)	추진시기(기간)	계약재배 물량
<input type="checkbox"/> 단동				
<input type="checkbox"/> 연동				

다.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규격

규격명	폭(m)	높이(m)	설치간격(cm)	서까래 (Φ(mm)×t(mm)@cm)	가로대 (Φ(mm)×t(mm))

라. 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소요액	자금 조달계획					
	정부보조	용 자	지방비	자 부 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3. 우선지원 요건

가.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여, 부

나. 계약재배 실적(최근 3년 평균)

생산량	계약재배 물량		
	고추종합처리장	농협	
톤	톤	톤	톤

마. 기타

친환경농산물인증	GAP인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20 년도 인증	20 년도 인증	가입기간: 20 년 ~ 20 년

위와 같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m ²
	전자우편 (e-mail)				사업규모	
사업 계획	구분	사업내용	규모·수량 (m ²)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당초	합계				
		농지1				
		농지2				
		농지3				
		농지4				
	변경	합계				
		농지1				
		농지2				
		농지3				
		농지4				
	농지5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p>위와 같이 시설원에 분야 지원사업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 ○ ○ (서명 또는 인)</p> <p>○○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p>*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검토 후 지체 없이 변경결과 농식품부 보고</p>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세부사업명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응자)			세목	기타민간 기관용자금			
내역사업명	화훼유통개선지원(응자)			예산 (백만원)	15,000			
사업목적	○ 화훼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출하 유도 및 선도금·결제자금을 지원하여 공판장의 출하 및 농가소득안정 유도							
사업 주요내용	○ 사용용도 : 선도금, 결제자금 ○ 사업대상자 : 화훼농가 및 생산자단체, 화훼공판장, 화훼공판장 소속 중도매인 등 ○ 지원조건 : 응자 100% * (선도금) aT공판장: 연리 2.5% 1년 상환, 농협공판장: 연리 3.0%, 1년 상환 (결제자금) aT공판장, 농협공판장: 연리 3% 1년 상환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및 제73조(재정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선도금 - (화훼농가 및 생산자단체)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 - (농협공판장) 농협경제지구 및 회원조합에서 운영하는 공판장 ○ 결제자금 -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최근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1개월 이상 받지 않은 자 - (농협공판장) 농협경제지구 및 회원조합에서 운영하는 공판장 - (소매유통업체)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으로부터 화훼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소매유통업체 중 자체사업장을 갖추고 있는 업체							
지원한도	○ 선도금(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 : 전년도 출하실적의 변경 90% 이내 - 신용대출은 50백만원 이내, 담보대출은 400백만원 이내 ○ 결제자금 -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전년도 경매실적의 50% 이내, 400백만원 이내 - (소매유통업체) 전년도 화훼류 매출액(과세표준, 자재포함)의 50% 이내, 400백만원 이내							
재원구성(%)	국고	-	지방비	-	응자	100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3,000	20,500	15,000	75,000			
	응 자	23,000	20,500	15,000	75,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이강권		044-201-2261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		
관련자료	화훼유통개선지원(응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선도금 : 화훼농가 및 생산자단체, 농협경제지주 및 회원농협 공판장
- 결제자금 :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소매유통업체, 농협경제지주 및 회원농협 공판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세부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선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훼농가 및 생산자단체 ·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 ◦ 농협공판장 · 농협경제지주 및 회원조합에서 운영하는 공판장
결제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 최근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1개월 이상 받지 않은 자 ◦ 소매유통업체 ·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으로부터 화훼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소매유통업체 중 자체사업장을 갖추고 있는 업체 ◦ 농협공판장 · 농협경제지주 및 회원조합에서 운영하는 공판장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세부사업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선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훼공판장으로의 출하증대를 위해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지원하는 출하선도금
결제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 해당 화훼공판장에서 낙찰받은 화훼 경매 물량에 대한 결제자금 구입할 때 소요되는 화훼 구매자금 ◦ 소매유통업체 ·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으로 부터 화훼를 구입할 때 소요되는 화훼 구매자금 ◦ 농협공판장 ·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지급하는 화훼 경매물량 결제자금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세부사업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액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금 · aT 화훼공판장 : 용자조건 연리 2.5%(대출) 이내, 1년 이내 · 농협공판장 : 용자조건 연리 3.0%(대출) 이내, 1년 이내 ※ 출하실적이 우수한 농가(5천만원 이상/년)에는 우대금리 적용 : 0~2%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2억원이상</td> <td>15억원 이상 2억원 미만</td> <td>1억원 이상 15억원 미만</td> <td>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td> <td>5천만원 미만</td> </tr> <tr> <td>0%</td> <td>1.0%</td> <td>1.5%</td> <td>2.0%</td> <td>2.5%</td> </tr> </table>	2억원이상	15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미만	0%	1.0%	1.5%	2.0%	2.5%
	2억원이상	15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미만						
	0%	1.0%	1.5%	2.0%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제자금 · aT 화훼공판장 : 용자조건 연리 3.0%(대출) 이내, 1년 이내 · 농협공판장 : 용자조건 연리 3.0%(대출) 이내, 1년 이내 ※ 경매실적이 우수한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에는 우대금리 적용 : 0~2.5%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상위 10% 미만</td> <td>상위 10% 이상 15% 미만</td> <td>상위 15% 이상 20% 미만</td> <td>상위 20% 이상</td> </tr> <tr> <td>0 ~ 1%</td> <td>2.0%</td> <td>2.5%</td> <td>3.0%</td> </tr> </table>	상위 10% 미만	상위 10% 이상 15% 미만	상위 15% 이상 20% 미만	상위 20% 이상	0 ~ 1%	2.0%	2.5%	3.0%			
상위 10% 미만	상위 10% 이상 15% 미만	상위 15% 이상 20% 미만	상위 20% 이상								
0 ~ 1%	2.0%	2.5%	3.0%								
	<사업 의무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훼농가 및 생산자단체 : 대출금액의 125% 이상 공판장에 출하 ◦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 대출금액의 125% 이상 공판장에서 경락 · 농협공판장 : 선도금의 경우, 일평균 출하선도금 운용실적 지원자금의 40% 이상 운영 결제자금의 경우, 연간 거래실적이 지원금액의 6배 이상 ※ 선도금 또는 결제자금만으로 사업의무량 충족 시 사업의무액 인정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선도금(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 : 전년도 출하실적의 90% 이내
 - 신용대출은 50백만원 이내, 담보대출은 400백만원 이내
- 결제자금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전년도 경매실적의 50% 이내, 400백만원 이내
소매유통업체	전년도 화훼류 매출액(과세표준, 자재포함)의 50% 이내, 400백만원 이내

- 선도금 및 결제자금(농협공판장) : A+B 이내
 - 출하선도금(A) : 전년도 일평균 선도금 지급실적에 해당하는 금액
 - 결제자금(B) : 전년도 취급금액의 1/12이내

1. 사업신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 통지(1월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경제지주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해당부서)에 보고하고,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 중도매인협회 등 관계기관에 시달(2월말)
 - * 유통공사홈페이지 게시 등 홍보 실시
- 농협경제지주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해당부서)에 보고하고, 농협공판장에 시달(2월말)

자금신청자

- aT 화훼공판장 관련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소매유통업체
 - 자금신청서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공판장
- 농협경제지주 및 회원농협공판장은 농안기금 운용현황 및 소요액 신청서를 농협경제지주에 제출

2. 사업자선정 단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소매유통업체 등 사업자 선정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대상자 선정

농협경제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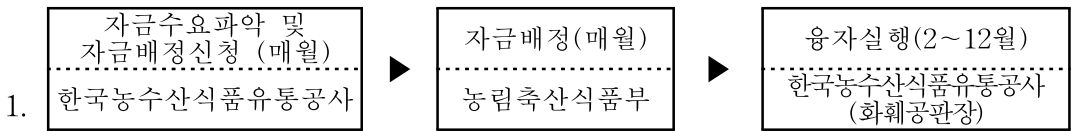
- 농협경제지주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판장 평가 결과, 개설자의 행정처분 사항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3. 자금배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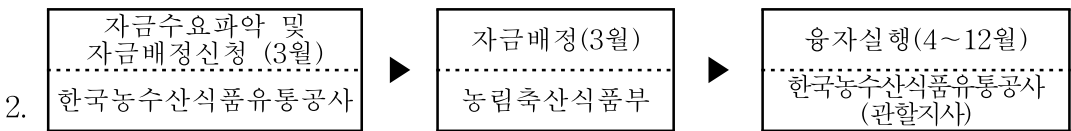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화훼유통개선지원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소매유통업체 등의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담보여력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별 예산 배정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배정 신청

○ 선도금 및 결제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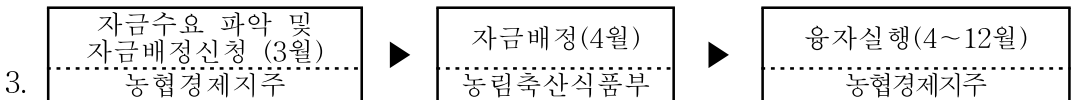


○ 운영자금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에서는 화훼유통개선지원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판장 자금 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공판장별 예산 배정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배정 신청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경제지주)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는 자금배정현황, 자금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상황을 매반기 종료 후 익월 30일 이내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자금관리주체(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경제지주)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공판장 및 각 지사에서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화훼공판장)의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화훼공판장)에 보고
- 농협경제지주는 사후관리 실태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소매유통업체 등의 자금운영실태, 동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 점검자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경제지주 합동점검
- 점검항목 : 출하선도금, 결제자금 사업의무액 준수여부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경제지주)

- 대출취급기관은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7조,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해당 조직의 자격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통지

자금관리주체(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경제지주)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

< 선도금 및 결제자금 >

- 위약금 산출식 : 위약원금(미달차액) × 위약금리 × 위약일수/365
 - 위약원금 : 사업의무액 - 사업실적
 - 위약금리 :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농협은행)
 - 위약일수 : 대출일로부터 회수일의 전일까지
- ※ 본 사업의 '농협중앙회'는 '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

세부사업명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세목	지자체 자본보조, 기타민간 기관용자금		
내역사업명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 (백만원)	24,527		
사업목적	○ 농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국민생활 안정 도모							
사업 주요내용	○ 공영도매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장비를 개선하고 환경변화 따른 필요 시설 구축 등을 통해 도매시장 내 농산물 물류 및 유통 효율화 제고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제20조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제57조(기금의 용도), 제73조(재정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앙도매시장 개설자 및 동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방도매시장 개설자							
지원한도	○ 정부 승인한도 내							
재원구성(%)	국고	30	지방비	30	용자	40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7,113	16,436	24,527	360,533			
	국 고	3,619	8,191	11,940	154,515			
	용 자	3,494	8,245	12,587	206,018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정책과 시장지원부		사무관 김재경 부 장 김명수		044-201-2221 061-931-1040		
신청시기	매년 1~3월			사업시행기관		도매시장개설자 (지자체)		
관련자료	공영도매시장현대화비용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market.okdab.com)							

1. 사업대상자

○ 「농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앙도매시장 개설자 및 동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방도매시장 개설자(이하 “공영도매시장”이라 한다)

* (중앙도매시장 개설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지방도매시장 개설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 사업대상 공영도매시장 및 개설자 현황 》

중앙도매시장(6개소)

지역	개설자	도매시장명	개설부류	설치기간
부산(1)	부산광역시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87~'93
대구(1)	대구광역시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수산	'84~'88
인천(2)	인천광역시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87~'93
		삼산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95~'00
광주(1)	광주광역시	각화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	'88~'91
대전(1)	대전광역시	노은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96~'00
울산(1)	울산광역시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수산	'88~'90

지방도매시장(19개소)

지역	개설자	도매시장명	개설부류	설치기간
서울(1)	서울특별시	강서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94~'04
부산(1)	부산광역시	반여동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94~'00
광주(1)	광주광역시	서부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수산	'94~'03
경기(2)	안양시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수산	'92~'97
	안산시	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수산	'94~'97
강원(3)	춘천시	춘천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94~'96
	강릉시	강릉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95~'99
	원주시	원주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95~'00
충북(2)	청주시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수산	'85~'88
	충주시	충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수산	'92~'95
전북(3)	전주시	전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수산	'89~'92
	익산시	익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수산	'95~'97
	정읍시	정읍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95~'99
전남(1)	순천시	순천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96~'00
경북(2)	구미시	구미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96~'00
	포항시	포항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95~'01
경남(3)	창원시	창원팔용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85~'95
		창원내서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96~'02
	진주시	진주 농산물도매시장	청과	'96~'99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타당성 검토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구결과가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만 세부사업추진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신청
 - * 타당성 조사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사 실시(시설현대화 필요성 및 경제성분석(B/C, AHP, 물류·하역비 절감액, 거래 물량·금액 증대 등) 결과 도출)
 - '16년 이후에 실시하고 공모 접수 마감일 전에 완료한 연구용역서만 유효('15년에 실시한 연구용역은 시설정비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유효여부 결정)
 - '16년 이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시설현대화 상업과 연계한 도매시장 운영활성화 MD조사* 추가 의무화
 - * MD(merchandising) : 경영혁신 차원에서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수요내용에 적합한 상품·서비스를 알맞은 시기와 장소에 적절하게 유통시키기 위한 종합마케팅 시책
- 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사업자는 사업신청 제한
 - * 추진완료 : 대전오정('09~'13), 충남천안('12~'16)
 - 추진 중 또는 예정 : 서울가락('09~'21), 경기수원('13~'20), 경북안동('18~'20), 경기구리('19~)
 - * 사업을 포기한 도매시장의 경우 사업을 포기한 해부터 5년간 사업신청 제한

3. 지원대상

- 「농안법」 제6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농산물도매시장 시설기준에 따른 비용으로 시설비, 설계비 등 제반비용
- 단순 시설개보수 및 증축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매기능을 위한 시설물에 대한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기존 장소 외 지역으로 이전·신축할 경우의 부지 관련 비용(부지매입 및 조성비용 등) 및 이전비용(운반비, 보관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기타 지원기준이 모호할 경우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안법」 제6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농산물도매시장 시설기준 중 경매장, 주차장 등 필수시설, 저온창고, 중도매인 점포 등 부수시설, 기타시설의 현대화 비용, 설계비·감리비 등 시설 부대경비
- 시설현대화사업 완료 후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비는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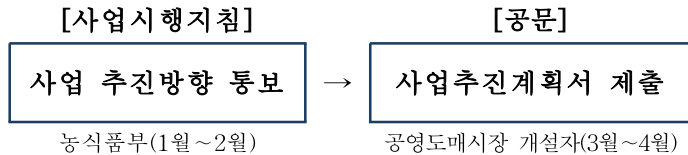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조건 : 국비 30%, 국고용자 40%(지방비로 대체 가능), 지방비 30%
 - 용자 : (금리) 2.5%, (상환기간) 3년 거치 7년 상환
 - * 도매시장 개설자가 국고용자의 지방비 대체하거나 국고용자 상환기간 변경이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업적정성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사업예산 지원한도 확정(필요시 기재부와 협의)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지자체)에게 통보(당해연도 1월 ~ 당해연도 2월)

* 평가 추진체계 및 기준(서면·현장실사·공개발표), 제출용 서류 양식 등 포함

사업신청자(공영도매시장 개설자)

- 사업을 희망하는 공영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당해연도 3월 ~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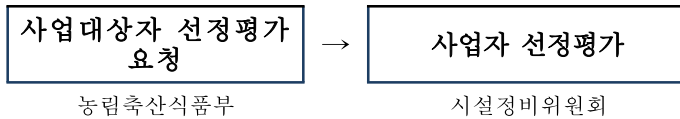
* 제출경로 : 특별시·광역시 → 농식품부, 시(市) → 시·도 → 농식품부

- 사업을 희망하는 공영도매시장 개설자는 사업추진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전에 자체적으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동 계획서를 심의 및 확정하고, 해당 내용을 사업추진계획서와 함께 제출

◆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

- 구성 : 해당 지자체 담당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농산물 유통 전문가(학계·연구기관 등), 유통시설 전문가(건축 관련 학계, 엔지니어 등) 등
- 기능 : 사업추진방향 설정, 사업추진계획서 심의·평가, 사업추진상황 점검 등
- 사무국 : 해당 지자체 사업시행부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접수된 사업추진계획서를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사무국(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시장지원부)에 전달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요청
- 시설정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 구성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 및 건축·시설전문가 등 10여명 내외(필요시 시설정비위원회 확대 운영 가능)
- 기능 :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의 중장기 방향 마련,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사업추진상황 점검 등
- 사무국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시장지원부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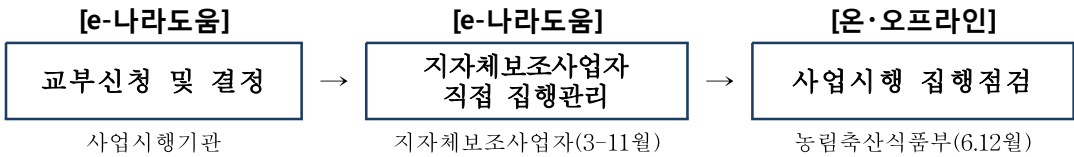
-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사무국은 사업대상자 선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설정비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안건을 상정

○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는 「서면평가 → 현장실사·발표평가」 후 평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당해 연도 5월 ~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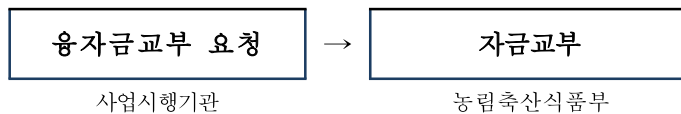
* 사업계획의 명확성 및 실효성, 시장 유통주체(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와의 사전 합의 및 지자체의 의지(지방비 확보, 민간투자 유치 등) 등을 종합평가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국고보조금



○ 융자금



- ◆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등을 준용함
- ◆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을 관리해야 함
-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정부 보조금)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해야 함

사업시행자

< 공통 >

○ (총사업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에 해당 할 경우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단계별*로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을 관리

* 기본계획수립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발주 및 계약 → 시공

- 각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 위원회와 협의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과정 중에도 총사업비와 사업기간 조정 등을 협의

- (자금집행) 사업시행자는 분기마다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국고 보조금 및 융자금의 교부를 요청
 - 자금을 교부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수령·집행

< 기존 사업시행자 >

- 사업시행자는 전년도 사업추진결과보고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에게 제출(당해연도 1월 ~ 2월)
 - * 사업이 완료되는 해일 경우 사업완료보고서로 대체
- 사업이 완료된 경우 아래 사항이 포함된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다음해 1월 ~ 2월)
 - 사업추진실적, 도매시장 운영계획, 도매시장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및 농산물 물류체계 및 거래제도 개선 효과 등

< 신규 사업시행자 >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정부 보조금) 규모 300억원 이상인 경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총사업비) 사업시행자가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에 대해 조정 협의를 요청할 경우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협의
 - 기획재정부 협의 전 농림축산식품부(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에 검토 의뢰
- (자금집행) 사업시행자가 국고 보조금과 융자금의 교부를 요청할 경우 사업추진상황, 월별 자금배정계획 등을 고려하여 자금교부
- (예비타당성조사) 해당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을 요청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 사업시행자의 총사업비 협의조정 요청서를 심의하여 적정성 검토결과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IV /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분기마다 자체적으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시행자는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시설현대화 사업 보완·개선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 원활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와 반기별로 사업추진상황 현장 점검 실시
 -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사무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위원회가 원활한 사업추진상황 현장 점검을 위해 사업추진상황 점검 계획과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 계획 및 반기별 현장점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상황 점검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 현장점검 가능

2. 환류

-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 발굴, 사업시행자에 대한 개선지시, 필요시 사업시행지침 반영 등 환류

세부사업명	과수 생산유통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과수ICT분야 시설보조			예산 (백만원)	800			
사업목적	○ ICT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재배 농업경영체							
사업 주요내용	○ 과수분야 ICT 시설(온습도 등 생육환경 모니터링 센서장비, 영상장비, 통합 제어장비, 센싱제어정보의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비20%, 지방비30, 융자금30, 자담20							
지원한도	사업별 지원 단가는 실 단가를 적용, 사업비 상한액 기준: 200백만원							
재원구성(%)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640	3,640	3,640	10,920			
	국 고	800	800	800	2,400			
	지방비	1,200	1,200	1,200	3,600			
	융 자	840	840	840	2,520			
	자부담	800	800	800	2,4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기주 서기관 김지현 주무관 강지원		044-201-2255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정보융합실		실 장 양종열 과 장 정명종		044-861-8763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1.30.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과수ICT분야 시설보조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재배 농업경영체
 - 사과, 배, 감귤 등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관수 등이 가능한 과수원(시설·노지)
 - * 10,000㎡를 기본단위로 규모별로 적용(최소 1,000㎡ 이상)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가)
 - 조직단위로 신청한 농가, 수출 농가, 친환경·GAP·재해보험·계약재배 농가 등 우선 지원

3. 지원대상

-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시설 내 ICT 융복합 시설 장비 정보시스템 포함)
 - 온도/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관수, 시비,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등
 - 과수원의 센싱·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 * 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 지역의 동류 시설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사항임
-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 관정,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서리피해방지, 양액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사전컨설팅 결과 ICT장비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장비
 - * 상기 장비 등은 ICT장비와의 연계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
 - 단, 노지를 시설로 바꾸기 위한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는 지원 제외
 -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원예시설현대화사업에서 지원되는 시설·장비에 한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경영체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기존 소요액을 지원
 - * 농가별 사업계획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ICT 융복합 시설업체에서는 농식품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고, 한국농기계조합의 품질보증을 득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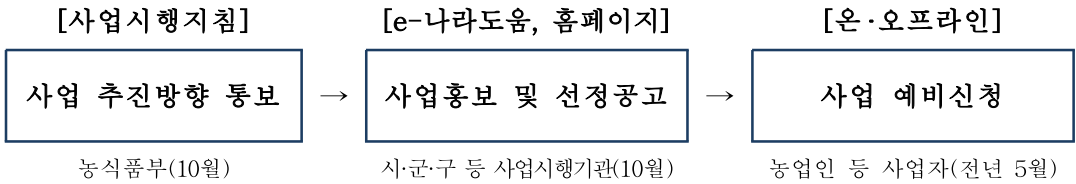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 융자 및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 가능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표준사업비 : 노지(20백만원/ha), 시설(복합환경관리 20백만원/0.33ha,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0.33ha)
 - * 면적 및 시설 추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실소요액을 반영
 - * 시설운영 컨설팅은 전담기관이 국고(100%)로 계획 수립 후, 대상농가에 지원
 - 사업비 상한액 기준 : 200백만원
- ※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는 상기 표준사업비 및 사업비 상한액 기준에 제외되며,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 기준 및 집행 등은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원예시설현대화사업 지침 준용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전년도 10월 말까지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의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농가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다만,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사업신청 대리 등록, 집행계획·정보입력·집행내역등록 등 e나라도움 업무대행자 지원을 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사용 대리 신청, 피대리인 정보입력, 위임장,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 정보취약계층 :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 사업신청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시행주체에 사업신청서[첨부 2]를 제출(전년도 11월)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에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 용자 신청자는 거래농협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액 확인하고, 용자금 3천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대출신청자료를 제출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등 농업경영체인 경우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한다.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③ 지자체에서 제출한 예비신청 대상자 대상 컨설팅 계획 수립(전년도 6월)
- ⑩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시·도별 내시안 안내(전년도 10월)

지자체(시·도↔시·군)

- ②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예비신청 대상자를 모집하고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전담기관)에 제출(전년도 5월)
 - * 전담기관에 제출할 때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사본 등을 포함하여 제출(개인정보는 암호화)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친환경과원관리),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사전설명 결과에 따른 예비신청 대상자 포함(전년도 5월)
- ⑤ 농업경영체의 사업신청을 위해 농식품부 및 전담기관에서 지정(안내)하는 컨설팅기관 및 ICT 융복합 기업 안내(전년도 6월)
- ⑧ 경영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신청서에 대해 본 시행지침의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컨설팅 결과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9월)

경영체

- ① 과수분야 스마트팜 시설설치 희망농가 예비신청(전년도 5월)
- ⑦ 전담기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 건적금액을 포함한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으로 제출(전년도 8월)
 - * 조직내 여러 농업경영체가 포함되어 신청한 경우에는 조직단위로 사업신청 가능
 - 용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금액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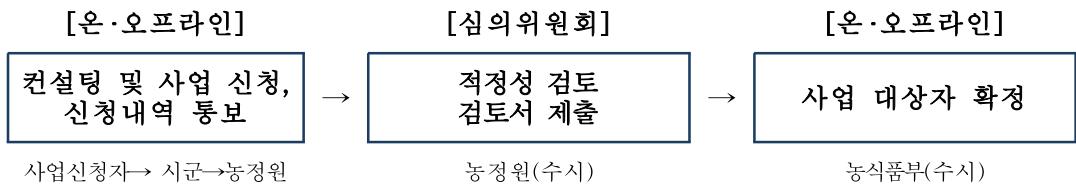
전담기관(농정원)

- ④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의 컨설팅 선정기관, 규격 및 서비스 기준, 관련 ICT 융복합 기업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체와 지자체에 안내(전년도 6월)
- ⑨ 컨설팅기관의 사전컨설팅 결과 및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신청 농업경영체별 사업추진 내역 및 비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농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함(전년도 9월)

컨설팅 기관

- ⑥ 농업경영체의 현장에서 필요한 ICT 융복합 시설 및 종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를 시·군 및 전담기관에 통보(전년도 6~8월)
 -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농업경영체의 별도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계획서 신청을 위한 추가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음

2. 사업자 선정단계 (※ 공모사업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 ① 농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
- ② 시·도의 사업수요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 * 컨설팅결과 및 사업비 신청내용 등에 대한 전담기관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사업내역 및 비용조정 등

시·도

- ③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농식품부 확정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 12월)
- ⑥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가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후 농식품부 보고(2월)

시·군

④ 컨설팅 결과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을 토대로 심의하여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에 보고하고, 전담 기관에 제출(1월)

* 전담기관에 제출할 때는 사업대상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개인정보는 암호화)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농림축산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의 평가항목에 지역별·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에서 배점에 대한 구간(구분)을 변경할 수 있으며, 10점 한도내에서 가점구간 내에서 항목 추가·변경 가능

* 본 사업자 선정 이후 중도포기자는 향후 2년간 FTA기금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 순위>

㉠ 조직단위로 신청하여 연계·활용효과가 높은 농업경영체, 수출 농업경영체 등 우선 지원

㉡ ICT 융복합 수용 준비상황(시설조건, 활용조건) 및 사업지속 가능성 등에서 컨설팅 결과가 우수한 농업경영체

㉢ 농식품부 심사기준표 표준안을 활용하고, 지역별, 사업별 여건에 맞게 가점으로 보완하여 사용

㉣ 대상자의 필요 사업량을 나누어 지원 금지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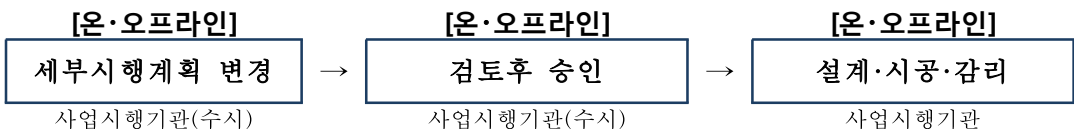
㉥ 사업개시 및 완료여부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취소 및 유예기간 부여

㉦ 선정 취소 또는 사업포기자 발생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여야 함.

⑤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2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

지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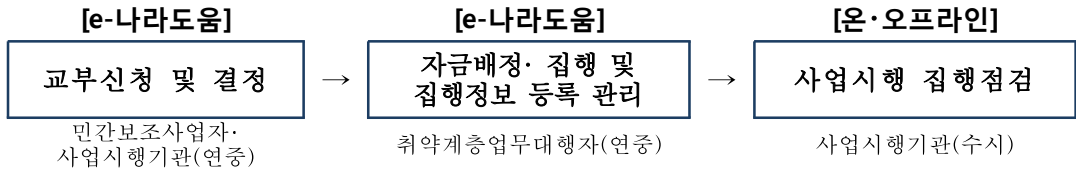
- 농업경영체(또는 조직)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하고,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시설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변경하여 집행
- 세부시설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농식품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함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사업변경절차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조직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 및 전담기관에 제출(시·도는 농식품부로 제출)
 - * 전담기관에 제출할 때는 변경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개인정보는 암호화)
 -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이 있는 경우나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로 제출
- 시·도 단위 전매가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변경 승인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조직)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계획 변경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며, 착공일 기준으로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4.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계획에 따른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 계좌에 입금 후 우선 집행
 - 다만,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예탁교부받은 경우 자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e나라도움 운용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가 정보취약계층인 경우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비예탁교부할 수 있으며, e나라도움 이용 관련 업무대행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 업무대행자를 통한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등록
-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45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자금배정>

<자금집행 체계 및 절차>

- ◇ 기성고(준공) 확인 신청(사업자→시장·군수) ⇒ 보조금 및 융자금 신청 및 배정(지자체→농식품부) ⇒ 융자대출 신청 및 대출(사업자→대출기관) ⇒ 보조금 신청 및 지급(지자체→농식품부) ⇒ 결산·정산보고(지자체→농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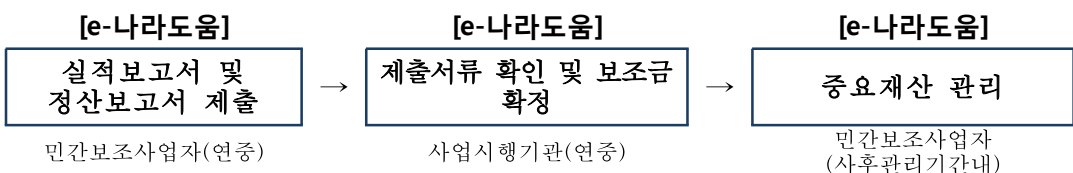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지 자 체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 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기본규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이나, 시장·군수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자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부담 비율이 20% 이상이고, 자부담 금액이 20백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금액의 50%만 선집행하면 국고 집행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할 때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을 하고, 환급금은 지원비율(국고, 지방비, 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을 자부담에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 사업대상자는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하여 추진
- 기계·장비에 대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정산보고서 검증 필요시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 제출 가능
 - * 보조금을 보조사업 전용 계좌로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비에치형)는 집행잔액, 이자 등을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직접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시정·보완 요청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면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다만, 비닐하우스골조는 부기등기 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의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61조제3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제63조의 4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이행점검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상황,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상황 등을 점검
 - 점검일정 : 연 2회(반기별 1회)
 - 점검반 : 농식품부,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및 진척도, 시설장비 선정의 적합성, 지자체 및 자부담 조달계획 등
 - * 점검결과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물량 우선배정 등

지자체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은 컨설팅 결과를 활용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
 - 사업비 정산 시 사업비 집행 실적(영수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 조치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 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

컨설팅 기관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에 시설이 효과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설치확인 사항을 포함하여 단계별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 및 시·군에 제출

전담기관

- 컨설팅기관의 사전 컨설팅, 시설설치 컨설팅, 확인점검 컨설팅에 대한 추진 현황 점검 및 확인
- 농식품부의 점검일정에 따라 합동으로 현지방문 점검 실시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관계규정(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실시하여야 함(농어업경영체 육성법 제7조의2) * 비닐하우스골조는 제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 건물, 비닐 하우스골조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 부동산의 중물(건물내 기계설비)	준공일	7년간	
- 주요기계·장비·자재	구입일	5년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분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을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융자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사업대상자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고, 「기본규정」 제63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제한을 적용하여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후 농식품부 보고
- * 업체와 연관된 부당사용의 경우는 업체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

농림축산식품부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시기 : 차년도 12월말 기준(구축 전후비교)
- 평가방법
 - 전담기관 및 시장·군수(시도지사)의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현장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달성여부, 사업성과 등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물량 배정 조정 등의 조치

시·도(지자체)

- 주관기관 : 시장·군수(시도지사)
- 평가시기 : 구축후 1년 이내
- 사업목표 달성여부 평가 및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 컨설팅 결과보고서의 기대효과 등을 활용하여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결과보고

전담기관

- 사업성과 지표 개발 및 측정
- 운영현황조사 및 현장실사(주관기관 적극 협조)
 - 전담기관은 컨설팅결과의 기대효과 및 지자체의 자체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사업성과 지표에 따라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1. 2019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19년도 추진할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8.2월)
-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18.5월
- 신청자격 : '18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3. 기타 사항

- 사업시행지침, 규격 및 서비스기준, 컨설팅기관 및 관련기업 안내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은 정보공유 웹페이지(<http://www.smartfarmkorea.net>)를 활용

[첨부 1]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예비신청 현황(지자체)

(단위 : m², 백만원)

시도명	시군명	조직명	품목명	대표자	참여 농가수	단지 규모 (m ²)	사업자 (농가)	사업추진 규모 (m ²)	과원현황			과수 스마트팜 확산사업						
									시설/ 노지	지형 (평지/ 경사지)	기타 특징	지원 희망 시설	합계	국고	지방 비	융자	자부 담	
합계																		
												계						
												ICT시설						
												ICT연계시설 (관정, 관수관리시설, 자동개폐기 등)						
												계						
												ICT시설						
												ICT연계시설 (관정, 관수관리시설, 자동개폐기 등)						

* 예비 신청시 사업규모의 산정은 사업추진규모 10,000m²까지 20백만원, 2,000m² 증가시 4백만원씩 증가하여 사업비를 추정 기입(사업계획 신청시에는 컨설팅 결과 및 관련 ICT 기업의 견적결과 등에 따른 실소요액을 작성)

[첨부 2] 사업계획 신청서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신청자 일반현황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조 직 명	조직에 포함된 경우	대표자	조직에 포함된 경우	
과수원 현황	사업예정지 주 소				
	과종/수량	(과종) (수량)	재배규모	(㎡)	
	과수원특징	시설/노지, 과수원의 경사도, 평지, 산간 등	과수원위치	마을과의 거리, 단지 등	
	과수원면적	㎡	수원 거리	관정보유, 저수지와와의 거리 등	
	관수장비	제조사 000 모델명 등	저장고	저장고 보유시 면적, 수용량 등	
	작업장 유무	PC설치 가능상태, 전원공급 여부 등	기타	병해충 등 ICT 관련 보유장비 등	
사업계획	스마트팜 확산사업 (백만원)	시설구분		시설내용	금액
		○ 환경 센싱	온습도, 풍향, 풍속, 강우, 일사 등의 센싱장비		
		○ 관수	관수모터, 스프링클러, 미세살수 등		
		○ 병해충 관리	IT-페르몬트랩 등		
		○ 저장고관리	냉동기 센서 등		
		○ 과수관리시스템	PC, 원격제어, 모바일시스템 등		
		○ 모니터링	생장환경 및 도난관리 등을 위한 CCTV, 웹캠, 녹화장비 등		
		○ 관정			
		○ 관수관비시설			
	○ 자동개폐기 등 ICT연계시설·장비				
○ 기타	침입탐지, 서리방지 등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 고	용 자 (신청액)	자부담	
정보활용 동의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및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의 사업 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조직의 경우, 참여농가 현황 포함)				수수료 없음	

[첨부 3] 사업계획서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 사업신청자(생년월일) :
- 주소(연락처) :
- 일반현황

구 분	재배면적(ha)	생 산 량(톤)	소 득 액(백만원)
'13년			
'14년			
'15년			

2. 과수원 현황

- 사업예정지 : 주소
- 과종/수령 : 생산품목 및 수령
- 과수원면적 : 사업신청 면적 m²(전체 과수원면적 m²)
- 과수원특징 : 시설/노지, 평지, 산간 유무, 산간의 경우 경사도를 기재
- 과수원의 위치 : 마을과의 거리, 단지형성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
- 수원과의 거리 : 관정보유, 저수지와와의 거리 등
- 관수장비 : 보유 시, 제조사, 모델명 등(물탱크(톤) 보유 상황 등)
- 저장고 : 과수원에 위치한 개별농가 저장고 보유시 면적, 수용량, 시설형태 등
- 작업장 : 작업장의 상태 등(전원 공급유무, PC설치 운영가능 상황 등)
- 기타 : 병해충관리 등의 ICT 관련장비 보유상황 등
- 지원시설 : 농림사업 기 지원내역 기재

3. 조직 세부현황(조직단위로 신청한 경우)

결성일		지원시설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 산 량		
생산시설		(m ²)	기타		

4. 사업추진계획

가. 세부 사업계획

구 분	종 류	세부내역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비 고
ICT 응복합	환경센싱	온습도, 풍향, 풍속, 강우, 일사 등의 센싱장비 등			
	관수	관수모터, 스프링클러, 미세살수 등			
	병해충관리	IT-페르몬트랩 등			
	저장고관리	냉동기 센서 등			
	과수관리시스템	PC 원격제어, 모바일 시스템 등			
	모니터링	CCTV, 웹캠, 녹화장비 등			
	관정				
	관수관비시설				
	자동개폐기 등 ICT 연계시설 장비				
	기타	침입탐지, 서리방지 등			
		합 계			

< 세부내역별 >

종류	세부내역	단가 (천원)	개수	합계
합 계				
○ 환경 센싱				
-				
○ 관수				
-				
○ 병해충관리				
-				
○ 저장고관리				
-				
○ 과수관리시스템				
-				
○ 모니터링				
-				
○ 관정				
-				
○ 관수관비시설				
-				
○ 자동개폐기				
-				
○ 기타				
-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소요자금 현황 >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기금계 (A+C)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경영체명	m ²						

나.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
(※ 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 농업경영체의 예금평잔확인서 등 첨부)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
{※ 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등 첨부}

다. 생산·수출·경영 계획

- 연도별 출하·판매계획
 - 연도별 출하계획
(※ 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등)
 - 연도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수출계획·전략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 및 향후 계획
 - 수출전략
- 경영 계획
 - 작목 재배관리, 정보화(PC, 모바일) 등의 학습계획
 - 중장기 사업추진 계획(후계자 활용 등)

위와 같이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계획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인)
 시장·군수·구청장 (인)
 도지사·광역시장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사업신청서 제출시 별첨자료 목록(예시) ◆

< 필수 첨부자료 >

1. 개별 사업계획서

< 해당실적이 있을 경우 첨부자료 >

2. 경영실적, 자금확보 등

2-1. 담보제공능력 : 보증기관의견서, 부동산 관련서류{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 (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2-3. 자부담확보 증빙 : 예금평잔확인서

3. 각종 인증서, 증명서

3-2. 과수 재해보험 가입증명서(증권, 증서 등)

3-3. 수출실적 증빙자료(수출실적증명원, 수출면장 등)

3-4. 부지확보 증빙 : 등기부등본(법인, 대표자), 사용승낙서, 인감증명(타인소유)

4. 계약서, 협약, 규약 등(조직단위로 신청하는 경우)

4-1. 사업참여 조직·농가·유통시설 등의 사업참여동의서, 규약, 협약, 정관, 계약서 등

5. 정보화 능력 등 사업선정시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첨부 4]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

(단위 : m², 백만원)

시도명	시군명	조직명	품목명	대표자	참여 농가수	단지 규모 (m ²)	사업자 (농가)	사업추진규 모 (m ²)	농장유형 (노지 /시설)	과수 스마트팜 확산사업						착공 예정일
										지원 희망 시설	합계	국고	지방 비	용자	자부 담	
합계																
										계						
										ICT시설						
										ICT연계시설 (관정, 관수관비시설, 자동개폐기 등)						
										계						
										ICT시설						
										ICT연계시설 (관정, 관수관비시설, 자동개폐기 등)						

[첨부 5]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지자체)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

(○○시·도)

시군	농가	시설조건(40점)		활용조건(40점)			가점조건(20점)			합계 (100점)
		과수원 조건 (25점)	ICT 시설 (15점)	시설 활용 (20점)	사업 지속성 (10점)	부대 환경 (10점)	조직 화 (10점)	수출 단지 (5점)	재해 보험 (5점)	

< 선정기준에 따른 평가관련 >

- 컨설팅기관의 사전컨설팅 결과, 사업계획 신청서 및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하고, 시·도 농정심의회에서 공개심의
 -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의 평가항목에 지역별·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에서 배점에 대한 구간(구분)을 변경할 수 있으며, 10점 한도내에서 가점구간 내에서 항목 추가변경 가능
- 시설조건
 - 과수원 조건 : 과수원의 특징(경사도, 수원거리 등), 위치, 수종의 수령 등이 ICT 융복합 적합성 정도
 - ICT 시설 : 병해충, 저장고 및 관수제어 관리 등의 ICT 융복합 연계장비 보유 정도
- 활용조건
 - PC 활용 : ICT 시설장비 활용 능력 정도 및 시설운영, 정보화 교육 수료 경력 여부 등
 - 사업 지속성 : 농업후계인력 확보, 토지매입 및 시설투자 계획 여부 등
 - 부대환경 : 작업장의 상황 정도(전원공급, 무선통신 및 PC설치·운영 가능상황 등)
- 가점조건
 - 조직화 : 조직단위 신청 여부, 조직내에서 파급효과 정도 등
 - 수출단지 : 수출단지 지정 여부 등
 - 재해보험 : 과수 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

[첨부 6] 실적보고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시·도)

(단위 : 천원)

시군	조직	농가	품목	사업량 (m ²)	사업진도		()분기까지 사업비 집행내역										
					주요추진 내역	공정 (%)	계		국 고		융 자		지방비		자 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합 계																	

주) 가. “주요추진내역”란은 착공, 공사착수, 발주, 기기설치 등 주요작업 실시내용 및 일자를 표시

나. “사업비집행”은 전월말까지 계획대비 집행실적을 기재

4. 금후 사업추진일정
5. 사업추진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6. 기타 참고사항

[첨부 7] 정산결과 보고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정산결과 보고
[○○시·도]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진도			사 업 비												비 고				
								계 획				집행실적(정산)					대비 (D/C)	차년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액			착공 일	준공 일	
시군	조직	농가	품목	사업량 (m ²)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	국고 (C)	용자	지방 비	자부 담	계	국고 (C)	용자	지방 비				자부 담				
합 계																								

[참고 서식 1] 대출신청자료

기성고 확인서

(여신관리자금 인출용)

1. 사업명 :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00년)

2. 사업자

- 법인명(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남/여)) :
- 주소(사업지역) :

3. 사업계획(행정기관 승인분)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	사 업 비				
	총투자계획 (A)	보 조(B)		국고용자(C)	자 담(C)
		국고보조	지 방 비		

4. 사업실적(200 년 월 일 현재)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	사업추진실적			자부담 투입실적		
	총투자계획 (A)	사업실적 (E)	비율 (E/A)	계획 (D)	실적 (F)	비율 (F/D)

5. 사업비 지원 : 총 사업비 : 천원(기지원 , 금회지원)

6. 입금통장 번호

위 사업자 기성고에 따른 금회지원분(융자금)을 통장에 입금할 것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농 협 장 귀 하

세부사업명	과수 생산유통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예산 (백만원)	3,942				
사업목적	○ 규모화,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소규모 유통시설의 중심축으로 육성							
사업 주요내용	○ 집하선별장, 포장, 예냉저온저장, 냉장수송시설, 위생시설, 신선편의시설, 가공시설 등 일괄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연간 과일선별물량을 5천톤~2만톤 내외로 조달가능하고, 원료조달 물량의 2배이상(1~4만톤 내외)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시군단위이상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이 가능한 운영 주체							
지원한도	○ 기본조사비 : 461천원/ha ○ 기반조성 사업비 : 32,520천원/ha							
재원구성(%)	국고	50~40	지방비	40~30	용자	0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7,920	8,600	7,884	35,600			
	국 고	6,148	3,740	3,942	17,800			
	지방비	5,388	3,180	3,942	17,800			
	자부담	6,384	1,680	-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기주 서기관 김지현 주무관 강지원		044-201-2255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유통조성처		부 장 김상백 차 장 안만물 계 장 김도형		061-931-1023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31.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
 - * 농협(품목,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을 5천톤~2만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원료조달 물량의 2배 이상(1~4만톤 내외)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수 개의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한 경우
- 추가·보완사업은 사업대상 부지를 확보한 경우
-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
 - * 지자체 및 품목단위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이면서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참여조직 포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우선 지원
 -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경우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지원기준>

- * 다음 기준중 하나에 해당 될 경우만 지원
- ① 선(先) 조직화, 후(後) 시설지원 원칙 준수
 - 운영주체가 정부지원 유통회사일 경우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지원 통합마케팅조직일 경우
- ② 해당 시군에 경합되는 규모화된 조직이 없고 다음조건에 해당 될 경우
 - 농축산물 연간 생산액이 3천억원 이상인 시군
 - 과실류의 연간 생산량이 3만톤 이상인 시군
 - 운영주체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고, 공동계산액이 50억원 이상이며, 3년 이내 흑자가 가능한 경우

<지원제한기준>

- 신규 일반APC, 신활력사업 등으로 과실류 전용 APC가 설립된 지역은 향후 5년간 신규시설 지원 제외. 다만 과실 품목 중 전국 생산량이 일부 시·군에 집중된 경우에는 신규시설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사업규모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이 5천톤~2만톤 내외인 유통시설 설치 및 추가·보완

(2)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

- 수 개의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 주체를 확보하고 원료조달 및 마케팅계획이 타당한 시설의 설치 및 추가·보완
- 과실브랜드육성지원 사업계획에 포함된 권역별 규모화 산지유통시설 설치 및 추가·보완

(3) 지원내용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시설, 위생시설, 신선편이시설, 가공시설 등을 원칙적으로 일괄지원
 - 예냉·냉장수송과 신선편이시설, 가공시설은 취급품목의 특성에 따라 일괄 설치를 권장하거나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단, 신선편이시설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음
 - APC의 취급품목 및 유통특성을 고려하여 시설활용도가 낮고 불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설치 제외
- * ICT융복합 활성화를 위해 USN을 활용한 환경제어시스템, 선별기 등 자동화 기기, RFID를 활용한 생산이력 관리 등 지원 가능(ICT 융복합 사업 추진 시 농식품부 정보화담당관실 사전 협의 필요)
- 가동률 제고를 위해 과채류 등 부품목 취급은 가능하나 과일류 이외 품목의 설비와 장비는 자체 조달
- 다만, 정부예산의 범위에서 신규시설 설치 및 시설 보완사업의 사업비 한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일괄지원의 예외>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 시설 중 일부가 이미 구비된 경우는 당해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지원
- 사업계획상 냉장업체 등과 계약을 통해 저온수송을 하고자 할 경우는 냉장탑차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지원

<소규모 분산투자 방지를 위한 지원규모 제한>

- 신규시설 중 집하·선별·포장장, 예냉·저온저장고는 각각 660㎡(기준시설 포함)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예냉·저온저장고의 경우 품목의 특성상 저온저장이 불가능하거나 효율성이 낮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집하·선별·포장장으로 변경 가능

<세부시설 및 사업비 표준단가>

○ 신규시설 150억기준(연간 1~2만톤 처리능력 기준)

비 목	단위	단가	비 고	비 목	단위	단가	비 고
1. 설계 및 감리			예산편성 지침기준	6. 유통시설장비			
- 기본조사설계비	식		공사비의 1.28%	- 수송차량	대		자체 운송
- 실시설계비	식		공사비의 2.04%	- 팔레트	개		0.5톤/1개
- 감리비	식		공사비의 1.87%	- 지게차	대		3단마스트(최대양크5.5m)
- 시설부대비	식		공사비의 0.18%	- 컨베이어	대		입고 및 출고
- 건축디자인비	3.3m ²		3.3m ² 당 1만원	- 운반상자	개		보관량의 %(농기보유감안)
2 토 목				- 파렛타이저	식		전자동,스트랩핑 포함
- 기반 공사	식			- 에틸렌가스제거기	대		66m ² 당 1개
- 상하수도설비	식			7. 위생시설			
3. 전기공사	식			- 오수처리시설	조		선별 및 세척수 처리
4 건 물	m ²			- 작업자 소독실	조		입출입자 위생소독
- 선별장	m ²		향온 클린룸설치	- 에어샤워기	조		입출입자 위생소독
- 집하장	m ²		하차, 검수 등	- 해충방제시설	조		전기식 살충
- 출고장	m ²		상차, 배송	- 출입구격리시설	조		에어백 및 스피드도어, 적재함 높이 조절장치
- 예냉고	m ²			- 공중세균측정장비	조		작업장내 세균 측정
- 저온저장고	m ²		처리물량의 % 저장 (톤)	- 물류기계척장비	조		박스, 팔레트 세척
- CA저장고	m ²		처리물량의 % 저장 (톤)	- 집진기	대		오염 공기의 집진, 배출
- 사무실	m ²		소회의실, 상황실포함				
- 품질검사실	m ²		품질 및 잔류농약검사	- 바닥 청소기	대		바닥 왁스 청소
- 일반창고	m ²		포장자재, 소모품 등 창고	- 세탁 건조기	대		위생복 세탁 건조
- 교육실	m ²		장비, 비품은 비인정	8. 품질 검사장비			
- 부속시설	m ²		식당, 샤워실, 화장실 등	- 농약속성검사기	대		자체 품질검사 장비
5. 선별포장장비				- 이동식 비파괴측정기	대		자체 품질검사 장비
- 비파괴선별기	조		1조당 1일 ()톤처리	9. 경영지원시스템	식		ERP, SCM, CRM 등
- 부작물선별기	조		부작물이 있을 경우	10. 차량계근대	조		원물 중량 계근
- 세척건조기	조		세척건조, 날개포장	11. 조경공사	식		
- 박스제함기	대		제함실 건축비포함				
- 봉합기	대		자동 박스 봉합기				
- 자동 소포장기	식		자동계량, 푼넛포장				
- 세척수 제조기	조		1일 ()톤 생산				
				총계			

주) 비고란에는 산출근거, 장비사양 등을 자세히 기재

【참고사항】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단가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가산출근거를 제시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의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 검토
 -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 기계설비는 한국식품연구원의 기준설계도를 기본으로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
 - 운영주체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인 경우 세부시설 설치 전에 시설 설치 적정성에 대해 농협중앙회와 협의
 - 지자체가 사업주체가 되는 경우 시설장비 설치에 관하여 위탁운영주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한국식품연구원 등 설계 및 설비 설치에 관한 전문컨설팅업체 의견을 반드시 참고
 - CA저장고의 최소 설치규모는 가급적 8.5m(H)×385m² 이상으로 설치
- 사업비중 부지매입과 관련된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 경영지원시스템 구축은 개발업체와 협의하여 시스템 호환문제 등을 해결 (관련된 사항은 별지 3-1 참고)
- 경영지원시스템(ERP)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개발한 「경영정보 시스템 기술지침」을 참고하여 시설 및 품목 특성에 맞게 구축
 - 경영지원시스템 구축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자문을 받아 추진(관련된 사항은 별지 3-1 참고)
- 선별방식 선정 : 농진청(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업주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농협중앙회, 산지유통전문가, 품목조합대표 등으로 구성된 선별방식 선정 협의체를 통하여 선정
 - 전처리(세척 등) → 선별(중량, 당도, 산도, 선택 등) → 포장 → 펠릿 적재 및 랩핑까지 자동일괄처리가 가능한 선별방식을 선정하되 별지 3-2호의 조건 충족
- 신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 구비하고, GAP농산물 취급계획을 수립할 것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연간 과일 선별물량 5천~2만톤 내외의 유통시설 설치 및 보완(부지매입비 제외)
 - * 세부시설 및 사업비 표준단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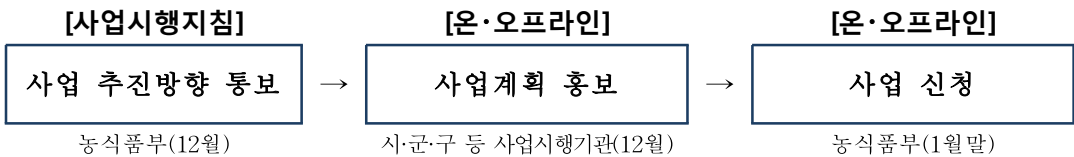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일반유형 :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보완사업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공공유형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 공공유형은 특별한 사유로 일반유형 지원이 곤란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사업기간
 - 신규사업 : 2년(연도별 지원비율 : 1년차 40%, 2년차 60%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추가·보완사업 : 1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가 : 15,000백만원 내외/개소(부지구입비 제외)
 - * 15,000백만원 이하의 중규모 시설도 지원 가능
 - 사업구역에 있는 기존시설의 활용, 구조조정 계획을 감안하여 신규시설 인정
 -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시달(전년도 12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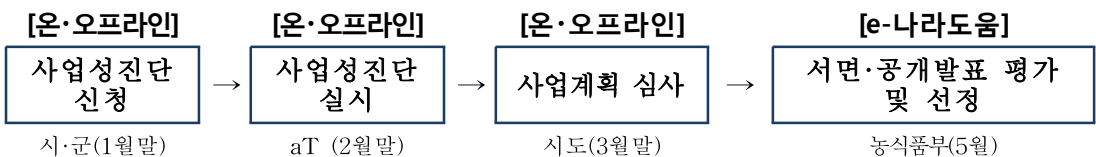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시·군에 제출(1월말)
* 운영주체가 농협인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

농협중앙회

- 회원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고정투자한도, APC 필요성, 과투자, 원물확보 등)을 회원농협에 통보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

- 신규 및 추가·보완사업으로 신청할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진단을 실시 받고 다음년도 사업으로 신청
 - 사업성진단 기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 필요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도 등에서 진단에 참여할 수 있음
 - * 운영주체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인 경우 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 사전검토 보고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사업성 진단신청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농식품부와 유통공사에 신청(1월말 기한, 산지유통시설관리시스템(에그릭스)을 통한 사업신청 병행)
-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 설계개요, 기계배치도, 배치도,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단면도, 투시도(조감도), 부지전경사진, 유통사업 입증서류, 농가조직화 입증서류 등
- * 사업계획서의 과수면적, 생산량, 사업량 등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자료인용 또는 검토의견을 첨부
- 사업성진단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진단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신청자별 사업계획서, 현지 확인 방문계획을 준비하여 사업성 진단에 차질 없도록 함
- 사업성진단 결과는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신청시 첨부물로 제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신청현황 보고 및 통보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신청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2월 5일 기한)
- 진단결과 보고 및 통보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진단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2월 말일 기한)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3. 지원대상」에 부합되지 않은 사업성 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그 현황과 사유를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한 후 사업성 진단에서 제외
- 사업성진단서는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의 심사항목에 따라 시·도에서 심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을 기재(단, 수지전망은 향후 3개년 분석)
 - 사업성 진단에 참여한 진단자(유통공사, 농협 등)는 진단서 하단에 직위·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시·도

- 시·도지사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진단 결과를 토대로 신청자를 심사(사업성진단을 받지 않은 신청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시·도지사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사업성진단결과 반영현황은 사업 신청자별로 작성)
- 총사업비(10% 이상), 운영주체, 취급물량(20% 이상), 사업부지 등은 사업성진단 이후 변경 불가
 - 사업성진단 이후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심사·평가에서 제외

<심사항목 외 시·도지사가 고려할 우선순위>

- ① 우선지원대상 사업자 : 통합마케팅조직 및 품목광역조직, 통합마케팅 참여조직·자조금 조성단체 추천조직 등
 - * 투자 효율성, 지원방향의 일관성, 중복투자 방지, 운영능력이 검증된 사업자를 선정
- ② 농지가 아닌 곳에 사업장 부지를 이미 확보한 경우(확보된 농지의 전용 등 행정 절차가 완료된 경우 포함)
- ③ 조직원의 결속도가 높고, 공동출하 등 유통사업 실적이 있으며, 경영장부(경영일지)의 기록 실적이 양호하고, 재무제표를 구비하고 있는 법인
- ④ 농지 중 지목이 “답”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경우
 - * 농업진흥지역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지역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허용
 - * 농업진흥지역밖에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 농지조성비를 감면하고 있음(농지법시행령에 규정)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세부심사·평가 절차(별첨)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되,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전문가에 의한 공개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선정(5월말)

세부 심사·평가절차

가.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대상 선정

나. 실무 사전검토

-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사업내용의 미비점,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 중복투자 여부 등
- 검토결과 조치
 -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사업은 심사제외
 - 부분적으로 미흡한 과제는 보완요청
 - 검토의견을 비공개 서면평가 자료로 제공

다. 심사 및 평가

- 전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업계획별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위원 지정 및 평가기준제시 : 농림축산식품부

<1단계 : 비공개 서면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비공개 서면평가 실시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로 팀 구성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60%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 * 평균점수 : 평가위원별 합계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2단계 : 현장실사 및 공개발표 평가>

- 전문평가단이 이전 단계의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총괄평가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이전단계 평가 참여위원 포함)
 - 공개발표 방법 : 사업시행주체(시·도 및 시·군) 또는 사업주체측에서 사업 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
 - 주요평가내용 : 이전 단계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평가
 - 사업계획 내용 정밀 확인 및 여건 확보 여부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60%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평가단의 종합의견은 사업비 심의, 최종사업계획 선정시 반영
 - * 심사평가기준 : [별지 3-13호 서식] 참조

라. 사업비 심의·조정

- 단계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업규모·단가 등을 보완하는 등 사업비 조정

마. 사업계획 최종선정

- 우선순위 결정
 - 비공개 서면평가 및 공개발표평가의 점수를 종합(가중치 : 서면평가 30%, 공개발표평가 70%)하여 사업대상 순위 결정
 - 동점 발생시 13번 대분류 평가항목(유통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순위결정

<조건부 사업계획 선정>

-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미비점을 보완했을 경우 또는 보완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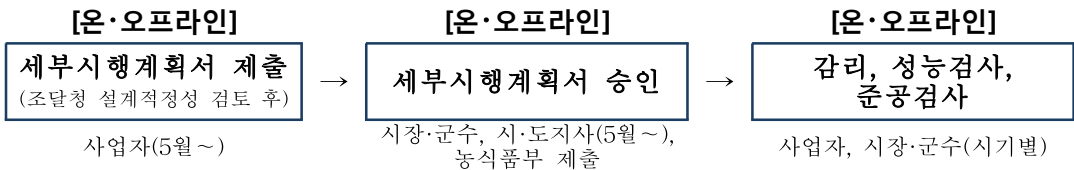
<조건부 자금지원>

- 사업계획 선정시 제시된 사항을 이행했을 경우 자금배정

<사업 포기자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포기 연도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세부계획수립》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시행계획서 (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 요청
 - * 사업계획 및 월별 공정계획 수립(월별 공정계획서식)

시·군

- 시장·군수는 승인 결과 및 월별 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시설공사로서 전기, 통신, 소방은 포함. 설계·감리비와 선별기 등 기계장비는 제외)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조달청에 설계 적정성 검토 요청(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포함)(재정사업관리규정 제53조의2)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할 수 있으며, 월별 공정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사업계획변경 절차》

시·도(시·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시
- 승인을 받은 세부시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축산식품부 보고)
 -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이란 당초 승인 비목 간의 계획을 변경하거나, 승인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낙찰차액 등을 동일 사업 시설비, 주요장비 설치비 및 기타보완 사업비로 변경 가능
 - * 사업시행주체가 시장·군수인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의 경우 완공 후 운영자(사업성진단을 실시한 법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 단, 세부시행계획 변경 승인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체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고, 사업대상자의 변경요청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감리》

사업자(신청조직)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대상 사업자는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 저온시설 및 공조설비의 감리는 반드시 공조냉동 기계설비 전문가(기술사)가 수행

《성능검사》

사업자(신청조직)

- 선별시설 : 공공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종합검정(기기의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를 검정)에 적합 판정된 모델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선별시설 전체에 대하여 전문기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성능시험을 받아야 함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검정기준 참조)

- (설치 전) 종합검정 확인 → 선별기 설치 → (설치 후) 성능시험 → 검수 및 대금지급

* 투입, 세척, 포장시설도 종합검정에 적합판정된 모델 설치

○ 저온저장고의 경우 설계 등 각 단계마다 전문 공공기관(한국식품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이나 학술단체(수확 후 관리연구회 등)의 기술검토(컨설팅)를 실시한 후 최종 성능검사 실시

* 기술검토 단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착공단계 → 판넬시공 → 기계반입 → 기계설치 → 성능검사

○ 주요 기계·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

○ 저온저장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녹색인증,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 인증을 받은 장치 또는 장비의 설비를 우선 권장함

《준공검사》

사업자(신청조직)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 공무원이 직접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기타 사항》

사업자(신청조직)

- 세부시설별 사업비 표준단가는 예시이므로 집행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제가격을 적용할 수도 있음. 다만 지역간·사업장간·유사 세부시설 등에 대한
객관성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단가 산출명세서 첨부)하여야 함
- 시설규모 산정을 위한 상담 및 문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등에 하고, 기술적인 내용과 공사 감리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식품
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하여 건설한 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함

시·군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준공시
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지원시설물이 법인(공공유형 시설일 경우 시장·군수)명의로 등기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 확인

《입찰의 방법(공공 및 일반유형)》

* 국가계약법령 및 예산회계법령 등에서 별도로 규정(제한 또는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의 내용을 준용하여 시행

가. 제한경쟁 입찰방식 선택의 경우

1) 설계 및 감리의 발주

- 시공과 설계를 분리 발주할 경우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는 동일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 중 기술부문별 전문분야 면허를 소지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한하여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장은 도시계획 변경, 예냉설비, 과실세척 설비, 과실봉지 소각 설비 등 사업내용에 따라 필수 또는 선택적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소지 면허를 추가할 수 있음
- 예냉시설에 대한 감리는 농산물의 생산·유통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 식품연구원이 감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음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엔지니어링사업 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지급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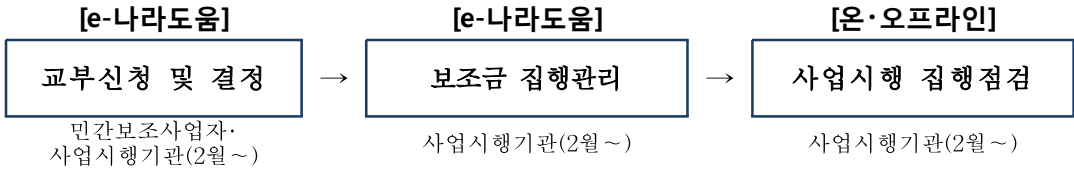
2) 기본설계의 검증

- 엔지니어링사업자는 기본설계 후 시설물의 최적화를 위해 적정성 검증을 해야 하며, 최적안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
 - 적정성 검증내용에는 물류흐름, 입고에서 출하단계까지의 공정별, 설비별 최적화, 전체 공정 및 설비에 대한 최적화, 설비의 유연성이 포함되어야 함
 - 적정성 검증방법은 일괄입찰방식에 준하여 실시
 - 운영주체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인 경우 농협중앙회의 집중자문을 받아야 함

나. 일괄입찰방식(Turn-key 방식) 선택의 경우

- 일괄입찰(일명 : Turn-key 방식)로 발주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9조(정의)제1항제6호에서 정의한 “기본설계입찰”이 원칙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4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 자격)에 입찰참가를 허용하되,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및 제25조(공동계약)에 따라 선별기 제조업체(국외업체의 경우 그 해당업체의 본사 또는 국내지점)와 공동계약(컨소시엄)을 해야 하며 주관업체는 국내업체로 해야 함
- 입찰방법, 입찰안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심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되, 복합공종사업으로 공종별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토목, 건축, 산업기계, 공조냉동, 기계공정, 정보통신 등의 전문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구성위원의 1/2이상은 아래와 같은 농산물관련 전문가로 구성
 - 과수 수확 후 관리 분야를 전공한 조교수급 이상인 자
 - 과실 선별기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조교수급 이상인 자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차장급 이상으로 농산물유통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 농촌진흥청(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박사학위 소지자로 선별기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한국식품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 예냉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한국식품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 전처리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세척공정이 있는 경우)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농협중앙회 차장급 이상으로 농산물유통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운영주체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인 경우 필수 참석)
 - 시설운영주체(기관)의 실무책임자로서 선별기의 사양, 성능 등에 지식이 있는 자 등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4.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 계좌에 입금 후 우선 집행
- 다만,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예탁교부받은 경우 자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e나라도움 운용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가 정보취약계층인 경우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비예탁교부할 수 있으며, e나라도움 이용 관련 업무대행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함
 -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3조2 8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의 시기와 방법을 명시

<자금배정>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 2 제5항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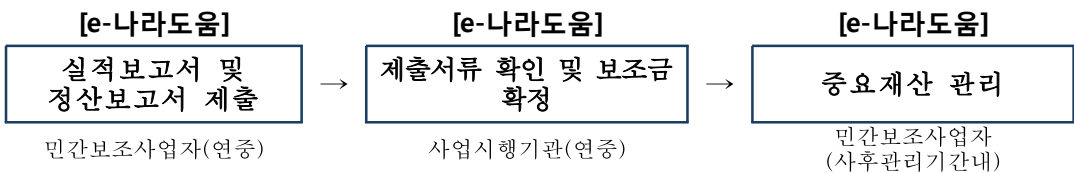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교부를 요구함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자금교부 요청을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사업비는 자금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예탁교부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보완 요청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다만, 비닐 하우스골조는 부기등기 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식품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의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61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 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법인 또는 공동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산지유통센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들의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
- 운영주체의 대표자(센터장)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영자과정, 마케팅과정 등과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과수거점APC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시·도(시·군)

- 지원되는 보조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조치(기본규정 제53조의3)
 - 감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가능
- 공공유형 지원시설물(시장·군수 소유)은 과수거점APC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위탁운영자의 선정기준, 운영기간, 운영방법, 위탁수수료 등을 명시하여 운영
 - 부지와 건물 등의 소유자가 각각 상이한 경우(예, 부지는 위탁운영자, 건축물은 시장·군수)에는 향후 재산권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조례를 통해 명확히 해야 함
- 시장·군수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관리하여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농식품부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참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 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시장·군수는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부진조직에 대한 경영클리닉에 참여하고, 시도지사는 매년(12월) 부진조직의 운영 및 경영개선 현황을 농식품부에 보고(익년 1월)

- 경영클리닉 대상조직은 익년도에 경영개선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하고, 시도는 경영개선계획서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제출(2월)
- 시장·군수는 경영클리닉 결과 용도변경 및 양수도 대상 권고조직에 대하여는 이행상황을 중점관리하고 용도변경, 양수도 이행 즉시 계통보고(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위탁운영자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음
-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승인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군을 달리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 건물, 비닐 하우스골조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 부동산의 중물(건물내 기계설비)	준공일	7년간	
- 주요기계·장비·자재	구입일	5년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분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

- 시·도지사는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을 완료한 후 다음 해 3월말 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사업실적 등)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0조에 따라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및 점검일정 : 시·도(시·군),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적정성 등
 - * 사업점검 등 사후관리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와 합동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제 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IV 평가 및 환류

1. 원 칙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조직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조직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하고, 경영컨설팅과 연계하여 산지유통센터 운영능력을 제고
 - 「산지유통종합평가」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광역화·조직화 등을 적극 유도

2. 2017년 사업실적 평가요령

- 평가 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관리중인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 * 신규사업자의 경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후 운영 및 가동실적이 최소 6개월 이상 있는 경우에 한함
- 평가주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가기간 : 1~3월
- 평가기준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경영평가지표 참조
- 사업실적 평가 대상기간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또는 평잔 기준)까지를 원칙으로 함(농협 이외 법인의 경우 결산일 기준)

3. 평가결과 환류

-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원
 - 산지유통활성화자금 무이자 운영자금 지원, 교육 및 컨설팅 비용 등 차등 지원

V

201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9년도 사업수요조사

- '19년도 사업 예비계획서 제출('18.1월말)
 - 제출방법 : 예비계획서 작성(생산자단체 등)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 예비계획서는 세부시행지침의 사업계획서를 준용하여 간략히 작성

2. 201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1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붙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신규사업 선정평가절차】

①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② 실무 사전검토 : 농림축산식품부(원예경영과)

-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조치 : 부실 사업계획 제외, 미흡과제 보완요청



③ 심사 및 평가 : 전문평가단 주관, 2단계평가

1단계 : 비공개 서면평가

- 사업계획별 7명 내외의 평가위원이 서면평가
- 평가내용 : 타당성,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조치 : 총점 100점 기준 80점 미만은 제외(부문과락 60%)



2단계 : 현장실사 및 공개발표 평가

- 사업계획별 7명 내외의 평가위원이 현장실사 및 공개발표 평가
- 평가내용 : 사업계획발표 후 질의응답 및 사업여건 현장 확인
- 조치 : 총점 100점기준 80점 미만은 제외(부문과락 60%)



④ 사업 최종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내용을 근거로 사업내용 및 사업계획 확정·시달



⑤ 사업비 심의·조정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비 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업비 조정 및 확정

과수거점APC 경영지원시스템 구축시 사전 점검사항

- ◇ 과수거점APC 건립 중인 사업추진 주체가 계근대, 선별기, 저장고 등 시설물과 ERP시스템간 효율적인 연계 및 자동화를 위해 사전에 준비 및 점검해야 할 사항임

1. 주요 점검 대상

- 선별기, 계근대, 저온저장고, CA저장고, 팔렛타이징, RFID, 바코드, AP(Access Point),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2. 점검 대상별 상세

선별기 관련 : 별첨내용 참조

계근대

- 계근정보를 계량과 동시에 알 수 있도록 Display해주는 LED 전광판(생산자와의 신뢰도 측면에서 필요한 장치이며 필수장치는 아님)
- 계근된 중량을 시스템에 자동 입력되도록 계근대 설치시 업체에서 정의한 형식과 방법으로 정보를 송수신 가능토록 함(필수)
- RFID Tag를 이용한 계근자동화시스템 구축시 계근대 좌우 양쪽에 2단으로 RFID Tag Reader를 설치해야 함(선택)

저온저장고

- **센서** : 저장고의 온·습도를 측정하는 센서정보가 ERP에서 정의한 형식과 방법으로 정보를 송신 될 수 있도록 함(필수)
 - 저장고 센서에서 송신하는 정보가 ERP와 연동 될 수 있도록 저장고외부에 정보 송신용 전기 및 네트워크 공사(필수)
- **센서정보 LCD 패널**(선택)
 - 저장고 온·습도를 저장고 입구에서 볼수 있도록 저장고 입구에 부착하는 LCD Display판이 없을 경우 ERP화면에서 온·습도 확인 가능
- RFID Tag를 이용한 재고관리시 저장고 출입문 좌우 양쪽에 2단으로 RFID Tag Reader를 설치해야 함(선택)

□ **CA저장고** : 기준은 저온저장고와 동일, 개폐정보를 ERP에 전송해야 함

□ **팔렛다이징**

- 최종 출하시점에서 팔렛트에 적재된 상품정보(품종, 적재수량)를 ERP에서 정의한 형식과 방법으로 송신

□ **RFID(선택)**

- RF Tag정보를 ERP에서 별도 입력작업 없이도 자동인식 가능토록 계근대, 저장고, 선별기투입구 부분에 적용가능, 이동식리더기 별도 필요
- **점검사항(RFID 선택시 필수사항)**
 - **핸드헬드 리더기** : 고정식 RF 리더기 고장에 대비 이동형 리더기 보유
 - **핸드헬드 리더기 프로그램** : Tag정보를 Read/Write하고 관련정보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으로 납품업체에서 납품시 리더기에 내장
 - **미들웨어** : 고정식 및 이동식 리더기와 ERP와의 연동시 필요한 기능으로 납품업체에서 납품시 프로그램 포함
- ※ ERP연계 : Read/Write되는 정보는 모두 ERP에서 정의한 형식과 방법으로 정보를 송수신 되어야 함

□ **바코드**

- 필요기기 및 분야
 - **프린터기**(원물 입고장, 포장라인), **리더기**(저장고, 선별기투입구), **바코드라벨 자동부착기**(최종포장라인)

- **내부관리용** : 내부 물류이동(입고, 재고, 출고, 선별투입 등)을 관리하기 위해 A4용지에 식별내용(농가, 품목, 수매번호 등) 출력관리
- **출하용** : 최종 포장하여 소비처에 출하 시 사용

○ **점검사항**

- **바코드프린트기 필요지점**
 - 원물입고장 : 계근후 팔렛트에 적재된 원물에 부착
 - 선별후 1차 포장라인 : 선별기에서 선별된 원물의 등급정보를 알 수 있도록 1차 포장라인에서 바코드 라벨을 박스에 부착
 - 최종 포장라인 : 출하처에 출하하기 직전 최종라벨을 출력 부착

- 바코德拉벨자동부착기 : 최종포장라인에서 바코드를 자동 부착하는 장치
 - 바코드리더기 : 저장고에 입고되는 원물 및 상품 재고를 관리하기 위해 각 저장고별, 선별기투입구에 필요(유선 또는 무선)
 - 바코드리더기 프로그램 : 이동식 바코드리더기의 경우 별도 프로그램이 필요(납품업체에서 제공)
- ※ ERP연계 : Read/Write되는 정보는 모두 ERP에서 정의한 형식과 방법으로 정보를 송수신 되어야 함

□ AP(Access Point)

- 기능 : RFID 핸드헬드 리더기와 무선바코드리더기 사용시 무선으로 정보를 교환하는데 필요한 장치
- 점검사항 : APC 네트워크공사를 담당하는 업체에게 공사시 설치

□ 초고속정보통신망

- 기능 : APC 기기장치와 ERP와 연동할때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데 네트워크 단절로 “ERP연동 불가”를 사전대비 조치
- ※ 국내에 건립되는 APC는 여건상 시내에서 지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건립되는데 네트워크 단절이 종종 발생함
- 점검사항
 - 네트워크 단절을 대비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를 이중화(ex, 데이콤과 한국통신 이중가입)
 - ※ 네트워크 단절시 ERP 및 APC 기기장치와의 연동이 전면 중단

<참고>

경영지원시스템(ERP) 구성 및 기능

□ 경영지원시스템의 정의

- 농산물의 구매·입고에서부터 선별·출하까지 경영체 내부 물류흐름 전반의 과정을 정보화·자동화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 ※ 경영지원시스템은 경영정보시스템 또는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 경영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구성 및 기능

구 분		기 능
운영 업무 부문	농가지원관리	생산자관리, 취급품목관리, 약정관리, 지원금관리, 이력추적관리, GAP관리, 정산지불관리
	영업관리	영업계획, 고객관리, 수주관리, 수금관리, 미수관리, 상품관리, Claim 관리
	구매관리	연·월·일 구매계획관리, 수수료관리, 표준단가관리, 구매등록, 자동/수동관리
	저장관리	저장고관리, 저장고운영기준관리, 재고조정관리, 온습도관리, CA저장고관리, RFID입출자동, 컨테이너입출수/자동관리
	생산관리	생산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관리되며, 투입물량과 생산실적이 관리되어 부산물인 Loss관리가 되며, Lot관리를 통한 생산이력관리 - 생산계획, 작업지시, 포장지시, 자동실적, 수동실적
	출하관리	출하지시관리, 출하마감관리, 출하지시서관리
	운송관리	운영실적관리, 실적마감, 운반비지급관리, 배차관리, 차량관리, 거래처관리
	자재관리	공급처관리, 발주관리, 운반재관리, Bin관리, 소모품관리, 자재관리
관리 업무 부문	회계관리	기준정보, 전표관리, 결산관리, 자금관리, 예적금관리, 유가증권, 어음관리, 부가세, 법인세, 예산관리, 고정자산
	인사/급여관리	인사기본, 근태관리, 금상여관리, 연말정산, 퇴직관리, 인사사고, 복태후생관리
	원가관리	생산량 기준으로 발생한 공통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배를 배분처리함으로써 정확한 원가(또는 가장 근접한 원가)를 계산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정확한 매출단가 산정 및 매출이익 계산 가능
	시설관리	시설은 향후 APC 검사지원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일지 및 계획 점검일지 및 교육 일지가 관리되며, 소요 부품정보 및 유지보수업체 관리 - 기준정보, 장비관리, 안전관리, 보고서
	경영분석	계획관리, 실시간 관리, 기간별 관리, 보고서
	경영정보	경영지표, 실시간현황 보고, 업무보고, 경영분석 보고, 경영정보 보고

<별첨 1>

과수거점APC 선별기 관련 표준시방서(예)

- 선별관련 모든 정보는 발주자의 외부프로그램(이하 ERP시스템)과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 연계 데이터는 ERP시스템에서 정의한 형식과 방법으로 송수신되어야 한다.
 - 연계에 소요되는 H/W 및 S/W비용은 모두 제작자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 인터넷단절에 대비 자체제어로 48시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인터넷복구시 단절시간동안의 선별관련 데이터를 ERP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 선별기관련 제어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100%한글화(프로그램화면, 매뉴얼, 작업대)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 연계를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관련 소스 및 모든 라이선스 또는 사용권은 발주자에 제공 또는 권리인정을 항구적으로 하여야 한다.
- 연계 내용
 - 선별투입
 - 바코드 또는 RFID등에 의해 농가별로 구분된 투입정보(투입중량, 농가코드 등)는 수기작업을 거치지 않고 ERP시스템에 전송되어야 한다.
 - Job Change시 ERP시스템이 송신하는 정보(농가코드, 품목/품종, 작업지시번호, GAP 번호 등)를 선별기에서 수신하여 선별 각단계에서 이용해야 한다.
 - 선 별
 - 농가별 농가선별결과정보(등급, 품목/품종, 선별중량, 작업 지시번호 등)를 전송해야 한다.
 - 포 장
 - 농가별 포장정보(포장수량, 투입중량, 개입수, 등급, 포장타입 등)를 전송해야 한다.
 - ERP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라벨인쇄부착기를 이용하여 포장상자의 지정된 위치에 자동적으로 부착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품상자의 이송속도에 따른 작업 지연이 없어야 한다.
 - 팔렛타이징(Optional)
 - 팔레트에 적재된 상품내역정보(농가, 품목/품종, 포장타입, 적재수량, 팔렛타이징 No. 등)를 전송해야 한다.
 - 단위적재표시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선별방식 선정 시 고려 사항

과수거점산지유통시설에 설치할 선별기는 과종별 선별 항목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당도 오차 0.5brix 이내
2. 산도오차 0.2%이내 (감귤 선별기에 한함)
 - 당도, 산도는 일회의 캘리브레이션으로 동일지역 동일 품종에 대해서 상당기간 상기 오차 범위내를 재연하여야 함
 - 캘리브레이션은 품종별로 프로그램 등으로 신속히 전환 가능한 기종
3. 사과는 색깔별, 착색부위 비율별(착색패턴별) 선별이 가능한 기종(육안선별 수준)
4. 선별기 투입 및 이동 중 압상 및 상해가 없는 기종(사과, 배, 복숭아 등)
5. 표면의 흠과 상처 수준별 선별 및 내부의 병과(갈변, 심부병, 물배 등) 선별이 가능한 기종(사과는 밀병과 갈변 구분이 가능해야 함)
 - 상처과, 상해과의 수준별 정확한 선별(육안선별 수준)
6. 과형 및 중량 선별이 가능한 제품
7. 다양한 소포장이 가능한 제품(비닐팩, 망포장, 종이팩, 다양한 상자포장)
8. 상기조건을 충족하고, 병과, 흠과를 선별해내고, 당도, 과형, 착색, 무게에 따른 다양한 조합의 선별이 가능한 제품
9. 국제수준의 선별 능력을 가진 선별기

(부대사항)

1. 투입은 자동투입과 수동투입 선택 가능 제품
2. 세척 설비 선택 등
 - 물세척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는 제품 또는 진공흡입, 공기분사 등 물세척 이외의 방법으로 오물 제거가 가능한 제품
3. 선별시설은 품목간 호환성이 높아 효율성 제고 가능 제품 우선
4. 과수거점시설의 물량에 따라 연도별 분할 설치가 가능한 제품 우선
5. 비파괴 선별기의 도입으로 인한 속도저하가 최소화되는 기종
6. 감귤은 당도와 산도를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정밀 측정이 가능하면 선택
 - 당도와 산도에 대한 분석은 국내 농업관련 연구기관에 의뢰
7. A/S 조건 및 시간당 처리능력이 우수할 것

[별지 3-3호 서식]

○○○○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사업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단체명) :

2. 현 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나.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확보 현황

계	직급		

다. 출자 현황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생산자단체와 일반 유통업체가 공동투자한 법인의 경우 투자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라. 전년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량(톤)				GAP 친환경인증 (톤)	상표명	주요출하처
	계	수탁	매취	기타 (수출)			
계							

(주) - 상표명 : ○○딸기, ○○사과 등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마. 통합마케팅조직 출하실적

통합마케팅 조직명	전년도 출하액(억원) (A)	통합마케팅조직 출하실적(B)	출하비율 (B/A)
계			

바. 공동유통시설 보유현황

집하시설	선별(과) 시설	저온 저장시설	일반창고	예냉시설	선별(과)기	기타공동 시설 및장비
동 m ²	동 m ²	동 m ²	동 m ²	동 m ²	조	
()	()	()	()	()	()	()

(주) ()안에는 유통시설 처리능력(일시저장능력, 1일 처리능력)을 기재

3. 사업추진 필요성 및 효과

가. 처리시설 : 설치년도 노후화, 해당 지자체·자체보유 기존시설 중복성 등 분석

○

나. 처리물량 : 관내(조합원) 생산량 대비 처리 물량 부족 등 분석

○

다. 사업추진 시 기대효과 : 가동률 증대, 처리물량 확대, 수익성 증대 등 기대 효과 작성

○

4. 건축계획

가. 부지확보계획

○ 위치 :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 m²

○ 토지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 부지 확보여부 : 기확보, 미확보

- 부지 미확보시는 사업시행시점까지 확보계획(추진일정) 작성

나. 시설설치계획

○ 총사업비(생산자조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00%)	국고보조	국고용자	지방교부금	시·도 (시·군)비	자부담
사업비(계)						
- 건 물						
- 장 비 등						

(주) - 부지구입비는 제외

- 생산자단체 :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시설 설치계획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처리능력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	비 고 (제작회사)
		천원	백만원			
○ 부 지	m ²			-		
○ 건 물	m ²					
- 집하선별포장장	m ²			저장능력/일		
- 예냉고	m ²			"		
- 저온저장고	m ²			"		
- 예냉·저온저장 겸용고	m ²			"		
- 사무·회의실	m ²			-		
.						
.						
○ 기 계						
- 선별기	조			처리능력/시간		
- 포장기	대			"		
- 컨베어	대					
.						
.						
○ 장 비						
- 냉장탑차	대					
- 팔레트	개					
- 수송차량	대					
- 운반상자	개					
.						
.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 부지확보 :
- 토목설계 :
- 건축설계 :
- 착 공 :
- 준 공 :

5. 사업계획

가. 사업물량 확보

참여조직	사업품목	지역(시·군) (생산기반)		조직원 생산기반			사업물량(당해년도)			
		면적	물량	조직원 수	면적	물량	계 (A+B)	물량 확보 계획		
								수	매 취	
							(A)		물량(B)	금액
		ha	톤	명	ha	톤	톤	톤	톤	천원

- * 주 1) 사업물량 확보계획은 참여조직별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
- 2) **사업물량 확보계획에 대한 이행률 제고방안**을 작성(개조식으로 최소한 5쪽 이내)하고,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참여조직 협약서 등을 반드시 첨부

나. 사업물량 처리

사업 품목	사업 물량	사업 기간	출하처리비율(%)			선별비율(%)		저온창고 평균보관 물량/일
			시장 출하	직공급 (납품)	기타	기계 선별	수작업	

- * 주 1) 시장출하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터, 유사시장 등 포함
- 2) 직공급(납품)에는 대형슈퍼, 백화점 등 유통업체

다.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단위 : 천원)

운 용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부 지		○ 자체자금	
○ 자부담금		○ 신규출자	
○ 운 영 비		○ 외부차입	
- 매취자금		○ 기 타	
- 관리비 등			

(주) 부지의 경우 법인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만 기재

라. 손익 추정

(단위 : 천원)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계		
○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취판매액		- 매입원가		
- 선별포장수입		- 선별포장비용		
○ 기타		○ 관리비		

마. 사업기반 강화계획

-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출하처 확보 및 개발 방안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6. 기 타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립 및 운영 현황(반드시 작성)

- * 현황에 포함할 산지유통센터는 농산물APC(광특회계), 과수거점APC, 지자체 자체 건립 APC가 해당(과실이 주 취급품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

<건립 현황>

지원 연도	지원대상 (지원조직명)	사업명	총사업비 (보조) ()	시설규모	위치	취급품목·처리물량
				집하·선별장 m ² 저온저장고 m ²	○○시·군 ○○읍·면	사과 톤, 배 톤 등

<운영 현황>

지원대상 (지원조직명)	운영 현황	비 고
	○ ○ ○ ○	
	○ ○ ○ ○	

- * 지원대상별로 사업물량 확보 상황, 조직화 여부, 출하가 원활한지, 지역조합·영농조합 등과 결합관계가 없는지, 경영능력이 있는지 등의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작성

- 붙임 1. 사업물량 확보 계획에 대한 이행률 제고 방안 1부.
2. 사업성진단 결과 1부.

○○○○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예정지(부지)조사서

신청자	소재지			면적 (㎡)	소유 구분	용도 구분	매입완료 예정일	비고 (후보자에 대한 행정규제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기재해야 함)
	시·군 자치구	읍·면·구	리·동					

(작성요령)

- 소재지 : 후보지가 여럿인 경우는 중요도에 따라 순서대로 기재
- 면적 : 후보지가 확정적이면 실제면적을, 미정이면 개략적인 면적을 각각 기재
- 소유구분 : 본인 소유, 타인 소유 중 하나를 기재
- 용도구분 : 농지(농업진흥지역내), 농지(농업진흥지역밖), 개발제한구역내, 산지(보전임지내), 산지(보전임지밖), 농(산)지외 중 해당사항을 모두 기재
- 매입완료 예정월 : 소유구분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만 기재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함

○○○○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신청자 명세서

(시·도)

신청자	시·군	구분	주요 시설									사업비	주요 품목	비고
			예냉고	저온저장고	온냉저온겸용	집하선별포장장	사무실	냉장탑차	간마늘시설	비파과당도기	선별기			
() (/)		기존	m	m	m	m	m	대	대	조	조	천원		
		신청												
		계												
() (/)		기존												
		신청												
		계												
() (/)		기존												
		신청												
		계												
() (/)		기존												
		신청												
		계												
() (/)		기존												
		신청												
		계												

- (주) ○ 신청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신청자와 별도로 ()안에 운영예정자를 기재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해야 함.
 ○ 시·군란에는 상단에 시·군명을 기재하고, 하단 ()안에는 “배치계획정수/사업신청년도까지 완료 또는 추진중인 개소 수”를 기재(예 : 해남군(9/6))
 ○ 비고란에는 “신규” 또는 “확장” 중 하나를 기재하되, “신규”로서 당해 시·군의 잔여정수를 초과할 경우는 정수를 이체받을 시·군명과 개소수를 ()안에 기재하고, “확장”의 경우는 최초설치연도 및 추가설치연도를 ()안에 기재.(예 : 신규(00군 1), 확장('95, '97, '99))

○○○○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

(일반유형)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1. 규격상품화 및 조직화 (25점)	1-1. 규격상품화로 발전가능성	3	2	1	0	고유상표	평점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출하	A
						자체 고유상표로 출하 또는 특허출원중	B
						고유상표를 개발 중에 있음	C
						고유상표 미개발	D
	1-2. 공동계산율	12	10	8	4	공동계산제	평점
						총취급액의 60% 이상	A
						총취급액의 40% 이상	B
						총취급액의 20% 이상	C
						총취급액의 20% 미만	D
	* 조직화 취급액 : 공동계산 수탁취급액 + 계약재배 매취급액						
	1-3. 농가 조직화 수준	5	4	3	2	A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200명 이상 또는 연간출하량 15,000톤이상 B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100-2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0-15,000톤 미만 C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20-1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5,000-10,000톤 미만 D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2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5,000톤 미만 * 법인은 출자조합원(준조합원포함)	
1-3. 역량강화 교육	5	4	3	2	* 유통 및 판매인력교육 또는 조직화회원 농가교육 A : 교육 10회 실시 B : 교육 8회 실시 C : 교육 6회 실시 D : 교육 4회 실시 * 인정기준 : 유통.판매교육 2시간, 농가교육 30명 이상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2. 사업수행 능력 (25점)	2-1.경영구조 및 전문인력 확보	10	8	6	4	A : 평점 10점 B : 평점 8점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미만																					
						<table border="1"> <thead> <tr> <th>경영구조</th> <th>평점</th> <th>경영관리</th> <th>평점</th> </tr> </thead> <tbody> <tr> <td>독립채산제 책임경영</td> <td>5</td> <td>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4명 이상</td> <td>5</td> </tr> <tr> <td>분사형 책임경영</td> <td>4</td> <td>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3명 이상</td> <td>4</td> </tr> <tr> <td>판매사업전담 (상무이상)부서</td> <td>3</td> <td>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2명 이상</td> <td>3</td> </tr> <tr> <td>판매사업전담 부서 없음</td> <td>2</td> <td>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1명 이상</td> <td>2</td> </tr> </tbody> </table>	경영구조	평점	경영관리	평점	독립채산제 책임경영	5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4명 이상	5	분사형 책임경영	4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3명 이상	4	판매사업전담 (상무이상)부서	3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2명 이상	3	판매사업전담 부서 없음	2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1명 이상	2	
	경영구조	평점	경영관리	평점																							
독립채산제 책임경영	5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4명 이상	5																								
분사형 책임경영	4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3명 이상	4																								
판매사업전담 (상무이상)부서	3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2명 이상	3																								
판매사업전담 부서 없음	2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1명 이상	2																								
	2-2.재무구조의 건전성	5	4	3	2	A : 평점 10점 이상 B : 평점 8점 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 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점 미만																					
						<table border="1"> <thead> <tr> <th>출자규모</th> <th>평점</th> <th>유동비율</th> <th>평점</th> </tr> </thead> <tbody> <tr> <td>법인 25억원이상, 농협 150억원이상</td> <td>5</td> <td>150% 이상</td> <td>5</td> </tr> <tr> <td>법인 15~25억원 미만 농협 100~150억원 미만</td> <td>4</td> <td>100%이상 150% 미만</td> <td>4</td> </tr> <tr> <td>법인 10~15억원 미만 농협 50~100억원 미만</td> <td>3</td> <td>50% 이상 100% 미만</td> <td>3</td> </tr> <tr> <td>·법인 10억원 미만 ·농협 50억원 미만</td> <td>2</td> <td>50% 미만</td> <td>2</td> </tr> </tbody> </table>	출자규모	평점	유동비율	평점	법인 25억원이상, 농협 150억원이상	5	150% 이상	5	법인 15~25억원 미만 농협 100~150억원 미만	4	100%이상 150% 미만	4	법인 10~15억원 미만 농협 50~100억원 미만	3	50% 이상 100% 미만	3	·법인 10억원 미만 ·농협 50억원 미만	2	50% 미만	2	
출자규모	평점	유동비율	평점																								
법인 25억원이상, 농협 150억원이상	5	150% 이상	5																								
법인 15~25억원 미만 농협 100~150억원 미만	4	100%이상 150% 미만	4																								
법인 10~15억원 미만 농협 50~100억원 미만	3	50% 이상 100% 미만	3																								
·법인 10억원 미만 ·농협 50억원 미만	2	50% 미만	2																								
	2-3.자부담 능력	10	8	6	4	A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을 초과 B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의 50% 를 초과 C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의 50% 이하 D : 고정자산 투자액이 자본금을 초과 * 공통기준 : 자본조달계획 미제시할 경우 차하위등급 부여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E																						
3. 사업계획의 적정성 (50점)	3-1. 투자의 효율성	5	4	3	2	-	A : 투자효율성 15% 이상 B : 투자효율성 10% 이상 15% 미만 C : 투자효율성 5% 이상 10% 미만 D : 투자효율성 5% 미만 ※ 투자의 효율성(%) = $\frac{\text{경상이익}}{\text{투자비}} \times 100$																				
	3-2. 부지 확보 계획	15	12	9	6	0	A : 평점 15점 이상 B : 평점 13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9점 이상 13점 미만 D : 평점 7점 이상 9점 미만 E : 평점 7점 미만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부지소유권</th> <th>평점</th> <th>관련법규 제한여부</th> <th>평점</th> </tr> </thead> <tbody> <tr> <td>법인 명의</td> <td>15</td> <td>제한 없음</td> <td>0</td> </tr> <tr> <td>대표자 명의</td> <td>13</td> <td>조건부로 설치가능</td> <td>-1</td> </tr> <tr> <td>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중도금 지급)</td> <td>10</td> <td>제한 있음</td> <td>-3</td> </tr> <tr> <td>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중도금 미지급) 타인 명의</td> <td>8 6</td> <td>설치불가</td> <td>-5</td> </tr> </tbody> </table>	부지소유권	평점	관련법규 제한여부	평점	법인 명의	15	제한 없음	0	대표자 명의	13	조건부로 설치가능	-1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중도금 지급)	10	제한 있음	-3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중도금 미지급) 타인 명의	8 6	설치불가	-5
	부지소유권	평점	관련법규 제한여부	평점																							
	법인 명의	15	제한 없음	0																							
	대표자 명의	13	조건부로 설치가능	-1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중도금 지급)	10	제한 있음	-3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중도금 미지급) 타인 명의	8 6	설치불가	-5																								
3-3. 입지조건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사업물량확보여건)	5	4	3	2	-	A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없으며, 물량확보 양호 B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있으나, 물량확보 양호 C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없으나, 물량확보 곤란 D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있으며, 물량확보 곤란																					
3-4. 예상가동율	5	4	3	2	1	A : 평점 10점 이상 B : 평점 8점 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 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점 미만 E : 평점 4점 이하 ※ 선별장, 저온저장고의 예상 조업도에 근거하여 평가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선별기 가동일수</th> <th>평점</th> <th>저온창고 가동일수</th> <th>평점</th> </tr> </thead> <tbody> <tr> <td>300일 이상</td> <td>5</td> <td>300일 이상</td> <td>5</td> </tr> <tr> <td>250일 이상 300일 미만</td> <td>4</td> <td>250일 이상 300일 미만</td> <td>4</td> </tr> <tr> <td>200일 이상 250일 미만</td> <td>3</td> <td>200일 이상 250일 미만</td> <td>3</td> </tr> <tr> <td>200일 미만</td> <td>2</td> <td>200일 미만</td> <td>2</td> </tr> </tbody> </table>	선별기 가동일수	평점	저온창고 가동일수	평점	300일 이상	5	300일 이상	5	250일 이상 300일 미만	4	250일 이상 300일 미만	4	200일 이상 250일 미만	3	200일 이상 250일 미만	3	200일 미만	2	200일 미만	2	
선별기 가동일수	평점	저온창고 가동일수	평점																								
300일 이상	5	300일 이상	5																								
250일 이상 300일 미만	4	250일 이상 300일 미만	4																								
200일 이상 250일 미만	3	200일 이상 250일 미만	3																								
200일 미만	2	200일 미만	2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E			
3-5.산지유통 종합평가결과	15	12	9	6	3	A : 공동마케팅조직, 평가결과 상위 25%이내 전문조직 B : 평가결과 상위 26~50%이내 전문조직 C : 평가결과 상위 51~75%이내 전문조직 D : 평가결과 상위 76~95%이내 전문조직 E : 평가결과 상위 96% 초과 조직 및 평가 미 실시 조직		
3-6.시·도지사 조정	5	4	3	2	-	신청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점을 강제배분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신청자 수가 1개소인 경우 : D등급> <신청자 수가 2개소인 경우 : C,D등급 배분> <신청자 수가 3개소인 경우 : B,C,D등급 배분> <신청자 수가 4개소인 경우> A, B, C, D 중 1개 등급에 1개소만 배분 <신청자 수가 5-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20% B : 총 신청자 수의 25% C : 총 신청자 수의 35%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10-1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10% B : 총 신청자 수의 2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20개소 이상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5% B : 총 신청자 수의 1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35%		
합 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 가감점 - 기존 유휴 또는 부진 사업장의 산지유통시설을 인수하였거나 인수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4점), - GAP인증(시설과 조직 둘 다 인증시 3점, 하나만 인증시 1점) ○ 임산물 등 과일 이외의 품목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 5점(감점) * 가점은 가장 유리한 사항 1개만 적용							가 점	
							감 점	△
							기본점수+가감점 합 계	

< 평가자의 종합의견 >

※ 전년도 사업운영실태 평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평가) 결과 : (등급)

지원가	지원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등급이 3개 이하이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사업자 ○ 지원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등급이 4개 이상인 사업자 - 총점 70점 미만인 사업자 - 7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 기존 산지유통센터의 시설보완의 경우 전년도 사업운영실태평가 결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등급이하 조직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

(공공유형)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1. 규격상품화 및 조직화 (25점)	1-1. 규격상품화로 발전가능성	3	2	1	0	고유상표	평점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출하	A
						자체 고유상표로 출하 또는 특허출원중	B
						고유상표를 개발 중에 있음	C
						고유상표 미개발	D
	1-2. 공동계산율	12	10	8	4	공동계산제	평점
						총취급액의 60% 이상	A
						총취급액의 40% 이상	B
						총취급액의 20% 이상	C
						총취급액의 20% 미만	D
	* 조직화 취급액 : 공동계산 수탁취급액 + 계약재배 매취급액						
	1-3. 농가 조직화 수준	5	4	3	2	A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200명 이상 또는 연간출하량 15,000톤이상 B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100-2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0-15,000톤 미만 C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20-1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5,000-10,000톤 미만 D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2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5,000톤 미만 * 법인은 출자조합원(준조합원포함)	
1-3. 역량강화 교육	5	4	3	2	* 유통 및 판매인력교육 또는 조직화회원 농가교육 A : 교육 10회 실시 B : 교육 8회 실시 C : 교육 6회 실시 D : 교육 4회 실시 * 인정기준 : 유통.판매교육 2시간, 농가교육 30명 이상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2. 사업수행 능력 (25점)	2-1.경영구조 및 경영 관리능력	10	8	6	4	<p>A : 평점 10점 B : 평점 8점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미만</p> <table border="1"> <thead> <tr> <th>경영구조</th> <th>평점</th> <th>경영관리</th> <th>평점</th> </tr> </thead> <tbody> <tr> <td>독립채산제 책임경영</td> <td>5</td> <td>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4명 이상</td> <td>5</td> </tr> <tr> <td>분사형 책임경영</td> <td>4</td> <td>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3명 이상</td> <td>4</td> </tr> <tr> <td>판매사업전담 (상무이상)부서</td> <td>3</td> <td>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2명 이상</td> <td>3</td> </tr> <tr> <td>판매사업전담 부서 없음</td> <td>2</td> <td>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1명 이상</td> <td>2</td> </tr> </tbody> </table>	경영구조	평점	경영관리	평점	독립채산제 책임경영	5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4명 이상	5	분사형 책임경영	4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3명 이상	4	판매사업전담 (상무이상)부서	3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2명 이상	3	판매사업전담 부서 없음	2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1명 이상	2
	경영구조	평점	경영관리	평점																						
	독립채산제 책임경영	5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4명 이상	5																						
분사형 책임경영	4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3명 이상	4																							
판매사업전담 (상무이상)부서	3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2명 이상	3																							
판매사업전담 부서 없음	2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1명 이상	2																							
2-2.재무구조의 건전성	5	4	3	2	<p>A : 평점 10점 이상 B : 평점 8점 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 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점 미만</p> <table border="1"> <thead> <tr> <th>출자규모</th> <th>평점</th> <th>유동비율</th> <th>평점</th> </tr> </thead> <tbody> <tr> <td>법인 25억원 이상, 농협 150억원 이상</td> <td>5</td> <td>150% 이상</td> <td>5</td> </tr> <tr> <td>법인 15~25억원 미만, 농협 100~150억원 미만</td> <td>4</td> <td>100% 이상, 150% 미만</td> <td>4</td> </tr> <tr> <td>법인 10~15억원 미만, 농협 50~100억원 미만</td> <td>3</td> <td>50% 이상, 100% 미만</td> <td>3</td> </tr> <tr> <td>·법인 10억원 미만, 농협 50억원 미만</td> <td>2</td> <td>50% 미만</td> <td>2</td> </tr> </tbody> </table>	출자규모	평점	유동비율	평점	법인 25억원 이상, 농협 150억원 이상	5	150% 이상	5	법인 15~25억원 미만, 농협 100~150억원 미만	4	100% 이상, 150% 미만	4	법인 10~15억원 미만, 농협 50~100억원 미만	3	50% 이상, 100% 미만	3	·법인 10억원 미만, 농협 50억원 미만	2	50% 미만	2	
출자규모	평점	유동비율	평점																							
법인 25억원 이상, 농협 150억원 이상	5	150% 이상	5																							
법인 15~25억원 미만, 농협 100~150억원 미만	4	100% 이상, 150% 미만	4																							
법인 10~15억원 미만, 농협 50~100억원 미만	3	50% 이상, 100% 미만	3																							
·법인 10억원 미만, 농협 50억원 미만	2	50% 미만	2																							
2-3.위탁운영자 능력	10	8	6	4	<p>A : 공동마케팅조직 또는 생산자조직 사업연합 등을 위탁 운영자로 선정 B : 산지유통전문조직을 위탁운영자로 선정 C : 일반생산자조직을 위탁운영자로 선정 D : 일반 유통업체를 위탁운영자로 선정</p>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E		
3. 사업계획의 적정성 (50점)	3-1.투자의 효율성	5	4	3	2	-	A : 투자효율성 15% 이상 B : 투자효율성 10% 이상 15% 미만 C : 투자효율성 5% 이상 10% 미만 D : 투자효율성 5% 미만 ※ 투자의 효율성(%) = $\frac{\text{경상이익}}{\text{투자비}} \times 100$
	3-2.부지 확보 계획	15	12	9	6	0	A : 평점 15점 이상 B : 평점 13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9점 이상 13점 미만 D : 평점 7점 이상 9점 미만 E : 평점 7점 미만
	부지소유권		평점	관련법규 제한여부	평점		
	법인 명의	15	제한 없음	0			
대표자 명의	13	조건부로 설치가능	-1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중도금 지급)	10	제한 있음	-3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중도금 미지급)	8	설치불가	-5				
타인 명의	6						
3-3.입지조건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사업 물량확보 여건)	5	4	3	2	-	A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없으며, 물량확보 양호 B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있으나, 물량확보 양호 C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없으나, 물량확보 곤란 D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있으며, 물량확보 곤란	
3-4.예상가동율	5	4	3	2	1	A : 평점 10점 이상 B : 평점 8점 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 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점 미만 E : 평점 4점 이하 ※ 선별장, 저온저장고의 예상 조업도에 근거하여 평가	
선별기 가동일수		평점	저온창고 가동일수	평점			
300일 이상	5	300일 이상	5				
250일 이상 300일 미만	4	250일 이상 300일 미만	4				
200일 이상 250일 미만	3	200일 이상 250일 미만	3				
200일 미만	2	200일 미만	2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E			
3-5.산지유통 종합평가결과	15	12	9	6	3	A : 공동마케팅조직, 평가결과 상위 25%이내 전문조직 B : 평가결과 상위 26~50%이내 전문조직 C : 평가결과 상위 51~75%이내 전문조직 D : 평가결과 상위 76~95%이내 전문조직 E : 평가결과 상위 96% 초과 조직 및 평가 미 실시 조직		
3-6.시·도지사 조정	5	4	3	2	-	신청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점을 강제배분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신청자 수가 1개소인 경우 : D등급> <신청자 수가 2개소인 경우 : C,D등급 배분> <신청자 수가 3개소인 경우 : B,C,D등급 배분> <신청자 수가 4개소인 경우> A, B, C, D 중 1개 등급에 1개소만 배분 <신청자 수가 5-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20% B : 총 신청자 수의 25% C : 총 신청자 수의 35%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10-1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10% B : 총 신청자 수의 2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20개소 이상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5% B : 총 신청자 수의 1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35%		
합 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 가감점 - 기존 유휴 또는 부진 사업장의 산지유통시설을 인수하였거나 인수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4점) - GAP인증(시설과 조직 둘 다 인증시 3점, 하나만 인증시 1점) ○ 임산물 등 과일 이외의 품목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 * 가점은 가장 유리한 사항 1개만 적용							가 점	
							감 점	△
							기본점수+가감점 합 계	

< 평가자의 종합의견 >

※ 전년도 사업운영실태 평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평가) 결과 : (등급)

지원가	지원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가능 - D등급이 3개 이하이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사업자 ○ 지원불가능 - D등급이 4개 이상인 사업자 - 총점 70점 미만인 사업자 - 7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 기존 산지유통센터의 시설보완의 경우 전년도 사업운영실태평가 결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E이하 등급 조직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별지 3-7호 서식]

○○○○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신청재(운영예정자) 심사결과

(시·도)

순위 (평점)	신청자	시·군	구분	주요 시설										사업비		주요 품목	비고
				예냉고	저온 저장고	예냉재 점용	점하선별 포장장	사무실	냉장 탑차	간마늘 시설	비과과 당도기	선별기	신청액	조정액			
1 (00.0)	()		신청	m	m	m	m	m	대	대	조	조	천원	천원			
			조정														
2 (00.0)	()		신청														
			조정														
3 (00.0)	()		신청														
			조정										< >				

(주) ○ 신청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신청자와 별도로 ()안에 운영예정자를 기재

- 조정액에는 규정된 지원비율 및 자부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합계를 기재하되, 동 금액을 초과하여 자부담(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시·도비 또는 시·군비 부담)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비와 별도로 < >안에 추가부담액을 기재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해야 함

[별지 3-8호 서식]

○○○○년 사업신청자 심사시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

사업자(법인명) :

사업성진단 내용	신청자 심사시 진단결과 반영내용	비고

※ 사업규모, 사업비조정내역은 반드시 기입

- 진단결과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에 대한 개선 및 반영내용 기입

[별지 3-9호 서식]

○○○○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월별 공정계획서(예시)

사업자 명칭 :

사업장 소재지 : 시·도 시·군

공종		구분	월 별 공 정 계 획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착 공 전	부지 확보	공정	매입 계약	매입 완료											
	설계	공정		설계 계약	설계 완료										
		금액 (백만원)			10										
	인허가	공정		농지전 용신청	농지전 용완료, 건축허 가신청	건축허가 완료									
공사등 계약	공정				공사계약 체결	제작계약 체결	구매계약 체결								
착 공 후	토목 공사	공정			착공	완료									
		금액 (백만원)					10								
	건축 공사	공정					착공	10%	50%	80%	100%				
		금액 (백만원)						50	200 (250)	150 (400)	100 (500)				
	전기 공사	공정					착공	10%	50%	80%	100%				
		금액 (백만원)						10	40 (50)	30 (80)	20 (100)				
설비 공사	공정							착공	50%	100%					
	금액 (백만원)								20	20 (40)					
구매	공정										납품				
	금액 (백만원)										100				
제작	공정								착수	50%	100%				
	금액 (백만원)									20	20 (40)				
사업비계	공정			1.3%	1.3%	2.5%	10%	40%	67.5%	100%					
	금액 (백만원)			10 (자담)		10(자담) (20)	60(자담) (80)	80(자담) 160 (320)	220 (540)	260 (800)					

(주) ○ 자부담금이 2억원 미만이고 총사업비의 20% 미만인 경우는 자부담금 전액을 집행해야 정부자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는 자부담금을 착수시와 50% 공정시 각각 반씩 집행해야 정부자금을 집행할 수 있음(「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제2항)

- 공정은 누계공정이며, 금액란의 ()안은 누계금액임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함

○○○○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정산 보고

시·군	사업자명 (대표자명)	(지역) 전화번호	사업장 위 치	사 업 규 모						비율 (B/A)
				사업계획			사업실적			
				부지	건물 (A)	기계· 장비별 수량	부지	건물 (B)	기계· 장비별 수량	
				m ²	m ²		m ²	m ²		%

사 업 비 (천원)										비율 (B/A)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집 행 계 획					집 행 실 적 정 산							
계	국고 보조 (A)	국고 융자	지방 교부금	자부담	계	국고 보조 (B)	국고 융자	지방 교부금	자부담			
										%		

사 업 세 부 명 세																	
건물설치명세(평)						기계·장비류 설치명세(개소수)											
계	선별 (과) 시설	집하 시설	저온 저장 시설	예냉 시설	기타	계	선별 기	포장 기	콘베 이어	테핑기 ·벤딩 기	제함 기	지게 차	냉장 차	파렛 트	운반 상자 ·	

(주) 사업세부명세는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에 한함

[별지 3-11호 서식]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사업성진단 신청현황 보고

신청자					
시.도					
시.군					
사업운영주체					
사업유형(형태)					
총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처리규모(톤) (취급품목)					
건축면적(m ²)					
저장능력(천톤)					
공선실적(천톤)					
법인화	인가시기				
	출자액(백만원)				
	참여조직수				
부지확보					
전국브랜드연계계획					
사업비산출근거					
설계개요					
기계배치도					
배치도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단면도					
투시도					
부지사진					
유통사업서류					
농가조직화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심사평가기준(서면평가)

평가항목	등급평가기준	등급					평점
		A	B	C	D	E	
1. 사업물량 확보여건	① 과수주산지로 사업물량 확보여건이 양호한가?	5	4	3	2	1	
2. 부지확보 계획 및 입지조건	① 부지 확보 가능여부 및 관련법규의 제한 정도는?	5	4	3	2	1	
	② 교통 여건 등 입지조건에 따른 경영비 절감 가능여부는?						
3. 사업비확보 계획	①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및 지방비 편성이 실현 가능한가? * 일반유형일 경우 생산자조직의 자부담 조달이 가능한가?	5	4	3	2	1	
4. 지자체와의 정책연계성	① 지자체 차원의 시책, 예산지원 등이 거점APC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향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5	4	3	2	1	
5. 원물확보방안	① 원물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있는가?	5	4	3	2	1	
6. 연중 가동체계구축	① 처리품목의 다양화 등으로 연간운영이 가능한가?	5	4	3	2	1	
7. 시설의 적절성 및 운영의 합리화	① 처리목표 물량의 산정, 적정시설의 설치, 처리공정의 적정성, 위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였는가?	5	4	3	2	1	
	② 회원관리, 재고관리, 수발주 등 경영요소에 대한 합리적 관리계획이 있는가?	5	4	3	2	1	
8. 유사시설과의 경합유무 및 기존시설의 활용 적절성	①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및 기존시설의 활용, 거점APC와의 계열화 등 구조조정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은 있는가?	5	4	3	2	1	
9. 품질혁신 및 조직화	① 고품질 생산, 생산기술의 향상 및 평준화를 위한 기술지원, 교육 등의 수단과 계획이 있는가?	5	4	3	2	1	
	② 농업인의 참여유도, 조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있는가?	5	4	3	2	1	
10.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① 건전한 재무구조 등으로 운영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가?	5	4	3	2	1	
	② 공동계산 실적.경험이 많고, 계획이 달성 가능한가?						
	③ 전문CEO와 독립사업부서 등 전문경영체계를 구축하고, 독립체산제 도입이 가능한가?	5	4	3	2	1	
11. 마케팅 전략 및 전문인력 확보	① 일관된 품질관리로 공동브랜드화, 공동계산제 등의 상품화 계획 및 유통전략이 실현 가능한가?	5	4	3	2	1	
	②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5	4	3	2	1	
12. 투자의 효율성	① 사업완료연도 기준 투자의 효율성은 얼마나 높은가?	5	4	3	2	1	
13. 운영주체 사업실적	① 신규 : 전년도 사업실적 × 10점 / 100억원	10					
	② 보완 : 전년도 사업실적 × 10점 / 30억원						
14. 원물확보 실적	① 전년도 사업실적 × 10점 / 1만톤	10					
합 계		기본점수 계(100점)					
* 가감점부여 :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 각각에 대하여 가감점을 줄 수 있음		가 점					①
①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2~2점 부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업성 진단결과에 대한 사업계획서 보완 및 반영 정도							②
② 연차평가 결과 반영(A등급 : 2점 B : 1점 C : 0점 D : -1점 E : -2점) 평가직전 최근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점 반영		총 점 (기본점수+가점)					
③ 자치단체 자율통합 시군 소개 사업신청자 : 3점							
④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될 경우 : 1~3점							
* 가감점은 관련기관에서 최종 확인 후 일괄 적용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연차평가-통합시군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자의 종합의견 >

평가 사항	검 토 의 견
1. 사업물량 확보여건	
2. 부지확보 계획 및 입지조건	
3. 사업비확보 계획	
4. 지자체와의 정책연계성	
5. 원물확보 방안	
6. 연중 가동체계 구축	
7. 시설의 적절성 및 운영의 합리화	
8. 유사시설과의 경합유무 및 기존시설의 활용 적절성	
9. 품질혁신 및 조직화	
10.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11. 마케팅 전략 및 전문인력 확보	
12. 투자의 효율성	
13. 기타 의견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른 결과조치

-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 평균점수 산출 : 평가위원의 합계점수를 기준으로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평점기준으로 80점 이상 사업계획의 평가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심사평가기준(발표평가)

평가항목	등급					등급평가기준	평점
	A	B	C	D	E		
1. 부지확보 계획 및 입지조건	5	4	3	2	1	①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관련법규의 제한이 없는가? ②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이 없고, 과수주산지로 사업 물량 확보(1-2만톤이상)여건이 양호한가? ③ 교통 여건이 양호하여 물류비 절감이 가능한가?	
2. 사업비확보 계획	5	4	3	2		①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및 지방비 편성이 실현 가능한가? ② 일반유형일 경우 생산자조직의 자부담 조달이 가능한가?	
3. 연중 가동체계구축	5	4	3	2	1	① 처리품목의 다양화 등으로 연간운영이 가능한가?	
4. 투자의 효율성	5	4	3	2	1	① 사업완료연도 기준 투자의 효율성은 얼마나 높은가?	
5. 지자체와의 정책연계성	10	8	6	4	2	① 지자체 차원의 시책, 예산지원 등이 거점APC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향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6. 시설의 적절성 및 운영의 합리화	15	12	9	6	3	① 처리목표 물량의 산정, 적정시설의 설치, 처리공정의 적절성, 위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였는가? ② 회원관리, 재고관리, 수발주 등 경영요소에 대한 합리적 관리계획이 있는가? ③ 기존시설의 활용, 거점APC와의 계열화 등 구조조정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은 있는가?	
7. 품질혁신 및 조직화	10	8	6	4	2	① 고품질 생산, 생산기술의 향상 및 평준화를 위한 기술지원, 교육 등의 수단과 계획이 있는가? ② 농업인의 참여유도, 조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있는가?	
8.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20	16	12	8	4	① 건전한 재무구조 등으로 운영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가? ② 공동계산 실적 경험이 많고, 계획이 달성 가능한가? ③ 전문CEO에 의한 전문경영체계를 구축하고, 독립채산제 도입이 가능한가? ④ 연합사업단인 경우 법인화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었고, 실현 가능한가?	
9. 원물확보방안	15	12	9	6	3	① 원물확보(계약제배 및 출하약정 등)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있는가?	
10. 마케팅 전략 및 전문인력 확보	10	8	6	4	2	① 일관된 품질관리로 공동브랜드화, 공동계산제 등의 상품화 계획 및 유통전략이 실현 가능한가? ②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 가점1(전국단위 유통계열화)	7	5	4	3	2	① 과수조합연합회 등 전국단위 품목조직과 연계하여 공동브랜드 사업 등 유통계열화 계획이 있는가?	
가점2(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	3	2	1	-	-		
합 계	100점 만점 (가점포함 110)					-	

< 평가자 종합의견 >

평가 사항	검 토 의 견
1. 부지확보 계획 및 입지조건	
2. 사업비확보계획	
3. 연중가동체계 구축	
4. 투자의 효율성	
5. 지자체와의 정책연계성	
6. 시설의 적절성 및 운영의 합리화	
7. 품질혁신 및 조직화	
8.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9. 원물확보방안	
10. 마케팅 전략 및 전문인력 확보	
11. 기타 의견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른 결과조치

-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 평균점수 산출 : 평가위원의 합계점수를 기준으로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평점기준으로 80점 이상 사업계획의 평가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세부사업명	과수 생산유통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	예산 (백만원)	27,577		
사업목적	○ 과수생산시설현대화를 통하여 생산비절감 등 생산기반구축과 경쟁력 확보				
사업 주요내용	○ 고품질생산(우량품종갱신, 지주시설, 비가림시설 등), 생산비, 에너지절감시설, 재해예방시설 등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역별 과수산업발전계획이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에 출하실적이 있고, 3년 이상(생산량의 80% 이상) 출하 약정한 농업경영체 *18년부터는 5년이내의 출하실적이 있는 농가				
지원한도	○ 사업별 지원 단가는 실 단가를 적용				
재원구성 (%)	국고	지방비	용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29,391	125,124	137,885	258,016
	국 고	30,534	30,515	27,577	91,603
	지방비	45,802	45,773	41,365	37,405
	용 자	22,521	18,321	18,321	54,962
	자부담	30,534	30,515	50,622	74,046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기주 서기관 김지현 주무관 강지원	044-201-2255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FTA기금관리팀	팀 장 안병희 차 장 윤용범	061-931-1120 061-931-1123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과 장 이미정	02-2080-7587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1.30.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과수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1. 사업대상자

- 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하 경영체),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공동이용시설에 한함)

[지원제외 대상자]

-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지원 제외
 - * 사업신청 시점에서 농업이외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기준으로 하되, 동 기준 적용시 불리한 퇴직자 등은 사업지원 당해연도 기준으로 신청자가 신고한 연금 수령 예상액 등 농업이외 소득을 계산하여 시·군 과수발전심의회 등에서 37백만원 미만자로 결정한 경우 지원 가능
 - * 다만, 다음 연도에 지자체 담당자가 사업 신청 연도 농업이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농업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지원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 5년 이내 동일 품목을 재배하는 경영체는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 미 등록 경영체('18년부터는 미등록 필지 포함), 5년 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사업대상자에서 지원 제외(다만, 동일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품종갱신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및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제1항 규정에 해당되는 자
- 농정심의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 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심의·결정한 자는 지원 제외
 - *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 배 생장조절제(지베렐린·에세폰 등)처리 경영체
 - * '19년부터 적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에 최근 5년 이내 출하실적이 있고, 3년 이상(생산량의 80% 이상) 출하약정한 경영체
 - * 참여조직 자격요건 : 전년도에 시·군 통합조직 등 상위조직에 취급액의 10% 이상 출하한 경우만 참여조직으로 인정 : '19년부터는 15%이상 적용
 - * 참여조직의 상위조직 참여목표(연차평가 적용) : ('18) 40%

< 우선지원 >

-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가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는 2019년부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친환경인증·GAP·계약재배 등 참여 경영체,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 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회원조직에 출하하는 경영체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과수전업농 경영체
- 무병묘 관찰포 선정농가(출하실적 등에 관계없이 품종갱신, 기타사업 등 지원 가능)
-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 발생(화상병 등)으로 방제명령에 따라 폐원한 경영체(동일과원 또는 대체과원(동일면적)에 과수산업발전계획에 포함된 타 품목의 과수 식재 가능)

< 가점부여 >

- 농진청 등 국내에서 육성된 우량품종으로 갱신하는 경영체
 -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대상자 가점 부여
 - 배(신고품종 한정)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시 수분수 용으로 국내육성품종(황금, 화산, 추황배, 조이스킨 등)을 20% 이상 고집했거나 식재한 경영체
 -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영체(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신청 심사표와 신용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가능한 경영체 우선지원

* 심사결과 선정기준에 미달한 경영체에게는 행정기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사 의견제출 기회 부여

[선정기준 미달 경영체에 대한 재심사]

- ◆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영체에 대하여는 시·군에 심사위원회를 두어 재심 요청이 가능하도록 체계 구축
- 사업성취 가능성, 신용도, 기술, 경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재심사 후 대출기관에 통보

* 심사위원회 : 과수발전협의회, 농정심의회 활용 또는 행정지도기관관련단체 등으로 구성

3. 지원대상(지원사업의 종류)

- 고품질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사업
-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농산물운반기(레일형),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배수시설,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 서리우박피해방지, 야생동물방지시설, 작업로정비, 지주시설, 친환경과원관리, 품종갱신(기존 시설 활용 가능), 다겹보온커튼(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 방지용), 환풍기, 공동이용설비,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기 지원시설·장비 중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시설·장비의 개보수, 감귤원 원지정비(기존수목 굴취, 이랑조성, 우량품종 묘목식재(기존 수목의 이식 가능), 방풍수 정비)

- * 관수관비시설, 농산물운반기, 무인방제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다검보온커튼, 공동이용설비, 환풍기,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 예시사업 이외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 필요
- 다만, 전년도 연차평가 우수(2등급) 이상 사업시행주체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아래 지역별·품목별 맞춤형사업 추진 가능
- 공동이용장비(SS기, 고소작업차, 승용제초기 등), 추가 사업(1개)

[경영체 지원제의 대상]

- 1) 직접투입제(비료·농약, 부직포설치, 타이백 등 다공질필름 등)
- 2) 농기계(트랙터, 굴삭기, SS기, 온풍기, 예초기, 자주형 농산물운반기 등)
- 3) 소모성 자재 및 내구연한이 짧은 장비
- 4) 포도·감귤 등의 난방시설
- 5) 포도의 경우 난방기 사용 시 신규 가온시설이 될 수 있는 비가림 시설(자부담 확대로 가온시설 설치도 불가)
- 6) 2012년 3월 15일 이후 조성한 과원
- 7) 기타 사업방향 및 목적과 상충되는 시설 및 장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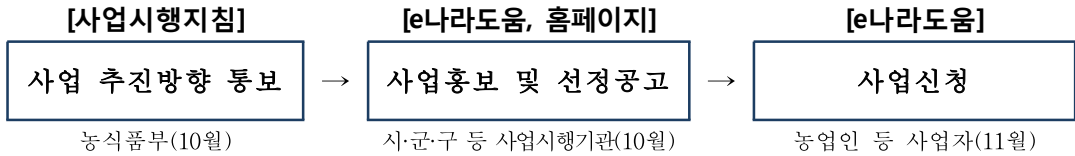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 국고용자 상환조건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용자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식품금융부)

6. 지원한도액 기준

- 사업별 지원 단가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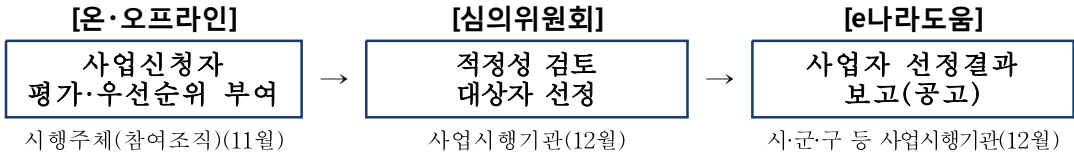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전년도 10월 말까지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시행주체와 합동으로 원활한 보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의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농가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다만,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사업신청 대리 등록, 집행계획·정보입력·집행내역등록 등 e나라도움 업무대행자 지원을 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사용 대리 신청, 피대리인 정보입력, 위임장,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정보취약계층** :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 사업신청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시행주체에 사업신청서[별표 1호 서식]와 출찰약정서[별표 1-2호 서식]를 제출(전년도 11월)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에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 용자 신청자는 거래농협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액 확인하고, 용자금 3천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대출신청자료[별표 1-3호 서식]를 제출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등 농업경영체인 경우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한다.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사업시행주체

-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 또는 참여조직)은 심사기준표에 의하여 선정 기준에 적합한 경영체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추천(사업량, 중도 포기자 등을 감안하여 추천)(전년도 11월말)
- * 시·군단위 사업시행주체는 사업시행주체가 우선순위 선정, 도단위 사업시행주체는 시·군 통합(참여)조직에서 우선순위 선정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용자금의 3천만원을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출신청자료 등을 제출토록 안내
- 3천만원 미만의 지원금액을 신청한 경우는 사업신청자가 대출기관에 대출 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

나. 시·군

-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비 가내시(안) 결정 후 사업시행주체에서 추천한 경영체의 우선순위 적정성(선정순위 준수 등), 신용조사서 등을 검토한 후 농림축산식품심의회 등을 개최하여 내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준을 12월 20일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농정심의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 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 시스템(AgriX) 분기별로 등록·관리(e나라도움 연계시까지 병행 등록), 시·도 담당자는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영농철 이전에 공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당해연도 1월말까지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개시 통보를 완료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 1) 심사기준표는 표준(안)을 활용하여 지역별, 사업별 여건에 맞게 보완하여 사용
- 2) 대상자의 필요사업량을 나누어 지원 금지, 미 이행시 사업계획 지원 제외 등 페널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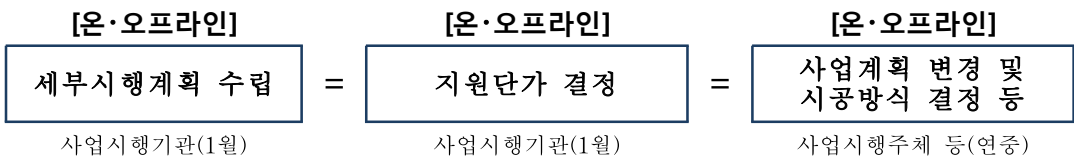
예) A,B 경영체가 각각 소유한 500㎡의 포도과원에 대해서 비가림시설을 각각 500㎡을 신청 ⇒ A,B 경영체에 각각 250㎡씩 나눠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우선순위가 빠른 경영체에게 필요사업량 500㎡을 모두 지원(나머지 경영체는 차기 지원)

- 3)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경영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미개시, 포기자 발생 등을 대비하여 최대한 사업대상자 선정 후보자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하되 사업대상자 기준 30% 전후로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 4) 특별한 사유없이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영체와 사업을 주어진 기간 내에(시군별로 사업완료 기간을 정함) 완료하지 않는 경영체는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됨. 단, 천재지변 등 과수발전협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 5) 사업개시 및 완료여부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취소 및 유예기간을 부여하여야 함. 다만, 자부담금 우선집행(시공업체 계약금, 자재 구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개시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를 생략할 수 있음
- 6) 선정 취소(미개시자 및 미 완료자) 또는 사업포기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예비대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함. 또한 당해연도에 지원을 받지 못한 예비대상자는 가급적 다음연도에 엄선하여 지원됨을 예고하여 행정 및 경영체의 투자 예측성 강화
- 7) 시·군은 시·군 통합조직 등 상위조직으로의 출하실적 등을 감안하여 참여 조직 단위로 사업비 배분
 - 참여조직은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 선정, 출하이행관리 등 담당
 - 시행주체는 참여조직 관리 및 통합마케팅 추진

<요건 확인>

- 관련기관 또는 경영체 등으로부터 계약체결, 이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의 G4C, 토지대장 등의 검색을 통해 확인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가. 세부시행계획 수립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작성한 세부 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지시
 - 시·도지사는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를 사업 확정 후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나. 지원단가 결정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객관적 자료(농협중앙회 계통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에 근거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지를 시장·군수가 검토하여 결정
 - Agrix를 통해 타 시·군의 동일 사업 단가와 비교하는 등 매년 검토를 거쳐 반드시 조정하여야 함

다. 사업추진 컨설팅

- 전문가협의체 등을 통한 사업추진 컨설팅 계획 수립·보완 및 컨설팅 실시
 - 컨설팅 내용 : 사업계획 수립 참여 및 평가, 사업지원 대상자의 선정참여, 경영·기술 지도, 현장으로 해결, 사업추진 지도·점검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분야
- 컨설팅 비용의 지급 :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의 내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하여 기금사업 운영비에서 지급
 - 비용지원분야 : 전문 컨설턴트의 활용, 사업평가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비용

라. 사업계획 변경절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사업참여조직 등 주요 사항의 변경은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원대상조직은 사업계획 선정시 승인된 생산자단체에 한하며, 참여조직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필요
 - 신규사업계획 평가시 승인된 품목에 한하며 품목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필요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조직)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결정은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 시·군 및 사업계획간 사업비 조정은 자체 조정 후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단, 연차평가결과 패널티 조직의 사업비 변경은 농식품부장관 승인 대상)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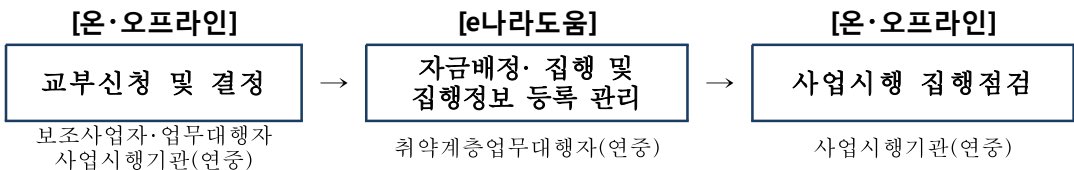
마. 시공방식 결정 등

- 보조사업의 규모가 2억원 이상(물품 및 용역구매는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자체·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을 하거나 보조사업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업체 선정(기본규정 제53조의2)
- 사업추진 시·군과 사업시행주체는 세부사업별로 시공주체(업체 또는 경영체)를 검토한 후 농정심의회 등에 승인요청, 농정심의회 등에서는 적정성(부실시공 우려 등)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시공업체를 통해서 시공하여야 하는 세부사업의 경우 경영체의 업체선정 편의 제공과 책임시공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공지(보조금 부당수령 관련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 명단 지속 관리)
 - 시공업체는 반드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를 선정(비가립하우스는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
 - 지원을 받은 경영체는 선정·공지된 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택하여 공사 추진
 - 선정된 시공업체는 반드시 직접시공을 하여야 하며, 하청시공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 조합 등 사업시행주체가 사업추진 경영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는 자재구입 및 시공을 공동입찰 또는 공동계약으로 일괄추진 가능
- 모든 시설은 각 지역별 내재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고시 제2016-180('16.12.28)호 전부개정 참고)
-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

바. 품종갱신사업 주의사항

- 우량품종갱신의 공급요목은 종자산업법에 의한 피해보상체계가 구축된 자체 보증요목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시·도에서는 [별표 2호 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실적보고
 - 배는 신고품종으로 갱신하는 경우 지원 제외
- (무병묘 공급) '18년부터 바이러스 검사 의무화 조치에 따라 바이러스 검사 후 묘목업체 자체보증 된 묘목을 사용. 다만,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검정 묘수를 확보하여 증식 중에 있는 묘목업체의 품종에 대해서는 '19년까지 바이러스 검사를 제외한 자체보증 허용

4.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 계좌에 입금 후 우선 집행
 - 다만,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예탁교부받은 경우 자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e나라도움 운용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가 정보취약계층인 경우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비예탁교부할 수 있으며, e나라도움 이용 관련 업무대행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 (사업별 지원원칙) 설계도와 시방서는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표준규격·설계·시방자료집」 준용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의 여건 및 지역에 따라 변경 추진가능
 -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무기등기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 업무대행자를 통한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등록
-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채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자금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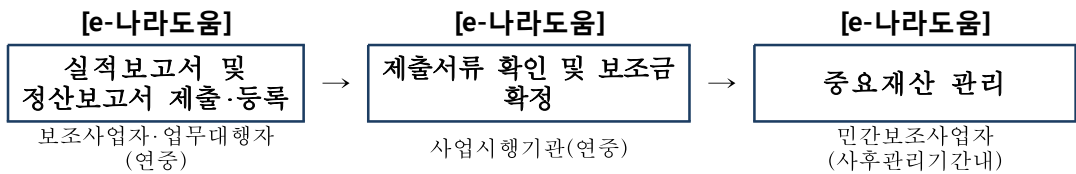
가.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경영체에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2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경영체에게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안과 사업시행주체(품목조합, 지역농협, 법인 등)를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안이 모두 가능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일의 전월 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교부를 요구함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자금교부 요청을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 변경 내용, 보조금 신청 및 집행상황 등을 수시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및 e나라도움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 * 시·군은 사업대상자, 자금집행상황 등을 AgriX에 분기별로 입력·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 조치하여야 함

나.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시장·군수)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에 적합한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함
- 대출금은 지원대상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이미 시설자금을 지급한 때에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동 사실을 직접 서면으로 확인받은 후 지원대상자에게 지급 가능하다.
-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가 요청시 과수시설현대화사업 용자금 대출 실행 실적을 통보하여야 함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정산보고서 검증 필요시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 제출 가능
 - * 보조금을 보조사업 전용 계좌로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비예치형)는 집행잔액, 이자 등을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직접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시정·보완 요청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다만, 비닐하우스골조는 부기등기 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의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61조제3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제63조의 4호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이행점검단계 >

가. 사후관리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은 분기별 1회 이상 자체 점검하여야 하며, 년 1회 이상 시·도(시·군)간 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비 집행(인건비, 자재구입 등)은 반드시 금융기관 거래자료(무통장 입금표, 통장사본, 신용카드 등)로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함(현금 거래 불가)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2 제9항에 따라 추진
 -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한해 사업비의 1/6 한도내에서 지원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1인에 한해 시장·군수의 확인하에 지급 가능
 -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 * 환수할 경우 지원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다음년도 3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실시하여야 함(농어업경영체 육성법 제7조의2) * 비닐하우스골조는 제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 건물, 비닐 하우스골조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 부동산의 종물(건물내 기계설비)	준공일	7년간	
- 주요기계·장비·자재	구입일	5년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분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받은 과원을 폐업할 경우 폐업지원금에서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한 보조금을 차감하고 지급

- 대체과원은 동일 면적·동일 품목에 한하여 가능하고, 개발계획지구로 선정되었거나 보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기타사항은 과원폐업지원사업에 준하여 실시
-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 발생(화상병 등)으로 방제명령에 따라 폐원한 경영체의 중요재산이 방제과정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시·군 판단에 따라 손망실 처리(사용 가능한 중요재산은 관련규정에 따라 농업용으로 사후관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 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시·도 및 시·군
 - 점검일정 : 분기별 1회 이상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적정성 등
 - * 사업점검 등 사후관리는 FTA기금운용규정 제29조에 의한 기금수탁관리자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영체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농협)

- 자금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1)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 3)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 4)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

IV / 평가 및 환류

1. 자체 평가

- 평가 주체 :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 시기 : 사업착수 후 3~6월 중
 - 평가 방법 : 전문가 협의체,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 방향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발굴, 사업컨설팅
 - 평가결과 조치 : 당해연도 사업추진 및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 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3월 이내
 - 평가 방법 : 전문가 협의체, 지역농업 특화사업단,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신규사업 발굴 등

2. 중앙 평가

- 평가 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 시기 : 사업 착수후 3개월 이후
 - 평가 방법 : 사업추진 현장점검
 - 평가 방향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컨설팅,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평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조치 등
- * 사업점검 등 사후관리는 FTA기금운용규정 제29조에 의한 기금수탁관리자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 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6월 이내
- 평가 방법 : 민간평가기관 사업성과분석 용역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예산 차등배분, 추가지원여부 판단, 예산지원 중단, 제도 개선, 지원방향 개선, 평가결과 홍보, 과수산업발전계획 보완·승인 등

* 사업추진상황 Agrix 미 입력 등 지침 미 준수시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지원 제외 및 감점 등 조치

V

201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9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9년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 시행주체 및 시·군에 제출(2018.1.31일까지)
- 시·군은 사업 참여희망 경영체가 제출한 2018년도 사업신청 현황을 농림 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2018.2.28일까지)
- 시·도는 사업 참여희망 시·군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한 2019년도 사업신청 현황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농식품부로 전송 (2018.3.30일까지)
- 농식품부 사업담당부서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전송받은 사업 신청 현황을 기초로 201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018.5.31일)
- FTA기금 관계자 연찬회 활용 수요조사 실시
 - 매년 하반기중 FTA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도, 시군 등 지자체와 운영주체 관련자에게 과수경쟁력제고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및 홍보와 함께 수요파악

2. 201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붙임>

사업별 지원원칙

- ◇ 설계도와 지방서는 과원의 여건 및 지역에 따라 변경하여 사업추진 가능
 - 다만, 모든 시설은 각 지역별 내재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80호, 2016.12.28. 전부개정 참고)
- ◇ 주요 기계·장비는 가급적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세부사업별	비 고
1. 관수관비시설	
2. 관정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법 제8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 지하수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3년주기 농업용수 수질검사 ○ 기준채수량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30%이내에서 시군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3. 농산물운반기	○ 레일형 농산물운반기에 한정 지원
4. 무인방제시설	
5. 방풍망시설	
6. 배수시설	
7. 비가림시설	○ 비밀폐식으로 가온가능시설은 제외
8. 비가림하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시공 ○ 포도는 시설포도로 구조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설치 불가
9. 다겹 등 보온커튼 (기존 일반 비가림 하우스의 동해방지용)	○ 기존 일반형 비가림하우스에 재배되는 노지포도 등의 동해 방지용으로 지원, 난방 금지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필요
10. 서리우박피해방지	
11. 야생동물방지시설	○ 방조망은 폭설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가급적 개폐식으로 설치
12. 작업로정비	
13. 지주시설	
14. 친환경과원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당 20ha 이상, 개별 경영체단위 지원 금지 ○ GAP의 경우, GAP인증 단체 또는 조직에 한함 ○ 시·도지사는 신규 친환경과원관리사업에 대해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에 2월말까지 신청 [별표 3호 서식]

세부사업별	비 고
15. 품종갱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과원의 갱신(대체)만 가능(신규 불가)하며, 기존 시설 활용 가능 ○ 종자산업법에 의한 피해보상체계가 구축된 자체보증 묘목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별표 2호 서식]에 따라 1월말까지 실적보고 ○ 사업기간 : 2년차(1년차 30%, 2년차 70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 가능 ○ 배는 신고품종으로 갱신하는 경우 지원 제외 ○ '18년부터 바이러스 검사 의무화 조치에 따라 바이러스 검사 후 묘목업체 자체보증 된 묘목을 사용 <p style="margin-left: 20px;">다만,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검정모수를 확보하여 증식중에 있는 묘목업체의 품종에 대해서는 '19년까지 바이러스 검사를 제외한 자체보증 허용</p>
16. 공동이용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수목과쇄기, 꽃가루은행, 석회유황합, 식품영양제조기 등 ○ 영농조합 등 법인격의 생산자단체만 가능
17. 재해예방용 난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방기에서 약 15m 거리에 설치된 온도센서의 지시값(온실 내부온도)을 최고 5℃까지만 상승하도록 컨트롤박스를 설정한 후 봉인(일련번호가 있는 것으로 봉인하고, 수리시 지자체에 신고 후 재봉인)
18. 감귤원 원지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귤원 원지정비(기존수목 굴취, 이랑조성, 우량품종 묘목식재 (기존 수목의 이식 가능), 방풍수 정비)
19. 지역·품목별 맞춤형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연차평가 우수(2등급) 이상 사업시행주체는 사업비의 20% 범위내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추진
- 공동이용장비 (고소작업대, 농업용 굴삭기, 승용제초기, SS기, 다목적 운반기, 운반차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이용장비는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의 임대나 농작업 대행에 필요한 장비를 3억원 이내에 지원 ○ 지역 내 영농여건, 농가수요,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여부, 전담 운영인력, 보관방법 등에 대한 계획 수립 ○ 임대료는 농진청에서 발간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에서 제시한 금액을 참고하여 산정 ○ 공동이용장비 운영주체는 장비 관리대장과 장비 임대차 관리대장을 사무소에 상시 비치 [별표 4-3호 서식]
- 추가 사업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로 1개 사업에 한해 시·도지사가 승인하여 시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생력화 등에 필요한 사업 - 로컬푸드, 직거래 등 정부 유통구조개선 정책과 부합하는 유통을 하는 경영체나, 친환경인증(친환경농업육성법)·글로벌GAP인증 경영체는 예외적으로 시행주체(참여조직)와의 출하실적(약정) 없이 지원 가능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안)

※ 작성하시기 전에 뒷면에 작성요령 등을 읽어보시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법인 등)		전화번호	TEL H·P				
사 업 예정지	소재지	외 필지(별지 기재)						
과 수 재배현황	과종	재배면적(m ²)		생산예상량(kg)	과수수령			
사업신청	세부사업명	사업량 (m ² ,m,공)	지원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비고 (품종갱신사업은 품종명, 식재 주 수, 시기 명시)
				계	보조	융자	자부담	
<p>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input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입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입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입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p>위와 같이 FTA기금 과수산업육성계획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고 20 년도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주 소 성 명 (인)</p> <p>○○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 귀하 ○○시장·군수 귀하</p>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신청 경영체심사표 2. <u>참여조직 출하실적 증빙자료</u> 3. 출하약정서 4. 대출신청자료(융자금 3천만원 이상) 5.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6. 건강보험증 사본, 농업외 직업자는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에서 발급) <p><불입>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p>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신청인란의 소속단체는 반드시 신청인의 소속(생산자단체)명을 기재하시기 바라며,
()내는 과수 또는 과채류관련 참여 작목반명 기재
2. 사업예정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 별지 작성
3. 과수재배면적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 생산 예상량은 전년도 출하량의 80%이상이어야 한다. (재배면적이 변동된 경우, 면적에 비례하여 생산예상량 산정)
4. 사업 신청 시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신청
 - * 용자부문은 대출 결격사유로 용자 불가시 자부담으로 대체하여야 함
 - * 사업신청 시 해당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청
 - * 사업비 지원조건 : 보조 50%(국비 2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20%임.
 - 용자조건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신청사업비는 사업시행 주체의 지원단가 조정절차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 사업시공은 선정된 업체시공을 원칙으로 함
 - *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에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3년간 FTA기금 지원을 받지 못함
 -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사업비는 차순위자에게 지원됨
5. 출하조건의 출하약정은 사업시행주체와(참여조직)의 약정체결을 한 경우에만 해당됨
6. 출하약정은 생산량의 80%이상(최소 50%이상)을 약정할 경우에 해당됨
7. 출하약정기간은 최소 3년 이상이어야 함.
8. 출하권 위임은 거래처 및 판매가격에 대한 출하권을 위임한 경우임.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출하약정서(안)

본 약정사항은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영체 ○○○(이하 "갑" 이라 한다),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 ○○○(이하 "을" 이라 한다), ○○시장·군수(이하 "병" 이라 한다)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약정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생산한 농산물을 성실히 출하하여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하고 "을"은 "갑"의 경영체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하약정) "갑"의 연간 출하량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년 도	품목명	재배면적 (㎡)	생산예상량 (톤)	출하약정량 (톤)	약정비율 (%)	비 고
전년도 출하 실적						
○○년(1년차)						
○○년(2년차)						
○○년(3년차)						

※ 품종갱신사업은 사업시행 2년 후부터 적용함

제3조(출하약정기간) 출하 약정기간은 최소 **향후 3년까지**로 한다.

제4조(출하) "갑"은 "을"과의 출하약정에 따라 상품 기준으로 총 생산량의 **80% 이상**을 "을"에게 반드시 출하하여야 하며, 출하량 환산은 매 **1년** 단위로 한다. 단, 타 과수산업발전계획 사업시행주체, 수출전문조직 등 농식품부가 인정한 조직에 출하한 경우 출하약정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출하약정량은 원칙적으로 총 생산량의 80% 이상이나,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최소 50%까지 조정가능

제5조(수송) "갑"은 "을"이 지정한 장소와 기간에 생산한 농산물을 수송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수송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6조(선별) "을"은 "갑"이 출하한 농산물을 등급별로 선별·포장하여 상품가치를 높인다.

제7조(판매) "갑"은 "을"에게 검품, 선별, 포장, 판매처, 가격결정 등 일체를 위임하며, 기타 추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지역 실정에 맞게 협의 결정한다.

제8조(대금정산) "을"은 판매대금 정산 시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갑"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 한다.

제9조(우대사항) "을"과 "병"은 출하약정을 이행하는 "갑"에게 다음 항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 ① 정부지원 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의 우선 혜택 부여
- ② 조합, 산지유통센터 운영프로그램 등 중요사업의 우선 지원
- ③ 고품질 안전과실생산 사업 우선 지도 및 지원
- ④ 친환경 자재사업 발굴시 우선 지원
- ⑤ 기타 각종 사업 우선권 부여

제10조(약정 불이행 제재) "갑"이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과 "병"은 "갑"에게 다음사항을 조치 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약정사항을 미 이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① 다음해부터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의 출하 선급금 지급 중지
- ② 향후 3년간 FTA기금 지원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서 제외
- ③ 공동브랜드 사용권 제한
- ④ 기타 사업시행주체의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 조치 등
- ⑤ 약정이행율이 0%인 경우 ①, ②, ③, ④ 항목을 모두 적용할 수 있고, 약정이행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②, ③, ④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약정이행율이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에는 ③, ④항목을 적용 할 수 있다.

제11조(분쟁) 본 약정서의 합의사항 외에 발생하는 사항은 "갑"과 "을"의 원만한 협의하에 해결 하되 쌍방간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할 경우에는 "병"과 협의하여 지역사회 통념에 준 하여 조정한다.

제12조(기타) "갑"과 "을"은 위 약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고, 본 약정서 2부를 작성 날 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약정인 "갑"

주 소:
농 가 명: (인)

"을"

주 소:
시행주체:
(참여조직)
대 표 자: (인)

"병"

○ ○ 시장 · 군수 (인)

대출신청자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생산자단체등의 형태		참여자수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금 현황			융자금 현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m ²)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계	예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축산식품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 번호	() -
생산자단체등· 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록 번호(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신용보증 후취담보 선취담보			천원		

※ 선취 및 후취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협동조합장 (인)
 ()시군지부장 (인)

[별표 제 2호 서식]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품종갱신) 지원실적

00년 품종갱신사업 지원실적

시 도	시 군	지원 농가명	지원액				대상 품목 명	품종 명	묘목 수	구입 업체명	자체보증묘 목 여부	종자 로트번호
			계	국고	지방 비	용자						

[별표 제 3호 서식] 친환경과원관리사업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 계획

00년 친환경과원관리사업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 계획

시도	시군	지원 대상	지원 유형	과종	지원 면적 (ha)	농가 수 (호)	일시	장소	예 상 참 석 인 원	시군 담당자			기 타
										성 명	연락처 (핸폰 번호)	이메일 주소	
			IPM										
			IFP										
			GAP										

과수 고품질 (공동이용)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안)

1. 사업자(법인)명 : ○○○○○○○○○

2. 현 황

가. 지역 내 과수산업 일반현황 및 사업자 전년도 취급규모

품목명	과수산업 일반현황			전년도 취급규모		
	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A)	취급량 (톤, B)	취급액 (백만원)	취급비중 (B/A)
계						

나. 출자 현황

출자자수 (명)	총출자액 (천원)	평균 (천원)	최 고 (천원)	최 저 (천원)

다. 공동이용사업 추진 전담인력 확보 현황

부서명	직급	성 명	담당업무	이력 및 자격	비고
계					

라. 사업수요 조사결과

- 조사기간 :
- 조사지역 :
- 조사대상 농가 수 :
- 조사결과

-

3. 구입 및 설치계획

가. 보관 및 설치장소 : 기 확보(), 확보예정()

시설명	주소	시설면적 (㎡)	현재 사용용도	소유자	비고(확보 완료일)
합 계					

나. 세부사업 추진계획(사업특성에 따라 양식 자율조정)

장비명	규격	수량 (대)	단가 (천원)	소요금액 (천원)	구입 및 설치 완료예정일
합 계					

4. 연간 운영계획

가. 사업유형 : 단기임대(), 농작업 대행(), 기타 ()

나. 연간 운영계획(사업특성에 따라 양식 자율조정)

장비명	농작업명	임대농가수 (세대)	임대수수료 (천원)	면 적 (㎡)	1일 사용료 (천원)
합 계					

5. 기대효과(정성 및 정량적 효과, 추정 손익 등 기재)

-
-
-

과수 고품질 (공동이용)시설현대화사업 심사표(안)

평가대상 :

평가위원 :

(서명)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등 급					평점
		A	B	C	D	E	
기본요건 (평점란에 ○ 또는 × 표기, ✕가 1개 이상이면 지원제외)	①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가거나 참여조직인가?						
	② 사업시행주체 등 상위 조직과 협약을 체결했는가?						
	③ 전년도 취급액 중 지침의 참여조직 인정 기준 이상을 상위 조직으로 출하했는가?						
1. 사업추진의지와 적극성	① 사업자의 사업추진의지는 확고한가? ② 사업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가?	10	8	6	4	2	
2. 사업자의 사업추진능력	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는가? ②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본력을 확보했는가?	20	16	12	8	4	
3. 사업비 확보 계획	①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및 지방비 편성이 실현 가능한가? ② 사업 신청조직의 자부담 조달이 가능한가?	10	8	6	4	2	
4. 사업수요	① 사업수요 조사를 적절하게 실시했는가? ② 사업수요 조사결과, 사업이 타당한가?	10	8	6	4	2	
5. 설치계획의 적정성	① 보관 및 설치장소(사업예정지)를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는가? ② 세부추진계획 또는 투자계획이 적정한가?	10	8	6	4	2	
6. 연간 운영계획의 적정성	① 사업추진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했는가? ② 인력 등 운영여건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계획과 같이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가?	20	16	12	8	4	
7. 기대효과	①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 내 파급효과 ② 추정 손익 등에 따른 사업자의 경영성과	20	16	12	8	4	
합 계		기본점수 계(100점)					
※ 가점부여 ① 전국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회원조직(5점) ② 원예전문생산단지(수출조직)(5점)		가점					
		총점 (기본점수+가점)					

공동이용장비 관리대장(안)

관리번호	기 종 명 - 일련 번호
------	---------------

구입금액					
합계(천원)	국비	용자	도비	시군비	자 부 담

구입 년월일		형 식 명	
규 격		제 조 번 호	
성 능			
주요특징			
제조사 또는 구입처	회사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 진	
설비/장비	관리번호 명판

공동이용장비 임대차 관리대장(안)

일련 번호	신청 일자	임차인		임대농기계			임대 기간	임대료		임작업 내역		반납	
		성명	주소	기종명	관리 번호	대수		임대료 (원)	수납 확인	작업 내용	면적 (m ²)	반납 예정일	반납 확인
							~						

세부사업명	과수생산유통지원(용자)		세목	용자금				
내역사업명	과수생산유통지원(용자)		예산 (백만원)	42,900				
사업목적	○ 과수생산시설현대화를 통하여 생산비절감 등 생산기반구축과 경쟁력 확보							
사업 주요내용	○ 과수관련 용자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촌 지역안의 과원(실제 이용현황기준)							
지원자격 및 요건	○ 과원매도·임대대상자 -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법인 등 ○ 과원매입·임차대상자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의 자, 과수를 주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등, 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지원한도	○ 과원매매 : 제곱미터(m ²)당 18,000원(과수목 포함) ○ 과원임대차 : 임차료는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 * 과수농가 : 5ha, 농업법인 : 10ha							
재원구성(%)	국고	-	지방비	-	용자	100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5,386	36,900	42,900	128,700			
	용 자							
	- 매매	30,900	30,000	36,000	108,000			
- 임대	5,388	6,900	6,900	20,7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기주 서기관 김지현 주무관 강지원		044-201-2255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사업부		부 장 이영훈 차 장 박근우 계 장 이정화		061-338-5885		
신청시기	수시(연중 가능)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과수생산유통지원(용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과원매도·임대대상자
 -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법인 등
- 과원매입·임차대상자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 과수를 주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등, 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 대상농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촌 지역안의 과원(실제 이용 현황기준)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과원매매사업

(1) 지원자격 및 요건(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자)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4세 이하(2018년도의 경우 195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과원 경영규모가 0.3ha(시설의 경우 0.1ha) 이상인 자로 하되, 소규모 농가를 우선하여 지원
 - * 경영규모는 동일세대가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과원기준(이하 같음)
- 과수를 주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 「농지법」 제2조제3호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의 기준에 적합한 농업법인
 - 법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과원이 영농조합법인은 3ha이상, 농업회사법인은 5ha이상
 - 과수재배경력 3년 이상인 법인

(2) 지원 제외자

- 과원규모화사업(농지규모화사업 포함) 원리금 연체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부담 능력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결과 부적합한 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외의 종합소득 금액(본인 및 배우자 합산)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허위·담합으로 지원받은 자
-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자기 경영과원을 고의로 매도 또는 임대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자.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에 따른 시설로 전용한 경우와 종전면적으로 자력 확대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현재 재배하고 있는 주된 작목 이외의 작목이 식재된 과원을 매입 신청하는 자 단, 주 작목 과수의 경제적 수령 초과로 주 작목 전환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
- 당해 과원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농업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
- 지원대상자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지역 이외의 과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자. 다만, 과원규모확대를 위하여 주 경작지를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지역 이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소지 이전 후 지원 가능(주소지 이전은 1회에 한함)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자는 경영회생기간동안 지원중 단. 다만, 환매권의 실행 등 경영회생을 이룬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기타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
- 과원규모화사업으로 공사에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한 자(단, 공사가 전매·임대·전용 등의 동의를 한 경우는 지원 가능)

나. 과원임대차사업

(1) 지원자격 및 요건

- 과원매매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과 같음

(2) 지원 제외자

- 과원매매사업 지원 제외자와 같음. 다만,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자는 경영회생기간에도 농지임대차 지원 가능

3. 지원 대상농지

가. 과원매매사업

(1) 매입대상과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촌 지역안의 과원(과수목 및 과원 운용·관리를 위한 과원내 시설물의 토지 포함)
 - 실제이용현황(사실상 과원)을 기준으로 매입하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경우에는 지목변경 후 매입

(2) 매입 우선순위

-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상기 매입대상 과원을 다음 순위에 따라 매입하며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규모가 큰 과원을 우선 매입
 - 과원 폐업지원 사업에 의해 양도하고자 하는 과원
 - 전업(轉業)·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과원
 -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소유 과원
 - 「농지법」 제10조에 따른 농지처분 의무기간 내에 있는 농지(과원) 중 과원매입 희망자의 규모화·집단화에 기여가 가능한 과원
 - 국·공유의 과원, 담보권실행 등에 의한 경매과원

(3) 매입 제외 과원

- 식재된 과수목의 수령이 많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과원
 -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결정 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비용은 매도자가 부담
- 공사에서 과원 및 농지매매사업자금으로 지원한 과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 가능
 - 지원받은 농업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된 과원(영농승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전매제한기간(8년)이 경과되고 채권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로서 지원자가 고령 은퇴 또는 전업·이농하고자 하는 자의 과원
 - 매도대상자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1년이 경과한 경우

- 채권확보를 위해 「농지법」 제13조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2인 이상의 공유과원으로서 일부 소유자가 자기 지분만 매도하고자 하는 과원. 다만, 다른 공유자 1인에게 잔여 지분 전부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
-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과원(세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제2항에 따른 농지)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오염토양으로 판명된 후 복구되지 않은 과원
- 자연재해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과수경작에 부적합한 과원
-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과원. 다만, 국가기간시설로 인한 지상권·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매입예정자가 인정(인정서 징구)하고 공사의 채권확보에 지장 없는 경우에는 매입 가능

나. 과원임대차사업

(1) 임차 대상과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촌 지역안의 과원(과수목 및 과원 운용·관리를 위한 과원내 시설물의 토지 포함)
- 실제이용현황(사실상 과원)을 기준으로 임차

(2) 임차 우선순위

- 과원소유자가 공사에 임대한 과원으로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공사에 계속 임대하고자 하는 과원
- 전업(轉業)·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과원
- 비농업인 등의 소유 과원

(3) 임차 제외과원

-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임대차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과원
- 식재된 과수목의 수령이 많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과원
 -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결정 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비용은 임대자(과원소유자)가 부담

- 공사에서 과원 및 농지매매사업자금으로 지원한 과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입차 가능
 - 지원받은 농업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된 과원(영농승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상환이 완료되고, 「농지법」 제23조제3호·제4호에 따라 임대차가 허용되는 과원
- 공사에서 입차한 과원중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만료전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과원. 다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입차 가능
- 이하 과원매매사업 매입 제외 과원과 같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과원매매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 소유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농가에게 매도
- 과원임대차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으로부터 과원을 임대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게 임대

5. 지원형태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기준

구 분	융자 금리	상환기간 및 방법
· 과원매매	연리 2.0%	연령에 따라 11~30년 원금 균분상환·거치식상환
· 과원임대차	무이자	5~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과원매매 및 임대차 지원한도(매매:기존 소유규모, 임대:기존 임대규모 포함)
 - 과수농가 : 5ha
 - 과수를 주 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 : 10ha
- * 공사는 지원대상자의 농업노동력, 전문성, 소득 등을 고려하여 과원매매, 임대차 지원대상자별 적정 지원수준을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지원한도 결정

* 과원매매의 상환기간은 과수농가의 연령을 고려하여 약정하고, 농가단위 또는 필지단위 거래시는 기존소유(임차)규모를 포함하여 다소 초과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방법

가. 지원한도

- 과원매매 : 제곱미터(m²)당 18,000원(과수목 포함)
- 과원임대차 : 임차료는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

나. 지원방법

(1) 과원매매사업

(가) 지원대상자 선정

- 공사 지사장은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기 전에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1인 신청시는 생략)를 정하여 선정
 - 과수재해보험 가입자, 친환경·GAP인증 및 계약재배 농가, 무병묘 관찰포 농가
 -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시행주체(참여조직 등)와 공동선별·공동계산 등의 방법으로 출하실적이 있고, 출하약정을 체결한 과수농가
 - 「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
 - 전업(轉業)·은퇴를 위하여 영농규모를 축소코자하는 농가의 과원을 매입코자 하는 자
 - 농업인 등의 소유 과원을 매입코자 하는 자
 - 매입신청 규모가 작은 자
 - 배(신고품종 한정)농가 지원시 수분수 용으로 국내육성품종(황금, 화산, 추황배, 조이스킨 등)을 20%이상 고집했거나 식재한 자
- 순위가 같은 경우 다음의 순위에 따라 지원
 - 과수재해보험 가입자,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 자
 - 자력확대규모가 큰 자, 연령이 낮은 자, 통작거리가 가까운 자, 농업계학교 졸업자 등의 순위로 한다.

(나) 공사 매입 대상과원 가격결정,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방법

- 매입가격의 결정

- 과원(과수목 포함)의 매입가격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공사의 현지조사 가격 등을 감안하여 과원 매도자와 합의하에 결정하되, 과수목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 이의가 있거나 농가가 희망할 경우에는 과원(과수목 포함)에 대하여 감정평가 실시(감정평가비용은 과원매도자가 부담)
- 과원가격 현지조사 시에는 이장, 인근주민 등으로부터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

○ 매매계약의 체결 및 대금지급

- 공사는 과원소유자와 매매협의를 완료된 때에는 매매계약을 체결
- 공사가 매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금 및 잔금지급

(다) 공사 매도 대상과원 가격결정,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방법

○ 매도가격의 결정

- 공사가 매입한 가격 기준. 다만, 경매 또는 사후관리 위반으로 회수에 의하여 매입한 과원은 시가 기준

○ 매매가격의 체결 및 채권확보

- 공사는 매입신청자와 매매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매매계약 체결
- 매매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의 부실화 방지
 - 공사로부터 매입한 과원은 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매매 계약일로 부터 8년간 전매임대위탁경영 등이 제한되며, 공사의 동의를 받아 전매하는 경우 공사는 타인에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음
- 공사는 매도대금을 분할 수납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과원 외에 추가 근저당 설정 등 가능

○ 매매대금의 납부

- 일시불 : 과원매입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일시불로 납부
- 분할납부
 - 납부기간 : 연령에 따라 최장 30년에서 11년까지 분할 납부
 - ① 농업인 납부기간 = 75 - 지원당시 연령(1월 1일 기준)

㉔ 농업법인 납부기간 : 20년

※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납부방법 : 원금 균등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2년 거치후 상환 잔여기간동안 원금 균등분할상환 가능

○ 자연재해 등에 따른 납부연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관련법령에 따른 자연재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병충해로 인하여 과원매매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1년간 납부 연기. 다만, 지원받은 필지의 피해가 있을 때 신청가능

• 자연재해로 인한 납부연기

① 농작물 피해율이 30%이상인 농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한 자료(농가별 농업피해 조사대장)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제 정보를 첨부하여 공사에 납부 연기신청

②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기조치

• 병충해로 인한 납부연기

① 병충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신고

② 피해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관련법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해인정 승인 요청

③ 지방자치단체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농작물 피해율이 30%이상인 농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한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에 납부 연기신청

④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기조치

※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율”이란 피해농가가 피해 당시에 경작하고 있는 과수 재배면적(임차농지 포함)에 대한 피해면적 중 수확할 수 없는 환산면적비(피해면적×피해율)을 말함

* 과수 유목은 피해면적에 포함하지 않으나 유실·매몰피해시 피해면적에 포함

(2) 과원임대차사업

(가) 지원대상자 선정 : 과원매매사업 지원대상자 선정방식 준용

(나) 공사가 과원 임차시 임차료결정, 임차계약체결 및 임차료지급 방법 등

- 임차기간 : 5~10년
- 임차료의 결정
 - 임차료는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지역관행 임차료 범위를 초과하지 못함
- 임차계약의 체결
 - 공사는 과원소유자와 과수목의 과실수확 가능 연수 등을 고려한 임차 기간 및 임차료 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임차 계약을 체결
 - 공사는 채권확보를 위해 임차권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거나 다음 어느 하나의 보증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인(과원소유자)이 부담
 - ①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 ② 연대보증인의 보증서. 다만, 임차료 선금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서 징구 불가
- * 당해 농지의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에는 연대 보증을 할 수 없음
- 공사에 과원을 임대한 자(과원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
 - 각종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 「농어촌정비법」 제6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부과되는 부과금(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제외)과 융자금의 상환금
 - 천재지변 기타 재해 등으로 과원(과수목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실 또는 매몰된 경우 그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 (다) 공사가 임대하는 과원의 임대료결정, 임대계약체결 및 임차료납부 방법 등
- 임대료의 결정 : 공사가 선지급한 임차료 총액으로 결정
- 임대계약 체결 및 채권확보
 - 공사는 임차신청자와 임대차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임대계약을 체결
 - 공사는 채권확보를 위해 임차인의 소유농지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거나 보증서 징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 보증서 징구는 임차계약 시와 같음
- 임차료의 납부

- 공사로부터 과원을 임차한 과수농가 등은 공사에서 과원소유자에게 선지급한 임차료를 임차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매년 공사에 납부
- 공사로부터 과원을 임차한 자가 부담하는 비용
 - 경미한 노무작업으로 원상회복 할 수 있는 과원복구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
- 자연재해 등에 따른 임차료의 감면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관련법령에 따른 자연재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병충해로 인하여 임차료의 감면을 신청한 때에는 임차료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
 - 신청절차 및 피해율 적용기준은 과원매매자금 납부연기 시와 같음
 - 임차료 감면기준

피해율	임차료 감면율	피해율	임차료 감면율
30%~40% 미만	45%	60%~70% 미만	80%
40%~50% 미만	55%	70%~80% 미만	95%
50%~60% 미만	70%	80%이상	100%

7.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가. 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자격

- 전업농육성대상자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0세 이하(2018년도의 경우 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농업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가능
 - 과원 경영규모 0.3ha(시설의 경우 0.1ha) 이상인 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과수를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
 - * 경영규모는 동일세대가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과원 기준, 임차농지는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다만, 만 61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는 영농기반을 승계할 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과원규모화사업을 기 지원받은 농가는 영농승계자 없이 64세까지 신청 가능)
 - * 과수재배 경력확인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제 또는 이장 등의 확인

<농업후계인력의 요건>

- ㉞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사업신청시까지 1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농을 중단하고 있는 자 포함)
- ㉟ 직계비속으로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와 농업계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농업계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졸업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이 경우 영농 경력의 제한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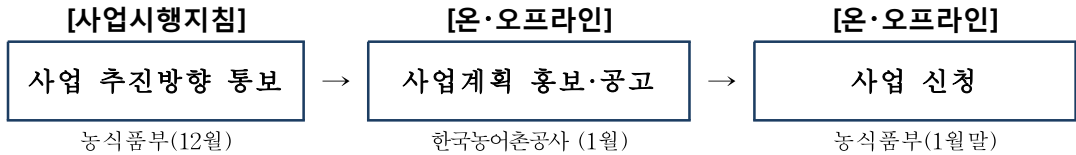
나. 신청자격 제한

- 1) 정책자금(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 시설자금 및 농기계자금 등)을 지원 받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이라 한다)의 사원, 주주, 조합원
- 2) 허위·담합 부당지원을 받아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이 취소된 자
- 3) 사후관리위반으로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이 취소된 자가 위반사유 발생 이전으로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자
- 4)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외의 종합소득 금액(본인 및 배우자 합산)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5) 농가단위로 쌀과 밭작물과 중복되어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를 신청하는 자

다. 대상자 선정

- 추진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선정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신청서와 전업농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지사에 신청(연중)
- 선정방법 : 「전업농육성사업 신청자 평가항목 및 평정방법」에 따라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전업농육성대상자에 선정된 것으로 같음
- * 선정기준, 선정절차,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1. 사업신청단계



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성과목표, 재정투입 계획 및 지급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 시행지침을 공사에 시달(전년도 12월말 까지)

나. 한국농어촌공사

- 공사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사장(각 지사 포함) 명의로 전문지, 공사 홈페이지 및 공사 관할지사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1월말)

다.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연중 수시 신청가능하며, 과원매도신청서, 과원매입신청서 등 해당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공사 과원영농규모화사업 업무지침에 의함
 - * 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에 비치 및 농지은행포탈(www.fbo.or.kr) 자료실에 게재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한국농어촌공사

- 지원대상자 선정
 - 공사 지사장은 접수된 매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현지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지원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가. 한국농어촌공사

- 공사 사장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사업지침 시달 후 30일 이내)

○ 사업시행계획의 공고

-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확정된 사업시행계획의 개요를 공사 각 지사 게시관 등에 10일 이상 게시 공고(1월말)

○ 사업홍보

- 공사는 지방지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사업내용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과수 농가 등의 참여를 촉진
- 공사는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홈페이지 등에 사업 내용 등을 게재하여 사업 참여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 경영지도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읍자취급기관장은 사업 실적이 우수한 자가 자금지원을 요청한 경우 농촌발전 관련 각종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공사는 과수농가의 정보화 및 경영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

○ 사업추진실적 보고

- 공사는 과원영농규모화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를 종합하여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분기 다음달 15일까지)

○ 업무지침의 운영

- 공사는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의 지원목적 달성 및 지원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 업무지침을 운영할 수 있음

나.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사의 사업시행계획을 심사하여 승인 시달(사업승인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4. 자금배정단계

가.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사업담당기관인 공사에 자금배정 및 시달

나. 한국농어촌공사

- 공사는 확정된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자금소요시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소요자금 대역신청(기금수탁관리자는 자금집행범위 내에서 자금을 대역)

- 자금의 대여 및 지원 받은 농업인으로부터 상환된 원리금 상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공사는 각 지역본부별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자금을 배정하되, 각 지역본부별 자금소요 현황을 수시 파악하여 적기 사업비 배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
- 공사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는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해당 과수농가에 지급
- ※ 사업비정산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과원규모화사업”에 따라 회계연도말까지 집행한 사업비를 정산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익년도 1월말)

5.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한국농어촌공사

1) 과수농가 관리

가) 관리기간 : 자금지원 상환기간이 최장기인 용자금의 상환만기까지

나) 사업추진상황 등 점검

- 공사 사장(지사장)은 지원 받은 과수농가 등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점검 (매년 12월말까지)

다) 자격 승계

- 지원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자격을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공사 지사에 자격 승계신청
 - 사망, 질병 또는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농에 종사 할 수 없는 경우
 - 만 64세 이상으로서 농업후계인력에게 승계를 희망하는 경우
- 공사 지사장은 피승계자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원받은 과원 영농기반 전체를 승계하여 사업계획서에 따라 과원영농규모 확대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적격자에 자격승계 조치
 - 피승계자의 자격 요건
 - 과원매매사업에서 정한 농업후계인력의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이에 준하는

배우자·형제자매에 한함(배우자·형제자매의 경우는 만 60세 이하 이어야 함)

- 공사 지사장은 승계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원 등 지원받은 영농기반 전체를 승계하여 사업계획서에 따라 영농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을 조건으로 승계를 승인

라) 계획 변경

○ 사업계획의 변경 등

- 지원받은 자가 농업경영상 필요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공사 지사에 제출

○ 사업장소 및 관리기관의 변경

- 지원대상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당초 관할 공사 지사장에게 이전사실을 통지
 - 댐·저수지 건설, 산업단지·택지조성, 공용·공공용지 편입 등으로 경영규모가 축소된 경우
 - 결혼 등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거주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영농규모 확대 또는 집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거주지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2) 지원과원 관리

가) 사후관리 상황조사

- 공사는 전년도 12월말일까지 과원의 매매, 임대차사업으로 지원한 과원 및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조사
 - 지원을 받은 자와 농업후계인력의 이농 또는 전업(轉業)여부
 - 지원된 과원의 전매·증여·임대·전대·대리경작 또는 무단전용 여부
 - 지원받은 당시 과수품목 이외의 타 작목 재배 여부
- * 지원당시 과수목으로 품종갱신은 허용
- 경영규모 축소여부

나) 전매·임대·전용 등의 동의

- 공사는 과원을 매입한 자로부터 당해 과원의 전매·증여, 임대·위탁경영, 전용 등의 동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동의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과원을 전매·증여하는 경우
 - 지원자격을 갖추고 동일세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 지원 받은 농가가 생업상의 사정으로 동일 또는 연결한 시·군·구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그 지역에 장기간 체류하여 과원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지원받은 농가가 생업상의 사정으로 동일지역 내에서 농업이외의 직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확인)
- 공사로부터 매입한 과원을 상속 받은 자가 당해 과원을 전매하는 경우
- 지원받은 농가의 개인파산 등에 따라 채권관리에 지장이 우려되고 공사의 과원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과수농가에게 전매하는 경우
- 세대주나 동거가족의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 자녀 결혼과 학자금 등 불가피한 자금소요로 인해 전매하는 경우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과원 경영규모 확대를 위하여 매도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농지법」 제9조 및 제23조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 또는 위탁 경영하는 경우
- 「농지법」 제35조에 따라 과원을 전용하는 경우

다) 공공용지 편입 및 농지전용시 조치

- 공사의 동의로 과원을 전매하거나 과원을 전용할 경우에는 공사 지사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면적 이상의 과원을 새로 구입하여야 함
- 해당면적 이상 농지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족면적에 대한 지원금 회수하고, 계약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상환 잔액 또는 당해 과원 회수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공사를 통한 사후관리 등 현장실태 점검(분기 1회 이상)
- 사업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실태 현지점검
- 공사 사후관리 이행사항 점검 등

《제재》

가. 과수농가 관리

(1) 계약해제·해지 사유

- 허위·담합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 지원받은 과수농가가 지원자금을 지원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본인 또는 농업후계인력이 사망, 신병, 전출, 전업, 사업포기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 행방불명 등 중대한 신분 및 신용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과원을 지원받은 이후 소유과원(공사지원 과원 포함)을 고의로 증여·매도 및 임대·전대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자로서 경영규모 축소 익년도부터 2년 이내에 종전 면적으로 과원경영규모를 확대하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해지 사유에서 제외
 - ① 공공용지에 편입되거나 각종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경영규모가 축소된 경우
 - ② 공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매매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 ③ 농업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지원받은 농지의 경우 상환완료 후 출자)
 - ④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에 따른 신고 시설로 전용한 경우(지원 농지는 지원금을 회수한 경우)
 - ⑤ 농지전용 동의를 받고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 전용하고, 그 해당면적에 대한 지원금을 회수한 경우
 - ⑥ 세대주나 동거가족의 질병·사고로 인한 치료비 마련 또는 학자금 등 불가피한 자금소요로 인해 공사의 전매동의를 받아 전매하고, 그 해당면적에 대한 지원금을 회수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종전면적으로 자력 확대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지원
- 공사 지원과원을 전매 등의 행위제한특약사항에 반하여 전매제한기한(8년) 이내에 전매 또는 증여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할 때에는 6월 이내에 소유자 명의로 원상회복 하지 않은 경우

(2) 시정조치 및 지원금 등의 회수

- 공사 지사장은 계약해제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1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즉시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

자금을 상환(반납)하도록 통보

- 과수영농시설 복구 및 작목입식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사업취소사유 발생 확인시 15일 이내에 시정계획을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자금 회수 조치

* 다만,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승계도 불가능하여 사업을 취소하고 용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용자시의 용자조건에 따라 회수

나. 지원과원 관리

- (1) 조사결과 위반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을 촉구하고 공사에서 정한 시정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하며, 사후 관리대장 또는 P/G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 매도과원 : 지원금 또는 당해과원 회수

- 임대과원 : 임대차계약 해지

- (2) 회수과원 가격결정 : 계약이 해제(해지)되어 미상환 잔액을 농지로 회수하는 경우 수납한 자부담금과 할부원금에서 다음의 이자와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위반자에게 반환

- 공사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의 미 상환 이자(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포함)

- 소유권이전등기, 원상회복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

- 기타 제세공과금

- (2) 계약위반 등에 따른 불이익 처분

- 허위·담합·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위약금을 부과

- 당초 지원금에 대하여 지원일부터 납입일까지 기산하여 연리 11%를 부과. 다만, 위약금의 총액은 지원금을 초과할 수 없음

- 기타 사후관리 위반 등으로 확인되면 위약금을 부과

-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위반일 또는 위반사실을 안날(임대인과 공사의 임대차 계약의 경우 지급일)부터 기산하여 납입일까지 연리 11%를 부과. 다만, 위약금의 총액은 지원금을 초과할 수 없음

다. 기타 행정사항

- 농림축산사업정책자금의 중복지원 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군,

농협 및 공사 등 관계기관은 관련자료 열람 등 요청시 보유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

- 지자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기관은 공사가 지원한 과수농가의 경영규모 변동 및 사후관리조사 등을 위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제 정보 확인 등에 적극 협조
- 공사 사장은 지원과원에 대한 사후관리상황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10월 31일까지)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사업평가

1) 원칙

- 매년 과수농의 경영규모 확대실적을 평가, 2017년까지 적정 영농규모(1.5ha)를 갖추고 기술농업을 실천하는 과수전업농 25천호를 육성하여 전체 과수 생산량의 60%를 담당토록 하는 중장기 사업목표의 원활한 달성 도모

2) 사업평가실시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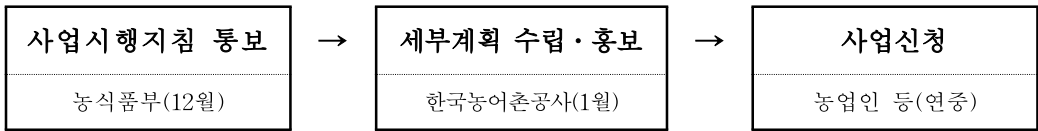
- 평가대상 : 전체 과수지원 농가
- 공사 사장은 매년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사업성과평가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요청(사업지침 시달 후 30일 이내)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성과평가계획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승인·시달(사업승인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 공사 사장은 과수농가 개별 경영면적을 토대로 사업성과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익년도 2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사의 사업성과 자체평가서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한 검증 후 확정(익년도 3월)

나. 환류

- 사업성과 평가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사업목표 점검, 중기재정계획 및 익년도 예산에 반영(익년도 4월)
- 당해 연도 실적지표 80%이하 달성시 익년도 정부예산 감액

② 전업농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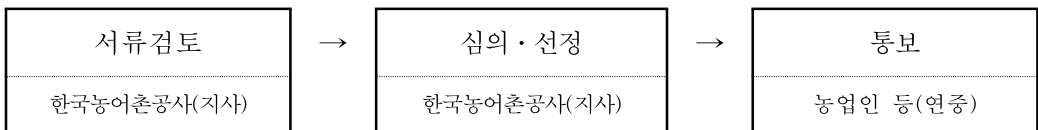
1. 사업신청단계



○ 연중 수시 신청 가능,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 신청서 : 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에 비치, 농지은행포탈(www.fbo.or.kr) 자료실 및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주요사업에 게재

2. 사업자 선정단계



○ 선정결과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업기술센터에 매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10일 까지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한국농어촌공사

가. 경영지도

- 전업농육성대상자의 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D/B를 구축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경영지도 실시
- 기 구축된 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FBIMS)의 쌀전업농관리 프로그램을 보완 활용
- 년 1회 이상 정부의 농업경영체 등록 D/B 화일을 받아 과수전업농의 경영체 등록 정보 갱신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중 경영규모가 0.5ha(시설 0.3ha)이상인 농가 중 적격한 농가를 선발하여 육성후보군 조성 및 D/B 구축
- 위 기준에 해당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통지하여 과수전업농 신청 및 선정절차에 따라 선발된 전업농육성대상자를 후보군 조성
- 지원대상자의 정보화 및 경영능력 제고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나. 업무지침의 운영

- 전업농육성 목적달성을 위하여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 업무지침운영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한국농어촌공사

가. 관리기간 :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년도부터 자격취소 시까지

나. 사업추진상황 등 점검

-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점검(매년 12월말)
- 점검결과 사업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고 융자금을 회수 및 융자취급기관에 통보

다. 자격 승계 승인

- 지원받은 자가 사망, 신병 등으로 전업농육성대상자나 농업후계인력에게 자격 승계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승계 승인 여부 결정
- 영농기반 전체를 승계하여 사업계획서에 따라 영농규모 확대가 가능한지, 전업농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적격자에 자격승계 조치
 - 피승계자의 자격 요건 : 영농승계자의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이에 준하는 배우자·형제자매에 한함(승계 받는 배우자·형제자매는 만 60세 이하에 한함)
- 승계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지 및 농기계 등 영농 기반 전체 승계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영농규모를 확대한다는 조건으로 승인

라. 행정사항

- 사업 취소자 명단과 사유, 자금회수현황을 장관에게 보고(익년도 1월말)
- 사업 취소자 명단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업기술센터에 매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10까지 통보

전업농 등 지원대상자

가. 사업계획의 변경 통지 등

-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공사 지사에 통지하여야 함
- 사업장소 및 관리기관의 변경 :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소의 이전이 가능하며, 당초 관할 공사 지사장에게 이전사실 통지
 - 댐·저수지, 산업단지·택지조성, 공공용지 등으로 편입되어 규모가 축소된 경우
 -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거주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규모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하여 거주지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나. 자격 승계 신청

- 지원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자격을 승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 지사에 자격승계 신청

- 사망, 신병 또는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농에 종사 할 수 없는 경우
- 만 56세 이상으로서 농업후계인력에게 승계를 희망 하는 경우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가. 전업농육성대상자에 대한 정책 지원(시장·군수) 및 기술지도(농업기술센터)
 나. 전업농육성대상자의 경영규모 변동 및 사후관리조사 등을 위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제 확인 등에 적극 협조

농림축산식품부

-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및 현황 실태 점검(분기 1회 이상) 및 지도강화

《제재 및 처벌내용》

한국농어촌공사

가. 사업취소 사유

- (1) 허위·담합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 (2) 전업농 지원 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3) 본인 또는 농업후계인력이 사망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4) 파산·금치산 선고 등 중대한 신용 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 (5) 농업이외의 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겸업을 하는 경우로 공사 지사장이 영농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제외
- (6) 소유 과원을 증여·매도, 임대·전대, 전용하여 경영규모를 축소된 자로서 축소 익년도 부터 2년 이내에 종전면적으로 규모를 확대하지 않은 경우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되, 전업농육성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취소

- ① 공공용지에 편입되거나 교환·분합사업 또는 각종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경영 규모가 축소된 경우
- ② 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 ③ 공사에서 지원받은 자가 주 작목 이외의 농지를 매도·임대·전용하는 경우
- ④ 농업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지원받은 농지의 경우 상환완료 후 출자)
- ⑤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에 따른 신고 시설로 전용한 경우(지원농지는 지원금을 회수한 경우)
- ⑥ 지원 후 8년이 경과하고 융자금 상환이 완료된 농지 및 지원받지 않은 소유농지를 불가피한 사유(전매동의 사유인 경우에 한함)로 매도하여 경영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 (7) 공사 지원농지를 행위제한특약사항에 반하여 전매·증여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소유자명의로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취소
- (8) 기타 공사 지사장이 전업농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시정조치 및 지원금 등 회수

- (1)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 될 때에는 전업농육성대상자에게 1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즉시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자금(농지)을 상환(반납)토록 통보
- (2) 영농시설 복구 및 작목입식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사업 취소사유 발생 확인 시 15일 이내에 시정계획을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즉시 전업농 자격취소 및 자금 회수 조치
 - * 다만, 신병, 사망 등으로 사업승계 불가 및 사업을 취소하고 용자금을 일시 회수할 경우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공사 지사장이 판단할 때에는 용자시의 용자조건에 따라 회수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평가요령

- (1) 평가주관 : 농림축산식품부(협조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2) 평가기간 및 대상 : 익년도 1월~2월, 전체 과수전업농
- (3) 평가기준

성 과 지 표	배점	측 정 수 식	의 미
①과수 전업농 경영면적 비율 (% , 주지표)	70점	과수전업농 경영면적/ 전체 과수재배면적	'18년까지 전체 과수재배면적 대비 전업농 경영면적 비율 (50%)의 달성도 측정
②과수 전업농 호당 경영 면적 (ha, 부지표)	30점	과수전업농 경영면적/전국 과수농가 호당평균경영면적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과수 전업농의 호당 경영면적 달성도 측정

나. 평가절차

- (1) 공사는 매년 '사업성과평가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을 요청(전년도 12월)
- (2)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성과평가계획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승인·시달 (1월)
- (3)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사의 사업성과 자체평가서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한 검증 후 확정(익년도 3월)

《환 류》

- 과수전업농 육성목표 점검 및 중장기 과수전업농육성계획에 반영(익년도 4월)

1. 2019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참여 의향 등을 설문조사하여 익년도 사업물량 및 소요사업비 추정에 반영
 - 사업추진에 관한 만족도 조사시 병행 실시

2. 201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1) 신청서 제출기관 : 신청인 거주지 관할 공사 지사

(2) 신청자격

- 농지매도·임대 : 비농가, 전업·은퇴하고자 하는 과수농가 등
- 농지매입·임차 : 과수농가, 농업법인

(3) 사업절차

- 과원을 매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지원대상자 주소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4) 구비서류

- 과원매도신청서, 과원매입신청서, 과원임대신청서, 과원임차신청서 중 해당되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신청서 : 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에 비치 및 농지은행포탈(www.fbo.or.kr) 자료실에 게재
 - 첨부서류 : 해당신청서의 아래 참조

(5) 대상자 선정

- 공사 지사장은 신청자에 대한 제출서류 검토와 현지조사 확인 등을 실시한 후 이를 기초로 지원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세부사업명	과수 생산유통지원			세목	민간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과수우량묘목생산 기반조성			예산 (백만원)	500			
사업목적	○ 무병, 우량 과수묘목공급기반조성							
사업 주요내용	○ 과수 무병품종 선발 및 도입, 중앙모수포 증설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우량 보증묘목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무병원증 확보 및 보존·증식·공급을 담당하는 중앙과수묘목센터							
지원한도	○ 기반조성 : 500백만원 이내/개소							
재원구성(%)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9,266	699	500	1,500			
	국 고	21,535	539	500	1,500			
	자부담	4,623	160	-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기주 서기관 김지현 주무관 강지원		044-201-2255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야묘목관리센터		상 무 김연순 과 장 김우섭		054-534-8003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과수농협 연합회		
관련자료	과수우량묘목생산기반조성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묘목생산자단체, 묘목생산자, 대목생산자 선정은 기 완료
 - 묘목생산자단체 : 한국과수농협연합회(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특수법인)
 - 묘목생산자 : 「종자산업법」에 따른 과수묘목 생산판매가 가능한 법인으로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자체보증 협약에 참여하는 자
 - 대목생산자 : 영주시농업기술센터,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 모수포장을 설치하여 묘목주산지 과수종묘업자가 무병묘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무병대목 생산 공급 등을 지원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2. 사업주체 의무사항

[묘목생산자단체]

- 직무육성 이외 품종 무병화 처리를 위해 무병화처리 대상 품종 선정기준, 무병화처리 재료 선발기준, 수수료 기준 등 내부규정 제정 운영
- 보증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의 운영, 피해보상 적립금 운용, 포장·종자검사의 검사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사방법 등에 대한 내부 규정 제정·운영
- 무병 접수 및 대목 공급 실적(묘목업체의 무병묘목 판매실적 포함) 관리

[묘목생산자]

- 묘목생산자단체의 자체보증과 이에 수반되는 포장·종자검사를 받아야 함
- 묘목생산자단체가 정하는 피해보상적립금 및 검사비용의 납부
- 중앙모수포로부터 분양받은 모수의 계통관리 및 묘목의 계통 생산
- 보증묘목 생산판매에 대한 기록의 유지 및 제출

[대목생산자]

- 자체 생산한 무병대목과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로부터 공급받은 품종접수를 자체 보증체계에 참여하는 종묘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함
- 묘목생산자단체의 무병모수 관리에 수반되는 포장·종자검사 등을 받아야 하며, 묘목생산자단체가 정하는 검사비용의 납부
-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로부터 분양받은 모수의 계통관리 및 묘목의 계통 생산을 지도 및 관리

3. 사업대상품목 : 사과, 포도, 감귤, 배, 복숭아, 감

4. 지원자금 및 사용용도

- 지원자금 용도 :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운영지원 및 기반조성
- 지원자금 기준
 -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기반조성(무병품종 선발·도입·관리, 검정장비 증설 등)

5. 지원조건

- 민간자본보조 : 기금보조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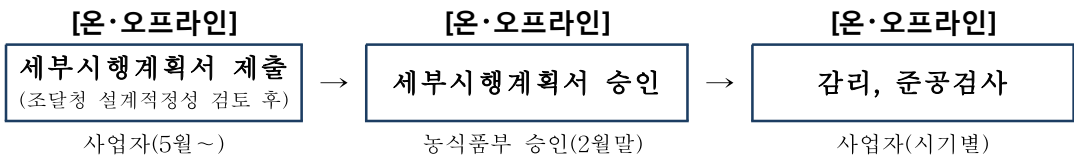
- 기반조성 : 500백만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및 품목에 따라 세부항목 및 사업비 조정 가능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 신청완료

2. 사업선정단계 : 선정완료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당해 사업연도의 기본사업시행지침 수립·시달
- 연합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최종 승인(2월말 까지)
- 연합회에서 제출한 무병묘목 공급계획을 시·도(시·군)에 정보 제공

한국과수농협연합회

- 연합회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2.25일 까지)
 -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작성시 묘목업체의 다음연도에 무병묘목공급 계획을 같이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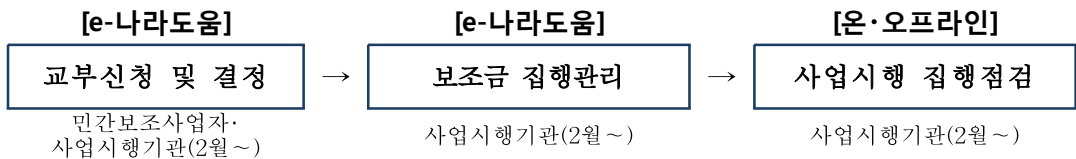
* 무병묘목 생산업체, 품목(품종), 공급가능 주 수 등

- 연합회는 무병 접수 및 대목 생산·공급 계획(묘목 포함)을 자체 홈페이지에 매년 정보 제공

사업계획 변경절차

- 연합회장은 사업계획 변경시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전협의 후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연합회장은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사업물량 및 생산·관리작업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각 세부항목별 사업비의 30%이내에서 변경하여 사용가능
 - 항목별 세부사업비의 30%를 초과 증감 또는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함

4.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 계좌에 입금 후 우선 집행
 - 다만,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예탁교부받은 경우 자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e나라도움 운용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함
 -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3조2제8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의 시기와 방법을 명시

< 자금배정단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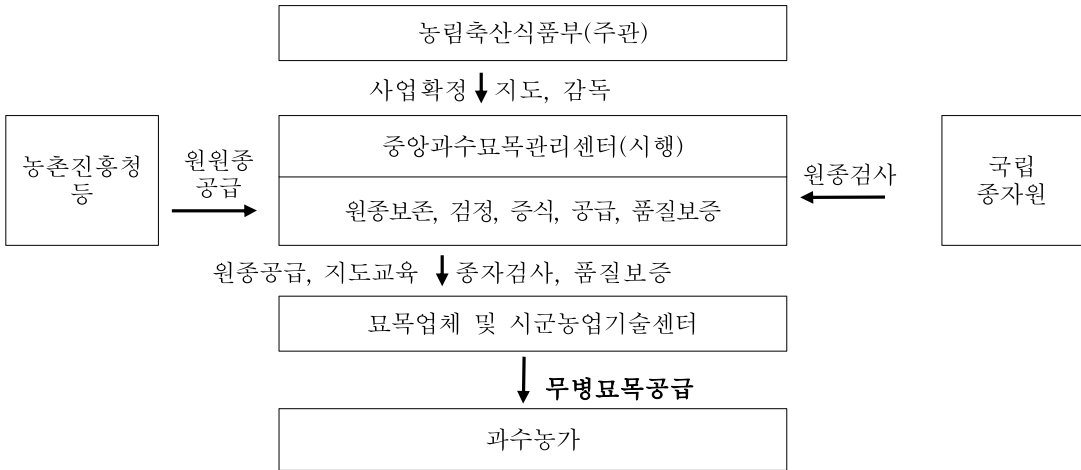
한국과수농협연합회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53조2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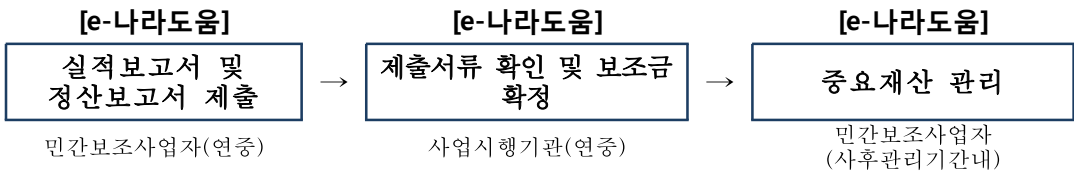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 보조금 신청의 타당성과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여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보조금 교부 시 자부담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체계도 】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예탁교부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보완 요청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다만, 비닐 하우스골조는 부기등기 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식품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의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61조제3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제63조의 4호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 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 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한국과수농협연합회)

- 연합회장은 사업참여자의 자체보증, 묘목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무병묘 우수성에 대한 회원농협 임직원 및 농가 대상 교육 병행
- 연합회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관리를 위해 묘목사업자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연합회장은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연합회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다음년도 1월말까지 농식품부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 정산요청
- 연합회장은 과수우량묘목생산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67조 “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따른 사업 관리절차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 건물, 비닐하우스골조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부동산의 중물(건물내 기계설비)	준공일	7년간	
- 주요기계·장비·자재	구입일	5년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분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연합회 및 묘목사업자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연합회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적정성 등

《제 재》

사업관리주체(연합회)

- 연합회장은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자금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실시규정」 제27조,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①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 ④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

7. 성과측정 및 사업평가

- 평가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1월 이내
- 연합회는 전년도 과수우량묘목생산 지원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사업계획수립 시 「사업성과 자체평가서」를 포함·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월말까지)
- 평가결과 조치 : 지원방향 및 제도개선, 평가결과 홍보 등

세부사업명	과수 생산유통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비 지원		예산 (백만원)	18,992				
사업목적	○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용배수로,경작로정비 등 과수생산 및 출하기반구축							
사업주요내용	○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용수원개발(관정,양수정 등), 경작로정비 등							
국고보조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FTA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지역중 개소당 사업규모가 30ha이상 집단화된 지구							
지원한도	○ 기반조성 사업비 : 32,520천원/ha							
재원구성(%)	국고	80	지방비	2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7,559	20,488	23,740	80,902			
	국 고	14,047	16,390	18,992	68,838			
	지방비	3,512	4,098	4,748	12,064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기주 서기관 김지현 주무관 강지원		044-201-225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업계획처		부 장 박진현 과 장 위재호 계 장 백민경		061-338-6191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3.31.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비지원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사업규모가 30ha이상(수출단지는 10ha이상)으로 사업수혜농가들이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이상을 출하약정한 지구(단, 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3km 이내로 한정하며 30ha 미만 지구도 주민호응도를 고려하여 지원)
 - 사업면적의 50% 이상 GAP인증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지구(사업 완료 후 2년 이내)
- *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제재사항을 출하약정서에 명시)

[우선순위]

- 1단계 :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2단계 : 30ha이상 과수주산지 지구

[지원제외]

- 수혜농가 중 농업경영체 미 등록자가 있는 사업 지구
- 토지소유주들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유지 기부채납 등 이용 동의가 없고, 수혜농가가 사업시행주체와 80% 이상 출하약정을 하지 않은 지구
- 마을도로 위주개발, 생활용수개발 목적으로 관정개발을 희망하는 지역, 주택단지, 공단 등 타 용도로 전용이 예상되는 지구는 반드시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FTA기금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 지역 중 개소당 사업규모가 30ha 이상(최소 10ha이상) 집단화된 지구
- 선정요건
 - 지방비 부담이 가능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유지 기부채납, 사업시행주체와 출하약정 80% 이상 등 주민호응도가 높은 지구 최우선 지원
 - 거점산지유통센터(APC)와 연계추진이 가능한 지구 우선 지원
 - 품목별 생산자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공동출하·공동계산이 잘되고 있는 지구

- GAP 집단인증을 받은 지구, 수혜농가의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은 지구 우선 지원
- 집단화 규모가 큰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위주로 우선 정비
- 종합적 과원관리를 필요로 하는 집단화된 과수재배 주산단지 정비
- 타법·타사업 등에 저촉되지 않는 지구
- 사업완료 후 시설물에 대하여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함을 감안하여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이 활발 하며, 시설 활용도가 높고 선량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구
-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와 연결이 용이하여 농산물 유통에 유리한 지구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대상지역 우선지원
-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지구는 선정 시 가점 부여

3. 지원대상

- 용수원 개발 : 과수단지 관개용수(암반관정, 양수장 등) 개발
 - 용수이용 시설 : 저수조 및 송·급수관 설치
 - * 개별 농가별 용수원 개발은 제외
- 경작로 정비 : 진입로, 경작농로 확·포장 등
- 과원경지정리 : 원지형을 이용한 과원 경지정리, 토사유실방지 축대 설치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 시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기본조사비
- 과수기반정비에 필요한 공사비, 용지매수 및 보상비, 기타 부대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기본조사비 : 보조 100%(국고 100)
 - 기반조성 사업비 : 보조 100%(국고 80, 지방비 20)
- 사업기간 : 2년(연도별 지원비율 : 1년차 30%, 2년차 7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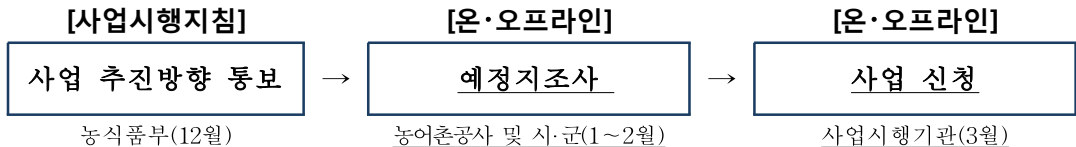
- 기본조사비 : 461천원/ha
- 기반조성 사업비 : 32,520천원/ha
 - I 유형 : 29,268천원/ha, II 유형 : 32,520, III 유형 : 35,722

<개발유형>

- I 유형(단순정비) : 용수개발, 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 중 단일공종 사업
- II 유형(복합정비) : 용수개발+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농로개설, 과원경지정리+용수개발
- III 유형(종합정비) : 용수개발 + 농로개설 + 과원경지정리 사업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시달(전년도 12월말)

나. 사업자(신청조직)

- 품목조직의 장은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시·군에 제출

다. 시·군

- 시장·군수는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및 30ha(10ha)이상 과수재배 주산단지 여부를 확인하고 답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함(전년도 2월말)
- 수혜농가들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수출단지 및 GAP 집단 인증 단지 여부, 기부채납 등 토지 이용 동의 및 출하약정, 재해보험 가입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서에 대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 시장·군수가 예정지 답사 시에는 아래사항을 해당 시·군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와 공동으로 조사를 하여야 함
 - 사업수혜농가들이 FTA사업 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이상 출하약정 여부(별지 1-5호 서식 참조)
 - 수혜농가들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GAP 집단 인증 단지 여부, 기부채납 등 토지 이용 동의 여부, 집단화 정도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
 - 과실전문(수출)단지 포함여부와 품목별 생산자 조직 구성 또는 계획 여부
 - 재배품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 개발된 수원(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과 계곡수 등 지표수를 최대한 활용
 - 특히 재배품목 여건상 용수량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의 경우에는 용수개발을 지양하고, 농로정비 등 필요한 공종만으로 계획
 -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은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이 자체적으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함을 알리고, 마을회의 등을 통하여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을 주민에게 제시하는 등 유지관리비 부담 상황을 주민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사업시행에 대한 호응도를 철저히 조사, 주민이 사업을 희망하는 지구에 한하여 사업예정지구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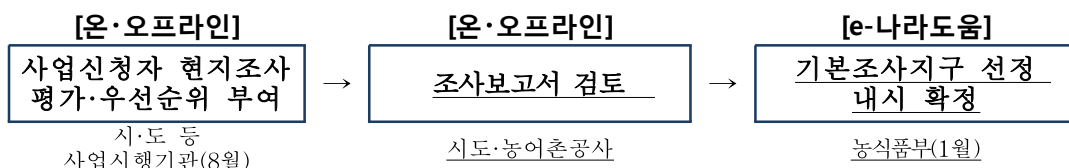
라.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사업시행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정지 조사를 실시함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예정지 답사결과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며, 예정지조사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전년도 3월말)

마.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는 관할 시·군과 공동으로 예정지 답사를 실시

2. 사업자 선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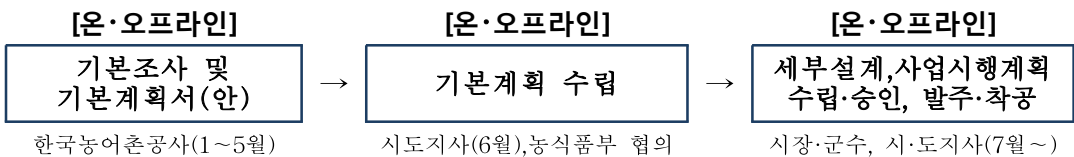
가. 농림축산식품부

- 현지 조사대상 지구 선정
 - 현지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
 - 당년도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비를 감안하여 선정
-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지조사결과 및 시·도별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지구 선정

나. 한국농어촌공사

- 현지 조사를 통한 실무검토 실시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주요 검토내용 : 지구집단화 정도, 기존 시설물 현황, 사업여건, 기부채납 등 주민호응도, 사업시행주체와 출하약정 체결여부,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사업추진 상 문제점 등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가.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사업시행자

(1)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지구별 추진위원회 및 유지관리 조직 구성

- 사업시행자는 지구별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시행자(시·군), 농업인대표,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하여야 함
 - 사업계획내용 검토 및 시설, 영농관리 등 책임부여
- 사업시행자는 관정을 개발할 경우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설물의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토록 하여야 함

(2) 영농기술지도 강화

- 사업시행자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 완료 후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참여토록 하여 영농기술 지도를 강화하여야 함

(3) 용수원 개발 및 용수이용시설

○ 용수원 개발

- 재배품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개발된 수원(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부적합한 경우에 신규개발
- 용수원개발은 지표수 개발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지표수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지하수 등 다른 용수원을 검토
- 용수원 개발시에는 시설물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지도를 실시토록 조치
- 암반관정의 1일 채수량은 150톤/공 이상으로 하며, 착정심도는 소요수량 확보가 가능한 적정심도까지 개발. 다만, 지하수의 부존량이 적은 산간, 해안 또는 도서지역 등은 시·도지사 책임하에 1일 채수량 100톤/공까지 조정시행 가능
- 관정 개발시에는 사업비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도록 공당 채수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급수면적을 늘려 개발 공수를 최소화
- 시추조사는 적정심도까지 1공을 시행하며, 시추조사 실패시는 1공을 추가 시행
- 시설농업의 양액 재배용수나 음용수를 겸하는 용수는 수질검사를 엄격히 실시
- 관정에 사용되는 자재는 반드시 KS규격의 자재를 사용
- 저수조와 수혜 농경지의 표고차에 의하여 과도한 수압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수압 저감방안 마련

○ 용수이용시설

- 수원에서 저수조까지의 송수관로는 내수압 등에 견딜 수 있는 자재를 사용
- 저수조에서 경작지까지의 급수관로는 수압, 구경,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적정재질의 관을 사용하고, 농업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장소에 분수공을 설치토록 계획.
- 급수시설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도미터기를 설치토록 계획
- 농업인들의 살수관개(sprinkler) 또는 물방울관개(Drip irrigation) 실시 희망 여부를 조사하고, 살수 관개 또는 물방울관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정 수압이 유지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

- 기타 관개계획은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계획 설계기준, 관개편('98.12 농림축산 식품부)의 과원관개 분야 계획 설계 기준에 따라 조사·설계하여 계획수립

(4) 경작로 정비

-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에서부터 경작지까지의 연결도로인 진입로는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포장공법으로 확·포장
- 농기계 통행 등 작물재배에 주로 이용되는 경작농로는 진입로와 연계하여 정비
 -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등 상위도로의 확·포장이 안 된 지역은 관련 부서와 사업시행시기를 협의하여 연계 추진
- 배수계획
 - 가능한 한 자연 배수토록 계획하고, 배수로에 낙차공, 침사지, 사방댐 등의 구조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준사업비 범위내에서 계획

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한국농어촌공사

- 기본조사자(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하 생략)는 답사보고서 및 예정지조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기본계획(안) 작성
- 기본조사자는 지자체(시·도, 시·군)와 지방비 부담 가능여부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함
- 기본조사자는 타법·타사업 관련 여부, 토지소유주 및 주민 호응도, 현지 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은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이 자체적으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함을 알리고,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을 주민에게 제시하는 등 유지관리비 부담 상황을 주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한 후 사업시행에 대한 호응도를 철저히 조사토록 할 것이며,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기본조사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재배품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 개발된 수원(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과 계곡수 등 지표수를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
- 기본조사자는 품목재배 등에 관한 농업기술센터의 의견과 기본조사내용에 대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결과를 기본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함

- 기본조사 내용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아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품목별 주산(특산)단지 면적 및 연간소득
 - 작부체계 및 농업인의 재배품목 전환 가능성
 - 경사도, 재배품목, 경지이용형태 등 지역입지여건에 맞는 토양유실방지 시설물 설치계획 수립
 - 진입·경작로 개설계획
 - * 진입·경작로 개설과 상위도로 정비(확·포장)가 연계될 경우 도로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도로개설 효과를 배가 할 수 있도록 계획
 - 용수공급계획
 - * 원칙적으로 저수지, 양수장, 농촌·농업생활용수 공급용 암반관정, 기타시설 등 기존 수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우선검토하고, 기존 수원 활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암반관정 등으로 용수개발계획을 수립
 - 농업인들의 살수관개 또는 물방울관개 실시 희망여부
 - 과수산업육성대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원예시설현대화 등 사업의 연계 추진 가능여부(사업수혜농가들의 5년 이상 80%이상 출하약정 여부 등)
 - 품목별 생산자단체 조직 현황
 - 농산물의 규격상품 출하 여부
 - 유통체계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지하수 이용에 따른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부담, 기타 유지관리 방안 등을 수혜민 또는 대표 등과 협의하여 제시
-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서(안)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는 기본계획(안) 및 기본계획수립 내용과 기본조사비 집행액에 대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 한국농어촌공사는 신규지구에 대해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에서 추진하는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설명회 장소, 지구내 농가섭외 등 적극 협조

시·도

- 시·도지사는 계획내용을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되 기본계획(안)의 주요사항을 변경시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 시·도지사가 지구별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면 기본계획서를 시군 및 기본조사자에게 송부함
- 시·도지사는 지구별 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수립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신규지구에 대해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에 2월말까지 신청 [별지8]

다.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시·도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대상지구를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시달함
- 시·도지사는 세부설계가 완료되어 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을 해오면 경제성·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며, 세부설계 내용이 미흡하면 세부설계자에게 설계를 보완토록 하여야 함
 - 특히 용수개발계획 및 개발유형의 적정성, 주민들의 과원 관정 등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조직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한 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기간은 사업규모, 지역여건, 재배품목 등에 따라 1~2년으로 설정함
 - 관정, 기계, 전기시설, 저수조, 송수 및 급수시설, 농로, 정지 등 공사내용이 다양한 점 등을 감안하여 2년차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음. 다만, 공종이 단순하고 사업규모가 작은 지구는 착수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지구가 선정되면 「농어촌정비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에서 세부설계자를 선정함.

- 기본조사결과 지하수개발이 필요할 경우에는 세부설계와 병행하여 지하수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되 아래사항을 유의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지하수 부존량 평가를 위한 지질조사, 물리탐사(원격탐사포함), 시추조사 등의 지하수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 업무는 지하수법에서 규정한 지하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또한, 「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지하수법」 제8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지하수개발은 「지하수법」 제22조 및 동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 투자기관 및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을 필한 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개발토록 함
 - * 지하수개발은 개발단계에서 가뭄 등 비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상반기에 착정을 완료토록 함
 - 관정 시추결과 채수량 부족 등으로 부적합한 시추공에 대하여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지하수법」 제15조 및 동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폐공처리)하여야 함
 - * 다만, 지역주민이 비상시 용수로서 활용코자 존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주민에게 인계할 수 있음
 - * 이때 시장·군수는 주민들이 지하수법에서 정하는 허가 또는 신고,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준공 신고 등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여야 하며, 추후 관정이 불필요하여 활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기준에 따라 폐공처리 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후 주민에게 인계함
 - 시장·군수로부터 지하수 기초조사 및 개발에 대한 위탁을 받은 자는 지구별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시추공의 위치, 심도, 채수량, 안정수위 등 세부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아 세부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공고결과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수혜민의 동의서, 준공 후 시설의 인수·관리 예정자의 확인서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함
- 세부설계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에서 정하는 측량·설계 요율의 범위내에서 집행함

세부설계자

-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 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 이해 당사자 등과 협의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용수개발계획, 개발유형, 유지관리 조직 구성 등 유지관리계획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와의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가구당 부담액을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 자체적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토록 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지하수개발 결과를 토대로 암반관정 및 지하수이용시설에 대한 세부설계를 실시하여야 함
- 세부설계 내용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아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타사업과의 연계추진방안
 - 진입·경작로 개설과 상위도로 정비(확·포장)가 연계될 경우 도로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도로개설 효과를 배가 할 수 있도록 계획
 - 지하수 이용시설의 송수관로 및 급수관로, 관 연결부, 급수부 등 동과 취약부분에 대한 동과 방지대책
 - 토양침식 및 토사유출 저감 시설물 설치 계획
 - 수도미터기 설치계획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물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 비용부담 방안, 기타 수혜민들이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여야 할 사항(수혜민들과 협의)
 - 기타 기본조사내용의 확인 및 여건변화사항 조정

라. 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공사발주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 결과를 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여 영농기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하고, 시·도지사에게 입찰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입찰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마. 공사시행 및 공사감리

시·도

- 사업시행자의 시행계획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판단
- 시·도지사는 시공 중 사업지구 변경,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한 면적 증감,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10%이상의 공사비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상황을 매 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별지 제2-5호 서식)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착공과 동시에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비는 개발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사업시행 중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자체에서 지방비로 부담함
- 사업시행자는 시공 중 현장여건에 따라 시행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시공업체가 지하수 이용시설 설치를 완료할 경우 아래사항에 대하여 수혜농가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혜민의 확인을 받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게 하며, 시설물 사용설명서를 제작·비치하여야 함
 - 주요시설의 배치상황 및 시설물 사용방법
 - 송수관로 및 급수관로, 관 연결부, 급수부 등 동파취약부분에 대한 동파방지 방법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지하수 이용에 따른 가구당 예상 전기요금 부담액 및 유지관리비용 부담 방안 등

- 사업관리비는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도서인쇄비, 회의 개최비, 출장비 등으로 사용하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에서 정한 요율 범위 내에서 집행함
-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나, 다양한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공종임을 감안,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의 위탁시행을 원칙으로 함
 - 일반용역업체에 위탁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농업토목 전문기술자는 물론 전기, 기계, 지하수 등의 전문가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 감리할 수 있도록 조치함
-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사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감리비는 감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특수기술부분 위탁감리비, 특수시험 위탁비를 실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감리 요율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공사감리 직원의 인건비, 자산취득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바. 용지매수 및 보상

사업시행자

- 용지매수는 진입도로, 간선농로 등의 농로와 저수조, 관정 등의 공공시설 부지는 매수할 수 있으나, 예산단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 단가를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지방비 등 타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함
-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보상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함

사. 준공검사

사업시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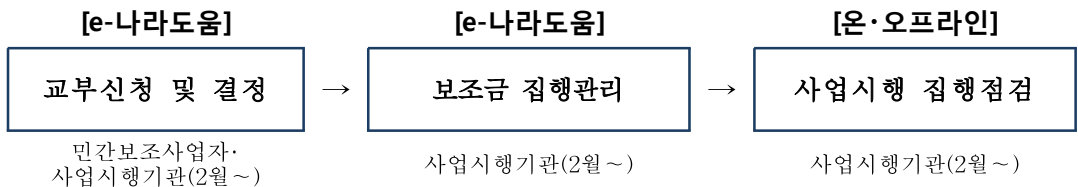
-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업자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수혜민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시설물 사용설명서 비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 수혜민들의 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비준공 검사 시 수혜민을 참여시킬 수 있음

-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검사 지적사항 시정 내용,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혜민에게 실시한 교육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조직 구성에 관한사항을 포함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0조에 규정된 서류 및 도면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이 준공되면 그 결과를 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여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 지도를 실시하도록 함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 준공 정산을 하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토록 함
 - 준공 검사시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수혜민 교육실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지구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행토록 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함
- 시·도지사는 준공 검사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준공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한국농어촌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 다만,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가 당해 사업의 공사 감리자와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를 위탁하여서는 안됨

4.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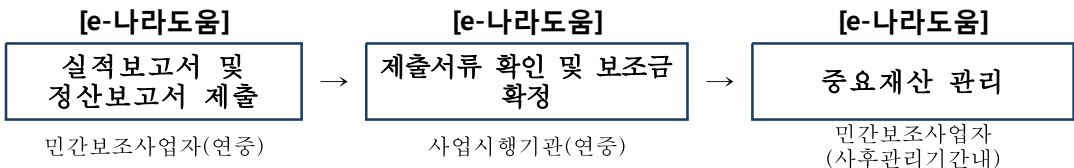
- 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 계좌에 입금 후 우선 집행
 - 다만,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예탁교부받은 경우 자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e나라도움 운용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가 정보취약계층인 경우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비예탁교부할 수 있으며, e나라도움 이용 관련 업무대행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함
 -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3조2제8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의 시기와 방법을 명시

<자금배정>

가.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교부를 요구함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자금교부 요청을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사업비는 자금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 변경 내용, 보조금 신청 및 집행상황 등을 수시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및 **e나라도움**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예탁교부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보완 요청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 등록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다만, 비닐하우스골조는 부기등기 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식품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의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61조제3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제63조의 4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이행점검단계 >

가. 사후관리

시·군

- 완공된 관정 등 시설물에 대한 완공년월일, 채수량, 안정수위와 기타시설에

대한 준공사진이 첨부된 시설물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농어촌정비법」 제17조, 동시행령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함

- 과원기반정비 시설 등록은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과수기반시설”로 등록
- 시장·군수는 관리조직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 노후장비 및 시설교체비를 적립토록 하고, 전기료 등의 이용비용을 자체 부담토록 지도함
- 시장·군수는 시설물 활용 및 유지관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이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활용도 제고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고소득 작물 재배에 관한 영농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조치하여야 함
- 암반관정 개발지구에 대하여는 소형관정개발을 지양함
- 수질검사는 관련규정에 의거 용도별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환지업무는 경지정리사업 지침을 준용함
-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지하수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규정에 따름

시·도

- 시·도지사는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 등 동 사업으로 설치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운영토록 지도
 - * 관리조직(수리계)의 자체규약 : 농림축산식품부 시설51350-10543(2000.11.8)의 붙임 3과 과원기반정비사업 우수사례집(2000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원기반정비 시설물 유지관리계(수리계)구성 및 운영계획(시안)” 참조
- 수리계를 조직·운영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직접 농업기반시설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 건물, 비닐 하우스골조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 부동산의 중물(건물내 기계설비)	준공일	7년간	
- 주요기계·장비·자재	구입일	5년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분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 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 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시·도 및 시·군
 - 점검일정 : 분기별 1회 이상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적정성 등
- * 사업점검 등 사후관리는 FTA기금운용규정 제29조에 의거 기금수탁관리자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제 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IV 평가 및 환류

-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참조

1. 2019년도 사업수요조사

-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참조

2. 201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시행

- 연차사업과 당해연도 완료사업으로 구분 시행
 - 1년차(착수) : 사업계획 선정, 기본조사·설계, 공사발주 및 계약, 공사시행
 - 2년차(마무리) : 공사완료

(2) 사업담당부서

-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원예경영과)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시·도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과수생산·유통 관련과)
 - 시·군 : 과수 생산·유통 관련과(협조 : 토목 관련 부서)
- 기본조사자 : 한국농어촌공사(사업기획부)

(3) 사업시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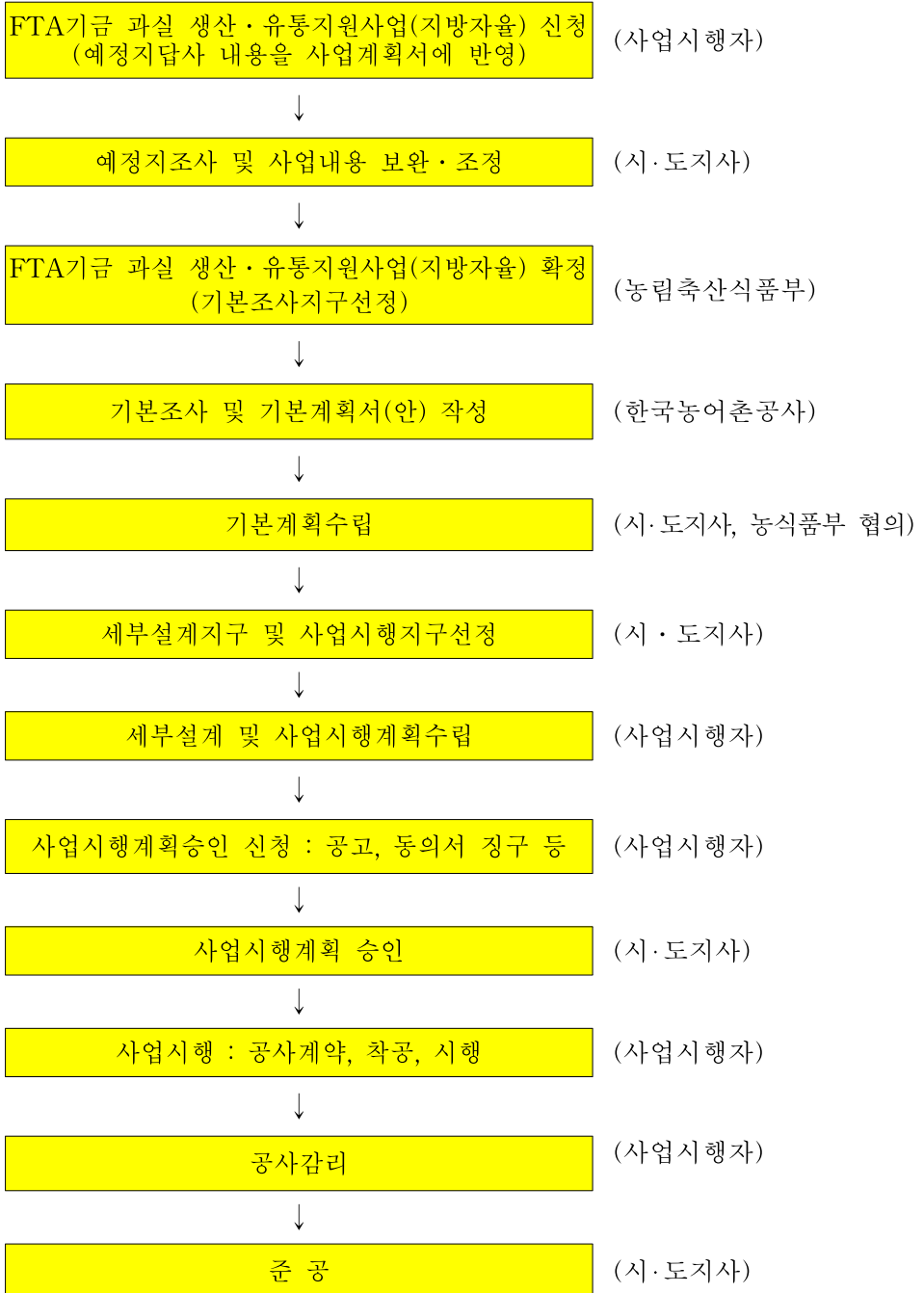
- 시장·군수, 한국농어촌공사
 - 주 관 개 용수원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양수장 등 시설 일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4) 사업 추진 절차

- 사업계획신청 → 예정지 조사(한국농어촌공사 지사 합동) → 기본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 세부설계지구 및 사업시행지구 선정 → 사업 시행계획 수립 → 사업시행계획 승인 → 공사발주 및 계약 → 공사시행 → 준공

<붙임>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추진 체계도>



※ 주 관개 용수원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양수장 등 시설일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추진일정표>

추진단계	주요내용	추진일정	관련기관	부속서류
1. 사업계획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대상지구 확정 	1월	농림축산식품부	
2. 기본계획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조사 및 기본 계획서(안) 작성 	5월	한국농어촌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계획(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계획 수립 	6월	시·도지사 (농식품부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계획
3. 지하수영향조사 (지하수법 제7조, 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수영향조사 보고서 작성 및 심의 	7월	시장·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수영향조사 보고서
4. 사업시행계획 수립 (농어촌정비법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7월	사업시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설계 도서
5. 사업시행계획공고 (농어촌정비법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문 작성 및 공고 동의서 징구 이의신청 접수 재정신청(이의신청이 있을시) 	8월 ※이의신청시 공고일로 부터 75일 소요	사업시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지매수조서 및 수혜면적조서 별도서식
6. 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 계획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 사업시행계획 승인 사업시행계획 승인 고시 	9월	사업시행자 신청 ⇒도지사 승인 ⇒사업시행자(통보)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도지사 승인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시행계획서 공정계획서 동의서 사본 공고문 사본 재정결과(신청이 있을 경우)
7. 공사발주 (국가계약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발주 요청 입찰공고 계약 	승인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정가격 입찰내역서 시방서 등 부속서류
6. 공사착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내역서 검토 공사착공 	즉시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예정지조사 결과

< ○ ○ 도 >

(금액 : 백만원)

우선순위	Code No	지구명	위치		수해면적			소요비		단지구분	개발유형	필요시설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정부	품목별생산단체조직여부	출하약정율	경사도	토지소유자	수해농가	주민호용도		
			시·군	읍·면	계	진흥	비진흥	총사업비	ha			수원공				진입로	경작로								용수로	정지
												저수지	양수장	관정	기타											
	합계				ha	ha	ha							m	m	m	ha	명		%	%	명	명	%		

- ※ ○ Code-No는 행정처리를 위한 고유번호임
- 수해면적은 용수공급 및 도로 등 기반정비사업의 혜택을 받는 실경지면적임
- 단지구분은 과수중 대표 재배품목을 기재
- 개발유형은 지역여건 및 재배품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3가지 유형으로 구분
 - I 유형(단순정비) : 용수개발, 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중 단일공중 사업
 - II 유형(복합정비) : 용수개발+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농로개설, 과원경지정리+용수개발
 - III 유형(종합정비) : 용수개발+농로개설+과원경지정리 사업
- 수원공에서 양수장 및 관정은 신규설치, 기설활용으로 구분하여 작성
- 비고란에는 연계 및 병행개발사업명, 기타 사업계획 검토시 중요한 사항 기재

○○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예정지조사결과

(Code No :)

□ 사업지구 현황

- 위 치 : 도 시 읍면 리
- 면 적 : ha(진흥 : , 비진흥)
- 토지소유자 수 : 명
- 경사도 : %
- 한수해 상황

(면적 : ha, 금액 : 백만원)

구 분	피해연도	피해면적	피해액	비고
○ 한 해				
○ 수 해				

○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지정 현황

품 목				
단 지 명				

○ 주요 재배품목

재배품목				
구성비율(%)				

○ 품목별 생산자 단체 조직 현황 :

○ 사업수혜농가들의 출하약정율 : % (수혜농가 명, 약정농가 명)

○ 현재 이용중인 용수공급시설현황

- 소형관정 : 개소(HP), 암반관정 : 개소(HP)
- 양 수 장 : 개소(HP × mm × 대)
- 저 수 지 :
- 보 :
- 기 타 :

□ 사업계획개요

○ 주요사업

- 수원

- 지하수 개발 : 암반관정 개소
- 지표수 개발 : 양수장 개소, 보설치, 계곡수 이용 등
- 기 개발된 시설 이용 : 암반관정 개소, 소형관정 개소
저수지, 양수장, 보 등으로 기재

· 작물재배 여건상 관개용수개발 불필요 : ha

- 도로정비 : m

· 진입도로 : m(기존도로 폭 : m), · 경작로 : m(기존도로 폭 m)

- 용수로 : m

- 정 지 : ha

○ 개발유형 :

○ 추정사업비 : 백만원(ha당 : 천원)

○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 부담 추정액

- 전기사용예상 기간 : 월 ~ 월 (개월)

-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 부담액 : 원(월평균 : 원)

□ 주민호응도

○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혜민이 부담하고, 수리계(유지관리조직)를 구성하여야 함을 알렸는지 여부 : 여, 부

○ 유지관리비에 대한 사전예치제 도입에 대한 주민호응도

- 찬성 : %, 반대 : %

○ 사업시행에 대한 주민호응도

- 찬성 : %, 반대 : %

병행 가능사업

○ 사업명 :

- 추진상황

○ 기타

사업시행상 문제점

사업시행예정자 의견

20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

○ ○ 한국농어촌공사 ○ ○ 지사장 (인)

※ 붙임(필수첨부자료) : 사업예정지 위치도(1 : 25,000) 및 사업대상 필지를 표시한 지적도 1부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결과 보고

< ○ ○ 도 >

(금액 : 백만원)

우 선 순 위	Code 1 No	지 구 명	위 치		수해면적			소 요 사업비		단 지 구 분	개 발 유 형	필 요 시 설					토 지 소 유 자	지 방 비 부 담 력
			시 · 군	읍 · 면	계	진 흥	비 진 흥	총 사업비	ha 당			수 원 공	관 정	진 입 로	경 작 로	용 수 로		
					ha	ha	ha		천원			개소	m	m	m	ha	명	

연 계 병 행 가 능 사 업				주 민 호 응 도	과 실 전 문 생 산 (수 출) 단 지 지 정 여 부	품 목 별 생 산 자 단 체 조 직 여 부	사 업 지 원 협 의 회 운 영 여 부	사 업 시 행 에 따 른 예 상 문 제 점	비 고
사 업 명	관 련 기 관	예 산 확 보 여 부	관 련 기 관 과 협 의 내 용						

< 작성요령 >

- 단 지 구 분 : 과수 중 사과, 배, 감귤 등 재배품목으로 기입
- 지 방 비 부 담 력 : 가능, 불가능으로 기입하고, 가능 시 지방비 부담비율을 기입
- 예 산 확 보 여 부 : 예산이 확보된 경우 예산액을 기입하고, 과원기반정비가 끝난 후 별도 추진하는 경우 그 시행연도를 기입
- 주 민 호 응 도 : 양호(90% 이상 동의), 보통(67% 이상 동의), 불량(67% 미만 동의) 등으로 기입
- 비 고란에는 과수산업육성대책, 원예시설현대화사업 등 연계사업 표기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승인 결과보고

< ○ ○ 도 >

(금액 : 백만원)

우선 순위	지구명	위 치		수혜 면적 ha	개발 유형	총사업비			착수년도			완공년도			승 인 연 월 일	비고
		시군	읍면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방비		
				ha												

○ 비고란에는 원예시설현대화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과 연계사업 지구는 연계사업명, 국고 차등 보조율 등을 표기

※ 기본계획과 수혜면적, 시행공종이 변경될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후 시행계획을 승인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입찰상황 보고

지 구 명	위 치		사업 시행 자	사업 량	총 사업 비	설 계 가 격 (A)	예 정 가 격 (B)	낙 찰 가 격 (C)	낙찰율 (%)		입 찰 일 자	입 찰 방 법	응 찰 회 사 수	낙찰자			계약사항			공 사 감 독 자	비 고	
	시 군	읍 면							C/A	C/B				소 재 지	회 사 명	대 표 자	계 약 일 자	착 공 일 자	준 공 일 자			

[별지 5호]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

< ○ ○ 도 >

(금액 : 백만원)

지구명	위 치		면적	총사업비	2007계획			주요공종	추진실적		사 업 자 시 행 자	비고
	시·군	읍·면			계	국 고	지방비		실형액	%		
			ha									

[별지 6]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준공결과 보고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준공결과 보고

○ ○ 도

지구명	위 치		수 혜 면 적	지 역 구 분		재 배 품 목				사 업 비(천원)			사 업 내 용				
	시· 군	읍· 면		진 흥	비 진 흥	사 과	배	감 귤	기 타	계	국고	지방 비	수 원 관 공 정 V	진 입 로	경 작 로	송 급 수 관	정 지
			ha	ha	ha	ha	ha	ha	ha				개소	m	m	m	ha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시설물 대장

코드번호 :	지구명 :	위 치 :	도 군 면 리	관리자 :
사 진				
<p>○ 주요 공사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 작 로 : km · 진 입 로 : 조 m(노폭 m, 포장 m) · 경 작 로 : 조 m(노폭 m, 포장 m) - 수 원 공 : 개소 · 관 정 : 공(구경 : mm, 평균심도 : m, 양수량 : m³/일) · 양 수 장 : Hp× mm× 대, 양수량 : m³/sec - 용 수 로 : 조 m(송수관로 m, 급수관로 m) - 과원경지정리 : ha <p>○ 공 사 기 간 : . . . ~ . . .</p> <p>○ 사 업 비 : 백만원(국고 , 지방비)</p> <p>○ 시 공 회 사 :</p> <p>○ 공 사 감 리 :</p> <p>○ 기타 특기사항</p>				

※ 관정시설 재원은 이면

(후 면)

관 정 시 설 재 원

구 분	단위	1번공	2번공	3번공	4번공	5번공
구 경	mm					
심 도	m					
채수가능량	m ³ /일					
양 수 량	m					
우물파이프	m					
우물유공관	m					
자 연 수 위	m					
안 정 수 위	m					
수중모터펌프	Hp					
제 품 명						
설 치 심 도	m					
양 수 장 옥	m ²					
저 수 조	m ³					
(재 질)						
송 수 관	m					
(재 질)						

00년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 계획

시도	시군	지구명	지원형	과종	지원적 (ha)	농가 수 (호)	일시	장소	예상 참석인원	시군 담당자		
										성명	연락처 (핸폰 번호)	이메일 주소

세부사업명	과수 생산유통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기존 APC 선별, 포장시설 지원		예산 (백만원)	1,800				
사업목적	○ 선별포장시설 등 상품화시설을 지원하여 상품성향상 및 부가가치제고							
사업 주요내용	○ 기존 APC 선별시설 등 증설보완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기존 운영중인 APC시설(증설 및 보완포함)에서 전처리,선별,후처리설비,제함기 등이 노후화되어 교체하고자 하는 2천톤이상의 과일전문 APC							
지원한도	○ 700백만원 이내/개소							
재원구성(%)	국고	30	지방비	30	용자	-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9,000	15,000	6,000	21,000			
	국 고	2,700	4,500	1,800	6,300			
	지방비	2,700	4,500	1,800	6,300			
	자부담	3,600	6,000	2,400	8,4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기주 서기관 김지현 주무관 강지원		044-201-2255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3.31.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기존APC선별, 포장시설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농협(품목, 지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과수발전계획의 참여조직 중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사업부지를 확보한 사업자
- 연간 선별물량을 2천톤~8천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규모화 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조직(설립기간이 1년 이상된 법인)
- 집하·선별·포장장 면적이 330m² 이상
- 기존 운영중인 APC 시설(증설 및 보완 포함)에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이 노후화되어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하고자 하는 조직
- 농업경영체가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우선선정 >

- * 과실전문APC 운영협의회에 참여하는 조직 우선선정
- * 수출전문조직(원예전문단지 지정) 우선선정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결속기, 봉합기, 제함기, 컨베이어, 경영지원시스템, ICT융복합 관련 시스템 등
- * 각 항목별 사업비 책정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단가)를 활용 하여 산출

4. 지원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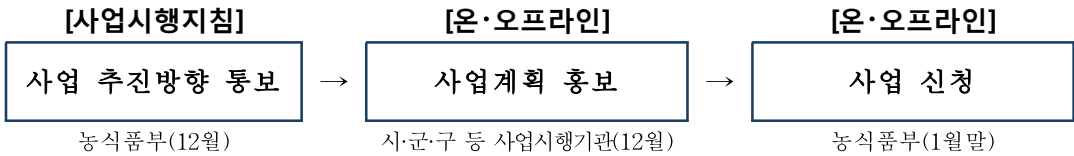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기간 : 1년

5. 지원한도액 기준

- 지원단가 : 700백만원 이내/개소
 -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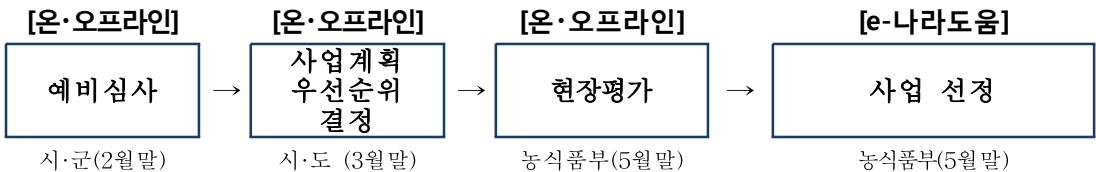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시·군에 제출(1월말)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

- 사업자(신청조직)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농정 관련 심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시·도에 제출(2월말)
 - 신청시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신청시 첨부물로 제출

시·도

- 시·도 과수산업발전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체평가기준으로 사업 계획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3월말)
- 시·도지사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별지 1~3 서식>
- *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평가항목별 증빙자료 등 포함 제출

<심사항목 외 시·도지사가 고려할 우선순위>

- ① 우선지원대상 사업자 : 통합마케팅 조직, 통합마케팅 참여조직, 전국과실전문 APC운영협의회 참여조직, 수출전문조직
- * 투자 효율성, 지원방향의 일관성, 중복투자 방지, 운영능력이 검증된 사업자를 선정
- ② 조직원의 결속도가 높고, 공동출하 등 유통사업 실적이 있으며, 경영장부(경영일지)의 기록 실적이 양호하고, 재무제표를 구비하고 있는 법인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세부심사·평가 절차(별첨)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되,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전문가에 의한 현장실사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선정(5월말)

세부 심사·평가절차

가.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대상 선정

나. 실무 사전검토

-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사업내용의 미비점,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 중복투자 여부 등

다. 검토결과 조치

-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사업은 심사제외
- 부분적으로 미흡한 과제는 보완요청
- 검토의견은 현장실사 평가 자료로 제공

다. 심사 및 평가

- 전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업계획별 평가위원이 현장실사 평가 실시
 - 평가위원 지정 및 평가기준 제시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단 구성 : 5명 내외로 팀 구성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 * 평균점수 : 평가위원별 합계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평가단의 종합의견은 사업비 심의, 최종사업계획 선정 시 반영
 - * 심사평가기준 : [별지 3호 서식] 참조

라. 사업비 심의·조정

- 단계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업규모·단가 등을 보완하는 등 사업비 조정

마. 사업계획 최종선정

- 평가결과 및 사업비 조정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사업계획 선정

<조건부 사업계획 선정>

-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미비점을 보완했을 경우 또는 보완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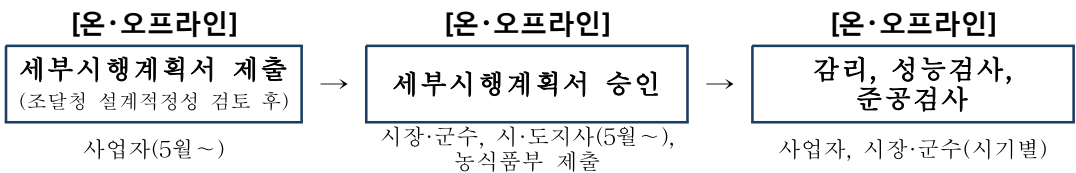
<조건부 자금지원>

- 사업계획 선정 시 제시된 사항을 이행했을 경우 자금배정

<사업 포기자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포기연도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세부계획수립》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시행계획서

(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 요청

* 사업계획 및 월별 공정계획 수립(월별 공정계획서식)

시·군

- 시장·군수는 승인 결과 및 월별 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시설공사로서 전기, 통신, 소방은 포함. 설계·감리비와 선별기 등 기계장비는 제외)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조달청에 설계 적정성 검토 요청(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포함)(재정사업관리규정 제53조의2)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할 수 있으며, 월별 공정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사업계획변경 절차》

시·도(시·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시
- 승인을 받은 세부시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축산식품부 보고)
- * 단, 세부시행계획 변경 승인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체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고, 사업대상자의 변경요청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감리》

- 지원대상 사업자는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감리업체(감독공무원)를 선정하고 감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성능검사》

- 선별시설 등은 공공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종합검정(기기의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를 검정)에 적합

판정된 모델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선별시설 전체에 대하여 전문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성능시험을 받아야 함(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3항 검정기준 참조)

- (설치 전) 종합검정 확인 → 선별기 설치 → (설치 후) 성능시험 → 검수 및 대금지급

* 투입, 세척, 포장시설도 종합검정에 적합판정된 모델 설치

- 주요 기계·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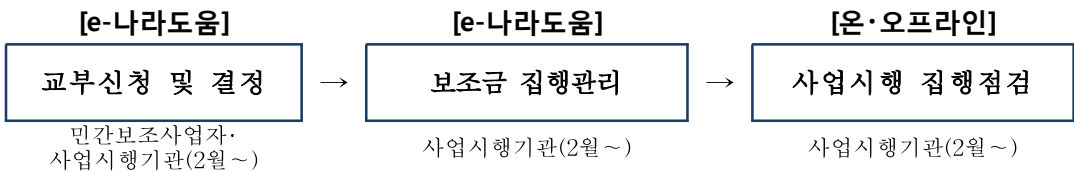
《준공검사》

- 준공검사는 기술직(기계직 등) 공무원이 직접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기타사항》

- 세부시설별 사업비 단가는 예시이므로 집행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제가격을 적용할 수 있음. 다만, 지역간·사업장간·유사 세부시설 등에 대한 객관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고려(단가 산출명세서 처부)하여야 함

4.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 계좌에 입금 후 우선 집행

- 다만,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예탁교부받은 경우 자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e나라도움 운용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함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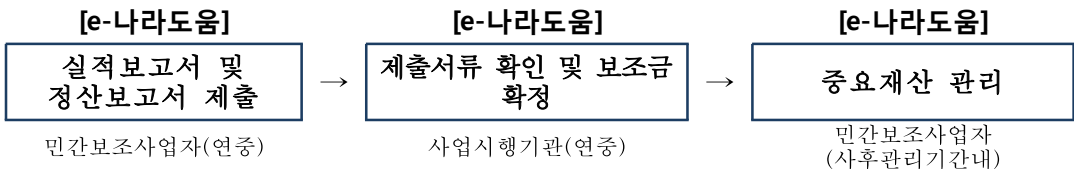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3조2제8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의 시기와 방법을 명시

< 자금배정단계 >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예탁교부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보완 요청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면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다만, 비닐 하우스골조는 부기등기 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식품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의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61조제3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제63조의4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
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법인 또는 공동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
여야 함
- 산지유통센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들의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

시·도(시·군)

- 지원되는 보조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조치(기본규정 제53조의3제2항)
 - 감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가능
- 시설물의 등기(법인 또는 공동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실시
하여야 함(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7조의2)
-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승인 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목적 외 사용금지
 - 유통일원화, 통합브랜드 등 통합마케팅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 사업자는 사후관리 해제 전까지 매년 등기부등본 1부를 발급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에 제출(6.30까지)
- 시장·군수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관리하여야 함
 - 매년 4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제출(또는 열람 및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거당 설정 등을 확인
하여야 함

-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승인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군을 달리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 건물, 비닐하우스골조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부동산의 중물(건물내 기계설비)	준공일	7년간	
- 주요기계·장비·자재	구입일	5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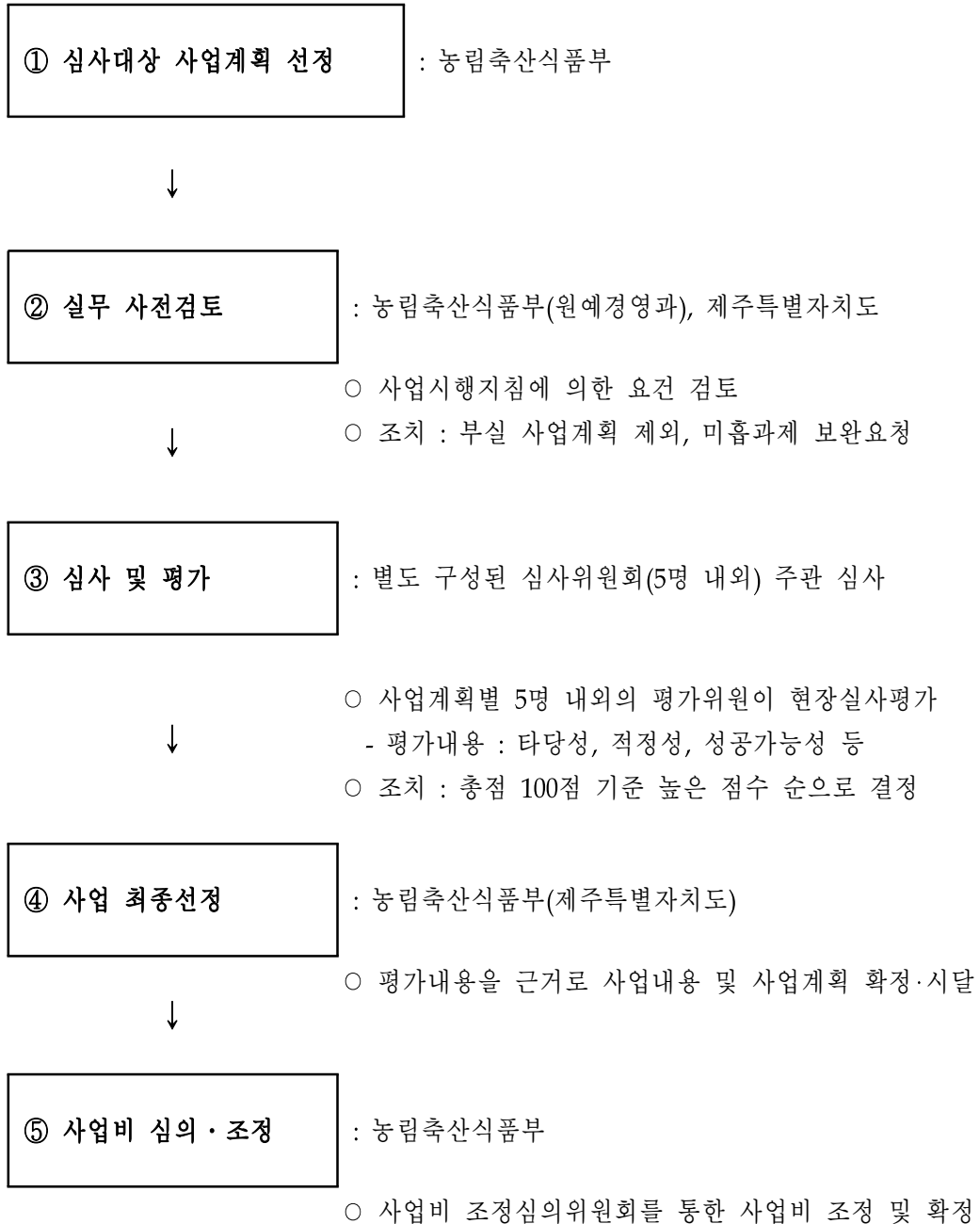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분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과수거점APC지침 준용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사업추진 지침 및 사업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일정
 - 점검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원대상 조직
 - 점검일정 : 연 4회 이상(분기별)
 - 점 검 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시·도(시·군)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비 집행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관리현황 등
 - 사업실적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사업자 선정 심사 절차 】



선별방식 선정 시 고려사항

유통시설에 설치할 선별기는 과종별 선별 항목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1. 당도 오차 0.5brix 이내
2. 산도오차 0.2%이내 (감귤 선별기에 한함)
 - 당도, 산도는 일회의 캘리브레이션으로 동일지역 동일 품종에 대해서 상당기간 상기오차 범위내를 재연하여야 함
 - 캘리브레이션은 품종별로 프로그램 등으로 신속히 전환 가능한 기종
3. 사과는 색깔별, 착색부위 비율별(착색패턴별) 선별이 가능한 기종(육안선별 수준)
4. 선별기 투입 및 이동 중 압상 및 상해가 없는 기종(사과, 배, 복숭아 등)
5. 표면의 흠과 상처 수준별 선별 및 내부의 병과(갈변, 심부병, 물배 등) 선별이 가능한 기종(사과는 밀병과 갈변 구분이 가능해야 함)
 - 상처과, 상해과의 수준별 정확한 선별(육안선별 수준)
6. 과형 및 중량 선별이 가능한 제품
7. 다양한 소포장이 가능한 제품(비닐팩, 망포장, 종이팩, 다양한 상자포장)
8. 상기조건을 충족하고, 병과, 흠과를 선별해내고, 당도, 과형, 착색, 무게에 따른 다양한 조합의 선별이 가능한 제품
9. 국제수준의 선별 능력을 가진 선별기

(부대사항)

1. 투입은 자동투입과 수동투입 선택 가능 제품
2. 세척 설비 선택 등
 - 물세척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는 제품 또는 진공흡입, 공기분사 등 물세척 이외의 방법으로 오물 제거가 가능한 제품
3. 선별시설은 품목간 호환성이 높아 효율성 제고 가능 제품 우선
4. 시설의 물량에 따라 연도별 분할 설치가 가능한 제품 우선
5. 비파괴 선별기의 도입으로 인한 속도저하가 최소화되는 기종
6. 감귤은 당도와 산도를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정밀 측정이 가능하면 선택
 - 당도와 산도에 대한 분석은 국내 농업관련 연구기관에 의뢰
7. A/S 조건 및 시간당 처리능력이 우수할 것
8. 기타 선별기 관련 표준시방서, 경영지원시스템 관련 내용 등은 과수거점APC건립지원사업 지침 준용

《붙임 3》

광센서 선과기 구입시설 기준단가 산출내역(예시)

□ 사과 기준단가 산출내역(프리트레이 방식 1조라인 기준)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천원)	금액(천원)
	합계					693,500
	소계					85,000
투입 설비	디파렛타이저 로봇	로봇암 방식	SET	1		60,000
	원물 컨테이너 이송라인		SET	1		16,500
	원물 중량확인 장치	전자식 로드셀	SET	1		5,000
	공 컨테이너 배출라인		SET	1		3,000
	공 컨테이너 배출 슈터		SET	1		500
	소계					125,100
세척 설비	오존살수 & 브러시 세척기	STS 재질	SET	1		20,000
	오존수 생성장치	1톤/시간	SET	1		20,000
	수조 승강라인	STS 재질	SET	1		5,000
	수조 호퍼	STS 재질	SET	1		15,000
	과일 컨테이너 공급라인		SET	1		6,000
	빈 컨테이너 배출라인		SET	1		5,000
	건조라인		SET	1		30,000
	전기제어 컨트롤러	PLC 타입	SET	1		10,000
	자외선 살균장치		SET	1		4,000
	세척사과 배출라인		SET	1		3,100
	회전 테이블	직경 1200mm	SET	2	2,500	5,000
물탱크(받침대 포함)	5톤	SET	1		2,000	
	소계					230,000
선별 선과 설비	전자식 중량 프리트레이 선별기(오토 웨이트 체커, 메인 컨트롤러, 빈트레이 회송라인, 육안 선별 컨베이어 등 포함)	10,800개/시간	SET	1		120,000
	비파괴 당도 센서		SET	1		80,000
	카메라 색상 센서		SET			30,000
	소계					188,400
포장 설비	부자재 선반	형광등 설치	SET	1		5,000
	박스포장 작업대		SET	30	200	6,000
	삼면 포장기		SET	1		28,000
	전자저울	75 kg	SET	30	450	13,500
	공 박스 적재라인		SET	2	6,000	12,000
	플렉시블 컨베이어		SET	1		700
	오픈박스 필름 부착기		SET	2	600	1,200
	완제품 박스 이송라인		SET	2	3,000	6,000
	전자동 제한기		SET	1		22,000
	자동 테이블기		SET	1		5,000
	라벨 부착기		SET	1		20,000
	과일 박스 이송라인		SET	2	15,000	30,000
	과일 박스 제어라인		SET	2	1,500	3,000
파렛트 래핑기		SET	1		10,000	
공 박스 공급라인		SET	2	13,000	26,000	
	소계					65,000
기타	컴프레샤, 에어배관	20 마력	SET	1		10,000
	에어세척장치	자동 검출식	SET	1		5,000
	실내 집진기	여과 집진식	SET	1		8,000
	리시버 탱크(유수분 제거필터)	500L(20A)	SET	1		2,000
	전기판넬(PCC, 배선 등)		식	1		40,000

* 상기 각 품목별 단가는 개별 항목에 대한 단가로 일괄입찰방식 발주시 총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으며, 각 품목별 단가 역시 제조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사과 기준단가 산출내역(킵 방식 1조라인 기준)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천원)	금액(천원)
	합계					619,800
	소계					85,000
투입 설비	디파렛타이저 로봇	로봇암 방식	SET	1		60,000
	원물 컨테이너 이송라인		SET	1		16,500
	원물 중량확인 장치	전자식 로드셀	SET	1		5,000
	공 컨테이너 배출라인		SET	1		3,000
	공 컨테이너 배출 슈터		SET	1		500
	소계					125,100
세척 설비	오존살수 & 브러시 세척기	STS 재질	SET	1		20,000
	오존수 생성장치	1톤/시간	SET	1		20,000
	수조 승강라인	STS 재질	SET	1		5,000
	수조 호퍼	STS 재질	SET	1		15,000
	과일 컨테이너 공급라인		SET	1		6,000
	빈 컨테이너 배출라인		SET	1		5,000
	건조라인		SET	1		30,000
	전기제어 컨트롤러	PLC 타입	SET	1		10,000
	자외선 살균장치		SET	1		4,000
	세척사과 배출라인		SET	1		3,100
	회전 테이블	직경 1200mm	SET	2	2,500	5,000
물탱크(받침대 포함)	5톤	SET	1		2,000	
	소계					176,000
선별 선과 설비	전자식 중량 킵 선별기	14,400개/시간	SET	1		50,000
	메인 컨트롤러	산업용 컴퓨터	SET	1		12,000
	비파괴 당도 센서		SET	1		80,000
	카메라 색상 센서		SET	1		30,000
	육안 선별 컨베이어		SET	1		4,000
	소계					168,700
포장 설비	부자재 선반	형광등 설치	SET	1		5,000
	박스포장 작업대		SET	30	200	6,000
	삼면 포장기		SET	1		28,000
	전자저울	75 kg	SET	30	450	13,500
	공 박스 적재라인		SET	1		6,000
	플렉시블 컨베이어		SET	1		700
	오픈박스 필름 부착기		SET	1		20,000
	완제품 박스 이송라인		SET	1		3,000
	전자동 제한기		SET	1		22,000
	자동 테이블핑기		SET	1		5,000
	라벨 부착기		SET	1		20,000
	과일 박스 이송라인		SET	1		15,000
	과일 박스 제어라인		SET	1		1,500
	파렛트 래핑기		SET	1		10,000
공 박스 공급라인		SET	1		13,000	
	소계					65,000
기타	콤프레샤, 에어배관	20 마력	SET	1		10,000
	에어세척장치	자동 검출식	SET	1		5,000
	실내 집진기	여과 집진식	SET	1		8,000
	리시버 탱크(유수분 제거필터)	500L(20A)	SET	1		2,000
	전기판넬(PCC, 배선 등)		식	1		40,000

* 상기 각 품목별 단가는 개별 항목에 대한 단가로 일괄입찰방식 발주시 총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으며, 각 품목별 단가 역시 제조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배 기준단가 산출내역(프리트레이 방식 1조라인 기준)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천원)	금액(천원)
	합계					562,900
	소계					85,000
투입설비	디파렛타이저 로봇	로봇암 방식	SET	1		60,000
	원물 컨테이너 이송라인		SET	1		16,500
	원물 중량확인 장치	전자식 로드셀	SET	1		5,000
	공 컨테이너 배출라인		SET	1		3,000
	공 컨테이너 배출 슈터		SET	1		500
	소계					52,500
세척설비	배 세척 컨베이어		SET	1		10,000
	배 에어세척 장치		SET	1		10,000
	이물질 실내집진 설비		SET	1		10,000
	비품 배출 컨베이어		SET	1		3,000
	비품 수집용 턴테이블		SET	1		2,500
	폐지 배출 슈터		SET	6	1,000	6,000
	폐지 & 꼭지 배출 컨베이어		SET	1		5,000
	화선지 포장 작업대		SET	10	300	3,000
	네트함		SET	1		3,000
	소계					200,000
선별선과설비	전자식 중량 프리트레이 선별기(오토웨이트 체커, 메인 컨트롤러, 빈트레이 회송라인, 육안 선별 컨베이어 등 포함)	10,800개/시간	SET	1		120,000
	비파괴 당도 센서		SET	1		80,000
	소계					160,400
포장설비	부자재 선반	형광등 설치	SET	1		5,000
	박스포장 작업대		SET	30	200	6,000
	전자저울	75 kg	SET	30	450	13,500
	공 박스 적재라인		SET	2	6,000	12,000
	플렉시블 컨베이어		SET	1		700
	오픈박스 필름 부착기		SET	2	600	1,200
	완제품 박스 이송라인		SET	2	3,000	6,000
	전자동 제한기		SET	1		22,000
	자동 테이블핑기		SET	1		5,000
	라벨 부착기		SET	1		20,000
	과일 박스 이송라인		SET	2	15,000	30,000
	과일 박스 제어라인		SET	2	1,500	3,000
	파렛트 래핑기		SET	1		10,000
	공 박스 공급라인		SET	2	13,000	26,000
	소계					65,000
기타	컴프레샤, 에어배관	20 마력	SET	1		10,000
	에어세척장치	자동 검출식	SET	1		5,000
	실내 집진기	여과 집진식	SET	1		8,000
	리시버 탱크(유수분 제거필터)	500L(20A)	SET	1		2,000
	전기판넬(PCC, 배선 등)		식	1		40,000

* 상기 각 품목별 단가는 개별 항목에 대한 단가로 일괄입찰방식 발주시 총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으며, 각 품목별 단가 역시 제조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배 기준단가 산출내역(캡 방식 1조라인 기준)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천원)	금액(천원)
	합계					489,200
	소계					85,000
투입 설비	디파렛타이저 로봇	로봇암 방식	SET	1		60,000
	원물 컨테이너 이송라인		SET	1		16,500
	원물 중량확인 장치	전자식 로드셀	SET	1		5,000
	공 컨테이너 배출 라인		SET	1		3,000
	공 컨테이너 배출 슈터		SET	1		500
	소계					52,500
세척 설비	배 세척 컨베이어		SET	1		10,000
	배 에어세척 장치		SET	1		10,000
	이물질 실내집진 설비		SET	1		10,000
	비품 배출 컨베이어		SET	1		3,000
	비품 수집용 턴테이블		SET	1		2,500
	폐지 배출 슈터		SET	6	1,000	6,000
	폐지 & 꼭지 배출 컨베이어		SET	1		5,000
	화선지 포장 작업대		SET	10	300	3,000
	네트함		SET	1		3,000
	소계					146,000
선별 선과 설비	전자식 중량 캡 선별기	14,400개/시간	SET	1		50,000
	메인 컨트롤러	산업용 컴퓨터	SET	1		12,000
	비파괴 당도 센서		SET	1		80,000
	육안 선별 컨베이어		SET	1		4,000
	소계					140,700
포장 설비	부자재 선반	형광등 설치	SET	1		5,000
	박스포장 작업대		SET	30	200	6,000
	전자저울	75 kg	SET	30	450	13,500
	공 박스 적재라인		SET	1		6,000
	플렉시블 컨베이어		SET	1		700
	오픈박스 필름 부착기		SET	1		20,000
	완제품 박스 이송라인		SET	1		3,000
	전자동 제한기		SET	1		22,000
	자동 테이블기		SET	1		5,000
	라벨 부착기		SET	1		20,000
	과일 박스 이송라인		SET	1		15,000
	과일 박스 제어라인		SET	1		1,500
	파렛트 래핑기		SET	1		10,000
공 박스 공급라인		SET	1		13,000	
	소계					65,000
기타	컴프레샤, 에어배관	20 마력	SET	1		10,000
	에어세척장치	자동 검출식	SET	1		5,000
	실내 집진기	여과 집진식	SET	1		8,000
	리시버 탱크(유수분 제거필터)	500L(20A)	SET	1		2,000
	전기판넬(PCC, 배선 등)		식	1		40,000

* 상기 각 품목별 단가는 개별 항목에 대한 단가로 일괄입찰방식 발주시 총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으며, 각 품목별 단가 역시 제조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단체명) :

2. 현 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나.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확보 현황

계	직급		

다. 출자 현황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생산자단체와 일반 유통업체가 공동투자한 법인의 경우 투자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라.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년도	품 목	출하량(톤)				품질인증 (톤)	상표명	주요출하처
		계	수탁	매취	기타 (수출)			
	계 (억원)							
	계 (억원)							

(주) - 상표명 : ○○감귤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마. 통합마케팅조직 출하실적

통합마케팅 조직명	전년도 출하액(억원) (A)	통합마케팅조직 출하실적(B)	출하비율 (B/A)
계			

바. 공동유통시설 보유현황

집하시설	선별(과)시 설	저온저장시설	일반창고	예냉시설	선별(과)기	기타공동 시설 및장비
동 ㎡ ()	동 ㎡ ()	동 ㎡ ()	동 ㎡ ()	동 ㎡ ()	조 ()	()

(주) ()안에는 유통시설 처리능력(일시저장능력, 1일 처리능력)을 기재

사. 해당 지자체 기존시설 보유현황

* 현황에 포함할 산지유통센터는 농산물APC(광특회계), 과수거점APC, 지자체 자체건립 APC가 해당(과실이 주 취급품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

지원연도	지원대상 (지원조직명)	사업명	총사업비 (보조)	시설규모	위치	취급품목· 처리물량
			()	집하·선별장 ㎡ 저온저장고 ㎡	○○시·군 ○○읍·면	사과 톤, 배 톤 등

3. 사업추진 필요성 및 효과

가. 처리시설 : 설치년도 노후화, 해당 지자체 자체보유 기존시설 중복성 등 분석

○

나. 처리물량 : 관내(조합원) 생산량 대비 처리 물량 부족 등 분석

○

다. 사업추진 시 기대효과 : 가동률 증대, 처리물량 확대, 수익성 증대 등 기대효과 작성

○

4. 시설계획

가. 시설설치계획

- 총사업비(생산자조직)

(단위:백만원)

구 분	계(100%)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계)				
- 장 비 등				

- 시설 설치계획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처리능력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 (설치년도)	비 고 (제작회사)
○ 선별시설 - 선별기 - 포장기 - 컨베어 · ·	조 대 대	천원	백만원	처리능력 /시간 "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 부지확보 : 해당 있는 경우
- 토목설계 : 해당 있는 경우
- 건축설계 : 해당 있는 경우
- 시설장비 설치 :
- 착 공 :
- 준 공 :

5. 사업계획

가. 사업물량 확보

사업 품목	지역 생산기반		조직원 생산기반			사업물량(당해년도)			
	면적	물량	조직 원수	면적	물량	계 (A+B)	물량 확보 계획		
							수 탁 (A)	매 취	
								물량(B)	금액
	ha	톤	명	ha	톤	톤	톤	톤	천원

나. 사업물량 처리

사 업 품 목	사 업 물 량	사 업 기 간	출하처리비율(%)			선별비율(%)		저온창고평균 보관물량/일
			시 장 출 하	직공급 (납품)	기 타	기 계 선 별	수작업	

(주) ○ 시장출하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터, 유사시장 등 포함

○ 직공급(납품)에는 대형슈퍼, 백화점 등 유통업체

다.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1) APC시설 설치자금 계획

○ 지방비 확보 계획 : 시·도(시·군) 추정시기 명시

○ 자부담 확보 계획 : 이사회·총회 승인, 출차현황 등

(단위 : 천원)

운 용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부지매입비		○ 자부담	
○ 설치사업비		- 기존출자액	
		- 신규출자액	
		○ 보조금	
		○ 기타	

(주) 부지의 경우 법인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만 기재

2) APC 운영자금(원료조달 등)확보계획

(단위 : 천원)

운 용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매취자금 ○ 출하선도금 ○ 계약재배자금 ○ 운영자금 ○ 관리비 ○ 기타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라. 손익 추정

(단위 : 천원)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계		
○ 매출액 - 매취판매액 - 선별포장수입 ○ 기타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 관리비		

마. 사업기반 강화계획

-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출하처 확보 및 개발 방안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6. 기 타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
- 연 도 :
- 사업대상품목 :
- 사업비(예산기준)

계	사 업 비 (백만원)			
	국고보조	국고용자	지방비	자부담

- 사업추진내용

내 용	규 모	처리능력	비 고

○ 기타 특기사항

[별지 2호 서식]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자 명세서

우 선 순 위	신 청 자	시 군	주 요 시 설					사 업 비	주 요 품 목	최 초 시 년
			비 파 괴 당 도 기	선 별 기	검 査 선 별 포 장 장 소	00	00			
			m ²	m ²	m ³	m ²	조	천원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심사 및 평가기준표(안)

평가대상 :

평가위원 :

(서명)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등 급					평점
		A	B	C	D	E	
1. 사업물량 확보여건	사업물량 확보여건이 양호한가?	5	4	3	2	1	
2. 사업비 확보 계획	사업 신청조직의 자부담 조달이 가능한가?	10	8	6	4	2	
3. 지자체와의 정책연계성	지자체 차원의 시책, 예산지원 등 행정기관 시책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향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10	8	6	4	2	
4. 원물확보방안	원물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있는가?	10	8	6	4	2	
5. 연중 가동체계구축 방안	연간 가동(8개월 이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가?	5	4	3	2	1	
6. 시설의 적절성	처리목표 물량의 산정, 적정시설의 설치, 처리공정의 적정성, 위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였는가?	5	4	3	2	1	
	증축·보완이 아닌 기존 운영중인 APC 시설이 노후화되어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설치 공사인가?	5	4	3	2	1	
7. 유사시설과의 경합유무 및 기존시설의 활용 적절성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및 기존시설의 활용가능성(거점APC와의 계열화 등) 등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5	4	3	2	1	
8. 품질혁신 및 조직화	고품질 생산기술의 향상 및 평준화를 위한 기술 지원, 교육 등의 수단과 계획이 있는가?	5	4	3	2	1	
	농업인의 참여유도, 조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있는가 ?						
9.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건전한 재무구조 등으로 운영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가? 공동계산 실적·경험이 많고, 계획이 달성 가능한가? 전문CEO와 독립사업부서 등 전문경영체제를 구축하고, 독립채산제 도입이 가능한가?	5	4	3	2	1	
10. 마케팅 전략	일관된 품질관리로 공동브랜드화, 공동계산제 등의 상품화 계획 및 유통전략이 실현 가능한가?	5	4	3	2	1	
11. 전문인력 확보여부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5	4	3	2	1	
12. 운영주체 사업실적	전년도 사업실적 × 10점 / 30억원	10	8	6	4	2	
13. 통합마케팅 참여실적	전년도 취급액 중 통합마케팅 출하실적 - 30% 이상, 20%, 10, 10이하, 없음	10	8	6	4	2	
14. 종합평가	평가항목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	5	4	3	2	1	
합 계		기본점수 계(100점)					
※ 가점부여 ○ 전국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회원조직(5점) ○ 원예전문생산단지(수출조직) (5점)		가점					
		총점 (기본점수+가점)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1. 사업물량 확보여건	
2. 사업비 확보 계획	
3. 지자체와의 정책연계성	
4. 원물확보방안	
5. 연중 가동체계구축 방안	
6. 시설의 적절성	
7. 유사시설과의 경합유무 및 기존시설의 활용 적절성	
8. 품질혁신 및 조직화	
9.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10. 마케팅 전략	
11. 전문인력 확보여부	
12. 운영주체 사업실적	
13. 통합마케팅 추진실적	
14. 종합평가	
<p style="text-align: center;"><u>개별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른 결과조치</u></p> <p><input type="checkbox"/>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점수가 80점 미만으로 평가시 선정 제외 ※ 평균점수 산출 : 평가위원별 합계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p> <p><input type="checkbox"/>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최종 결정</p>	

[별지 4호 서식]

○○○○년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재(운영예정자) 심사결과

순위 (평점)	신청자	시군	주요 시설										사업비		주요 품목	비고
			비과과 당도기	선별기	예냉고	저온 저장고	예냉저온 겸용	집하선별 포장장	사무실	냉장 탑차	기타	신청액	조정액			
1			m	m	m	m	m	대	대	조	조	천원	천원			
2																
3																

[별지 5호 서식]

○○○○년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월별 공정계획서(예시)

사업자 명칭 :

사업장 소재지 : 시

공종	구분	월 별 공 정 계 획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착 공 전													
착 공 후													

세부사업명	과수 생산유통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꽃가루생산단지조성		예산 (백만원)	363				
사업목적	○ 과수인공꽃가루단지를 조성하여 고품질 국산꽃가루 생산							
사업 주요내용	○ 채취단지기반조성, 꽃가루 채취 및 발아율 검증장비 구입, 관리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확보가 가능한 지자체, 농협, 농업법인등							
지원한도	○ 725백만원(국비 362.5백만원 이내, 5ha/1개소 기준)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30	융자	-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5,074	725	725	2,175			
	국 고	2,537	362.5	362.5	1,087.5			
	지방비	1,667	217.5	217.5	652.5			
	자부담	870	145	145	43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기주 서기관 김지현 주무관 강지원		044-201-2255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31.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꽃가루생산단지조성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농협(품목,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자격 및 요건

-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이하 “꽃가루채취단지”라 함)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확보가 가능한 시·도 또는 시·군(이하 “지자체”라 함), 농협, 농업법인 등
 - 사과·배 주산지 농협(품목·지역)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지원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이어야 함.

나. 지원제외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농업법인
- 농림사업 및 농업관련 지원사업 추진 중 사업부실, 보조금 부당수령, 기타 문제발생 등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농업법인 및 관련자

3. 지원대상

가. 지원내역

- 기반조성 : 수목제거·정지작업, 퇴비구입·살포, 관정개발, 관수·관비시설, 배수 시설, 묘목구입·식재, 지주시설, 전기시설 등
 - 농로개설, 농기계(트랙터, 스피드스프레이어, 관리기 등) 등은 지원제외
- 꽃가루 채취장비 : 약채취기, 약정전기, 개약기, 화분정전기, 화분냉동고, 향온향습기, 생물현미경, 컴퓨터, 기타 실험용 집기 등 꽃가루 채취 및 검증, 제조에 필요한 장비
- 건축비 : 꽃가루 채취시설 및 관리시설 등

나.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꽃가루채취단지조성 완료 후 10년이상 꽃가루를 생산·공급
-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건물) 준공일로부터 10년, (부동산의 중물) 준공일로부터 7년, (부동산의 중물이 아닌 기계·장비) 구입일로부터 5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되는 자금은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시설 설치 및 기계·장비류(기자재) 구입을 위한 용도로 사용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지자체 추진사업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민간(농협, 농업법인 등) 추진사업 : 국고보조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사업의무량 : 꽃가루 채취단지조성 면적이 1.0ha 이상이어야 함.
- 사업자는 사업완료일로부터 10년 이상 꽃가루를 생산·공급하여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가 : 725백만원(국비 362.5백만원 이내, 5ha/1개소 기준)
 - 개소당 사업비가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추진

《 시설설치 지원기준(예시) 》

- 기반시설 조성단가(1ha 기준)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합 계						76,428
기반시설 및 묘목식재	수목채거	굴삭기	일	8	400	3,200
		기술인부	인	30	150	4,500
	정지작업	트랙터	일	3	150	450
	관수관비시설	스프링쿨러	식	1	9,000	9,000
	배수시설	400m	식	1	9,300	9,300
	지주시설	Y자형	식	1	25,348	25,348
	퇴비구입	20kg	포	2,000	3	6,000
	퇴비살포	일반인부	인	12	70	840
	묘목구입	1년생	주	500	10	10,000
	재식비용	일반인부	인	12	70	840
부 가 세		10%				6,950

* 꽃가루 생산량(1ha) : 50kg(본답 380ha 인공수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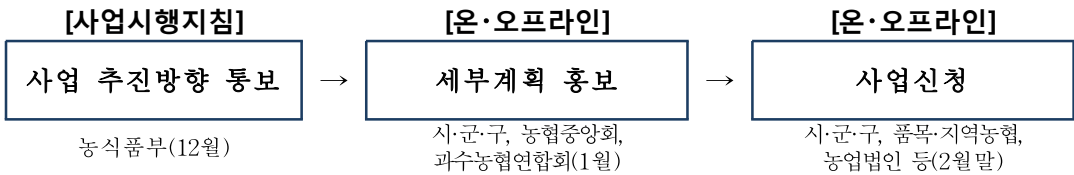
○ 시설·장비 기준단가(개소/5ha 기준)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천 원)	금 액 (천 원)
합 계						342,670
꽃가루 채취 및 검증장비	약채취기	L95×B50×H84	대	15	1,500	22,500
	약정전기	L60×B30×H30	대	15	1,000	15,000
	개 약 기	500ET	대	50	1,400	70,000
	화분정전기	L24×B34×H47	대	5	600	3,000
	전자저울		대	2	300	600
	화분냉동고	L80×B70×H165	대	2	3,200	6,400
	항온항습기	L75×B59×H40	대	1	2,200	2,200
	생물현미경		대	1	2,500	2,500
	부수장비	기 타	종	20	50	1,000
	컴 퓨 터		대	2	1,500	3,000
	테 이 블		조	2	300	600
	수 납 장		조	3	300	900
	기타집기		조	1	2,000	2,000
	부 가 세	10%				12,970
소 계						142,670
관리 및 검증시설	건 축 비	165m ²	3.3m ²	50	4,000	200,000
	소 계					

* 기반시설 조성 및 시설·장비 기준단가는 예시이며, 설치규모, 설치내역 등에 따라 단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체 견적 등을 통하여 실제 소요비용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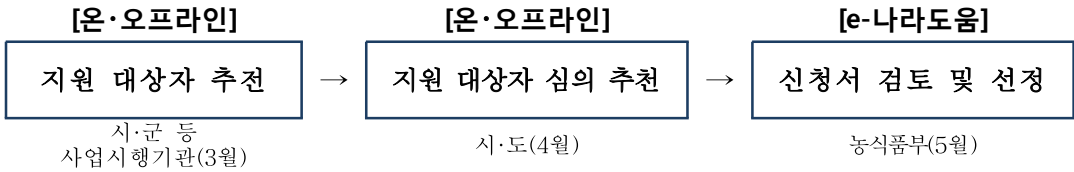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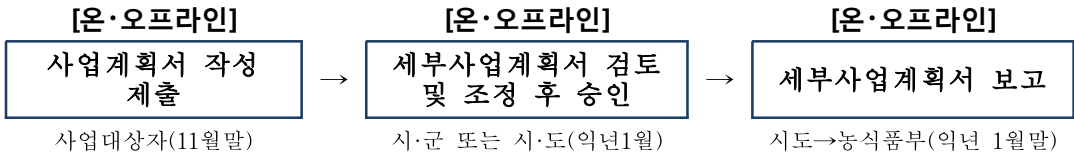
- 사업신청서 : 별지 서식 참조(농업인 개인은 사업대상자 아님)
 - * '19년도 사업 신청은 '18.12월말까지이며, 선정은 1월 중 적격자 선정 예정
- 시장·군수는 관내 농협·농업법인(이하 “사업자”라 함) 등에 사업내용 홍보(1월말)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 또는 사업자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부지 확보 관련서류 등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2월말)
 - 시장·군수는 부지확보여부 및 해당부지의 관계법령상 저촉여부 등에 대해 철저 확인
 - * 시·도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확인

2. 사업자 선정단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사업자)로부터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4월말)
- 농식품부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업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시·도에 통보(5월말)
 - 사업대상지역 현장실사 및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 선정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제출(11월말)
 - 사업신청시 제출한 계획서에 월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
 - 꽃가루채취용 품종은 「과종별 권장 품종」 등 우선 적용 : 붙임(참고자료)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세부사업시행계획서를 검토·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익년 1월)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세부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 착수

<입찰방식>

- 보조사업의 규모가 2억원 이상(물품 및 용역업체는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자체·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을 하거나 보조사업자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업체 선정(기본규정 제53조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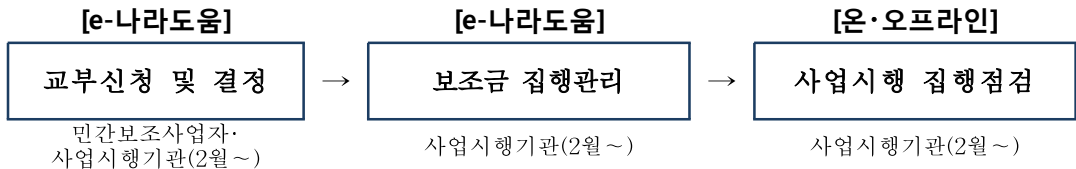
<감리>

- 지원대상 사업자는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감리업체(감독공무원)를 선정하고 감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 사업계획 변경절차 》

-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시설·장비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가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 기관(시·도 또는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 기관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 단, 지원단가 총액을 30%이상 초과 변경할 경우 농식품부에 사전승인 후 변경집행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함

4.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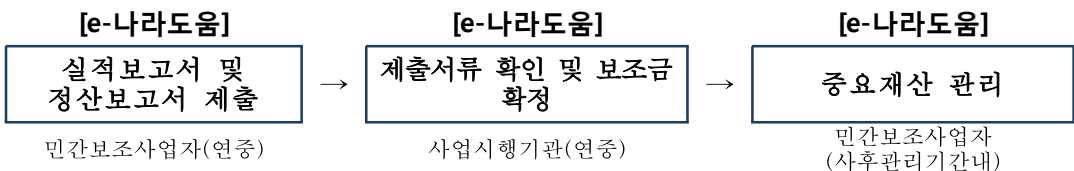
- 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 계좌에 입금 후 우선 집행
 - 다만,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예탁교부받은 경우 자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e나라도움 운용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 업무대행자를 통한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등록
-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채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자금배정>

- 농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사업 진척도에 따라 분기별 사업비를 농식품부에 요청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한 후 공사실적에 따라 보조금 집행
-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되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으로 충당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름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정산보고서 검증 필요시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 제출 가능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시정·보완 요청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 등록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다만, 비닐하우스골조는 부기등기 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 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61조제3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제63조의4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이행점검단계 >

○ 사업비 집행단계 점검

- 집행점검 : 사업추진 실적 및 실집행실적 점검(분기 1회)
(시·군 또는 시·도가 점검 → 농식품부로 집행실적 제출)
 - *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 현장점검 : 8월 이전 기간을 정하여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점검

< 사후관리단계 >

○ 사업점검 시기, 방법 및 점검항목

- 방 법 : 연1회(1월31일) 운영실적보고서 제출(시·도 → 농식품부)
 - * 보조시설 관리대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연 3회 이상 사업 점검
- 점검항목 : 생산 및 공급실적, 중요재산 현황 및 관리, 사업추진효과 등

○ 중요재산 사후관리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실시하여야 함(농업경영체육성법 제7조의2)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완료 후 10년이상 꽃가루를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사업추진 실적(생산·공급실적)을 매년 8월말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조성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관리 책임 등)에 따라 사업 관리 절차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 대장을 게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실시하여야 함(농어업경영체 육성법 제7조의2) * 비닐하우스골조는 제외

《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 》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 건물, 비닐하우스골조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부동산의 중물(건물내 기계설비)	준공일	7년간	
- 주요기계·장비·자재	구입일	5년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분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

《 제재 및 처벌내용 》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기본규정 제63조제1항(지원의 제한)에 따라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IV 평가 및 환류

- 사업평가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에서 농림축산사업 성과평가 실시
 - * 성과지표 : 꽃가루채취단지 조성면적을 기준으로 전년도 추진성과를 평가
- 환류 : 농림축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반영 및 제도개선 사항 환류

V 201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9년도 사업 수요조사

- 실시방법 및 시기 : 공문시행(농식품부 → 시·도지사, '18.12)
 - 제출방법 : 첨부물 없이 신청서만 제출

2. 201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
- 제출기한 : 사업대상자('19.2) → 시장·군수('19.3) → 시·도지사('19.4)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신청자격 : '18년도 신청자격과 동일(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별지 서식]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사업 신청서

신청자	단체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설립년도			
	주소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신청 내역	생산과종(품종)	“예시” 배꽃가루(장십랑)	조성면적	ha	
	단지조성지				
	사업비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기반시설·묘목식재		꽃가루 채취·검증장비	
관리·검증시설		기타			
<p>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top: 20px;">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p>					
<p>첨부서류 : 1. 세부사업계획서 2. 법인등록증(농업법인에 한함)</p>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꽃가루 채취단지조성 세부사업 계획서

1. 사업계획

현황

- 사업지역(주소) :
- 조성면적 :
- 생산과종 및 품종 :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업비
계					
기 반 조 성	소 계				
	○○○○○				
	○○○○○				
장 비 구 입	소 계				
	○○○○○				
	○○○○○				
	○○○○○				
관 리 시 설	소 계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

부지확보 계획(부지가 확보된 경우 관련 근거서류 첨부)

-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 ”로 표시

2. 꽃가루 생산 · 공급계획

생산계획

- 연도별 생산계획량
- 채취단지 확대여부
-

공급계획

- 꽃가루를 농가에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
 - “예시” : 사업자가 농협(품목 · 지역) 또는 작목반 등과 장기 공급MOU를 체결하여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안 등
- 꽃가루 품질보증 방안 등

채취단지 관리 및 운영계획

- 채취단지 관리 · 운영계획
- 운영전담자 배치계획
-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실천방안 등

-
-

[첨부서류 2]

꽃가루채취단지조성 사업신청 근거자료 제출 현황

담당자: (소속)

(성명)

(☎)044-201-0000

1. 법인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별첨)

* 설립후 법인 운영실적 1년, 출자액 1억, 조합원 5인 이상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별첨)

3. 법인 통장사본 1부(별첨)

* 자부담 능력 확인용 통장 예금자명 표지, 잔고 페이지 2면

4. 부지확보 근거서류(별첨)

* 토지대장, 장기임대 계약서 등

5. 사업참여 제한 여부

- 농림사업 및 농업관련 지원사업 중 사업부실, 보조금 부당수령, 기타 문제발생 여부 확인

신청자			사업참여 제한 여부	비고
시도(시군)	단체명	대표자		
	000영농조합법인	000	'10년 00지원사업 보조금 부당수령	'00년까지 지원제한
	△△영농조합법인	△△△	해당없음	

【참고자료】

□ 꽃가루 채취단지 과종별 권장 품종

○ 사과 : 후지(S₁S₉)와 자가불화합 유전자형이 중복되지 않은 품종
 이나 수분수용 꽃사과 품종이 가장 좋음

적합품종		부적합품종
자가불화합 유전자 중복 없음	자가불화합 유전자 1가지 중복	
쓰가루, 홍금, 아리수, 그린볼, 갈라	홍로, 루비에스, 썸머킹, 피크닉	감홍, 알프스오토메, 여홍, 화랑, 후지조숙계(히로사키, 홍장군, 료카, 나리나), 후지 착색계(키쿠 8, 미시마, 미야마, 후부락스)

* 꽃사과용 품종 : 만추리안, 메이폴, 텅커벨, 데코벨, 골든벨, 로즈벨 등

○ 배 : 신고(S₃S₉)와 자가불화합 유전자형이 중복되지 않은 품종

적합품종		부적합품종	
자가불화합 유전자 중복 없음	자가불화합 유전자 1가지 중복	자가불화합 유전자 중복	꽃가루 없는 품종
신수, 행수, 추황배, 금춘추, 만황, 만삼길	장십랑, 창조, 슈퍼골드, 풍수, 화산, 만수, 원황, 만풍	설원	한아름, 조이스킨, 황금배, 신화, 그린시스, 영산배

세부사업명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신재생에너지시설, 에너지절감시설		예산 (백만원)	41,669				
사업목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절감자재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지중열 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목재펠릿난방기)과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공기열냉난방시설 등) 설치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4조(시책과 장려 등)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6조(폐열의 이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자격 및 요건	○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과수류·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또는 시·군 자치구 ○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지열 및 폐열에 한함)							
지원한도	○ 공기열 냉난방시설 : 농작물 재배온실 1,000㎡이상 30,000㎡ 미만 ○ 그 외 시설 : 총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재원구성(%)	국고	20~60	지방비	20~30	용자	10~30	자부담	10~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18,757	116,550	103,190	309,570			
	국 고	35,984	33,952	30,304	90,912			
	지방비	32,001	31,927	28,053	84,159			
	용 자	28,490	28,439	24,789	74,367			
	자부담	22,281	22,232	20,044	60,132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기주		044-201-2251		
				사무관 박혜민		044-201-2256		
한국농어촌공사		첨단기술사업처		처 장 서정호		061-338-5651		
				부 장 심길웅		061-338-5701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8.30.일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재배시설에서 채소·화훼·과수류·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신규 온실 설치 예정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서 또는 정부, 지자체, 농협 등이 지원하는 온실 신개축 지원사업(보조·융자) 대상자 선정 확인서 등 첨부
- 지열·폐열 냉난방시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
 - 지자체가 농업인의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운영하는 생산시설로 제한
 - * 농업인과 결합되는 채소·화훼류 등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지열 및 폐열에 한함)
- 시설포도·감귤 등 과수품목 기존('12.3.15 이전 조성 시설) 가온시설 교체 농업인·농업법인
-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설치된 지열 냉난방시설을 사용 중인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지열 냉난방시설 개보수에 한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총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지원 제외대상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결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조합공동사업법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우선 지원(평가 시 가점 부여)
 - 시설원에 ICT 융복합 확산사업 동시 추진
 - 국산품종으로 생산·수출, 태풍·화재 등 피해(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의무자조금단체가 결성된 품목에 한함)
 - 시·도지사 지정 “색깔있는 마을”이 포함된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 농식품 인증(GAP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등), 저탄소농축산물인증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지원요건

<공통사항>

- 냉난방시설 설치 시 반드시 기존 난방시설을 존치 또는 보조난방시설을 설치하여 정전 등으로 인한 시스템 가동 중단 및 기온 급강하 등에 따른 피해 사전 예방 (보조난방시설은 지원 불가)
- 시설물 화재보험(공제)에 가입하여 화재·낙뢰 등 피해에 대비
- 확보 부지(규모·위치 등), 고정식 재배시설 규모·단열기준 등이 사업추진에 적합한지 여부는 한국농어촌공사 현장조사 시 확인

가. 사업부지 확보

- 지열(개보수 포함)·지중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설치 부지
 -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10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사업신청자는 소음·진동 등 주변 환경 및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는 토지를 사전에 확보(매입 또는 임대) 완료
 - * 토지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 시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시 수평밀폐형은 온실 재배면적의 160% 이상, 수직 밀폐형과 수직개방형(SCW)은 온실 재배면적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사업신청자가 사전에 확보 완료
 - 별도의 매설 공간이 없는 온실은 온실 내부 굴착장비가 투입되어 지열교환용 파이프 매설작업이 가능해야 함 * 작물 재배·수확기간 조정 가능여부 확인

- 폐열 재이용시설 설치 시 사업신청자는 발전소 온배수 등 폐열 이송관로 부지 등을 사전에 확보 완료

< 지원 제외대상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 개발될 예정인 지역 내 토지(“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반드시 확인)

나. 고정식 재배시설 규모

- 지열·지중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 농작물 재배온실 : 면적 1,000㎡ 이상(지중열 냉난방시설은 5,000㎡ 이하)
 - * 단, 단동형 파이프식 온실은 면적이 0.3ha 이상이며, 내재해형 기준을 충족하고,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변여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만 가능
 - 버섯, 인삼 등을 재배하는 원예특작시설 : 연면적 600㎡ 이상
 - 무창계사 : 30천 마리 이상 사육시설
 - 무창오리사 : 5천 마리 이상 사육시설
 - 무창분만돈사, 무창임신돈사 : 1천 마리 이상 사육 사업장
- 공기열 냉난방시설
 - 농업인·농업법인별 농작물 재배온실 면적 : 1,000㎡ ~ 30,000㎡
 - * 단, 지원설비의 용량은 최대 20,000㎡ 기준 용량 이하로 제한

다. 고정식 재배시설 단열기준(지열·지중열·공기열·폐열 시설)

- 농작물 재배온실 (아래 중 어느 하나의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
 - 온실의 외부 피복재는 외피복 1중, 내부 피복재는 다겹(2중) 이상
 - 2중 보온커튼과 수막시설 설치
- 패널구조형 원예특작시설
 - 무창계사·돈사·오리사, 버섯재배사 등 원예특작시설의 패널 구조는 최소 두께 50mm 이상(측벽 및 천장 포함) 또는 동등한 단열성능(열관류율) 이상

라. 재배품목 :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 단, 신규·수입 대체성이 높은 품목(블루베리, 망고 등 열대과수)은 제외
- 사업계획서상의 재배 예정작물을 실제 재배과정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이 경우 반드시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선택)
 - *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별첨) 참고,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작물은 전문가 의견 반영·결정

마. 지열 냉난방시설 개보수

- 용량증설 : 지원 한도용량(최대부하용량의 90%) 미만으로 지원된 시설
- 성능개선 : 하자관리기간(준공 이후 3년) 종료된 시설 또는 유류대비 에너지 비용 절감률이 50% 미만인 시설
- * 현재 냉난방비용(연간 전력요금) / 유류난방 가정 시 난방비용

3. 지원 범위 및 자금사용 용도

-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개보수 포함)·지중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목재펠릿 난방기
- 에너지절감시설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공기열 냉난방시설 등

가.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 폐열)

- 토목,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폐열 이송관로, 스케일 제거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난방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 제어,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시설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 (전기인입시 기본거리 200m 초과분 한전납입금 제외)
- 축산시설은 내부 공급관(덕트) 설비공사 추가(기존 환기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하며 연계를 위한 공사는 제외)

나. 지열 냉난방시설(성능개선)

- 하자관리기간 종료 이후 노후화, 파손, 고장 등으로 인한 성능저하를 보수(교체)를 통해 회복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하여 지원
- * 사후관리기간(5년) 이내 주요장비는 회복 불가능한 파손·고장 제외하고 보수만 가능(교체 불가)

다. 목재펠릿난방기

- 온실외부 : (공통) 연료저장탱크, 기계장치 연결밸브, 전기배선, 설치인건비, (온수) 축열 탱크(필요시)
- 온실내부(온수) : 급수분배기, 배관, 팬코일, 송풍기, 온도센서, 순환모터 등

라. 에너지절감시설(공기열 냉난방시설)

- 히트펌프, 전기 용량 증설, 배관시설, 팬코일유니트, 제어시설, 축열조 탱크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 (전기인입시 기본거리 200m 초과분 한전납입금 제외)

라. 에너지절감시설(보온자재)

- 공인시험기관에서 열효율을 측정한 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보온자재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 지원비율

구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보조	용자		
에너지절감시설		20%	30%	30%	20%
신재생 에너지시설	지열(개보수 포함)	50%	10%	20%	20%
	지중열·폐열	60%	10%	20%	10%
	목재펠릿난방기	30%	20%	30%	20%

- 용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폐열 예외)
- 용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 -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 시중금리 :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지열(개보수 포함)·지중열·공기열·폐열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5. 지원 기준단가

<공통사항>

- 지침에 제시된 단가는 예시 기준으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 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 소재하는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사업비 산출근거 구비)을 거쳐 집행
- 모든 사업(위탁사업 제외)은 보급시설 선정을 위해 사업대상자, 농자재 보급업체 등이 참석하여 해당 농자재의 장단점, 유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 후 사업추진
- 총 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가. 지열·지중열·공기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시설 부하용량(kW)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 : 재배작물 온도조건, 양계·양돈 필요 온도를 검토
 - 사업비 : 시설 부하용량(kW)* × 적용단가
 - * 시설 부하용량은 최대 부하용량의 90%까지 지원

○ 기준단가

설비형식		기준단가	히트펌프 적용기준
지 열	수직밀폐형	1,638천원/kW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신재생에너지설비(KS) 인증 제품 사용
	수평밀폐형	1,260천원/kW	
	개방형(SCW형)	1,508천원/kW	
폐 열		1,280천원/kW ~ 1,520천원/kW	
지중열		1,069천원/kW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농업기계 검정 및 안전관리 세부 실시요령」에 따른 검정제품 사용
공기열	공기 대 공기(공급)	617천원/kW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 고시) 제13조에 따라 신고된 제품 중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이면서, 한랭지 난방효율(COP2) 2.0 이상인 제품
	공기 대 물(공급)	865천원/kW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등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농업용냉난방기 검정방법’에 따른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이면서, 한랭지 난방효율(COP2) 2.0 이상인 제품

- * 폐열재이용 냉난방설비는 열원이송거리에 따라 적용단가를 조정 가능
- *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를 위한 계측시스템(전력량계, 부하량 및 열량측정장치) 구축을 위한 설비 반영 시 기준단가의 5%까지 가산 가능
- * COP(성적계수) : 에너지효율의 지표(투입전력 대비 생성 열에너지의 비율)

나. 지열 냉난방시설 개보수

○ 용량증설

- 지역별 시설 부하용량(kW)* 기준 대비 부족한 용량을 지원
- * 온실 부하계산결과를 기준하여 부족한 용량(히트펌프 정격 난방용량 기준) 또는 지열교환기 전산해석 결과 부족한 용량(지열고갈 등으로 인한 용량 증설)
- 사업비 : [시설 부하용량(kW) - 기보급 시설용량(kW)] × 적용단가
- * 시설 부하용량은 최대부하용량의 90%까지 지원

○ 성능개선

- 과거 지열 냉난방시설 보급 이후 시설물의 노후화, 파손, 고장 등으로 인한 성능저하를 회복하기 위한 보수 및 교체 지원을 위한 실제 소요 사업비
- 사업신청 시점에 실소요 사업비 산출이 어려운 경우(매설부 등) 개략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

○ 기준단가

- 용량증설 : 지열 신규 설치 단가와 동일
- 성능개선 : 실소요 비용(개략사업비 306백만원/ha)

다. 목재펠릿난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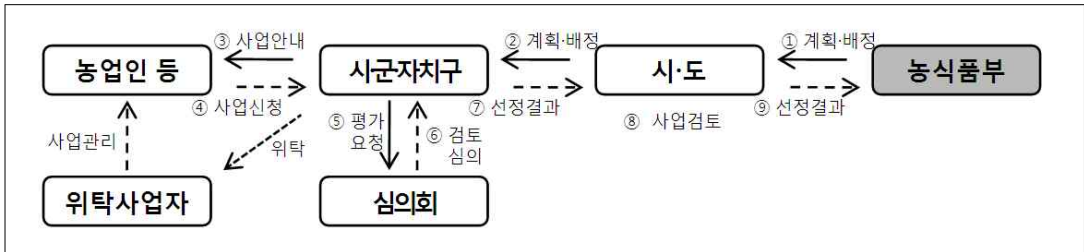
설비형식	지원내용
온수형 · 온풍형 난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기관의 성능시험을 통과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www.kamico.or.kr)에 게시한 ‘농업용 목재펠릿 전용 난방기(열효율이 표시된 제품)’ ○ 난방기 열효율 : 온수 80%, 온풍 70% 이상 제품 * 설치비 : 온수형 300만원, 온풍형 150만원 이하/661㎡

라. 에너지절감시설(보온자재)

○ 기준단가

설비형식	기준단가	
다겹보온커튼	수평권취식 13천원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향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 단, 저온성 작물 또는 제주도 등 품목별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지원 가능 ○ 알루미늄스크린의 겹수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향온법 기준 보온율 55% 이상)
	예인식 · 외부권취식 11천원이하/㎡	
	알루미늄스크린 11천원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온법 기준 보온율 42% 이상 제품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5천원이하/㎡	○ 비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제외
열회수형 환기장치		○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별지원
자동보온덮개	2.5천원이하/㎡	○ 작물별 · 시설별 특성에 맞는 제품 지원
배기열 회수장치		

* 자동 보온덮개의 개폐시설과 보온덮개를 동시 설치할 경우 기준단가 상향조정 가능 (실단가 적용)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1. 예비사업자 선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및 시·도별 (가)내시 통보(전년도 9월)

시·도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군에서 제출한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8월)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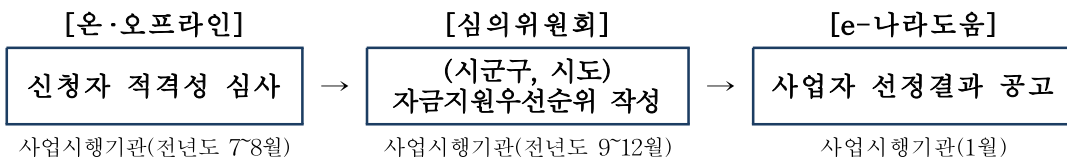
시·군

- 시설원에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등을 검토 후 시·도에 제출(전년도 8월)
 - 지열(개보수 포함)·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신청 시 시·군은 한국농어촌공사에 현장조사 지원을 의뢰하여 조사 시행 후 현장조사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사업성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하여 제출
- 사업신청자에게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사업대상자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1 또는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전년도 7월~8월)
 - 사업신청서 작성 시 난방부하를 산출하고 시설용량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신청
 -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하여야 함
- 용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2. 최종사업자 선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요청(전년도 12월)
- 시·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시·도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및 사업 추진의사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2월)
- 시·군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반영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18.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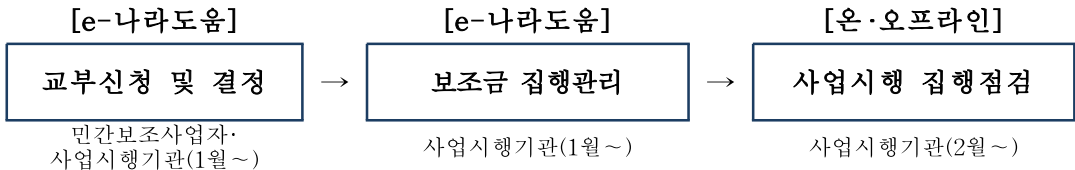
시·군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및 사업 추진의사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12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 시 시·군 농림축산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전년도 9월~12월)
-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시·도 담당자는 Agrix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지(전년도 12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사업시행요령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3.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자금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배정,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용자금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및 용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 예정 전월 15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자금집행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일괄 위탁사업의 경우 교부금을 위탁시행기관에 교부)

- 기계·장비에 대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서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 시장·군수는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이 본 지침 및 증빙요건(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합 여부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별첨: 참고3)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 심사대상: ①신청자에 대해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 ②연장 승인 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융자 담보확보 여부 등) ③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
 -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절차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제2항 “농식품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 *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이며,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고, 사업량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 시·군은 준공검사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위탁시행사업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준공 완료 보고 후 사업수지예산서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 승인
- 위탁시행사업 추진 시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활용한 경우 설계비용은 설계요율만큼 사업비에서 제외하여 비율에 따라 정산

한국에너지공단

-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여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농림축산식품부 요청 시 시·도별 용자금 대출실적 제출
- 시설 준공 후 용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가능

사업대상자

- 당해 연도 용자금 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군에 연장신청
 - 용자금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대출기간 재연장(8월말까지)이 필요한 경우, 6월 15일까지 시·군에 재연장 신청
 -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4. 사업 시행 단계

사업시행 : 공통사항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 받은 제품을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납품하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
 - ①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시·군에 제출
 - * 시험성적서를 통해 제품의 성능, 품질 등을 구체적인 수치, 문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예시 : 특허증, 조달청 우수제품지정증서 등은 허용 불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시험기관이 없는 제품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시험성적서 발급
 - ②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사후관리보증서를 사업대상자(원본)와 시·군(사본)에 제출

- ③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시·군에 제출(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지자체 공동구매 시 제외**)
 - * 총사업비 기준 자재단품 300만원, 시설공사 6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원가계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원가계산서서 발급비용(부가세 포함)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사업수행자가 동일 가격의 물품 또는 공사를 다수 사업자에게 납품 시 최초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이후 사업에 활용 가능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관계법령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온실 내부시설은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시공(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설치 등 위탁시행사업은 제외)
 - 온실의 안전성 및 작물생육에 영향이 적은 설비는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지 않은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체 등도 시공 가능(단, 3개 이상 관련업체 시공실적, 견적서, 품질 등을 비교하여 우수업체 선정)
- 시장·군수는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반드시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감리 시행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시·군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 및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확인
- 시장·군수는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으로부터 효율·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사후관리보증서를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불법 하도급 행위 발생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도급 업체)
- 시장·군수(또는 사업대상자)는 주요 기계·장비의 공동구매(물품·시공)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군수가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 시 사업대상자 입회,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

사업시행 : 지열·지중열·폐열·공기열 냉난방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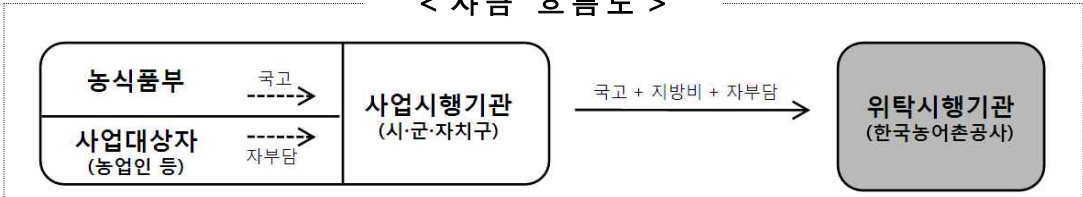
○ 기본방향: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 ‘지열 히트펌프’에 한하여 지자체 대행 또는 농업인 직접구매 가능

* 단, 지열 성능개선사업의 경우는 지자체 대행만 가능

** 농업인 직접구매 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제시

< 자금 흐름도 >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대행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 시행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농업인 등)의 자부담을 예치 받고, 위탁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국비, 지방비, 자부담을 함께 일괄 교부

- ‘지열히트펌프’를 지자체 대행 구매 또는 농업인 직접 구매 시, 구매비용 및 경비(조달수수료 등)는 보조금 집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군에서 집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시행사항을 감독

○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관리·감독을 하고 설계도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

-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검토위원회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요청하고, 결과를 확인. 단, 공사비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의뢰

* 설계적정성 검토에서 확정된 내용은 변경 불가하며, 변경 시 설계적정성 검토 재의뢰

- 설계도서에 특허 또는 신기술 등 독점적 실시권한이 포함된 경우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등 사업추진 방법을 검토하여 결정

* 독점 배타적 기술이 포함되어 사업대상자가 시공사를 임의 결정할 수 없도록 관리

○ 시장·군수는 사업기간 중 사업시행을 적극지원하며,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시·군 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확인

-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 요청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는 시·군으로부터 사업을 수탁 받아 시행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사업비를 요청하고 설계도서가 완성된 이후 사업수지예산서를 시·군의 승인을 받아 확정
 - 시·군으로부터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 진도율에 따라 집행
 - 지자체 대행 또는 농업인이 직접 ‘지열히트펌프’를 구입할 경우에는, 승인된 설계도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및 사업자 상호간 협의
-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적정성 검토 및 시·군의 관리감독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및 각 지역본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조직 구성·운영
 - 사업 위탁시행 기간 중 전반적인 관리감독, 감리, 하자관리 담당
-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인 엔지니어링 사업비, 사업 관리비는 「농어촌정비법」의 기준을 준용
 -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요율

(단위: %)

구 분	5억원이하	10억원이하	20억원이하	30억원이하	50억원이하	100억원이하
사업관리비	8.83	7.98	7.35	7.10	6.89	6.64

* 공기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50% 적용

- 설계, 감리, 사업관리비 등 대상액이 확정되면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공사비가 대상액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계산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 준공 후 해당 시·군에 준공 완료 보고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시장·군수에게 설계, 감리, 사업의 시행 등과 하자관리를 위한 계약대행을 신청

<한국농어촌공사 역할 및 단계별 추진사항>

가. 사업전담반 주요 역할

- 사업 각 단계별 시·군 지원 및 사업신청자에 대한 자문과 위탁사업 시행

- 건설관련 법령·규칙과 이에 준하는 기준, 공법 등에 의거 시설물의 품질·강도·안전·성능 등 유지를 위한 설계조건외 한계(최저한계) 적용으로 적정 성과품 보장
- 시공 시 공법, 품질, 성능 등의 적정성 및 공사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 등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준공 후 하자 관리 등

나. 업무 추진단계



다. 단계별 업무 내용

1) 사업 신청 단계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을 지원
- 시·군의 현장조사 업무 지원요청에 따라 기술지원 실시
 - 소요 사업비 산출 및 사업에 필요한 현장조건 등을 확인
 -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대상 시설, 토지 및 환경조건 검토(토지이용계획확인 확인)
 - 지열공 예정 위치의 입지조건 확인(기계실과의 거리, 주변환경, 토지 확보 여건 등)
 - 주변 500m 이내 타 지열설비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존재유무 확인하여 의견 제출
 - * 선정부지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문제점을 시·군에 통보하여 후속조치

2) 설계 단계

- 지열이용검토서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시행중인 지방보급보조사업 및 그린홈 보급사업의 지열이용 검토 전문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검토위원회의 검토를 받음(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심의규정에 따라 검토)
 - * 농업인(농업법인)을 기술검토위원회에 입회하도록 통보
- 사업대상자인 농업인(농업법인)을 상대로 설계도서를 설명하고 확인을 받음

3) 발주 단계

- 공사의 성질 규모 등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발주방법 결정, 발주공고, 업체 선정 등 발주시행

4) 시공 단계

- 시설설치·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준하여 시공기준을 마련
 - * 시공기준은 사업시행지침, 지방기준 순서에 의하며, 고시에 없거나 다른 경우 지침과 지방기준에 의함.
- (공사착수 전)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련법에 의한 협의·인허가 등의 취득 및 협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 (공사 중) 공사시행 과정 중 설계도서에 의거 주요자재에 대한 검사 및 현장 시공 상태 확인과 시공과정 중 주요 사항 확인

5) 준공 단계

- 준공검사 요청 시 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는 시공회사의 준공계 및 준공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준공검사 실시
- 사업대상자 및 시·군 담당자, 사업위탁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 입회하여 시운전 실시, 이상 유무 확인 후 사업 준공 정산

사업계획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또는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농식품부에 보고
 - 단,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의 경우 사업비 또는 사업대상자 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배정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 발생으로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등으로 시·도 단위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시·군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시·도의 승인을 받아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으로 교체·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중 시·도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 시 농식품부와 사전협의하여 시·도에 변경 승인을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도에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시·군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
- 사업대상자는 사업착수 전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표 제1-4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 시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설계 변경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이를 시·군에 보고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 시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시·군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위·수탁 협약 시 별도로 정함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위탁시행사업의 경우 분기별로 사업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10일 이내 회의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 실시
- 보조금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조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 설비시설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주요기계·장비	납품일	5년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다검보온커튼 등 소모성 기자재의 경우 중요재산에서 제외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용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설치완료 후에도 하자관리 등 전문기술지원 실시
 - 준공 후 하자발생 시 현장기술지원 및 업체 하자보수 지시 등 시행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별지 제4호)
-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에게 처분 승인 요청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위탁시행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고 회계연도 내 사업진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사업 지속 추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 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포함), 사업 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의 해당기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보조·용자금 부당사용 확인 시 지급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교부 제한
 - * 사업수행자(업체) 부당행위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대상자의 대출금 부당사용(목적 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관계규정 위반 등) 확인 시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

사업대상자

- 위탁시행사업 추진 시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사업 착수 가능시기를 명시한 소명자료를 시·군에 제출

6.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 공통사항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전담기관 및 지자체는 시설 설치 전후 생산성 향상 평가결과 농식품부 제출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환류
- 당해 연도 집행실적 등을 다음해 시·도(시·군)별 예산 배정 시 반영

IV

2019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1. 2019년도 사업수요 조사

- 시·도지사는 2019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8.3월)
- 농식품부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제출
- 지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부지, 용자실행 등 사전준비
 - 사업대상자 부지 소유 관계(임대차 등), 설치부지 적정여부, 가설계도면 확인, 농협은행 발행 '신용조사서' 구비(지역·품목농협 확인서 사용 불가) 등
 - * 사업추진절차 : 수요조사(~'18.3월말) → 예비사업대상자 선정(사업부지 및 사업 자격 요건 확인, ~'18.8월말)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18.12월) → 사업추진('19.1월~)

2. 201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18. 8월
- 신청자격 : '18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 '19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18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추후 통보)

< 첨부서류: 지열·지중열·폐열·공기열 사업신청자 >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 ③ 냉난방시설 설치 대상지의 농지원부 1통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 ③ 농지임대차 확인이 가능한 농지원부 1통
3. 임차농업인이 사업 신청 할 경우(한국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사업 지원자에 한함)
 -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4. 냉난방시설 설치 대상지의 농지원부 및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5. 면세유 사용 확인서(농협은행 등) 1부.
6. 사업비가 10억이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 신용조사기관의 신용조사회보서 제출)
7. 사업신청자가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추가 첨부서류
 -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 ②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이상인 법인으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가축자가사육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 ③ 최근 재무제표 1부.
8.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대출확인가능 서류 및 최근 1개월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잔고증명서 등)
9. 수출납품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수출참여 기간 동안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1부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 세부계획서

지열·지중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지원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사업자 개요

사업종류	<input type="checkbox"/> 지열, <input type="checkbox"/> 지열(성능개선), <input type="checkbox"/> 폐열, <input type="checkbox"/> 공기열(해당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사업자(법인)명			대표자명		
소재지					
일반전화			휴대전화		
회원인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용자	지방비	자부담

나. 보유시설 현황

기존 보유시설(형식/규모)						가온면적				경력	전기시설		
계					기타	계	온풍난방	온수난방	기타		현재용량	인입거리	비상발전기
㎡	㎡	㎡	㎡	㎡	㎡	㎡	㎡	㎡	㎡	년	kW	m	kW

다. 사업예정시설 현황

사업예정시설			사업예정시설 세부내역			기타시설장비	비고
시설형태	면적	기존·신규	생산시설	외피복재	내피복재		
	㎡						

* 사업예정시설 : 아래 해당항목에 대하여 번호로 표기

- 시설형태 : ① 벼로형유리온실(경질판 포함), ② 양지붕형유리온실(경질판 포함), ③ 비닐연동, ④ 비닐단동, ⑤ 기타
- 기존·신규 : ① 기존 보유, ② 신규 설치

* 사업예정시설 세부내역 : 아래 모든 해당항목에 대하여 번호로 표기

- 생산시설 : ① 양액재배, ② 점적관수, ③ 자동환경제어, ④ 공정육묘장, ⑤ 환기시설
- 외피복재 : ① 유리, ② PE, ③ EVA, ④ PO, ⑤ 불소수지, ⑥ PET, ⑦ PC, ⑧ PVC, ⑨ 외피복 1중, ⑩ 외피복 2중, ⑪ 외피복 3중, ⑫ 보온판넬 50mm, ⑬ 보온판넬 75mm, ⑭ 보온판넬 100mm, ⑮ 보온판넬 100mm 이상

<표기방법 예시> 외부 EVA+내부 PE 2중인 경우 : ②③⑪ 기재

- 내피복재 : ① 다겹(2중)보온커튼, ② 알루미늄 증착커튼 1중, ③ 알루미늄 증착커튼 2중, ④ 부직포 1중, ⑤ 부직포 2중, ⑥ 부직포 3중

* 기타시설장비 : ① 예냉시설, ② 저온저장고, ③ 저온처리실, ④ 집하장, ⑤ 선별처리장, ⑥ 보광시설, ⑦ 선별기, ⑧ 운송차량, ⑩ 비고란 별도 기재

<표기방법 예시> 축산시설 자돈대기사인 경우 : ⑩ 기재 비고란에 자돈대기사 00㎡

(2쪽에 계속)

(2쪽)

라.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품종명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2015(A)						
	2016						
	2017(B)						
	비율(B/A)						100
생산량 (톤)	2015(A)						
	2016						
	2017(B)						
	비율(B/A)						100

* 품종명 괄호()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2. 사업계획

가. 세부 사업내역

- 지열·폐열

지열냉난방 시스템						수 직 밀폐형	수 직 개방형	폐 열 난방 시스템	실내열교환기유형		
계	수평밀폐형								FCU	TUBE -RAIL	기타
	면적	지열교환기(○)		설치장소(○)							
	직관형	슬린 키형	시설 내부	시설 외부							
m ²	m ²					m ²	m ²	m ²			

- 지열(개보수)

계	용량증설			성능개선						
	수 평 밀폐형	수 직 밀폐형	수 직 개방형	전체시설	히트펌프	배관교체	FCU	자동제어	지열교환기	기타
kW	kW	kW	kW	식	대	m	개	식	공(m)	

- 공기열

공기열냉난방 시스템 선택				실내열교환기유형		
계	면적	공기대공기	공기대물	FCU	TUBE-RAIL	기타
	m ²	m ²	m ²			

나.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응 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3쪽에 계속)

(3쪽)

다.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m ²	백만원	백만원	(상세주소 기재)	

라. 사업장 생산 계획

생산물	면적(마릿수)	생산시기 및 과정				겨울철 최저기온 설정온도
		OO 과정	OO과정	OO 과정	OO과정	
계	m ² (마리)	월 순	월 순	월 순	월 순	℃

마. 연차별 생산물 수출확대 목표(품목, 물량, 금액 등)

수출품목	생산면적	연 차 별 수 출 목 표						수출국
		2018		2019		2020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m ²	톤	백만원	톤	백만원	톤	백만원	

바. 자부담 확보계획 및 부지 확보계획

1) 구체적인 자부담 확보가능금액 및 확보시기 등

-
-

2) 부지 확보 방법 및 확보가능 면적, 시기 등

-
-

바. 기타 추진계획(상세하게 작성)

1) 농가 교육 및 현장지도, 평가회 개최계획 등

-
-

(4쪽에 계속)

(4쪽)

- 2) 향후 유지보수 예산확보 및 A/S발생 시 처리방법 등 사후관리 방안 등
 -
 -

3. 사업 기대효과 (시설 완료 후 예상 효과)

가. 난방비 절감 효과

-
-

나.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 효과 등

-
-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
-

5. 종합 검토 의견(해당 지자체 작성)

-
-

- 첨부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1부
2. 설치 예정 장소별 사진(2매 이상) 1부

위와 같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사업계획서

에너지절감시설·목재펠릿난방기 설치지원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사업자 개요

사업종류	<input type="checkbox"/> 에너지절감시설, <input type="checkbox"/> 목재펠릿난방기(해당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사업자(법인)명			대표자명		
소재지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m ²	시설재배규모	m ²	수출참여규모	m ²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응자	지방비	자부담

나. 보유시설현황

◦ 생산시설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별 규모					
	유리(경질판) 온실	자동화비닐 온실	일반비닐 온실	비가림 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장비		규모 (수량)	시설비	보관(처리) 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명칭	설치연도					
		m ² /대	백만원	톤		*

* 부대시설·장비명(자체 보유):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다.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품종명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2015(A)						
	2016						
	2017(B)						
	증감율(B/A)						100
생산량 (톤)	2015(A)						
	2016						
	2017(B)						
	증감율(B/A)						100

* 품종명 괄호()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2쪽에 계속)

(2쪽)

2.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나. 세부 사업내역

구분	세부내역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참여농가 (호)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다.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라.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	백만원	백만원	(상세주소 기재)	

4. 구 종합 검토의견

가. 시·도:

나. 시·군·구:

위와 같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사업 참여농가 현황

사업 참여농가 현황

사업신청자(단체)명:

대표자명:

번호	농가명	주소지	연락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재배 면적 (㎡)	시설		재 배 품 목	예상량(톤)	
						종류	면적(㎡)		생산	수출
계	명	-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주1) 시설종류는 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 및 일반비닐온실, 비가림시설 등으로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통합] 시설원에 분야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선정사업	<input type="checkbox"/> 시설원에현대화, <input type="checkbox"/> ICT융복합확산, <input type="checkbox"/>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해당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유형	<input type="checkbox"/> 농업인, <input type="checkbox"/> 농업법인, <input type="checkbox"/> 생산자단체 (해당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사업대상자명 (개인·법인·단체)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 계획	사업명	사업내용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당초	합계			
	변경	합계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시설원에 분야 지원사업 변경신청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결과 농식품부 보고					

[별지 제2호 서식] 현장조사 확인서

냉난방시설 현장조사 확인서

신청자	사업신청자명				생년월일					(남/여)	
	법인	법인명									
		참여농가수			호	설립연월일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가온재배경력						년
연락처	일반전화				팩스(FAX)						
	휴대전화				전자우편						
기존 시설 규모	생산시설	시설유형	계						기타		
		면적/마릿수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난방면적	㎡		㎡		㎡		㎡		
	난방방법	기종	온풍난방기(), 온수보일러(), 지열냉난방(), 기타()								
		난방연료	계	경유	중유	석탄	전기	기타			
		연간 사용량	ℓ		ℓ		톤	kW			
		연간 사용액	백만원								
	난방기간	월 ~ 월(일간)			동계최저 설정온도				℃		
	부대시설 형식·규모									기타	
		㎡		㎡		㎡		㎡		㎡	
지열(개보수) 보급설비	사업년도 (준공년도)		시행주체		총사업비		난방용량				
					백만원		kW				
수출 납품	최근 2년간 실적 (톤/백만원)	품목명(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수출국									
		수출시기		월~ 월		월~ 월		월~ 월			
	참여연수	총 년간		계약업체							
신청자 재정 상황 (백만원)	자산										
	부채										
	연소득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사업 신청 내용	신청내용	지열·폐열·공기열·지열(개보수) 냉난방 시스템 보급사업									
	설치장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사업신청 대상시설 (○)	기존·신규	기존시설()		신규설치완공(예정)일 : 월 일						
		자동화정도	완전자동()		반자동()		수동()				
		시설유형							기타		
설치년도											

* 지열(개보수)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현장조사 및 사업비 산출서를 별도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성 검토(의견)서

사업성 검토(의견)서

1. 신청자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참여자수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사업 예정지								

2.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구역	지구	구역	지구

3. 사업검토

구분		평가			검토의견
		상	중	하	
사업능력	◦경영능력 ◦경영 규모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생산기술 또는 경영능력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농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 ◦전력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20 년 월 일

○○시·군·구 농업기술센터소장/○○시·군·구청장 (서명 또는 인)

[통합] 시설원에 분야 지원사업 추진상황 보고

(사업명:)

(단위: 천원)

시군	사업자명	농가수	재배품목	사업구분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진도		()분기까지 사업비 집행내역																	
							주요추진내역	공정률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						m ²	%																			

주1) 작성요령

가. 사업명: “시설원에현대화”, “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첨단온실”

나. 사업구분

- 시설원에현대화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일반원예시설
- ICT융복합확산 : 복합환경관리, 단순환경관리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신재생에너지시설, 에너지절감시설
- 스마트팜 종합자금(농협) : 온실신개축, 시설개선

다. 세부사업

- 시설원에현대화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개폐기, 환풍기, 무인방제기 등
- ICT융복합확산 : 외부센싱, 내부센싱, 통합제어, 온실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등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지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다검보온커튼, 순환식수막시설 등
- 스마트팜 종합자금(농협) : 철골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예냉시설, 저장시설, 선별시설, 피복시설 등

라. “주요추진내역”란은 착공, 공사착수, 발주, 기기설치 등 주요작업 실시내용 및 일자를 표시

마. “사업비집행”은 전월 말까지 계획대비 집행실적을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1. 금후 사업추진일정

-
-

2. 사업추진 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
-

3. 기타 참고사항

-
-

[별지 제7호 서식] 추진성과 보고서

지원사업 추진성과 보고서

1. 재배(사육·양식) 현황

시군명	성명 법인명	재배·사육대 상	시설유형	면적 (㎡)	재배·사육방 법	기간 (월일~월일)	생산량 (kg, 단, 분)

* 인근에서 경유온풍기를 활용하는 대상시설과 비교하되, 인근에 없을 경우 시군>도>전국 평균 자료로 비교

2. 0.1ha당 수익성 효과

시군명	성명 법인명	총수량(kg, 단, 분)			수입(천원)			소 득(천원)			
		사업자	인근	%	사업자	인근	%	사업자	인근	%	

3. 0.1ha당 난방비 절감시설 및 효과

시군명	성명 법인명	구 분	외피 복재	내피 복재	난방 기간	기간 설정 온도	전 기		유 류	
							전기 소모량	비용	경유 소모량	비용
					월.일~ 월.일	℃	kW	천원	ℓ	천원
		사업장 인 근								

* 외피복재 : ① 유리 ② PE ③ EVA ④ PO ⑤ 불소수지 ⑥ PET ⑦ PC ⑧ PVC ⑨ 외피복 1중 ⑩ 외피복 2중 ⑪ 외피복 3중 ⑫ 보온판넬 50mm ⑬ 보온판넬 75mm ⑭ 보온판넬 100mm ⑮ 보온판넬 100mm 이상

<표기방법 예시> 외부 EVA+내부 PE 2중인 경우 : ②③⑪ 기재

* 내피복재 : ①다겹보온커튼 ②알루미늄 증착커튼 1중 ③알루미늄 증착커튼 2중 ④부직포 1중 ⑤부직포 2중 ⑥부직포 3중

4. 교육 및 평가결과

시군명	교 육		현장지도		평가회개최		평가회 참석자 사업내용 만족도					
	횟수	인원	횟수	연인원	횟수	인원	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회	명	회	명	회	명	명					

5. 미흡한점 및 개선방안

시군명	미흡한점	개선방안

6. 사업 추진 단계별 사진

[별지 제8호 서식] 패키지 지원 적정성 검토결과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패키지 지원 적정성 검토 결과

사업대상자		생년월일	(남/여)
주소			
패키지 시설 구성			

패키지 시설 구성 적정성

패키지 시설 사업규모의 적정성

패키지 시설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에너지·경영비 절감 등)

위와 같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패키지 지원 적정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농촌진흥청장(직인)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직인)

사업자 선정기준표(지열·지중열·폐열·공기열 시설)

지 역	○○시·군·구	사업자명						
주 소								
조 사 항 목			배 점					특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1. 자동화현대화 정도 - 완전자동(7), 반자동(5), 수동(4), 인력(3), 시설낙후(1)			7	5	4	3	1	
2. 내부 보온피복재에 의한 보온력 정도 <온실> - 다겹보온커튼+부직포(6), 다겹보온커튼(5), 부직포 2중(4), 부직포 1중(3), 내부보온피복 없음(1) <온실이외의 경우> - 단열판넬 100mm 이상(6), 75mm 이상(5), 75mm 미만(4)			6	5	4	3	1	
3. 전기시설 설치 여건 - 기존용량 활용가능(6), 전기 거리공사비 거리 200m이내(5), 201~500m(4), 501~1,000m미만(3), 1,000m 이상(1)			6	5	4	3	1	
4. 최근 5년간 수출(또는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및 참여기간 - 납품액 개인 2천만원(단체 3억원) 이상 또는 참여기간 5년 이상(10) - 납품액 개인 1천만원(단체 2억원) 이상 또는 참여기간 4년 이상(8) - 납품액 개인 5백만원(단체 1억원) 이상 또는 참여기간 3년 이상(6) - 납품액 개인 5백만원(단체 5천만원) 미만 또는 참여기간 2년 이하(4) - 수출실적 없음(2)			10	8	6	4	2	
5.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 3년 이상(10) - 2년 이상~3년 미만(8) - 1년 이상~2년 미만(6) - 1년 미만 또는 기타 실적(4) - 실적 없음(2)			10	8	6	4	2	
5. 경영 참여 경력 - 10년 이상(5), 6~9년(4), 2~5년(3), 2년 미만(2), 무경험(0) - 관련 교육 및 설명회 참석 10일 이상(2) - 관련 교육 및 설명회 참석 5일 이상(1)			5	4	3	2	1	
6. 사업신청 장소 토지 소유권자 - 자가 토지(10), 임차 잔여기간 16년 이상(8), 임차 잔여기간 11~15년(6), 임차 잔여기간 6~10년(4), 임차 잔여기간 5년 이하(2)			10	8	6	4	2	
7. 기존시설 연간 10a당 난방비 소요액 및 난방기간 - 난방비 1천만원 이상 또는 난방기간 150일 이상(7) - 난방비 5백만원 이상 또는 난방기간 120일 이상(5) - 난방비 3백만원 이상 또는 난방기간 90일 이상(4) - 난방비 1백만원 이상 또는 난방기간 60일 이상(3) - 난방비 1백만원 미만 또는 난방기간 60일 미만(1)			7	5	4	3	1	

(2쪽에 계속)

(2쪽)

조 사 항 목		배 점					득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8. 재배작물 선택의 적합성(별첨 : 참고 1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적용) <시설원예> - 고온성작물 선택/육묘장/최저설정온도 20℃ 이상(7) - 고온성작물 선택/육묘장/최저설정온도 15℃ 이상(5) - 중온성작물 선택/최저설정온도 12℃ 이상(4) - 중온성작물 선택/최저설정온도 10℃ 이상(3) - 저온성작물 선택/최저설정온도 10℃ 미만(1) <시설원예 이외의 경우> - 최저 설정온도 30℃ 이상(7), 25℃ 이상(5), 20℃ 이상(4) - 최저 설정온도 10℃ 이상(3), 10℃ 미만(1)		7	5	4	3	1	
9. 지역안배, 지역별, 면적 등 적용		5					
10. 신청자 냉난방 시스템 선택유형 적정성		5					
11. 부대시설 설치 공간 확보 가능성(축열조, 기계실 등)		5					
12. 시공을 위한 공간 확보 가능성 - 자가 토지 확보가능 우선		5					
13. 입지조건 - 암석토, 매립지, 기타 설치 불가능한 토양 여부 - 개발예정지역 여부 - 상습침수지역 여부		7					
14. 재원확보 및 농가 여건 - 당년 추진을 위한 지방비 확보 가능 여부 - 사업신청자 자부담능력 가능 여부 - 온실 등 시설물의 임차능 여부 - 신청자 자산·소득보다 부채가 많아 재정건전성의 취약 정도		7					
15. 유형별 특성화단지 우선 선정 - 에너지절감 특성화 센터 - 수출농업 육성 특성화 센터 - 기타 특성화 단지		6					
가점	-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동시 추진(필수)	10					
	- 국산품종으로만 생산·수출하는 원예전문단지(화훼, 채소)	5					
	- 시·도지사 선정 '색깔 있는 마을'이 포함된 조직	5					
	-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5					
	-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5					
감점	- 최근 3년간 시설원예 분야 사업 포기경력 있는 경우	-10					
계							
종합의견							
		20 년 월 일					
심의위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업자 선정기준표(에너지절감시설, 목재펠릿난방기)

단체명(시·군·구명):

총득점: () 점

1. 최근 3년간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50%)

(단위: 톤)

구분	배점	공동선별·계산 실적	총 출하실적	득점
▪ 90%이상	50	▪ '14년: ▪ '15년: ▪ '16년: ▪ 합계(A):	▪ '14년: ▪ '15년: ▪ '16년: ▪ 합계(B):	$(A/B) \times 100 = (\quad)\%$ ()점
▪ 80%이상~90%미만	40			
▪ 70%이상~80%미만	30			
▪ 60%이상~70%미만	20			
▪ 50%이상~60%미만	10			
▪ 50%미만	0			

2. 최근 3년간 총 출하금액 중 수출비중(30%)

(단위: 백만원)

구분	배점	수출금액	총 출하금액	득점
▪ 100%	30	▪ '14년: ▪ '15년: ▪ '16년: ▪ 합계(A):	▪ '14년: ▪ '15년: ▪ '16년: ▪ 합계(B):	$(A/B) \times 100 = (\quad)\%$ ()점
▪ 75%이상~100%미만	24			
▪ 50%이상~75%미만	18			
▪ 25%이상~50%미만	12			
▪ 25%미만	6			

3. 주 품목에 대한 시·도 총출하량 중 점유비율(20%)

(단위: 톤)

구분	배점	해당 조직	○○시·도	득점
▪ 100%	20	▪ '14년: ▪ '15년: ▪ '16년: ▪ 합계(A):	▪ '14년: ▪ '15년: ▪ '16년: ▪ 합계(B):	$(A/B) \times 100 = (\quad)\%$ ()점
▪ 75%이상~100%미만	16			
▪ 50%이상~75%미만	12			
▪ 25%이상~50%미만	8			
▪ 25%미만	4			

4. 가점

- 시설원에 ICT 융복합 확산사업 동시 추진(필수, 10점): ()점
- 국산품종으로만 생산·수출하는 원예전문단지(화훼, 채소)(5점): ()점
- 시·도지사 선정 '색깔 있는 마을'이 포함된 조직(5점): ()점
-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점
-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점

5. 감점

- 최근 3년간 시설원에 분야 사업 포기경력 있는 경우(-10점): ()점

[별첨: 참고2]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

시설원에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

□ 시설원에 작물별 생육온도 조건

구분	고온성	중온성	저온성
채소	파프리카, 메론, 고추, 가지	호박, 오이, 참외, 무, 수박	딸기, 배추, 상추, 시금치, 샐러리, 썩갓, 철쭉
화훼	심비디움, 장미, 백합, 야자류, 호접란, 국화, 유스토마, 아나나스	고무나무, 카네이션, 글라디올러스, 동양란, 선인장, 거베라	튜울립, 금어초, 스톡크, 데이지, 아이리스, 안개초, 프리지아, 페츄니아, 팬지, 프리올라, 시크라멘

* 주) 위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면세유류 용량조건표 작성 기준임

□ 작물별 온도관리 기준

<채소류>

작물명	생육온도(°C)			
	최저한계온도	야간온도설정	생육적온	최고한계온도
멜론	15	18	28 ~ 30	35
고추	13	16	23 ~ 30	35
가지	13	16	22 ~ 30	35
파프리카	15	18	25 ~ 30	35
토마토	10	16	25 ~ 30	33
호박	10	11	23 ~ 25	35
오이	8	12	25 ~ 28	35
참외	8	11	22 ~ 28	35
수박	10	13	25 ~ 30	35
무	8	11	15 ~ 20	25
딸기	3	6	17 ~ 20	30
배추	5	8	13 ~ 18	23
상추	5	8	15 ~ 20	25
시금치	5	8	15 ~ 20	25
샐러리	5	8	15 ~ 20	25
썩갓	5	8	15 ~ 20	25

<화훼 류>

작물명	생육온도(℃)			
	최저한계온도	야간온도설정	생육적온	최고한계온도
심비디움	12	15	20 ~ 25	30
장미	5	15	24 ~ 27	30
아나나스	12	15	20 ~ 25	30
야자류	12	15	25 ~ 30	40
호접란	15	23	25	30
유스토마	12	15	20 ~ 25	30
백합	13	16	20 ~ 25	30
국화	7	15	18 ~ 20	30
거베라	7	13	16 ~ 20	30
고무나무	10	13	25 ~ 30	40
글라디올러스	10	13	25 ~ 30	35
동양란	10	13	20 ~ 25	40
선인장	10	13	25 ~ 30	50
카네이션	7	13	15 ~ 21	30
철쭉	4	8	20 ~ 25	35
프리지아	7	10	13 ~ 16	30
튜울립	5	10	15 ~ 20	30
아이리스	7	10	15 ~ 20	30
숙근안개초	7	10	15 ~ 18	20
금어초	7	10	15 ~ 20	25
스톡크	7	10	20 ~ 25	25
팬지	7	10	15 ~ 20	25
데이지	7	10	15 ~ 20	25
페츄니아	7	10	20	30
프리물라	7	10	15 ~ 20	25
시크라멘	7	10	18 ~ 20	30

* 주) 야간온도설정: 최저생육한계온도 + 3℃

[별첨: 참고3] 기성고 확인서

기성고 확인서

1. 사업명: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20 년)

2. 사업자

- 법인명(성명):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남/여>) :
- 주소(사업지역):

3. 사업계획(행정기관 승인내역)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사업비				
	총투자계획 (A=B+C+D)	보조(B)		국고용자 (C)	자부담 (D)
		국고	지방비		

4. 사업실적(20 년 월 일 현재)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사업추진실적			자부담 투입실적		
	총투자계획(A)	사업실적 (E)	비율 (E/A)	계획 (D)	실적 (F)	비율 (F/D)

5. 국고용자 지원: 총 금액 천원(기지원 , 금회지원)

6. 증빙자료: 별첨

위 사업자 기성고에 따른 금회지원분(용자금)을 통장에 입금할 것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농협장·농협은행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세부사업명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산지유통시설지원(APC)(자치단체)				예산 (백만원)	19,165		
사업목적	○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에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복합 기능을 갖춘 유통시설(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omplex)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 건립·보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산지유통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참여조직 포함)으로 사업부지를 확정된 사업자 ○ 전년도 원예농산물 조직화취급액이 30억원 이상이며, 통합조직에 출하한 조직화취급액이 15억원 이상 인 사업신청자							
지원한도	○ 신규시설의 경우 최소 25~60억원 내외, 보완시설의 경우 최소 5~60억원 내외							
재원구성 (%)	국고	30~50	지방비	10~50	용자	-	자부담	0~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54,880	58,283	58,283	291,415			
	국 고	16,464	17,485	17,485	87,425			
	지방비	16,464	17,485	17,485	87,425			
	자부담	21,952	23,313	23,313	116,56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정책과 산지시설부		하성태 안만물		044-201-2224 061-931-1021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6.20.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산지유통시설지원(APC)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자체, 협동조합*

*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농업인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50%를 초과하여야 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원예산업종합계획이 승인된 지자체 또는 품목광역조직

* 품목광역조직 : 전년도 3개 시·군·구 또는 2개 시·도 이상에서 원물을 확보하고 원예농산물 취급액 100억원 이상 및 조직화취급액 70억원 이상의 요건을 갖춘 조직

- 기 승인된 원예산업종합계획의 변경(통합마케팅조직, 시설설치 예정사업자 등)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변경 시행

* 원예산업종합계획 : 기존 산지유통종합계획, 과수발전계획, 주산지계획을 통합한 종합계획으로 지역 원예산업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품목광역조직 등)으로 사업부지를 확정된 사업자

- 통합마케팅조직(품목광역조직 포함)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조직화취급액이 70억원 이상인 사업신청자

- 참여조직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중 통합마케팅조직으로의 출하액 비율이 30% 이상이며, 조직화취급액이 30억원 이상이고, 통합마케팅조직에 출하한 조직화취급액이 15억원 이상인 사업신청자(단, 해당 통합마케팅조직의 조직화취급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조직화취급액 : 공동계산 수탁 취급액 + 계약재배 매취 매입액

*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연합사업단에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적을 연결 인정

3. 지원대상

- 청과부류, 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를 취급하는 경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호, 5호, 6호)
- * 임산물류, 양곡부류(미곡을 제외한 잡곡 등)를 취급하는 경우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전체 취급액의 5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감리비 등 : 감리비 및 사업추진 컨설팅 등
- 토목공사 : 부지내 기반공사(배수, 배관, 통신선로 등), 포장공사, 부대 토목공사 등
 - *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파일공사, 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는 지원 제외
- 건축공사 : 집하장, 선별장(저온선별장 포함), 포장장, 출하장, 저온저장고(예냉고 및 냉동창고 포함), 전처리장(가공공장 포함), 품질검사실, 사무실, 회의실,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상품화설비·장비류 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 투입·선별·포장기, 결속기, 봉합기, 제함기, 컨베이어, 파렛타이저, 디파렛타이저, 세척기, 건조기, 소포장기 등
 - 가공시설·장비류 : 신선편이시설(세척, 급식 식자재 등), 가공시설(잼, 주스, 푸레, 마늘박피, 절임배추, 김치 등), 급속냉동기 등
 - 유통시설·장비류 : 화물차량, 파렛트, 운반상자, 지게차 등
 - 위생시설·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청소기 등
 - * 산지유통시설지원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 23조 1항(별표5)에 의한 농산물 우수관리시설(GAP시설) 지정을 받아야 함
- 산지유통시설 스마트화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ICT 활용 시스템
 - 선별·세척 등 설비별 IoT센서, IQF(급속동결) 설비
 - RFID(생산·유통 이력관리), 클라우드서비스 APC표준시스템, ERP(통합관리·지원시스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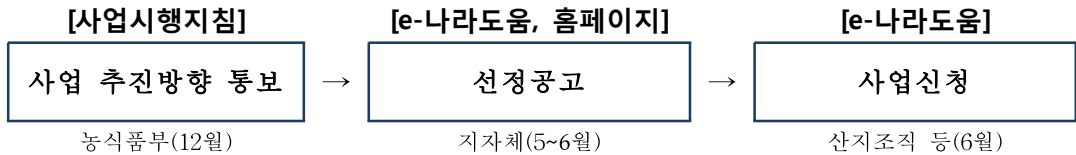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국고)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 단, 신규시설은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 품목광역조직의 경우 국고 50%, 지방비 10%, 자부담 40%로 지원
 - * 공공유형은 신규시설 지원 제한(단, 기존시설의 보완은 국고 50%, 지방비 50%로 지원 가능)
- 사업기간 : 1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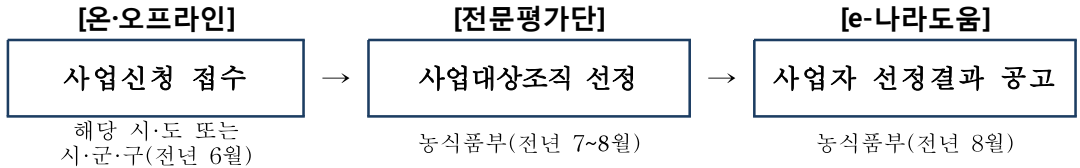
- 기준 사업비(총사업비)
 - 신규시설 : 최소 25억원 ~ 60억원 내외
 - 보완시설 : 최소 5억원 ~ 60억원 내외
- * 단, 사업자의 운영능력, 매출규모, 원물조달 능력, 취급품목 등에 따라 사업비 증액 가능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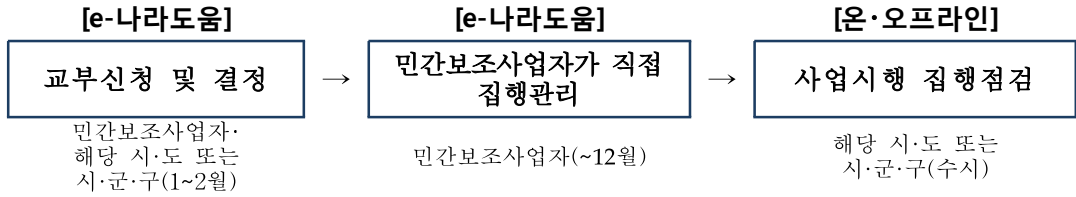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 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 농식품사업이 용자사업 등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공고시스템(또는 Agrix) 활용하고 신청 접수할 수 있다.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한다.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야 한다.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농업인, 농법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 사업시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농업기술센터, 대출취급기관 등의 사업검토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39조)
 -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리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총사업비 10%이상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변경제출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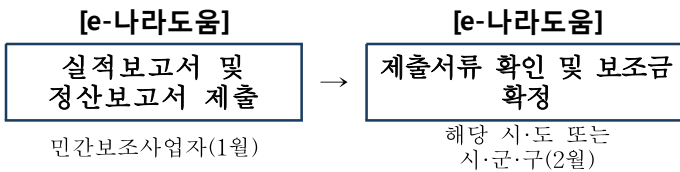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의 시기와 방법을 명시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 등록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식품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 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 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정부지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경영진단평가를 위한 운영실적
 - 전국 APC 대상 운영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경영진단 평가, 운영활성화 도모
 - APC 총취급액 및 취급물량, 조직화취급액 및 취급물량, 선별시설 및 저온저장고 가동율, 통합마케팅 출하액 및 물량, 영업이익 등 운영실적자료

2. 평가

- 경영진단 평가를 통해 우수 APC에는 인센티브를, 부진APC에는 컨설팅 실시
 - 우수APC는 상품화 설비·장비류의 성능 및 안전성 검정실시로 소비자 신뢰회복
 - 부진APC는 운영개선을 위한 경영·기술 컨설팅 실시로 운영활성화 도모

세부사업명	원예시설현대화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시설원예 현대화	예산 (백만원)	32,379					
사업목적	○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및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사업 주요내용	○ 농산물전문생산단지·일반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측고인상, 관수관비, 환경관리, 기타(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등) 자재·설비 등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들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채소·화훼류 등 고정식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또는 공동선별 참여 농업경영체							
지원한도	○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을 거쳐 집행 (총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재원구성(%)	국고	2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44,600	119,100	101,920	316,800			
	국 고	28,920	23,820	20,384	63,360			
	지방비	43,380	35,730	30,576	95,040			
	용 자	43,380	35,730	30,576	95,040			
	자부담	28,920	23,820	20,384	63,36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기주 사무관 박혜민		044-201-2251 044-201-2256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8.30.일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관련자료	시설원예현대화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류 등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농산물전문생산단지
 - * 사업대상자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출 및 운영실태 등 종합평가
 - 일반원예시설 : APC·농협·농업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또는 출하약정을 체결한 신규농업인(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등록 2년 이내인 자, 준공 후 반드시 지자체에서 약정 이행여부 확인)
 - * 화훼재배시설 운영 능력은 공동선별·공동계산 의무 제외
 - 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 : 수국, 심비디움,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갈라 등 화훼류 재배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총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지원 제외대상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결합되는 시설을 운영 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조합공동사업법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우선 지원(평가 시 가점 부여)

-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또는 지원 사업 참여('18년 사업신청 포함)
- 국산품종으로 생산·수출, 태풍·화재 등 피해(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의무자조금 단체로 결성된 품목에 한함)
- 시·도지사 지정 “색깔있는 마을”이 포함된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 농식품 인증(GAP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등), 저탄소농축산물인증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 품목별 전국단위협의회 추천(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사업)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온실·공정육묘장 시설 현대화(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
 - 측고인상 : 기존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설비 등
 - * 측고인상 후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적설심·풍속)에 부합하는 시설에 한해 지원
 - 관수관비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등
 - 환경관리 :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등
 - 기 타 :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파쇄기 등
- 화훼분야 전략품목 고품질 주년생산에 필요한 시설·설비
 - 개화조절시설(저온설비 등), 하절기온도하강설비, 온도하강 차광시스템, 연작장해 경감용 베드시설, 휴작기 종구저장시설, 근권냉난방기, 습식유통설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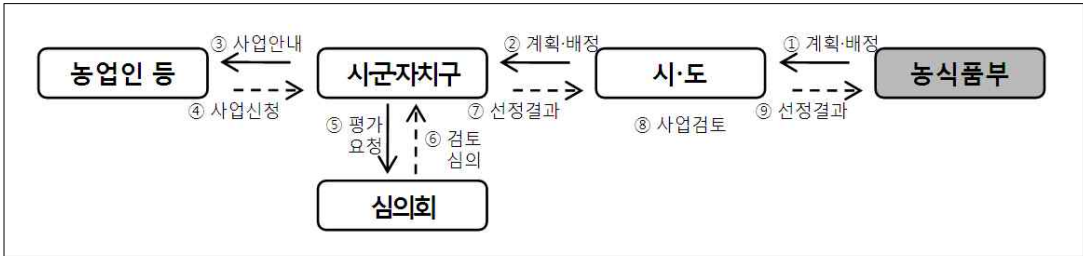
< 지원제외 대상 >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 단동형 및 이동형 온실 현대화 지원 원칙적 제외
 - 단동형 온실 적합품목(수박·멜론 등)은 시장·군수가 종합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배지, 상토)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 배지, 상토는 양액재배시설 설치 시 최초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 예냉·저장·선별시설, 골조, 피복필름 등(옹자지원 전환)

4. 지원형태

- 국고채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 시중금리 :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Ⅲ 사업추진체계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1. 예비사업자 선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및 시·도별 (가)내시 통보(전년도 9월)

시·도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군에서 제출한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8월)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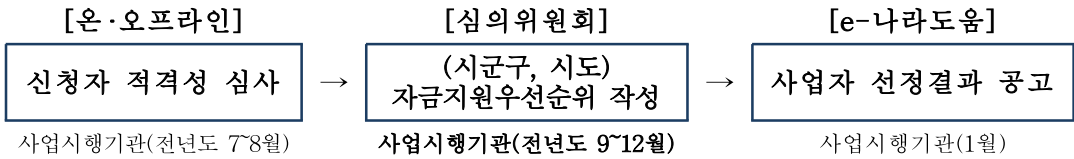
시·군

- 시설원예(채소·화훼류)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중도포기·출하약정 위반 시 제재사항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등을 검토 후 시·도에 제출(전년도 8월)
 - 검토 시에는 전문가(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사업 타당성, 사업시행 상 문제점 여부 등 확인
- 사업신청자에게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사업대상자

-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지 내 구성원의 의견수렴,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전년도 7월~8월)
- 일반원예시설
 - 사업신청자는 소속 농업인 등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출하약정서와 함께 시·군에 제출(전년도 7월~8월)
- 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
 - 농업인 등은 본인이 소속된 품목별 전국단위 생산자협의회 추천을 받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전년도 7월~8월)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2. 최종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요청(전년도 12월)
- 시·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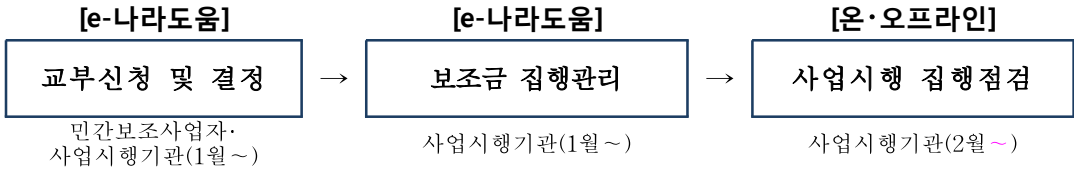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및 사업 추진의사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2월)
- 시·군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반영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18.1월)

시·군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및 사업 추진의사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12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농림축산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전년도 9월~12월)
 -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시·도 담당자는 Agrix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전년도 12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사업시행요령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3.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자금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배정,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용자금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및 용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 예정 전월 15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자금집행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에 대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서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
- 시장·군수는 원활한 용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이 본 지침 및 증빙요건(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합 여부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 (별첨: 참고2)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 심사대상: ①신청자에 대해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 ②연장 승인 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융자 담보확보 여부 등) ③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
-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에 따라 수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제2항 “농식품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 *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이며,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 집행하고, 사업량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여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농림축산식품부 요청 시 시·도별 융자금 대출실적 제출
-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가능

사업대상자

- 당해 연도 융자금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군에 연장신청
 -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대출기간 재연장(8월말까지)이 필요한 경우, 6월 15일까지 시·군에 재연장 신청
 -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4. 사업 시행 단계

공통사항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납품하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
 - ①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시·군에 제출
 - * 시험성적서를 통해 제품의 성능, 품질 등을 구체적인 수치, 문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예시 : 특허증, 조달청 우수제품지정증서 등은 허용 불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시험기관이 없는 제품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시험성적서 발급
 - ②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사후관리보증서를 사업대상자(원본)와 시·군(사본)에 제출
 - ③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시·군에 제출(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지자체 공동구매 시 제외**)
 - * 총사업비 기준 자재단품 300만원, 시설공사 6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원가계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원가계산서서 발급비용(부가세 포함)은 사업비에 포함 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사업수행자가 동일 가격의 물품 또는 공사를 다수 사업자에게 납품 시 최초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이후 사업에 활용 가능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다음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관정은 「지하수법」, 전기시설은 「전기공사업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시설을 설계·시공, 조직배양실 등은 관계규정에 의한 시공 적격업체 선정
- 온실 내부시설은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시공
 - 온실의 안전성 및 작물생육에 영향이 적은 설비는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지 않은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체 등도 시공 가능 (단, 3개 이상 관련업체 시공실적, 견적서, 품질 등을 비교하여 우수업체 선정)
- 시장·군수는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반드시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감리 시행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 및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확인
- 시장·군수는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으로부터 효율·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사후관리 보증서를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불법 하도급 행위 발생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 시장·군수(또는 사업대상자)는 주요 기계·장비의 공동구매(물품·시공)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군수가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 시 사업대상자 입회,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
- 측고인상 시에는 측고인상 이후 해당시설이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적설심·풍속)을 상회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기술사가 발급한 구조계산서를 제출
 - * 구조계산서 발급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형태(비율)에 따라 국가, 지자체, 사업자가 나누어 부담

사업계획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또는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농식품부에 보고
 - 단,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의 경우 사업비 또는 사업대상자 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배정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 발생으로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등으로 시·도 단위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시·군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시·도의 승인을 받아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으로 교체·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중 시·도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 시 농식품부와 사전협의하여 시·도에 변경 승인을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도에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시·군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
- 사업대상자는 사업착수 전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표 제1-4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 실시
- 보조금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조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 설비시설	준공일	5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주요기계·장비	납품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용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별지 제4호)
-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에게 처분 승인 요청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 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포함), 사업 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출하 약정(출하권 위임계약) 해지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의 해당기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보조·융자금 부당사용 확인 시 지급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교부 제한
 - * 사업수행자(업체) 부당행위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대상자의 대출금 부당사용(목적 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관계규정 위반 등) 확인 시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

6.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 공통사항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전담기관 및 지자체는 시설 설치 전후 생산성 향상 평가결과 농식품부 제출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환류
- 당해 연도 집행실적 등을 다음해 시·도(시·군)별 예산 배정 시 반영

IV

2019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1. 2019년도 사업수요 조사

- 시·도지사는 2019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8.3월)
- 농식품부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제출
 - * 사업추진절차 : 수요조사(~'18.3월말) → 예비사업대상자 선정(사업부지 및 사업 자격 요건 확인, ~'18.8월말)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18.12월) → 사업추진('19.1월~)

2. 201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시장·군수
- 제출기한: '18.8월
- 신청자격: '18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 '19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18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추후 통보)

[통합] 시설원에 분야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input type="checkbox"/> 개인	단체(<input type="checkbox"/> 영농조합, <input type="checkbox"/> 농업회사, <input type="checkbox"/> 생산자단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체)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 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시설 현황	생산 시설	원예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온실	버섯재배사
		축산		㎡	㎡	㎡	㎡	㎡
				무창돈사	무창계사	무창오리사	무창분만돈사	무창임돈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부대시설		양액재배	예냉·저장·선별	관수시설	환경제어	기타	
			㎡	㎡	식	식		
	난방 시설	난방 유형		온풍난방	온수난방	온수보일러	태양열병합	기타
				㎡	㎡	㎡	㎡	㎡
가온 방식		고체연료	유류·가스	전기	지열·지중열	기타		
		㎡	㎡	㎡	㎡	㎡		
신청 내용	사업종류 (해당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사업명		세부사업	신청시설	신청면적	
			시설원예 현대화		<input type="checkbox"/> 전문생산단지		㎡	
					<input type="checkbox"/> 일반원예시설			
			ICT 융복합 확산		<input type="checkbox"/> 스마트팜시설		㎡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input type="checkbox"/> 신재생에너지	<input type="checkbox"/> 지열, <input type="checkbox"/> 지중열, <input type="checkbox"/> 폐열, <input type="checkbox"/> 목재펠릿난방기	㎡	
			<input type="checkbox"/> 에너지절감	<input type="checkbox"/> 다겹보온커튼, <input type="checkbox"/> 보온덮개 <input type="checkbox"/> 순환식수막시설, <input type="checkbox"/> 공기열, <input type="checkbox"/> 기타()	㎡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용자(신청액)	자부담		

위와 같이 시설원에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사업종류별) 1부, 참여농가 현황 1부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

1. 일반현황

가. 단지(단체) 개요

◦ 기본현황

사업종류	<input type="checkbox"/> 농산물전문생산단지, <input type="checkbox"/> 일반원예시설 (해당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단지(단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m ²	시설재배규모	m ²	수출참여규모	m ²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용자	지방비	자부담

◦ 단지 운영실태 평가결과 <농산물전문생산단지>

2014년	2015년	2016년
점	점	점

◦ 기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 업체명		담당자:	연락처:
기술지도기관		담당자:	연락처:
단지관리기관		담당자:	연락처:

나. 기존 시설현황

◦ 생산시설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별 규모					
	유리(경질판) 온실	자동화비닐 온실	일반비닐 온실	비가림 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장비		규모 (수량)	시설비	보관(처리) 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명칭	설치연도					
		m ² /대	백만원	톤		* 공동개별·자 체임대 등

* 부대시설·장비명(자체 보유):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2쪽에 계속)

(2쪽)

다.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품종명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2015(A)						
	2016						
	2017(B)						
	비율(B/A)						100
생산량 (톤)	2015(A)						
	2016						
	2017(B)						
	비율(B/A)						100

* 품종명 괄호()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2.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

나. 세부 사업내역

구분	세부내역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참여농가 (호)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다.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용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라.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	백만원	백만원	(상세주소 기재)	

(3쪽에 계속)

(3쪽)

마. 생산 및 수출 세부현황

◦ 생산현황

구분	연도	출하실적(톤)				농식품 인증(%)	표준규격 출하(%)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생산실적 및 계획	2015						
	2016						
	2017						
	2018 계획						

◦ 수출현황 <농산물전문생산단지>

구분	연도	품목 (품종)	수출국 (업체명)	재배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천\$)
수출실적 및 계획	2015					
	2016					
	2017					
	2018 계획					
수출비율(%)	-	-	-	-	%	%
수출신장(%)	-	-	-	-	%	%

* 수출비율 : 최근 3개년 평균 생산대비 수출실적 비율(원화금액 기준)

* 수출신장 : 전년대비 당해 연도 수출 증감율(원화금액기준)

바. 수출 및 선별방법 <농산물전문생산단지>

구분	수 출 자		수출방법		선별방법		재배방법	
	자체	위탁	개별농가	단지공동	개별농가	단지공동	비계약	계약
2015	%	%	%	%	%	%	%	%
2016								
2017								
2018 계획								

사. 교육실적(안전성, 수출 등)

◦

3.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가. 사업의 필요성

1) 사업여건

◦

2) 기 설치 및 계획 중인 생산·유통·가공·처리 시설과의 연계계획

◦

(4쪽에 계속)

(4쪽)

나. 기대효과

- 1) 생산성 향상 및 수급 안정
 -
 -
- 2) 수출 확대
 -
 -
- 3) 품질 및 안전성 향상
 -
 -
- 4) 유통 효율화 및 에너지 절감
 -
 -
- 5) 기타
 -
 -

4. 사업추진 의향 설문조사 및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가. 사업추진 의향 설문조사

- 1) 사업참여 의향 조사
 - 전체 농가 수: 호
 - 참여 농가 수: 호
 - 설문조사 일시 및 의향조사 결과:

나.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 위원장(성명):
- 연락처:
- 구성원 수:
 - 구성원:
- 운영실적 및 계획:

5. 지자체의 중장기 단지 육성대책 및 지원 방안

가. 시·도, 시·군의 중장기 단지 육성대책 및 지원 사항

- 중기대책(향후 5년) 및 지원 사항
- 장기대책(향후 10년) 및 지원 사항

나. 금회 사업 추진 시 사업비 지원 및 활동계획

-
-
-

(5쪽에 계속)

(5쪽)

6. 물류표준화 및 안전성 관리 대책

가. 물류표준화를 위한 해당 단지의 노력

-
-

나. 고품질 안전성 원예작물 생산을 위한 단지 추진 노력

-
-

7.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가. 문제점

-
-

나. 애로(건의)사항

-
-

8. 종합의견

가. 시·도 종합검토 의견

-
-

나. 시·군·구 종합검토 의견

-
-

위와 같이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사업 참여농가 현황

사업 참여농가 현황

사업신청자(단체)명:

대표자명:

번호	농가명	주소지	연락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재배 면적 (㎡)	시설		재 배 품 목	예상량(톤)	
						종류	면적(㎡)		생산	수출
계	명	-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주1) 시설종류는 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 및 일반비닐온실, 비가림시설 등으로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1-4호 서식] 변경신청서

[통합] 시설원에 분야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선정사업	<input type="checkbox"/> 시설원에현대화, <input type="checkbox"/> ICT융복합확산, <input type="checkbox"/>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해당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유형	<input type="checkbox"/> 농업인, <input type="checkbox"/> 농업법인, <input type="checkbox"/> 생산자단체 (해당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사업대상자명 (개인·법인·단체)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참여 농가 수	호	
	주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 계획	사업명	사업내용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당초	합계			
	변경	합계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p>위와 같이 시설원에 분야 지원사업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 ○ ○ (서명 또는 인)</p> <p>○○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p>*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검토 후 지체 없이 변경결과 농식품부 보고</p>					

[통합] 시설원에 분야 사업추진상황 보고

(사업명: _____)

(단위: 천원)

시군	사업자명	농가수	재배품목	사업구분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진도		()분기까지 사업비 집행내역															
							주요추진내역	공정률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						m ²		%																

주1) 작성요령

가. 사업명: “시설원에현대화”, “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첨단온실”

나. 사업구분

- 시설원에현대화: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일반원에시설
- ICT융복합확산: 복합환경관리, 단순환경관리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신재생에너지시설, 에너지절감시설
- 첨단온실: 온실신개축, 시설개선

다. 세부사업

- 시설원에현대화: 양액재배시설, 양액재 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개폐기, 환풍기, 무인방제기 등
- ICT융복합확산: 외부센싱, 내부센싱, 통합제어, 온실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등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지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다겹보온커튼, 순환식수막시설 등
- 첨단온실: 철골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예냉시설, 저장시설, 선별시설, 피복시설 등

라. “주요추진내역”란은 착공, 공사착수, 발주, 기기설치 등 주요작업 실시내용 및 일자 표시
 마. “사업비집행”은 전월 말까지 계획대비 집행실적을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1. 금후 사업추진일정

-
-

2. 사업추진 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
-

3. 기타 참고사항

-
-

사업자 선정기준표(농산물전문생산단지)

□ 단지명: (대표자:) □ 총득점: () 점

1.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운영실태 평가결과(50%)

구분	'14년(10%)		'15년(15%)		'16년(25%)		합계
	배점	득점(A)	배점	득점(B)	배점	득점(C)	
▪ 90점이상	10		15		25		A+B+C = ()점
▪ 80점이상~90점미만	8		12		20		
▪ 70점이상~80점미만	6		9		15		
▪ 60점이상~70점미만	4		6		10		
▪ 50점이상~60점미만	2		3		5		
▪ 50점미만	0		0		0		

* 사업대상자 제외: 예비단지, 최근 평가결과 2년 연속 저평가 단지,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이 없는 단지

2. 최근 3년간 총 출하금액 중 수출비중(30%)

(단위: 백만원)

구분	배점	수출금액	총 출하금액	득점
▪ 100%	30	▪ '15년: ▪ '16년: ▪ '17년: ▪ 합계(A):	▪ '15년: ▪ '16년: ▪ '17년: ▪ 합계(B):	$(A/B) \times 100 = ()\%$ ()점
▪ 75%이상~100%미만	24			
▪ 50%이상~75%미만	18			
▪ 25%이상~50%미만	12			
▪ 25%미만	6			

3. 최근 3년간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20%)

(단위: 톤)

구분	배점	공동선별·계산 실적	총 출하실적	득점
▪ 90%이상	20	▪ '15년: ▪ '16년: ▪ '17년: ▪ 합계(A):	▪ '15년: ▪ '16년: ▪ '17년: ▪ 합계(B):	$(A/B) \times 100 = ()\%$ ()점
▪ 80%이상~90%미만	16			
▪ 70%이상~80%미만	12			
▪ 60%이상~70%미만	8			
▪ 50%이상~60%미만	4			
▪ 50%미만	0			

4. 가점

- 시설원에 ICT 융복합 확산사업 동시 추진(필수, 10점): ()점
- 국산품종으로만 생산·수출하는 원예전문단지(화훼, 채소)(5점): ()점
- 시·도지사 선정 '색깔 있는 마을'이 포함된 원예전문단지(5점): ()점
-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점
-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점

5. 감점

- 최근 3년간 시설원에 분야 사업 포기경력 있는 경우(-10점): ()점

사업자 선정기준표(일반원예시설)

□ 사업자명: (대표자:) □ 총득점: () 점

1. 최근 3년간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50%)

(단위: 톤)

구분	배점	공동선별·계산 실적	총 출하실적	득점
▪ 90%이상	50	▪ '15년: ▪ '16년: ▪ '17년: ▪ 합계(A):	▪ '15년: ▪ '16년: ▪ '17년: ▪ 합계(B):	$(A/B) \times 100 = ()\%$ ()점
▪ 80%이상~90%미만	40			
▪ 70%이상~80%미만	30			
▪ 60%이상~70%미만	20			
▪ 50%이상~60%미만	10			
▪ 50%미만	0			

2. 최근 3년간 총 출하금액 중 수출비중(30%)

(단위: 백만원)

구분	배점	수출금액	총 출하금액	득점
▪ 100%	30	▪ '15년: ▪ '16년: ▪ '17년: ▪ 합계(A):	▪ '15년: ▪ '16년: ▪ '17년: ▪ 합계(B):	$(A/B) \times 100 = ()\%$ ()점
▪ 75%이상~100%미만	24			
▪ 50%이상~75%미만	18			
▪ 25%이상~50%미만	12			
▪ 25%미만	6			

3. 주 품목에 대한 시·도 총출하량 중 점유비율(20%)

(단위: 톤)

구분	배점	해당 조직	○○시·도	득점
▪ 100%	20	▪ '15년: ▪ '16년: ▪ '17년: ▪ 합계(A):	▪ '15년: ▪ '16년: ▪ '17년: ▪ 합계(B):	$(A/B) \times 100 = ()\%$ ()점
▪ 75%이상~100%미만	16			
▪ 50%이상~75%미만	12			
▪ 25%이상~50%미만	8			
▪ 25%미만	4			

4. 가점

- 시설원에 ICT 융복합 확산사업 동시 추진(필수, 5점): ()점
- 국산품종으로만 생산·수출하는 원예전문단지(화훼, 채소)(5점): ()점
- 시·도지사 선정 '색깔 있는 마을'이 포함된 조직(5점): ()점
-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점
-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점

5. 감점

- 최근 3년간 시설원에 분야 사업 포기경력 있는 경우(-10점): ()점

[별첨: 참고2] 기성고 확인서

기성고 확인서

1. 사업명: ○○○○○○○○사업(20 년)

2. 사업자

- 법인명(성명):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남/여>):
- 주소(사업지역):

3. 사업계획(행정기관 승인내역)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사업비				
	총 투자계획 (A=B+C+D)	보조(B)		국고용자 (C)	자부담 (D)
		국고	지방비		

4. 사업실적(20 년 월 일 현재)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사업추진실적			자부담 투입실적		
	총 투자계획 (A)	사업실적 (E)	비율 (E/A)	계획 (D)	실적 (F)	비율 (F/D)

5. 국고용자 지원: 총 금액 천원(기 지원 , 금회지원)

6. 증빙자료: 별첨

위 사업자 기성고에 따른 금회지원분(용자금)을 통장에 입금할 것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농협(은행)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세부사업명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계속)		세목	자치단체자 본보조·경상 보조			
내역사업명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계속)		예산 (백만원)	1,145			
사업목적	○ 주요 생산 권역별로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일관 지원함으로써 조직화 규모화·브랜드(Brand)화를 통한 인삼 전문 생산단지 조성						
사업 주요내용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우량종자 생산시설,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세척기, 탈피기, 저온저장고, 미생물 배양기 등 유통·가공시설 및 SW부문 지원 ○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운영 계획 수립,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홍보 컨설팅 비용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인삼산업법 제3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신규시설 : 총 사업비가 21억원 이상이고, 시설규모가 총 1,000㎡ 이상 ○ 보완시설(신규) : 최근 년도 가동률이 6개월 이상이고 보완 사업비가 6억원 이상인 시설 * 총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자부담금의 50%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지원한도	○ 신규시설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20억원/개소당(사업기간 : 2년)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 : 1억원/개소당(사업기간 : 2년) ○ 보완시설 : 6억원/개소당						
재원구성(%)	국고	30	지방비	40~60	용자	자부담	10~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100	2,100	3,150	9,885		
	보 조	630	630	1,145	3,380		
	지방비	860	860	1,290	3,805		
자부담	610	610	915	2,7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과		사무관 손경문(인삼)		044-201-2239	
시도		인삼산업 담당과					
사·도	사업대상자 : 3.31까지 사·군 담당자 신청 : 4.15까지 사·도 담당자 신청 : 10.31까지			사업시행지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인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인삼 전문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단체·농업법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대상 사업자

(1) 시설규모

- 신규시설 : 총 사업비가 21억원 이상이고, 시설규모가 총 1,000㎡ 이상
- 보완시설(신규) : 최근년도 가동률이 6개월 이상이고 보완 사업비가 6억원 이상인 시설
 - 물량처리 확대, 생산공정 개선 등 노후화된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 개선 등
 - * 단순 리모델링 등은 지원 제외
 - * 가동률 산출기준 : 제조, 집하, 선별, 포장 등을 기준으로 4시간 이상은 1일, 4시간 미만은 0.5일로 계산하여 연간 150일 이상 가동한 시설
 - ※ 보완시설 지원사업은 '18년 예산에 반영되는 경우 시행

나. 별도요건(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인 경우)

- 총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 단, 자기자본 > 자부담금 > 자본금인 경우, 자기자본(결산채무제표)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경우는 가능
 - * 출자금 및 조합원, 운영실적 등 기준일자는 사업신청년도 3월 31일 기준
 -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 지분이 51% 이상을 점유하여야 함(생산자단체는 생산자의 지분을 계산하여 인정, 지자체 지분은 비 생산자 지분으로 간주)

다. 지원제한 기준('18년부터 적용)

- 보완시설 사업자는 최종 지원년도 이후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한 지자체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3. 지원 대상

- 인삼 관련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지원내용 : 우량종자 생산시설,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세척기, 탈피기, 저온저장고, 미생물 배양기 등 유통·가공시설 및 SW부문 지원

◆ SW부문

- USN을 활용한 온·습도, 이산화탄소 등 저온저장고·예냉실·가공장 환경모니터링
- RFID를 활용한 수매/약정관리, 입고고 관리, 재고관리, 가공관리, 선별관리, 운송관리, 자재관리, 판매관리, 경영관리 등 유통·물류관리
- CCTV를 활용한 저장창고, 시설외부 모니터링

- * 인삼산업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확대와 관련된 사업 우선적 지원
 -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등은 가급적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
-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운영 계획 수립,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홍보 컨설팅 비용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1) 자금의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2) 기준사업비
 - 신규시설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20억원/개소당(사업기간 : 2년)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 : 1억원/개소당(사업기간 : 2년)
 - 보완시설 : 6억원/개소당(사업기간 : 2년)
 - * 예산 및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 사업기간은 1년으로 조정 가능
 - 지원비율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 : 국고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 * 단, 보완시설은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 시설 : 개소당 2ha이내(5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 개소당 2ha이내(18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0백만원/ha)
- 인삼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8백만원/ha)
 - 관정 관련 사업비는 최대 150만원 이내로 지원
- 방풍망시설 : 개소당 2ha이내(6백만원/ha)
- 야생동물방지시설 : 개소당 2ha이내(5백만원/ha)
- 도난방지시설 : 개소당 2ha이내(10백만원/ha)
- 인삼 이식기·파종기·수확기 : 대당 5백만원 이내
 - * 지원단가를 준수하되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및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단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 * 다만,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2개 업체 이상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구비하여야 함
 - * GAP(친환경 포함) 미인증 농가는 지원한도액의 90%만 지원

1. 사업신청단계

기본계획수립(농림축산식품부)

-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시달(전년도 12월말)

사업신청(시장·군수 또는 시장·도지사 및 사업법인)

- 사업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당해 연도 3월 31일까지)
 - 도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로 제출하고 시·도지사가 사업을 직접 수행
 - * 사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e-나라도움에 붙임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전자문서 형태)
- 시장·군수는 해당 시·군(또는 시·도)의 중장기 인삼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당해 연도 4월 15일까지)
 -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청회 등 농업인 의견수렴을 통해 참여도 제고
 - 사업추진 및 사업별 목표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수립
- 자부담이 미확보된 경우 사업 신청 제외
 - 각 단계별로 일정수준 이상의 자부담 확보 증빙자료(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명서 등) 의무 제출
 - * 자부담 의무 확보율 : 사업신청단계(3월31일) 10%, 사업대상자 농식품부 선정 전 50%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시·도지사)

- 시·군 또는 사업법인의 사업계획에 대해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순위를 결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
 - 자체 심사·평가지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심사·평가 실시
 - * 각 도의 평가심의위원회는 각 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운영
 - 사업규모와 시설투자의 적정성 등 세부사업비 검토
- 지역 인삼산업발전심의위원회 구성
 - 유통 전문가, 경영자문 전문가, 인삼생산 전문가, 학계 및 연구계, 생산자단체, 농업기술센터 전문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등으로 구성

<인삼산업 발전 심의위원회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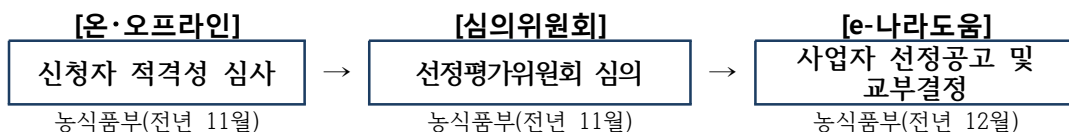
- ① 지자체의 인삼산업 육성전략 수립
- ② 사업계획 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
- ③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종료 후 평가
- ④ 사업추진 자문 등 사업성과 극대화에 필요한 활동

<지자체의 인삼산업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해당 지역의 인삼산업 여건 및 전망, 사업별 목표를 계량화하여 설정
 - 기존의 지역 인삼산업 여건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과 차별화 방안, 소비활성화 및 홍보전략
 - 농업인의 참여율 제고 및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계획 등
-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법인 설립·운영 및 육성방안
 - 컨설팅업체, 농업인(품목조직 포함)·농협·지자체·민간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법인
 - 농가조직화 및 조직원에 대한 교육, 인삼산업을 선도할 법인체 육성방안

-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추진 되도록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재정투자계획과 사업별 투자성과 분석
-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생산·유통·가공단계의 생산성 향상 및 마케팅 계획
 - 인삼 제품류별 생산·수출·판매에 대한 연차별 목표량 및 비율
-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사업 성과·평가계획 수립

2. 사업자 선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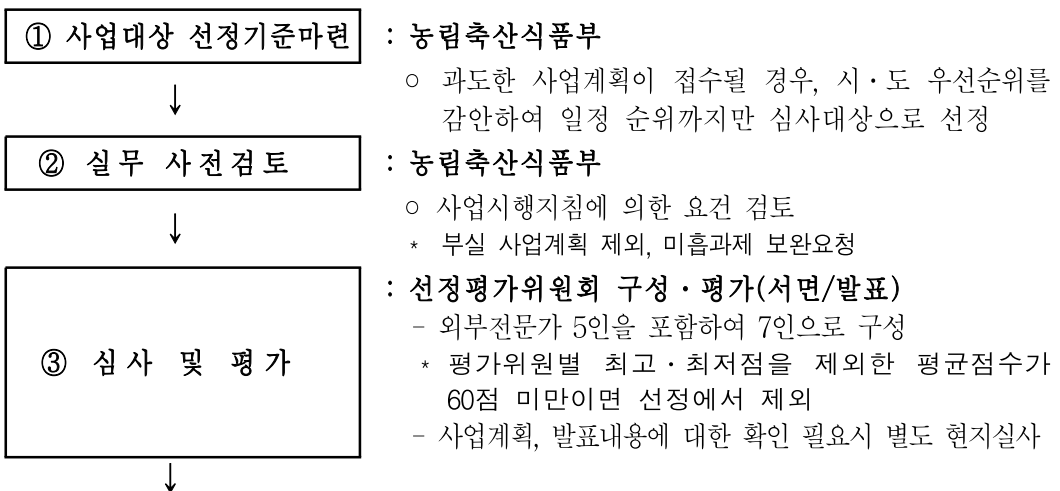
사업대상자 선정(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서 접수 후 사업요건 적합성 및 사업비 적정성 등을 자체검토 후 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서면/발표)
 - 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5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 발표내용에 대한 확인 필요시 별도 현지실사 진행
 - ‘인삼계열화사업’, ‘농기계임대사업’, ‘지리적표시제도’ 등의 사업과 연계한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
 - 2-3개 이상 시·군의 인삼자원을 연계 활용하는 사업계획은 가점 부여
 - 발작물공동경영체 조직은 가점 부여

○ 항목별 선정기준

1. 사업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추진전략의 적정성 ○ 지역 인삼산업발전 계획 연계성 ○ 자금투자 계획의 적정성 ○ 연간 처리물량, 목표, 시설 가동계획 등에 대한 구체성 및 적절성 ○ 사업비 지원종료 후 운영계획
2. 사업참여 범인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의지 ○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 ○ 사업의 성공 가능성 ○ 사업대상자의 설치자금 조달계획, 재무구조 등 운영자금 조달능력, 확보계획, 경영능력
3. 생산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GAP 등) 원료삼 확보를 위한 생산계획, 기술지원, 교육 등에 대한 방안 ○ 농업인의 참여유도, 조직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 우량묘삼의 안정적 공급 방안
4. 유통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 의무자조금 참여 실적 및 계획 ○ 농기계임대사업 등 유통구조개선 추진실적 및 계획 ○ 수출실적 및 수출확대 방안의 적정성
5. 마케팅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케팅 계획의 적정성 ○ 컨설팅업체의 적정성
6.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 확보에 대한 적정성 및 입지조건 등 ○ 타 농림축산식품사업 및 지자체 자체사업 연계실적 및 계획 ○ 2-3개 이상 시·군의 인삼자원을 연계 활용한 사업계획 ○ 발작물공동경영체 조직

○ 심사절차



④ 사업비 심의 · 조정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내용을 근거로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정



⑤ 사업 대상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 사업계획 및 사업비 확정 · 시달

○ 심사 · 평가기준

- 심사위원의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및 구체적인 심사평가 방법은 별도 수립 · 시행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시·도)

○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시 · 도지사(시장 · 군수)는 사업법인으로 하여금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매 연도별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 시행 추진

* 세부사업 추진계획 : 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세부사업비 내역 등

- 시 · 도지사는 시장 · 군수 또는 사업법인이 작성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조치

- 시 · 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 확정 ·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세부추진계획서 제출(한글 파일 전자우송 또는 별도 CD 제출)

○ 사업법인 설립 · 운영

- 사업법인은 농업인, 품목조직, 지역농협, 지자체, 대량수요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여건에 맞는 법인

- 마케팅 · 경영전략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는 컨설팅 업체는 경영 · 유통전문가가 반드시 참여

- 사업법인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관 등에 제도적 장치 마련

- 사업수익 또는 부가가치의 참여주체별 환원 및 재투자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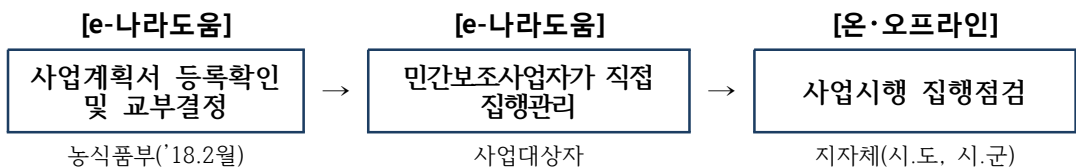
○ 사업추진 컨설팅

- 사업법인은 인삼산업발전방안을 토대로 전문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아 사업추진 로드맵 수립·경영자문
- 컨설팅은 사업계획의 수립에서부터 평가, 농업인 교육, 경영 및 기술지도, 현장애로 사항 해결 등 전 분야에 걸쳐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
- 컨설팅 비용의 지급은 사업 계획의 규모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컨설팅업체와 지자체·사업법인간 계약에 따라 집행
 - 전문 컨설턴트의 활용, 마케팅·경영전략 수립을 기본으로 하고, 개소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지방비, 자부담분 추가 가능)

○ 사업계획 변경절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을 임의로 변경 불가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자)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 기관(시·도, 시·군)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검토 후 집행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기준으로 세부사업의 30% 이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 집행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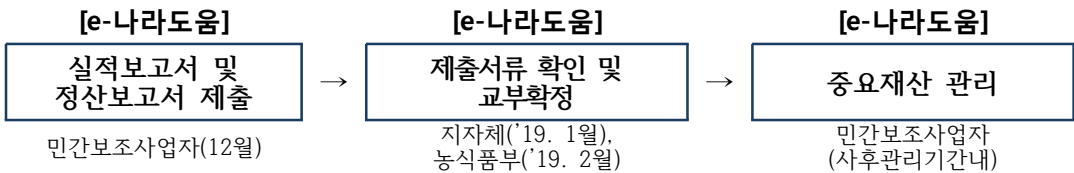


자금배정 신청(시·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 절차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 준수여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는지 여부 확인

5. 이행점검단계 및 사후관리단계

<이행점검>



<사후관리>

- 사후관리·감독 기관 : 해당 지자체(시·군, 시·도)

사업자

- 시설물의 등기(법인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
 -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등 불가
 -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주식양도 및 임원교체 등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
- *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에 따라 조치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지자체)

- 시·도 및 시·군은 관련시설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보조금 교부 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사업추진 진도를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별도서식 없음]
 - * 매년 사업자로부터 제출(또는 열람)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저장·가공시설 등에 대한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업체 선정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 철저
- 사업자가 원물조달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실행을 위해 담보제공 승인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득해야 함(「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대통령령 제26127호, 2015.3.3.)

사업비 검정 및 정산(시·도)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사업완료 검사 신청
-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 후 정산
- 시장·군수는 회계 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 2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사후관리(시·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에 의거 관리
- 「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관리 기간적용」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53호)을 준용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건축물 기계	10년 5년	○ 시장·군수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철저히 관리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매각·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1. 만족도 조사 실시

- 시·도지사는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 인지도, 사업의 적정성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 등에 반영
 - 조사시기 : 12월
 - 조사대상 : 사업 대상자 및 사업참여 농가
- 지자체 평가
 - 평가주체 :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시기 : 사업착수 후 3~6월 이내
 - 평가방법 : 전문가 협의체,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방향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발굴, 사업컨설팅
 - 평가결과 조치 : 당해 연도 사업추진 및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시기 : 당해 연도 사업종료 후 3월 이내
 - 평가방법 : 시·도, 시·군 평가 실시에 대한 종합 평가·분석
 - 평가방향 : 총평, 사업효과(잘된점, 미비점)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
 - 평가결과 조치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신규사업 발굴 등

2. 평가결과 보고서 제출

- 시·도지사는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중간·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평가종료 후 1개월 이내)

세부사업명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자치단체)		예산 (백만원)	3,330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냉(豫冷)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사업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예농산물 저온처리를 위한 예냉설비·저온저장고·선별장 신규 설치 및 보수 지원 							
국고보조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지원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외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16년도 또는 '15년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다만,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2억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농업법인(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지원한도	○ 「사업시행지침」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참고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30	용자	-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9,484	11,100	11,100	11,840			
	국 고	2,845	3,330	3,330	3,552			
	지방비	2,845	3,330	3,330	3,552			
	자부담	3,794	4,440	4,440	4,736			
담당 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시·도 및 시·군)	유통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등(직제에 따름)		사무관 이행은 사무분장 규정에 의함		044-201-2219 -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1월)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 원예농산물 저온처리를 위한 예냉설비·저온저장고·선별장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지원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 단,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0%를 초과하여 점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관 동안에도 충족해야함.
- 사업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 * 관련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외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 ('16년도 또는 '15년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2억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농업법인(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추진하는 모든 시설 및 장비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녹색인증,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인증을 받은 장치 또는 장비의 우선 설비를 권장함

3. 지원대상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기존 선별장의 저온화 개보수
 - * 중점지원품목 :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상추, 시금치, 양채류, 버섯류, 신선편이농산물, 친환경원예농산물, 배추·무 등 김치원료(단, 화훼, 식량작물, 임산물은 제외)
- ※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시설 설치 시 ICT융복합을 위한 입출고관리, 재고관리 등 스마트 관리기반 포함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예냉설비·저온저장고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기존 선별장의 저온화 개보수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참고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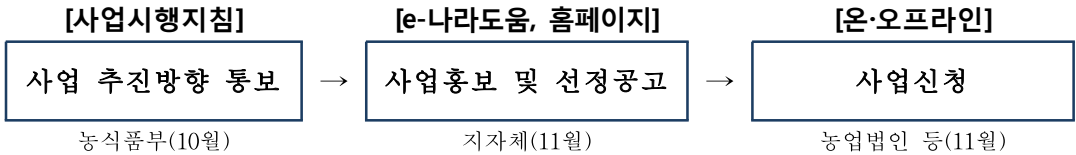
- 자금의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형태 : 보조(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 분		지원규모 (한도)	사업비(백만원)		기준단가	비고		
			신규	개보수				
산지 저온 시설 및 저온 수송 차량	예 냉 설 비	차압식	66㎡까지	70	1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규 : 106만원/㎡ ▪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 		
		강제통풍식	66㎡까지	60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규 : 91만원/㎡ ▪ 개보수 : 신규의 25% 이하 		
		진공식 (수냉식, 공랭식)	1대	2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백만원/대 		
	저온저장고		99㎡~ 660㎡	130~ 860	60 ~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규 : 130만원/㎡ ▪ 개보수 : 신규의 5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보수 : 낙후된 저온시설에서 저온시설로 내부를 개조하는 것(예냉시설, 바닥, 내벽 등) * 상온시설에서 저온시설로 개보수하는 것은 신규로 적용 * 기준단가는 건축, 전기·통신, 소방 등 시설공사비 일체 	
	저온선별장		99㎡~ 660㎡	90~ 600	30~ 1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규 : 90만원/㎡ ▪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 		-
	저온냉장 수송차량 (PCM저온 수송차량)	1톤이상 ~ 5톤이하	1대	11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성차량 ▪ 개조차량 (화물자동차 + 왕바디, 축 설치) 가격에서 매칭비율로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 수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왕바디 차량권장 개조차량은 신차만 해당 ▪ PCM 축냉식 냉장차량 도입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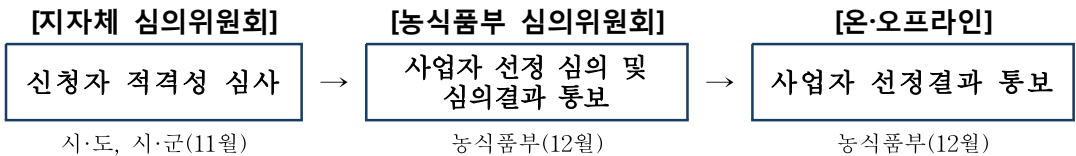
- * 시설 지원 받기 전 필요시 구조안전진단, 토질조사보고서 등은 해당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 진행
- * 산지저온시설 외 용도로는 지원 불가능(승강기 등)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전년도 10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등 사업 추진방향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각 지자체는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공고 실시
-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중 부지가 확보되어 당해 연도 사업완료가능한 법인체에 한해 사업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심사기초자료, 증빙서류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 부지확보 증빙 : 사업자 소유 토지등기부 등본, 부지 매매계약체결 또는 가등기 완료에 한해 인정

2. 사업자 선정단계



- 선정체계 : 시·군·구에서는 신청된 사업별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시·도에 제출, 시·도는 심의위원회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는 시·군에서 신청된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사업계획서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사전 자체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지원 우선 순위와 지방비 매칭 가능 여부 등을 결정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 선정주체 : 지자체(시·군→시·도) 심의위원회에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 → 농식품부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 계획 연계성, 지원 필요성, 기대효과, 시·도 추천 순위 등을 종합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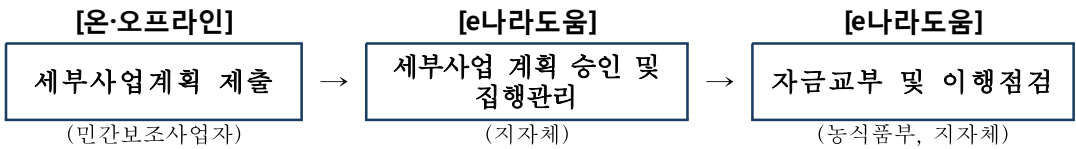
(1) 지자체

- (시·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접수 된 서류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업 신청자를 시·도에 추천
- (시·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시군에서 추천된 사업대상자 서류 등을 검토 하여 적합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매겨 농식품부에 최종 추천

(2) 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에 통지
- * 발작물공동경영체 우수경영체를 대상으로 사업비 10%내 우선 선정
- * 원예산업종합계획 수립 시·군은 사업자 선정 시 가점 부여

3. 세부계획수립 및 사업시행단계



(1)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 저온유통사업자로 선정된 조직은 사업 시행연도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제출(저온수송차량지원 사업자도 포함)
 - * 세부사업계획서 내용 : 1. 지원시설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계획 및 자금 소요시기
2. 지원시설활용을 통한 세부사업계획 등
- 지자체는 제출받은 세부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집행 관리
 - 해당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고 반납(이월 시 지자체 승인 후 농식품부 보고)
- 사업자 선정 후 사업포기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를 한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계획 변경은 단위사업비 10%미만은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면 시·도지사가 검토·시행하고 사업비 10%이상 변경, 기본방침 및 주요 사업내용 변경은 농식품부에서 승인

(2) 자금교부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지자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 후 소요사업비에 대한 교부 결정
- 농식품부는 시·도 및 aT에 교부 결정된 사항을 통지하고 자금교부

지 자 체

- 사업비 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한 후 보조금을 집행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대조 등을 통한 자부담 전액을 실행한 증거(금융기관 거래 자료 등)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 지자체는 교부 시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지자체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3) 이행점검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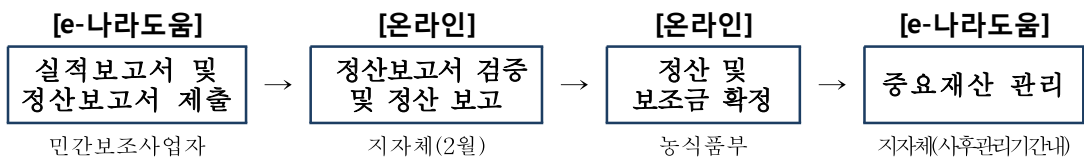
- 사업추진 실적 중간점검(사업집행단계)
 - 점검시기 : 당해연도 5월, 10월[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등 조치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중간점검(사업집행단계)
 - 매 분기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농식품부에 제출,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의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63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 부서에 반드시 통보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실적보고 및 정산]

- 사업주관기관(시·군)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사업비 정산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1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6조(중요재산의 관리) 별표4을 준용하여 관리

- 사업주관기관(시·군)은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중요재산의 현황을 e나라도움에 등록,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관리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저장·가공시설 등에 대한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업체를 선정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후관리 합동점검
 - 점검시기: 당해연도 5월, 10월 중 농식품부와 합동점검[지방자치단체] 및 각 시·도는 추진실태 점검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 '10년~12년 지원된 사업대상자는 농식품부와 aT 합동점검
 - 점검내용: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등 조치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중간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농식품부에 제출,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이 aT일 경우 농식품부장관, 자치단체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의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IV

평가 및 환류

[사업운영평가]

- 지원사업체의 연간 취급실적 및 저장·가공 출하실적 등을 평가
 - 지자체는 사업종료 후 매 익년 2월까지 사업실적(해당지역 수급조절 등 효과 포함) 평가 분석하여 보고
 - 평가방법
 - 평가주관기관 : 지자체
 - 평가기간 : 다음년도 2 ~ 3월
 - 평가대상 : 전년도까지 선정·지원된 저온유통사업자
- * 사업자는 선정연도 이후 5년간 실적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

[평가결과 환류]

- 우수 지자체에 차년도 사업 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V

201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대상자 선정계획

[2019년도 사업수요조사]

- 지자체에서는 '19년도 사업신청대상자 수요조사서를 '18. 3월말까지 농식품부 제출
 - 제출방법: 신청서 작성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201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신청서 제출기한 : 사업희망자 → 시·군('18.8월경) → 시·도('18.9월초) → 농식품부('18.9월말)
- '19년도 사업대상자 선정(농식품부) : '18.10월중
 - * 사업대상자 선정기한은 변경될 수 있음

2018년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 신청서

※ 신청내역 : 지원을 받고자 신청하는 해당 내역에 모두에 대하여 시설 규모(㎡, 대)를 표기

시도	시군	법인형태*	법인명	신청내역*			
				예냉설비	저온 저장고	저온 선별장	저온 수송차량

* 법인형태 :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법인(합명, 합자, 주식, 유한)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구분이 중복 적용시 함께 기재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총출자액)이 50%초과 점유(사후관리기간 동일 충족)

경영체 지분 현황				
전체 조합원(명)	농업인(명)	총 출자금(천원)	농업인 출자금(천원)	농업인 출자금 비율(%)

▶ 별첨 증빙자료!!

- 1)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출자자 명단,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증 등 관련 증빙자료

1. 일반 현황

조 직 명		대표자명	
소 재 지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요취급품목		설립연도	
취급물량(톤)		출 자 금	
*정부사업 참여 현황		출자조합원수	

* 정부사업 참여현황: 최근 5년동안 농식품부 정부지원사업 기재(산지유통활성화사업, APC 사업, 수급안정사업 등)

▶ 별첨 증빙자료!!

- 2)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원예산업발전계획상 법인 참여 및 발전 방향 등 포함내용

2. 조직화 현황

(단위: 호, ha, 톤)

구분	주요 취급품목	참여 농가수	재배 면적	생산(취급)량
시군(A)				
법인(B)				
참여율(B/A)				

주) 법인과와의 계약재배, 법인을 통한 통합마케팅(수탁, 매취) 등 참여 실적

▶ 별첨 증빙자료!!

4) 시군 관련 통계자료

5) 계약재배 및 통합마케팅 계약체결 현황자료

3. 원예농산물 매출 실적

(단위: 톤, 백만원)

취급품목	2015년		2016년	
	물량	매출액	물량	매출액
합 계				

주1) 양곡, 축산을 제외한 취급하는 원예농산물의 매출 규모를 최근 2개년 실적 기재

주2) 상위 3개 품목은 품목별로 기재하고, 나머지 품목은 합하여 기타 란에 기재하되 중점 지원품목(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시금치, 상추, 양채류, 버섯류, 신선편이농산물, 친환경 원예농산물, 배추·무 등 김치원료)은 별도 구분하여 기재

▶ 별첨 증빙자료!!

6) 품목별 판매실적 자료

4. 원예농산물 거래처별 판매실적(2016년)

(단위: 톤, 백만원)

구분 \ 품목	()		()		()		기타		합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공영도매시장										
공판장										
간이(유사)공판장										
대형유통업체										
전자상거래										
식자재업체										
수출										
군납										
기타										
합계										

주) 취급규모가 큰 3개 품목을 ()에 기재하고 나머지는 합산 기타에 기재

▶ 별첨 증빙자료!!

7) (법인)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세부내역 / (농협) 출하처별 매출실적 총괄표 및 세부내역

5. 재무구조 현황

(단위: 백만원)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계
자본 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결손금)	계

주) 이익잉여금에 결손금일 경우 ‘△(마이너스를 의미)’로 표기(마이너스를 의미)

▶ 별첨 증빙자료!!

8) 결산 완료 재무제표, 손익내역표(일반유형/세목) 등

6. 원물 확보현황

품 목	원물 확보방법*	사업물량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톤
합 계		톤

* 원물 확보방법: ①자가생산 ②계약재배 ③산지생산자 직구매 ④산지조합 ⑤도매시장 ⑥산지수집상 등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기재

▶ 별첨 증빙자료!!

9) 원물 확보 방법별 계약서 등

7. 지원신청 세부계획

<산지저온시설>

산지저온시설 설치 계획

(단위: m², 백만원)

시 설		신 규					개보수				
		규모	사 업 비				규모	사 업 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예냉 설비	차압식										
	강제통풍식										
	진공식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주1) 예냉설비의 신청은 조직당 1종류로 한정하며, 신규와 개보수 중 선택

주2) 규모·신청금액은 공고문의 “시설별 지원한도액 내”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규모와 금액 기재

주3) 예냉설비의 종류는 지역, 품목의 특성에 맞게 신청

□ 산지저온시설 설치예정 부지 현황

시 설 명	설치 예정지 주소	저온시설 연계여부	근저당 설정 현황	
			설정여부	설정 내역
예냉설비		예) 기존 선별장에 신규 설치		은행/ 백만원
저온선별장		예) 저온저장고 연계 신규 설치/ 기존 저 온저장고와 연계		
저온저장고 (개보수)				
저온저장고 (신규)				

○ 저온저장고(신규) 및 예냉설비 별도설치의 경우 부지 확보현황(해당사항 체크)

- 부지 기 확보(법인 또는 조합 명의로 등기되어야 함) ()
-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지급 혹은 소유권 이전 중 ()
- 부지 미 확보 () → 부지확보계획 ()

※ 산지저온시설 예정 부지 및 시설에 근저당이 설정되었을 경우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확보된 부지의 사용가능 여부(해당사항 체크)

- 설치예정 부지에 해당 건축물 증·개축시 관련법 저촉 여부 ()
- ※ 해당 부지 건폐율 및 개발제한 등을 지자체에 사전 조사하여야 함
- 관련법에 저촉 시, 행정당국의 조건부 허가 등으로 증·개축 가능 여부 ()

▶ 별첨 증빙자료!!

10) (신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 / (개보수) 건물 등기부등본

<저온수송차량>

□ 저온수송차량 구입 계획

(단위: 톤, 백만원)

규모	구분	형식	예상 구입금액	이용품목	이용용도
0톤					

주1) 규모는 1톤 이상 ~ 5톤 이하 중 선택

주2) 구분은 기성차량 / 개조차량, 형식은 일반냉장 / PCM축냉식 중 구분하여 기재

주3) 예상 구입금액은 차량 견적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

사업비 지출 계획

(단위: 톤, 백만원)

규모	총사업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액

주1) 사업비는 선정 공고 상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보조금 신청은 지원을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나, 초과분에 대한 자부담액 증액은 가능

저온저장시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접안식 테크 설치 유무 : 설치(), 미설치()

※ 해당사항에 '√' 체크

8. 저온유통시설 보유 현황

가. 저온유통 관련 시설투자 현황 (보유시설 기준)

(단위: m², 백만원)

구 분	면적	취득가액 (A)	감가상각누계액 (B)	장부가액 (A - B)
총 계				

주1) 보유한 전체 시설별(예냉시설, 저온선별장, 저온저장고, 저온수송차량)로 구분하여 기재

주2) 김치가공업체의 경우 기타 김치가공 관련 보유 시설을 포함하여 작성

▶ 별첨 증빙자료!!

11) 최근 사업년도(2016년) 말 기준 『고정자산명세표』 또는 『사무소별 자산현황』

단, 장부상 시설내역이 불명확할 경우 해당 시설 관련 별도 증빙 추가 첨부

12) 기존 저온유통 관련 보유시설 사진 첨부

나. 주요 시설 이용 현황

(단위: m², 대)

구 분	예냉시설	선별장		저장고		가공시설		수송차량	
		일반	저온	일반	저온	일반	저온	일반	저온
자 가									
임 대									
합 계									

주) 임대는 임대계약을 체결 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다.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유사자금 지원 및 사업포기 여부('13년 ~ '16년)

해당 연도	지자체	업체명	지원내역	지원형태	지원규모	국비 (백만원)	비고
2013	시도 (시군구)		시설(저온저장고, 선별장, 예냉시설)	시설 (신축, 개보수)	m ²		사업포기 사유
2014	시도 (시군구)		차량	차량 (일반, PCM)	톤*대		해당 없음
2015							
2016							

주) 비고란에는 사업포기 사유

9. 기타 사업현황

가. GAP 및 품질관리사 보유 여부

GAP 시설인증		GAP 조직인증		농산물품질관리사 보유	
여	부	여	부	여 *인원	부
				기재	
				* 명	

주) 농산물품질관리사의 경우 국가 공인 자격증 소지자만 체크

▶ 별첨 증빙자료!!

13) “여” 체크 시, GAP 시설 및 조직 인증서 사본

14) “여” 체크 시, 품질관리사 자격증 사본

나. 정부사업 참여 여부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법인 해당)		수급안정사업 참여 여부(농협 해당)	
여	부	여	부

▶ 별첨 증빙자료!!

15) 법인의 경우 “여” 체크 시,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사본

16) 농협의 경우 “여” 체크 시, 계약재배 품목, 금액, 참여 농가수 현황 별지 작성 첨부

다. 품질인증 여부

HACCP	ISO 9001	기타
		(전통식품품질인증, 가공식품KS인증)

▶ 별첨 증빙자료!!

17) “√” 체크 시, 각 인증서 사본 (농협) 계약재배 품목, 금액, 참여 농가수 현황 별지 작성 첨부

10. 저온유통 사업 목표 및 성과 지표

○ 현재 저온유통 현황 및 매출 규모 대비 수준(비율)

-

○ 향후 시설 설치 및 개보수(보완)을 통해 저온유통체계 운영 목표 및 지표

-

주) 현황 및 목표를 가능한 수치화(계량화)하여 상세히 표기

세부사업명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저온유통체계구축(저온수송차량)(자치단체)		예산 (백만원)	312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예냉(豫冷)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사업주요내용	○ 원예농산물 저온처리를 위한 예냉설비·저온저장고·선별장 신규 설치 및 보수 지원							
국고보조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지원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외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16년도 또는 '15년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다만,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2억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농업법인(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지원한도	○ 「사업시행지침」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참고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30	용자	-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040	1,040	1,040	1,080			
	국 고	312	312	312	324			
	지방비	312	312	312	324			
	자부담	416	416	416	432			
담당 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시도 및 시군)		유통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등(직제에 따름)		사무관 이행은 사무분장 규정에 의함		044-201-2219 -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1월)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저온유통체계구축(저온수송차량)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을 위한 저온수송차량 신규 구입 및 개조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 단,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0%를 초과하여 점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관 동안에도 충족해야함.
- 사업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 * 관련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외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 ('16년도 또는 '15년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2억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농업법인(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추진하는 모든 시설 및 장비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녹색인증,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인증을 받은 장치 또는 장비의 우선 설비를 권장함

3. 지원대상

- 일반 저온수송차량 및 PCM 축냉식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1톤 이상 5톤 미만) 신규 구입 및 개조
 - * 중점지원품목 :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상추, 시금치, 양채류, 버섯류, 신선편이농산물, 친환경원예농산물, 배추·무 등 김치원료(단, 화훼, 식량작물, 임산물은 제외)
- ※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시설 설치 시 ICT융복합을 위한 입출고관리, 재고관리 등 스마트 관리기반 포함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1톤 이상 5톤 미만) 신규 구입 및 개조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참고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금의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형태 : 보조(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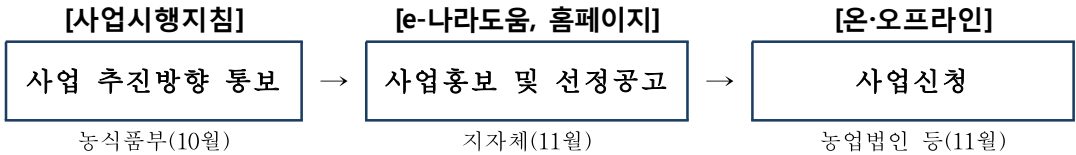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 분		지원규모 (한도)	사업비(백만원)		기준단가	비고
			신규	개보수		
산지 저온 시설	예 냉 설 비	차압식	66m ² 까지	70	1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규 : 106만원/m² ▪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
		강제통풍식	66m ² 까지	60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규 : 91만원/m² ▪ 개보수 : 신규의 25% 이하
		진공식 (수냉식, 공랭식)	1대	2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백만원/대
및 저온 수송 차량	저온저장고		99m ² ~ 660m ²	130~ 860	60 ~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규 : 130만원/m² ▪ 개보수 : 신규의 50% 이하
	저온선별장		99m ² ~ 660m ²	90~ 600	30~ 1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규 : 90만원/m² ▪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
	저온냉장 수송차량 (PCM저온 수송차량)	1톤이상 ~ 5톤이하	1대	11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성차량 ▪ 개조차량 (화물자동차 + 왕바디, 축 설치) 가격에서 매칭비율로 보조

* 시설 지원 받기 전 필요시 구조안전진단, 토질조사보고서 등은 해당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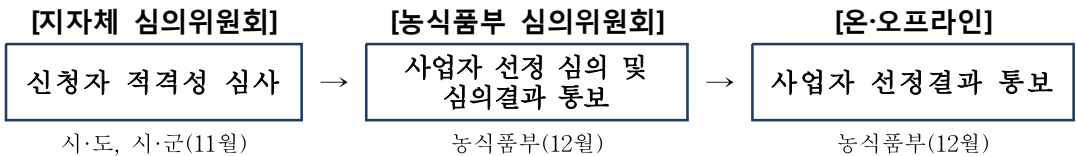
* 산지저온시설 외 용도로는 지원 불가능(승강기 등)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전년도 10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등 사업 추진방향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각 지자체는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공고 실시
-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중 부지가 확보되어 당해 연도 사업완료가능한 법인체에 한해 사업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심사기초자료, 증빙서류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 부지확보 증빙 : 사업자 소유 토지등기부 등본, 부지 매매계약체결 또는 가등기 완료에 한해 인정

2. 사업자 선정단계



- 선정체계 : 시·군·구에서는 신청된 사업별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시·도에 제출, 시·도는 심의위원회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는 시·군에서 신청된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사업계획서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사전 자체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지원 우선 순위와 지방비 매칭 가능 여부 등을 결정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 선정주체 : 지자체(시·군→시·도) 심의위원회에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 → 농식품부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 계획 연계성, 지원 필요성, 기대효과, 시·도 추천 순위 등을 종합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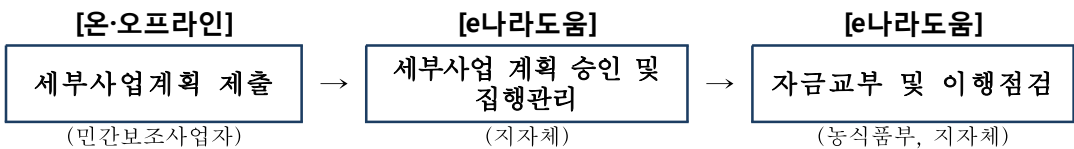
(1) 지자체

- (시·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접수 된 서류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업 신청자를 시·도에 추천
- (시·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시군에서 추천된 사업대상자 서류 등을 검토 하여 적합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매겨 농식품부에 최종 추천

(2) 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에 통지
- * 발작물공동경영체 우수경영체를 대상으로 사업비 10%내 우선 선정
- * 원예산업종합계획 수립 시·군은 사업자 선정 시 가점 부여

3. 세부계획수립 및 사업시행단계



(1)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 저온유통사업자로 선정된 조직은 사업 시행연도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제출(저온수송차량지원 사업자도 포함)
- * 세부사업계획서 내용 : 1. 지원시설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계획 및 자금 소요시기
2. 지원시설활용을 통한 세부사업계획 등
- 지자체는 제출받은 세부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집행 관리
 - 해당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고 반납(이월 시 지자체 승인 후 농식품부 보고)
- 사업자 선정 후 사업포기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를 한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계획 변경은 단위사업비 10%미만은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면 시·도지사가 검토·시행하고 사업비 10%이상 변경, 기본방침 및 주요 사업내용 변경은 농식품부에서 승인

(2) 자금교부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지자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 후 소요사업비에 대한 교부 결정
- 농식품부는 시·도 및 aT에 교부 결정된 사항을 통지하고 자금교부

지 자 체

- 사업비 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한 후 보조금을 집행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대조 등을 통한 자부담 전액을 실행한 증거(금융기관 거래자료 등)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 지자체는 교부 시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지자체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3) 이행점검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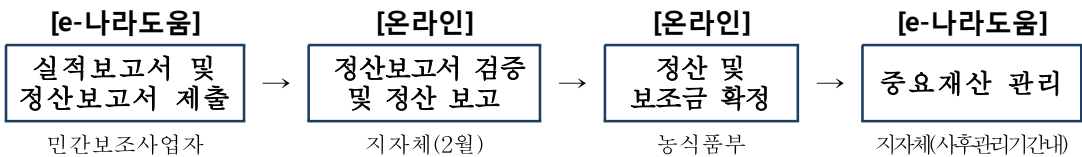
- 사업추진 실적 중간점검(사업집행단계)
 - 점검시기 : 당해연도 5월, 10월[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등 조치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중간점검(사업집행단계)
 - 매 분기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농식품부에 제출,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의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 부서에 반드시 통보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실적보고 및 정산]

- 사업주관기관(시·군)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사업비 정산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1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중요재산의 관리) 별표4을 준용하여 관리

- 사업주관기관(시·군)은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중요재산의 현황을 e나라도움에 등록,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관리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저장·가공시설 등에 대한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업체를 선정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후관리 합동점검
 - 점검시기: 당해연도 5월, 10월 중 농식품부와 합동점검[지방자치단체] 및 각 시·도는 추진실태 점검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 '10년~12년 지원된 사업대상자는 농식품부와 aT 합동점검
 - 점검내용: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등 조치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중간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농식품부에 제출,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이 aT일 경우 농식품부장관, 자치단체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의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사업운영평가]

- 지원사업체의 연간 취급실적 및 저장·가공 출하실적 등을 평가
 - 지자체는 사업종료 후 매 익년 2월까지 사업실적(해당지역 수급조절 등 효과 포함) 평가 분석하여 보고
 - 평가방법
 - 평가주관기관 : 지자체
 - 평가기간 : 다음년도 2 ~ 3월
 - 평가대상 : 전년도까지 선정·지원된 저온유통사업자
- * 사업자는 선정연도 이후 5년간 실적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

[평가결과 환류]

- 우수 지자체에 차년도 사업 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2019년도 사업수요조사]

- 지자체에서는 '19년도 사업신청대상자 수요조사서를 '18. 3월말까지 농식품부 제출
 - 제출방법: 신청서 작성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201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신청서 제출기한 : 사업희망자 → 시·군('18.8월경) → 시·도('18.9월초) → 농식품부('18.9월말)
- '19년도 사업대상자 선정(농식품부) : '18.10월중
 - * 사업대상자 선정기한은 변경될 수 있음

2018년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 신청서

※ 신청내역 : 지원을 받고자 신청하는 해당 내역에 모두에 대하여 시설 규모(㎡, 대)를 표기

시도	시군	법인형태*	법인명	신청내역*			
				예냉설비	저온 저장고	저온 선별장	저온 수송차량

* 법인형태 :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법인(합명, 합자, 주식, 유한)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구분이 중복 적용시 함께 기재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총출자액)이 50%초과 점유(사후관리기간 동일 충족)

경영체 지분 현황				
전체 조합원(명)	농업인(명)	총 출자금(천원)	농업인 출자금(천원)	농업인 출자금 비율(%)

▶ 별첨 증빙자료!!

- 1)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출자자 명단,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증 등 관련 증빙자료

1. 일반 현황

조 직 명		대 표 자 명	
소 재 지		담 당 자 명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주 요 취 급 품 목		설 립 연 도	
취 급 물 량 (톤)		출 자 금	
* 정부사업 참여 현황		출 자 조 합 원 수	

* 정부사업 참여현황: 최근 5년동안 농식품부 정부지원사업 기재(산지유통활성화사업, APC 사업, 수급안정사업 등)

▶ 별첨 증빙자료!!

- 2)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원예산업발전계획상 법인 참여 및 발전 방향 등 포함내용

2. 조직화 현황

(단위: 호, ha, 톤)

구분	주요 취급품목	참여 농가수	재배 면적	생산(취급)량
시군(A)				
법인(B)				
참여율(B/A)				

주) 법인과와의 계약재배, 법인을 통한 통합마케팅(수탁, 매취) 등 참여 실적

▶ 별첨 증빙자료!!

4) 시군 관련 통계자료

5) 계약재배 및 통합마케팅 계약체결 현황자료

3. 원예농산물 매출 실적

(단위: 톤, 백만원)

취급품목	2015년		2016년	
	물량	매출액	물량	매출액
합 계				

주1) 양곡, 축산을 제외한 취급하는 원예농산물의 매출 규모를 최근 2개년 실적 기재

주2) 상위 3개 품목은 품목별로 기재하고, 나머지 품목은 합하여 기타 란에 기재하되 중점 지원품목(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시금치, 상추, 양채류, 버섯류, 신선편이농산물, 친환경 원예농산물, 배추·무 등 김치원료)은 별도 구분하여 기재

▶ 별첨 증빙자료!!

6) 품목별 판매실적 자료

4. 원예농산물 거래처별 판매실적(2016년)

(단위: 톤, 백만원)

구분 \ 품목	()		()		()		기타		합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공영도매시장										
공판장										
간이(유사)공판장										
대형유통업체										
전자상거래										
식자재업체										
수출										
군납										
기타										
합계										

주) 취급규모가 큰 3개 품목을 ()에 기재하고 나머지는 합산 기타에 기재

▶ 별첨 증빙자료!!

7) (법인)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세부내역 / (농협) 출하처별 매출실적 총괄표 및 세부내역

5. 재무구조 현황

(단위: 백만원)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계
자본 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결손금)	계

주) 이익잉여금에 결손금일 경우 ‘△(마이너스를 의미)’로 표기(마이너스를 의미)

▶ 별첨 증빙자료!!

8) 결산 완료 재무제표, 손익내역표(일반유형/세목) 등

6. 원물 확보현황

품 목	원물 확보방법*	사업물량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톤
합 계		톤

* 원물 확보방법: ①자가생산 ②계약재배 ③산지생산자 직구매 ④산지조합 ⑤도매시장
⑥산지수집상 등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기재

▶ 별첨 증빙자료!!

9) 원물 확보 방법별 계약서 등

7. 지원신청 세부계획

<산지저온시설>

산지저온시설 설치 계획

(단위: m², 백만원)

시 설		신 규					개보수				
		규모	사 업 비				규모	사 업 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예냉 설비	차압식										
	강제통풍식										
	진공식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주1) 예냉설비의 신청은 조직당 1종류로 한정하며, 신규와 개보수 중 선택

주2) 규모·신청금액은 공고문의 “시설별 지원한도액 내”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규모와 금액 기재

주3) 예냉설비의 종류는 지역, 품목의 특성에 맞게 신청

□ 산지저온시설 설치예정 부지 현황

시 설 명	설치 예정지 주소	저온시설 연계여부	근저당 설정 현황	
			설정여부	설정 내역
예냉설비		예) 기존 선별장에 신규 설치		은행/ 백만원
저온선별장		예) 저온저장고 연계 신규 설치/ 기존 저 온저장고와 연계		
저온저장고 (개보수)				
저온저장고 (신규)				

○ 저온저장고(신규) 및 예냉설비 별도설치의 경우 부지 확보현황(해당사항 체크)

- 부지 기 확보(법인 또는 조합 명의로 등기되어야 함) ()
-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지급 혹은 소유권 이전 중 ()
- 부지 미 확보 () → 부지확보계획 ()

※ 산지저온시설 예정 부지 및 시설에 근저당이 설정되었을 경우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확보된 부지의 사용가능 여부(해당사항 체크)

- 설치예정 부지에 해당 건축물 증·개축시 관련법 저촉 여부 ()
- ※ 해당 부지 건폐율 및 개발제한 등을 지자체에 사전 조사하여야 함
- 관련법에 저촉 시, 행정당국의 조건부 허가 등으로 증·개축 가능 여부 ()

▶ 별첨 증빙자료!!

10) (신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 / (개보수) 건물 등기부등본

<저온수송차량>

□ 저온수송차량 구입 계획

(단위: 톤, 백만원)

규모	구분	형식	예상 구입금액	이용품목	이용용도
○톤					

주1) 규모는 1톤 이상 ~ 5톤 이하 중 선택

주2) 구분은 기성차량 / 개조차량, 형식은 일반냉장 / PCM축냉식 중 구분하여 기재

주3) 예상 구입금액은 차량 견적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

사업비 지출 계획

(단위: 톤, 백만원)

규모	총사업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액

주1) 사업비는 선정 공고 상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보조금 신청은 지원을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나, 초과분에 대한 자부담액 증액은 가능

저온저장시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접안식 테크 설치 유무 : 설치(), 미설치()

※ 해당사항에 '√' 체크

8. 저온유통시설 보유 현황

가. 저온유통 관련 시설투자 현황 (보유시설 기준)

(단위: m², 백만원)

구 분	면적	취득가액 (A)	감가상각누계액 (B)	장부가액 (A - B)
총 계				

주1) 보유한 전체 시설별(예냉시설, 저온선별장, 저온저장고, 저온수송차량)로 구분하여 기재

주2) 김치가공업체의 경우 기타 김치가공 관련 보유 시설을 포함하여 작성

▶ 별첨 증빙자료!!

11) 최근 사업년도(2016년) 말 기준 『고정자산명세표』 또는 『사무소별 자산현황』

단, 장부상 시설내역이 불명확할 경우 해당 시설 관련 별도 증빙 추가 첨부

12) 기존 저온유통 관련 보유시설 사진 첨부

나. 주요 시설 이용 현황

(단위: m², 대)

구 분	예냉시설	선별장		저장고		가공시설		수송차량	
		일반	저온	일반	저온	일반	저온	일반	저온
자 가									
임 대									
합 계									

주) 임대는 임대계약을 체결 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다.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유사자금 지원 및 사업포기 여부('13년 ~ '16년)

해당 연도	지자체	업체명	지원내역	지원형태	지원규모	국비 (백만원)	비고
2013	시도 (시군구)		시설(저온저장고, 선별장, 예냉시설)	시설 (신축, 개보수)	m ²		사업포기 사유
2014	시도 (시군구)		차량	차량 (일반, PCM)	톤*대		해당 없음
2015							
2016							

주) 비고란에는 사업포기 사유

9. 기타 사업현황

가. GAP 및 품질관리사 보유 여부

GAP 시설인증		GAP 조직인증		농산물품질관리사 보유	
여	부	여	부	여 *인원	부
				기재	
				* 명	

주) 농산물품질관리사의 경우 국가 공인 자격증 소지자만 체크

▶ 별첨 증빙자료!!

13) “여” 체크 시, GAP 시설 및 조직 인증서 사본

14) “여” 체크 시, 품질관리사 자격증 사본

나. 정부사업 참여 여부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법인 해당)		수급안정사업 참여 여부(농협 해당)	
여	부	여	부

▶ 별첨 증빙자료!!

15) 법인의 경우 “여” 체크 시,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사본

16) 농협의 경우 “여” 체크 시, 계약재배 품목, 금액, 참여 농가수 현황 별지 작성 첨부

다. 품질인증 여부

HACCP	ISO 9001	기타
		(전통식품품질인증, 가공식품KS인증)

▶ 별첨 증빙자료!!

17) “√” 체크 시, 각 인증서 사본 (농협) 계약재배 품목, 금액, 참여 농가수 현황 별지 작성 첨부

10. 저온유통 사업 목표 및 성과 지표

○ 현재 저온유통 현황 및 매출 규모 대비 수준(비율)

-

○ 향후 시설 설치 및 개보수(보완)을 통해 저온유통체계 운영 목표 및 지표

-

주) 현황 및 목표를 가능한 수치화(계량화)하여 상세히 표기

세부사업명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저온유통체계구축(화훼류습식유통)		예산 (백만원)	113				
사업목적	○ 절화류 고품질 생산으로 신선도 유지를 통해 소비자 신뢰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							
사업 주요내용	○ 습식대차, 습식물통, 화훼포장망, 수명연장제 등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기금의 지출 대상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 2010~2017년 기간 중 화훼류 습식유통 실적이 있거나 새롭게 참여하고자 하는 화훼생산자단체 및 화훼농가 등 * 단, 개인출하농가는 공판장으로 습식출하를 하는 농가에 한함							
지원한도	○ 습식대차 900천원/대, 습식물통 30천원/통, 화훼포장망 13천원/망, 수명연장제 400천원/개 등 - 기준단가는 예시 기준으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 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거쳐 집행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00	200	226	678			
	국 고	100	100	113	339			
	자부담	100	100	113	339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이강권		044-201-2261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		
관련자료	저온유통체계구축(화훼류습식유통)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개인출하농가(화훼류 습식유통), 양잠 생산자조직(양잠산물저온유통)
 - * 단,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1%이상을 점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관 동안도 충족해야함.
- 사업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화훼류습식유통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 지원자격 및 요건

- 화훼류습식유통: 2013~2017년 기간 중 화훼류 습식유통 실적이 있거나 새롭게 참여하고자 하는 화훼생산자단체 및 화훼농가 등
 - * 단, 개인출하농가는 공판장으로 습식출하를 하는 농가에 한함

3. 지원대상

- 화훼류습식유통: 습식대차, 습식물통, 화훼포장망, 수명연장제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화훼류습식유통: 습식대차, 습식물통, 화훼포장망, 수명연장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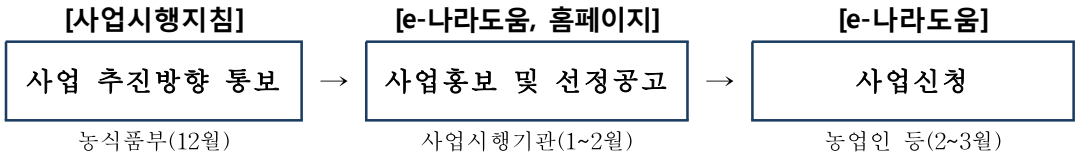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화훼류습식유통: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출하의무물량: 사업대상자는 3년간(지원받은 연도 포함)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공판장 또는 농협 화훼공판장으로 습식출하하는 물량을 직전년도 습식출하물량 대비 10% 이상 확대
 - * 2017년도 습식출하 실적에 따라 2018년 사업비 배정 시 반영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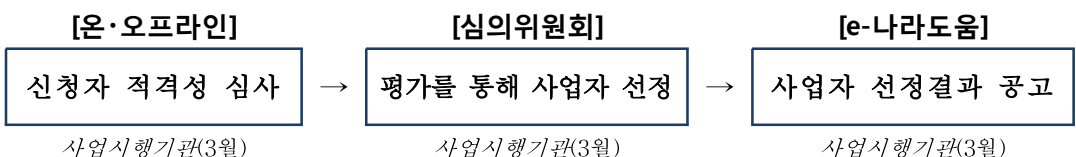
- 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 및 기준, 범위 등을 명시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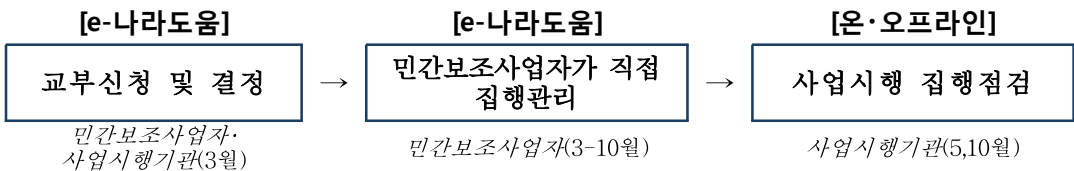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 규정」 제35조제6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 농식품사업이 융자사업 등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공고시스템(또는 Agrix) 활용하고 신청 접수할 수 있다.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한다.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야 한다.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농업인, 농법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 사업시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농업기술센터, 대출취급기관 등의 사업검토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51조)
 -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 e나라도움을 통해 예약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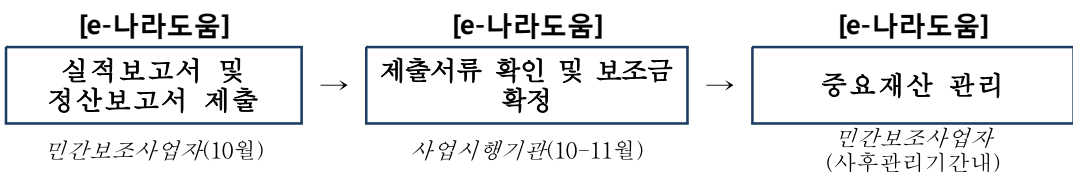
-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할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 등록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식품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의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63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IV /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자가 사업실시 후 정산서, 구체적 성과, 자금 집행의 적정성 등을 사업완료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2. 평가

- 정산 및 성과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배정시 반영

세부사업명	원예시설현대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민간경상)		예산 (백만원)	2,500		
사업목적	○ 버섯배지원료의 원활한 공급 등을 통한 버섯산업 지원					
사업 주요내용	○ 버섯배지관리센터(배지원료공급센터,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생산자단체(농협, 버섯배지 및 버섯생산 관련 법인 또는 조합) - (배지원료공급센터) 농업인 15인이상 참여 및 자본금 1억원 이상 법인 -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 농업인 5인이상 참여 및 자본금 1억원 이상 법인					
지원한도	○ 버섯배지원료공급센터 : 개소당 50억원 ○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 : 개소당 10~50억원(사업자 선정 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액 결정) * 기성고(준공) 확인서 상의 실제 집행 금액에 대하여 국고 및 용자 지원					
재원구성 (%)	국고		지방비		용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이후
	합 계	4,000	6,000	5,000	5,000	10,000
	국 고	2,000	3,000	2,500	2,500	5,000
	용 자	1,200	1,800	1,500	1,500	3,000
	자부담	800	1,200	1,000	1,000	2,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과 장 서준한 사무관 이남윤 주무관 이유희		044-201-2231 044-201-2340 044-201-2241
농협경제지주		인삼특작부		부 장 진종문 팀 장 정상희 과 장 강성철		02-2080-6370 02-2080-6373 02-2080-6384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농협경제지주
관련자료	특용작물시설현대화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버섯배지원료공급센터 또는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버섯 생산자 단체 등
 - 생산자단체란 :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72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에 따른 법인인 생산자단체로서 “버섯배지원료공급·재활용 및 버섯배지제조, 버섯생산”을 하는 자 이어야 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단체
 - 가. 버섯배지원료공급센터 사업
 - (a)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농업인 1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 (b)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1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농업회사법인
 - (c)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허가 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같은 법 제 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허가 한 품목조합연합회
 - 나.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 사업
 - (a)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 (b)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농업회사법인
 - (c)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허가 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같은 법 제 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허가 한 품목조합연합회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공통사항

- 자본금이 당년도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및 조합
- 사업부지 사전 확보
 - 사업 예정 부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법인(조합)의 소유 토지인 경우이어야 함

- 사업 예정 부지에 버섯배지원료공급센터 또는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 설치 사업 **가능여부를 사업신청 전에 필히 확인하여야 함**(사업대상자 선정 완료 후 사업부지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다만, 사업수행상 부득이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사업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함
- 법인 요건
 -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단, 법인의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이라도 출자자 각각의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인정)

나. 별도요건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버섯농가 및 버섯배지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버섯생산자(농업인) 주주가 버섯배지원료공급센터사업인 경우 15인 이상,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 사업인 경우 5인 이상이고,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경영체(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관련)이어야 하며, 법인의 대표는 버섯 생산자 일것
- * 법인은 농업인(버섯생산자) 지분이 51% 이상 점유하고, 1인당 최소 지분률은 2%이상, 최고 30%이하이어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에도 충족해야 함(생산자단체는 생산자의 지분으로 계산하여 인정)

< 지원자격 제한 >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사항을 수정등록하지 않은 경우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라 농림사업자금의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
-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법인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경우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정부융자금 해당액 대출이 어려운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지원대상

- 버섯배지원료 생산, 저장 및 유통을 위한 사업
- 수확후배지 수거, 건조, 보관, 판매 및 사료화·퇴비화* 등으로 재활용 처리

- * 사료화·퇴비화 정의 : 폐 배지를 50%이상 사용하여 건조·발효·펠릿화 등으로 처리, 그 상태로 축산농가, 배합사료의 원료 등으로 공급하거나 퇴비로 이용
- 발효 등을 위해 미생물 등은 첨가할 수 있으나, 최종 단계가 배합사료 및 부숙 유기질 비료(퇴비, 가축분퇴비 등)로 생산하는 시설은 지원 불가
- 우선지원 대상 버섯류 : 팽이버섯, 새송이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감리비 등 용역비 : 책임감리비, 사업추진 컨설팅 등
 - * 기본설계는 사업신청 전에 자부담으로 추진
- 토목공사 : 부지 내 기반공사 및 부대설비공사 등
 - *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는 지원 제외
- 건축공사 : 집하장, 분쇄·배합시설, 저장창고, 포장장, 출하장, 품질검사실, 사무실, 회의실,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설비 등
 -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설비·장비류 설치 공사
 - 생산 및 포장 시설·장비류 : 분쇄기, 배합기, 컨베이어, 펠레타이저, 포장기, 파렛타이저 등
 - 유통관련 장비류 : 파렛트, 지게차, 페이로더 기계장비 등
 - 위생시설·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집진기, 세척기, 청소기, 건조기 등
 - 품질관리 및 연구장비 : 현미경, 살균기, 배양기, 냉장고 등
 - 수확후배지 건조, 보관, 유통, 및 사료화, 퇴비화 등 제조 및 유통 관련 시설·장비류(건조·발효시설 등 포함)
 - * 수확 후 배지 또는 사료화 처리한 원료에 조사료 등을 혼합하여 사료로 생산하는 시설은 지원 불가
- 공통사항 : 부지매입비나 판매시설 설치비, 사업목적과 관계없는 시설 및 장비(차량, 농기계 등)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 :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 융자조건: 고정 연이율 2% 또는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원금균분상환
 - * 변동금리: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변동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이하 “농협”이라 함)

- 사업주관기관 : 농협경제지주(인삼특작부)
- 사업기간 : 2년(1년차 50%, 2년차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버섯배지원료공급센터 : 개소당 50억원
 -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 : 개소당 10~50억원(사업자 선정 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액 결정)
- * 기성고(준공) 확인서 상의 실제 집행 금액에 대하여 국고 및 융자 지원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버섯배지관리센터 구축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계획을 공고하거나, 지자체, 농협경제지주 등 시달하여 공고
 - * 시장·군수·구청장, 농협경제지주, 버섯생산자연합회는 자체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
- 제출자료
 -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 및 관련서류와 종합의견서를 검토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
 -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원조건(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에 맞는지 여부에 관한 사전 검토내역을 상기 의견서에 포함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
 - 신청조직에서 제출한 서류(사본) 첨부

사업주관기관(농협경제지주)

- 사업시행지침 또는 사업별 기본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2월)
- 신청서 접수·검토 및 자료제출
 - 신청조직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농협경제지주는 사업희망자의 부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인허가 관련사항(검토내역) 및 채무변제능력 등을 검토한 후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서 및 관련서류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 * 사업세부내용 검토 없이 단순 경유성 의견서 제출은 배제하며, 사업자선정 및 선정 이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사업자현황, 사업예정부지 등 구비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서 작성
- * 주안점: 신용조사서에 담보능력 부족 등 사업실행이 어려운 신청자는 사업자 선정 시 제외, 대출 은행 검토 의견서, 사업계획서(시설개요·계획·내용, 자금 조달계획, 원료확보 및 판매 계획, 사업일정, 사업효과 등) 등

신청 조직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농협경제지주(인삼특작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
 - 사업계획서(붙임2 준용), 신용조사서(붙임3), 대출신청자료(붙임4), 사업자현황 확인서(법인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및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기타자료(법인 활동실적(1년 이상) 또는 법인조직원 활동 실적(1년 이상), 조합원의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
 -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개요·계획·내용, 자금조달계획, 원료확보 및 판매계획, 사업일정, 사업효과 등이 포함되어야 함

대출취급기관

- 신용조사서 발급신청을 받은 대출취급기관은 반드시 용자 가능액 또는 가능여부를 기재하여 신용조사서를 발급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 및 관련서류와 종합의견서를 면밀히 검토(사업목적 달성여부, 지원대상 적격여부 등)하여 사업추진 가능성 여부를 확인한 후 심의자료를 작성 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
 - 주안점은 상기 “1. 사업신청단계” 참조
-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전문가 7명 이내(외부전문가 50% 이상 포함)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 심의위원회는 심의자료(사업계획, 예산규모 및 사업성공 가능성 등) 검토·심의
 - ※ 위원회 구성은 버섯생산 전문가 등을 포함하고, 현장확인반을 편성·운영
- 심의위원회에서 현장확인 결과를 반영한 서류평가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 및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 사업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농협) ⇒ 사업신청서 등 제출(사업자→농협→농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농식품부→농협→사업자) ⇒ 사업시행(사업자) ⇒ 결산·정산보고(사업자→농협→농식품부) ⇒ 사후관리(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필요시 사업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기관에 통보
- 사업시행지침 중 변경사항을 사업주관기관에 통보(연중 수시)

사업주관기관

- 사업주관기관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서 및 실시 설계도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 요청
-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서 검토(사업목적 달성여부, 지원대상 적격여부 등) 후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및 승인 요청

사업주관기관

- 사업자로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주관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 사업 신청시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서에 월별·공정률별 사업추진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사업 신청시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서를 토대로 유자격자*를 통해 실시 설계도서 작성 후, 사업주관기관(농협경제지주)에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아 공사발주 진행
 -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부보조금 지급을 위한 기성고(준공) 확인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작성
- * 유자격자 : 건축사 사무소 등록,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등을 필한 업체
- 설계 및 도급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유자격자를 통해 설계 및 시공
- 정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서류 제출시 사업주관기관의 기성고(준공) 확인서를 증빙서류에 첨부

1) 사업착수

- 사업주관기관장은 사업자의 세부사업시행계획서 및 실시 설계도서가 승인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통지하고 사업을 착수하도록 함

2) 설계·시공·감리

- 사업자는 설계·시공·감리 시 다음과 같이 제시된 기준에 따라 추진
 -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집행
 - *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할 것
 - * 1개 사업이 2~5개 사업으로 분리 계약될 경우(공정에 따라 분리될 경우) 선정 시공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농협경제지주 관계자가 공사실적 확인
 - * 단, 감리업체는 설계·시공 업체와 달리하여 선정하여함
- 공사감리자가 확정되면 사업주관기관 업무 담당자의 입회하에 사업자, 공사감리자 간에 공사감리 용역계약 체결
- 감리시행자는 준공 후 감리보고서를 사업주관기관장에게 제출
- 설계·감리·사업관리비는 다음 효율기준을 적용

(단위 : %)

구분 \ 대상금액	10억원	20억원	50억원	100억원	200억원	500억원	1000억원	2000억원
설계	1.84	1.74	1.59	1.47	1.36	1.22	1.12	1.03
공사감리	1.66	1.53	1.45	1.41	1.37	1.35	1.34	1.32
사업관리	0.51	0.47	0.43	0.40	0.37	0.33	0.31	0.29

- * 위의 설계·사업관리비 효율은 농어촌정비법상 기반시설 측량·설계기준의 30%를, 공사감리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을 각각 적용한 기준임
- * 효율산정을 위한 대상금액은 순공사비+지급자재비를 적용(부가가치세, 용지매수비 제외)
- 사업관리비는 사업주관기관장이 설계·감리대상 주요시설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효율기준 관리비 범위 내에서 편성 운영할 수 있음
- * 설계·사업관리비는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비 수지에산서를 기준·산정하고, 감리비는 실시설계서의 공사원가계산서를 기준·산정하며, 대상액 중간의 효율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 * 공사감리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사업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고, 감리 완료 후 실제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실비 정산 처리

구분	공사 착수 전	공사 착수 후	비고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 시공도 검토 ·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성과표 검토 · 공정 및 기성고 사정 · 기성도 및 준공도 검토 	

- 도급공사 시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관계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시공

3)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사업자는 자재의 규격화·국산화 촉진 및 사후관리(A/S) 등을 위해 가급적 주요 시설자재의 공동구매하고,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

4) 사업계획 변경 절차

- 사업자는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절차에 따라 승인받고 그 결과(사유서 포함)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대표자변경, 세부내역사업의 사업비 30%미만 변경 :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 세부내역사업의 사업비 30%이상 변경, 세부내역사업간 사업조정, 사업장 소재지 변경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 변경이 필요한 사업계획 부분에 대하여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며, 기성고 확인 및 대출금을 지급 할 수 없음
- ※ 변경 승인을 득하지 않은 부분의 기성고 확인 불가

5) 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주의사항

-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종료, 폐지,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 변경, 사업주관주체의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경우 즉시 사업주관기관에 신고
-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로 비치하여야 함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4. 자금배정단계

<자금집행 체계 및 절차>

- ◇ 기성고(준공) 확인 신청(사업자→사업주관기관) ⇒ 기성고(준공) 검사(사업주관기관) ⇒ 사업비(융자금)신청 및 배정(사업주관기관→농식품부→사업주관기관) ⇒ 융자대출 신청 및 대출(사업자↔대출기관) ⇒ 결산·정산보고(사업주관기관→농식품부)

사업자

- 사업비는 기성고 확인(시공사의 기성내역을 감리시행자가 확인한 것)에 따라 집행할 수 있으므로 사업대상자는 대출실행일 2개월 이전부터 사전 준비하여 사업주관기관에 기성고에 따라 자금집행을 요구

- 대출완료시 7일 이내에 사업주관기관(농협경제지주)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 완료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해서는 최종 정산시 등기서류에 부기등기를 기재하여 제출

사업주관기관

- 사업주관기관장은 분기별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사업진척도에 따라 분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의 당초 목적대로 사용 여부를 점검하여 잔여 보조금 지급
- 사업자의 사업진행상황 등을 사전 파악하여 대출실행 예정일 최소 1개월 이전에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직접 지급하여야 함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사업자에게 지급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사업예산에서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사업주관기관장은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준공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관계규정(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준하여 사업 관리절차 이행
- 본 사업으로 건립된 시설 및 장비 등은 다음의 사후관리기간을 적용

재산명	사후 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 시설 및 부속물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구입일	15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사업주관기관,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

사업주관기관

- 버섯배지관리센터구축사업 대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 사업추진기간(착공~준공) 중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및 지도 실시
 - * 사업추진기간 중에는 농협경제지주, 사업추진이 완료된 후에는 버섯생산자연합회에서 반기별 지도점검 및 제반사항 농식품부 보고
 - * 건설추진상황(부진 시 사유 및 해소방안 강구) 등 정상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 *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현황을 수시 체크하여 업체부도, 담보부족 등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포기서 제출(보고)
 - 자금집행 완료 등 사업완료시에는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완료보고 하고,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 * 대출취급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실행일자 등 확인
 - 기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시설·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분
 - 사업자가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을 조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주관기관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정산결과를 작성하여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대출취급기관)

- 대출신청 접수 즉시 건별로 정책자금 대출관련규정 및 여신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는 등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대출실행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자금집행 요건·절차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사업자가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 강구

농림축산식품부

- 연 2회 사업점검 실시
 - 사업관리주체로부터 받은 보고자료 검토 후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 현지 실사(점검) 검토/결정

《제재》

농림축산식품부

- 다음과 같이 예산집행에 차질을 주는 사업대상자에게 향후 3년간 관련 공모 선정 및 지원에서 제외
 - 당해연도 사업신청자 또는 선정자 중 동종 또는 동일사업을 타 기관(부서)으로부터 지원(선정)받은 자
 - 사업선정자의 부도, 담보부족 등으로 사업을 중도 포기하여 당해 연도 또는 이월사업의 예산을 불용하는 경우 등

사업주관기관

- 사업주관기관장은 사업자의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시 자금회수 등의 조치를 취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자금관리주체(대출취급기관)

- 자금관리주체(농협)는 대출금의 목적 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관계규정 위반 등 대출금 부당 사용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당 기관의 여신관리규정 등을 준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

1. 성과측정단계

- 사업이 완료(2개년 사업)되면, 사업 대상자는 사업종료 다음연도 말 재무제표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익년 3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단, 사업평가를 위해 매 사업완료 익년도 매출액 등 참고자료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2.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당해 연도 및 이월사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지연 및 예산 불용 최소화에 노력

《환 류》

- 사업포기 등에 따른 불용으로 사업예산의 집행·운용에 차질을 준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업 신청자에게 혜택이 부여되도록 조치

1. 2019년도 사업수요조사

- 버섯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수요조사를 실시('18.3월)

2. 201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농협경제지주 및 지자체별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안내(10일 이상 공고)
 - 주요공지내용: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절차 등

버섯배지관리센터 구축 사업계획서

I. 사업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범위
2. 사업 추진방향 및 기본전략
3. 사업의 특징 및 장점
4. 기대효과

II. 사업신청자 소개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III. 신청사업의 내용

1. 사업의 내용
2. 사업의 수행방법
3. 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추진 일정, 자금조달 방법 등 포함)
4. 생산 시설 계획(시설개요)
5. 원료 조달계획
6. 운영자금 조달계획
7. 유통 및 판매계획
8. 생산 및 매출목표
9. 고용인력 창출계획
10.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IV. 기타

1. 비전
 2. 추진역량
 3. 지속적 성장가능성
 4. 사업추진의지
- ※ 30매 안팎으로 작성

대출신청자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생산자단체등의 형태		참여자수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금 현황			융자금 현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계	예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축산식품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 번호	
생산자단체등· 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인)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신	출 청	자 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 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천원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협동조합장 (인)
 ()시군지부장 (인)

[]분기 추진실적(완료) 보고

사업개요

- 사업명 :
- 업체명(사업자 성명) :
- 주소 :
- 사업내용 :

추진(완료)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업 체 명	사 업 계 획	사 업 량			사 업 비								B/A		
			계 획	실 적	%	계 획				실 적						
						계 (A)	국고	융자	자담	계 (B)	국고	융자	자담			
		○ 제조시설 건물 : ○ 가공 기계설비 : : : :														
		소 계														

※ 실적 중 융자는 사업자의 실제 집행액(대출액)임

기타

- 사업완료시 건축물·시설 사진, 건축물 준공허가서류, 등기서류, 준공된 사업장 평면도 등 첨부

버섯배지관리센터구축사업 사후관리기준

- 가. 버섯배지관리센터(버섯배지원료공급센터,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 이하 “버섯배지관리센터”) 사업을 통해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사업주관기관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담당자가 담당하도록 하되, 관련 담당자가 없을 경우 전문기관의 협조를 통해 실시할 수 있음
- 나. 버섯배지관리센터가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하도록 함
- 다. 버섯배지관리센터의 사업부지는 당해 사업자(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단, 당해 법인 명의를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 라. 버섯배지관리센터 구축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 및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사업 추진 중에는 사업주관기관에서 담당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사업총괄기관에서 담당한다.
- 마. 사업총괄기관은 버섯배지공급센터 사업자에게 붙임 7 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하고,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하여 제출하도록 함
- 바. 사업주관기관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일정한 형식에 따라 관리대장 비치 및 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하도록 함.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일반현황, 자금집행상황, 사업추진 진도, 운영상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사업담당자는 사업추진상황을 확인·점검하여 의견을 기재하도록 함
 -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 등에는 별표7의 농림축산식품사업 안내문 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 등의 입구·몸체 또는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도록 함
- 사.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추진
 - 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 동안 관리되도록 사업총괄기관에서 적극 관여할 것
- 아.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농업협동조합 등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에 참여한 기관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특히 정부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 등의 특정 집단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출자자의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사업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경 영 장 부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성명 또는 명 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일반현황(년 월말 현재)

경영규모	*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급 물량 기재(예:사과3ha, 젓소200두)					
자금조달	연도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기타
		천원				
	계					
부 동 산 보 유	토지계	논	밭	과수원	임야	대지·기타
	m ²					
	건물계	창고류	공장류	축사류	주택	기 타
기타주요 자산보유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p>사 업 개 요</p> <p>이 사업은 ○○○○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p> <p>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p> <p style="text-align: center;">사 업 자 ○ ○ ○</p>	80 cm
110cm	

주) 공공사업의 경우는 사업자 란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명 및 관리책임자를 기재

나. 준공후 안내문

본 사업(시설)은 2017년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설치하여 운영하는 버섯배지원료공급센터입니다.

1. 사업명 :
2. 사업자 :
3. 시설규모 :
4. 재원 :
5. 사업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30cm

21cm

다. 스티카형 표지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2. 대 상

- 중요사업의 건축물, 공작물, 사업장 등으로서 총사업비가 5천만원이상 투입되는 사업(사업시행자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총사업비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의 시설 등

3. 표시방법

-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규격 110cm×80cm)
-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규격 30cm×21cm)

세부사업명	원예시설현대화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자치단체자본)		예산 (백만원)	4,010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사업비 2,000 포함				
사업목적	○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한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사업 주요내용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및 생산, 보관시설 등 시설현대화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재배 농가, 농업법인 등 ○ (자격 및 요건) 특용작물 재배와 관련된 재배사 개보수, 기기 구입 및 교체 등으로 신규시설 지원은 제외(단, 버섯종균배양시설은 신규 지원 가능) - 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영농법인							
지원한도	○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버섯종균배양시설은 법인, 개인 1,200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2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6,885	8,262	8,262	9,922			
	국 고	1,620	2,016	2,016	2,420			
	지방비	1,215	1,206	1,206	1,452			
	용 자	2,430	3,024	3,024	3,630			
	자부담	1,620	2,016	2,016	2,420			
*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사업비 제외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이남윤		044-201-2240		
신청시기	사업대상자 : 전년도 3월까지 시군담당자 제출 : 전년도 4월까지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특용작물시설현대화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 법인체 지원요건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
- 녹차·약용작물 등 유통·가공시설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우선지원>

- 수출 가공법인 및 연계농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 우수 농가
- 태풍·화재 등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주산지
-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가 등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농업경영체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의무자조금 도입시)
- * 시·도 및 시·군 집중육성 품목 단지 등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 지원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특용작물 재배와 직접 관련된 재배사 개·보수, 기기구입 및 교체(※신규시설 지원은 제외하나, 버섯종균배양시설은 신규지원 가능)
 - 버섯 등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기기 구입 및 교체
 - 기존 비닐 재배사를 판넬형 이상으로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 증축은 기존시설 면적의 20%범위 내 가능(종균배양센터는 제외)
 - 버섯 종균배양시설 노후시설 교체 또는 신축
 - * 종균배양시설물이 기존에 있거나 신축할 경우 사업비 전부를 시설비로 지원 가능
 - * 비닐재배사 개·보수 또는 비닐재배사 기기구입 및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재배농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가능

- 냉·풍해방지, 관수 시설, 차광막 시설 등(※차광막 교체 등 소모성 자재는 지원 불가)
- 농·임산은 구분하지 않으나 중복 지원은 배제(※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해 산림청 별도 지원 사업이 있는 경우 산림청 사업에 우선 지원토록 안내하고, 동 사업으로 신청시 후순위 선정)
- 약용작물은 대한민국약전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약용작물로 등재된 것으로 한함(※인삼 등 별도 지원사업이 있는 것은 제외)
- 특용작물 재배에 직접 관련된 기기 및 유통·가공에 필요한 기기

<예시> (지원 가능 기기)

- (버섯) 난방기, 자동화시설, 배지혼합기, 탈병기, 자동입병기, 살(멸)균기, 종균기 등
- ※ 농기계, 농자재, 소모성자재 및 저온차량,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 유통·가공시설 제외
- (녹차) 채엽기, 건조기, 덤음기, 유념기, 분쇄기 등
- (약용작물) 세척기, 건조기, 절단기, 선별기, 석발기, 포장기, 탈피기 등
- ※ 농기계, 농자재, 소모성자재 및 저온차량 등은 제외하며, 녹차, 약용작물은 유통·가공 시설에 한해 저온저장고 지원 가능

4.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보조 3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고정 연이율 2.0% 또는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
 - * 대출은행 : 농협(융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총사업비 :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 이내 지원
 - 재배사 개·보수, 증·개축은 3.3㎡당 100만원 기준
 - (단, 버섯종균배양시설은 개인 및 법인 동일하게 1,200백만원 이내 지원)
- 재배사 장비 및 기계 구입비는 총사업비의 40% 이내 지원
 - 총사업비 10억원인 경우 재배사 개·보수비 6억원, 장비·기계구입비 4억원 이내 사업추진

- 재배사 개·보수 없이 장비(기계)만 구입하는 경우 총사업비는 법인 400백만원, 농가는 8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아래 <예시> 참조)
- * 자부담은 추가 부담 가능, 지원 상한액은 총사업비 기준의 지원 비율 적용

<예시> 재배사 개·보수 없이 장비 및 기계 구입시 지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최대규모	국고보조 (20%)	국고응자 (30%)	지방비보조 (30%)	자부담 (20%)
법 인	400	80	120	120	80
농 가	80	16	24	24	16

- 토지매입비, 임차료, 운영비 및 소모성 자재, 농자재, 특용작물 재배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형농기계 등 지원 제외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하우스형 재배사(양송이 제외) 등
 - 특용작물 재배와 직접 관련이 없는 농기계, 저온차량,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
 - 소모성 자재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6. 유의사항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63조제1항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사업시행기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및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 사업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단,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와 지원 가능성 여부 사전 확인)
- 사업비 집행·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본 시행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목적, 지역실정 등을 감안, 지자체장이 검토·결정하여 시행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방법, 세부계획 수립·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

지자체

- 시·도는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군·자치구 시달
 - 특용작물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 안내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18.2월)
 - 신청서 제출기관 : 각 시·도(시·군)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담당부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붙임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붙임 제1-1호 서식), 융자 및 자부담 능력 증빙서류 및 시·도 지사가 본 사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류 일체
 - * 사업신청 시 신용조사서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
 - ※ 산림버섯 등 임산물(산림청 소관 임산물로 분류되는 약용작물 포함)인 경우 임산물 담당부서에 중복 사업 신청 여부를 확인 후 사업 진행

2. 사업자 선정

지자체

- 선정주체 : 사업시행기관(시·군 및 시·도)
 - 시·군 : 사업신청서 및 관련사실을 확인,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 제출
 - 시·도 : 지자체별 사업량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 보고
- 선정방법 : 시·도 또는 시·군은 품목별 특성 등 제반 여건에 따라 대상자 결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18.3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지자체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통지하고 사업 착수 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에게 우수 기자재, 검증된 제품 구매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가 시공 (도급공사 시행시 “건설산업기본법” 관계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시공업체를 통해 시공)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도와 사전협의 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시·도 지사는 변경사항을 농식품부에 보고

사업대상자

-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대상자는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배정,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지자체

-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자금 배정 요구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에 따라 환수 조치

5. 이행점검단계 및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단계, 사업완료 이후의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 사항은 제도개선 추진

지자체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 보고
 - 사업비 정산은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조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시 해당 지자체장 승인후 처리
 - 사업 완료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최종 정산시 등기서류에 부기등기를 기재토록 하여야 함

IV

2019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 사항

1. 2019년 사업수요조사

- 신청절차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신청기간('19년 사업) : '18년 2월중 대상자 수요조사
 - * 시·도(시·군)에서 수요조사 후 '18년 4월까지 공문 제출

2. 2019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9년 사업 신청 : '18년 2월~3월
 - 201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사업 신청

<붙임 1호 서식>

* 본 서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음

'19년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시설 현대화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input type="checkbox"/> 개인		단체(<input type="checkbox"/> 영농조합, <input type="checkbox"/> 농업회사, <input type="checkbox"/> 생산자단체)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재배작물				재배규모	m ²			
	소속 농가수				사업참여 농가수				
	주소				사업장 주소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시설 규모	재배시설	간이(비닐)재배사 m ²	판넬재배사 m ²	콘크리트재배사 m ²	기 타 m ²	계 m ²			
	부대시설	m ²	m ²	m ²	기 타 m ²	계 m ²			
	생산기기	식	식	식	식	계 식			
사업 계획	사업규모 (천원)	재배시설(재배사)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필요시 별지 작성)				
		생산기기 등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필요시 별지 작성)				
	재원조달 (천원)	합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소계)	보조	융자					
<p>위와 같이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8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서명 또는 인)</p>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붙임 1-1호 서식>

* 본 서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음

'19년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시설현대화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가. 사업자 현황

단지(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재배품목				회원농가수	호		
단지규모	m ²	시설재배규모	m ²		수출참여규모	m ²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용자	지방비	자부담	

나. 생산현황

구 분	품목별 재배면적 (바닥면적 기준)		품목별 생산량		소 득 액 (백만원)	수출현황		
	품목	면적(m ²)	품목	생산량(톤)		수출량	수출금액	수출국가
'17(실적)	합계		합계		합계 :			
'18(계획)								

* 수출현황이 없으면 기재하지 아니함, 수출회사에 납품량은 수출량으로 봄

2. 시설현황 및 사업실적

생산시설	계		간이재배사	판널재배사	콘크리트재배사	기타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부대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기타			
	m ²	m ²	m ²	m ²	m ²	대			
생산기기									
사업실적	품 목 별		출 하 실 적				GAP, 품질인증 등 (톤, %)	규격출하 (톤,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17년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별지 제1호 서식>

* 본 서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음

‘19년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시설 현대화사업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input type="checkbox"/> 개인		단체(<input type="checkbox"/> 영농조합, <input type="checkbox"/> 농업회사, <input type="checkbox"/> 생산자단체)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재배작물			재배규모	㎡	
	소속 농가수			사업참여 농가수		
	주소			사업장 주소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사업 계획	당초	종 류	사업내용	규모(㎡) 및 수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재배사 개·보수				
		재배사 증·개축				
		시설 및 장비				
		기 타				
	변경	종 류	사업내용	규모(㎡) 및 수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재배사 개·보수				
		재배사 증·개축				
시설 및 장비						
기 타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 계획을 변경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후 추진, 사도지사는 사군 승인사항 검토 후 농식품부 보고						

세부사업명	원예시설현대화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기타민간융자금					
내역사업명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현대화	예산 (백만원)	1,510					
사업목적	○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 농가의 경쟁력 제고							
사업 주요내용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 관수 시설, 방풍망 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국고보조 근거법령	○ 인삼산업법 제3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지원자격 및 요건	○ 2018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 파종기, 인삼수확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16년부터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 또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 신청한 농업 경영체 우선 지원(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지급)							
지원한도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 시설 : 개소당 2ha이내(5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 개소당 2ha이내(18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0백만원/ha) ○ 인삼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8백만원/ha) ○ 인삼 이식기·파종기·수확기 : 대당 5백만원 이내							
재원구성(%)	국고	2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4,845	4,674	6,191	24,764			
	보 조	1,140	1,140	1,510	6,040			
	용 자	1,710	1,710	906	3,624			
	지방비	855	684	2,265	9,060			
	자부담	1,140	1,140	1,510	6,04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사무관 손경문(인삼)		044-201-2239		
시·도		인삼산업 담당과		인삼산업 담당자				
시·도	사업대상자 : 1월까지 시군담당자 제출 : 2월까지			사업시행기관		지자체		
신청시기	특용작물(인삼)시설현대화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하 농업경영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농어업경영체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 [지원제외 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
 - 인삼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않거나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18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 2017년 가을에 직파한 농가도 포함
 - GAP(친환경 포함) 인증(GAP 인증 신청농가 포함),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업경영체 우선 선정
 - 당해 연도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경영체만 선정
 - *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는 인삼농협 또는 의무자조금단체에 확인
-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과종기 및 인삼수확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 상기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식재년도에 자조금을 납부한 농가만 지원
- '16년부터 GAP(친환경 포함) 인증 또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 지급)
 - 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축소
 - * 지원한도액 비율 : ('15) 100% → ('16) 90% → ('17) 90% → ('18) 90%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 열거된 항목 이외의 사업은 지원 불가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재배시설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고시 설계도·시방서에 따라 설치(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제2014-78호, 2014.7.24)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기상이변을 감안 하여 지자체장의 책임 하에 지역실정에 맞게 기준을 변경 적용 가능(기준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미보증 제품 지원 불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용용도 : 고품질 인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구입 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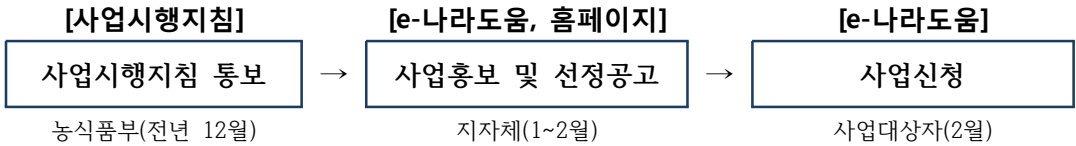
- 자금의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업금융부)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 개소당 2ha이내(5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 개소당 2ha이내(18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0백만원/ha)
- 인삼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8백만원/ha)
 - 관정 관련 사업비는 최대 150만원 이내로 지원

- 방풍망시설 : 개소당 2ha이내(6백만원/ha)
- 야생동물방지시설 : 개소당 2ha이내(5백만원/ha)
- 도난방지시설 : 개소당 2ha이내(10백만원/ha)
- 인삼 이식기 · 파종기 · 수확기 : 대당 5백만원 이내(5백만원 초과 기계 구입시
라도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 지원단가를 초과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및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 * 다만,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2개 업체 이상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구비
 - * GAP(친환경 포함) 미인증 농가는 지원한도액의 90%만 지원

1. 사업신청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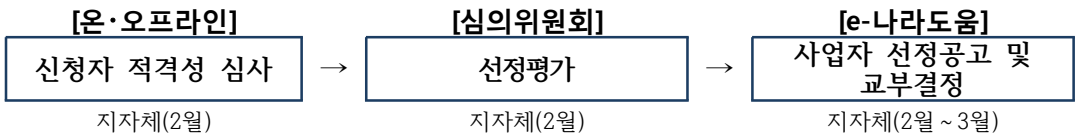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17. 12월)
- 시·도별 사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예산배정 통보(‘18. 1월)

농업경영체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18. 1월말)
- 용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가능금액을 확인
- 농업경영체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서, 인증기관 사후검사결과 등 추진상황 제출
 -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또는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서)를 제출
 - *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추후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를 추가 제출

2. 사업자 선정 단계



지자체

- 시·도지사는 시·도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심의 한 후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및 그 명단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2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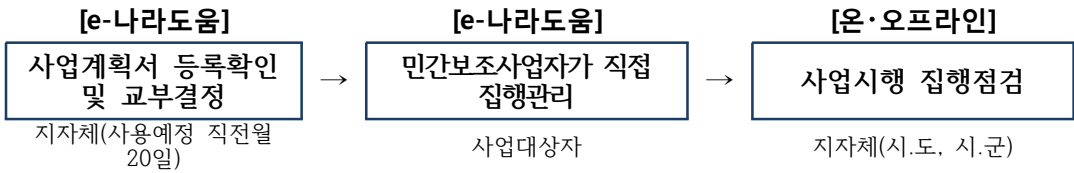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가 제출한 신청내용을 감안하여 각 시·도별 지원금액 배정(3월말)
- 인삼은 품목 특성상 이동경작, 원거리경작이 많으므로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대상자 인삼재배지의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 사업대상자의 자격 요건 확인 등은 지자체간 협조

3.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배정된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 하는 등 시·도(시·군)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시행·추진
 - 시·도 사업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3월말), 보조금 교부신청과 지방비 확보 등 자금집행에 필요한 조치 이행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객관적 자료(농협중앙회 계통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 계산서 등)에 근거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지를 시장·군수가 검토 후 결정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신청자 중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사업대상자로 추가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토록 조치(사업대상자 변경내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추가로 선정할 사업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속히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시공업체를 통해서 시공하여야 하는 세부사업의 경우 농업경영체의 업체선정 편의 제공과 책임시공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통해 시공업체 선정·공지
 - 시공업체는 반드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를 선정
 - 지원을 받은 경영체는 선정·공지된 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택하여 공사 추진
 - 선정된 시공업체는 반드시 직접시공을 하여야 하며, 하청시공 시 선정 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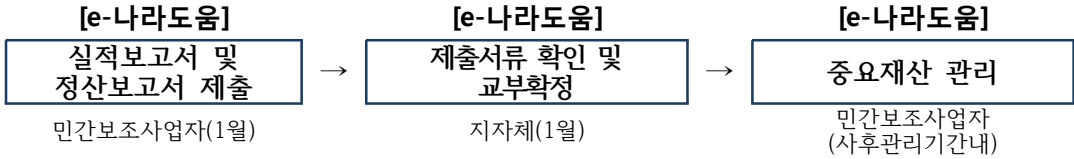
지방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 절차 이행
 - 경영체에게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식과 사업시행주체(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를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직전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 준수 여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는지 여부 확인

농협중앙회

-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시장·군수)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에 적합 여부 확인

5. 이행 점검 단계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시·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까지 지도·감독 철저

사업비 검정 및 정산(시·도)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사업완료 검사 신청
-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한 후 정산
 - 사업비 집행(인건비, 자재구입 등)은 반드시 금융기관 거래자료(무통장 입금표, 통장사본, 신용카드 등)로 관련 증빙자료 확인(현금 거래 불가)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1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6. 사후 관리 단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에 의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 장비·자재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시장·군수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철저히 관리를 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매각·용도 변경·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영체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조치 시행

자금관리주체(농협)

- 자금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이행 지원기금운용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
 - ①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 ④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

1. 사업 성과지표 측정

- 매년 단위면적당 인삼 생산량 증가율을 조사·평가
 - 인삼농협, 인삼공사 등에서 조사한 생산량 통계조사 활용

2. 2019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붙임1호 서식을 참고하여 도별 '19년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2호 서식으로 농식품부로 제출('18.6월말)

<붙임 1호 서식>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법인 등)			전화번호	TEL H·P					
사 업 예정지	소재지	의 필지(별지 기재)								
인 삼 재배현황	재배면적 합 계 m ²	4년근 이하 m ²			5년근 m ²			6년근 m ²		
사업신청	세부사업명	사업량 (m ² , m, 공)	지원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비고 (용자 희망 여부)	GAP, 친환경 인증 여부
				계	국고	지방 비	용자	자부담		
<p>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input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p>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의 규정에 의하여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주 소 성 명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p>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한 서식) 1부 2.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3. GAP 인증서 또는 인증 신청서 등 관련 증명서류</p>										

유통원예분야

Ⅱ. 가격안정 및 유통활성화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세부사업명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공동선별비(자치단체)				예산 (백만원)	8,088		
사업목적	○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하고 공동출하를 통하여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 제고 등 농산물의 시장 교섭력 확보							
사업 주요내용	○ 공동선별, 출하, 계산 물량에 대한 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표준규격), 제110조(자금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농협조직 및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공영도매시장 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된 산지유통인 ○ 대상 품목: 청과부류, 약용작물류, 양곡부류, 임산물류, 화훼부류의 품목 - 양곡부류 중 미곡 및 맥류는 제외 - 약용작물류 중 야생 채취 또는 기타 재배에 의한 것은 제외 * 세척, 세절 등 전처리(신선편이) 및 1차 형태의 단순가공품도 지원 가능 * 공영도매시장 팻릿 출하 시 국고보조 20% 상향							
지원한도	○ 조직별 국고보조금 배정하한 : 1백만원 ○ 조직별 국고보조금 배정상한 : 500백만원 내외							
재원구성 (%)	국고	10~50	지방비	10~25	용자	-	자부담	50~8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2019년 이후			
	합 계	46,218	46,218	46,218	324,002			
	국 고	8,088	8,088	8,088	56,780			
	지방비	8,088	8,088	8,088	56,780			
	자부담	30,042	30,042	30,042	210,602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자치단체		유통정책과 산지경영부 시군구 농정담당부서			사무관 하성태 차 장 용상구 -		044-201-2223 061-931-1035 -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8월 말까지)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공동선별비(자치단체)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산물 생산·유통관련 협동조합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검토) 제6항 및 제79조(지원의 제한)제1항에 따라 부당사용 법인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한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고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사업참여 생산자 조직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하여야 함
- 통합마케팅 조직의 참여조직은 통합마케팅 조직으로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 지원
 - 자금 배정 권한 : 산지조직간 마케팅 통합 및 수직계열화를 통한 조직화·규모화를 위하여 통합마케팅 조직에게 참여조직에 대한 자금 배정 권한 부여
- 농산물 표준규격 표시사항 준수 및 공동브랜드²⁾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따라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³⁾하는 경우에 지원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자 등에게 출하하는 물량과 기타 출하처로서 출하실적 증빙자료가 명확한 경우에 사업량으로 인정
- 원예농산물을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 한 실적이 우수한 조직 및 APC 경영진단 우수 조직 등에 우선 지원 가능

2) 지자체와 산지유통조직이 함께 개발하여 활용하는 브랜드 또는 다수의 생산자조직이 참여한 시·군단위 이상의 브랜드 또는 산지유통조직의 1개 고유 대표브랜드 및 농협계통브랜드

3) 참여 농가 모두의 생산물을 일정기간 공동으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등급에 따라 분류하여 등급별 평균단가로 공동 정산하는 제도(친환경인증농산물 등은 별도 공동계산 가능)

3. 지원대상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산지유통활성화사업자로 선정된 산지유통 조직
 - 참여조직은 통합마케팅 조직을 통해 지원
 - 지원 품목 : 곡류(잡곡류 포함),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숙주나물을 제외한 농산물
 - * 사과 소포장 유통활성화 관련 '15년 8월 1일부터 사과 15kg 상자에 대해서는 공동선별비 지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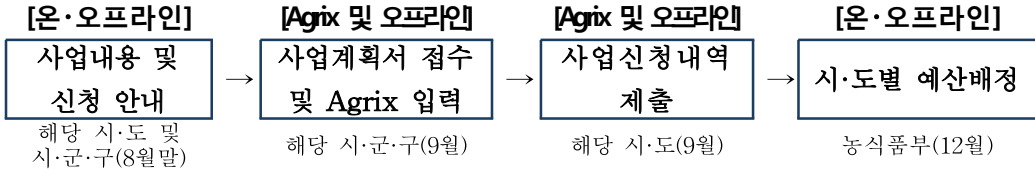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비율
 - ① 시·군 단위 사업대상자
 - 수탁 : 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
 - 매취 : 국비 10%, 지방비 10%, 자부담 80%
 - ② 품목광역조직 사업대상자
 - 수탁 : 국비 50%, 자부담 50%
 - 매취 : 국비 20%, 자부담 80%
- * 자부담은 농가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부담 근거는 농가별 정산서에 선별비 공제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면 자부담 한 것으로 인정하고, 조직과 농가간 별도의 협의에 따라 선별비를 공제한 것도 인정
- * (공통) 매취사업은 계약재배한 물량에 한해서 지원
- 지원기준 및 단가
 - [별표 1] 품목별 공동선별비용 지원단가를 적용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참여조직 기준)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사업계획, 조직규모, 전년도 사업실적, 위반내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대상자별 예산 배정
- 조직별 국고보조금 배정하한 : 1백만원
- 조직별 국고보조금 배정상한 : 500백만원 내외

1.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

- 시·도 및 시·군은 사업대상조직(‘17년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자) 대상으로 사업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전년도 8월말)
- 시·군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후 사업자별 신청내역을 농림사업정보 시스템(Agrix)에 입력하여 시·도로 제출(전년도 9월중순)
- 시·도는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후 사업자별 신청내역을 작성하여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전년도 9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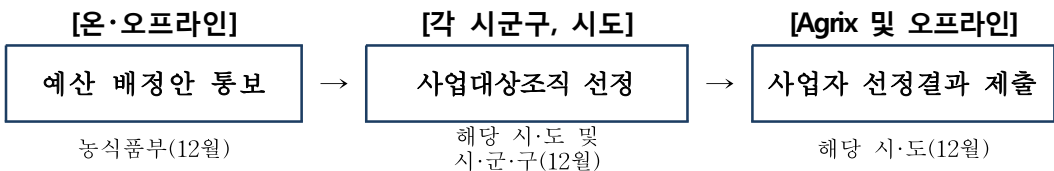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 ‘17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및 조직화취급액, 사업수요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로 지원형태별 예산 배정(안) 통보(12월초)

사업대상조직

- 사업희망 조직은 공동선별시설이 소재하는 시·군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전년도 9월초)
 - 품목광역조직은 소재지 관할 시·군을 경유하여 시·도에 신청
- 사업 신청은 통합마케팅 조직이 참여조직의 신청을 취합·조정하여 시·군에 제출하고, 정산은 실집행 조직이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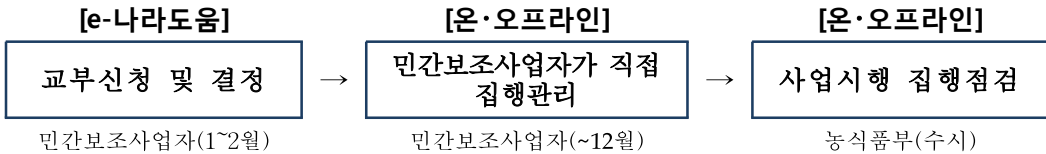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 예산 배정(안)을 확정하여 각 시·도 및 aT에 통보 (12월초)

시·도(시·군)

- 시·도는 예산 배정 한도 내에서 배정기준을 수립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안)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12.중순까지)
- * 전년도 발작물공동경영체 연차평가 결과 우수조직에 인센티브 추가 지원(조직당 10백만원 한도)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농관원 및 시·도(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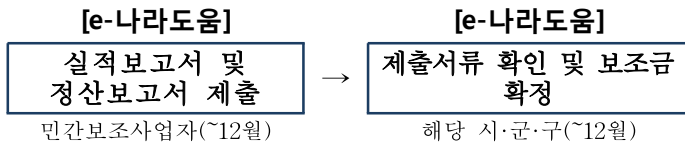
- 시·군은 농관원의 협조를 받아 포장재 제작협의서[별지 제2호 서식]을 2부 작성하여 사업대상자와 각각 1부씩 보관(1월)
 - * 사업 신청량과 포장재 재고를 확인하고 신규제작이 필요 없을 경우 그 내용을 제작협의서에 명기하여, 사업 정산시 사업물량 검증 등에 참고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보조금 지급신청의 적정 여부를 [별표 2]에 따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
 - * 농관원은 시·군의 협조요청이 있을시 적극 협조
- 시·도는 시·군별로 사업계획변경 시 배정예산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경우 시행하되, 시·도간 전배가 필요한 경우는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시행
- 농관원은 2년 마다 주요 사업조직을 대상으로 단가조사를 실시하여 품목별 공동선별비용 지원단가 갱신
- 사업이 완료되면 시·군은 결산하여 그 결과를 '19. 1. 10.까지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19. 1. 20. 까지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

사업대상조직

- 공동선별·출하·정산이 완료되면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 익월 5일까지 정산 집계표(수탁)[별지 제4호 서식], 물량 집계표(매취)[별지 5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보조금 지급신청
 - 당해 연도 정산한 물량에 대한 보조금은 12.말까지 지급 완료될 수 있도록 신청(세부 일정은 시·군과 협의)
 - * 농가 "정산일"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1.1.~12.말) 내에 정산한 물량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

- 공동계산 정산서, 출하내역서, 공동선별 작업일지, 포장재 재고 관리대장을 자체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관련 공무원의 확인요청 시 제출해야 함
 - 정산서에는 농가별 선별비 지원내역 명시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 인수합병 등으로 사업대상자명이 변경된 경우도 변경계획서 제출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추진상황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집행 과정상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파악을 위하여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시·도(시·군)

-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을 매 분기별로 각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대상자의 품목별 공동선별·공동출하시기에 사업추진상황 수시 점검
- 정산시 농산물 정산 내역 확인 (농가별 정산서에 선별비 지원 내역 명시)

《표준규격품조사》

농관원

- 수시로 산지와 소비지 출하 농산물에 대하여 표준규격품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해당 사업조직에 통보 및 행정처분
- 행정처분(시정명령, 표시정지 등) 이행여부를 현지 확인

《제재사항》

시·도(시·군)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의 조치(농식품부 보고)

-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부당사용금액에 따라 1~5년 동안 지원제한 및 보조금의 회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IV / 평가 및 환류

《사업평가》

- 산지유통종합평가에 따른 공동계산액 평가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우수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산지조직의 공동계산 확대

《환 류》

- 공동계산율이 증가한 조직은 다음해 사업비 배정 시 인센티브 적용
- 실적이 부진한 조직은 다음 해 사업비 배정 시 페널티 적용

세부사업명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산물 신유통경로확산 지원			예산 (백만원)	1,200			
사업목적	○ 농산물신유통확산지원							
사업 주요내용	○ 수요자중심 DB구축, 유기농온라인판매지원,농산물판로확대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68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 유기가공식품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국고100%							
지원한도	○ (농산물판로확대) 공영홈쇼핑, 특판·임시장터 등 보조100% ○ (온라인 직거래활성화) 농가정보, O2O플랫폼, 스마트스튜디오 등 보조 100% ○ (유기농식품 유통활성화) 보조 100%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700	700	1,200	미정			
	국 고	700	700	1,200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정책과 유통조성처 유통기획부 사이버거래소 사업기획부			사무관 김남주 부 장 백태근 부 장 상병하		044-201-2285 061-931-1010 02-6300-1801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관련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지사항 B2C전자상거래(www.eatmart.co.kr), 농가정보서비스(farmdb.eat.co.kr) 농산물신유통경로확산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장터, 제철꾸러미 등 직거래사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로컬푸드직매장 등 직거래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

3. 지원대상

- 지역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임시장터 및 특판행사 개최비용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부스, 진열대, 시식·판촉, 홍보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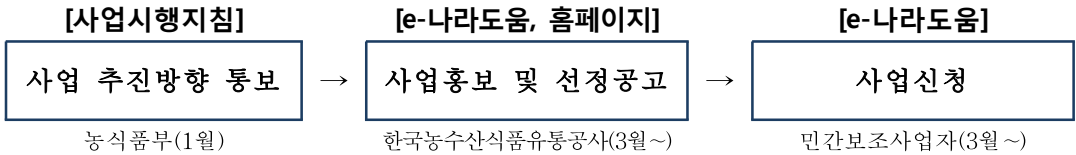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기준
 - 특판행사/임시장터 : 보조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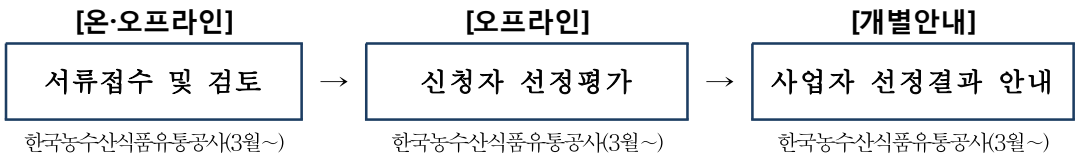
- (특판행사) 개소당 2백만원 내외
- (임시장터) 개소당 10백만원 내외
- * 사업규모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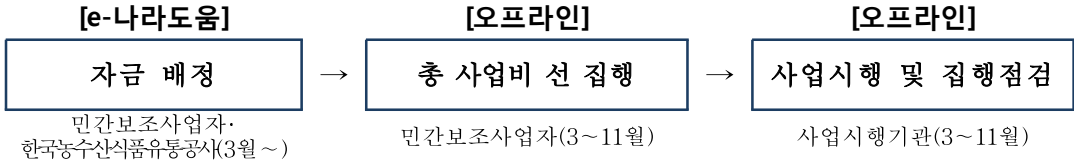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통지(1월)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림수산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1월)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 추진(3월~)
 -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 안내)
- 사업신청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사업신청서 등을 제출(3월~)
 - 신청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신청 등 작성
 -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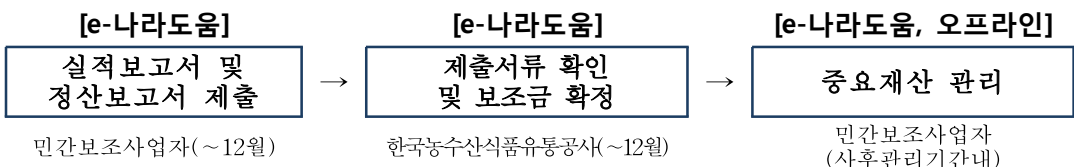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등 검토
-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업자를 확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안내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변경제출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은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자금 배정을 실시
 - 단, 농산물판로확대 지원사업은 e-나라도움을 통해 비예탁형(실적베이스)으로 추진되며 이에 따라 사후정산 방식으로 진행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 (정산보고서 검증)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 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선정사업자는 배정액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보고
 -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등록(예산집행 내역 등) 후 보조사업 실행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을 점검하여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45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 지급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의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63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 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IV

평가 및 환류

1.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농산물 신유통확산(특판 등) 결과보고

1 사업추진개요

- 단 체 명 :
- 사 업 명 :
- 일자/장소 :
- 내 용 :

2 추진결과

- 상세내용

행사종류	일정		항목(교육, 체험 등)	비고
	날짜	시간		
	...			

3 추진효과

-

4 행사기간 판매실적 및 참가자 현황

- 판매실적 : 행사기간 매출액
- 참가자 현황 : (농가) 00명 / (소비자) 00명 등

5 행사추진증빙

- 사진
- 참석자 명단(서명 必)

※ 결과보고양식은 지원사업에 따라 세부내역 변경 가능

세부사업명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예산 (백만원)	2,450				
사업목적	○ 직거래장터 활성화							
사업 주요내용	○ 직거래장터 운영에 필요한 부스,장비,홍보 등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68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지원자격 및 요건	○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 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주체 필요) 국고 70%,자부담 30%							
지원한도	○ (대표장터) 1개소 최대 500백만원 (보조 70%) ○ (정례장터) 개소 당 최대 50백만원 (보조 70%)							
재원구성 (%)	국고	7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500	3,500	3,500	미정			
	국 고	2,450	2,450	2,450	-			
	자부담	1,050	1,050	1,050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정책과 유통조성처 유통기획부		사무관 김남주 부 장 백태근		044-201-2285 061-931-1010		
신청시기	정기(매년 2월까지)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관련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지사항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농산물직거래장터운영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대표장터) 대표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광역시 또는 도) 단, 대표장터를 운영·관리하는 대표법인 필요
- (정례장터) 정례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주체 필요)

2. 지원자격 및 요건

- 대표장터
 - (오프라인 검증) 장터 개설지 점용권 확보, 대표법인과 지자체 간 운영계약
 - 선정우선순위 : 평가위원 평균점수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동점자 발생 시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고득점한 사업자 우선 선정
 - * 계량과 비계량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 정례장터
 - (오프라인 검증) 장터 개설지 점용권 확보
 - 선정우선순위 : 평가위원 평균점수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 계량과 비계량 합산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3. 지원대상

- (대표장터)
 - 대표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장치(텐트, 매대, 비가림막 등) 설치·구입·임대, 홍보비, 소비자교류(체험), 참여자 교육, 인건비 등
 - 개설 및 운영 목적으로 구매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5년간 사후관리 실시
 - 종량제봉투, 전기요금 등 세금성 지출, 장소 임차비, 차량구입 등 인정 불가
- (정례장터)
 - 정례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장치비, 운영비 및 홍보비 등
 - 보험료, 공공요금, 장소 임차비, 수수료 등 세금성 지출 정산 불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대표장터) 시설·장치, 홍보, 교류·체험, 교육, 인건비 및 기타 대표장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 시설·장치 : 텐트, 매대, 비가림막, 조명, 전기, 카트, 정수기 등
 - 홍보 : 현수막, 전단지, 케이블광고, 사이니지, SNS 등
 - 교류, 체험 : 버스임차비, 재료비, 기념품 구매·제작비 등
 - 교육 : 강사비, 자료제작비, 간식(다과) 구입비 등
 - 인건비 : 대표장터 전담 직원에 대한 인건비
 - 기타 : 대표장터 운영에 필요한 항목 중 농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항목
- (정례장터) 시설·장치비 및 홍보비
 - 시설·장치 : 텐트, 매대, 비가림막, 조명, 전기, 카트, 정수기 등
 - 홍보 : 현수막, 전단지, 팸플렛, 신문광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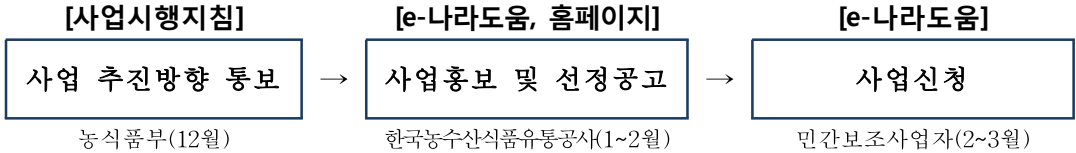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기준
 - (대표장터) 국고보조 70%
 - (정례장터) 국고보조 70%
- 의무사항
 - (대표장터) 연 56회 이상 운영, 50농가 이상·50동 이상 운영
 - (정례장터) 연 20회 이상 운영, 10농가 이상·10동 이상 운영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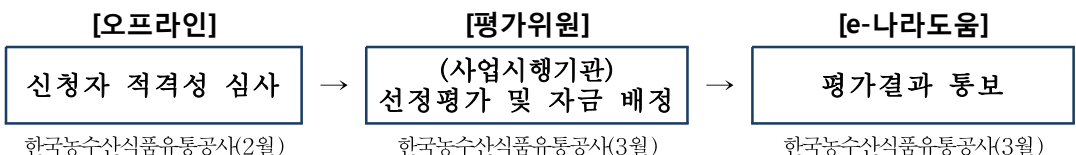
- (대표장터) 최대 500백만원
- (정례장터) 장터 당 최대 50백만원
 - 기 지원 사업자 차등 지급(1회 : 40백만 원, 2회 이상 : 30백만 원 한도)
 - * 사업규모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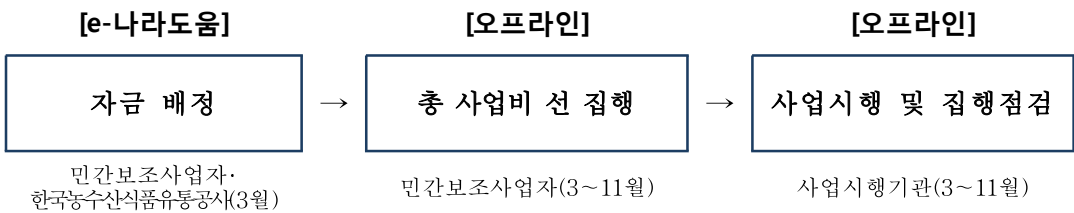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 규정」 제35조제6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한다.
- ※ 사업대상자가 정보취약계층 등 e나라도움을 사용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침’을 참조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평가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 오프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운영일수, 운영규모, 참여농가수 등 최소 운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현장실사 결과 등에 따라 정책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 사업시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농업기술센터, 대출취급기관 등의 사업검토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평가를 개최하여 자금 배정 실시
 - 평가위원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
 - 지원대상자의 자금배정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51조)
 -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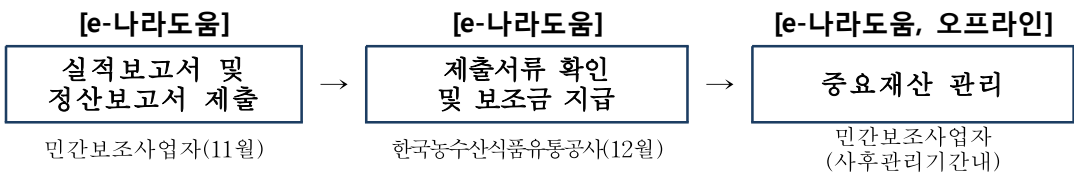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은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자금 배정을 실시
 - 단, 직거래장터 지원사업은 e-나라도움을 통해 비예탁형으로 추진되며 이에 따라 사후정산 방식으로 진행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 (정산보고서 검증)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을 점검하여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의 시기와 방법을 명시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당초 수립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장점검 등 실시 가능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 지급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의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63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 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종료되면 아래의 양식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제출

2018년도 직거래장터 운영실적 보고서				
		<input type="checkbox"/> 대표장터		<input type="checkbox"/> 정례장터
장터명				
장터주소				
주관기관	담당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운영주체	<i>대표법인명 기재</i>			
	담당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운영규모	부지면적	_____ m ²	테нт 크기/갯수	__ m x __ m / __ 동
운영일정	정기	__ 월 __ 일 ~ __ 월 __ 일 / __ 요일		
	비정기	__ 월 __ 일 ~ __ 월 __ 일 / __ 요일		
운영실적	매출액	_____ 백만원		
	방문객수	_____ 명		
	개설횟수	_____ 회		
	참여농가	_____ 명		
	주요품목	__ 품목 (세부품목 5가지 이상 기재)		
주요 운영결과	농가 성공사례			
	농가관리			
	상품관리			
	소비자관리			
	개선사항			

※ 운영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서류 등 포함

2. 평가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운영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미흡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부여
 - (인센티브) 차년도 사업자 평가 시 우대
 - (페널티) 차년도 사업자 선정 제외

세부사업명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교육 및 홍보 지원			예산 (백만원)	2,265			
사업목적	○ 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주요내용	○ 직매장 설치시 인테리스,장비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68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지원자격 및 요건	○ 직거래장터, 직매장, 꾸러미 등 직거래 사업자 (단, 지자체, 공공기관은 위탁 운영하는 법인격 주체 필요) 국고 100%							
지원한도	○ (직거래교육) 교육·교류 지원 개소당 10백만원 내외 등 ○ (직거래홍보) 직거래 페스티벌 개소당 3백만원 내외 등 ○ (싱싱장터) 시스템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등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265	1,265	2,265	미정			
	국 고	1,265	1,265	2,265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정책과 유통조성처 유통기획부		사무관 김남주 부 장 백태근		044-201-2285 061-931-1010		
신청시기	정기(3월~)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관련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지사항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교육 및 홍보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장터, 제철꾸러미 등 직거래사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로컬푸드직매장 등 직거래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

3. 지원대상

- (직거래교육)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직거래홍보)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직거래교육) 생산자교육, 소비자교육(교류), 경영컨설팅 비용 등
- (직거래홍보) 소비자체험행사, 특관행사 등 다양한 행사 개최비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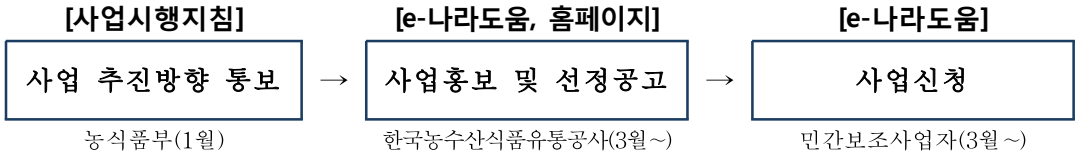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기준
 - 직거래 교육 및 홍보 : 보조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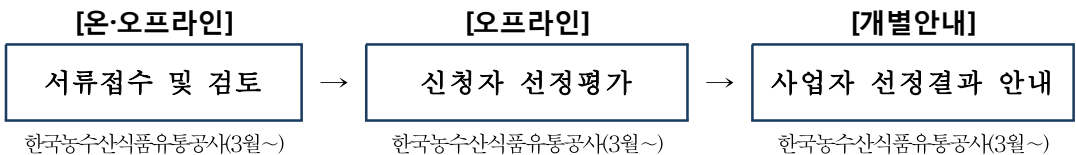
- (직거래교육) 교육·교류 지원개소당 10백만원 내외 등
 - (직거래홍보) 직거래 페스티벌 개소당 3백만원 내외 등
- * 사업규모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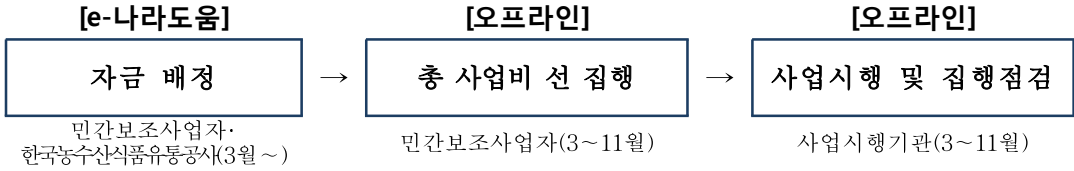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통지(1월)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림수산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1월)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 추진(3월~)
 -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 안내)
- 사업신청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사업신청서 등을 제출(3월)
 - 신청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신청 등 작성
 -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 규정」 제35조제6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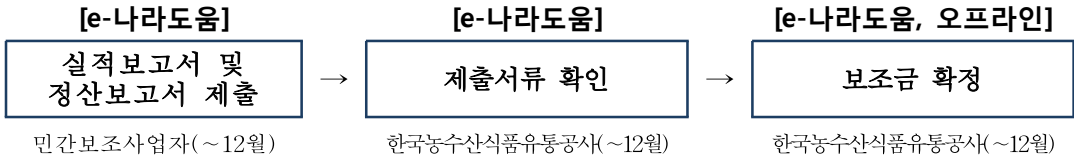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등 검토
-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업자를 확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안내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변경제출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은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자금 배정을 실시
 - 단, 직거래교육·홍보 지원사업은 e-나라도움을 통해 비예탁형(실적베이스)으로 추진되며 이에 따라 사후정산 방식으로 진행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 (정산보고서 검증)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선정사업자는 배정액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보고
 -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등록(예산집행 내역 등) 후 보조사업 실행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을 점검하여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 지급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의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 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1.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직거래교육·홍보 지원사업 결과보고

1 사업추진개요

- 단 체 명 :
- 사 업 명 :
- 일자/장소 :
- 내 용 :

2 추진결과

- 상세내용

행사종류	일정		항목(교육, 체험 등)	비고
	날짜	시간		
	...			

3 추진효과

-

4 행사기간 판매실적 및 참가자 현황

- 판매실적 : 행사기간 매출액
- 참가자 현황 : (농가) 00명 / (소비자) 00명 등

5 행사추진증빙

- 사진
- 참석자 명단(서명 必)

※ 결과보고양식은 지원사업에 따라 세부내역 변경 가능

세부사업명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산물 직매장 운영지원			예산 (백만원)	5,250			
사업목적	○ 직매장설치지원							
사업 주요내용	○ 직매장 설치시 인테리스,장비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68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지원자격 및 요건	○ 생산자단체(농협,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협동조합기 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및 사회적기업 국고 30%, 자부담 70%							
지원한도	○ 개소당 300백만원 내외 (보조30%)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7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6,250	21,000	17,500	미정			
	국 고	7,875	6,300	5,250	-			
	자부담	18,375	14,700	12,250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정책과 유통조성처 유통기획부		사무관 김남주 부 장 백태근		041-201-2285 061-931-1010		
신청시기	정기(매년 2월까지)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관련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지사항 농산물직매장 운영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농협,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 포함) 및 사회적기업

2. 지원자격 및 요건

- 총출자금 50백만원 이상 조직
- 영농조합법인 및 협동조합의 경우 농업인 조합원 10인이상,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생산자단체(농업인중심의) 지분) 51%이상
 - *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 농업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설치유형 : 독립매장형(단독매장, 층분리형 또는 벽체분리형 복합매장)
- 면적기준 : 부대시설을 제외한 직매장 순수 판매면적 100㎡ 이상

3. 지원대상

- 로컬푸드직매장 설립에 필요한 내부인테리어·시설·기자재
 -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로부터 5년간 사후관리 추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판매·준비·부대시설에 대한 내부인테리어 기본공사, 부대공사, 기자재 구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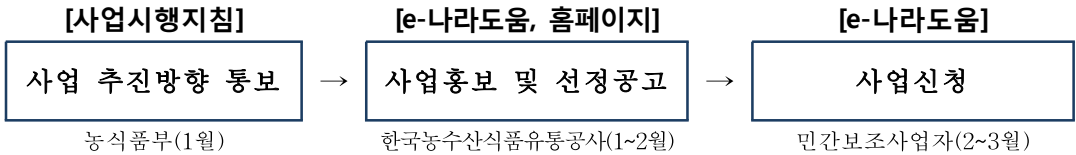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기준
 - (로컬푸드직매장) : 보조 30%, 자부담 7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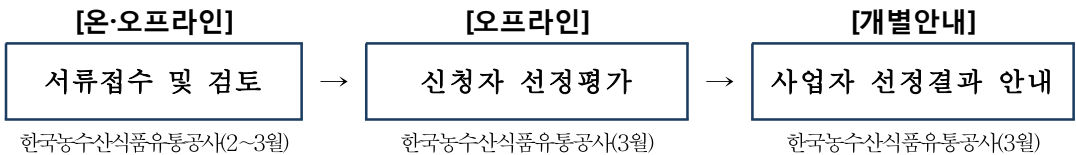
- (로컬푸드직매장) : 개소당 300백만원 한도
 - * 사업규모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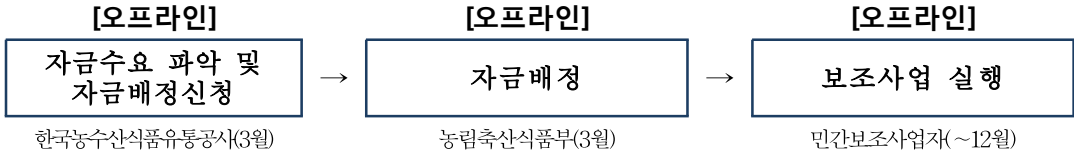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통지(1월)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림수산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1월)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 추진(1~2월)
 -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 안내)
- 사업신청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사업신청서 등을 제출(2월)
 - 신청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신청 등 작성
 -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 규정」 제35조제6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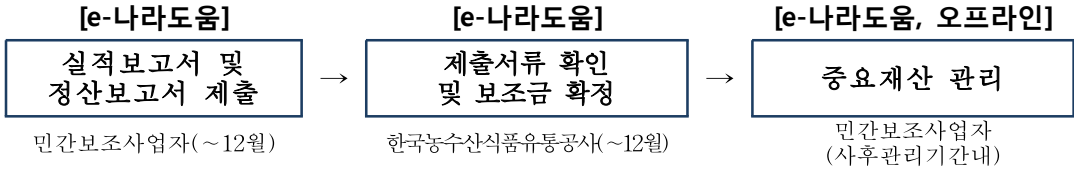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등 검토
-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업자를 확정할 경우 대상자에게 안내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변경제출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직매장 사업자로 선정된 생산자단체 등의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자별 예산 배정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배정 신청
 -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은 e-나라도움을 통해 비예탁형(실적베이스)으로 추진되며 이에 따라 사후정산 방식으로 진행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자금배정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 (정산보고서 검증)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선정사업자는 배정액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보고
 -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등록(예산집행 내역 등) 후 보조사업 실행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을 점검하여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45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 지급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의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 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 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1.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종료되면 아래의 양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매 장 명				개장일	
매장전화				주 소	
형 태	독립매장 독립형(벽채분리, 층분리) 중 선택	면적	총면적 : m ² 로컬푸드직매장 면적 : m ²		
부속시설	공동작업장, 농가레스토랑, 체험장 등				
총사업비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백만원				
판매품목	합계	농산물	축산	가공식품	기타
수수료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기타	
참여 농업인 현황	계	연령별 분포		경지규모별 분포	
		65세 이상	65세미만	0.5ha 미만	0.5ha 이상
	명				
지원금 집행내역	구 분		금 액	비 고	
	- 인테리어/리모델링				
	- 전기·통신·소방공사				
	- CCTV				
	- 냉난방기				
	- 냉장·냉동 쇼케이스				
	- 진열대				
	- 간판 및 사인물				
	- 정육코너 집기				
	- 즉석가공 설비				
	- 작업장 비품류				
- 기타					
계					

직매장 운영현황

- (농가 조직화)
 -
- (품질관리)
 -
- (안전성관리)
 -
- (지자체 협력내용)
 -
- (소비자 교류활동)
 -
- (건의사항)
 -

※ 운영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서류 등 포함

2. 평가

- 사후관리를 통해 로컬푸드직매장 평가 진행
 - (인센티브) 포상 및 언론홍보 기회제공 등
 - (페널티) 점검사항에 대해서 취득점수가 총점기준 70%미반시 위반. 3회 위반시 보조금 회수(주의→경고→회수)

세부사업명	농산물마케팅지원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산물마케팅지원(자치단체)			예산 (백만원)	2,250		
사업목적	○ FTA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소비자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및 소비자 선호변화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광역 단위의 규모화·전문화된 마케팅 조직 육성 지원						
사업 주요내용	○ 농가조직화 및 공동선별·공동계산제 활성화 등을 통해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을 위해 조직화, 홍보·마케팅 항목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8조」 제8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고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농림축산식품 사업신청서 검토) 제8항 및 제79조(지원의 재제한) 제1항에 따른 부담사용 등 조직은 선정대상에서 제한						
지원한도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조직화 취급액 우수조직 - 조직화취급액 150억원 이상 : 국고보조 200백만원 이내 - 조직화취급액 100억원 이상~150억원 미만 : 국고보조 100백만원 이내 - 조직화취급액 100억원 미만 : 국고보조 50백만원 이내 ○ 지자체 : 국고보조 10백만원 내외						
재원구성 (%)	국고	30 50	지방비	30% -	용자		자부담 40% 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이후		
	합 계	7,500	7,500	7,500	37,500		
	국 고	2,250	2,250	2,250	11,250		
	지방비	2,250	2,250	2,250	11,250		
	자부담	3,000	3,000	3,000	15,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유통정책과 지자체 담당부서		사무관 하성태 지자체 담당자		044-201-2223 -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8월 말)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시·군·구 또는 시·도)
- 사업시행주체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연합사업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지자체(시·군·구 또는 시·도)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8조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57조 (기금의 용도)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검토) 제6항 및 제79조(지원의 재제한) 제1항에 따른 부당사용 등 조직은 선정대상에서 제한

3. 지원대상

- 전년도 산지유통활성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조직
 - * 참여조직은 통합마케팅조직(지역연합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을 통한 지원만 가능
- 전년도 농산물마케팅대상 수상조직
- 해당지역에 전년도 산지유통활성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조직이 있는 지자체(시·군·구 또는 시·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직화(통합마케팅조직 및 참여조직) : 농가 교육·컨설팅, 품질조사비 및 검사비 등 산지 조직화 관련 비용
 - * 산지조직 담당직원 조직화 및 마케팅 전문교육비 포함
- 홍보·마케팅(통합마케팅조직) : 상품개발, 판촉행사, 시장개척, 광고, 마케팅 컨설팅, 브랜드개발 등의 관련 비용

- * 지자체 지원은 농가·산지조직 조직화 교육 및 산지조직에 대한 홍보·마케팅 교육에 가능하고, 참여조직 지원은 조직화 항목에 한정(붙임1 참조)
- * 농산물마케팅대상 수상 참여조직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합마케팅조직의 홍보·마케팅비용으로 사용 가능
- * 참여조직의 자금 사용은 통합마케팅조직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참여조직이 통합마케팅조직으로부터 자금을 재교부 받아 직접 집행하였을 경우 통합마케팅조직이 참여조직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최종 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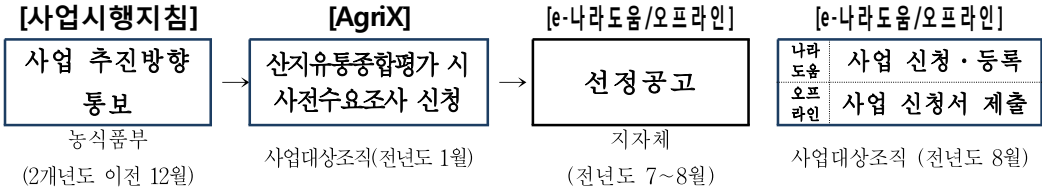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조직화취급액 우수조직

지원범위	국고보조
조직화취급액 150억원 이상	200백만원 이내
조직화취급액 100억원 이상 ~ 150억원 미만	100백만원 이내
조직화취급액 100억원 미만	50백만원 이내

- * 전년도 발작물공동경영체 연차평가 결과 우수조직은 30백만원 이내 추가 지원하며, 지원한도액 적용 제외
- * 농산물마케팅대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배정액은 지원한도액 적용 제외
- 지자체 : 국고보조 10백만원 내외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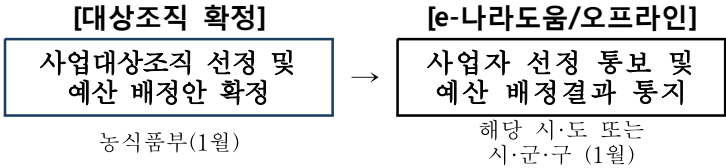
사업대상조직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은 aT의 사전 수요조사에 신청(전년 1월말)
 - * 사전 수요조사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신청(지자체는 제외)
- 최종 사업신청은 각 시·도 또는 시·군·구를 통해서 해야 함(전년 8월)

시·도 및 시·군·구

- 각 시·군·구에서는 산지조직의 사업신청을 접수하여 해당 시·도에 제출 (전년 8월)
- 각 시·도에서는 시·군·구별 사업 신청내역을 취합·조정하여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전년 9월)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 규모를 감안하여 각 시·도별 가내시 결과를 각 시·도 및 aT에 통지(전년 10월말)
- 각 시·도별 예산배정(안)을 확정하여 해당 시·도 및 aT에 통지 (1월초)

시·도 및 시·군·구

- 각 시·도에서는 시·군·구별 사업대상조직 선정 및 예산(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배정(안)을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전년 12월)
- 각 시·도는 사업대상조직 선정 및 예산배정 결과를 해당 시·군·구 및 사업대상 품목광역조직에 즉시 통지(1월)
- 해당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선정 및 예산배정 결과를 사업대상조직에게 통지(1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대상조직

- 사업대상조직은 사업추진계획을 관할 시·군·구에 제출(1월말)
 - * 품목광역조직은 사업비를 정산할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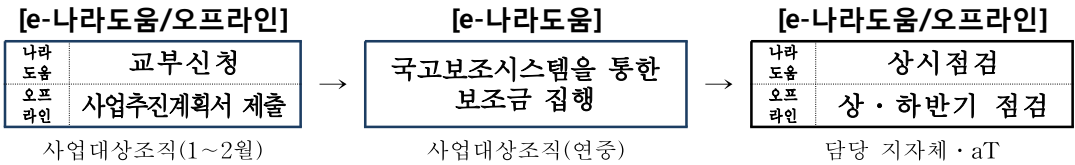
시·도 및 시·군·구

- 각 시·군·구는 관할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추진계획 제출 요청과 접수된 사업추진계획을 검토 승인 후 관할 시·도에 제출(2월초)
 - * 품목광역조직은 사업비를 정산할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제출

< 사업계획 조정 절차 >

- 승인받은 사업추진계획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는 사업대상조직별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세부내역”의 주요항목 기준으로 사업비 증감액이 30% 미만은 자체 조정 가능하고, 30% 이상~50% 미만을 조정할 경우는 관할 시·군·구의 승인 필요
 - * 50% 이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는 aT와 협의하여 승인 여부 통지.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사업대상조직

- 사업대상조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 사업대상조직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집행하고, 사업실적에 따라 지자체에 사업비 요청(분기별 또는 수시)

시·도 및 시·군·구

- 시·군·구는 사업대상조직이 신청한 사업비(국고보조)에 대하여 시·도에 제출(일괄 또는 수시)
 - 시·도는 시·군·구에서 신청된 사업비(국고보조)에 대하여 농식품부에 사업비 배정(일괄 또는 수시) 요청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대상조직의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 사업의 실적에 따라 사업비(국고보조 및 지방비)교부·집행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 aT는 세부항목별 집행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실적 확인 등에 협조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배정 요청한 사업비(국고보조)에 대하여 한도 내에서 자금배정 (일괄 또는 수시)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정산》

[e-나라도움/오프라인]

나라 도움	정산마감
오프 라인	정산자료 제출

사업대상조직 (12월)

[e-나라도움]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해당 시·도 및 시·군·구 (2월)

사업대상조직

- 사업비 요청 또는 최종 정산시에는 제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국고보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산마감(12월말까지)

시·도 및 시·군·구

- 시·군·구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추진내용 및 자금용도를 확인 후 최종 정산하여 관할 시·도를 통하여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차년 2월초)

《사후관리》

시·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 사업추진실적 점검(매 분기별 실시)
 - 농산물마케팅자금 사업계획 시행절차, 사업비 집행실적, 운영현황 등
 - * 사업점검은 시·도 및 시·군·구, aT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

《제재》

시·도 및 시·군·구

- 시·군·구 및 시·도는 사업목적외 사용 등의 부당사용이 확인될 시 관련 법률 및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고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

세부사업명	도매유통활성화지원(용자)				세목	기타민간 기관용자금		
내역사업명	도매시장출하촉진(용자)				예산 (백만원)	45,000		
사업목적	○ 도매시장 유통관계자에 선도금, 결제자금 등 지원을 통해 농산물 출하촉진 및 농가소득 안정 유도							
사업 주요내용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에 선도금, 결제자금,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을 지원하여 가격변동성 완화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제73조(재정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시장도매인							
지원한도	○ 선도금 : 전년도 일평균 선도금 지급 금액을 배정비율로 산출 ○ 결제자금 : 전년도 업체별 1회전 대금결제자금 지급실적을 배정 비율로 산출							
재원구성(%)	국고	0	지방비	0	용자	100	자부담	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67,000	50,000	45,000	45,000			
	용 자	67,000	50,000	45,000	45,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정책과 시장지원부		사무관 김재경 부 장 김명수		044-201-2221 061-931-1040		
신청시기	정기(3월),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1. 사업대상자

- 선도금 : 도매시장법인(민영도매시장, 공공출자법인 포함), 시장도매인
- 결제자금 : 도매시장법인(민영도매시장, 공공출자법인 포함),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 도매시장법인(공공출자법인 포함), 중도매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세부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선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지원제외대상> · 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 법인·시장도매인 * 평가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안법 제77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평가
결제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지원제외대상> · 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 법인·시장도매인 * 평가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안법 제77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평가 ○ 중도매인 <지원제외대상> · 개설자의 중도매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자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법인 <지원제외대상> · 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 법인·시장도매인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평가: 농안법 제77조에 규정에 의함 ○ 중도매인 <지원제외대상> · 개설자의 중도매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자

3. 지원대상

- 농산물 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및 시장도매인 농산물 거래 운영 자금(선도금, 결제자금,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세부사업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선도금 지원	◦ 도매시장 및 공판장 출하증대를 위한 출하선도금
결제자금 지원	◦ 출하자 등에 대한 대금결제자금(수입산 제외)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	◦ 국내산 농산물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수입산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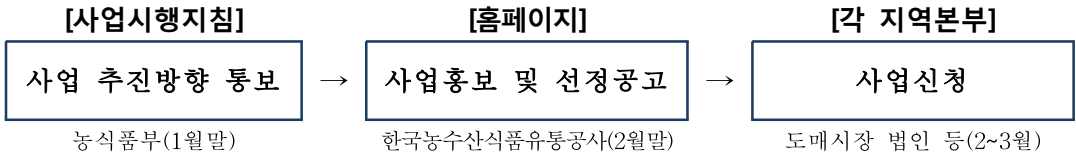
○ 사업별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세부사업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	<p><지원 형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금 : 용자조건 연리 1.5%, 1년 상환 ◦ 결제자금 : 용자조건 연리 3%, 1년 상환 ※ 결제자금의 경우 '16년도 도매시장평가 결과(농림축산식품부)에 따라 금리 차등 지원(최우수 3%p 인하, 우수 1%p 인하, 양호0.5%p 인하) ※ 지원금리는 농안기금 운영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p><사업 의무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법인 : 12배 이상, 시장도매인 6배, 중도매인 3배 이상 - 선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 용자 기간 중 출하선도금 운용실적이 지원자금의 125%*3배수 이상에 미달한 경우 그 미달차액에 대하여 위약 처리 - 결제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의 연간 상장(거래) 실적 결제자금이 대출된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차액에 대하여 위약 처리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사업	<p><지원 형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제자금 : 용자조건 연리 1.5%, 1년 상환 <p><사업 의무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법인 3배 이상, 중도매인 1.5배 이상 ·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거래실적이 사업의무량에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차액에 대하여 위약 처리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세부사업	지원한도액 기준
선도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 용자대상 신청 업체별 전년도 일평균 선도금 지급 금액을 배정비율로 산출하여 예산범위 내 배정
결제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 전년도 업체별 1회전 대금결제자금 지급실적을 배정비율로 산출하여 예산범위 내 배정 · 도매시장 법인 : 상장거래금액의 1/12(연 12회전 기준) · 시장도매인 : 거래금액의 1/6(연 6회전 기준) · 중도매인 : 거래금액의 1/3(연 3회전 기준)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 신청업체별 전년도 정가·수의매매 거래액(가중치 70%)과 향후 1년간 정가·수의매매 거래 계획 금액(가중치 30%)으로 배정비율을 산출하여 예산 범위 내 배정

1. 사업신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 통지(1월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해당부서)에 보고하고,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지역본부, 도매시장법인협회, 중도매인협회에 등 관계기관에 시달(2월말)

* 유통공사홈페이지,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게시 등 홍보 실시

자금신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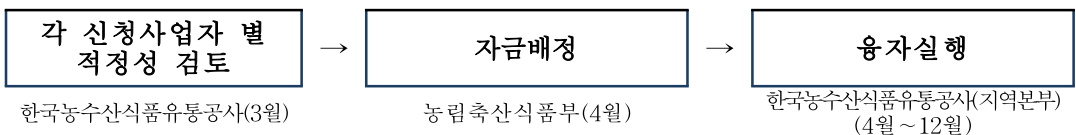
- 자금신청서 → 유통공사(관할지역본부)

2. 사업자 선정단계 (※ 공모사업인 경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 사업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매시장법인의 평가 결과, 개설자의 행정처분 사항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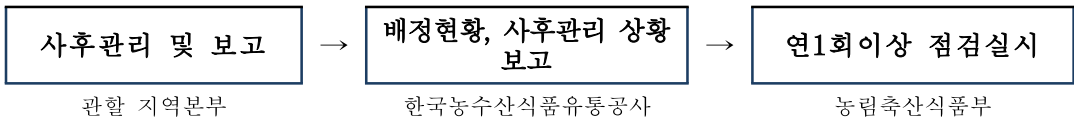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단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자금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 등의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담보여력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별 예산 배정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배정 신청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자금의 배정현황, 자금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상황을 사업기간 종료 후 익월 30일 이내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자금관리주체(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역본부)

- 각 지역본부에서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시장지원부)의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시장지원부)에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 자금운영실태, 동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해 반기별 1회이상 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 점검자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역본부 합동점검
- 점검항목 : 출하선도금, 결제자금 운영 현황, 사업의무액 준수여부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대출취급기관은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7조,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해당 조직의 자격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통보

자금관리주체(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역본부)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
- 위약금 산출식 : 위약원금(미달차액) × 위약금리 × 위약일수/365
 - 위약원금 : 사업의무액(운용목표) - 운용실적
 - 위약금리 :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농협은행)
 - 위약일수 : 대출일로부터 회수일의 전일까지

IV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물량집하·분산노력, 경영관리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제재 조치

2. 환류

- 배정액 및 금리 차등지원('13년도 도매시장평가 결과(농림축산식품부)부터 적용)
 - 출하촉진(결제자금)

구 분	최우수법인	우수법인	양호법인	미흡법인	부진법인
배정액	30% 증액	20% 증액	-	30% 감액	50% 감액*
금 리	3%p 인하	1%p 인하	0.5%p 인하		-

* 전년 지원금액의 70% 이내로 제한

세부사업명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용자)	세목	기타민간 기관용자금					
내역사업명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예산 (백만원)	20,000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공판장 등에 선도금, 결제자금 지원 등을 통해 농산물 출하촉진 유도 ○ 농협공판장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을 지원하여 가격변동성 완화 							
사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공판장으로 출하하는 출하자 대상 선급금 지원 재원 지원 ○ 농협공판장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재원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제73조(재정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경제지주 및 회원농협 도매시장공판장 및 산지공판장 ○ 농협경제지주 및 회원농협의 산지공판장 소속 중도매인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금 : 전전년도 일평균 선도금 운용실적 해당금액 ○ 결제자금 : 전년도 거래실적의 1/12 이내 							
재원구성(%)	국고	-	지방비	-	용자	100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6,000	23,000	20,000	20,000			
	용 자	26,000	23,000	20,000	20,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유통정책과 농산물판매부(조합공판팀)		사무관 김재경 팀 장 명재완		044-201-2221 02-2080-8071		
신청시기	정기(3월말 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농협경제지주		
관련자료	공판장(청과) 출하촉진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II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협경제지주 및 회원농협의 도매시장공판장 및 산지공판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세부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선도금 및 공판장 결제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경제지주 및 회원농협 도매시장공판장 및 산지공판장 <지원제외대상> ○ 도매시장공판장 : 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 공판장
정가·수의매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안법 제77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평가 ○ 산지공판장 :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부문업적평가 산지공판장 중 연속 3회 이상 부진(하위 1~3위) 공판장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세부사업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선도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하증대를 위해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지원하는 출하선도금
결제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하자 등에 대한 대금결제자금(수입산 제외) * 선도금 및 공판장 결제자금 통합운용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산 농산물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수입산 제외)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세부사업	지원한도액 기준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금 : 전전년도 일평균 선도금 운용실적 해당금액 공판장 결제자금 : 전년도 거래실적의 1/12 이내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한도액 - 전년도 정가·수의매매실적(수입산 제외)의 1/3이내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세부사업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p style="text-align: center;">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p>	<p>① 공판장 <지원 형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금 및 결제자금 : 용자조건 연리 3%, 1년 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제자금 금리 : 도매시장공판장의 경우 '16년도 도매시장평가(농림축산식품부) 결과에 따라 금리 차등 지원(최우수 3%p 인하, 우수 1%p 인하, 양호0.5%p 인하), 산지공판장의 경우 '17년도 농협공판장 부문업적평가(농협경제지주) 결과에 따라 금리 차등 지원(상위 1~3위 0.5%p 인하) ※ 지원금리는 농안기금 운영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p><사업 의무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금 : 지원자금의 총 125% 이상을 선도금으로 사용 <table border="1" data-bbox="377 833 1204 919"> <tr> <td>사용기간</td> <td>30일까지</td> <td>60일까지</td> <td>90일까지</td> <td>120일까지</td> <td>150일까지</td> </tr> <tr> <td>출하약정 금 액</td> <td>선급금 해당액</td> <td>선급금의 1.5배</td> <td>선급금의 2.0배</td> <td>선급금의 3.0배</td> <td>선급금의 4.0배</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제자금 : 연간 거래실적이 지원금액의 12배 이상 ◦ 선도금과 공판장 결제자금은 별도 신청을 받고, 이에 따른 사업의무량도 별도 관리 	사용기간	30일까지	60일까지	90일까지	120일까지	150일까지	출하약정 금 액	선급금 해당액	선급금의 1.5배	선급금의 2.0배	선급금의 3.0배	선급금의 4.0배
사용기간	30일까지	60일까지	90일까지	120일까지	150일까지								
출하약정 금 액	선급금 해당액	선급금의 1.5배	선급금의 2.0배	선급금의 3.0배	선급금의 4.0배								
<p style="text-align: center;">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p>	<p><지원 형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 용자조건 연리 1.5%, 1년 상환 <p><사업 의무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 3배 이상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 통지(1월말)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해당부서)에 보고하고, 농협경제지주 공판장·농협 지역본부 및 회원조합(도매시장공판장, 산지공판장)에 시달(2월말)

자금신청자

- 농협경제지주 공판장·회원농협공판장
 - 농안기금 운영현황 및 소요액 신청서를 농협경제지주에 제출(3월)

2. 사업자선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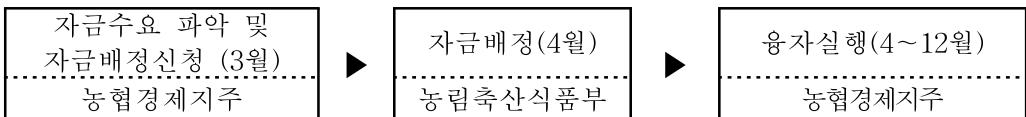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판장 평가 결과, 개설자의 행정처분 사항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3. 자금배정단계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에서는 농산물출하촉진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판장의 자금 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공판장별 예산 배정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배정 신청



4. 이행 점검 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는 자금의 배정현황, 자금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상황을 매반기 종료 후 익월 30일 이내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자금관리주체(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는 사후관리 실태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판장의 자금운영실태, 동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해 반기별 1회이상 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 점검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합동점검
- 점검항목 : 출하선도금, 결제자금 운영 현황, 사업의무액 준수여부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농협경제지주)

- 대출취급기관은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7조,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해당 조직의 자격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통지

자금관리주체(농협경제지주)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
- 위약금 산출식 : 위약원금(미달차액) × 위약금리 × 위약일수/365
 - 위약원금 : 사업의무액(운용목표) - 운용실적
 - 위약금리 :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농협은행)
 - 위약일수 : 대출일로부터 회수일의 전일까지

IV

평가 및 환류

<사업평가>

- 도매시장공판장, 산지공판장 물량집하·분산노력, 경영관리 노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제재 조치

<환류>

- 배정액 및 금리 차등지원
 - 도매시장공판장('16년도 도매시장평가 결과(농림축산식품부) 적용)

구 분	최우수공판장	우수공판장	양호공판장	미흡공판장	부진공판장
배정액	30% 증액	20% 증액	-	30% 감액	50% 감액*
금 리	3%p 인하	1%p 인하	0.5%p 인하		-

* 전년 지원금액의 70% 이내로 제한

- 산지공판장('17년도 산지공판장평가 결과(농협경제지주) 적용)

구 분	우수 공판장 (상위 1~3위)	1회 부진 공판장 (하위 1~3위)	2회 연속 부진 공판장 (하위 1~3위)
배정액	20% 증액	30% 감액*	50% 감액*
금 리	0.5%p 인하	-	-

* 전년 지원금액의 70% 이내로 제한

세부사업명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용자)			세목	기타민간 기관용자금			
내역사업명	화훼유통개선지원(용자)			예산 (백만원)	15,000			
사업목적	○ 화훼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출하유도 및 선도금·결제자금을 지원하여 공판장의 출하 및 농가소득안정 유도							
사업 주요내용	○ 사용용도 : 선도금, 결제자금 ○ 사업대상자 : 화훼농가 및 생산자단체, 화훼공판장, 화훼공판장 소속 중도매인 등 ○ 지원조건 : 용자 100% * (선도금) aT공판장: 연리 2.5% 1년 상환, 농협공판장: 연리 3.0%, 1년 상환 (결제자금) aT공판장, 농협공판장: 연리 3% 1년 상환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및 제73조(재정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선도금 - (화훼농가 및 생산자단체)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 - (농협공판장) 농협경제지주 및 회원조합에서 운영하는 공판장 ○ 결제자금 -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최근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1개월 이상 받지 않은 자 - (농협공판장) 농협경제지주 및 회원조합에서 운영하는 공판장 - (소매유통업체)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으로부터 화훼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소매유통업체 중 자체사업장을 갖추고 있는 업체							
지원한도	○ 선도금(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 : 전년도 출하실적의 변경 90% 이내 - 신용대출은 50백만원 이내, 담보대출은 400백만원 이내 ○ 결제자금 -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전년도 경매실적의 50% 이내, 400백만원 이내 - (소매유통업체) 전년도 화훼류 매출액(과세표준, 자재포함)의 50% 이내, 400백만원 이내							
재원구성(%)	국고	-	지방비	-	용자	100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3,000	20,500	15,000	75,000			
	용 자	23,000	20,500	15,000	75,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이강권		044-201-2261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		
관련자료	화훼유통개선지원(용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선도금 : 화훼농가 및 생산자단체, 농협경제지주 및 회원농협 공판장
- 결제자금 :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농협경제지주 및 회원농협 공판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세부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선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훼농가 및 생산자단체 ·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 ◦ 농협공판장 · 농협경제지주 및 회원조합에서 운영하는 공판장
결제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 최근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1개월 이상 받지 않은 자 ◦ 농협공판장 · 농협경제지주 및 회원조합에서 운영하는 공판장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세부사업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선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훼공판장으로의 출하증대를 위해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지원하는 출하선도금
결제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 해당 화훼공판장에서 낙찰받은 화훼 경매 물량에 대한 결제자금 구입할 때 소요되는 화훼 구매자금 ◦ 농협공판장 ·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지급하는 화훼 경매물량 결제자금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세부사업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액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T 화훼공판장 : 용자조건 연리 2.5%(대출) 이내, 1년 이내 · 농협공판장 : 용자조건 연리 3.0%(대출) 이내, 1년 이내 ※ 출하실적이 우수한 농가(5천만원 이상/년)에는 우대금리 적용 : 0~2% 				
	2억원이상	15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미만
	0%	1.0%	1.5%	2.0%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제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T 화훼공판장 : 용자조건 연리 3.0%(대출) 이내, 1년 이내 · 농협공판장 : 용자조건 연리 3.0%(대출) 이내, 1년 이내 ※ 경매실적이 우수한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에는 우대금리 적용 : 0~2.5% 				
상위 10% 미만	상위 10% 이상 15% 미만	상위 15% 이상 20% 미만	상위 20% 이상		
0 ~ 1%	2.0%	2.5%	3.0%		
<사업 의무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훼농가 및 생산자단체 : 대출금액의 125% 이상 공판장에 출하 ○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 대출금액의 125% 이상 공판장에서 경락 ○ 농협공판장 : 선도금의 경우, 일평균 출하선도금 운용실적 지원자금의 40% 이상 운영 결제자금의 경우, 연간 거래실적이 지원금액의 6배 이상 ※ 선도금 또는 결제자금만으로 사업의무량 충족 시 사업의무액 인정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선도금(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 : 전년도 출하실적의 변경 90% 이내
 - 신용대출은 50백만원 이내, 담보대출은 400백만원 이내
- 결제자금(중도매인, 매매참가인) : 전년도 경매실적의 50% 이내, 400백만원 이내
- 선도금 및 결제자금(농협공판장) : A+B 이내
 - 출하선도금(A) : 전년도 일평균 선도금 지급실적에 해당하는 금액
 - 결제자금(B) : 전년도 취급금액의 1/12이내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 통지(1월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경제지주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해당부서)에 보고하고,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 중도매인협회 등 관계기관에 시달(2월말)
 - * 유통공사홈페이지 게시 등 홍보 실시
- 농협경제지주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해당부서)에 보고하고, 농협공판장에 시달(2월말)

자금신청자

- aT 화훼공판장 관련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 자금신청서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공판장
- 농협경제지주 및 회원농협공판장은 농안기금 운용현황 및 소요액 신청서를 농협경제지주에 제출

2. 사업자선정단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등 사업자 선정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대상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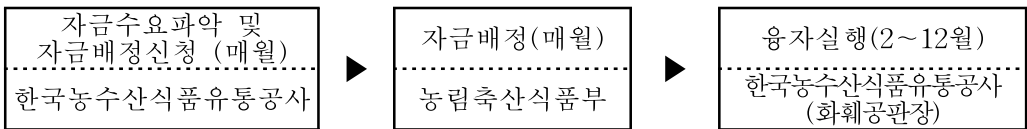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판장 평가결과, 개설자의 행정처분 사항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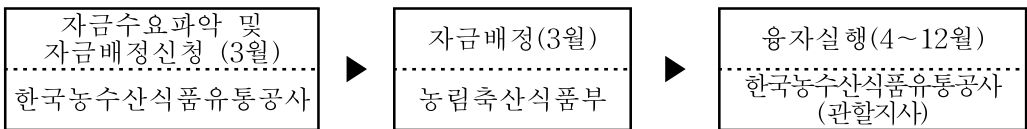
3. 자금배정단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화훼유통개선지원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출하 농가 및 생산자단체,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등의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담보여력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별 예산 배정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배정 신청
- 선도금 및 결제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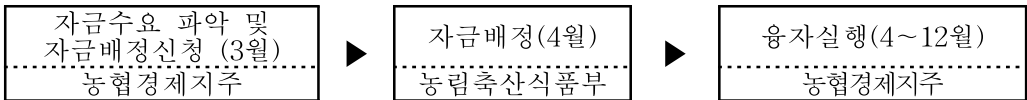


- 운영자금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에서는 화훼유통개선지원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판장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공판장별 예산 배정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배정 신청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경제지주)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는 자금배정현황, 자금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상황을 매반기 종료 후 익월 30일 이내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자금관리주체(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경제지주)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공판장 및 각 지사에서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화훼공판장)의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화훼공판장)에 보고
- 농협경제지주는 사후관리 실태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등의 자금 운영실태, 동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 점검자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경제지주 합동점검
- 점검항목 : 출하선도금, 결제자금 사업의무액 준수여부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경제지주)

- 대출취급기관은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7조,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해당 조직의 자격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통지

자금관리주체(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경제지주)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

< 선도금 및 결제자금 >

- 위약금 산출식 : 위약원금(미달차액) × 위약금리 × 위약일수/365
 - 위약원금 : 사업의무액 - 사업실적
 - 위약금리 :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농협은행)
 - 위약일수 : 대출일로부터 회수일의 전일까지
- ※ 본 사업의 '농협중앙회'는 '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

세부사업명	도매유통활성화		세목	기타민간 응자금				
내역사업명	농산물수매지원		예산 (백만원)	16,851				
사업목적	○ 국산 발 식량작물 수매 및 국산밀(밀가루) 구매를 위한 자금 지원을 통해 계약재배 활성화, 수요업체 경영안정 도모							
사업 주요내용	○ 농협 및 농협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는 실수요업체, 계열화경영체·발작물공동경영체, 국산밀(밀가루) 가공업체에 원료 구매자금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지원자격 및 요건	○ (농협경제지주) 농업협동조합(경제지주 및 지역농협), 수요업체(가공업체, 주정생산업체 등 농협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는 실수요업체) * 단, 정부 수매자금을 지원받는 가공업체(실수요업체)와 계약한 지역농협은 수매자금을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계열화경영체 및 발작물공동경영체*, 국산밀 또는 국산 밀가루를 원료로 가공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위탁가공을 통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 * 계열화경영체 및 발작물공동경영체는 발작물산업육성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업체임							
지원한도	○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별 연간 10억원(단, 밀 가공업체는 30억원) 이내							
재원구성(%)	국고	-	지방비	-	응자	100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46,200	33,851	16,851	16,851			
	응 자	46,200	33,851	16,851	16,851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식량산업과 양곡부 정책금융부		차은지 이미호 어영광		044-201-1835 02-2080-6293 061-931-1146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민간		
관련자료	농산물수매지원(응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농협경제지주) 농업협동조합(경제지주 및 지역농협), 수요업체(가공업체, 주정생산업체 등 농협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는 실수요업체)
 - * 단, 정부 구매자금을 지원받는 가공업체(실수요업체)와 계약한 지역농협은 구매자금을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계열화경영체 및 발작물공동경영체*, 국산밀 또는 국산 밀가루를 원료로 가공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위탁가공을 통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
 - * 계열화경영체 및 발작물공동경영체는 발작물산업육성 지원사업을 통하여 선정된 업체임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국산 쌀 식량작물(맥류·두류·잡곡류·고구마) 구매자금 및 계약재배 선급금
- 가공을 위한 국산 밀 또는 국산 밀가루 구매

3.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국고용자
- 용자기간: 1년 이내
- 사업의무량: 대출금액의 125% 이상 쌀식량작물* 구매
 - * (농협) 맥류, 두류, 잡곡류, 고구마, (aT) 맥류, 두류, 잡곡류, 서류 등
- 지원조건: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고정금리) 농업인·농업법인 2.5%, 그 외 3.0%
 - (변동금리) 매월 변동(6개월 변동주기, 농협은행 담보대출잔액 가중평균금리)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별 연간 10억원(단, 밀 가공업체는 30억원) 이내로 하되 여유자금 발생 시 한도 이상 지원도 가능
- 우대조건: 생산농가와 업체 간 계약재배를 통해 구매하는 물량 우선 지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예정)기업 우선 선정 지원

1. 세부계획수립 및 사업시행단계

- 농협경제지주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하고 사업을 시행
 - * 세부지원계획 수립 시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세부운영방안(지원업체 평가, 자금지원규모 차등화 등) 및 품목별 세부 자금운영 계획(용도·시기별) 반영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 및 사업시행기관별 세부지원계획은 홈페이지 게시, 지역본부에 공고 등을 통해 지원사업 대상자에 적극 홍보

2.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단계

- '18년도 지원사업 대상자는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농협경제지주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로 제출
 - 지역농협, 수요업체 등: 농협경제지주 양곡부
 - 계열화경영체·발작물공동경영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해당 지역본부
 - 밀 가공업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해당 지역본부

농협경제지주(지역농협, 수요업체)

- 사업시행지침서, 세부지원계획, 예산액, 신청수요 등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수매대상은 지역농협과 농가, 수요업체와 지역농협이 계약체결한 물량
- 2018년산 쌀 식량작물(맥류, 두류, 잡곡류, 고구마)을 대상으로 수매하고 수매실적 등은 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에서 해당 지역농협의 관련 장부 및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
- 수요업체는 지역농협에서 보관하는 쌀 식량작물을 인수·사용(수매대금 등은 농협에 납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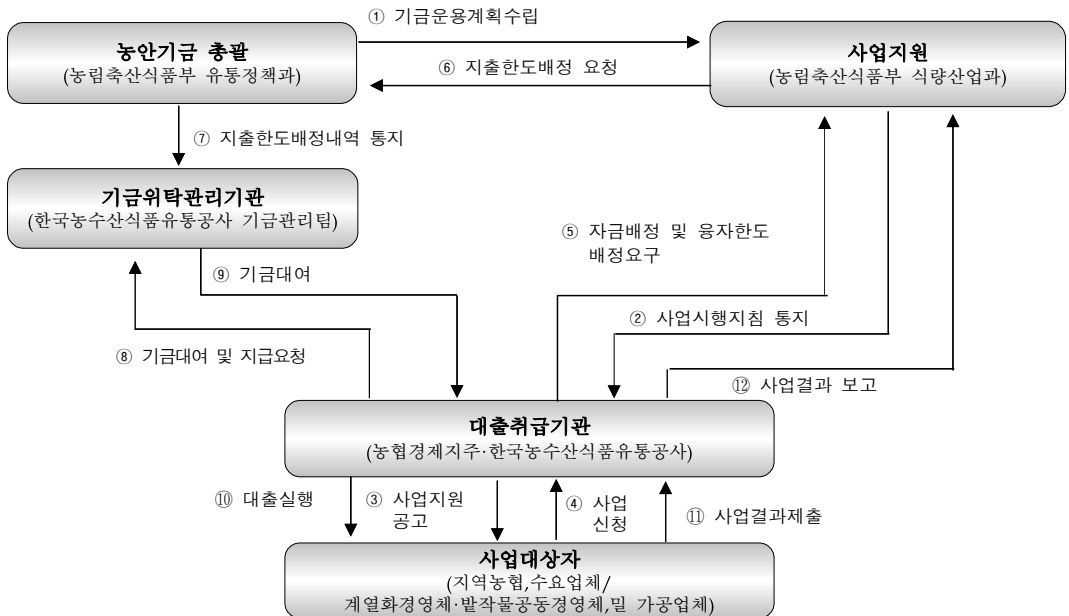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시행지침서, 세부지원계획, 예산액, 신청수요 등에 따라 대상자 선정

- (계열화경영체·발작물공동경영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전년도 수매·판매(판매처 포함) 서류 1부, 계약재배(출하약정서) 사본 1부, 사업참여농가 명부 1부 등
 - (밀 가공업체) 신청서 1부, 영업허가(등록·신고)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장등록증 사본 1부 등. 단, 위탁 가공일 경우 수탁업체에 대한 상기 증빙서류와 위탁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위탁가공계약서 사본 등이 추가될 수 있음
- *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시행기관별 세부지원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자금배정단계

- 농협경제지주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선정된 사업대상자의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농식품부에 지출한도액 배정 요청
 - 담보여력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별 예산 배정결과를 첨부
- * 공사는 자금배정업체에 대출기한(배정일 또는 기금차입일로부터 2개월 이내)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으며, 대출기한 내 미 대출 시 대출포기로 간주하고 여타 대출 희망업체에 추가 배정할 수 있음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사업관리주체(농협경제지주·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별로 사업추진 및 자금대출 실행상황을 점검하여 배정계획에 따라 적기 대출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 사업관리주체는 지원대상업체의 사업추진실태 등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 완료 시 정산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대상품목 수매여부, 사업의무량 이행여부 등 확인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의무량 미이행 또는 자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 내지 제31조에 따라 대출금 회수, 대출제한, 위약금 징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사업완료 시 사업관리주체로부터 정산결과를 제출받아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등 보완 조치

5. 201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가. 2019년도 사업수요조사

- 농협경제지주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2019년도 발 식량작물 수매지원 사업 수요를 조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8.6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주체별 사업 수요조사결과를 토대로 2019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나. 201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8년 사업시행지침 내용 준용

세부사업명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예산 (백만원)	14,580				
사업목적	○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하고 공동출하를 통하여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 제고 등 농산물의 시장 교섭력 확보							
사업 주요내용	○ (물류기기,임차비)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팻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 비용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및 제 110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농협조직 및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공영도매시장 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된 산지유통인 ○ 대상품목: 청과부류, 약용작물류, 양곡부류, 임산물류, 화훼부류의 품목 - 양곡부류 중 미곡 및 맥류는 제외 - 약용작물류 중 야생 채취 또는 기타 재배에 의한 것은 제외 * 세척, 세절 등 전처리(신선편이) 및 1차 형태의 단순가공품도 지원 가능							
지원한도	○ 신청 사업자별 과거년도 사업실적 및 계획, 전년도 계획대비 집행 실적 등을 기준으로 예산 배정(총 예산의 80%) - 배정예산의 30% 해당액은 도매시장 출하시 지원분으로 우선 할당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및 품목별 특성을 감안한 우수조직에 인센티브 배정(총 예산의 20%) ○ 조직별 배정한도: 상한 150백만원(인센티브는 상한 적용 제외) ※ 공영도매시장 팻릿 출하 시 국고보조 20% 상향							
재원구성 (%)	국고	4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6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6,450	36,450	36,450	41,450			
	국 고	14,580	14,580	14,580	16,580			
	자부담	21,870	21,870	21,870	24,87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정책과 산지경영부		사무관 이행은 차 장 용상구		044-201-2219 061-931-1035		
신청시기	정기(1월)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관련자료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팻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 기기 임차 비용 지원

1. 사업대상자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및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자 단체
 - 생산자단체의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항 해당 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적합한 조직
 -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된 산지유통인
 - * 관련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제1항,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 제110조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자격

- 사업대상자 중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자
- 채소류 주산지(시·군 단위)에서 해당 주산지 품목을 출하하는 조직에 대해 우선 지원

나. 지원요건

-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팻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폴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경우
 -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www.atpool.or.kr)에 접속하여 이용량을 등록하고 출하처 및 폴 회사로부터 이동확인을 받아야 함
- 지원대상 해당조직이 관내(시·군범위) 자체가공공장 또는 전처리형 산지 유통센터에 출하하는 물류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수송용으로 보지 않음)

3. 지원대상

- 청과부류, 약용작물류, 양곡부류, 임산물류, 화훼부류의 품목
 - 양곡부류 중 미곡 및 맥류는 제외
 - 약용작물류 중 야생 채취 또는 기타 재배에 의한 것은 제외
- * 세척, 세절 등 전처리(신선편이) 및 1차 형태의 단순가공품도 지원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경우 소요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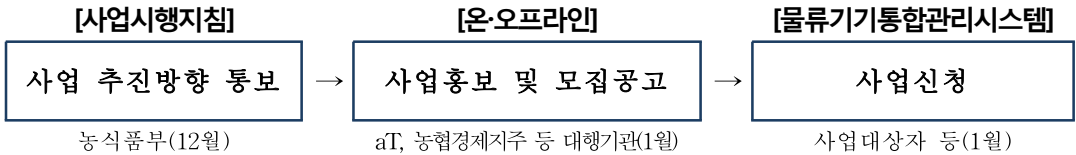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조건 : 국고 보조 40%, 자부담 60%
 - 공영도매시장 팰릿 출하 시 국고 보조 20% 상향
- 지원단가 : 물류기기 종류별, 출하처별 단가를 적용[별표]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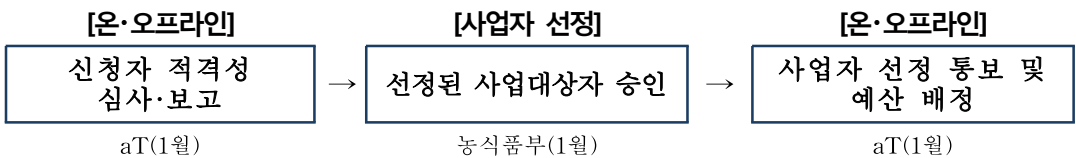
- 신청 사업자별 과거년도 사업실적 및 계획, 전년도 계획대비 집행 실적 등을 기준으로 예산 배정(총 예산의 80%)
 - 배정예산의 30% 해당액은 도매시장 출하시 지원분으로 우선 할당
 - * 할당된 배정예산의 불용(잔여예산) 발생 시 타 출하처 지원액으로 전용 가능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및 품목별 특성을 감안한 우수조직에 인센티브 배정(총 예산의 20%)
 - 법인조직은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상위 50%의 우수조직을 대상으로 배정
 - * 법인조직 중 취급품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우수조직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배정할 수 있음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우수경영체
 -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수산업자
 - 법인조직 이외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우수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배정
- 조직별 배정한도 : 하한 1백만원, 상한 150백만원
 - * 인센티브는 상한 적용 제외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18년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추진방향을 aT에 통보
- aT는 전년도 12월부터 사업 당해연도 1월 중에 농업전문지,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www.atpool.or.kr)을 통해 사업신청 공고
- 사업대상자는 출하유형별, 월별, 물류기기별 출하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 및 대행기관 등을 통하여 제출
 - * 사업계획량은 전년도 이용실적 기준 120%로 한정
 - 농협 조직은 농협경제제주, 농협이외 조직은 (사)농식품법인연합회 또는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로 제출하고 각 대행기관은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aT로 제출
 - * 사업계획서는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고 농협경제제주, (사)농식품법인연합회,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는 사업안내, 서류접수 등의 역할 담당
- aT는 각 대행기관의 사업신청 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2. 사업자 선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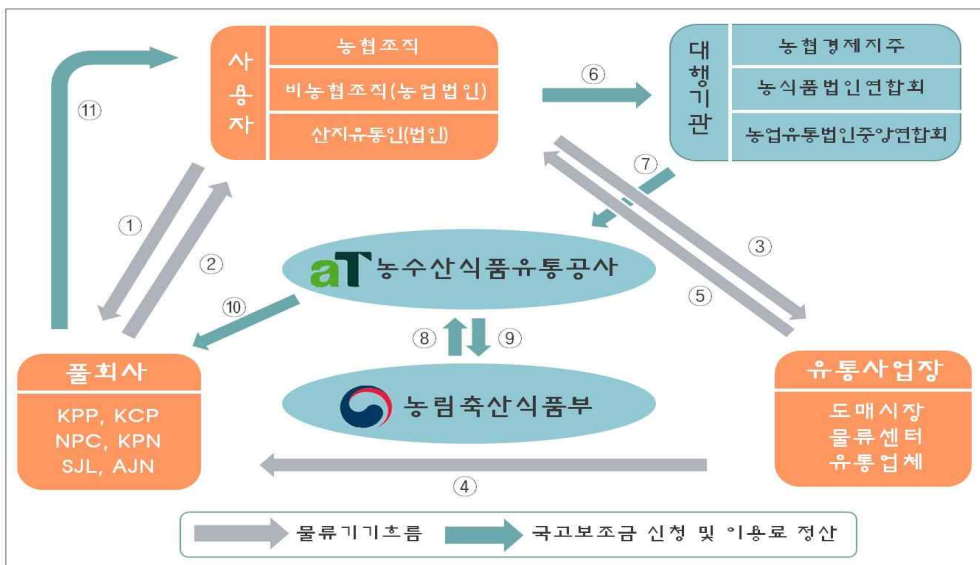


- aT는 사업공고 후 사업계획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에 한하여 지원 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등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
 -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 지원여부, 지원 제외 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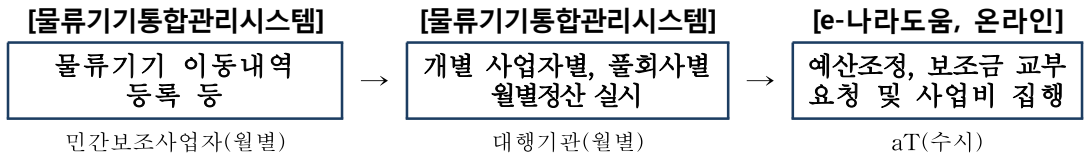
- aT는 확정된 사업자 및 사업비 지원계획과 우수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배정 계획을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대행기관에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대상자는 물류기기를 공급받고자 할 경우 사용 3일전까지 물류기기통합 관리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물류기기 임차를 풀 회사에 요청
- 풀 회사는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물류기기의 종류, 수량, 요청일 등을 확인하여 지정한 장소로 입고
- 농산물을 유통사업장에 출하한 경우 반드시 물류기기 품명, 수량, 유통사업장, 농산물명 등을 전산상에 등록하고 유통사업장은 해당 내용을 전산상의 출하 등록 사항과 일치여부를 확인
- 풀 회사는 산지 사용자 및 유통사업장의 확인사항을 집계하여 물류기기 회수 계획을 수립하여 적시에 물류기기를 회수
 - 산지 사용자가 유통사업장으로부터 물류기기를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전산 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유통사업장에서 출고내역을 입력하고, 자차운반 조직의 내역을 확인



4. 자금배정 및 이행점검



가. 자금배정

- 농식품부는 aT의 사업비 교부요청에 의해 매월(분기 또는 반기별 가능) 국고 보조금을 교부하고 연간 사업비 집행현황 확인 및 예산 운용방안 지도
- aT는 예산 배정기준에 의해 개별사업자에게 연간 단위로 배정하고 사업비 정산은 매월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상의 월별 풀 이용료 정산대상 금액에 따라 개별사업자별 정산 실시
 - 월별 정산금액 확정 후 국고보조금과 자부담액을 합산하여 풀 회사별로 정산 실시
 - * 사업비 정산 대상은 당해월 해당분만 가능하며 지난월 해당분은 소급 적용 불가
- 대행기관은 수시로 사업자별 사업여건 및 집행실적과 불용예산 등을 고려한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aT의 승인을 받아 유통주체별 사업자간 예산조정을 시행하고 aT는 조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 단, 대행기관간 예산의 과부족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 시 aT가 총괄적으로 직접 시행할 수 있음
- 농협 조직은 매월 해당분의 보조금을 농협경제지주에 신청하고 농업법인(산지유통인 포함)은 매월 보조금을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또는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에 신청
 - 보조금 신청시에는 자부담분(부가가치세 포함) 풀 이용료를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또는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에 사전 납부
- 사업대상자는 물류기기 이동내역을 전산등록하고 이동전표 및 거래명세서 등 보조금 신청서류를 편철 보관하며 산지유통인은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에 제출
 - * 접수 대행기관은 정산일정에 따라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지급요청서와 월별이용내역을 제출받아 전산등록내역과 일치여부를 확인 후 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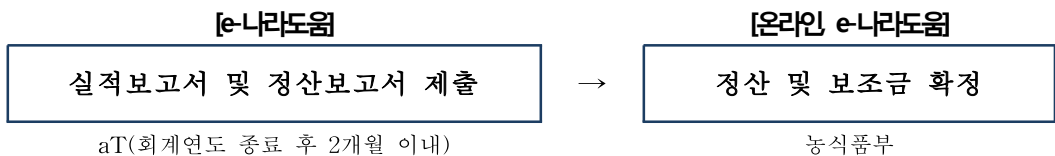
나. 이행점검

- 농식품부 및 aT는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집행과정상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필요시 대행기관과 합동점검
- 현장 점검과정에서 보조금 부정사용 등 사례 발견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제재 및 처벌내용》

- 보조금 부당 사용조직에 대해서 부당사용 금액 및 비율에 따라 1~5년간 지원 중단
- 자부담액 대납, 보조금 부당사용 풀 회사는 부당사용 금액 및 비율에 따라 1년 이상 사업 참여 제외
- 풀 이용료 집행 시 출하량 허위기재, 허위자료 제출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된 보조금의 지체 없는 회수 및 지원 중단 등 조치
- aT는 풀 회사에서 공급하는 물류기기의 세척, 청결상태 등을 수시 확인 후 문제점 발생 시 개선·지도

5. 정산 및 사후관리



- aT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 등록
 -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농식품부는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 확정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aT는 사업정산 결과, 이용 실적(품목, 사용주체, 출하처, 대행기관별 이용현황), 집행실적 등을 포함하여 실적보고서 작성, 농식품부에 제출

2. 평가

- aT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 대비 실적 및 출하처별 하역기계화율 제고 기여도 등을 평가
 - 평가 결과는 차년도 2월말까지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차년도 사업비 및 인센티브 배정에 반영

3. 2019년도 사업신청

- 201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8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준용

[별표]

사업기준단가(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단위:원)

유형 ① 공영도매시장 출하시 (1회전기간 17일, 산지이용 9일 이내)							
구분	풀이용료				VAT	국고보조 (60%)	자부담 (VAT포함)
	입고비	사용료	회수비	계			
팰릿	760	940	1,000	2,700	270	1,620	1,350
플라스틱 상자	190	250	250	690	69	414	345
다단식 목재상자	310	670	400	1,380	138	828	690
상자형 팰릿	2,150	3,950	2,800	8,900	890	5,340	4,450
팰릿 철상자	1,040	2,020	1,300	4,360	436	2,616	2,180
유형 ②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출하시 (1회전기간 15일, 산지이용 7일 이내)							
구분	풀이용료				VAT	국고보조 (40%)	자부담 (VAT포함)
	입고비	사용료	회수비	계			
팰릿	730	860	960	2,550	255	1,020	1,785
플라스틱 상자	150	180	190	520	52	208	364
다단식 목재상자	310	610	400	1,320	132	528	924
상자형 팰릿	2,120	3,600	2,760	8,480	848	3,392	5,936
팰릿 철상자	1,040	1,660	1,300	4,000	400	1,600	2,800
유형 ③ 김치가공공장, 산지유통센터 출하시 (1회전기간 10일, 산지이용 5일 이내)							
구분	풀이용료				VAT	국고보조 (40%)	자부담 (VAT포함)
	입고비	사용료	회수비	계			
팰릿	520	530	690	1,740	174	696	1,218
플라스틱상자	130	120	170	420	42	168	294

세부사업명	산지유통종합자금(용자)		세목	용자금				
내역사업명	산지유통종합자금(용자)		예산 (백만원)	559,300				
사업목적	○ 농산물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단위 사업권역에서 광역화된 사업권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산지유통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산지유통주체의 거래 교섭력 확보							
사업 주요내용	○ 산지유통조직의 산지유통활성화자금(원물확보) 및 노지채소·과실류·과채류의 수급안정자금(계약재배)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생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운영)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역연합조직 및 품목광역조직 : 아래의 요건을 갖춘 통합마케팅조직으로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지원한도	○ 지원한도액 : 연간 600억원 이내(최소한도 5억원) 등							
재원구성(%)	국고	-	지방비	-	용자	8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450,000	450,000	412,500	2,062,500			
	용 자	360,000	360,000	330,000	1,650,000			
	자부담	90,000	90,000	82,500	412,5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정책과 유통조성처		하성태사무관 채종혁차장		044-201-2224 061-931-1031		
신청시기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공지(매년 1월초)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관련자료	-							

1. 사업대상자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등)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사업신청일 기준)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하고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 통합마케팅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 개별조직인 농업법인의 경우 ①출자자본금 3억원 이상, ②설립 후 운영실적 3년 이상, ③농업인 조합원(주주) 20명 이상(참여조직이 출자한 경우 출자금 비중과 참여조직의 농업인 주주 수를 계산하여 인정, 참여조직이 전년도에 통합마케팅조직으로 취급액의 90% 이상을 출자했을 경우 참여조직의 농업인 주주 수를 모두 인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 통합마케팅조직, 개별조직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 주주 지분이 50%를 초과(생산자단체가 출자한 경우 농업인 주주의 지분율을 산정하여 인정, 지자체의 출자 지분은 인정하지 않음) 해야 함
 - * 참여조직인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출자자본금 1억원 이상, 설립 후 사업운영 1년 이상 및 농업인 조합원 5명 이상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자본금 1억원 이상, 설립 후 사업운영 1년 이상 및 농업인 주주 지분 50% 초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 협동조합기본법 등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경우 기본요건은 농업인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50%를 초과 해야 함
 - 임산물류·양곡류(미곡류 제외)를 취급하는 조직의 경우 원예농산물 대상품목(청과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류) 취급액이 전체 취급액의 5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사업대상에 포함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사업대상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역연합조직 및 품목광역조직 : 아래의 요건을 갖춘 통합마케팅조직으로 당해 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 지역연합조직(1개 시·군·구 1개 합병농협 포함)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50억원 이상, 조직화 취급액 30억원 이상 및 총 취급액 대비 조직화 취급률 30% 이상의 요건을 갖춘 조직
 - * 단, 기상재해 등으로 전년도 실적이 미달된 조직은 3개년 평균실적 적용 가능
 - * 단, 조직화취급액이 40억원 이상인 조직은 총 취급액 대비 조직화취급률 30% 미만이라도 지원자격 부여('18년까지 유예)
 - * 1개 시·군·구 1개 합병농협만 있는 농협의 경우 참여조직이 없어도 허용
 - * '19년부터 요건 강화 : 원예농산물 취급액 60억원, 조직화취급액 40억원, 조직화취급률 35% 이상 요건 적용
 - * '22년까지 품목광역조직과 동일한 기준 적용을 위해 단계적 확대(조직화취급률은 50%까지 확대) 예고
 - 품목광역조직 : 전년도에 3개 시·군·구 또는 2개 시·도 이상에서 원물을 확보하고 원예농산물 취급액 100억원 이상, 조직화취급액 70억원 이상의 요건을 갖춘 조직
 - * 단, 기상재해 등으로 전년도 실적이 미달된 조직은 3개년 평균실적 적용 가능
 - * '19년부터 조직화취급률 35% 이상 요건을 추가하고, '22년까지 단계적 확대(50%까지) 예고
 - * 연합사업단이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 지역연합조직이 품목광역조직으로 재편, 참여조직이 통합마케팅조직으로 전환 및 통합마케팅조직간의 통합 등의 경우에는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요건에 적합할 경우 사업실적을 연결하여 인정
- 개별조직 :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구에 원예산업종합계획(또는 산지유통종합계획)이 없는 조직 중 지역연합조직의 지원자격을 충족한 조직
 - * 기존 자금 사용 개별조직 중 지원 자격 및 요건을 미 충족한 조직은 산지유통종합평가 대상 및 신규 지원 제외
 - * '19년부터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지원 중단
- 참여조직 :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산지조직으로 통합마케팅조직에 원예농산물을 일정기준 출하하여 선정된 조직
 - 통합마케팅조직에서 취급하는 해당 품목에 대한 출하실적 중 조직화취급액이 농협조직 5억원 이상, 농업법인조직 2억원 이상

- * 참여조직이 통합마케팅조직에서 자발적으로 탈퇴하거나 통합마케팅조직으로부터 제명된 경우 기존 자금 전액 회수 및 탈퇴·제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제외
- 자금 배정권한 : 산지조직간 마케팅 통합 및 수직계열화를 통한 조직화·규모화를 위하여 통합마케팅조직에게 참여조직에 대한 자금 배정권한 부여
 - 참여조직은 1개의 통합마케팅조직에 자금을 신청·배정 받아야 하며, 대출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함
 - 통합마케팅 출하실적 등을 고려하여 배정액(인센티브 포함) 차등 가능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3년 연속 부진조직에 해당하는 참여조직의 경우 당해 연도 신규자금 지원 제외('17년 평가결과부터 3년 연속 기간 적용)
- 통합마케팅조직은 참여조직의 사업대상 요건 확인, 사업의무이행 독려 및 자금집행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참여조직이 자료요구 등에 불응 시 직접 제명할 수 있음)
- 참여조직의 취급액(수출실적, 자체공판실적, 군납 및 학교급식 등 제외) 중 통합마케팅조직에서 취급하는 해당 품목 취급액의 출하목표 비율 이상을 통합마케팅조직으로 출하할 경우 자금 금리 우대 지원
 - 참여조직 취급액의 통합마케팅조직 출하목표 비율 : 50%
 - * 참여조직 출하목표 비율은 연도별 사업성과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향 예정

3. 지원대상

부류별	지원대상 세부품목
양곡부류	○ 맥류(밀, 보리, 귀리 등), 두류(콩, 팥, 녹두 등), 잡곡류(수수, 옥수수, 기장, 메밀, 조, 울무 등), 특용작물(참깨, 땅콩 등) * 단, 미곡류(멥쌀, 찹쌀, 유색미 등)는 제외
청과부류	○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서류, 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화훼부류	○ 절화, 절지, 절엽 및 분화
약용작물류	○ 한약재용 약용작물류(야생물 기타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 등
임산물류	○ 밤, 잣, 대추, 호도, 은행, 도토리, 표고, 송이, 목이, 팽이, 한약재용 임산물

- * 세척, 세절 등 전처리(신선편이) 농산물 및 단순 가공품도 지원 가능
- * 임산물류, 양곡류(미곡류 제외)를 취급하는 경우 원예농산물(청과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류) 취급액이 전체 취급액의 5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원물확보자금 : 계약금, 중도금, 선지급금, 잔금
 - 출하약정수탁 : 지원대상 품목의 출하약정수탁을 위한 자금
 - 계약재배매취 : 지원대상 품목의 원료를 계약재배하여 매취하기 위한 자금
 - * 선지급금 : 수탁 시 최종 정산 전에 판매대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는 자금
- 농자재 공급자금(용자 평잔의 10% 이내 제한)
 - 출하약정수탁 및 계약재배매취 시 참여농가에 대해 농자재(종자, 육묘, 농약, 비료에 한함)를 공동구입하여 공급할 경우 그 농자재 구입자금
 - 지원대상조직의 자경농지(임차농지 제외)에서 자가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종자, 육묘, 농약, 비료에 한함) 구입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 국고용자 80%, 자부담 20%
- 지원금리 및 기간 : 1.0~3.0%(농업법인 등 2.5%) / 3년 일시상환
 - 통합마케팅조직 및 개별조직 :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 참여조직 : 통합마케팅조직 적용 금리를 기준으로 참여조직 등급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 * 신규 및 재선정 조직은 통합마케팅조직 지원금리 동일 적용
 - * 통합마케팅조직이 부도·폐업 등으로 산지유통종합평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 기존 지원금리 적용
 - 기존 자금을 사용 중인 개별조직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상환일 까지 최고금리 적용(농협조직 3%, 농업법인조직 2.5%)
- 금리 차등 적용시기 : 매년 4월1일을 기준으로 하되, 기존자금 중 당해연도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상환되는 자금은 당초 적용금리 유지 후 상환
- 사업 참여농가에게 자금지원(계약금, 중도금 등) 시 금리 및 수수료 부과금지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적용금리 차등화 기준>

* 기본원칙 : 농협조직과 농업법인조직 분리평가 결과 적용

가.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차등금리 적용기준

○ 평가등급 및 금리 차등

평가 등급 및 적용금리		
평가순위	평가등급	적용금리
상위 10% 이내	A	1.0%
10%~30%	B	
30%~50%	C	1.5%
50%~80%	D	2.0%
80%초과	E	80~90 : 2.5% 90초과 : 3.0%

기본 인센티브(무이자)	
순위	적용기준
상위 10% 이내	지원금액의 30% 이내
10%~20%	지원금액의 25% 이내
20%~30%	지원금액의 20% 이내
30%~40%	지원금액의 15% 이내
40%~50%	지원금액의 10% 이내
50%초과	없음

* 차등 적용금리 : 농업법인은 90% 초과 조직도 2.5% 적용

○ 기본 인센티브(무이자) 지원기간 : 1년

○ 인센티브(무이자) 지원한도 : 통합마케팅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 개별 조직에 대한 기본 및 추가 인센티브 총액은 250억원 한도

○ 페널티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사업대상 요건, 지원자격 및 요건을 미 충족하여 탈락한 조직은 페널티 부여(참여조직 포함)

-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조직은 기존 자금 전액 회수

* 기 지원된 전체 자금(당해연도 상환되는 자금 포함)의 회수에 따른 반납기한은 대출취급기관의 반납 통지 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4월1일부터 반납 전일까지 최고금리(농협조직 3%, 농업법인조직 등 2.5%) 적용

* 부득이하게 연장이 필요한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충분한 사전 검토 및 농식품부의 승인이 있을 경우 1회(2개월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지원 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조직은 기 사용중인 자금을 대하여 4월1일부터 최고금리(농협조직 3%, 농업법인조직 2.5%)를 적용하고, 신규자금 및 인센티브 지원 제외

나. 추가 인센티브(무이자) 지원 및 페널티 적용기준

○ 과수거점APC 경영평가 결과 우수조직

- 인센티브 : 1등 20억원, 2~3등 15억원, 4~6등 10억원, 7~10등 5억원 무이자(적용기간 1년)

○ 공영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우수조직

- 대상 : 전년도 공영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출하액이 10억원 이상인 조직

- 인센티브 : 정가·수의매매 출하액 전액 무이자(50억원 한도, 적용기간 1년)

○ 전년도 발작물공동경영체 연차평가 결과 우수조직

- 인센티브 : 5억원 무이자(적용기간 1년)

- 전년도 원예산융합계획(산지유통융합계획) 연차평가 결과 우수조직 및 부진조직
 - 대상 : 원예산융합계획(산지유통융합계획)에 포함된 조직
 - 인센티브 : 평가결과 A등급(지원금액의 20% 무이자, 적용기간 1년), 평가결과 B등급(지원금액의 10% 무이자, 적용기간 1년)
 - 페널티 : 평가결과 E등급(당해연도 자금지원 제한 및 기존 자문에 대해서는 산지유통융합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최고금리 적용, 적용기간 1년)
 - * 최고금리 : 농협조직 3%, 농업법인조직 2.5%
 - * '17년 원예산융합계획(산지유통융합계획) 연차평가 미실시에 따라 인센티브 및 페널티는 '19년부터 적용 예정
- 통합마케팅 실적에 단순기표 실적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 통합마케팅조직에 대해서는 산지유통융합평가 시 감점(3점) 처리 및 신규 자금 배정액 감액(30%)
 - * 산지유통융합평가 및 신규 자금 배정 이후 확인될 경우 익년도 평가에 1회 적용
- 통합마케팅조직, 개별조직 및 참여조직이 정부지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추진을 포기한 경우 포기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제외다. 통합마케팅조직의 참여조직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기준
 - 기준 : 참여조직의 취급액(수출, 자체공판, 군납, 학교급식 등 제외) 중 통합마케팅조직에서 취급하는 해당 품목을 통합마케팅조직으로 출하한 실적
 - 대상 :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은 조직
 - 인센티브 및 페널티 : 금리 차등(통합마케팅조직 적용 금리를 기준으로 차등)

구분	우수조직	보통조직	부진조직
기준	통합마케팅조직 출하율 50% 이상이고 출하액 50억원 이상	통합마케팅조직 출하율 15% 이상	통합마케팅조직 출하율 15% 미만
인센티브 및 페널티	통합마케팅조직 적용 금리 대비 0.5% 인하	통합마케팅조직 금리 적용	최고금리 적용 (농협조직 3%) (농업법인조직 2.5%)

* 산지유통융합평가 결과 3년 연속 부진조직에 해당 할 경우 당해연도 신규자금 지원 제외('17년 평가결과부터 3년 연속 기간 적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연간 600억원 이내(최소한도 5억원)
 - 통합마케팅조직, 개별조직 기준이며, 기존 사용금액 합산(총가용액)하여 600억원 이내로 자금배정(자금 배정기준 참조)
 - 자금 배정단위 : 1억원
 - * 통합마케팅조직이 참여조직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 1억원 단위로 배정

- 지원 신청범위
 - 최대한도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대비 70% 이내 신청(단, 산지유통종합 평가결과 조직화취급률이 50% 이상일 경우 조직화취급액 대비 500%까지 신청 가능)
 - 최소한도 : (통합마케팅조직, 개별조직) 5억원 이상, (참여조직) 1억원 이상

7. 사업의무액

- 사업의무액 : (Ⅱ-3) 지원 대상품목 및 (Ⅱ-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명시된 자금사용 집행실적이 산지유통활성화자금(융자액 평잔)의 125% 이상
 - 임산물류, 양곡류(미곡류 제외)를 취급하는 경우 원예농산물(청과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류) 실적이 50%(사업의무 125% 기준 6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의무액 이행 대상조직 :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을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받아 사용하는 모든 조직(통합마케팅조직, 개별조직, 참여조직)
- 사업의무액 산출기준
 - 기간 : 매년 1.1~12.31
 - 금액 : 연도 중 대출 및 상환금액의 평균잔액 기준으로 함
- 사용실적 인정 : (Ⅱ-3) 지원 대상품목 및 (Ⅱ-4) 자금 사용용도에 명시된 집행실적
 - * 전년도에 융자 잔액이 없는 조직은 자금사용 첫해에 한해 취급농산물의 출하시기 등 여건을 감안하여 1.1~12.31까지의 원물확보 실적인정 가능
 - * 품목광역조직에 출하하는 생산형농업법인(100% 농업인 주주, 취급액의 90% 이상 품목광역조직으로 출하)이 법인의 자체담보로 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 해당 품목광역조직 의무액평가시 합산하여 평가
- 사용실적 불인정 : 자금 사용용도 이외의 집행실적, 정부지원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자금 집행실적(중복불인정)
 - * 자체 공판장 또는 자체 경매식 집하장에서 생산농가에게 집행한 자금은 운용실적으로 불인정
 - * 자금을 대출받은 통합마케팅조직과 참여조직이 동일 농가의 원물 또는 상품을 중복으로 계상한 실적은 불인정
- 사업의무 미 이행 등에 따른 제재
 - 사업의무 미달, 목적외 사용 및 법령위반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대출금 회수, 대출제한, 위약금 등 부과

-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사업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대출금의 회수), 제30조(대출제한), 제31조(위약금의 징수) 및 제32조(제재의 예외) 등 적용
- 지원자금을 사용한 농가의 계약위반 등에 따른 제재
 - 산지조직이 농가에 농협은행 정책대출 연체금리 적용하여 위약금을 징구하고, 향후 2년간 지원 제외
 - * 기상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농가의 경우 “시·군별 산지유통활성화협의회”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경제지주, aT, 학계 등 공공기관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 단, 농민단체 및 농가는 제외)를 구성하여 정당한 사유의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여 계약 미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면제할 수 있음
 - * 농가의 범위 : 실질적인 생계 및 영농을 함께하는 세대(개별가족원 단위 지원 금지)로 함으로써 가족명의 변칙 수혜 차단

1. 사업신청단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농식품부와 협의·수립하여
관련기관, 기존 산지조직, 농업전문지, aT홈페이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rix)에 공지(매년 1월초)
- 사업 신청조직의 사업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하여 접수
(1.25일 18:00까지), 실적입력 접수(2.3일 18:00일까지)
- * 접수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접수

농협경제지주

- 농협조직을 대상으로 aT기본계획을 공지하고, 농협조직의 사업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하여 입력(1.25일 18:00까지) 및 실적입력
(2.3일 18:00일까지) 안내

사업대상 조직

- 기존 사업조직 및 신규 사업신청조직은 사업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rix)을 통하여 평가 및 사업신청
 - '18년 사업신청서('19년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수요조사 포함) 제출 :
AgriX시스템(1.25일 18:00까지)
 - * 참여조직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농업인확인서 등 사업
대상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산지유통종합평가 실적자료 입력 : AgriX시스템(2.3일 18:00일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 산지유통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요건,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조직에 대하여 예비 대상자 선정(3.15일까지)
- * 농협조직 및 농업법인조직을 별도 평가지표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조직을 대상으로 최종 검토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농식품부에 제출(3.25일까지)

3. 사업비 배정 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사업비 배정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조직의 신청액(참여조직 포함)과 종합평가 실적, 조직화취급액, 대출잔액, 상환예정금액, 예산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별 배정(안)을 수립
 - * 농협조직 및 농업법인조직의 조직형태별 평가순위에 따라 예산액 대비 신청액 비율을 적용하여 자금 배정(금리, 인센티브 등도 구분 차등 적용)
- 최종 사업비 배정(안)을 농식품부에 제출(3.25까지)

<사업비 배정기준>

- ※ 자금배정은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와 전년도 조직화취급액을 기준으로 예산액 및 신청액 비율을 적용하여 배정
 - 전년도 조직화취급액의 500% 이내(종합평가 상위 10% 이내)
 - 전년도 조직화취급액의 400% 이내(종합평가 상위 30% 이내)
 - 전년도 조직화취급액의 300% 이내(종합평가 상위 50% 이내)
 - 전년도 조직화취급액의 200% 이내(종합평가 상위 70% 이내)
 - 전년도 조직화취급액의 150% 이내(종합평가 상위 70% 초과)
 - * 전년도 사업의무액 미달 및 미 대출한 금액(참여조직 포함)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차감 배정
 - *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최초 배정 후 자금 추가 수요조사 하여 자금배정 시는 상위 70%초과 조직도 조직화취급액의 200%이내에서 배정 가능

- 농식품부의 사업비 배정 결과를 사업대상조직 및 지자체, 대출취급기관에 통보(3.31일까지)
 - 대출취급기관 : 지역(품목)농협조직-농협경제지주,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법인조직-농협은행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 * 산지조직의 희망에 따라 대출취급기관(aT, 농협경제지주, 농협은행)을 선택하고, 대출희망기관 조사서는 aT 또는 농협경제지주에 제출

농협경제지주

- 농협조직에 대한 산지관련 자금지원은 정부 지원자금과 농협자금을 연계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aT의 사업조직 선정 및 자금배정(안)을 검토 후 확정 공지(3월말)
- 대출취급기관의 한도배정 요청내용 검토 후 한도배정(수시)
- 대출취급기관에서 요청한 대출실행기간 연장 승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협경제지주

- 대출취급기관의 자금 신청내용을 검토 후 농식품부에 한도배정 요청 및 자금 차입(수시)
-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실행기한 연장 요청에 대하여 대출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 후 대출실행기한 5일전까지 농식품부에 연장 요청
- 미대출금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기금수탁기관에 반납
- 자금 차입 및 대출현황 등을 반기별로 농식품부 제출(6월말, 12월말)

대출취급기관

- 농식품부의 최종 배정 결과를 확인하여 조직별 대출안내, 자금 신청 및 실행 * 사업대상 조직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II-1) 사업대상자 요건 등을 검토·확인 후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대출취급기관의 본사 또는 농협경제지주에 자금 신청
- 농식품부 한도배정후 대여(자금차입)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본사 또는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기금수탁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나, 대출실행기한 경과 후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은 대출실행기한 7일전까지 대출취급기관의 본사 또는 농협경제지주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 사업대상조직이 희망하는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이율이 다른 용자건에 대하여 평균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사업대상 조직

- 대출취급기관을 선택한 후 (Ⅱ-1) 사업대상자 요건 확인 서류 및 대출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대출신청
 - 대출시 자금을 별도 계정 분리 운영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대출실행기한까지 대출이 곤란할 경우 대출실행기한 12일전까지 대출취급기관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대상 조직에 대해서 관계기관(aT, 농협경제지주) 합동 점검 실시
 - 점검시기 : 매 분기별로 실시
 - 점검항목 : 자금 운영현황 및 사업실적 등

대출취급기관

- 사업의무액 실적 점검은 농안기금운용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며, 필요시 관련기관(aT, 농협경제지주)간 합동점검 실시
 - * 농협은행이 대출취급기관일 경우 : 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와 농협은행 대출사무소에서 사업의무액 합동점검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조직의 자금 사용용도에 따른 집행 실적 증빙자료 등을 실사 확인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사업의무액 점검 결과를 대출취급기관의 본사 또는 농협경제지주에 제출(6월말)
 - aT 및 농협경제지주에서는 사업의무액 점검 결과를 농식품부 보고(7월말)
 - * 사업의무액 점검 시 상반기 사업 추진현황 점검 병행 실시

사업대상 조직

- 전년 실적에 대한 사업의무액 실적을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시 농림사업 정보시스템(Agrix)에 실적을 사전 입력(2월)
- 대출취급기관 실사(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 포함)시 자금 사용용도에 따른 집행 실적 증빙자료 제출

《제재》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은 합동점검 및 사업의무액 점검 결과 사업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대출금의 회수 사유가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aT 또는 농협경제지주는 조치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사업의무미이행등에 따른 대출금의 회수), 제30조(대출제한), 제31조(위약금의 징수) 등

IV /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 산지유통활성화사업에 대한 산지유통종합평가 실시
 - 산지유통활성화사업에 참여하는 통합마케팅조직 및 개별조직(신규조직 포함)에 대하여 매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산지유통종합평가)하여 우수조직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고, 부진조직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경쟁촉진
 - * 평가 세부계획은 평가 주관기관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립·공지(당해년도 1월초)
- aT는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산지유통활성화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8월)
 - 규모화, 조직화, 전문화 역량 등의 성과 분석

2. 환 류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적용>

- 우수조직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무이자 포함) 및 사업비 배정시 우대, 국내외 선진지 연수, 표창수여 등
- 부진조직에 대해서는 자금회수 및 최고금리(농협조직 3%, 농업법인 2.5%) 적용

세부사업명	인삼·특용작물계열화사업(계속)		세목	통화금융 기관용자금				
내역사업명	인삼계열화, 특용작물계열화		예산 (백만원)	19,418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특용작물 일관시스템(재배·수매·가공유통) 구축 지원을 통해 고품질 청정 인삼·특용작물 공급 및 유통구조 개선, 농가소득 보전 ○ 이력이 관리된 안전한 인삼·특용작물의 유통비중 확대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사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재배 : 인삼·특용작물 생산농가와 계약재배 약정 후 계약 참여 농가에 지급하는 계약자금 용자 지원 ○ 수매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특용작물) 인삼·특용작물 생산농가와 계약한 재배 물량 수매자금 용자 지원 - (인삼 종자) 농가와 계약한 인삼종자 수매 자금 용자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산업법 제3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 							
지원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계열화 : 계약재배 금리 0%(5년 거치 일시상환), 인삼종자수매 금리 0%(1년 거치 일시상환) - 특용계열화 : 계약재배 금리 0%(1년 거치 일시상환), 수매자금 금리 2.5~3%(1년~3년 거치 일시상환)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재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 : 10a당 3,300천원 - 특용작물 : 계약재배금액의 20%~50% 범위내에서 지급 ○ 수매단가 : 계약대상자(농가)와 협의하여 결정 							
재원구성(%)	국고	-	지방비	-	용자	8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2,976	23,716	24,272	69,870			
	용 자	18,381	18,973	19,418	55,896			
자부담	4,595	4,743	4,854	13,974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과		사무관 손경문(인삼) 사무관 이남윤(특용)		044-201-2239 044-201-2241		
농협경제지주		인삼특작부		차장 최광진(인삼) 과장 강성철(특용)		02-2080-6374 02-2080-6384		
신청시기	수시사업대상자 : 3.15까지			사업시행기관		농협경제지주		
관련자료	인삼특용작물계열화(용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재배과정에 대한 이력관리(예정지 관리 포함)를 통해 생산된 고품질 청정 인삼·특용작물을 수매·가공·유통하려는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 인삼종자를 계약·수매·유통하려는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일반업체 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가공업 허가를 받은 가공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사업대상자

- 지원자격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 선정우선순위
 - 국가식품클러스터(전북 익산) 입주(예정) 사업대상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선정하는 발작물공동경영체 우수 조직
 - '16년도 및 '17년도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 수출 실적, 판매 실적 등을 감안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 특용작물(한약재) 저온·가공 등 상품화 시설을 보유한 사업대상자
 - '인삼원료삼수매사업' 대상자인 경우 인삼제품류를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자

나. 계약재배 참여 농가

- 지원자격 : 인삼(4년근 이상) 또는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 선정우선순위

- 인삼 GAP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 인삼 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당해 연도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 농약 안전사용 위반자, 사업추진 방해자, 전년도 계약위반 농가, 토양검사 (GAP기준)에 불합격한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 * 계약재배 대상 농가의 제외기준은 세부운용지침에서 별도로 정함

3. 지원대상

- 인삼·특용작물 계약재배 자금, 인삼종자·특용작물 수매자금

4.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계약재배

- 사업대상자가 인삼·특용작물 생산농가와 계약재배 약정 후 계약 참여 농가에 지급하는 계약자금에 대해 용자 지원

○ 수매자금

- 사업대상자가 인삼·특용작물 생산농가와 계약재배 한 물량을 수매하기 위한 자금을 용자 지원

* 수매 전 계약대상자(농가)의 생산이력을 포장별로 확인하고,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한 후(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확인) 수매(잔류농약 분석결과 불합격된 농가의 명단은 불합격 판정 즉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

** 인삼원료삼수매사업은 단기간(3년)의 계약재배를 통해 고품질 원료삼(5년근·6년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자금 지원기간 설정 예시 ('18. 6. 15일 농가 지원시)	
인삼수매 지원사업	인삼원료삼수매 지원사업
▶ 4년근 : '18. 6. 15~'20. 12. 25	▶ 4년근 계약 후 6년근 수매시
▶▶ 5년근 : '18. 6. 15~'21. 12. 25	- '18. 6. 15~'20. 12. 25
▶▶▶ 6년근 : '18. 6. 15~'22. 12. 25	▶▶ 3년근 계약 후 5년근 수매시
	- '18. 6. 15~'20. 12. 25

- 사업대상자가 농가와 계약한 인삼 종자 수매 자금 용자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인삼·특용계열화, 인삼 구매자금 :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인삼계열화 : 계약재배 금리 0%(5년 거치 일시상환), 인삼종자 구매 금리 0%(1년 거치 일시상환)
 - 특용계열화 : 계약재배 금리 0%(1년 거치 일시상환), 구매자금 2.5~3.0%(1~3년 거치 일시상환)
- 인삼구매자금(이차보전) : 농협(국고융자 80%, 자부담 20%(농협경제지주 10, 농협 10), 일반가공업체(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인삼 구매자금 금리 2.5% 또는 변동(5년 거치 일시상환)
 - * '인삼원료삼구매사업'은 3년 거치 일시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계약재배
 - 계약주체(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
 - 계약대상 : 인삼(4년근 이상) 및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 계약체결 : 사업대상자는 계약대상 농가의 재배포장을 확인 후 7월31일까지 계약 완료
 - * 인삼의 경우, 계약조건에 농약잔류기준은 식약처장이 고시한 농약잔류기준 이내로 설정하거나 안전성 관련하여 더 강화된 기준을 계약주체가 요구할 수 있음
 - * '인삼원료삼구매사업'은 생산 예정 연근의 최소 2년 전(3년근 또는 4년근)에 계약체결 가능
 - 계약재배 자금 지원
 - 지원규모 : (인삼) 16,553백만원, (특용작물) 1,045백만원
 - * 인삼 10a당 3,300천원 한도, 특용작물 계약재배금액의 20~50% 범위내에서 지급
 - ** '인삼원료삼구매사업'은 50ha 이내 지원
 - 지원시기 : 계약체결시
 - 지원조건 : 금리 무이자, 인삼 5년 거치 일시상환, 특용작물 1년 거치 일시상환(단, 연근 등은 재배기간에 따라 계약자금 지원시 부터 수확시 까지)
 - 사업대상자의 의무
 - 계약대상자(농가)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계약포장별로 구매 전까지 재배이력 관리

- 계약주체(사업대상자)는 계약대상자별·포장별로 농약안전사용 교육 및 지도를 실시하고 농약 등의 재배이력 관리실태 확인
- 일반업체와 계약한 농가에 대한 농약안전사용 교육은 농협에 위탁교육 가능

○ 수매사업 및 판매

- 수매대상 : 계약재배 수확 물량
- 지원조건
 - (인삼) 5년 거치 일시상환(고정금리 기준 연리 2.5~3%, 변동금리 가능)
 - * 단, '인삼원료삼수매사업' 참여 업체는 3년 거치 일시상환
 - (특용작물) 1~3년 거치 일시상환(고정금리 기준 연리 2.5~3.0%, 변동금리 가능)
 - * 특용작물 재배 특성에 따라 수매 지원 조건(1년~3년 거치) 적용(예 : 1년생 작물 = 1년 거치, 3년생 작물 = 3년 거치)
- 지원규모 : (인삼) 용자규모 약 37,400백만원, (특용) 1,020백만원
- 수매조건 : 수매 전 계약대상자(농가)의 생산이력을 포장별로 확인하고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한 후 수매
 - * 안전성 부적합품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수매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재배 자금 회수(계약자금 지원 기간에 대하여는 위약금 부과 징수)
- 수매기간 : 연중
- 자금지원 :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수매하기 전 사업대상자의 수매계획 및 회전운용 자금규모 등을 감안하여 자금 지원
 - 농협경제지주는 수매물량 판매 후 회수자금에 대한 운용지침 수립 및 자금 관리
 - 사업대상자는 수매물량 판매 후 회수자금을 지원기간 내에서 수매자금으로 회전운용하고 동 자금을 수매자금으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협경제지주에 상환
 - 일반업체는 수매물량 판매 후 회수한 자금을 수매자금으로 회전 운용하는 대신 수매자금의 20%를 익년도부터 매년 12월 20일과 최종 상환일에 농협경제지주로 상환

- 인삼계열화사업에 신규 참여하는 업체는 기존 계열화 계약삼포에 한하여 수매시 수매자금 지원 가능
- 수매정산 : 수매자금은 수매시 전액 지급하되, 수매금액에서 계약재배 지원액을 차감하여 지급
- 수매물량의 처리
 - 수매물량은 사업대상자가 수삼 또는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출업체가 수출원료용으로 구매를 희망할 경우에는 사전 협약 등을 통해 우선 판매
- 수매실적보고 : 사업대상자는 당해 연도 수매실적을 12.15일까지 농협경제지주에 보고

<인삼종자 수매>

- 수매대상 : 「종자산업법」에서 정한 판매유통을 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은 자가 농가와 인삼 종자생산·공급에 대해 계약한 물량에 대해 수매
- 지원조건 : 1년 거치 일시상환(무이자)
- 지원규모 : 800백만원
- 수매조건 : 사전에 계약하지 않은 물량이나 계약물량 초과 물량은 수매 제외
- 수매기간 : 매년 7월~8월
- 자금지원 :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수매하기 전 사업대상자(농협 등)의 수매계획 등을 검토하여 수매자금 배분
- 수매물량의 처리
 - 사업대상자는 인삼종자 수매물량을 국내의 인삼 재배 농가에 판매하거나 개갑 처리 또는 종묘삼을 생산하여 인삼재배농가에 판매하며,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 품질표시를 용기나 포장에 표시
 - 사업대상자들은 종자, 종묘삼 등의 수매 및 판매내역을 수기 또는 전산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사업종료 후 1년간 보관
- 실적보고 : 사업대상자는 당해 연도 수매실적을 9.15일까지 농협경제지주에 보고

1. 사업신청단계

세부운영계획 수립(농협경제지주)

- 당해 연도 사업시행지침 및 예산계획을 바탕으로 농협경제지주에서 인삼·특용작물계열화사업 세부운영지침을 수립(종자 위탁생산 계획 포함)하여 농협경제지주 홈페이지 등에 공고(당해 연도 2월)
 - *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인삼과 특용작물에 대한 별도의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 후 시행

계약재배 신청(농업인)

- 사업대상자(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는 사업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계약대상자(농가)에게 계약재배 신청 홍보
- 계약재배를 희망하는 인삼재배농가는 인삼경작 신고시(인삼산업법 제4조) 또는 계약재배를 하고자 하는 때(예정지 관리단계 등)에 사업대상자에게 「인삼 계약재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별지 1호 서식)
 - 업체가 특정 농협에 계약재배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연도 농협에 수매 희망물량을 협의·신청
- 특용작물 재배농가는 「특용작물 계약재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별지2호 서식)
- 인삼종자를 생산·출하 하고자 하는 농가는 「인삼종자생산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별지3호 서식)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대상자 등은 동 지침과 농가신청 결과를 검토한 후 수매능력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 3.15일까지 농협경제지주에 제출

- 사업농협은 계약재배 참여농가의 신청면적을 농협자체 계약분과 업체의 계약사업 위탁분을 구분하여 농협경제지주에 제출
 -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대상자 확정
 - * 특용작물 일반업체는 해당지역 농협경제지주 시·군 지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 가능
 - 자체적으로 계약 및 수매를 희망하는 업체는 동 지침과 농가신청 결과를 검토한 후 업체의 수매능력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 3.15일까지 농협경제지주로 제출
 - 사업대상자 등은 농가의 인삼종자 생산계획을 검토한 후 수매능력 범위내에서 농가와 인삼종자 위탁 생산 약정을 체결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 3.15일까지 농협경제지주에 제출
- 인삼·특용작물계열화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시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79조에 근거한 부당사용 사유 등으로 지원 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 단계에서 제외
 - 인삼·특용작물계열화사업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계약재배 대상농가 선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 한해 선정하고, 인삼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사업 및 자금관리 주체(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는 농협·가공업체등에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 2.28일까지 시달
- 농협경제지주는 농협·가공업체 등의 사업계획에 대해 신청물량, 예년의 사업 실적, 재배규모 및 생산량, 사업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량 확정

자금관리 주체(농협경제지주)

○ 자금배정 요구

-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직전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사업비 지원

- 농협경제지주는 사업대상자의 확정된 계약·수매계획에 따라 자금 배정
- 농협·가공업체 등은 계약대상자의 재배포장을 7.31일까지 확인하고 계약 재배 자금 지원
- 농협경제지주는 농협 및 업체별 계약재배자금 지원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농협 또는 업체간 자금 전배 조치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사업비 정산(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사후관리(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 사후관리 책임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사업농협의 사업추진상황 및 자금관리, 지원 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다만, 일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농협경제지주가 계획(안)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계획을 확정하여 농협경제지주와 공동으로 시행
 - 사후관리를 위해 현장조사 등에 필요시 지자체(시·도, 시·군) 협조

사업자금 및 운용수익의 관리

- 농협경제지주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징수한 위약금을 충당금 계정에 적립 관리하고, 인삼농협은 수매자금 회전운용 여유자금에 대한 운용수익을 별도계정으로 적립하되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연간 사용계획 및 전년도 사용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협은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가 정하는 사업대기자금(수매자금)의 운용수익을 충당금 계정에 적립
- 충당금 계정 적립금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 가능
 - 사업추진 및 사업활성화에 소요되는 비용(전산개발 및 보급비, 교육·홍보비, 수매물의 판매촉진비, 사업손실보전비용, 인센티브 등)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안전성 분석비, GAP 인증 수수료 등 행정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 지정하는 사업
-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인삼·특용작물계열화사업자금 및 운용수익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금운용지침을 정하여 시행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2018년 인삼계열화사업 추진성과 보고서 제출('19.3월까지, 농협경제지주)

2. 2019년도 사업수요조사

-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사업대상자별 '19년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로 제출('18.6월말)

3. 평가

<성과평가>

- 평가원칙, 평가절차 및 방법은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가 정하여 시행
- 평가결과는 익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

- 우수사업주체 : 평가결과 우수사업주체에 대해서는 계약재배자금 및 대기자금 충당금 우선지원,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 등
- 부진사업주체 :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자금의 목적외 사용 등 평가결과 부진사업주체는 계약재배자금 및 대기자금 충당금 지원을 제외하거나 감액
- 계약 미이행자 : 계약물량의 수매기피 및 안전성 부적합품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자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 등

*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 세부계획은 '인삼계열화사업 세부운용지침(농협경제지주)'에 마련

세부사업명	자조금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자조금지원(단체)	예산 (백만원)	7,610					
사업목적	○ 생산자단체를 조직화하여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 하게 함으로써 농가소득 증진							
사업 주요내용	○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 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출연 및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조금법)」 제2조(정의)제 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 * 임의자조금 단체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횟수가 3회 이하인 단체 ○ 주산지협의체 설립추진 단체 ○ 통합자조금* 및 지역자조금** 단체 * 동일품목에 대해 전국단위 자조금(농협)과 지역 자조금이 통합 한 경우(참외 등)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자조금사업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한도	○ 품목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예산 및 평가결과 등이 반영된 사업총괄부서의 검토·조정을 거쳐 해당 품목담당부서에서 승인							
재원구성 (%)	국고		지방비		용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4,000	15,220	15,220	76,100			
	국 고	7,000	7,610	7,610	38,050			
	자부담	7,000	7,610	7,610	38,05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하성태		044-201-2224		
신청시기	정기(당년도 1월5일)			사업시행기관		자조금단체		
관련자료	자조금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조금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
- 의무자조금 결성을 추진하는 단체(비영리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가. 의무자조금단체 : 의무자조금단체로 승인을 받은 단체
- 나. 임의자조금단체 : 임의자조금단체로 승인을 받은 단체
- 기존 임의자조금단체('15년도 이전부터 지원한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규 임의자조금단체는 결성 이후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
- 다. 의무자조금 추진 단체 : 3년 이내에 의무자조금 결성을 전제로 주산지협의회 등이 모여 비영리법인격을 갖춘 경우(담당과에서 계획을 검토하여 승인) 3년간 한시적으로 1억원 한도내에서 농가조직화, 교육·홍보 비용(4.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중 ⑤, ⑥ 항목) 지원
- 매칭비율은 임의자조금 매우우수 등급(매칭비율 70%) 적용
 - 사무국 등 운영비는 사업비(국고지원액+자부담)의 30% 이내로 한정
- 라. 통합자조금 : 기존 전국단위 임의자조금과 해당품목 지역자조금이 통합하여 3년 내에 전국단위 의무자조금을 추진하기 위해 비영리법인격을 갖춘 경우(담당과에서 계획을 검토하여 승인) 3년간 한시적으로 1억원 한도내에서 농가조직화, 교육·홍보 비용(4.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중 ⑤, ⑥ 항목) 지원
- 매칭비율은 임의자조금 매우우수 등급(매칭비율 70%) 적용
 - 사무국 등 운영비는 사업비(국고지원액+자부담)의 30% 이내로 한정

3. 지원형태(기준)

- (기본원칙) 자조금 조성액과 국고보조를 1:1매칭으로 지원(운영실적 등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차등지원 : 자조금단체의 당해연도 사업신청액, 전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운영실적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보조금을 등급별로 차등 배정(단, 예산현황 등에 따라 등급별 지원비율은 변경가능)

구 분	매우우수 (80점이상)	우수 (60~80점미만)	보통 (60점미만)	비고
의무자조금	100%	90	70	
임의자조금	70	60	50	

* 의무자조금 단체 또는 평가결과 매우우수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제외 : ① 당해연도(전년도 이월액 포함) 자조금 자체 조정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 제외, ② 최근 3년간 품목 총생산 평균액이 1,000억원 이하인 품목

○ (집행항목별 매칭 차등) 단체별 평가결과에 따라 매칭하되, 자부담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집행항목(조사연구)에 대해서는 국고20:자체자금80 적용(항목별 정산)

집행항목	예산 배분	매칭비율	정산	비고
조사연구 항목(A)	단체별 총사업비의 20% 이내	국고20:자체80	집행잔액은 2:8 비율 정산	
조사연구외 항목(B)	총사업비-조사연구비	단체별 평가결과에 따른 매칭비율 적용	단체별 매칭비율 대로 정산	

* 예시(국고10:자담10, 총사업비 20억원 단체) : 총사업비의 20%인 4억원(국고0.8+매칭자금3.2) 까지 조사연구에 배정 가능, 집행 후 잔액은 2:8로 불용처리하되, 타 항목 부족 시 5:5로 변경집행 가능(변경에 따른 매칭자금 잔액은 정산 후 적립)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 농산업자, 소비자,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사업
- 농산물의 소비촉진, 생산성 및 품질 향상(GAP 등),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교육
- 자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자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 의무자조금 결성을 위하여 품목별 농업인의 조직화에 소요되는 비용
-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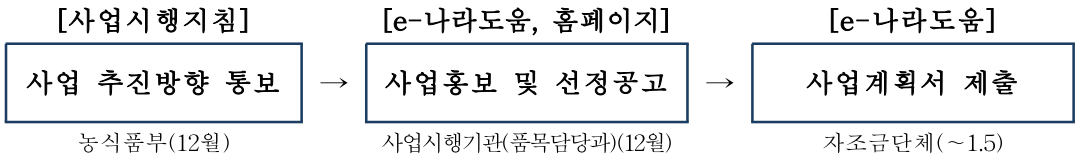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III-2 사업승인 단계를 준용하여 해당 품목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예산 및 평가결과 등이 반영된 사업총괄부서의 검토·조정을 거쳐 해당 품목담당부서에서 승인

6. 집행결과보고(정산)

-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보조사업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함
 - 다만, 부득이하게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업을 이월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 협의를 거쳐 이월사업으로 추진이 가능(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집행결과 보고)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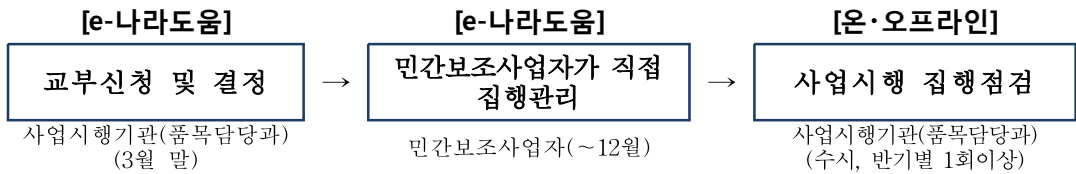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 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 농식품사업이 융자사업 등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공고시스템(또는 Agrix) 활용하고 신청 접수할 수 있다.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한다.

2. 사업승인단계

- 품목담당부서는 자조금단체에서 제출한 추진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승인하고 그 결과(검토의견 등 포함)를 사업총괄부서(유통정책과) 및 e-나라도움에 제출(1월 말까지)
- 평가 및 자금배정이 완료되면 계획서를 보완하여 최종 계획서 승인(3월말)
- * 사업계획의 승인은 자조금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됨을 의미하므로 자격요건, 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
- * 2. 지원자격 및 요건 상 ‘의무자조금 추진단체’ 및 ‘통합자조금’의 경우 2월말까지 계획서를 검토·승인하고, 평가 및 자금배정이 완료되면 최종계획서 승인(3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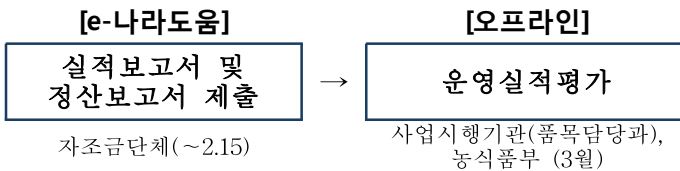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자조금 단체의 관리규정에 따라 구성원이 납부하여 조성한 자조금내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시행기관에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사업시행기관은 자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의 타당성과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여 당해연도 자조금단체의 자체 자조금 조성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의 시기와 방법을 명시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 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 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조금 단체에 대해 매년 전년도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3년 이상 사업을 시행한 단체에 대해 본 평가를 실시하여 차등지원(기존 임의자조금에서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한 단체의 경우 임의자조금 실적 승계), 3년 미만 단체는 예비평가 실시
 - * 전년도 운영실적은 당년 초에 평가하여 당해 사업에 적용

1. 사업평가

-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조금 단체에 대해 매년 전년도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단체(A등급)는 추가보조금 지원(하부조직 구축을 위한 조직화 교육, 워크샵 비용 등으로 지출가능)
- 평가대상은 3년 이상 사업을 시행한 단체에 대해 본 평가를 실시하여 차등 지원(기존 임의자조금에서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한 단체의 경우 임의자조금 실적 승계), 3년 미만 단체는 예비평가 실시
 - * '17년 운영실적은 '18년 초에 평가하여 '18년 사업에 적용
 - * 평가 세부요령 등은 별도 계획 수립·통보 예정

2. 환류

- 사업 평가결과는 자조금단체 보조금 지원시 활용되며, 단체별 평가등급에 따라 보조금 비율 차등 배정(단, 예산현황 등에 따라 등급별 지원비율은 변경가능)

세부사업명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전통시장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예산 (백만원)	100			
사업목적	○ 전통시장 상인과 산지간 직거래확대							
사업 주요내용	○ 산지와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직거래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68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지원자격 및 요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조직, 청년 창업희망자 등 국고100%							
지원한도	○ 개소당 30백만원 이내(보조100%)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	100	100	미정			
	국 고	-	100	100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정책과 유통조성처 유통기획부		사무관 김남주 부 장 백태근		044-201-2285 061-931-1010		
신청시기	정기(4월~)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관련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지사항 전통시장지역농산물 소비촉진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전통시장 상인회 및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하는 직거래사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협동조합 등 적격한 사업주체를 구성
- 직거래사업자의 경우 전통시장에 지역농산물 판매를 위한 시설설치 등 사업 추진
 - * 단, 해당시장 상인회의 사전동의 필수

3. 지원대상

- 지역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시설설치, 운영홍보비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설치) 지역농산물 홍보관·판매장, 커뮤니티키친, 청년창업체험 점포 등
- (교육·컨설팅) 산지투어·교육, 산지직공급 컨설팅 등
- (운영홍보비) 창업체험점포·커뮤니티키친 등 운영비, 판촉홍보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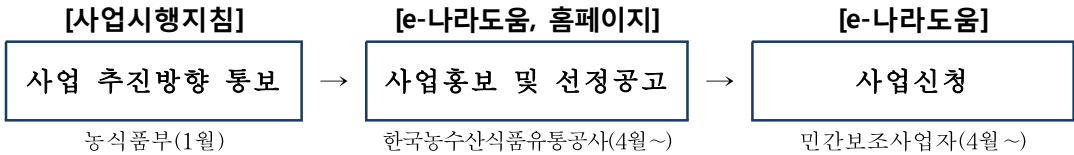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기준
 - 전통시장 지역농산물 판매촉진 : 보조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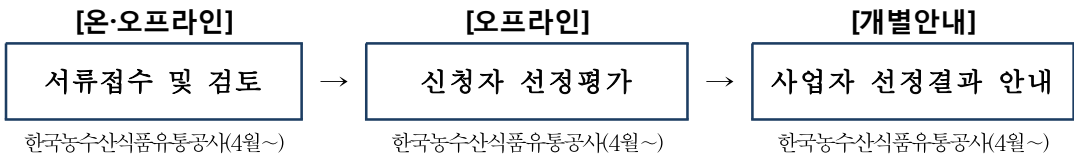
- 개소당 30백만원 이내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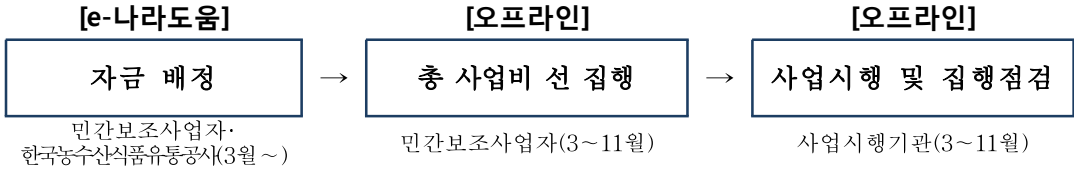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통지(1월)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림수산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1월)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 추진(4월~)
 -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 안내)
- 사업신청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사업신청서 등을 제출(4월)
 - 신청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신청 등 작성
 -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 규정」 제35조제6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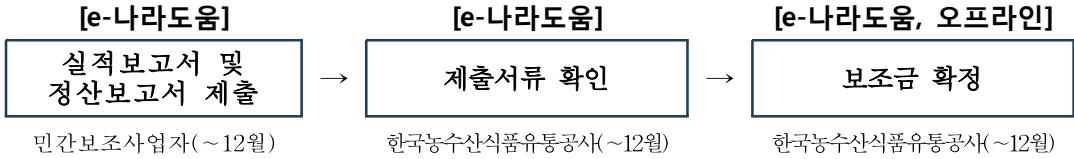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등 검토
-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업자를 확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안내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변경제출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은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자금 배정을 실시
 - 단, 직거래교육·홍보 지원사업은 e-나라도움을 통해 비예탁형(실적베이스)으로 추진되며 이에 따라 사후정산 방식으로 진행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 (정산보고서 검증)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선정사업자는 배정액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보고
 -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등록(예산집행 내역 등) 후 보조사업 실행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을 점검하여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45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 지급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의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 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 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1.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전통시장 지역농산물 판매촉진사업 결과보고

1 사업추진개요

- 단 체 명 :
- 사 업 명 :
- 일자/장소 :
- 사업 내용:

2 추진사항

- 사업추진 결과
- 보조금 집행내역

내역	항목		산출기준
	세부항목	집행금액	
	
	총계		

3 추진효과

-
-

4 관련사진

- 사진 등

--	--

세부사업명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채소가격안정지원			예산 (백만원)	16,819			
사업목적	○ 주요 채소류(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의 주산지 중심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 도모							
사업 주요내용	○ 계약재배 농업인의 일정 약정금액(도매시장 평년가격 80%이내)을 보전해 주고 면적조절, 출하조절 등 강화된 수급의무를 부여하여 주산지 중심의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 지원 * 품목별 약정금액 보전, 면적조절, 출하조절 등에 따른 비용지원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제6조(계약생산), 제9조(과잉생산시의 생산자의 보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농업인, 생산자단체 ○ (지원조건) 당해 연도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회에 참여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대상품목) 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지원한도	○ 신청 물량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 차등지원							
재원구성(%)	국고	30	지방비	30	농협	2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6,666	33,333	56,063	83,333			
	국 고	2,000	10,000	16,819	25,000			
	지방비	2,000	10,000	16,819	25,000			
	농 협	1,333	6,666	11,212	16,666			
	자부담	1,333	6,666	11,212	16,666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원예산업과 품목연합부		서정호 김동균		044-201-2232 02-2080-6351		
신청시기	'17년 1월 ~ (수시)			사업시행기관		농협경제지주		
관련자료	채소류생산안정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농협경제지주의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이하 ‘계약재배’) 참여 농업인, 지역·품목 농협(이하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법인’)
- * 관련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9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당해연도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 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농협, 법인
 - *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매취사업)이 사업대상자일 경우에는 농가로부터 보전기준가격(도매시장 5개년 평년가격의 80%) 수준으로 수매(매입)를 하여야 함
 - * 농업수입보장보험 가입자는 본 사업 지원 불가
- (지원요건) 약정 체결 후 품목별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거나, 사전면적 조절, 출하중지 및 출하장려 등 지급요건 발생 시 약정된 금액 지원
 - * 가격하락 보전, 사전면적조절·출하중지·출하장려 등의 지급금액 세부기준은 예산 범위 내에서 주산지협의체(또는 농협경제지주)가 사업계획 수립 시 마련
- (선정우선순위)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자, 자조금 사업자는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통합마케팅조직 및 계열화된 조직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 시 가점 부여

3. 지원대상

- (대상 품목) 배추·무(쫄면형), 고추, 마늘, 양파
- (지원 내용) 가격하락 보전, 사전면적조절·출하중지·출하장려 등의 약정 금액*
 - * 품목별 주산지협의체에서 지원 내용별로 세부 지원 금액을 정하여 사업계획 수립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급과잉) 가격하락 시 보전기준가격(도매시장 5개년 평년가격의 80%)과의 차액 보전 또는 사전면적조절·출하중지 등의 약정 비용으로 사용

- (공급부족) 출하장려금(운송비, 작업비 등) 등 수급안정 지원 비용으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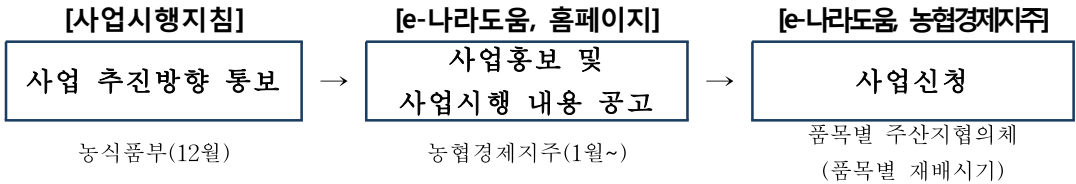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금의 재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민간경상보조)
 - 지원기준: 국고 30%, 지방비 30, 농협 20, 농업인 20
 - *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사업 대상자일 경우에는 농업인 부담비율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사업 범위) 가격하락 보전, 사전면적조절·출하중지·출하장려 등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으로 한정
- (사업 의무) 농업인, 농협, 법인은 약정물량(또는 매월 출하계획량)의 50%에 대해 수급상황 발생 시 정부 또는 농협경제지주의 사전면적조절, 출하중지, 출하장려 등 수급대책 의무 이행 준수
 - 사업대상자는 해당 품목 출하전에 농협경제지주에 월별 출하계획을 수립·보고하여야 함
 - 사전면적조절, 출하중지, 출하장려 등의 수급대책 지시를 위반 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회수(계약재배 자금(융자)도 회수), 사업 참여 제한 조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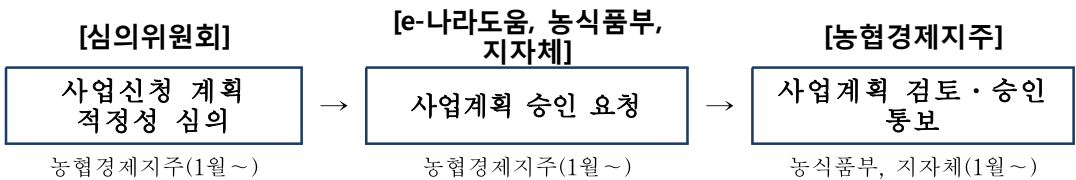
- (지급 방법) 농협경제지주(지역본부)에서 지급 요건 발생 확인 후 지원기준 비율(국고 30%, 지방비 30, 농협인 20, 농업인 20)에 따라 지급
- (지급 기준) 품목별 주산지협의회에서 도매시장 5개년 평년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산정하고, 기준가격의 80% 이내에서 가격하락 보전기준가격을 설정
 - 사전면적조절·출하중지 등의 세부 지급기준은 품목별 주산지협의회에서 사업계획 수립시 기준가격 및 보전기준가격 등을 고려하여 설정
 - 운송비, 작업비 등 출하장려금 지원 단가는 민간 실경비 수준으로 설정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을 시달하고, 농협경제지주는 사업 홍보 및 사업 시행내용 등을 신속히 공고
 - 품목별 주산지협의회에서는 당해연도 품목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농협경제지주에 사업 신청('18. 1월 ~)
 - 품목별 주산지협의회는 당해연도 사업비 조성 및 집행 계획, 수급상황에 따른 수급대책 계획 등을 포함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 후 사업 신청
- * 주산지협의회: 채소가격안정제 사업계획 수립, 주산지 수급조절 계획 심의·추진 등을 위해 주산지 지자체, 생산자단체, 농업인, 유통인 등이 참여한 광역(도단위) 협의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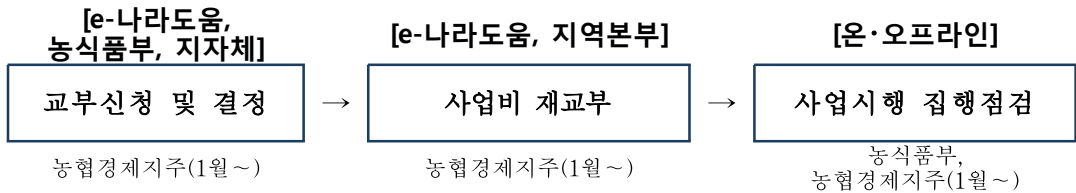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협경제지주는 신청된 품목별 주산지협의회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농식품부(e-나라도움), 해당 주산지협의회 시·도에 사업계획 승인 요청('18. 1월~)
- * 농협경제지주는 사업계획 승인 요청 전 사업신청 농업인 등의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농식품부(e-나라도움), 시·도는 농협경제지주의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 한 후 승인 여부 통보

- 농협경제지주는 품목별 주산지협의체에 사업계획을 확정 통보하고, 사업물량 등 계획 변경 시 즉시 농식품부(e-나라도움), 시·도에 변경 계획을 신청
 - 농협경제지주는 각 품목별 주산지협의체 지급요건 발생상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불용이 예상되면 품목별 사업비·사업량 등을 변경하여 농식품부(e-나라도움), 지자체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후 사업 추진
 - * 농협경제지주는 품목별 주산지협의체의 사업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농식품부, 해당 시·도에 보고
 - 작황 등으로 농업인, 농협 등의 출하 계획물량이 변경될 경우, 사업 농협에서는 농협경제지주에 변경된 사항을 즉시 보고해야 하며, 농협경제지주는 사업량 및 출하계획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 요청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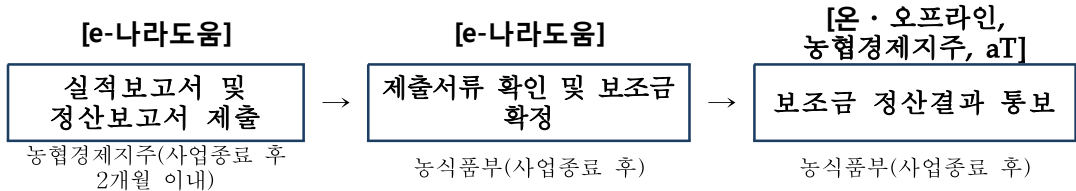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농협경제지주는 품목별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품목별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을 농식품부(e-나라도움), 해당 시·도에 교부 신청
 - 농식품부(e-나라도움), 해당 시·도는 보조금 교부 결정 및 통지
 - * 농협경제지주는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 집행관리를 해야 하고, 품목별로 당해 교부 받은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품목별로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하고,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하여야 함
- 농협경제지주는 보조금을 지역본부(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재교부하고, 지역본부(품목 주산지협의체)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를 등록한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지역본부는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식품부, 농협경제지주와 협의하여 처리 가능
- 농협경제지주는 지역본부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 시 지역본부에 보완 요구
- 농협경제지주는 지역본부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농협경제지주 및 지역본부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규정」,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지침(기획재정부)」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 농협경제지주는 사업부실을 방지하고, 집행 효율을 높일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 집행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점검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각 품목별 주산지협의체(지역본부) 및 농협경제지주는 사업이 종료되면 2개월 이내에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를 등록
 - 품목별 주산지협의체(지역본부)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 신청
 - *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 정산 확정
- 농식품부는 확정된 보조금 정산결과를 통보(농협경제지주, aT)
- 농협경제지주는 사업대상자가 지원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 해당 보조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 조치

<제재 및 처벌 내용>

- 사전면적조절, 출하중지 등 수급대책 사업의무 미이행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약 재배 자금 및 보조금을 회수하고, 다음연도 수급안정사업(채소가격안정제, 계약재배) 참여에 불이익
 - (농업인·농협(매취)) 3년 이내 사업참여 제한
 - (농협(수탁)) (1차 위반) 계약재배 사업비 30% 또는 운용자금 50% 감액, (2차 위반)계약재배 사업비 50% 또는 운용자금 100% 감액, (3차 위반) 3년 이내 사업참여 제한
- 농협경제지주는 사업의무 미이행 위반자에 대한 리스트를 관리하고, 매년 점검 실적을 농식품부, 시·도에 보고

1. 평가 및 환류

- 농협경제지주는 품목별 사업종료 후 품목별 평년생산량 대비 채소가격안정제 추진 물량 비중과 수급안정 성과 등을 분석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실적 부진 주산지협의체에 대해서는 익년도 사업비 배정 등에 불이익 조치, 사업실적 우수 주산지협의체는 예산 추가 배정 등 인센티브 부여

2. 기타

- 농협경제지주는 매년 익년도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해연도 10월말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유통원예분야

Ⅲ. 경쟁력제고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세부사업명	과수 생산유통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과수분야 전국공동브랜드육성 지원		예산 (백만원)	1,325				
사업목적	○ 다국적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대표브랜드육성							
사업 주요내용	○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운영지원, 홍보지원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전국공동브랜드 : 전국 광역조직으로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이 3개 이상인 조직으로서 한국과수농협연합회 ○ 지역공동브랜드 :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광역 또는 시도 단위 브랜드경영체							
지원한도	○ 전국공동브랜드 : 연차별 사업수요 반영 ○ 지역공동브랜드 : 개소당 총사업비 900~3,000백만원 기준(3년간 균분지원) * 개소당 연간 지원액 : 3~10억원							
재원구성(%)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450	3,450	3,145	11,250			
	국 고	1,415	1,415	1,325	4,425			
	지방비	750	750	660	2,430			
	자부담	1,285	1,285	1,160	4,39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기주		044-201-2251		
				사무관 허동웅		044-201-2252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생산유통부		상 무 박연순		054-534-8003		
				과 장 김영문		054-534-8003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31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과수관련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브랜드 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전국공동브랜드 : 전국 광역조직으로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이 3개 이상인 조직
- 지역공동브랜드 : 광역 또는 시·도 단위 브랜드 경영체
 - 시·군 단위 브랜드 경영체이더라도 전국 생산량의 50%이상 취급하는 등 전국 품목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브랜드사업 참여조직 구성원의 주 과종 재배면적이 500ha이상 규모화된 지역을 기반으로 브랜드 과실을 생산·유통할 수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 공동계산액 30억원이상 실적이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
 -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참여조직 포함), 거점 산지유통센터(APC) 연계 추진 시행주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우선 지원
 -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경우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3. 지원대상

- 과실 공동브랜드화 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포괄 지원
 -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등
 - * 브랜드 경영체가 회원농가 기술지도 → 고품질 과실생산 → 상품화(선별, 가공 등) → 브랜드관리를 일원화하는데 필요한 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브랜드 품질관리 : 기술지원단·홈페이지 운영, 유통정보화, 농가유통 교육, 산지·소비지 품질조사, 컨설팅, 브랜드 평가회 등
 - * 수발주관리, 거래처관리, 회원관리 등 브랜드 관리 및 품질관리 시스템 지원가능(ICT 융복합 사업 추진 시 농식품부 정보화담당관실 사전 협의 필요)
- 마케팅 운영 : 인건비·마케팅 활동비, 바이어 사업설명회, 상품개발비,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사무실 운영비 등
- 브랜드 홍보 : 광고·홍보비, 소비촉진 시식회, 과실브랜드 축제, 브랜드개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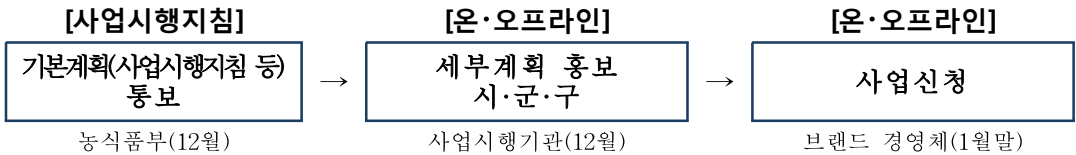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전국공동브랜드 : 국고 70%, 자부담 30%
 - 지역공동브랜드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 자부담의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전국공동브랜드 : 연차별 사업수요 반영
- 지역공동브랜드 : 개소당 총사업비 900~3,000백만원 기준(3년간 균분지원)
 - 개소당 연간 지원액 : 3~10억원(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붙임 1, 2” 참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말)
- 신청서 양식 : 별지 4-1호 서식

브랜드경영체

□ 브랜드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제출(1월말까지 시·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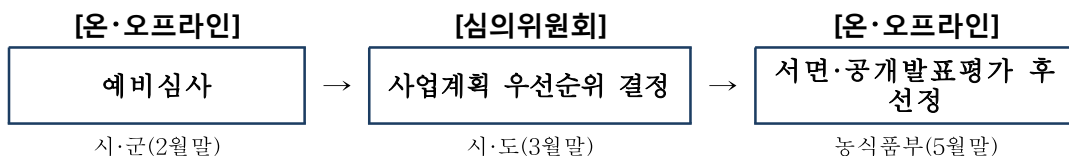
- 브랜드 경영체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회원조합, 지자체,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브랜드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
 - 사업추진 및 사업별 목표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포함
- 과실 생산, 유통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
 - 유통, 경영, 품목생산 등 분야별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생산자단체, 관련 행정기관 실무책임자 등으로 구성(10명 내외)
 - 사업계획서의 과수면적, 생산량, 사업량 등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자료인용 또는 검토의견을 첨부
 - * 2개 시·군 이상 연계해서 사업을 신청할 경우 주관 시·군에서 사업신청서 제출

□ 브랜드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해당 지역의 산업여건 및 전망분석, 사업별 목표를 계량화하여 설정
 - 사업완료시와 완료 후 5년, 10년 후 등의 장기비전 제시
 - 참여농가 수, 브랜드 출하비율 등 구체적인 발전목표 제시

-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공동브랜드 목표달성에 필요한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거점 APC 등 기존시설 또는 계획 중인 유통시설을 이용한 마케팅 계획
- 세부사업별 예산 및 산출근기 등 재정투자계획과 사업별 투자성과 분석
- 회원관리, 과실 생산·유통 및 소비지 관리 등 각 단계에 필요한 마케팅 운영 및 브랜드 홍보 지원 계획
-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수립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

- 브랜드 경영체에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 농정관련 심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시·도에 제출(2월말)

시·도

- 시·도 과수산업발전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체평가기준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3월말)
 - *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정책방향과 상이한 사업계획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 시·도가 직접 추진하는 광역사업계획은 시·군과 같은 절차로 작성하되 우선순위 없이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세부심사·평가 절차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되,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현장실사 및 내·외부전문가에 의한 공개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선정(5월말)

가.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대상 선정

나. 실무 사전검토

-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사업내용의 미비점,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 중복투자 여부 등
- 검토결과 조치
 -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사업은 심사제외
 - 부분적으로 미흡한 과제는 보완요청
 - 검토의견을 비공개 서면평가 자료로 제공

다. 심사 및 평가

- 전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업계획별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위원 지정 및 평가기준제시 : 농림축산식품부

<1단계 : 비공개 서면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비공개 서면평가 실시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로 팀 구성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7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50%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 평균점수 : 평가위원별 합계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공개발표평가의 평가 자료로 활용

<2단계 : 현장실사 및 공개발표 평가>

- 전문평가단이 이전 단계의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총괄평가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이전단계 평가 참여위원 포함)
 - 공개발표 방법 : 사업시행주체(시·도 및 시·군) 또는 사업주체측에서 사업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
 - 주요평가내용 : 이전 단계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평가
 - * 사업계획 내용 정밀 확인 및 여건 확보 여부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60%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평가단의 종합의견은 사업비 심의, 최종사업계획 선정시 반영
 - * 심사평가기준 : [별지 제4-3호 서식] 참조

라. 사업비 심의·조정

- 단계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업기간, 사업 규모·단가 등을 보완하는 등 사업비 조정

마. 사업계획 최종선정

- 우선순위 결정
 - 비공개 서면평가 및 공개발표평가의 점수를 종합(가중치 : 서면평가 30%, 공개발표평가 70%)하여 사업대상 순위 결정
 - * 동점 발생시 4번 대분류 평가항목(유통혁신 및 계획)을 기준으로 순위결정

<조건부 사업계획 선정>

-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미비점을 보완했을 경우 또는 보완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조건부 자금지원>

- 사업계획 선정시 제시된 사항을 이행했을 경우 자금배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연합회장으로부터 제출된 세부사업계획의 검토·조정 및 확정 시달

브랜드경영체

가.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브랜드 경영체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매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시·군)에 제출(20일 이내)
 - 매년 사업비 확정 후에는 당해년도 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나. 브랜드사업 추진

- 브랜드 상품 생산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생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 참여자들의 이행체제를 구축
 - 브랜드 경영체는 품목조직 대표, 기술지원단 등과 협의하여 재배 및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브랜드 운영에 관한 규약』을 제정하여 조직원들이 반드시 『규약』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 생산관리 프로그램에는 브랜드 경영지침서의 품종선택, 토양·수질관리와 재배 및 수확 후 관리의 표준화 등을 포함해야 함
 - 농업인의 생산관리 프로그램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불이행시 브랜드 사업의 참여배제 및 지원자금 회수 시스템 구축
- 수매·가공·판매를 위한 브랜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 품목의 브랜드 마케팅 전략에 따라 규격을 생산자조직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적격품을 수매 또는 위탁판매
 - 수확 후 유통·저장·가공단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시스템을 개발
 - 브랜드(이름, 디자인, 로고 등) 개발, 마케팅 전략, 브랜드 홍보 및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한 전략 수립
- 브랜드의 명칭, 로고 등을 신규 제작할 경우에는 그 중요성을 감안 세계시장에서 이미지 표출이 가능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브랜드를 목표로 제작

다. 사업추진 컨설팅

- 관련전문가 또는 전문컨설턴트를 통한 사업추진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을 받아 사업을 실시
- 컨설팅은 사업계획의 수립·평가, 농업인조직화 교육, 경영 및 기술지도, 현장애로 사항 해결 등 전 분야에 걸쳐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라. 사업계획 변경절차

-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사업참여조직 등 주요 사항의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조직)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 세부사업별 비중 조정은 총사업비 축소와 전체 지원비율 조정이 없는 경우에 한함

시·도(시·군), 연합회

가.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시·도(시·군)는 브랜드 경영체가 작성한 세부추진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조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개월 이내)

나. 사업계획 변경절차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의 기준사업비 내 품명과 세부사업비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 연합회)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금액)를 기준으로 세부사업비의 30%를 초과 증감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전승인 후 변경집행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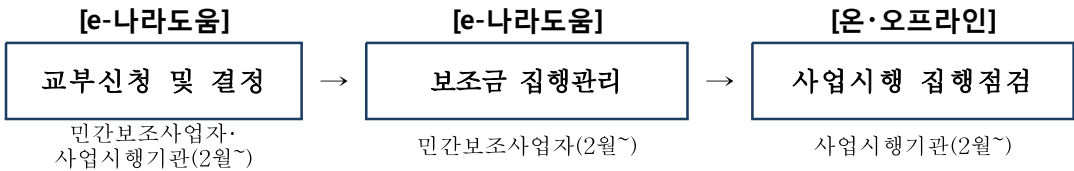
[사업비 조정 절차]

- <붙임 1, 2> 사업비 세부내역(예시)의 항목별 사업비는 지역실정에 맞게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중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준 사업비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단, 사업비 증감조정의 범위는 30% 이내이며, 30% 초과 조정할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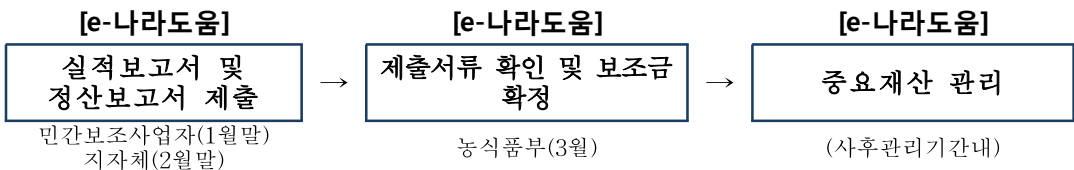
- 사업비 조정시에는 행정·지도·농협·농가대표·관계전문가 등으로 “과수발전협의회(사업비 단가 조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세부사업별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조정

4.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단계



- 사업주관기관은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2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 절차를 이행
- 사업주관기관은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을 요구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사업관리주체(시·도/시·군, 연합회)

- 사업추진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
- 사업시행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2월말 기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다음년도 3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연합회는 익년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접 제출
- 시·도지사(시장·군수) 및 연합회는 과실브랜드지원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 “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따른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 건물, 비닐 하우스골조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 부동산의 중물(건물내 기계설비)	준공일	7년간	
- 주요기계·장비·자재	구입일	5년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분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 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사업추진지침 및 사업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및 점검일정 : 시·도(시·군),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비 집행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관리현황 등
 - 사업실적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 사업점검 등 사후관리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와 합동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제 재》

사업관리주체(시·도/연합회)

- 시·도지사 및 연합회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사업평가》

- 연차평가 : 세부평가계획은 별도 문서로 시행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매년 3월에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예산 차등 지원 등 제도개선 등에 활용

《평가결과 환류》

- 우수조직 :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 추가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부진 및 미흡조직 : 제도개선, 예산 일부삭감, 예산지원 중단 등 패널티 부여
 - 대상자 확정 후 법인등록까지 1년 이상 경과된 경우 부진조직으로 분류
 - 사업의 지속 추진이 어렵거나, 브랜드 통합 독립법인 설립이 불투명할 경우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 강구

1. 2019년도 사업수요조사

- '19년 사업 예비신청서 : [별지 제4-1호 서식]의 첨부물 없이 제출('18.1월 말까지)
 - 제출방법 : 신청서 작성(브랜드 경영체)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2. 201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1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추진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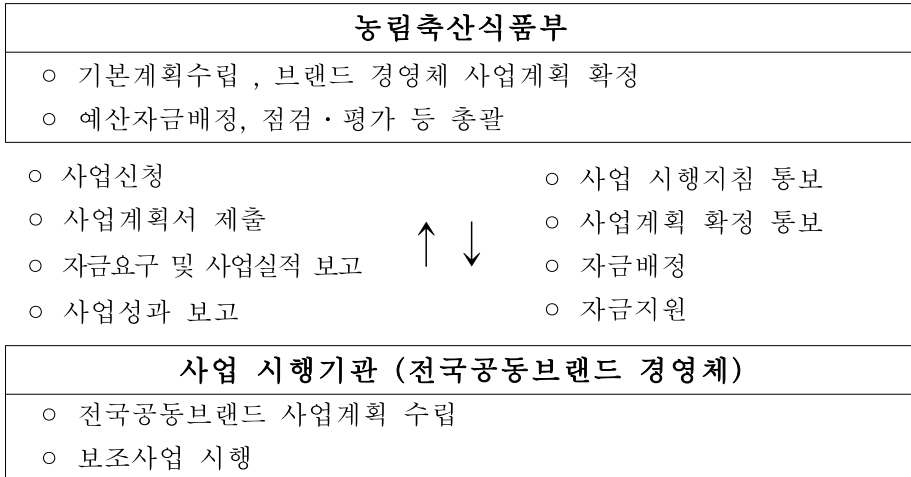
□ 전국공동브랜드사업

-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원예경영과)
- 사업주관 및 시행기관 : 한국과수농협연합회(생산·유통부)
- 기금위탁 관리기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추진 절차 및 체계
 - ① 전국공동브랜드 회원 가입 및 생산지원 신청(농가 → 회원조합)
 - ② 전국공동브랜드 과실 생산계획 및 생산지원 신청(회원조합 → 연합회)
 - ③ 전국공동브랜드 생산·유통 사업계획 및 보조금 교부신청(연합회 → 농식품부)
 - ④ 사업계획 확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농식품부 → 연합회)
 - ⑤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사업 시행(연합회)
 - ⑥ 중앙평가(농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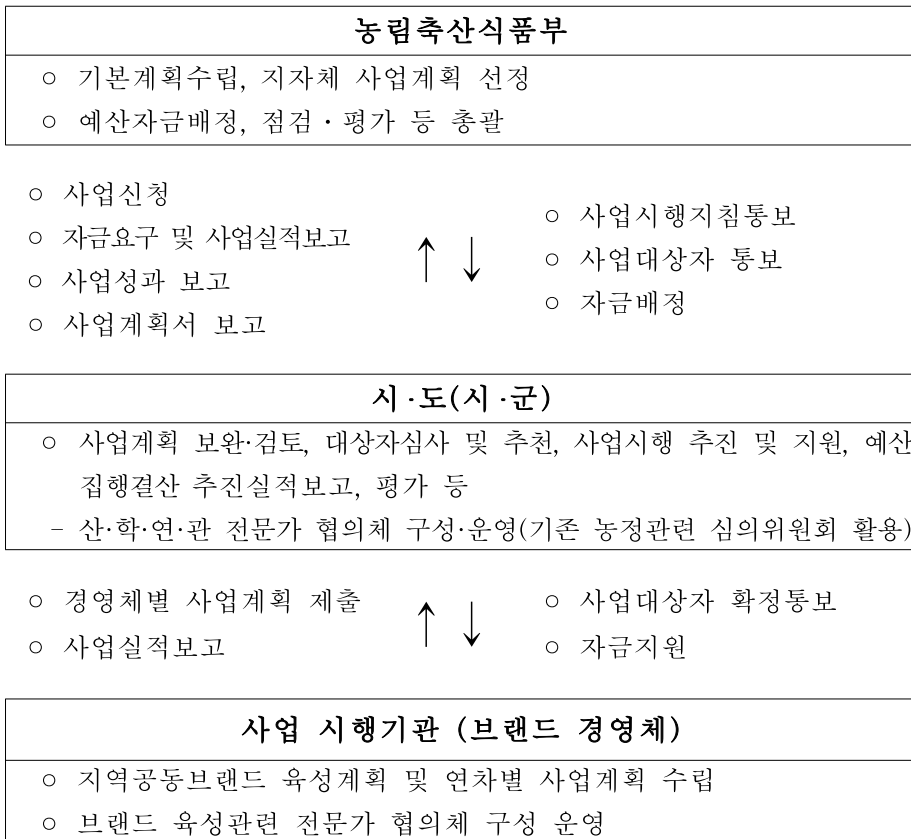
□ 지역공동브랜드사업

-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원예경영과)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
- 사업시행기관 : 브랜드경영체(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 시행주체)
- 기금위탁 관리기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추진 절차 및 체계
 - ① 지역공동브랜드 육성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서 제출(브랜드경영체 → 시·도지사)
 - ② 지역공동브랜드 육성계획 보완 및 대상자 심사 추천(시·도지사 → 농식품부)
 - ③ 지역공동브랜드 육성계획 심사평가 및 사업비 조정(농식품부)
 - ④ 예산 및 자금배정(농식품부 → 시·도지사 → 브랜드경영체)
 - ⑤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브랜드경영체)
 - ⑥ 중앙평가(농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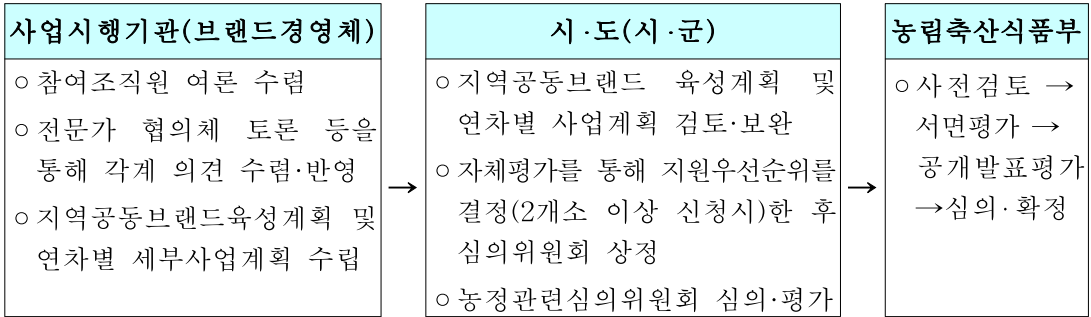
< 전국공동브랜드 사업시행 체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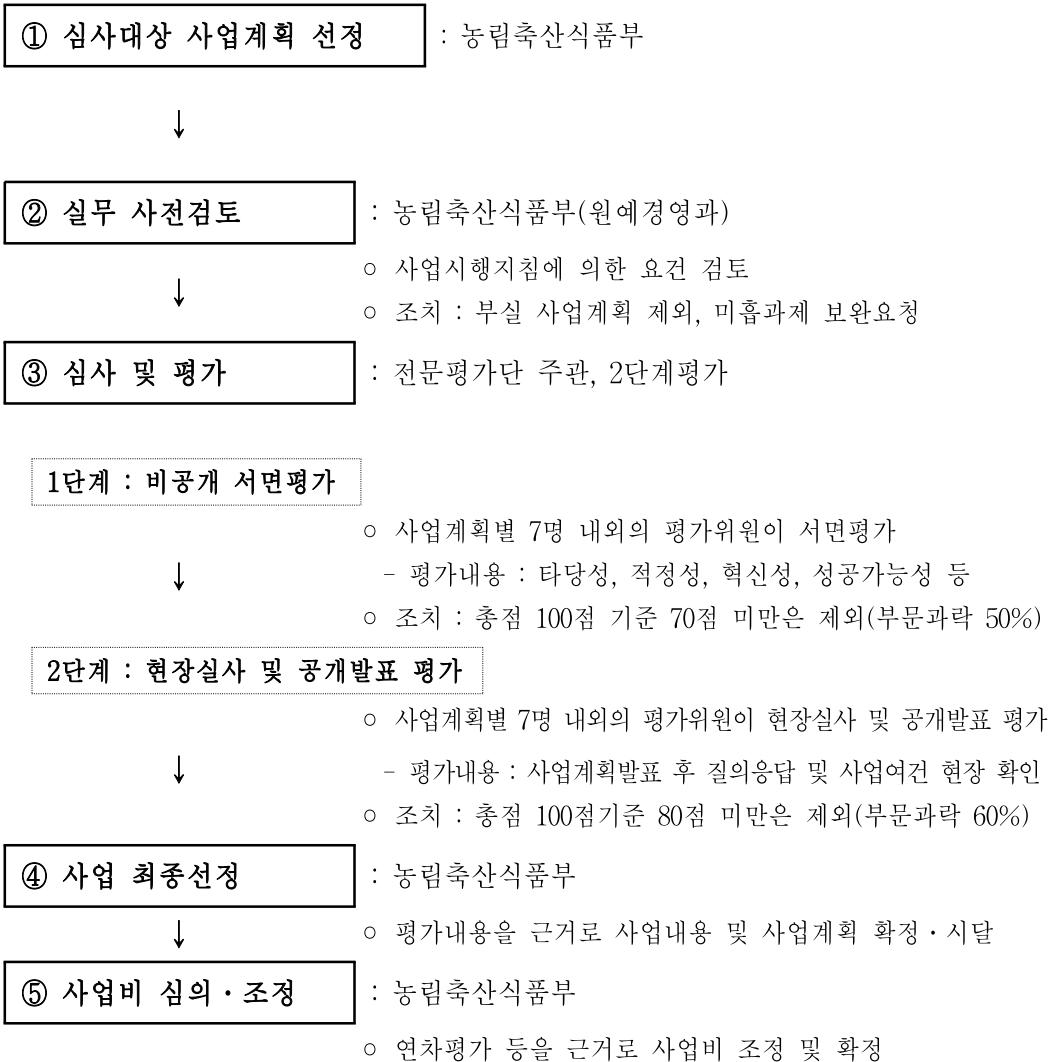
< 지역공동브랜드 사업시행 체계도 >



< 신규사업(지역공동브랜드) 신청절차 >



< 신규사업 선정평가절차 >



전국공동브랜드 사업비 세부내역(예시)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비	세 부 내 역
1. 브랜 드 품질관리	174,000	<input type="checkbox"/> 고품질 안전과실 재배·유통 지도 ○ 전문 강사료 : 48,000 - 200×20회×12월 ○ 전문위원 수당 : 102,000 - 500/인×17인(사과10,배5,감귤2)×12월 ○ 현장지도 실비 : 24,000 - 일 50/인×2인×20일/월×12월
	26,400	<input type="checkbox"/> 포탈사이트 운영 및 관리 ○ 인건비 : 12,000(1,000/인×12월) ○ 전용 회선비 : 2,400(200/월×12월) ○ 시스템 향상 유지보수 1,000 ○ 홈페이지 개편 10,000 ○ 도서구입 등 정보수집비 1,000
	35,800	<input type="checkbox"/> 품질조사 및 브랜드 인지도 조사 ○ 품질조사(잔류농약분석) : 25,800 - 분석비 25,000=100점×250/점 - 시료대 400=4천원/점×100점 - 시료운송비 400=4천원/점×100점 ○ 브랜드 인지도 조사 : 10,000
	60,000	<input type="checkbox"/> Work-shop 및 사업평가회 개최 ○ Work-shop 개최 : 30,000 - 10,000×3회(사과, 배, 감귤) ○ 사업평가회 개최 : 30,000 - 10,000×3회(사과, 배, 감귤)
	11,700	<input type="checkbox"/> 유통교육(회원조합 임직원) ○ 강사료 : 5,200 - 200×2인×13개지역×1회 ○ 제비용(교재대 등) : 6,500 - 500×13개지역×1회
	15,200	<input type="checkbox"/> 브랜드 컨설팅 : 15,200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비	세 부 내 역
2. 마 케 팅 운영지원	6,000	<input type="checkbox"/> 과일 선별 전문가 수당 ○ 선별 전문가 : 6,000(150/일×1인×40일)
	48,000	<input type="checkbox"/> 마케팅 활동비(시장조사 및 거래처 발굴 등) ○ 6인×10개소×200×4회 = 48,000
	20,000	<input type="checkbox"/> 바이어 사업설명회 ○ 5,000×4회 = 20,000 - 장소임대료, 식대, 안내장, 선물 등
	20,000	<input type="checkbox"/> 자문위원회 및 협의회비 ○ 5회×20명×200 = 20,000
	43,800	<input type="checkbox"/> 사무실 운영비 ○ 임차료 : 37,800 (90m ² ×35/m ² ×12월) ○ 통신, 소모품비 등 : 6,000(500×12월)
	155,100	<input type="checkbox"/> 상품개발(box 디자인 등) ○ 소포장 및 서브 브랜드 개발 등 : 50,000 ○ box 견본 : 1,000(100매×5건×2,000원/매) ○ 디자인 등록비(특허청) : 1,100 <input type="checkbox"/> 판매촉진 유통비 : 103,000
3. 브 랜 드 홍보지원	225,000	<input type="checkbox"/> 광고 및 홍보비 ○ 광고제작비 : 20,000 ○ 신문광고 : 10×5,000=50,000 ○ 지하철 홍보 : 4개노선×1개월×10,000=40,000 ○ 판촉 홍보물 제작 : 20천개×2,000=40,000 ○ 라디오 광고 : 50회×1,500/회=75,000
	97,000	<input type="checkbox"/> 소비촉진 행사 ○ 시연회 과일 - 10,000×6회=60,000 ○ 행사운영요원 - 6인×150/일×6회×5일= 27,000 ○ 기타경비 - 2,000×5회=10,000
	12,000	<input type="checkbox"/> 홍보물 제작 ○ 생활용품 등 : 12,000(3,000매×4,000/매)
합계	950백만원(기금 665, 자부담 285)	

<붙임 2>

지역공동브랜드 사업비 세부내역(예시)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비	세 부 내 역
① 브랜드 품질관리	12,000	<input type="checkbox"/> 기술지도 및 교육 : 12,000 ○ 지도위원수당 - 4인×200천원×10회=8,000 ○ 자문위원수당 - 4인×200천원×5회=4,000
	9,000	<input type="checkbox"/> 홈페이지 관리 및 브랜드유통정보화 : 9,000 ○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 2회×3,000천원=6,000 ○ 시스템 유지보수 : 100천원×10월=1,000 ○ 회선관리비(IDC) : 100천원×10월=1,000 ○ 장비구입 및 수리비 : 100천원×10월=1,000
	22,000	<input type="checkbox"/> 품질조사 : 22,000 ○ 산지 품질조사: 6,000 - 안전성 검사비 : 10점×200천원×3회=6,000 ○ 소비자 품질조사: 6,000 - 안전성 검사비 : 2개소×5점×200천원×3회=6,000 ○ 브랜드 인지도 설문조사 : 10,000 - 1회×10,000천원=10,000
	11,000	<input type="checkbox"/> 유통교육 : 11,000 ○ 임직원 및 약정농가 교육 : 11,000 - 강사료 : 5명×300천원×2회=3,000 - 제비용(교재인쇄비 등) : 2,000천원×4회=8,000
	30,000	<input type="checkbox"/> 브랜드 컨설팅 : 30,000 ○ 지역공동브랜드 컨설팅 : 30,000
	10,000	<input type="checkbox"/> 표준메뉴얼 제작 : 10,000 ○ 브랜드 표준 메뉴얼 제작 : 10,000
	10,000	<input type="checkbox"/> 브랜드 평가회 : 10,000 ○ 지역공동브랜드 평가회 : 10,000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비	세 부 내 역
② 마케팅 운영지원	10,000	<input type="checkbox"/> 바이어 사업설명회 : 10,000 ○ 2회×5,000천원=10,000 - 장소임대료, 식대, 안내장, 선물 등
	20,000	<input type="checkbox"/> 협의회비 : 20,000 ○ 10회×10명×200천원=20,000
	40,000	<input type="checkbox"/> 상품개발비 : 40,000 ○ 공동브랜드 상품개발 : 40,000
	6,000	<input type="checkbox"/>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 6,000 ○ 빔 프로젝트 1대×4,000천원=4,000 ○ 노트북 1대×2,000천원=2,000
③ 브랜드 홍보지원	170,000	<input type="checkbox"/> 광고·홍보비 : 170,000 ○ 신문, 잡지, 지하철, 전광판 광고 등 - 광고제작비 : 20,000 - 신문광고 : 5회×5,000천원=25,000 - 지하철 홍보 : 4개노선×2개월×10,000천원=80,000 - 전광판 홍보 : 5개소×1개월×5,000천원=25,000 - 관측 홍보물 제작 : 10천개×2,000원=20,000
	50,000	<input type="checkbox"/> 소비촉진 시식회 : 50,000 ○ 시연회 과일 - 5,000천원×2회=10,000 ○ 행사 도우미 - 10인×150천원×2회×12일=36,000 ○ 기타 경비 - 2,000천원×2회=4,000
계	400백만원(기금 120, 지방비 120, 자부담 160)	

<신청서 작성 및 제출요령>

1.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첨자료 포함)
 - 사업신청서 1부 및 사본 10부 (A4용지 크기)
 - 좌철 양면

2. 신청서 규격

- 작성 워드프로세서 (한글 2002)
 -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 180, 휴먼명조체 기본
 - 용지여백 : 위쪽12.7, 아래쪽12.7, 왼쪽20, 오른쪽20, 머리말 12.7, 꼬리말 12.7
- 신청서 분량 : 본문 30쪽 이내, 세부내역 등은 붙임으로 첨부

3. 신청서 작성요령

- 사업시행지침서의 신청서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작성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비율 산정시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 별도 목차를 작성
 -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

○○지역공동브랜드 육성계획(예시)

1. 과수산업 현황

※ 관내(신청사업 소속 시도, 광역시군 등)의 사업신청품목 전체 현황

사업신청품목 :

사업신청지역 : ○○군, ○○군, ○○군 등

일반현황

구 분	농 가 수 (호)	재배면적 (ha)	생 산 량 (톤)	소 득 액 (백만원)	생산비중 (%)		
					전국대비	시도대비	시군대비
2010(A)							
2014							
2015(B)							
A/B 등락율(%)							

과원규모별 현황

구 분	0.1ha미만	0.1~0.5	0.5~1.0	1.0~1.5	1.5~2.0	2.0~3.0	3.0ha이상	계
농 가 수								
비율(%)								100.0
면적(ha)								

* 브랜드 조직 과원별 규모는 ()로 내서

연령대별 농가현황

구 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농 가 수						
비 율(%)						100.0
면 적(ha)						

* 브랜드 조직 과원별 규모는 ()로 내서

□ 수령별 과수현황

구 분	미과수	성 과 수				계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년 이상	
면적(ha)						
비율(%)						100.0

□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품 종							기 타	계
재 배 면 적 (ha)	'10							
	'15							
	비율							100.0
생산량 (톤)	'10							
	'15							
	비율							100.0

□ 생산시설 현황(관내 해당품목 생산시설)

* 키 낮은 과 원	관수시설	묘목 생산		SS 방제기	방풍방조 시 설	농로개설	기 타
		묘 포 장 면 적	묘목생산 적				
ha (%)	ha (%)	ha	천주	대	ha	%	

* 키 낮은 과원은 예시이며, 해당 품목에 맞는 메뉴로 변경기재(예, Y자형과원 등)

□ 유통시설 현황(관내 해당품목 취급시설)

구 분	산 지 유통센터	저 온 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시설	간 이 집하장	개 량 저장고	경매식 집하장
개 소								
면적(m ²)								
'15처리량(톤)								
투자비 (백만원)								

사업 참여조직 현황

조 직 명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보유시설종류	비 고

비참여조직 현황(관내 해당품목 생산·유통시설 및 조직)

조 직 명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보유시설종류	미참여 사유

생산·출하여건

- 현재 지역내 과수산업의 현황, 문제점 등
 -
- 지역특성, 입지여건, 해당지역의 장단점, 소비시장 선호도, 인지도 등
 -
- -

2. 사업목표

가. 종합목표

- 목표연도의 공동브랜드 육성 청사진 제시
 - 사업완료시와 사업완료 후 5년, 10년 후 등의 장기비전 제시

항목별 목표

구 분	참여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고품질생산 (톤)	브랜드출하 비율(%)	총소득 (억원)	호당소득 (만원)
'17년							
()년							
(최종)년							
증감(%)							

- 생산, 유통분야 등의 구체적인 발전목표 제시
 - 참여 농가수, 총 재배면적 중 브랜드참여 면적 비율, 브랜드 출하비율 등

나. 추진전략

-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및 재배농가 경영안정, 구조조정 전략 등
- 생산·유통·가공·수출 연계 및 우수조직 참여전략 등
- 세부사업간 연계전략 등
-

다. 사업추진 로드맵

연차별 사업목표

- 최종연도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목표제시

※ 목표달성을 위한 최소 5년간의 연차별 목표와 추진계획, 추진일정 등을 제시

□ 연차별 추진계획, 투자계획, 추진일정 등(가급적 표로 작성)

- 사업별·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
-

라. 추정 손익계산서(작성 가능한 사업만 작성)

※ 거점산지유통센터는 필수적으로 작성

□ 목표연도(20 년)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액	산출근거	항 목	금액	산출근거	
계			계			
○ 매출액 - 매취판매액 - 선별포장수익 ○ 기타수익			○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 일반관리비 ○ 기타비용			

□ 20 년(사업완료 초년도)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액	산출근거	항 목	금액	산출근거	
계			계			
○ 매출액 - 매취판매액 - 선별포장수익 ○ 기타수익			○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 일반관리비 ○ 기타비용			

3. 사업시행주체 현황

가. 사업시행기관(브랜드 경영체) 현황

공동브랜드 경영체명 :

조직결성일			*지원시설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ha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산량	톤			
생산시설	키낮은과원	관수시설	묘포장면적	묘목 생산실적	SS방제기	방풍방조시설	농로개설		
	ha	ha	ha	천주	대	ha	%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		
	m ²	m ²	m ²	m ²	m ²	대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GAP, 친환경인증 (톤, %)	규격출하 (톤,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14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15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지원시설은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시설, 간이집하장 등 농림수산업 지원내역 기재

* 총괄사업조직 및 참여조직의 3년간의 경영실적자료(재무제표, 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제출

주요 사업내용·실적(사업별·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과원규모별 농가수(연령별), 재배면적, 품종별 현황, 신품종 재식현황 등

○ 고품질·안전과실 생산현황

- 생산기반시설, 설비 현황, 확보정도
- 조직(단체)주관 교육, 기술지도, 경영지도, 기술평준화 노력 등 실적(실적자료 첨부)
-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노력
- 친환경인증, 규격출하 등 실적(인증서, 확인서 등 첨부)
- IFP, IPM, INM, GAP, 생산이력추적제 등 실시여부, 참여농가현황
- * 관리지침, 시행서약서, 관련기관(도청, 농진청, 기술센터)확인서 등 첨부
- 친환경 과실 생산노력 및 실적, 화학비료, 농약 절감실적 등

○ 생산성향상, 경영안정 노력

- 농기계, 생산설비 공동구입 비율, 공동이용 현황 등
 - 농기계·설비의 공동이용계약서, 자체규약 등 첨부
- 인터넷 등을 통한 실시간 정보수집 및 농가간 공유현황, PC보급현황
- 과수재해보험 가입현황(※ 보험증권, 증서 등 가입증빙자료 첨부)

○ 유통·물류 개선노력

- 물류표준화, 표준규격출하 현황 및 실적
- 물류장비 보유 및 활용현황
 - 지게차, 표준파렛트, 선별기, 광폭차량, 냉동탑차, 컨베이어 등
- 소비자 기호 반영을 위한 포장규격 다양화 실적 등
- 수확후 관리 시스템 운영현황 및 실적

○ 판매·수출 현황 및 실적

- 공동선별, 공동계산, 공동출하 등 공동마케팅 현황 및 실적
- 출하주체 광역화 등 현황 및 실적
 - 참여농가·조직·간 상호이용 동의서, 규약, 협약, 정관, 계약서 등 첨부
- 출하·판매형태별 물량, 금액, 비율(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 수출 등)
- 대형유통업체, 백화점, 대량수요처(가공공장, 요식업소, 군납 등), 도매시장, 유사도매시장, 소매상 등 거래처 현황, 연도별 거래실적, 구매담당자(소속, 직급, 이름, 연락처) 등
 - ※ 거래처의 판매·납품계약서, 거래실적 증빙서류 등 첨부
- 브랜드 개발실적 및 마케팅, 홍보·관측활동 실적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물량, 금액 등)
 - ※ 수출실적 확인을 위한 수출실적증명원, 수출면장 등 첨부

○ 기타 사업현황 및 실적

- 전문경영인 및 전문인력 확보현황(이력서, 고용계약서 첨부)

나. 참여조직 현황

○ 참여조직(농업인) 선정원칙·기준 및 참여조건 등

-
-
-

1) 조직명 : ○○ 조합

조직결성일			지원시설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ha			
작목만수			조합원수		생산량	톤			
생산시설	*키낮은과원	관수시설	묘포장면적	묘목생산실적	SS방제기	방풍방조시설	농로개설		
	ha	ha	ha	천주	대	ha	%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사업실적	품목		출하 실적				GAP, 친환경인증 (톤, %)	규격출하 (톤,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14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15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주요 사업내용·실적 (특징적인 사항만 간략히 기재)

- 작성대상 내용은 브랜드 경영체와 동일
-
-
-

2) 조직명 : ○ ○ 법인

조직결성일			지원시설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ha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산량	톤		
생산시설	*키낮은과원	관수시설	묘포장면적	묘목생산실적	SS방제기	방풍방조시설	농로개설		
	ha	ha	ha	천주	대	ha	%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GAP 친화경영인증 (톤, %)	규격출하 (톤,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14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15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주요 사업내용 · 실적 (특징적인 사항만 간략히 기재)

- 작성대상내용은 브랜드 경영체와 동일
-
-
-
-

※ 참여조직(단체)은 모두 기재

4. 사업추진 종합계획

가.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 사업추진방향

-
-
-
-

□ 사업지원체계

- 기관·조직별 역할분담 계획
 - 사업주관기관(지자체), 브랜드경영체, 회원조합, 농업인간 역할분담
-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 산·학·연·관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실적 및 계획
 - ※ 전문가협의체 구성, 사전심의·조정 실적자료 첨부
- 사업비 집행단계의 현장 지도·점검계획
- 사업평가/피드백, 사후관리 계획
 - ※ 내부방침 등 자체평가지표, 피드백 계획자료 첨부
- 기타 지원계획 상세히 기록
-

나. 투융자계획

총 투융자계획

< 연차별 계획 >

구 분		'18	'19	'20	'21	계
보 조	국 고					
	지방비					
용 자						
자부담						
계						
브랜드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생산혁신자재지원						
기 타						

< 사업별 계획 >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용자	자담
합 계							
○ 전국공동브랜드 육성 - .							
○ 지역공동브랜드 육성 - .							

5. 생산·유통 혁신계획

가. 생산계획

연도별 생산계획

- 연도·품종·재배형태별, GAP, 친환경인증 등 생산계획을 세부적으로 기재
- 사업투자 전후 비교
-

생산혁신 효과

- 사업투자 전후 고품질·안전과실 생산계획 비교
- 생산규모화, 경영안정 효과 등
-

나. 산지유통개선 실적 및 계획

브랜드 경영체 광역화 등 육성방안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참여농가 확대, 브랜드 재배면적 확대, 브랜드 출하비율 확대방안 등
- 농가조직화 및 브랜드 운영에 관한 규약 제정
-

공동계산·공동출하 등 공동마케팅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산지유통 및 물류개선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GAP인증 친환경인증, 표준규격출하, 물류표준화 등
-

기존 산지유통시설 현황 및 활용계획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기존시설 및 기존업체 등과의 연계 계획 등

전문인력 확보 등

- 품질관리, 마케팅, 브랜드 홍보, 생산혁신 자재지원 등
-

기 타

-

다. 생산·판매·수출 계획

연도별 출하·판매계획

- 연도별 출하계획(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등)
- 연도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브랜드 마케팅전략 및 판촉활동 계획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브랜드 육성 및 관리계획

수출계획·전략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 및 향후 계획
- 수출전략
-

6. 평가계획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

7. 기대효과

-

-

8. '18년도 사업추진 계획

가. '18년도 예산 요구액(총괄)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합 계							
○							
-							
-							
.							
○							
-							
-							
.							
○							
-							
-							
.							

※ 예시사업 이외의 사업, 예시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근거를 첨부

나.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
(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부지(시설설치 사업포함시),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법인·대표자명의 예금평잔확인서, 출자관련 정관, 총회의사록 등 첨부)

다.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사업간 연계 계획 >

-
-
-

(1) 브랜드 품질관리 지원사업

- 현황 및 문제점
 -
- 세부사업내용
 -
- 추진방식 및 추진조직
 -
-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 사업량 및 지원단가
 -
- 소요예산(국고, 지방비, 용자, 자담 등) 조달계획
 -

(2) 마케팅 운영지원 사업

(3) 브랜드 홍보지원 사업

(4) 생산혁신 자재지원 사업

※ (2), (3), (4) 사업도 (1)번 사업과 같은 내용 및 순서로 작성

<사업신청시 첨부할 참고자료 목록, 해당 실적이 있을 경우>

1. 경영실적, 자금확보 등

- 1-1. 브랜드경영체의 최근 3년간 경영실적자료(재무제표 등)
- 1-2. 자부담확보 증빙 : 예금평잔확인서(법인, 대표자명의), 출자관련 정관, 의사록

2. 각종 인증서, 증명서

- 2-1. 브랜드경영체 회원농가의 과수 재해보험 가입율(품목별 해당 시·군 과수 재해보험 평균가입율과 비교하되 지역 통계자료가 없을 시는 전국 가입률 기준)
- 2-2. 브랜드경영체 수출실적 증빙자료(수출실적증명원, 수출면장 등)

3. 계약서, 협약, 규약 등

- 3-1. 사업참여 조직·농가·유통시설 등의 사업참여동의서, 브랜드운영규약, 협약, 정관, 계약서 및 사업참여농가 명단 등
- 3-2. 공동출하, 공동계산, 공동마케팅 등의 자체규약
- 3-3. 지역·조직간 연합판매 관련 협약서, 판매실적 등 증빙자료
- 3-4. 농기계·설비 등 공동이용 계약서 또는 자체규약
- 3-5. IFP, IPM, INM, GAP 등 관리지침, 시행서약서, 확인서(도청, 농진청, 기술센터 등 확인)
- 3-6. 조직(단체)의 친환경농산물 생산(관리)지침 및 조직(단체)의 확인서
- 3-7.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 기타 거래처의 납품계약서, 거래실적 증명서류 등

4. 사업 준비상황 자료

- 4-1. 브랜드마케팅(개발 및 판매), 홍보활동, 판촉이벤트 등의 실적자료
- 4-2. 조직(단체) 주관의 교육, 기술지도·경영지도 등의 실적확인을 위한 교육자료, 실시결과 등
- 4-3. 전문경영인, 실무전문인력(품질관리, 마케팅 등)의 이력서, 고용계약서 등
- 4-4. 지자체의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문서, 방침, 의회의결결과 등)
- 4-5. 지자체의 현장지도점검, 교육 등 자체지원 실적자료(방침, 보고서 등)
- 4-6. 지자체의 전문가협의체 구성을 통한 사전 심사·조정 실적자료
- 4-7. 지자체의 사업추진 자체 평가지표, 피드백계획 등 자료(내부방침 등)
- 4-8. 기타 매출원가 산출에 필요한 비용산출 자료

과실브랜드육성사업 심사·평가기준

평가항목		등급					등급심사기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E		
1.사업계획의 적정성 (25점)	1-1.사업목표의 명확성	5	4	3	2	1	① 지역농업 혁신 차원에서 과실 경쟁력제고의 목표가 적정한가? ② 해당품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명확한 목표가 있는가?	
	1-2.추진전략의 적정성	5	4	3	2	1	① 불합리한 투자계획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전체적인 추진전략은 적정한가? ② 브랜드 경영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바탕으로 생산·유통 등을 연계한 추진전략을 갖고 있는가?	
	1-3.자금투자계획 적정성	5	4	3	2	1	① 각 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은 적정하며, 지원 단가, 산출근기 등이 적절히 계산되었는가? ② 자금활용 방안 등 자부담 계획은 적정한가?	
	1-4.세부사업간 연계성	5	4	3	2	1	① 세부 사업간 목표 달성을 위한 연계성은 있는가? ② 기존의 자원 및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1-5.심사평가/피드백시스템	5	4	3	2	1	① 사업계획 사전심사여부 및 전문가의 지속적인 컨설팅계획이 있는가? ② 사업성과를 평가할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를 피드백 할 시스템이 있는가?	
2.브랜드경영체의 적합성 (25점)	2-1.사업추진의지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5	4	3	2	1	① 브랜드 경영체의 조직 및 구성인력은 적정하며, 사업추진 의지는 확고한가? ②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및 예산(지방비) 편성이 실현 가능한가?	
	2-2.전문인력 확보	5	4	3	2	1	① 브랜드 경영체의 전문경영인 확보여부 및 자질, 경영능력은 우수한가? ② 품질관리, 마케팅 등 전문인력은 확보 되었는지 없는 경우 앞으로 확보 계획은 있는가?	
	2-3.브랜드경영체 참여비율	5	4	3	2	1	① 당해 지역, 당해 품목의 재배면적이 브랜드 경영체에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 배점 - 50%이상(7점), 40%이상(5점), 30%이상(3점), 20%이상인 경우(2점)	
	2-4.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	5	4	3	2	1	① 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작목반, 농협 등 관계자에 대한 교육계획은 적정한가? ② 경영체가 브랜드와 관련하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있는가?	
	2-5.성공가능성	5	4	3	2	1	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브랜드경영체의 성공가능성은 얼마나 높은가? (평가위원의 주관적 판단)	

평가항목		등급					등급심사기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E			
3. 생산혁신 실적 및 계획 (20점)	3-1. 고품질 생산	5	4	3	2	1	①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정도는 어떠하며 향후 확보계획은 적정한가? ② 생산기술 향상·평준화 등을 위한 기술지도, 교육 등의 실적 및 노력이 있는가?		
	3-2. 안전과 실 생산	5	4	3	2	1	①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도입실적 및 노력이 있는가? (GAP, IEP, IPM, INM 도입 등) ② 친환경과 실 생산을 위한 화학비료, 농약 등 절감 실적 및 계획이 있는가?		
	3-3. 생산성 향상	5	4	3	2	1	① 사업 참여농가(조직)의 재배면적은 어느 정도 규모화 되어있으며, 향후 규모화 계획은 어떠한가? ② 기계화, 과학화 노력 및 생산비절감을 위한 실적·계획이 있는가?		
	3-4. 농업인의 경영안정	5	4	3	2	1	① 브랜드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실적 및 가입계획은 있는가? (재해보험 비대상 품목 제외) ② 분산출하, 노동력 분산, 생산성 향상, 가동률 제고, 위험분산 등을 감안하여 재배품종은 적절하게 선택·구성되었는가?		
4. 유통혁신 실적 및 계획 (30점)	4-1. 유통시설 활용	5	4	3	2	1	① 거점 APC 등 기존 투자시설의 활용 및 연계 사용계획은 적정한가? ② 계획 중인 산지유통시설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적정한가?		
	4-2. 물류개선	5	4	3	2	1	① 물류표준화, 물류기계화, 파렛트 출하 등 산지유통 개선실적과 계획은 있는가? ② 표준규격출하를 위한 등급규격, 포장규격, 표시사항 등의 이행 실적과 그 상황은 어떠한가? ③ 소비자 기호변영을 위한 포장규격 다양화(소포장, 개별포장 등) 실적 및 노력이 있는가?		
	4-3. 수확후 관리	5	4	3	2	1	① 예냉·선별·저장·수송 등 고품질유지를 위한 수확후 관리 시스템의 보유 및 부분별 연계성은 적정한가? ② 수확후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은 적정한가?		
	4-4. 판매계획	5	4	3	2	1	① 브랜드 명칭으로 대형 유통업체(대량수요처)와 직거래, 판촉활동 등 구체적인 판매실적 및 계획이 있는가? ② 지속적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영향력 있는 거래처 유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판매계획의 실현가능성은 있는가?		
	4-5. 출하형태	5	4	3	2	1	① 브랜드 마케팅에 적절한 생산규모의 보유여부 및 공동출하·공동계산 실적 또는 목표가 있는가? ②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자체 규약은 있는가?		
	4-6. 운영주체 사업실적	5						① 전년도 매출액 / 30억 × 5점(최대 5점)	
	합 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 가감점부여 :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 각각에 대하여 가감점을 줄 수 있음 ① 연차평가 결과 반영(A등급 : 2점 B : 1점 C : 0점 D : -1점 E : -2점) * 평가직전 최근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점 반영 ② 공동계산 실적이 있는 경우 : 전체 매출규모의 10% 이상 (2점), 5% 이상(1점) ③ 자조금참여(납부실적이 있는 경우)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 (1점) ④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경우(3점) ⑤ 소비자 대형유통업체와 브랜드를 함께 표시해 판매하는 출하납품 약정을 체결한 경우(2점) * 가점은 항목별 내역을 최종확인하여 평가기관에서 일괄적용							가 점		
							총 점 (기본점수+가점)		

< 평가자의 종합의견 >

평가 사항	검 토 의 견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브랜드경영체의 적합성	
3. 생산혁신 실적 및 계획	
4. 유통혁신 실적 및 계획	
5. 종합 의견	사업계획 선정여부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정
	기타사항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른 결과조치

- 1차 :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적용
 - 전체 평가항목 : 평균 7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공개발표평가는 80점)
 - ※ 평균점수 산출 : 평가위원의 합계점수를 기준으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2차 : 1차 선정대상자를 평점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150%범위 내에서 공개발표 평가대상 과제로 선정

세부사업명	발작물산업육성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자치단체)		예산 (백만원)	10,000				
사업목적	○ 발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통합마케팅조직과 계열화를 통해 시장교섭력 확보 및 지역단위의 자율적 수급조절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 역량 강화, 생산비 절감, 품질 관리, 소득증대 등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시설, 장비 등 맞춤형 육성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및 제8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주관기관 요건 : 원예산업종합계획이 수립·승인된 지자체(기준에 승인된 산지 유통종합계획, 과수산업발전계획은 기한만료시까지 효력 인정) - 채소류 및 식량작물 주산지 시·군(과수는 해당 품목 재배면적 100ha 이상인 시·군) - 특화수준 및 준 주산지에 해당되는 시·군 ○ 사업대상자 요건 - 발작물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추고 통합마케팅조직에 참여하는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공동경영체 참여농가의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 시·군구 해당 품목 전체 재배면적의 10% 이상이어야 함) ※ 기타 상세요건은 사업시행지침 참고							
지원한도	○ 공동경영체별 10억원 이내, 시·군별 20억원 이내(1년차 30%, 2년차 70%)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40	용자	-	자부담	1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4,500	16,500	20,000	25,000			
	국 고	2,250	8,250	10,000	12,500			
	지방비	1,800	6,600	8,000	10,000			
	자부담	450	1,650	2,000	2,500			
담당 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시·도 및 시·군)		유통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등(지체에 따름)		사무관 이행은 사무분장 규정에 의함		044-201-2219 -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0월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 발작물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추고 통합마케팅조직에 참여하는 조직(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에게 생산자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공정육묘장, 농기계류, 시설·장비 및 역량강화 등 맞춤형 지원

1. 사업대상자

- 사업 주관기관 : 지자체(시·군·구, 시·도)
 - 발작물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자체 단위 계획수립 및 해당 품목 생산자단체(개별 경영체)를 시군단위 공동경영체 방식으로 구성
-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 : 발작물 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추고 통합마케팅 조직에 참여하는 조직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 공동경영체 : 발농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산지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 단위로 생산단계(품종 및 재배방식 통일, 농기계 공동이용, 공동출하) 및 공동상품화(공동선별, 포장, 가공, 저장 등) 등 공동경영기반을 갖추고, 통합마케팅조직에 참여하는 조직
 - * 통합마케팅조직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된 조직(품목광역조직을 포함하며, 참여조직은 동일 품목으로 복수 통합조직 참여 불가)
 - * 관련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7조 및 제8조,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2.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 주관기관 요건]

- 지자체 또는 품목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 수립, 선정된 계획에 포함된 지자체 (기존 산지유통종합계획 및 과수발전계획은 기한 만료시까지 유예)
 - 선정된 원예산업종합계획에는 육성 품목과 계획 등이 반드시 포함(식량작물은 지역 농발계획에 포함)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된 원예농산물(채소류) 및 식량작물 주산지 시·군
 - 원예농산물(과수류)은 과수산업발전계획(농식품부 승인)에 포함된 시·군 중 당해 주 품목의 재배면적이 100ha 이상인 시·군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2014년 6월 30일 기준)>

품목	단지 지정 기준		
	범 위	면 적	출하량(생산량)
봄배추	시·군·구	150ha 이상	12,840t 이상
여름배추	시·군·구	450ha 이상	15,850t 이상
가을배추	시·군·구	300ha 이상	30,860t 이상
겨울배추	시·군·구	500ha 이상	32,350t 이상
봄 무	시·군·구	70ha 이상	6,020t 이상
여름무	시·군·구	250ha 이상	7,060t 이상
가을무	시·군·구	150ha 이상	11,110t 이상
겨울무	시·군·구	1,500ha 이상	92,350t 이상
고 추	시·군·구	700ha 이상	1,620t 이상
마 늘	시·군·구	1,000ha 이상	12,530t 이상
양 파	시·군·구	800ha 이상	52,600t 이상
대 파	시·군·구	250ha 이상	6,740t 이상
생 강	시·군·구	100ha 이상	1,280t 이상
당 근	시·군·구	100ha 이상	3,600t 이상
참 깨	시·군·구	250ha 이상	100t 이상
땅 콩	시·군·구	100ha 이상	240t 이상
버섯류	시·군·구	(연면적) 30ha 이상	-
특작류	시·군·구	50ha 이상	-

<식량작물 주산지 지정 기준(2015년 10월 14일 기준)>

품 목	주 산 지 정 기 준			
	범 위	면 적	출하량(생산량)	
맥류	밀	시·군·구	200ha 이상	656톤 이상
	쌀보리	시·군·구	500ha 이상	1,245톤 이상
	겉보리	시·군·구	200ha 이상	494톤 이상
	맥주보리	시·군·구	300ha 이상	825톤 이상
두류	콩	시·군·구	1,000ha 이상	1,680톤 이상
	팥	시·군·구	50ha 이상	54톤 이상
	녹두	시·군·구	20ha 이상	19톤 이상
서류	고구마	시·군·구	500ha 이상	7,550톤 이상
	감자	시·군·구	500ha 이상	12,605톤 이상
잡곡류	수수	시·군·구	50ha 이상	76톤 이상
	옥수수	시·군·구	100ha 이상	495톤 이상
	기장	시·군·구	50ha 이상	60톤 이상
	메밀	시·군·구	50ha 이상	45톤 이상
	조	시·군·구	50ha 이상	60톤 이상
잡곡류 통합	귀리	시·군·구	100ha 이상	300톤 이상
잡곡류 통합	시·군·구	300ha 이상	273톤 이상	

○ 특화수준 및 준 주산지에 해당되는 시·군

- 특화수준 : 재배면적이 50ha 이상이며, 신청품목의 특화계수가 전국 대비 1 이상이거나 관할 시·도 대비 2 이상인 시·군(산출 면적은 전년도 기준)
- * 통계과목이 불가능할 경우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의 2/3 이상이 찬성할 시 선정 가능

□ 전국 대비 △△군 양과 특화계수

$$\{(\Delta\Delta\text{군 양과 생산액})\div(\Delta\Delta\text{군 농업 생산액})\}/\{(\text{전국 양과 생산액})\div(\text{전국 농업 생산액})\}$$

□ ○○도 대비 △△군 양과 특화계수

$$\{(\Delta\Delta\text{군 양과 생산액})\div(\Delta\Delta\text{군 농업 생산액})\}/\{(\text{○○도 양과 생산액})\div(\text{○○도 농업 생산액})\}$$

- * 공식 통계가 없을 경우, 품목 생산액 대신 최근 농업경영체 DB에 등록된 재배면적 적용, 농업생산액 대신 최근 통계자료의 경지면적을 적용

- 준 주산지 : 일정기준에 해당되어 해당품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주산지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시·군(사업기간 종료 이전에 주산지 요건을 갖추도록 생산규모 확대조건)
- * 전년도 재배면적이 주산지 기준의 80%이상이며 농가 조직화 수준, 지원대상 품목에 대한 '시·군 단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지역 농발계획')' 상 원예, 식량작물에 대한 계획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대상 조직 요건]

-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등)
 - 사업신청 전년도 말 기준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고, 법인 설립 2년 이상인 조직
 - 생산농가와 단순 계약재배만 실시하고 영농지도·감독, 공동생산 및 상품화 등을 지원하지 않고, 마케팅활동만 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단, 제35조 및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통합마케팅조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단, 사업 품목의 지역농산물 생산량에 대한 취급량이 50% 이상 또는 조직화 취급액이 40억원 이상인 경우 시군 내 통합마케팅조직이 없더라도 개별조직 단위로 신청 가능
 - * 밭식량작물은 통합마케팅조직과의 계열화는 필수조건에서 제외
- 공동경영체 해당품목 사업규모
 - 공동경영체 참여농가의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 시·군·구 해당 품목 전체 재배면적의 10% 이상을 차지할 것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품목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고시된 품목
 - * 과수는 해당 지역의 과수산업발전계획에 포함된 지원 대상 품목
-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특화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역량강화 : 생산농가 조직화, 생산성 향상 및 운영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비용(최소 총 사업비의 5~10%이상)
 - 교육 : 농가조직화, 재배·생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 인증 취득, 선진지 견학비용 등
 - * GAP 인증 취득에 필요한 농가교육만 지원(인증에 필요한 분석비는 '주산지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지원사업'으로 지원가능)
 - 컨설팅(자문포함) : 공동경영체 운영체계 수립(공동경영체 운영위원회 설치, 제도·규약 마련, 사업전략 등),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품종선택, 재배방법,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경영비 절감 등), 시설설치(인허가, 설계방향, 시설 도입·배치 등), 경영(사업여건에 따른 적정 취급량 및 운영활성화 방안 등) 등
 - * 컨설팅(자문)은 가급적 중앙자문단을 활용하고, 단순 경영컨설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경영체 업무지원, 성과평가자료 관리·작성 등)
 - * 공동경영체 사전 진단결과 초기·정착·심화단계에 맞는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을 1년차에 반드시 포함
- 생산비 절감 :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과종기, 정식기, 방제기, 수확기 등)
 - *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 여부는 사업자 선정 현장점검 및 세부사업계획 검토시 판단하되 과잉 보유 장비 추가 신청은 불가
 - *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는 농기계임대사업 주체를 통해서 지원
 - * 기계류 구매 시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품질관리

- ①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공정육묘장, 하역·상차 등을 위한 비가림 시설, 공동선별 및 포장시설, GAP인증 시설 등의 설치비
- ② 상품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계식 건조시설, 공동선별시설 및 포장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가공시설, 6차 산업과 연계된 시설·장비 등
 - *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장비 여부는 사업자 선정 현장점검 및 세부사업계획 검토시 판단하되 과잉 보유 장비 추가 신청은 불가
 - * 기존 보유 시설에 대한 증축, 보완 등 개보수를 우선 지원하고, 신규시설 설치는 가급적 지양
 - * 감리비 및 토목공사(포장공사)비는 사용 가능하나, 설계비, 부지매입비 및 부지기반정비 비용은 사용 불가
 - * 사업예정부지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근저당 설정 등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됨

○ 주산지협의체 운영(예산에 따른 역할 및 구성 계획 반영)

- 지자체 주도로 생산자 조직, 통합마케팅 조직, aT, 한국농어촌공사, KREI, 전문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의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금의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업량 및 지원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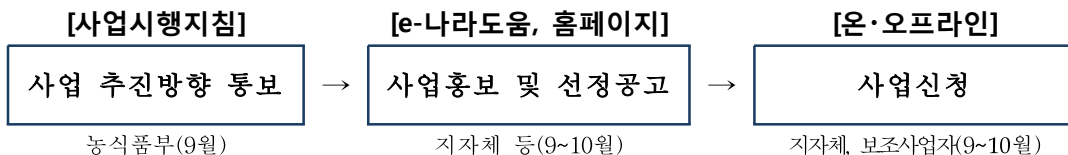
- 사업량 : 20개소 내외(사업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개소수 조정 가능)
 - * 1년차 사업 종료 전 지원 대상 경영체에 대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2년차 사업비 조정 가능, 1년차 평가 결과 조직화 등 사업 추진이 부진할 경우 2년차 사업비 지원 유예 (1회) 또는 중단
 - * 전년도 연차평가 결과 2년차 사업비가 지원 유예된 공동경영체에 대해서도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추진이 부진할 경우 지원 중단
- 지원형태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공동경영체별 10억원 이내, 시군별 20억원 이내(1년차 30%, 2년차 70%)

- * 1개 시군에서 공동경영체별 해당 품목 조직화규모, 재배면적, 취급량, 통합마케팅조직 출하실적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1개 품목에 대해 2개 이상의 공동경영체가 참여할 경우 20억원 이내에서 공동경영체별 사업비 배분 가능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aT')는 생산자 조직화, 유통 계열화 등을 위해 사업신청 희망 지역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실시
- 시·군은 지자체장 주관으로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생산자 조직, 농업기술센터, aT,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를 구성
- 시·군은 주산지협의체에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신청서를 검토·심의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시·군의 품목·조직단위 사업계획에 대한 우선순위를 심의·결정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정책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사업계획서는 농식품부 선정 심사에서 제외
- aT는 지자체, 생산자 조직, 마케팅 조직,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협의회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기본계획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방향]

- (1)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장은 반드시 「**윈예산업종합계획**」을 수립(식량작물은 제외하고, 기존 산지유통 종합계획 및 과수발전계획은 기한만료시까지 유예)
- *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과 연계하여 계획 수립
- (2) **주산지협의체 구성**
- 구성 :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되 신청 품목의 생산, 기반조성, 상품화, 유통, 마케팅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주체로 구성

- 협의체의 역할
 - ① 지자체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 수립 방향 설정
 - ② 사업계획 검토, 자문,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
 - ③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에 참여
 - ④ 사업 추진단계 및 종료 후 평가 참여
 - ⑤ 기타 사업추진 자문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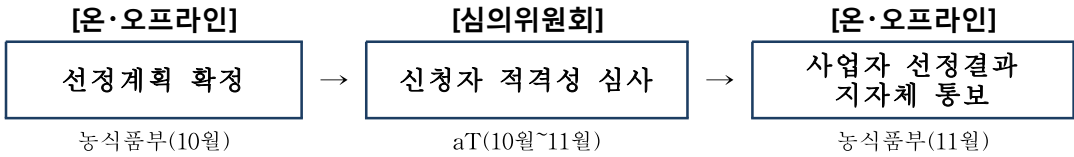
(3) 계획수립 방향

- 신청품목의 시·군(또는 시·도) 특화도가 높고 발전 가능한 품목 선정
- 지역 단위, 발작물 공동경영체 단위로 발전 목표 설정
- 목표달성을 위한 생산(농가)-상품화(공동경영체)-유통(통합마케팅조직)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모델 제시
- 개별조직 단위 분산지원을 지양하고 지역 전략품목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농가-공동경영체-통합마케팅조직이 계열화된 주체를 중심으로 지원계획 수립
- 발작물 농가조직화 및 생산역량 혁신(생산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등)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세부사업계획 수립

(4)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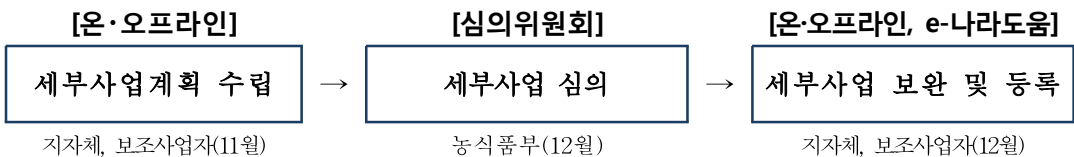
- 기초현황 분석
 - 시·군 내 발작물 생산·유통 현황, 신청품목의 생산(생산구조, 경지정리 등) 및 유통(통합마케팅 주체, 유통경로별 비중 등) 여건 분석
 - 신청품목에 대한 사업주체 현황 및 여건분석(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기타 생산자조직 등)
 - 신청품목 관련 생산·유통 시설 현황 및 활용도 분석(보유현황, 가동현황, 생산량 대비 과부족 등)
 - 관련 상위계획(원예산업종합계획 및 농발계획) 분석(상위계획 중 해당 품목 관련 내용, 향후 연계 방향)
- 중장기 비전과 목표
 - SWOT분석(전략과제 제시)
 - 신청 품목에 대한 생산·유통 중장기 비전과 육성목표, 핵심 전략과 로드맵
 -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중장기 비전과 목표, 사업 추진 전략과 로드맵
- 부문별 세부 사업계획
 - 추진 방향 및 체계
 - 농가조직화, 신상품 개발, 품질향상, 노동력 절감 등 부문별 세부 사업계획 (사업내용, 예산집행 계획)
 - 계획에 따른 부문별 성과 목표
- 농정 거버넌스 구축 계획
 - 신청 품목에 대한 주산지 협의체 운영계획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식품부는 세부 평가 기준을 포함한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aT에 통보
- aT는 농식품부의 선정계획에 따라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및 서면·발표·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현장평가 시에는 발작물 공동경영체의 생산자 조직화 등 사업여건 뿐만 아니라 시·군, 통합마케팅조직과의 협력체계 등을 파악하고, 주산지협의체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농식품부는 aT로부터 제출된 선정 심사 평가 결과를 기초로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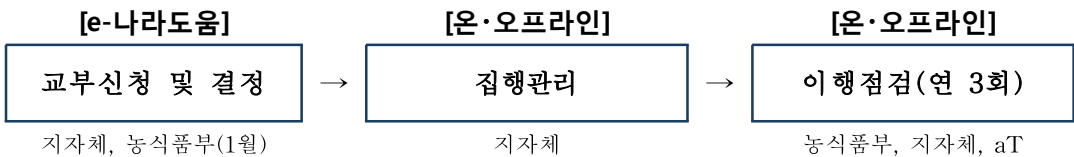
3. 세부계획 수립



- 해당 시·군은 세부사업추진 계획을 발작물공동경영체와 협의 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
 - 농식품부의 계획 검토에 따른 부대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동경영체와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세부사업추진 계획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을 포함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농식품부는 시·도로부터 제출된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내·외부 전문가를 통하여 검토·승인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지
 - 세부사업추진 계획 검토 결과 보완 필요시에는 계획 승인 시 부대의견을 포함

- 시·군(시·도)는 승인 받은 세부사업계획서 임의 변경 금지
 - 심사 평가 이후 지원 대상 경영체, 품목 등 주요 사항에 대한 변경 시 반드시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야 함
 - 농식품부 승인 없이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연차 평가 시 패널티 부여 및 차년도 사업비 삭감 등의 조치
- 시·군은 승인 받은 세부사업계획의 사업내역 등을 변경할 시 변경되는 사업비의 합계가 총 사업비의 30% 이하일 경우에는 시·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승인하고,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4. 교부결정 및 집행단계



[사업비 교부 및 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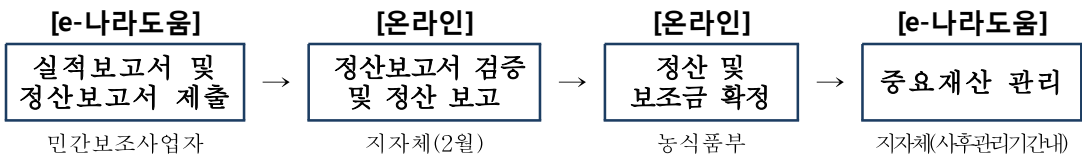
- 농식품부는 지자체별 당해연도 사업비 배정액을 확정하여 지자체에 통보
- 당해연도 배정액 확정 후 시·도는 교부받을 금액을 e나라도움에 입력하고 농식품부에 교부 요구
- 농식품부는 시·도(시·군)의 예산 교부 요구가 있을 시 관련규정에 의거 배정
-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군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집행
 - 시·군은 공동경영체로부터 자부담액을 우선 납부 받아 예산으로 편성하고, 보조금 교부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이행점검]

- 농식품부는 시·도 및 aT와 합동으로 연 3회 이상 사업추진 현황 점검
- aT는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이행점검 계획을 농식품부 협의·수립하여 지자체에 공지
 - 사업비 집행 실적, 사업별 추진 상황, 협의체 운영 현황, 현장 애로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시·군(또는 시·도)에 요구

- * 사업 성과측정을 위한 발작물공동경영체 운영 실태 조사·분석
- 현황 점검 결과를 토대로 공동경영체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설개선·경영관리·농가조직화 등 분야별 컨설팅 지원
- * 분야별 외부전문가(자문단) 구성하여 운영
- 시·도는 이행점검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는 공동경영체 사업추진 실적을 시·군이 반기별 1회 이상 자체 점검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시·군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 광역주산지협의체 단위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문제점을 개선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실적보고 및 정산]

- 사업자는 사업 완료, 회계연도 종료 등으로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를 해당 시·군에 제출
 - 보조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
- 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하고 시·군에 등기서류 등 제출
 -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따라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중요재산의 현황을 e나라도움에 등록,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관리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면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중요재산을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자체는 사업종료 된 공동경영체의 사후관리 5년간 경영성과(운영실적) 파악에 협조 및 농식품부에 보고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자체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의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지자체는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제재 및 처벌내용》

- 지원대상자가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지원의 제한을 받음
- 농식품부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 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한 공동경영체 및 사업에 대한 지방비 확보를 하지 못한 지자체는 해당 보조사업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시·군은 1차년도 10월말까지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aT에 제출
- aT는 세부 평가 기준을 포함한 연차평가 계획을 농식품부와 협의·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서면 및 현장평가 실시

2. 평가

- 농식품부는 연차평가 결과가 우수한 조직에 대해서는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수급안정사업, 마케팅지원사업,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발식량작물 수매자금 용자지원, GAP 기반조성 지원 등 관련사업 지원 시 우대
 - 연차평가 결과 2차년도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시·군은 예산 지원 중단·유예
 - 연차평가 결과 우수조직 및 지자체에 해외연수 기회 등 인센티브 제공

3. 기타

- aT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정책협의회 주관·운영
 - * 기본계획 수립, 사업대상자 선정 및 행정경비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다양한 이슈를 협의하고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한 관계자 의견 수렴, 문제에 따른 개선 방안 도출

□ 신청조직 세부 현황

참여조직	개 (조직체명: 조직체1., 조직체2, 조직체3 등)												
신청품목	신청품목 매출액									백만원			
종업원수	자본금									백만원			
조합원수	명			출자자수			명			농업인 출자지분 %			
품목 사업실적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생산액(백만원)			
	계	매귀	수탁	계	매귀	수탁	계	매귀	수탁	계	매귀	수탁	
'15년													
'16년													
'17년 (현재)													
'17년 조직화 취급실적	계(백만원)			계약재배매귀매입액(백만원)			공동계산수탁매출액(백만원)						
'17년 통합마케팅 출하실적	총 취급액(백만원)			통합조직 출하액(백만원)			참여조직 출하율(%)						
출하비율 (%)	통합마케팅조직			도매시장			유통업체			가공업체			기타
생산시설	○○시설			○○시설			○○시설			○○기			○○기
	㎡			㎡			천주			식			대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종합처리장 등
	㎡			㎡			㎡			㎡			㎡

□ 신청 시·군 세부 현황

품목 생산현황	주산지협의 체 운영 여부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조례 제정 여부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농가수	호		생산자단체 수	조직	
	주산지 해당여부		전국 특화계수		시도 특화계수	
	전국 재배면적	ha	시·군 재배면적	ha	전국대비 점유율	%
	전국 생산량	톤	시·군 생산량	톤	전국대비 점유율	%
	전국 생산액	백만원	시·군 생산액	백만원	전국대비 점유율	%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계획서 서식은 지역별·품목별 특성에 따라 변경·수정 작성 가능

「20〇〇년 〇〇시(군)」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계획서

제출일 :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구 분	성 명	소속 및 부서	연락처	이메일
지자체 행정				
사업시행조직				
관련기관				

목 차

I. 발작물 생산·유통 현황	00
1. 시·군 농산업 현황	00
2. 시·군 품목 생산 현황	00
3. 시·군 품목 생산·유통조직 및 시설 현황	00
4. 신청품목 관련 주요 농정 현황	00
5.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분석	00
II. 사업시행주체 현황	00
1. 공동경영체 현황	00
2. 공동경영체 육성 비전과 목표	00
III. 세부 사업 추진 계획	00
1. 추진방향 및 체계	00
2. 부문별 세부 사업 추진 계획	00
3. 1차년도 사업 추진 계획	00
IV. 농정 거버넌스 구축 계획	00
1. 주산지 협의체 운영 계획	00
2. 기타 제도적 기반 구축 계획	00

I. 발작물 생산·유통 현황

1. 시·군 농산업 현황

1) 생산현황 * 품목별 생산농가 및 재배면적 : 농발계획 및 원예산업종종합계획(구, 산지유통종합계획) 활용

부류별	품목명	생산면적 (ha)	생산량 (톤)	생산액 (백만원)	생산비 (%)	생산비중(%)	
						전국대비	도대비
식량작물	맥류						
		소계					
	두류						
		소계					
	서류						
		소계					
	잡곡류						
		소계					
식량작물 합계							
채소류	과채류						
		소계					
	엽채류						
		소계					
	조미 채소류						
		소계					
	근채류						
소계							
채소류 합계							
과실류	과실류						
		소계					
특작	특작						
		소계					
합계							

* 자료 : 00시통계연보, 00도통계연보 등 공인된 기관의 자료 활용

* 품목은 지역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2) 통합마케팅 현황

○ 통합마케팅조직 개요('17년 9월 기준)

통합마케팅조직명		대표자명	
주 소		설립연도	
자 본 금	백만원	총취금액('15년)	백만원
출자조직(0개소)			
참여조직(0개소)			
주요 취급품목			

○ 참여조직의 통합마케팅조직 출하현황('16년 12월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주요 출하품목	총 취급금액			총 통합조직 출하금액			조직화취급 출하금액			참여조직 출하율 (B/A)
		계(A)	매취	수탁	계(B)	매취	수탁	계	공동계 산수탁	계약재 배매취	
참여조직1											
참여조직2											
참여조직3											
000											
000											
000											
총 ○ 개소											

* 조직화취금액: 공동계산수탁매출액 + 계약재배매취매입액

* 포전거래 금액은 제외

○ 공동브랜드 현황

적용 품목	품목1	품목2	품목3
일반 현황	- 브랜드명 : - 소유 및 관리 - 사용권 - 관리제도		
생산 기준	-	-	
품질관리 기준	-	-	
BI 이미지			
마케팅 현황	- 주출하처1 - 주출하처2		

2. 시·군 00품목 생산 현황

1] 생산 현황

○ 00품목 생산현황 및 변화

구 분	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단수 (kg/10a)	생산액 (백만원)	생산비중 (%)		
						전국대비	시도대비	시군대비
2015년(a)								
2016년								
2017년(b)								
등락율(a/b,%)								

○ 읍·면별 생산 현황(2016년 말 기준)

구 분	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단수 (kg/10a)	호당 면적 (ha)	시군대비 (%)
00읍						
00면						
전체면적						

○ 영농규모별 농가 현황

구 분	0.1ha 미만	0.1~0.5	0.5~1.0	1.0~1.5	1.5~2.0	2.0~3.0	3.0ha 이상	계
농 가 수								
비율(%)								100.0
면적(ha)								

○ 연령대별 농가 현황

구 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농 가 수						
비율(%)						100.0
면적(ha)						

② 주요품목 특화도(신청 품목 포함)

○ 전국 대비 특화도

품 목 명	전국 농업생산면적 (ha)	전국 00품목 재배면적 (ha)	시·군 농업생산면적 (ha)	시·군 00품목 재배면적 (ha)	특화도

* 자료 : 00시통계연보, 00도통계연보 등 공인된 기관의 자료 활용 / 자료 출처 및 연도 명기

○ 시·도 대비 특화도

품 목 명	00도 농업생산면적 (ha)	00도 00품목 재배면적 (ha)	시·군 농업생산면적 (ha)	시·군 00품목 재배면적 (ha)	특화도

* 자료 : 00시통계연보, 00도통계연보 등 공인된 기관의 자료 활용 / 자료 출처 및 연도 명기

3. 시·군 00품목 생산·유통조직 및 시설 현황

1) 생산·유통 조직 현황

○ 00품목 생산농가조직 현황

조 직 명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출하조직	비 고
				00농협	공선출하회
				00법인	계약출하회
				00도매시장	직접출하

* 공선출하회, 공동출하회, 계약출하회, 작목반 등

○ 00품목 산지유통조직 현황('15.12 기준)

	조 직 명	취급액 (백만원)	취급물량 (톤)	주요출하처(%)		
				도매시장	대형유통	기타
농협	00농협					
농업 법인	00영농법인					
	00농업회사법인					
기타	산지유통인					
	농가직접출하					

2) 생산시설 현황

○ 00품목 생산기반시설 현황

기반시설1	기반시설2						
ha (%)	ha (%)						

* 관수시설(관로, 스프링클러), 육묘장 시설, 주야 재배단지 등 생산기반 시설 세부작성 및 각 시설이 전체 생산면적 또는 생산량에서 차지한 비중(%) 작성

○ 00품목 영농기계화 현황

	파종기	수확기					
임대							
농가보유							
기타							
합계							
보급률(%)							

* 00 품목의 재배 및 수확과 관련한 농기계 대수 및 보급률(%), 단, 운반기, 경운기, 트랙터 등 일반 기계류는 제외

3) 산지유통시설 현황

○ 00품목 산지유통시설 현황

구분	운영자	설치 년도	투자금액 (백만원)	지원 주체	시설내역(㎡, 조)				
					건축면적	저온저장고	선별장	선별기	기타
APC				정부					
산지 유통시설				지자체					
저온 저장고				자부담					
간이 집하장									
가공시설									

* 00 품목의 산지유통관련 시설을 세부적으로 작성, APC는 건축면적 1,650㎡ 이상 시설, 가공시설 시설 내역은(건축면적, 저온저장고, 가공시설면적, 가공설비)으로 작성

4) 생산·유통 여건 분석 및 개선과제

① 현황 및 문제점

- 생산농가조직, 생산구조, 생산기반, 생산여건, 산지유통조직 및 시설 등 부문별 현황 및 향후 전망을 토대로 핵심적인 문제점을 요약하여 제시

② 개선과제

- 00품목의 문제점 해결 및 전략적 육성을 위한 개선과제를 부문별 및 우선순위별로 제시
- 00품목의 이외의 주요 발작물 산업의 육성을 위한 개선과제를 부문별 및 우선순위별로 제시

4. 신청품목 관련 주요 농정 현황

* 신청품목에 대해 지원되는 농림사업, 도 단위 사업, 시·군 자체사업 현황 기재

지원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생산기반, 유통시설, 교육, 마케팅 등)	사업의 성격 (HW, SW)	사업비 (백만원)	지원기간		지원비율(%)				지원조건(%)	
					개시	종료	국	시·도	시·군	자부담	융자	보조

5.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분석

- * 상위 계획 중 해당 품목 관련 주요 계획내용과 본 사업과의 연계성을 체계적으로 정리
 - 원예산업종합계획(구, 산지유통종합계획)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II. 사업시행주체 현황

1. 공동경영체 현황

1) 경영체 현황

- 생산·조직화 실적

구 분	참여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생산액 (백만원)	단수 (kg/10a)	경영비
2015년(A)						
2016년						
2017년(B)						
증감(%) (B-A)/A						

* 경영비 : 농촌진흥청 조수입 및 비용산정 기준(농산물 소득자료) 활용(표본조사 등)

구 분	조직화취급량(톤)			조직화취급액(백만원)		
	계	공동계산수탁	계약재배매취	계	공동계산수탁	계약재배매취
2015년(A)						
2016년						
2017년(B)						
증감(%) (B-A)/A						

* 조직화취급액: 공동계산수탁매출액 + 계약재배매취매입액

- 생산시설 보유 현황

기반시설1	기반시설2	묘목생산		농기계1	농기계2	농로개설	기 타
		묘포장 면 적	묘목생산 실 적				
m ² (%)	m ² (%)	m ²	천주	대	m ²	%	

* 맥류 및 콩 생산시설 : 건조, 저장시설 등

○ 유통시설 보유 현황

구분	산지 유통센터	저온 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 시설	간이 집하장	개량 저장고	경매식 집하장
개소								
면적(m ²)								
전년도 처리량(톤)								
투자비 (백만원)								

2) 부문별 목표

○ 생산·조직화부문

구분	참여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생산액 (백만원)	단수 (kg/10a)	경영비
2017년(A)						
2018년						
2019년						
2020년(B)						
증감(%) (B-A)/A						

* 경영비 : 농촌진흥청 조수입 및 비용산정 기준(농산물 소득자료) 활용(표본조사 등)

구분	조직화취급량(톤)			조직화취급액(백만원)		
	계	공동계산수탁	계약재배매취	계	공동계산수탁	계약재배매취
2017년(A)						
2018년						
2019년						
2020년(B)						
증감(%) (B-A)/A						

* 조직화취급액: 공동계산수탁매출액 + 계약재배매취매입액

○ 통합마케팅과의 연계성

구분	총 취급액(백만원)	통합조직 출하액(백만원)	출하액 중 조직화취급액 출하액(백만원)	참여조직 출하율(%)
2017년(A)				
2018년				
2019년				
2020년(B)				
증감(%) (B-A)/A				

○ 사업의 기대성과

부문	정성적 정목표
공동경영체 육성	○ ○
생산농가 조직화	○ 생산농가조직 참여농가수를 00농가(2017년)에서 00농가(2020년)로 확대 ○ 농가교육을 방식으로 추진하여 영농기술역량을 기존보다 ... 향상
생산혁신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 수확기 보급률을 00%(2017년)에서 00%로 증가(2020년)하여 노동력 절감 추진 (기존보다 작업시간 0시간/200평 축소/ 작업인력 0명/ha 축소) ○
품질향상	○ 기계식 건조기를 설치하여 취급물량을 00톤(전체의 00%)로 확대... 품질수준을 ... 향상 추진 ○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여 저장물량을 00톤으로(전체의 00%)로 확대
산지유통 개선 (경쟁력 강화)	○ 00품목의 통합마케팅 취급비율 00%(2017년)에서 00%(2018년)로 증가 ○ 00품목의 수출 비중... ○ 00품목의 포전거래 비중을 00%(2017년)에서 00%(2020년)로 축소

*현황, 여건,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법 및 목표성과 작성(객관적 및 구체적 작성)

*가급적 계량적 수치 제시(예시 : 참여농가 수취가격 2018년까지 10% 향상)

3) 사업추진 로드맵

○ 연차별 핵심과제 및 사업목표

- 00품목 및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중장기 비전과 목표에 따라 연차별 사업목표 제시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전략과 과제 제시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추진목표			
핵심추진과제			
핵심기대성과			

* 추진목표 및 기대성과는 반드시 항목별 수치로 제시해야함

4) 연차별 투융자 계획

○ 사업별, 부문별 투융자계획

구 분	세부사업명	재원	2018년	2019년	합계	
역량강화	공동경영체 운영조직	국비				
		지방비				
		자부담				
	주산지협의체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국비			
			지방비			
			자부담			
생산비절감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국비			
			지방비			
			자부담			
품질관리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2. 공동경영체 육성 비전과 목표

1) SWOT분석

강 점(Strength)	약 점(Weakness)
○	○
○	○
○	○
○	○
○	○

기 회(Opportunity)	위 험(Threat)
○	○
○	○
○	○
○	○
○	○



전략 방향

전략1(SO)	○
	○
	○

전략2(ST)	○
	○
	○

전략3(WO)	○
	○
	○

전략4(WT)	○
	○
	○

2) 00 품목 육성 비전과 목표

비전	000		
목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전략	000	000	000
추진 과제	1.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2.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3.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4.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3) 공동경영체 육성 비전과 목표

비전	000		
목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전략	000	000	000
추진 과제	1.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2.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3.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4.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Ⅲ. 세부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방향 및 체계

1) 추진방향

-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모델(총괄)
 - 신청품목의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 모델 도식화
 -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시·군 사업간 연계구조
 - * 생산, 상품화, 산지유통, 마케팅 등 부문별 사업체계 및 정책지원 체계

2) 추진체계

- 관련 주체 협력체계
 - 00품목 육성을 위한 관계기관별 역할분담 체계 제시

구분	
지자체 행정	-
	-
	-
통합마케팅조직	-
	-
	-
참여조직 (발작물공동경영체)	-
	-
	-
생산농가조직 (참여농가)	-
	-
	-
지원기관 (농업기술센터 등)	-
	-
	-

2. 부문별 세부사업 추진 계획(사업시행지침과 항목을 동일하게 조정)

1) 공동경영체 육성 및 생산농가 조직화

① 현황 및 개선과제

○

② 추진방향

- 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한 관련 규정 수립, 관련 주체들의 역량강화 등을 위한 워크숍, 세미나, 컨설팅 등 추진 방안 제시
- 지역 및 품목 여건에 따라 공동경영체 참여농가조직화를 위한 ‘조직화 필요성 인식, 사업 참여 원칙 확립, 재배기술 향상, 리더육성’ 등 농가조직화 추진 방안 및 프로그램 제시

③ 세부사업 내용

○ 공동경영체 육성

- 추진방법 :

- 주요내용 :

구분	추진항목	추진내용

○ 농가 조직화 교육 및 컨설팅

- 교육대상 :

- 교육방법 :

- 주요 교육 내용 :

회차	교육시기	교육인원	교육장소	주요내용

○ 00품목 주산지협의체 운영

- 참여 주체 및 기관 :
- 협의체 운영방법 :
- 협의체 운영계획

회차	개최시기	참석자	주요내용

2) 생산혁신 및 생산비(노동력) 절감

① 현황 및 개선과제

- 00품목의 생산구조, 생력 기계화, 종자 및 육묘, 관수 공급체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과제를 제시

② 추진방향

- 생산기반(관수 등), 영농기계(파종기, 수확기, 절단기 등), 공정육묘시설 등 공동영농을 통한 참여농가들의 조직화 결속력 제고 및 생산혁신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장비·시설 설치

③ 세부 사업 내용

- 공동영농기계 도입, 생산기반시설, 육묘시설 등 설치

-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합 계							
○ 장비명							
○ 시설명							

* 가급적 장비 및 시설의 처리용량(또는 규격)과 세부 내역을 작성(별도 표 작성)

3) 품질관리

① 현황 및 개선과제

- 00품목의 수확후 관리, 품질인증(GAP 등), 품질관리, 상품화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과제를 제시

② 추진방향

- 00품목의 품질향상을 위한 수확 후 관리시설, GAP시설, 건조시설, 품질관리 시설, 상품화시설, 저장시설 등의 도입 및 설치 계획

③ 세부 사업 내용

-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설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단가 (천원)	사업비 (백만원)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합 계							
○ 장비명							
○ 시설명							

* 가급적 장비 및 시설의 처리용량(또는 규격)과 세부 내역을 작성(별도 표 작성)

3. 1차년도 사업 추진 계획

1) 2018년 예산 요구액(총괄)

- 부문별 사업량

부문별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사업비 비중(%)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합 계							
○							
-							
-							
.							
○							
-							
-							
.							

2) 지방비 확보 계획 및 사업추진 증빙(내용만 기술하고 증빙자료는 첨부)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
 - 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부지확보 현황(시설설치 사업포함 시)
 -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또는 매입 계약서), 토지 건폐율·용적을 및 제한사항 검토서(입증자료 포함)
- 자부담 확보상황(농업법인만 해당)
 - 출자자본금(법인 등기부 등본), 전년도 자기자본금(결산 재무제표), 법인명의 예금(평잔)(법인명의의 자부담 확보 증빙, 대표자 명의는 제외)
- 사업추진 의사결정
 - 주산지협의체, 총회, 이사회 등의 회의록(발작물 공동경영체 추진 관련 의제)
- 통합마케팅조직의 본 사업 추진에 대한 검토 및 00품목의 통합마케팅 취급 의견서

IV. 농정 거버넌스 구축 계획

1. 주산지 협의체 운영 계획

1) 현황 및 문제점

○

2) 추진 방향

○

3) 운영 계획

○

2. 기타 제도적 기반 구축 계획

- 00품목의 지역 내 농정 거버넌스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산지협의체, 농업회의소 등의 관련 행정 규정 및 지자체 조례를 제정에 대한 계획 제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해당되는 항목을 하나 선택하여 체크(√) 표시

대분류	중분류	사업수	예산 (백만원)	
합 계	6개 대분류 23개 중분류	469	6,309,667	
I. 농업	소계	133	3,362,547	
	I-1. 경쟁력제고	50	67,650	
	I-2. 생산기반확충	46	1,539,625	
	I-3. 농가경영안정	23	1,733,029	
	I-4. 가격안정 및 유통활성화	6	2,466	
	I-5. 국제협력협상	8	19,777	
II. 농촌	소계	63	1,302,614	
	II-1. 경쟁력제고	3	5,801	
	II-2.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 활성화	47	1,208,697	
	II-3. 농촌복지증진	13	88,116	
III. 식량	소계	19	477,341	
	III-1. 경쟁력제고	6	13,606	
	III-2. 생산기반확충	9	455,773	
	III-3. 가격안정 및 유통활성화	4	7,962	
IV. 축산	소계	124	603,651	
	IV-1. 경쟁력제고	36	102,178	
	IV-2. 생산기반확충	35	141,942	
	IV-3. 축산물안전관리	30	251,041	
	IV-4. 농가경영안정	2	17,253	
	IV-5. 가격안정 및 유통활성화	19	89,918	
	IV-6. 축산복지	2	1,320	
V. 식품	소계	67	229,629	
	V-1. 경쟁력제고	13	43,628	
	V-2. 생산기반확충	20	58,351	
	V-3. 가격안정 및 유통활성화	34	127,649	

대분류	중분류	사업수	예산 (백만원)	
VI. 원예	소계	63	333,885	
	VI-1. 경쟁력제고	8	15,846	√
	VI-2. 생산기반확충	27	168,114	
	VI-3. 가격안정 및 유통활성화	28	149,925	

세부사업명	원예시설현대화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ICT 융복합 확산 - 스마트팜 시설보급			예산 (백만원)	4,200			
사업목적	○ ICT 시설기반 구축 자동화온실 등에 시설물 자동·원격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시설원에 분야 ICT 융복합된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스마트팜 시설보급 및 컨설팅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들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채소·화훼류 등(육묘, 버섯, 인삼, 약용채소) 자동화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지원한도	○ 사업비 상한액: 200백만원(총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 표준사업비(0.33ha 기준): 복합환경관리 20백만원,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 -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을 거쳐 집행							
재원구성(%)	국고	2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0,000	21,000	21,000	63,000			
	국 고	4,000	4,200	4,200	12,600			
	지방비	6,000	6,300	6,300	18,900			
	용 자	6,000	6,300	6,300	18,920			
	자부담	4,000	4,200	4,200	12,6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기주 사무관 박혜민		044-201-2256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정보융합실		실 장 양종열 과 장 정명종		044-861-8763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8.30.일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원예분야ICT융복합 스마트팜 시설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채소·화훼류 등(육묘, 버섯, 인삼, 인삼·약용채소) 자동화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 ‘시설원예현대화사업’ 등을 통한 ICT 시설기반 구축사업 동시추진 농업인 등 지원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총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지원 제외대상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결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조합공동사업법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우선 지원(평가 시 가점 부여)
 - 시설원예현대화사업 또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동시 추진
 - 국산품종으로 생산·수출, 태풍·화재 등 피해(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의무자조금 단체로 결성된 품목에 한함)
 - 시·도지사 지정 “새싹있는 마을”이 포함된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 농식품 인증(GAP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등), 저탄소농축산물인증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시설원에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센서장비: 외부 온도·풍속·감우·조도 등과 시설 내부 온습도, Co2, 토양수분, 배지수분, 양액 EC/PH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 영상장비: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제어장비: 환풍기, 천창, 측창, 차광커튼, 보온커튼, 광량, Co2, 강우 및 양액 재배시설 등 제어장비
 - * ICT 기반구축 시설·장비(시설원에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와 제어장비 동시 설치 지원 가능(동시 설치 시에 한해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신청)
 - 정보시스템: 온실 내 센싱, 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시스템, 화재경보기(ICT 융복합 장비 설치 시 추가지원 가능)
 -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
 - * 센서와 제어장비 설치 시에는 스마트 온실을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TTAK.KO-10.0903, '16.6.24)과 구동기 인터페이스 표준(TTAK.KO-10.0845)을 따라야 함(상세정보는 스마트 팜 대표페이지(smartfarmkorea.net) 참조)
- 사업자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ICT 융복합 시설에 대한 보조·융자 지원
 - * 농가별 사업계획은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ICT 융복합 시설업체에서는 농식품부(전담기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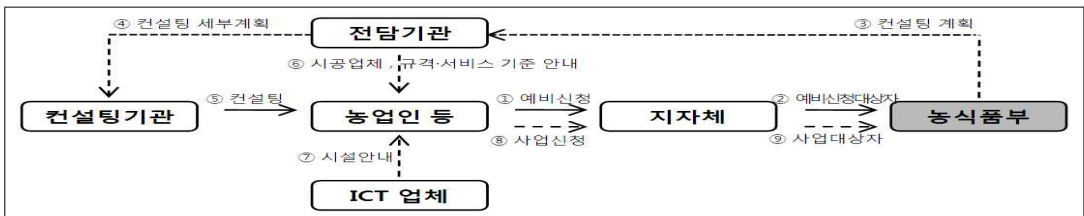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채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 -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 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상한액 : 200백만원(총 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 * ICT 기반구축 시설·장비(시설원예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와 제어장비를 동시에 지원 하는 경우에는 미적용
 - * 표준사업비(0.33ha 기준): 복합환경관리 20백만원,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
 - *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
- 시설운영 컨설팅: 전담기관 국고(100%) 지원

Ⅲ 사업추진체계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1. 예비사업자 선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및 시·도별 (가)내시 통보(전년도 9월)

시·도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군에서 제출한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8월)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시·군

- 시설원에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등을 검토 후 시·도에 제출(전년도 8월)
 - 검토 시에는 전문가(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사업 타당성, 사업시행 상 문제점 여부 등 확인
- 사업신청자에게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 시·군 담당자는 예비신청등록 및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 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
- 컨설팅기관의 자문 결과에 따라 예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에 대해 전문가(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업기술센터 등) 협조를 통해 사업 타당성, 사업시행 상 문제점 여부 등 검토(전년도 9~10월)

사업대상자

- ICT 융복합 시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2)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전년도 7월~10월)
 - 예비사업자로 선정 된 농업인 등은 지정받은 컨설팅기관을 통해 사업장에 필요한 ICT 융복합 시설 및 종류 등에 대한 컨설팅 이행(전년도 9~10월)
 - 전담기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 건적금액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 용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컨설팅 전담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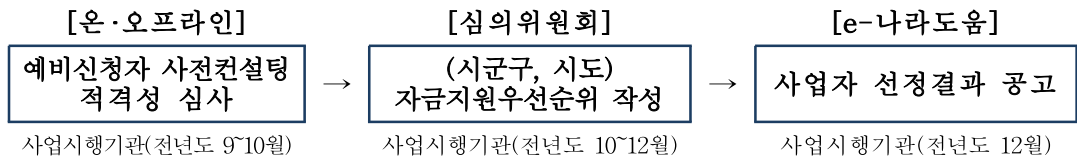
- 전담기관(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은 컨설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기관을 선정하여 시·군 및 예비사업자에게 통보(전년도 9월)
 - ICT 융복합 시설의 규격·서비스 기준, 관련 ICT 융복합 기업 등 안내
- ICT 시설 활용도 제고 및 효과 확산을 위해 농가, 지자체 담당자 등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 실시(연중)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은 예비사업자의 사업장에 필요한 ICT 융복합 시설 및 종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를 시·군 및 전담기관에 통보(전년도 9~10월)
 - 컨설팅 시 예비사업자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
- * 예비신청 대상자 사업계획서 작성 적극 협조

2. 사업자 선정단계

※ 예비신청 후, 사전컨설팅 통해 적격자로 판단된 농가를 사업자로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요청(전년도 12월)
- 시·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시·도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및 사업 추진의사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2월)
- 시·군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반영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시·군

- 컨설팅 결과에 따라 예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별첨 참고 1-3)을 토대로 심의하여 사업대상자를 결정하고 시·도에 보고(전년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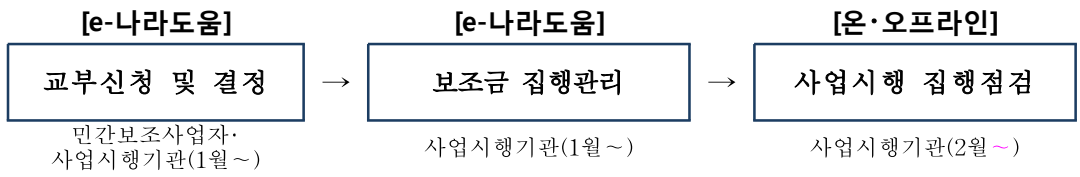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농림축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전년도 9월~12월)
-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시·도 담당자는 Agrix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전년도 12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사업시행요령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전담기관

- 컨설팅기관의 사전 컨설팅 결과 및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 및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 농식품부 제출(전년도 12월)

3.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자금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배정,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 예정 전월 15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자금집행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에 대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서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 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
- 시장·군수는 원활한 용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이 본 지침 및 증빙요건(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합 여부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별첨: 참고2)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용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 심사대상: ①신청자에 대해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 ②연장 승인 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용자 담보확보 여부 등) ③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
 -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에 따라 수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제2항 “농식품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 *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이며,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 집행하고, 사업량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용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용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여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농림축산식품부 요청 시 시·도별 용자금 대출실적 제출
- 시설 준공 후 용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가능

사업대상자

- 당해 연도 용자금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군에 연장신청
 - 용자금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대출기간 재연장(8월말까지)이 필요한 경우, 6월 15일까지 시·군에 재연장 신청
 -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4. 사업 시행 단계

공통사항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 받은 제품을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납품하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
 - ①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시·군에 제출
 - * 시험성적서를 통해 제품의 성능, 품질 등을 구체적인 수치, 문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예시 : 특허증, 조달청 우수제품지정증서 등은 허용 불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시험기관이 없는 제품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시험성적서 발급

- ②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사후관리보증서를 사업대상자(원본)와 시·군(사본)에 제출
- ③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시·군에 제출(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지자체 공동구매 시 제외**)
 - * 총사업비 기준 자재단품 300만원, 시설공사 6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원가계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원가계산서서 발급비용(부가세 포함)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사업수행자가 동일 가격의 물품 또는 공사를 다수 사업자에게 납품 시 최초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이후 사업에 활용 가능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다음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관정은 「지하수법」, 전기시설은 「전기공사업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시설을 설계·시공, 조직배양실 등은 관계규정에 의한 시공 적격업체 선정
- 온실 내부시설은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시공
 - 온실의 안전성 및 작물생육에 영향이 적은 설비는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지 않은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체 등도 시공 가능(단, 3개 이상 관련업체 시공실적, 견적서, 품질 등을 비교하여 우수업체 선정)
- 시장·군수는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반드시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감리 시행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 및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확인
- 시장·군수는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으로부터 효율·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사후관리보증서를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불법 하도급 행위 발생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 시장·군수(또는 사업대상자)는 주요 기계·장비의 공동구매(물품·시공)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군수가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 시 사업대상자 입회,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
- 측고인상 시에는 측고인상 이후 해당시설이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적설심·풍속)을 상회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기술사가 발급한 구조계산서를 제출
 - * 구조계산서 발급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형태(비율)에 따라 국가, 지자체, 사업자가 나누어 부담

사업계획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또는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농식품부에 보고
 - 단,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의 경우 사업비 또는 사업대상자 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배정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 발생으로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등으로 시·도 단위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시·군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시·도의 승인을 받아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중 시·도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 시 농식품부와 사전협의하여 시·도에 변경 승인을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도에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시·군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
- 사업대상자는 사업착수 전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표 제1-4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 실시
- 보조금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조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 설비시설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주요기계·장비	납품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용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별지 제4호)
-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에 처분 승인 요청

컨설팅기관

- 사업대상자별 시설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설치확인 사항을 포함하여 단계별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 및 시·군에 제출

전담기관

- 사전 컨설팅, 시설설치 컨설팅, 확인점검 컨설팅에 대한 추진현황 점검 및 확인
- 농식품부 점검일정에 따라 합동 현지방문·점검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 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포함), 사업 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출하 약정(출하권 위임계약) 해지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의 해당기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보조·융자금 부당사용 확인 시 지급 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교부 제한
 - * 사업수행자(업체) 부당행위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대상자의 대출금 부당사용(목적 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관계규정 위반 등) 확인 시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

6.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 공통사항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전담기관 및 지자체는 시설 설치 전후 생산성 향상 평가결과 농식품부 제출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환류
- 당해 연도 집행실적 등을 다음해 시·도(시·군)별 예산 배정 시 반영

IV

2019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1. 2019년도 사업수요 조사

- 시·도지사는 2019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8.3월)
- 농식품부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제출
 - * 사업추진절차 : 수요조사(~'18.3월) → 예비사업대상자 선정(~'18.8월) → 사전컨설팅(~'18.10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18.12월) → 사업추진('19.1월~)

2. 201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시장·군수
- 제출기한: '18.8월(컨설팅 대상 예비사업자)
- 신청자격: '18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 '19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18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추후 통보)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통합] 시설원에 분야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input type="checkbox"/> 개인		단체(<input type="checkbox"/> 영농조합, <input type="checkbox"/> 농업회사, <input type="checkbox"/> 생산자단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 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시설 현황	생산 시설	원예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온실	버섯재배사
		㎡	㎡	㎡	㎡	㎡	
	축산	무창돈사	무창계사	무창오리사	무창분만돈사	무창임돈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부대시설		양액재배	예냉·저장·선별	관수시설	환경제어	기타
	㎡	㎡	㎡	㎡	㎡	㎡	㎡
난방 시설	난방 유형	온풍난방	온수난방	온수보일러	태양열병합	기타	
	㎡	㎡	㎡	㎡	㎡	㎡	
	가온 방식	고체연료	유류·가스	전기	지열·지중열	기타	
㎡	㎡	㎡	㎡	㎡	㎡	㎡	
신청 내용	사업종류 (해당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사업명	세부사업	신청시설		신청면적
			시설원에 현대화		<input type="checkbox"/> 전문생산단지 <input type="checkbox"/> 일반원예시설		㎡
			ICT 융복합 확산		<input type="checkbox"/> 스마트팜시설		㎡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input type="checkbox"/> 신재생에너지 <input type="checkbox"/> 에너지절감	<input type="checkbox"/> 지열, <input type="checkbox"/> 지중열, <input type="checkbox"/> 폐열, <input type="checkbox"/> 목재펠릿난방기 <input type="checkbox"/> 다겹보온커튼, <input type="checkbox"/> 보온덮개 <input type="checkbox"/> 순환식수막시설, <input type="checkbox"/> 공기열, <input type="checkbox"/> 기타()	㎡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용자(신청액)	자부담

위와 같이 시설원에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사업종류별) 1부, 참여농가 현황 1부

[별지 제1-2호 서식] ICT융복합확산사업 계획서

시설원에 ICT융복합확산사업 계획서

1. 신청자 현황

가. 사업자 현황

단지(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응자	지방비	자부담

나. 생산현황

구 분	재배면적(㎡)	생산량(톤)	소득액(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2. 시설 현황

시설면적	㎡	사업신청 면적	㎡		
시설종류	(예시) 유리, 경질판, 자동화비닐	온실형태	(예시) 5연동, 10동		
시설위치	마을까지 거리, 기타 단지 특징				
부대시설	양액시설	냉난방시설	보온시설	통합제어	기타
형태(종류)					
제조사(모델명)					

3.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계획

종류	세부내역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외부환경 센싱	온습도, 풍향, 풍속, 감우, 일사 등의 센싱장비		
온실내부 센싱	온습도, CO2, 토양, 양액 등 센싱장비		
구동기 제어	천창, 축창, 보온커튼, 난방비, 유동팬 등 제어장비		
통합제어	통합제어판, 통합제어시스템 등		
온실관리	PC, 원격제어, 모바일시스템 등		
모니터링	CCTV, 웹캠, 녹화장비 등		
기타	시설비, 양액제어시스템 등		
	합계		

(2쪽에 계속)

(2쪽)

나. 세부계획

구분	세부내역	단가(천원)	개수	합계(천원)
합 계				
○ 외부환경 센싱				
-				
-				
○ 온실내부 센싱				
-				
○ 구동기 제어				
-				
○ 통합제어				
-				
○ 온실관리				
-				
○ 모니터링				
-				
○ 기타				
-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다. 사업비 소요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	용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m ²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3쪽에 계속)

(3쪽)

라.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농업경영체의 예금평잔확인서 등 첨부)
-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 제공승낙서, 인감증명: 타인소유> 등 첨부)
-

4. 생산·수출·경영 계획

가. 연도별 출하·판매계획

- 연도별 출하계획(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등)
-
- 연도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나. 수출계획·전략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 및 향후 계획
-

◦ 수출전략

다. 경영 계획

- 작목 재배관리, 정보화(PC, 모바일) 등의 학습계획
-
- 종장기 사업추진 계획(후계자 활용 등)
-

위와 같이 시설원에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계획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사업 참여농가 현황

사업 참여농가 현황

사업신청자(단체)명:

대표자명:

번호	농가명	주소지	연락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재배 면적 (㎡)	시설		재배 품목	예상량(톤)	
						종류	면적(㎡)		생산	수출
계	명	-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주1) 시설종류는 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 및 일반비닐온실, 비가림시설 등으로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1-4호 서식] 변경신청서

[통합] 시설원에 분야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선정사업	<input type="checkbox"/> 시설원에현대화, <input type="checkbox"/> ICT융복합확산, <input type="checkbox"/>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해당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유형	<input type="checkbox"/> 농업인, <input type="checkbox"/> 농업법인, <input type="checkbox"/> 생산자단체 (해당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사업대상자명 (개인·법인·단체)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참여 농가 수	호	
	주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 계획	사업명	사업내용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당초	합계			
	변경	합계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p>위와 같이 시설원에 분야 지원사업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 ○ ○ (서명 또는 인)</p> <p>○○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검토 후 지체 없이 변경결과 농식품부 보고					

사업자 선정기준표(ICT 융복합 확산)

시군	사업 신청자	시설조건(40점)		활용조건(40점)			가점조건(20점)			합계 (100점)
		온실 조건 (25점)	ICT 시설 (15점)	시설 활용 (20점)	사업 지속성 (10점)	부대 환경 (10점)	조직화 (10점)	수출 단지 (5점)	에너지 활용 (5점)	

< 평가 참고사항 >

- 컨설팅기관의 사전컨설팅 결과, 사업계획 신청서 및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하고, 시·도 농정 심의회에서 공개심의
 -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의 평가항목에 지역별·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에서 배점에 대한 구간(구분)을 변경할 수 있으며, 10점 한도 내에서 가점 구간 내 항목 추가·변경 가능
- 시설조건
 - 온실조건: 온실의 종류, 규모화, 작목, 재배기간 등 ICT 융복합의 적합성 정도
 - ICT 시설: 온실내 자동화 정도, 기 도입된 ICT 융복합 시설의 보유 정도
- 활용조건
 - 시설 활용: ICT 시설장비 활용 능력 정도 및 시설운영, 정보화 교육 수료 경력 여부 등
 - 사업 지속성: 농업후계인력 확보, 토지매입 및 시설투자 계획 여부 등
 - 부대환경: 작업장의 상황 정도(전원공급, 무선통신 및 PC설치·운영 가능상황 등)
- 가점조건
 - 조직화: 조직단위 신청 여부, 조직내에서 파급효과 정도 등
 - 수출단지(보험가입): 수출단지 지정 여부, 농작물재해보험(농업시설) 가입 여부 등
 - 에너지: 지열에너지시설 등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투자시설 정도 등

[별첨: 참고2] 기성고 확인서

기성고 확인서

1. 사업명: ○○○○○○○○사업(20 년)

2. 사업자

- 법인명(성명):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남/여>):
- 주소(사업지역):

3. 사업계획(행정기관 승인내역)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사업비				
	총 투자계획 (A=B+C+D)	보조(B)		국고용자 (C)	자부담 (D)
		국고	지방비		

4. 사업실적(20 년 월 일 현재)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사업추진실적			자부담 투입실적		
	총 투자계획 (A)	사업실적 (E)	비율 (E/A)	계획 (D)	실적 (F)	비율 (F/D)

5. 국고용자 지원: 총 금액 천원(기 지원 , 금회지원)

6. 증빙자료: 별첨

위 사업자 기성고에 따른 금회지원분(용자금)을 통장에 입금할 것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농협(은행)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산림분야

I . 생산기반확충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세부사업명	조림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조림(지자체)	예산 (백만원)	90,359					
사업목적	○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							
사업 주요내용	○ 수확 및 수종갱신 벌채지 등에 나무심기(경제림 조성, 큰나무조림, 지역특화 조림 등)를 통하여 산림자원을 조성							
국고보조 근거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제6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 지원조건 : 국고 50-60% ○ 수혜대상 : 산주, 일반국민							
지원한도	○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적용							
재원구성 (%)	국고	50~60	지방비	50~30	용자	-	자부담	0~1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37,493	144,479	159,479	159,479			
	국 고	75,582	79,859	90,359	90,359			
	지방비	55,466	57,438	61,938	61,938			
	자부담	6,445	7,182	7,182	7,182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자치단체		산림자원과 시군구 산림부서		이상필 사무관		042-481-4185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2월말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조림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산림소유자, 지방자치단체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조림사업을 시행하는 산림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
 - 산림경영계획상 조림사업 계획이 반영된 산림
 - 경제림육성단지 관리계획, 임업진흥권역 실행계획이 반영된 산림
 - 대리경영, 협업경영이 설정된 산림
 - 산불피해지, 벌채지 등 조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 기타 조림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3.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대상 세부 사업
조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림조성(목재생산조림, 바이오순환림조성, 전용자원조림, 유희토지조림) ○ 큰나무조림(공익조림, 산림재해방지조림) ○ 지역특화조림(5대 명산 가꾸기, 아미산특화림, 충주댐 벚꽃동산 조성, 영동 경관숲, 수암산특화림, 구절초특화림, 지리산둘레길 특화림, 방장산특화림, 육십령 옛고갯길 특화림, 섬진강명소화특화림, 향로산 특화림, 대나무특화림, 정남진권 푸른숲 조성, 황칠특화림, 견과류 웰빙숲 조성, 백계산동백림 조성, 기찬뫓길 향기숲 조성, 청풍특화림, 호남정맥 산철쭉 특화림, 송이소나무 특화림, 무을돌배 특화림, 청화산 특화림, 은행나무특화숲, 한우산특화림, 금오산명품숲, 편백숲특화림)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립
 - 설계·감리비, 조립예정지정리비, 묘목대, 식재인건비, 부대비용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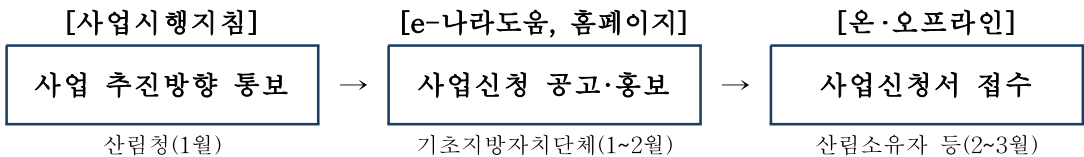
- 조립
 - 경제림조성 : 사업비의 90%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 큰나무조립 : 사업비의 100% (국비 50%, 지방비 50%)
 - 지역특화조립 : 사업비의 100% (국비 50%, 지방비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조립 : 「조립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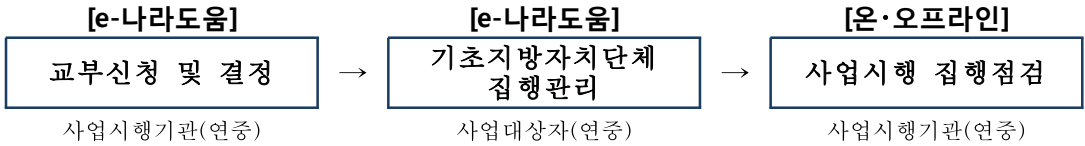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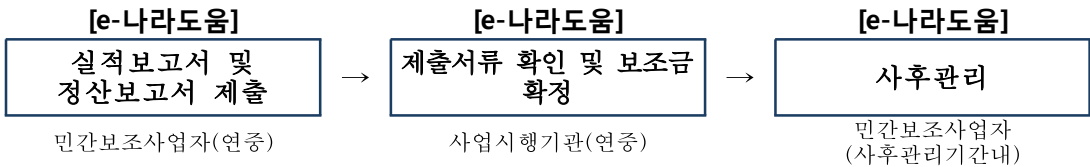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산림소유자 등 사업대상자로부터 조립사업 신청서 접수(전년도 2월말)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조립사업신청서 검토 후 광역자치단체(시·도)에 국고보조사업 신청(전년도 3월말)
- 광역자치단체(시·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보조금에 대한 신청을 받아 산림청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전년도 4월말)
- 산림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 요구(전년도 5월말)

2.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조립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국고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및 동의서 징취(전년도 11월~사업실행 1개월 전까지)
 - 사업 실행 후 준공검사를 거쳐 사업비 집행(2~11월)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3.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는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 주체로서, 사업 실행자로부터 완료보고가 제출되면 관련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실시
 - 조립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따른 감리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 실시
 - 사업실행 후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에 사업 실적 기록 등 이력 관리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국고보조금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검토 및 확정

<사후관리>

- 조림사업에 대한 조림방법별, 수종별 활착조사를 실시(6월~9월, 산림청, 시·도 및 시·군·구)
 - 조림방법별, 수종별 활착 조사 결과에 따라 보식 및 재조림 계획 수립
- 조림 재정성과모니터링 실시(3월-12월, 산림청) 및 사업추진 결과 보고(12월, 시·도 및 시·군·구)

IV /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조림사업 실적보고서에 따른 사업비 결산 및 정산 추진

2. 평가

- 조림사업에 대한 기관별 사업 평가(12월, 산림청, 시·도)
- 조림사업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익년도 보조사업 계획에 반영

세부사업명	숲가꾸기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정책숲가꾸기	예산 (백만원)	130,120					
사업목적	○ 산림의 연령에 따라 어린나무, 숙아베기 등 체계적인 숲가꾸기를 통해 산림의 경제·사회·환경적 가치와 편익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							
사업 주요내용	○ 풀베기, 어린나무, 숙아베기 등 산림의 연령에 따른 숲가꾸기 사업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4조, 제6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7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산림소유자(국비 50%, 지방비 50%)							
지원한도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적용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76,954	402,125	321,944	321,944			
	국 고	229,364	239,851	191,824	191,824			
	지방비	147,590	162,274	130,120	130,12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자치단체		산림자원과 시군구 산림부서		정연국 사무관		042-481-4218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2월말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정책숲가꾸기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산림소유자, 지방자치단체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숲가꾸기사업을 시행하는 산주 및 지자체 등
 - 산림경영계획상 숲가꾸기 사업 계획이 반영된 산림
 - 경제림육성단지 관리계획, 임업진흥권역 실행계획이 반영된 산림
 - 대리경영, 협업경영이 설정된 산림
 - 인공조림지 및 경제림으로 육성이 가능한 천연림 보육 대상지
 - 기타 숲가꾸기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3. 지원대상

- 조림지가꾸기(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숙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공익림가꾸기), 산물수집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설계·감리비, 숲가꾸기 사업 및 숲가꾸기 산물수집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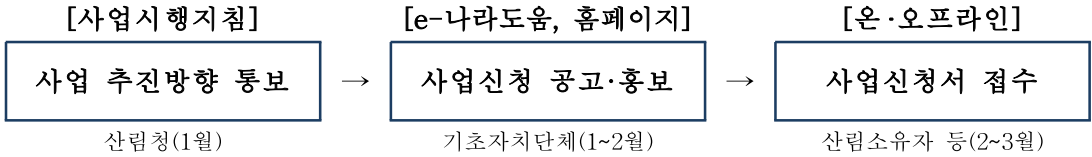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사업비의 100%(국비 50%, 지방비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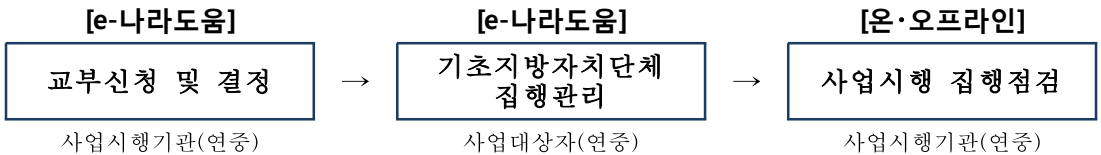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적용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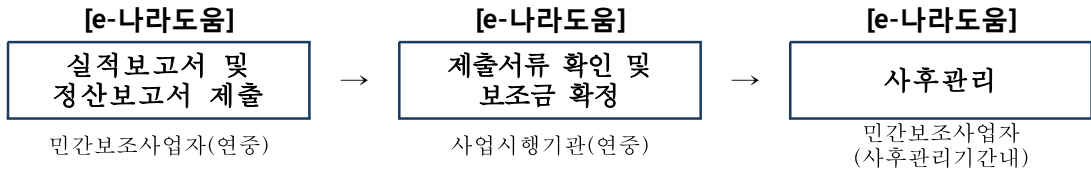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산림소유자 등 사업대상자로부터 숲가꾸기 사업신청서 접수(전년도 2월말)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숲가꾸기 사업신청서 검토 후 광역자치단체(시·도)에 국고보조사업 신청(전년도 3월말)
- 광역자치단체(시·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보조금에 대한 신청을 받아 산림청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전년도 4월말)
- 산림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 요구(전년도 5월말)

2.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숲가꾸기 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국고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및 동의서 징취(전년도 11월~사업실행 1개월 전까지)
 - 사업 실행 후 준공검사를 거쳐 사업비 집행(2~11월)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3.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는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 주체로서, 사업 실행자로부터 완료보고가 제출되면 관련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실시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따른 감리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 실시
 - 주요 사업지에 대한 현장 토론회 개최
 - 사업실행 후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에 사업 실적 기록 등 이력 관리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국고보조금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검토 및 확정

<사후관리>

- 숲가꾸기 재정성과모니터링 실시(3월-12월, 산림청) 및 사업추진 결과 보고 (12월, 시·도 및 시·군·구)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숲가꾸기 사업 실적보고서에 따른 사업비 결산 및 정산 추진

2. 평가

-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기관별 사업 평가(12월, 산림청, 시·도)
- 숲가꾸기 사업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익년도 보조사업 계획에 반영

세부사업명	숲가꾸기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공공산림가꾸기	예산 (백만원)	13,623					
사업목적	○ 도시·농산촌의 저소득계층 및 실업자를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주요내용	○ 공공산림가꾸기 참여자 인건비 및 교육비, 안전장구구입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4조, 제6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7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저소득계층 및 실업자(국비 50%, 지방비 50%)							
지원한도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4,182	26,766	30,448	30,448			
	국 고	19,251	15,200	17,205	17,205			
	지방비	14,931	11,566	13,243	13,243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자치단체		산림자원과 시군구 산림부서		정연국 사무관		042-481-4218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2월말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공공산림가꾸기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농·산촌지역의 청·장년층 실업자로 만 18세 이상 정기소득이 없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제한) 산림 기계 장비 및 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청각·간질·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 또는 고교·대학 재학생
- (반복참여 제한) 직접일자리 사업 연례적 반복 참여는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하고,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 제한
- (반복참여 제한의 예외) 만 55세 이상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3. 지원대상

구분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숲가꾸기패트롤
고용규모	1,159명	200명	135명
고용대상	농·산촌 지역 만 55세 이상 실업자	농·산촌 지역 청·장년 실업자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보유자
사업내용	생활권 덩굴제거, 숲가꾸기 산물수집	산림자원조사, 산림사업 DB 구축	생활권 덩굴제거 주택 피해목 제거
1일 임금	60,240원/8시간	60,240원/8시간	68,240원/8시간
고용기간	10개월	11개월	10개월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인건비, 보험료, 안전장구 구입비, 교육비 및 여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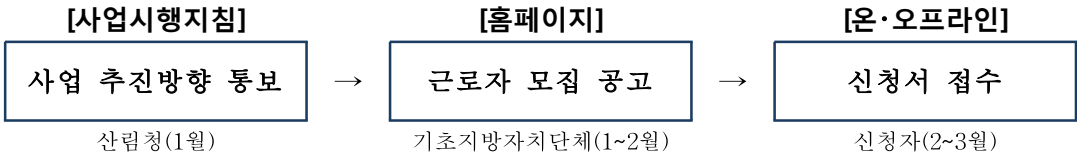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사업비의 100%(국비 50%, 지방비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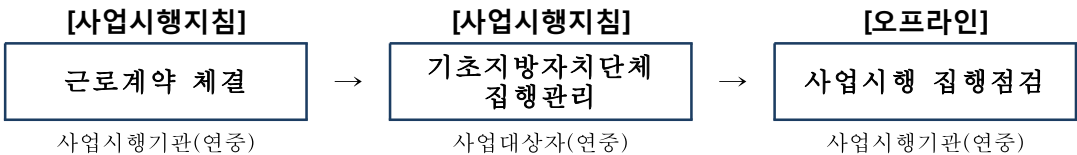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적용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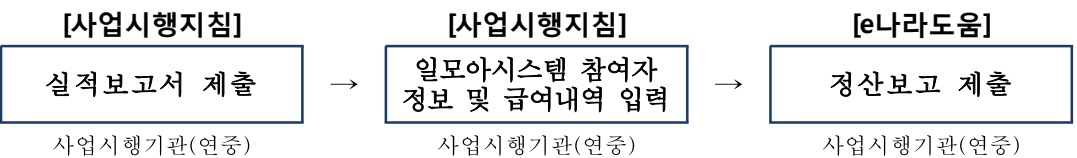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공공산림가꾸기사업 모집공고 후 근로자 선발(매년 초 또는 수시)

2. 사업시행단계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운영 및 인건비 집행

3. 사후관리단계



-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실적보고서에 따른 고용인원 통계자료 작성
-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일모아시스템’ 참여자 정보, 급여내역 입력
-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검토 및 확정

세부사업명	묘목생산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양묘시설현대화사업	예산 (백만원)	600					
사업목적	○ 노동력에 의존하는 묘목생산 구조를 시설자동화를 통해 비용 절감 및 농촌 노동력 감소에 적극 대응							
사업 주요내용	○ 온실·야외 생육시설, 파종 및 포장 자동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 생육환경조절시스템, 자주식 관수기 등을 통해 생육환경 개선 ○ 묘목품질유지 및 적기수급을 위한 저온저장고 시설, 기존시설의 개·보수, 장비 구입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16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68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묘목대행생산자 소유 민유양묘장이 위치하고 있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중 지방비 확보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지원한도	○ 개소당 총사업비 1억 이하 또는 2억 이상 10억 이하의 예산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사업량의 제한은 없음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30	용자	2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000	2,000	2,000	2,000			
	국 고	600	600	600	600			
	지방비	600	600	600	600			
	용 자	400	400	400	400			
자부담	400	400	400	4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산림자원과		강영관 사무관		042-481-4189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9월 선정)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양묘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1. 사업대상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민유양묘장이 위치하고 있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중 지방비 확보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 * 민유양묘장에서 직접 신청은 불가, 시·도지사 직접 공모는 가능
 - * 용자 20%는 자부담으로 전환 가능, 지방비가 부족한 경우 자부담률 증가 가능
- 개소당 총사업비 1억이하 또는 2억이상 10억이하의 예산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사업량의 제한은 없음

3. 지원대상

- 세부사업명 : 민유 양묘시설 현대화사업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묘목대행생산자 소유 민유양묘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자별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비용(설계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중 국비 지원
- 주요시설 내용
 - 온실·야외 생육시설, 파종 및 포장 자동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 생육환경조절시스템, 자주식 관수기 등을 통해 생육환경 개선
 - 묘목품질유지 및 적기수급을 위한 저온저장고 시설, 기존시설의 개·보수, 장비구입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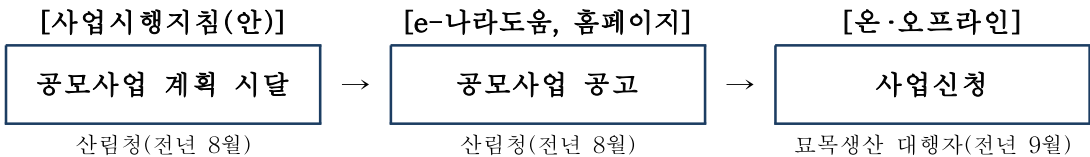
- 총 사업비의 60% 지원 (국비 30%, 지방비 30%, 용자 20%, 자부담 2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총사업비 1억이하 또는 2억이상 10억이하의 예산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사업량의 제한은 없음
- * 개소당 1억원 이하 또는 2억원이상 신청가능하며, 10억 이상이라도 자부담 또는 지방비를 추가 부담하는 경우는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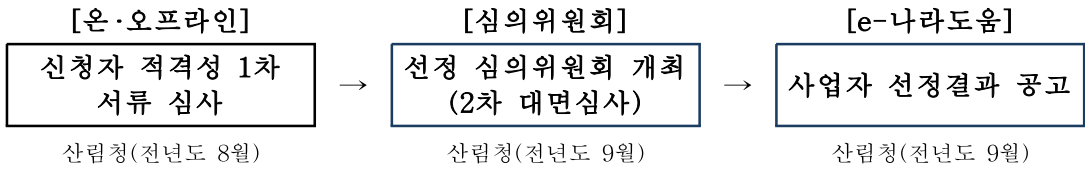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 산림청은 전년도 8월까지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고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 사업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사업 우선순위,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을 고지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를 통하여 파악된 사업신청 규모 및 내역을 산림청에 제출
- 산림청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세부사항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을 참고한다.
 - * 사업대상자가 정보취약계층 등 e나라도움을 사용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침'을 참조

2. 사업자 선정단계



○ 서류심사를 통해 1차 선정(산림청 산림자원과)

- * 지원금액, 양묘시설 운영실적으로 적·부만 판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 재무안정성 :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신용도 조사 등 실시(e나라도움 검증)
- * 사업능력 : 농업법인의 경우 상근 구성원의 수, 각종 의무사항(교부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과거 보조사업의 실적(오프라인 검증)
- *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등(e나라도움 검증, 오프라인)
- *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당해 연도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민간보조사업자가 공동사업 참여가구로 1회, 개인사업으로 1회 지원받은 경우 2회 지원받은 것으로 간주
- *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 검토(AgriX, e나라도움)
- * 사업시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농업기술센터, 대출취급기관 등의 사업검토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해야 한다.

- 1차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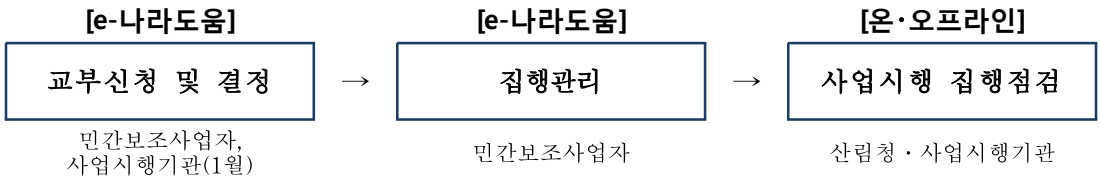
- * 시군구 담당자 또는 사업실행자가 사업계획 발표

- 심사위원회에서는 발표 내용에 대하여 심사표에 따라 심사

- * 심사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 평가표에 따라 최고점수를 받은 대상자를 확정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
 -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인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 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이라 함) 제51조)
 -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총사업비 10%이상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변경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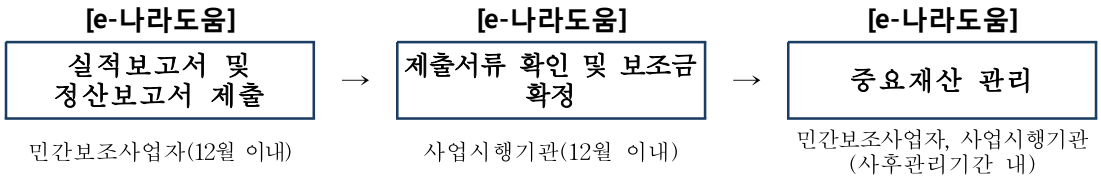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하되, 다음 사항을 반드시 명시한다.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계약)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 경쟁입찰 계약
 - (정산보고서 검증)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자부담금(융자금 포함)을 포함하는 경우 주거래 은행을 통해 해당 보조사업용(1사업 1계좌) 계좌 설정 및 보조사업 전용 카드발급요청 가능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법령에 정하는 사항, 사업시행기관의 교부조건 등을 반드시 준수
 - 보조금 집행의 원칙은 집행건별 보조율에 따른 자부담금 동시 집행
 - * 보조율(국고+지방비)이 90%인 사업에서 100원을 집행할 경우 계좌에 자부담금 10원이 있어야 집행가능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e나라도움에 등록 후 집행
 -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전자문서의 형태로 upload하고 사업시행기관 보조사업담당자 확인 후 집행
- 민간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승인 후 처리
 -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산림청에서 사업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사업시행기관과 합동으로 연 2회 이내 합동점검을 실시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며 산림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가능. 정산지연으로 인한 보조사업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면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 등록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 보조금 확정 시 안내문 부착 여부, 경영장부 비치 여부 등 사후관리 준비사항 등을 확인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식품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 「기본규정」 제77조제1항 관련 별표4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의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사업자금을 지원하지 않음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산림청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산림청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사업수행기관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기본규정」 제73조제1항 관련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민간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의 진행 상황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토록 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
 -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홍보, 지도·점검 등 실시
 -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성실히 관리
 -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등의 입구·몸체 또는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한 여부를 확인
 - * 다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위해가 된다고 시장·군수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실시
 - * 공동(공모 외 사업)으로 운영·관리하는 시설물은 공동보조사업자 단위의 자치규약을 제정하여 공증 등을 거친 후 시행토록 지도

1. 평가

- 사업 완료 후 민유양묘시설 현대화사업 결과보고
- 연 1회(5~6월) 보조사업 실태점검 실시

2. 환류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묘목생산대행자 선정 시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
 - * 대행생산량 배정 및 예산 지원 등에 우선권 부여

세부사업명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예산 (백만원)	19,420					
사업목적	○ 임산물 생산기반의 규모화 현대화 추진							
사업 주요내용	○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 규모화를 위한 작업로, 울타리 등 지원을 통해 한중FTA대응 경쟁력 강화,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복합경영)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지를 활용하여 숲을 가꾸면서 산림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청정임산물의 수요증가에 대처							
국고보조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21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 지원조건 : 국고 20%, 지방비 20%, 용자 20%, 자부담 40%							
지원한도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공모)노지 1~5억원 이내, 시설재배 2~10억원 이내 ○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사업, 공모) 1억원이상~5억원 이내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사업, 소액) 8천만원 이내 ○ (밤대체작목조성) ha당 7백만원 이내							
재원구성 (%)	국고	20~40	지방비	20~40	용자	0~20	자부담	20~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48,550	48,550	48,550	44,000			
	국 고	19,420	19,420	19,420	17,600			
	지방비	9,710	9,710	9,710	8,800			
	자부담	19,420	19,420	19,420	17,6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안진선		042-481-4209		
신청시기	정기(공모 계획에 따라 전년도 8월까지) 또는 정기(전년도 4월말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생산자(임업인)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다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일정요건(농업인(조합원) 5인 이상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을 갖추고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품목”을 사업대상 품목으로 하여야 함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판넬 재배사 등 등기 시설물 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공모)
 - 임업인(전문임업인·단체)에게 산나물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 지원
 - * 지원대상 :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수시설, 관리자 등
 - * 보조율 : 40%(국비), 20%(지방비), 40%(자부담), 지원한도 : 1~10억원(총사업비)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공모)
 - 전문임업인에게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 임산물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기반 시설 등 지원
 - * 지원대상 : 숲가꾸기,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시설,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관리자 등
 - * 보조율 : 40%(국비), 40%(지방비), 20%(자부담), 지원한도 : 1~5억원(총사업비)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소액)

- 임업인(임업인·단체)에게 산나물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 등 지원

* 지원대상 :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수시설, 관리자 등

* 보조율 : 20%(국비), 20%(지방비), 20%(옹자), 40%(자부담), 지원한도 : 0.8~1억원(총사업비)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소액)

- 전문임업인에게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 임산물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기반 시설 등 지원

* 지원대상: 숲가꾸기,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시설,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관리자 등

* 보조율 : 20%(국비), 20%(지방비), 20%(옹자), 40%(자부담), 지원한도 : 0.8~1억원(총사업비)

○ 밤대체작목조성

- 임업인에게 경제성이 없고 폐원상태에 있는 밤나무 재배지에 대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산채나 약용·약초류 등 고소득 대체작목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성사업비를 지원

* 보조율 : 20%(국비), 20%(지방비), 20%(옹자), 40%(자부담), 지원한도 : 0.8~1억원(총사업비)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공모)

구 분	세 부 내 용
산나물류·수실류 수목부산물류	관수시설, 작업로 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관리자 등
산림버섯류	재배하우스·관정·관수·자동화 시설 및 톱밥배지시설 등 * 송이산가꾸기의 경우에는 낙엽굵기, 가지치기, 숙아베기 및 관정·관수시설
관상산림식물류	조직배양을 위한 온실, 하우스, 관수시설, 자동화 시설, 분재 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종자파종 또는 묘목식재 등
약용·약초류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자 등

☞ 관리자 규모(33㎡ 이하)는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또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관리자(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 ☞ 이하 관리사 규모는 모든 사업(공모사업, 소액사업)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 ☞ 관리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일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하여야 함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공모)

구 분	세 부 내 용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임산물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 지원	숙아베기, 천연림보육, 풀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 산물수집, 작업로 등 숲가꾸기 사업
	특용수, 약용류, 산나물류, 산림버섯 등 생산기반조성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 감시시설, 모노레일, 액비저장시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50㎡ 이내)은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 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소액)

구 분	세 부 내 용
산나물류·수실류·수목 부산물류	관수시설, 작업로 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산림버섯류	재배하우스·관정·관수·자동화 시설 및 톱밥배지시설 등 * 송이산가꾸기의 경우에는 낙엽꺾기, 가지치기, 숙아베기 및 관정·관수시설
관상산림식물류	조직배양을 위한 온실, 하우스, 관수시설, 자동화 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종자파종 또는 묘목식재 등
약용·약초류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사 등

- ☞ 관정시설 사업은 조경수, 분재, 잔디, 야생화 등 관상식물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중
재배 면적이 1ha 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자금 지원조건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
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또는 종묘(총 사업비 30% 범위 내, 20만원/kg 이내 가능)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소액)

- 조경수, 약용·관상용식물, 표고 재배사(표고목 구입비 포함)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종자채취 및 구입, 산지 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및 식재 등
- 임간방목(염소 제외), 작업로 및 울타리 설치 등
- 산림복합경영지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관리사)

○ 밤대체작목조성

- 관리부실 및 노령화 등으로 생산성이 낮은 재배지를 대상으로 축소
- 기계화, 작업로 시설 등 경영기반 조성이 어렵거나 부적당한 재배지
- 재배면적이 소규모로서 경영규모화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재배지
- 소득이 높은 산림작물을 위주로 대체하고 필요시 매실 등과 같은 산림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작목도 대상에 포함
- 밤나무를 대체 할 수 있는 주요 산림작물
 - * 산나물류 : 더덕, 고사리, 취나물, 참나물, 산마늘, 두릅, 원추리 등
 - * 수실류 : 호두, 대추, 뽕은 감, 다래, 머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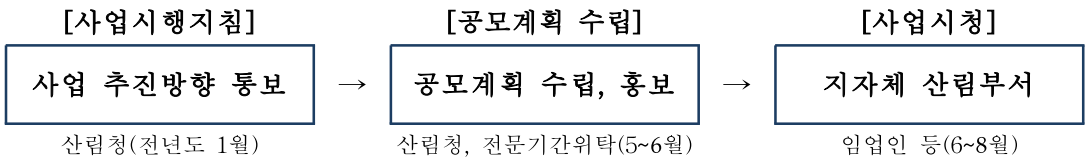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방자치단체 보조(국비 20%~40%, 지방비 20%~40%, 용자 0%~20%, 자부담 20%~4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총사업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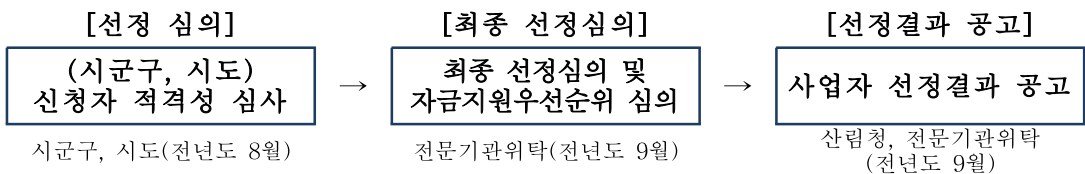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공모) : (노지재배) 1~5억원 이내, (시설재배) 2~10억원 이내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공모) : 1~5억원 이내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소액) : 생산자(임업인) 8천만원 이내, 생산자단체 1억원 이내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소액) : 생산자(임업인) 8천만원 이내, 생산자단체 1억원 이내
- 밤대체작목조성(소액) : ha당 7백만원 이내, 8천만원 이내

1. 사업신청단계



- 산림청은 전년도 1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사업 전년도 5~6월 말까지 산림청 혹은 전문기관 위탁을 통하여 공모 계획 수립 및 홍보 등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사용방법을 안내
 - 지자체별 산림소득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공고한 내용을 e나라도움 기관자체공모로 등록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 대행 지원, 교육·홍보 등을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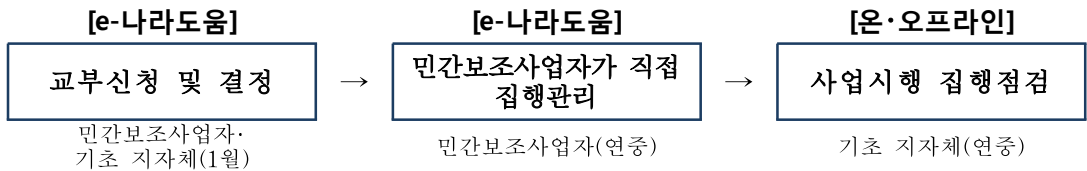
2. 사업자 선정단계(※공모사업인 경우)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야 한다.
 -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 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51조)
 -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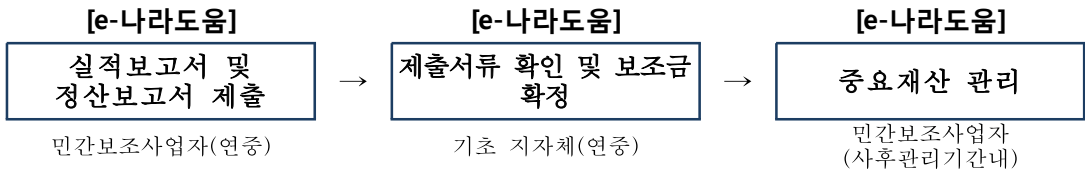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면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 등록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의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 부서에 반드시 통보
- 산림청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IV /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별 민간보조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실적보고서의 내용, 종류 등(서식 포함)

2. 평가

-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민간보조사업자 또는 사업시행기관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에 대한 설명

세부사업명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예산 (백만원)	4,800					
사업목적	○ 제초제, 화학비료 등의 사용 억제로 토양산성화 방지 및 지력 회복							
사업 주요내용	○ 토양개량제 지원 및 토양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한 유기질비료 등 지원, 산성화된 토양은 생산성이 감소하고 병해충에 약함에 따라 토양개량을 위한 친환경 재배관리사업							
국고보조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21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지원한도	○ 품종별 차등지원 - 수실류 : ha당 총사업비 756천원(* 밤: ha당 504천원) - 관상산림식물류 및 묘포지 :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국고보조 3,325천원) - 기타임산물 :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시비량 조정							
재원구성(%)	국고	70 또는 정액	지방비	20 또는 정액	융자	0	자부담	0~1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6,856	6,856	6,856	6,856			
	국 고	4,800	4,800	4,800	4,800			
	지방비	1,371	1,371	1,371	1,371			
	자부담	685	685	685	68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이은경		042-481-4196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월말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조합원·농업인 5인 이상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는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별표10]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
 - 양묘생산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산림자원이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자 등록’을 받은 자
 -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농(임)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실적이 있는 생산자 및 단체 우선 지원 가능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토양 개량제 및 유기질 비료 구입에 소요되는 제비용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 지원조건
 - 토양개량제 :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유기질비료 : 정액 지원 (국비 1,400~3,500원, 지방비 600~1,500원)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기준

구 분	세 부 내 용
토양개량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상석회, 탄산석회, 목탄, 목초액에 한해 지원 다만,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업체가 생산한 제품으로 ‘토양개량효과’ 표시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유기질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물비료(2종: 가축분퇴비, 퇴비) 및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다만, 부산물비료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녹색제품(환경표시 인증제품, GR마크 인증제품) 우선 구매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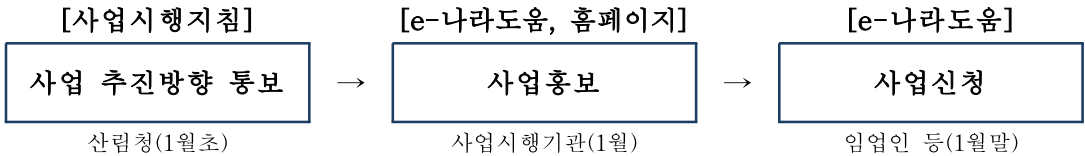
○ 지원단가

구 분	세 부 내 용
토양개량제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유기질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물비료(2종) : 등급별 차등 지원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20kg 당 국비 3,500원, 지방비 1,500원 (2종) 20kg 당 국비 1,400원, 지방비 600원 *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유기질비료지원) 준용. 단, 혼합유박은 산림청이 정한 단가를 적용

○ 품목별 지원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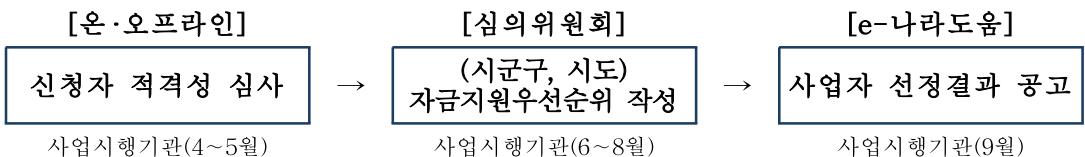
구 분	지원형태
수실류	밤 : ha당 총사업비 504천원
	밤 이외 : ha당 총사업비 756천원(밤의 1.5배)
관상산림식물류 및 묘포지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국고보조 3,325천원) * 입상석회 2,000kg/ha(2,500원/20kg) : 250천원 * 목탄분말 4,500kg/ha(15,000원/15kg) : 4,500천원
기타 임산물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시비량 조정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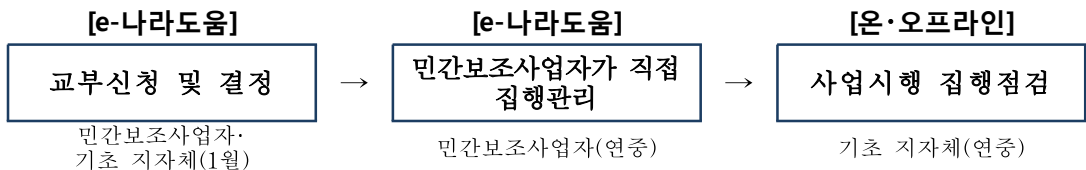
- 산림청은 사업 전년도 1월초에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산림소득사업을 홍보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사용방법을 안내
 - 지자체별 산림소득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공고한 내용을 e나라도움 기관자체공모로 등록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 대행 지원, 교육·홍보 등을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산림소득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야 한다.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51조)
 -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총사업비 10%이상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변경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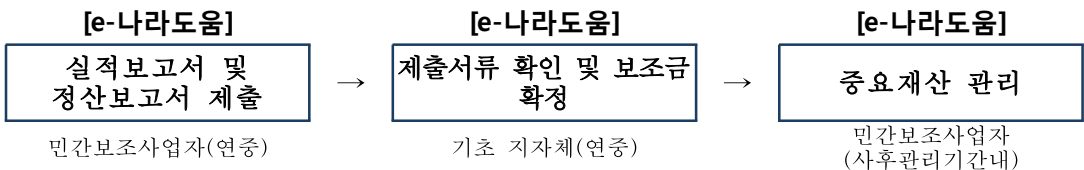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 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 등록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처리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 등록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산림청장,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의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산림청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산림청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IV /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별 민간보조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실적보고서의 내용, 종류 등(서식 포함)

2. 평가

-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민간보조사업자 또는 사업시행기관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에 대한 설명

세부사업명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예산 (백만원)	5,100			
사업목적	○ 국산목재 생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목재의 고부가가치 실현으로 산주 소득을 늘려 국고 세입을 증대하고, 목재제품 제조시설 현대화로 산업경쟁력 강화 및 한-중 FTA 대응하고자 함							
사업 주요내용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를 위한 건조, 제재·가공, 방부, 목탄 제조시설 등 노후화된 목재산업 시설의 교체 및 보강							
국고보조 근거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생산업 등록업체로 해당 제조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자자체에서 지방비 확보가 가능해야함							
지원한도	○ 개소당 최대 2억원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20	응자	-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계	2015~2016	2017	2018	2019	2020	
	계(A+B)	57,000	16,200	10,200	10,200	10,200	10,200	10,200
	국비(A)	28,500	8,100	5,100	5,100	5,100	5,100	5,100
	지방비+자부담(B)	28,500	8,100	5,100	5,100	5,100	5,100	5,100
	사업내용	285개소	81개소	51개소	51개소	51개소	51개소	51개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일숙		042-481-4291		
신청시기	전년도 6월 이전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목재산업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로 목재산업시설의 현대화를 원하는 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로서 해당 제조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자자체에서 지방비 확보가 가능하여야 함

3. 지원대상

- 목재생산업으로 등록된 건조, 제재·가공, 방부, 목탄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를 위한 장비 구입, 시설 보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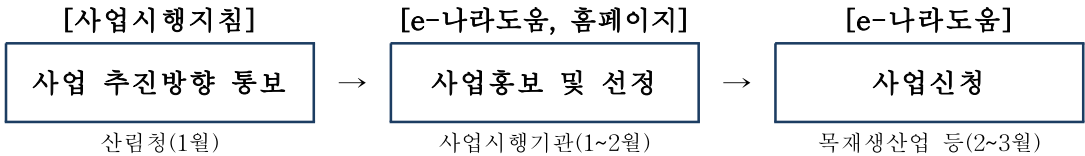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를 위한 건조, 제재·가공, 방부, 목탄 제조시설 등 노후화된 목재산업시설 교체 또는 보강 및 기존 목재생산업 운영자로서 목재산업시설 신규 설치
 - (제재시설) 띠톱 및 원형톱, 자동제재기, 집진설비, 대차 등
 - (건조시설) 저온·중온·고온 건조기, 고온고습 건조기, 진공·고주파 건조기 등
 - (가공시설) 스피들레스, 원주가공기, 프리컷 자동설비, 집성재설비, 칩제조시설, 톱밥제조시설 등
 - (목탄제조) 숯가마 생산시설, 원목절단기계, 숯 파쇄기, 컨베어벨트, 집진기 등
 - (방부시설) 주약관, 저장탱크, 계량탱크, 진공펌프, 가압펌프 등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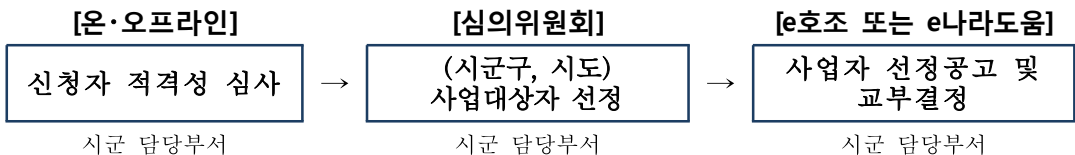
- 개소당 2억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1. 사업신청단계



- (산림청)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 시달(1월 초까지)
 - (지자체) 시·군·구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1~2월)
 - 공고문에 온라인 사용방법을 안내
 -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절차 등
 - (사업신청자) 사업신청자는 별지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군에 해당 사업부서로 제출
 - (신청서)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신청서’ (별지 1호 서식)
 - (제출서류) 목재생산업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건물 또는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재무제표 확인서, 최근 3년간 국산원목 매입실적 증명서, 일반현황, 사업계획서, 최근 3년간 수출 증명서류
- * e호조(또는 e나라도움)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사업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단, 사업규모에 미달될 경우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집행지침”에 따름

○ 신청자의 중복편중지원여부1), 지원 제외대상여부2) 등을 면밀하게 검토

1)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2)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 시·군·구 해당 부서는 보조사업자를 확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지원계획 및 지원대상자 명단을 공문으로 통보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며, 개별적으로 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금지

○ 보조사업자는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 제출

- 원가계산은 「예정가격작성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281호, 2016.1.1.일부개정)」에 의한 ‘제조원가계산방식’을 적용하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성(설치비 포함)

* 기계설비 제조와 설치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설치는 공사원가계산방식에 따름

** 사례) 원가계산용역비는 용역기관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만원(총사업비의 0.2~1.0% 해당)으로 용역기간은 14일에서 30일 소요

【 원가계산용역기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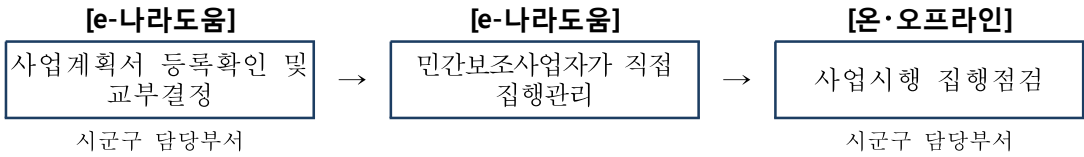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1호, 2016.1.1. 일부개정)」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별히 낮거나 높은 단가를 책정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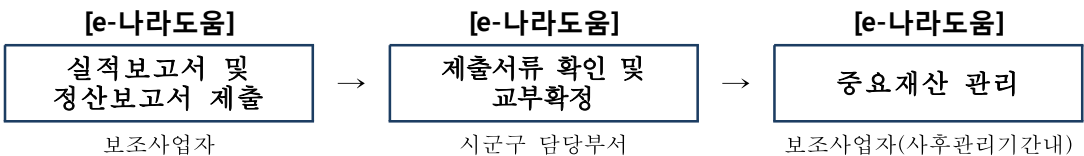
○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보조사업자는 지자체로부터 기계장비 설치사업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착수
- 착수후 4일 이내에 지자체에 착수상황 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상황 보고서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지자체에 문서 제출
 - 1차 자치단체보조금은 지원결정된 금액의 50%(단,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50%이하 지급 가능)로 하며 자부담 금액의 50%를 우선 지급 하여야 함.
 - *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서” 작성·제출
- 지자체에서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교부받은 금액을 20일 이내에 집행
- 지자체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는지의 여부, 보조금 지급 상황 등을 수시 점검
- 보조사업자는 지자체 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조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취소, 보조금의 반납 등을 명령할 수 있음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 정산보고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지원
- 시·군·구 담당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한 서류를 확인 한 후 교부확정

-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폐기를 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군·구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함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 보조사업자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산림청에 등록하지 않은 보일러를 설치한 행위
-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통보
-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 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보조사업자가 사정으로 인해 사업포기, 사망 등으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군·구 사업부서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환수조치

IV /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및 평가

- 사업평가를 12월말까지 완료한 후 사업성과 등을 자치단체별로 홍보

<별지 1호 서식>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신청서	
사 업 실행자	업체명/대표자 성명 :
	목재생산업 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주소 및 연락처 :
사 업 계 획	o 지원 금액 : 원(국비 : , 지방비 : , 자부담:) - 주요 사업 내역 :
제 조 시 설 가 동 실 적 (톤 , m ²)	o 생산능력 : /h(/y) o 최근 3년간 가동실적 : ('14) 톤, ('15) 톤, ('16) 톤 - 최초가동일 : * 2년 미만인 경우 총 가동 일수와 생산량 기재
원 가 구 성 현 황	o 판매금액 : 원 - 원가 : 인건비(원), 재료비(원), 경비(원), 이윤(원)
원 가 절 감 계 획	o 절감액 : 원(%) - 원가 : 인건비(원), 재료비(원), 경비(원), 이윤(원)
주 생 산 품	o
원 료 확 보 방 법	o 별채산물 % , 숲가꾸기산물 % , 제재부산물 % , 기타 % - 직영생산 % , 구입 % , 시군 등 지원 %
위와 같이 지원신청 합니다. 2017. . . 신청자 : (인)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첨부 1.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증 1부. 2.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건물 또는 토지소유권 증명하는 서류 1부. 4. 법인 재무제표 확인서(세무사 또는 회계사 발행) 1부. 5. 최근 3년간 국산원목 매입실적 증명서 1부. 6. 사업실행자 일반현황(별도서식 없음) 1부. 7.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서에는 ① 사업계획(사업량 및 소요예산 명세 포함) ② 원가구성 현황 ③ 효율개선 효과(원가절감을 포함) ④ 사업추진일정 ⑤ 평가관련서류 등 포함 8. 최근 3년간 수출 증명서류(한국무역협회 발행, 해당자에 한함) 1부.	

세부사업명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목재산업단지 조성				예산 (백만원)	500				
사업목적	○ 지역별 특화된 목재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목재산업 주체인 산·학·연·관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 지자체 주도의 지역별 특화된 목재산업체의 생산기반을 집약화·규모화하고, 산업단지 내 전문화된 목재가공 공장을 신축하여 경영 효율성 높임 - 구조용 집성재, 방부목재, CLT 등 생산설비									
국고보조 근거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지원자격 및 요건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 협동조합(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으로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인 협동조합으로, 자부담금 확보가능하고 재무재표 등 확인이 가능한 단체									
지원한도	○ 개소당 최대 50억원(1년차 10억원, 2년차 20억원, 3년차 20억원)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20	응자	-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합 계	1,000	3,000	5,000	5,000	5,000	5,000	4,000	2,000	30,000
	소 계	500	1,500	2,500	2,500	2,500	2,500	2,000	1,000	15,000
	국 고	500	1,500	2,500	2,500	2,500	2,500	2,000	1,000	15,000
	지방비	200	600	1,000	1,000	1,000	1,000	800	400	6,000
	자부담	300	900	1,500	1,500	1,500	1,500	1,200	600	9,000
	사업량	1	1	1	1	1	1			6개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일숙		042-481-4291			
신청시기	전년도 11~12월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목재산업단지조성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으로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인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2. 지원자격 및 요건

- 목재산업 관련 협동조합(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으로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인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으로 지방비 및 자부담금 확보 가능하고, 재무재표 등 확인이 가능한 단체

3. 지원대상

-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국산 원목을 공급받아 목재제품을 생산·가공하는 목재생산업체가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목재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른 목재가공·유통·시설장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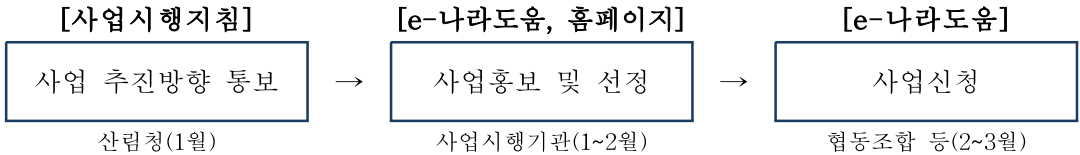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역별 차별화된 목재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건조, 제재·가공, 방부, 집성재, CLT 제조시설
 - (제재시설) 띠톱 및 원형톱, 자동제재기, 집진설비, 대차 등
 - (건조시설) 저온·중온·고온 건조기, 고온고습 건조기, 진공·고주파 건조기 등
 - (가공시설) 원주가공기, 프리컷장비, 집성재설비, 칩제조시설, 톱밥제조시설 등
 - (방부시설) 주약관, 저장탱크, 계량탱크, 진공펌프, 가압펌프 등
 - (집성시설) 등급구분기, 고주파집성기, 프리컷장비, 프레스 등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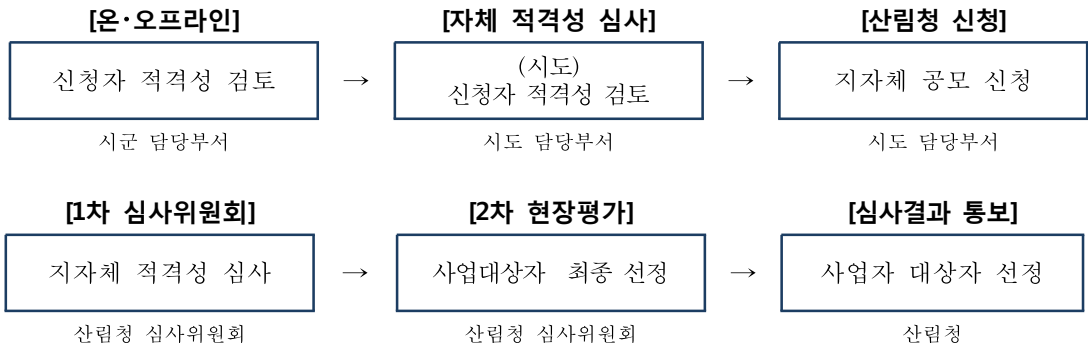
- 개소당 50억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1. 사업신청단계



- (산림청)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 시달(1월 초까지)
 - (지자체) 시·군·구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1~2월)
 - 공고문에 온라인 사용방법을 안내
 -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절차 등
 - (사업신청자) 사업신청자는 별지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군에 해당 사업부서로 제출
 - (신청서)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신청서’ (별지 1호 서식)
 - (제출서류) 목재산업관련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등기부등본 등록증,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재무제표 확인서, 사업계획서
- * 전자문서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사업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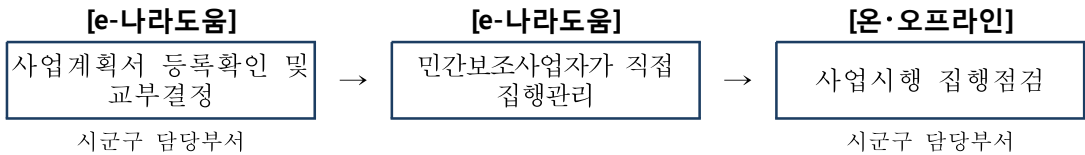
- 사업대상지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공모 심사를 통하여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 시·군·구 해당 부서는 신청자의 중복편중지원여부¹⁾, 지원 제외대상여부²⁾ 등을 적격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도에 보고

- 1)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 2)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 시·도에서는 시·군에서 적격성 검토를 마친 신청서류에 대한 자체 적격성 검토를 거친후 산림청에 신청서 제출
- 산림청에서는 심사위원회를 열어 1차 서류 심사 및 2차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심사결과를 시·도에 통보
- 지자체 공모심사 결과 통보받으면 시·군·구 해당 부서는 보조사업자를 확정할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지원계획 및 지원대상자 명단을 공문으로 통보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며, 개별적으로 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금지
-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별히 낮거나 높은 단가를 책정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
-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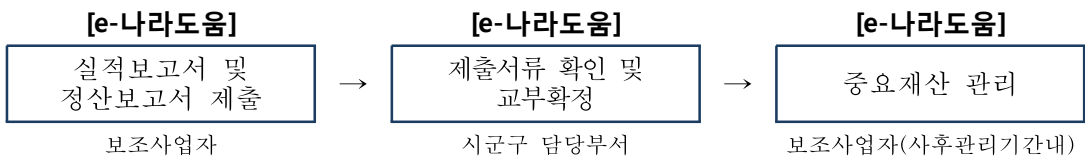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보조사업자는 지자체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착수
- 착수후 4일 이내에 지자체에 착수상황 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상황 보고서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지자체에 문서 제출
 - 1차 자치단체보조금은 지원결정된 금액의 50%(단,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50%이하 지급 가능)로 하며 자부담 금액의 50%를 우선 지급 하여야 함.

- 지자체에서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교부받은 금액을 20일 이내에 집행
- 지자체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는지의 여부, 보조금 지급 상황 등을 수시 점검
- 보조사업자는 지자체 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조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취소, 보조금의 반납 등을 명령할 수 있음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정산보고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지원

- 시·군·구 담당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한 서류를 확인 한 후 교부확정
 -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폐기를 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군·구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함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 보조사업자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산림청에 등록하지 않은 보일러를 설치한 행위

-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통보
-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 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보조사업자가 사정으로 인해 사업포기, 사망 등으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 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군·구 사업 부서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환수조치

IV /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및 평가

-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평가를 매년 12월말까지 완료한 후 사업성과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홍보

<별첨>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2】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

□ 지자체 : ○○시·도

○ 사업명(품목) : ○ 신청자 : ○ 사업대상지 :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3.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4. 사업 전망 및 조성 후 유지관리계획	
5. 종합평가 의견	

2017. . .

○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 검토자(담당 계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붙임 3】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지자체명 : ○○시·도

신청자 :

항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여부		
	목재생산업 제조업을 등록하였는 지 여부		
법인요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총 자본금이 5억원 이상 여부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여부(최근 1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조합원이 5명 이상 여부		
	자부담금 확보 여부		
사업부지	부지확보 여부(사업자 명의 여부 확인)		
	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한 여부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		
사업계획서	전년도 사업실적 및 공동기반시설 등 확인		
구비서류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 지 여부		
지원 제한 기준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는 지 여부		
	보조금 부당사용, 미승인 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 등을 한 적이 있는 지 여부		
기타	계획서와 현장이 부합하는 지 여부		

2017. . .

-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 검토자(담당 계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붙임 4】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신청자 평가점수표

□ 지자체명 : ○○시·도

사업별	순위	사업자	평가 점수	환산 점수	예산 요구(백만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1	○○법인 (대표 ○○○)						
	2	○○협동조합 (대표 ○○○)						
	3	○○법인 (대표 ○○○)						
	4	○○법인 (대표 ○○○)						

1. 사업별 공모사업 선정 심사평가표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되, 순위별 평가점수 차는 반드시 5점 이상 격차로 부여
2. 신청자 평가점수는 공모사업 선정 심사평가표 점수에 시·군·구는 30%, 시·도는 70%로 환산하여 적용(환산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둘째자리까지 산정)
3. 평가결과 총점(시·군·구+시·도)이 60점이하인 사업은 선정에서 제외

【붙임 5】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서 요약

대상품목 :

신청자

o 법인명 : (대표자명 :)

o 주소 :

o 연락처 :

o 생산량, 매출액 기재

(단위 : 천m³,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6월 현재	
생산량	매출액	생산량	매출액	생산량	매출액	생산량	매출액

예산규모 : 총액 백만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 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사업규모 : 건축면적 m², 부지면적 m²

운영 계획

o 운영계획 :

o 생산제품(계획) :

* 목재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생산할 제품명

세부 계획(사업비율)

o 설계·감리(%) :

o 전기·건축(%) :

o 가공시설 및 장비(%) :

o 유통시설(%) :

o 기타사업(%) :

* 주요 계획별 비중(%) 및 내용을 요약 작성, 총 100%로 작성

목재사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서(예시)

- ◆ 사업계획서는 예시를 참고하여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작성하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므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
- ◆ 본 자료를 토대로 평가위원이 평가하게 되므로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게 작성

1. 사업 개요

가. 대상품목 :

나. 신청자 :

o 생산량, 매출액 기재

(단위 : 천㎡,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6월 현재	
생산량	매출액	생산량	매출액	생산량	매출액	생산량	매출액

다. 사업대상지 : * 주소, 면적, 도면(1/25,000, 1/5,000)

* 생산유통 및 지리적으로 우수한 위치라는 점 설명

라. 사업목적 :

마.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예산액				비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건축:					
·부지:					

2. 신청자 사업 현황

* 자료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가. 일반현황

법인체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HP포함)	
설립일		조합원수	

나. 출자현황

(단위 : 백만원)

출자자수(명)	총출자액	평균금액	최고금액	최저금액

다. 연도별 사업 실적(최근 3년)

○ 생산분야

(단위: 톤, 백만원)

품목	생산량	상표명	주요 판매처	매출액 (a)	투자액 (b)	순수익 (a-b)
계						

○ 가공·유통분야

(단위: 톤, 백만원)

품목	판매량			상표명	주요 판매처	매출액 (a)	투자액 (b)	순수익 (a-b)
	계	규격	일반					
계								

라. 기존 공동 기반시설 현황

- * 기존에 산림청 지원 보조사업을 받았을 경우는 구분하여 기록
- * 기반시설의 소유자 정보 작성(법인, 개인 등)

○ 생산분야

품목별	연간생산량	위 치	비고
계	천m ³		

○ 가공·유통분야

집하시설	건조시설	일반창고	기타 시설	기타 장비
동 m ²	동 m ²	동 m ²	동 m ²	

마. 기존 브랜드 및 기타 시설 등 현황

구분	명칭	지정시기	품목	비고
기존 브랜드				
기타 시설				

바. 국고 및 지방비 등 지원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명	품목	지원년도	지원액	총사업비	비고
계						
생산분야						
가공·유통분야						
연구개발분야						

* 세부 사업명 : 생산분야, 가공·유통분야

3. 사업 여건

○ 해당 지자체 또는 목재산업단지 주변 생산 및 유통여건 등

* 목재제품 생산현황, 목재산업체 현황, 국산원목 생산량, 유통시설 현황 등 객관적 수치 기재

○ 사업신청 배경 등

* 해당 품목 또는 유사품목 생산·가공·유통경험 등 사업신청의 구체적인 사유

○ 지자체 해당품목 지원내역(최근 3년간) 등 육성방향 수립 자료

* 관련자료 첨부

4. 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부지 확보

위 치(주소)	
부지면적(m ²)	
사업지 소유	신청법인 명의의 토지
인·허가(법령상 저촉여부)	산지전용, 공장용지인허가, 오페수시설 등 허가사항
기타사항	

* 등기부 등본(토지) 첨부 - 신청당시 현재(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나. 주요 사업계획

○ 설계·감리 계획

○ 토목 및 전기공사 계획

○ 시설물 건축 계획

○ 목재산업 클러스터 총괄 계획

○ 생산·가공·유통 시설 및 장비 계획

○ 체험·관광프로그램 연계·개발 계획

○ 産·學·研·官 연계 및 운영계획

- 준공 및 정산 계획
- 시설 운영 계획(운영주체, 방식, 운영비 확보 등)
 - * “주요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적인 계획 작성

다. 건축 및 기계·장비 설치 계획

- 사업계획 내용(총괄)

사업별	예산액(백만원)					비고
	계	%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계		100				
설계·감리						
전기·건축						
저장·건조시설						
:						

* 설계·감리비, 토목사업비 : 총사업비의 각 5%이내

- 세부 사업별 계획

사업별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산출내역
합 계				
○ 설계·감리				
	실시설계비	식		
	공사감리비	식		
	시설부대비	식		
○ 전기·통신				
	전기·통신·소방 등	식		
○ 건축				
	건물건축	m ²		
	집하장	m ²		
	가공시설	m ²		
	건조시설	m ²		
○ 가공장비 구입				
	집성장비	식		
	CLT장비	식		
○ 기타사업				
:				

* 총 예산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작성(항목은 변경 가능)

5. 운영 계획

가. 국산원목 확보계획

(단위: ha, 명, 천㎡)

품목	지역(시·도)생산기반		원목생산업 생산기반			
	면적	물량	업체명	인원	면적	물량
계						

* 목재산업단지내 주변 또는 인근지역에서 원목을 공급할 수 있는 물량 제시

나. 목재제품 생산 및 판매계획

구분	'16	'17	'18	'19	'20
품 목 명					
상 품 명					
생산량(톤)					
매출액(백만원)					
유통방법					
판 매 처					

* 유통방법(직거래 등), 판매처(도소매상, 대형마트, 백화점 등)

다. 상품화 및 브랜드화 계획

-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개발 계획
- 제품의 개발 및 브랜드화 계획 등
- * 포장재나 가공 상품이 있을 경우 사진 등 첨부

라. 산·학·연 연계 운영 계획

- 가공·유통 업체, 대학교, 연구기관 등을 연계한 산업화 계획
- 가공제품, 기능성 개발 등 연구 계획

마. 경영활성화 계획

- 경영기술 습득 계획
- 흑자경영을 위한 운영 방안 등

바. 향후 지자체 지원 및 지도방향

- 사업완료 후 지자체 경영지원 계획 등

6. 기대 효과

가. 본 사업 전후 비교에 따른 효과성 전망

* 객관적 수치로 사업 전후 비교

* 생산·유통·판매량 등 본 사업이 추진됨으로서 기대되는 효과 전망

나. 사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와 연계방안

다. 연차별 매출액 추정 등

7. 세부 사업별 월별 추진 일정

사업별 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input type="checkbox"/> 설계발주계획												
o 사업자선정	←→											
<input type="checkbox"/> 시설지 정리계획												
o 기반공사		←	—	→								
o 상하수도설비		←	—	→								
<input type="checkbox"/> 건축계획												
o 건물건축				←	—	→						
o 집하장				←	—	→						
o				←	—	→						
:												

*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사업별 계획은 조정 가능하나 연내에 사업을 완료해야함.

8. 기 타

* 간이설계도(안) 관련내용 기재 및 증빙자료 첨부

* 기타 선정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 기재 및 증빙자료 첨부

세부사업명	임산물수출촉진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수출기반구축	예산 (백만원)	2,000					
사업목적	○ 임산물 수출경쟁력 향상을 통한 수출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임가소득 증대							
사업 주요내용	○ 임산물 수출 공동시설 및 장비 조성							
국고보조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11조, 제22조(임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자금지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재정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사업을 신청한 임산물 생산자 단체 중 평가를 거쳐 선정·지원							
지원한도	○ 1개소 당 1,000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20	용자	-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4,000	4,000	4,000	4,000			
	국 고	2,000	2,000	2,000	2,000			
	지방비	800	800	800	800			
	자부담	1,200	1,200	1,200	1,2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임업통상팀			손성애		042-481-4087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7~8월)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수출기반구축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 단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자 단체 등
 -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자격별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별표10」을 적용
 - * 기준일자는 사업신청 연도의 3월 30일 기준
- 공모신청 제한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 사용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경우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지원의 제한)를 준용
 - 최근 3년('14년 이후) 동안 산림소득 공모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사업규모 및 수출확대 가능성,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등이 적정하고 지자체의 지원 및 유지 관리 계획이 타당할 것
- 사업 신청시 구비서류 및 증빙자료
 - 법인 현황·운영 실적, 부지 및 자부담금 확보 등 관련 증빙자료
 - * 사업(조성) 기본계획, 법인 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사업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 농업인 확인서 또는 임업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가·감점 부여
 - 가점 부여(5점 한도)
 - 임산물 수출선도조직(2점), 수출협의회 참여업체(3점)
 - 글로벌 GAP, ISO 등 국제공인인증기관 인증(2점)
 - 사전수요조사 시 신청자(1점)
 - 수출유망품목발굴대회 수상업체(3점)

- 감점 부여(15점 한도)
 - 농식품 수출 공정거래위반 제재(10점)
 - 수출농산물안전성 위반 제재(15점)
 - 유사사업과 중복(5점)

3. 지원대상

- 공모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으로서, 관세통계 품목분류표(HSK)상의 산림청 소관 임산물
- 지원내용 : 수출용 공동수출장비(급속예냉설비, 자동선별장비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부지는 반드시 신청법인 명의의 소유 토지
 - 사업비 중 부지 매입과 관련된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 실시설계 및 감리비, 토목 공사비는 「'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 계획안」 건설부문 요율을 참고하여 이내로 반영
 - 기본조사설계는 사업신청 전 자부담으로 추진(실시설계만 사업비 반영)
 - 토목공사비 중 부지 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 시설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의 사업은 가능
- 선별·포장·가공 시설 및 장비구입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상 반영. 단, 선별·가공·포장 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조경수·분재 품목은 적용 제외
- 생산 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화장실, 식당, 휴게실 등은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인건비는 2017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적용
- 주요 기계장비는 가능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및 ‘한국식품연구원’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하고, 품질 및 A/S 등 사후관리 철저

- 사업대상지는 유통·가공시설임을 감안하여 공장용지, 오폐수처리 및 산지 전용 등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
 - 사업부지가 미확보되거나 시설대상 토지에 담보 또는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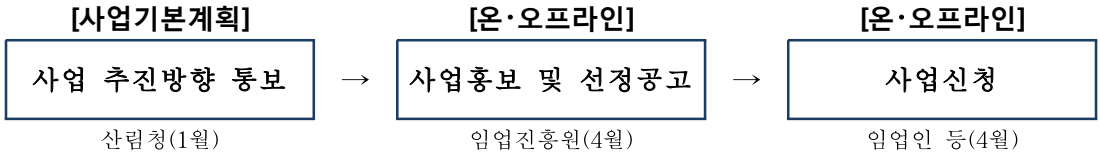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사업 추진시 준수사항
 - 지자체에서는 사업공모 신청한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사업내용 적정성, 인허가 사항, 타부처 유사사업 중복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
 - 공모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이며,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예산심의 확정이후 해당 시·군·구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
 - 허위 또는 과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향후 사업공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 제한
 - * 보조금 회수 및 지원 제한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내지 제79조를 준용
 - 사업계획, 법인현황, 부지 확보 등 관련 자료[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 내역, 토지등기부등본, 자부담 확인자료, 운영실적(결산재무제표 등), 농업인 확인서 또는 임업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는 시·군·구 또는 시·도에 비치
 - 사업 추진체계, 집행, 사후관리 등은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따름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기간 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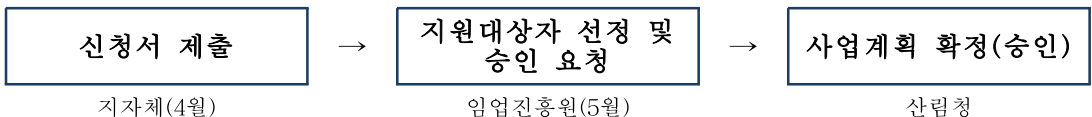
- 1개소 당 국고보조 10억원, 지방비 4억원, 자부담 6억원

1. 사업신청단계



- 산림청은 1월 초까지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 시달한다.
- 임업진흥원은 사업기본계획에 의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에 보고하고, 계획에 따라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임업진흥원은 공고 실시 전, 사업설명회 등 사전홍보 및 사업 수요조사 실시
 - * 지자체·수출협의회 등 관련기관 공문 발송 및 SNS를 통한 홍보 실시
 - 임업진흥원은 4월 중 공모기간을 정하여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하고 자세한 신청방법을 안내
- 사업신청자는 공모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에 사업신청서 및 법인 현황·운영실적, 부지 및 자부담금 확보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 * 사업(조성) 기본계획, 법인 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사업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 농업인 확인서 또는 임업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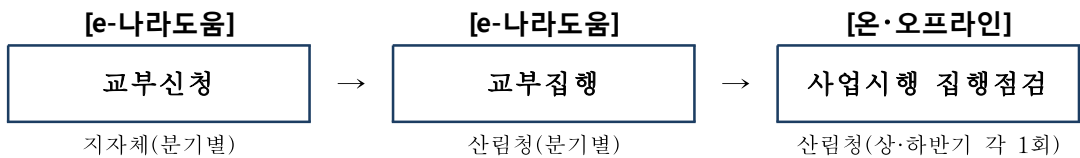
2. 사업자 선정단계



- 해당 지자체는 자격요건, 산지전용 등 인허가 사항, 재정 확보, 기타 서류 등을 확인·검토하여 사업 공모 검토서와 함께 임업진흥원에 제출한다.
 - 지자체 확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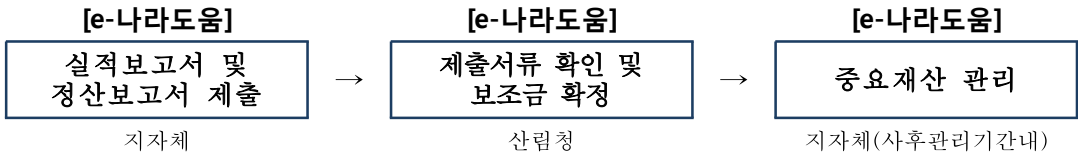
- 시설대상 토지에 근거당 설정 여부 및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인지 확인
 - 지원 대상 제외 여부 확인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업체는 제외
 - 시설설치에 필요한 인허가 가능 여부
- 임업진흥원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심사와 공개 발표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 평가위원회 구성 : 전문가 7인 내외(외부위원 50%이상 포함)
 - 평가내용 : 사업계획 적정성, 대상자 타당성, 수출확대 가능성 등
 - 현장평가 : 평가위원이 사업신청서 제출 사업현장을 방문 평가
 - 공개 발표 평가 : 현장 평가결과 득점이 60점 이상 업체만 공개발표기회 부여
- * 발표시간/발표자 : 15분 / 사업체 대표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지자체는 임업진흥원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 당해 연도에 분기별로 산림청에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다.
- 산림청은 지자체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를 통지한다.
- 지자체는 선정된 사업자가 수립·작성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자체 추진 계획을 수립(월별 또는 분기별), 사업의 진행상황을 지도·점검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유도
 -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하고, 지자체는 이를 검토하여 산림청의 변경승인을 받아 실행
- 산림청은 상·하반기별로 사업추진상황,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모니터링·점검 실시(연 2회 이상)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수출특화지역은 준공일로부터 10년까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 용도변경, 양도·교환·대여,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다.
 - 수출실적 증빙서, 계약서, 계산서 등을 허위 또는 변조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보조금의 반납조치 및 향후 사업공모 자격 제한
 - 기타 지원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처벌 또는 지원의 제한을 받음
- 지자체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한다.
 - 지자체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산림청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지자체는 사업자의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지자체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산림청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산림청 총괄부서는 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IV /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자 및 지자체는 산림청의 사업별 추진현황 및 보조금 집행·운영 점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 수출실적, 수출계획, 보조금 집행 상황, 보조금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현황 등

2. 평가

-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자의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전문 컨설팅, 보조금 부정집행,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 등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및 지원 배제

산림분야

Ⅱ. 임가지원 및 유통활성화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세부사업명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예산 (백만원)	12,832					
사업목적	○ 임산물의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							
사업 주요내용	○ 임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현대화 지원으로 임산물 생산 경쟁력 제고, 상품화 지원, 임산물생산유통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21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 지원조건 : 국고 20%, 지방비 20%, 용자 20%, 자부담 40%							
지원한도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생산자 총사업비 80백만원, 단체 100백만원 이내)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총사업비 100백만원 이내)							
재원구성 (%)	국고	20	지방비	20	용자	20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54,960	64,660	64,660	64,660			
	국 고	10,992	12,832	12,832	12,832			
	지방비	10,992	12,832	12,832	12,832			
	용 자	10,992	12,832	12,832	12,832			
	자부담	21,844	25,662	25,662	25,662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안진선 박준호		042-481-4209 042-481-4207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월말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법인
 -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구 분	세 부 내 용
산림버섯 재배신규 및 보완시설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표고목 구입비 포함),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장비 및 보완사업비(통풍·관수·이중차광막 등 하우스구조개선) 등 지원
툽밥배지 생산시설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 배양시설, 툽밥배지 재배사 등 시설
작업로 시설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작업로 시설)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수실류 냉해예방시설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밤, 대추, 뽕은 감 등 수실류 생산기반조성사업의 품목별·장비별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여건에 따라 자율적 집행이 가능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밤나무 노령목 관리)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전지전정, 숙아베기 등의 사업비 지원 (지상방제장비) 병해충 방제용 장비 지원(차량제외) (친환경 방제장비)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시설비 지원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 되지 않는 제품사용 (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구 분	세 부 내 용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생산장비) : 굴삭기, 4륜구동 오토바이,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깎기, 임산물 수확기, 밤 수확망 등 임산물 재배·생산 관련 기계·장비 *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임산물 총 재배면적 15ha 이상인 자에 한함 * 4륜구동 오토바이는 임산물 중 한개 품목 재배면적 10ha 이상인 자에 한함 * 생산장비는 조달청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단가를 적용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 표준규격(선별 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생산시설	관수시설, 관정시설, 대추비가림시설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설
작업로 시설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작업로 시설)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수실류 냉해예방시설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밤, 대추, 뽕은 감 등 수실류 생산기반조성사업의 품목별·장비별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여건에 따라 자율적 집행이 가능
관정시설	가뭄 피해방지 등 임가의 안정적 생산체계 유지 및 우량 관상산림 식물류 생산을 위한 관정시설비를 지원 * 관정시설은 관상산림식물류(조경수, 분재, 잔디, 야생화 등) 재배포지내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재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 * 조경수 관정시설 지원 직접사업이 '15년부터 보조사업으로 변경·편성됨에 따라 증가된 수량에 대하여는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중 재배면적이 1ha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 * 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컨테이너 생산시설	규격화된 관상산림식물류를 대량 생산·공급 기반시설 지원 * 관상산림식물류 컨테이너 재배시설 사업 참조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구 분	세 부 내 용
임산물 유통차량	(화물차량)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 대하여 재배경력 5년 이상이고, 노지재배 면적 10ha 이상(도서지역 5ha 이상) 또는시설재배 면적 3,300㎡ 이상인 경우 * 적재함 길이 2,500mm 이상, * 냉동탑차 중복지원 불가 (냉동탑차) 신선도 유지 필요 임산물(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
유통기자재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저장·건조시설	살균, 세척, 예냉 등 전처리시설, 저장·저온 시설, 농업용 공기교반기, 건조선풍기 및 건조장비·시설 등
가공장비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세절기 등 단순 가공장비 및 임산물 제품화를 위한 탈삼제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자체 자본보조(국비 20%, 지방비 20%, 용자 20%, 자부담 4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국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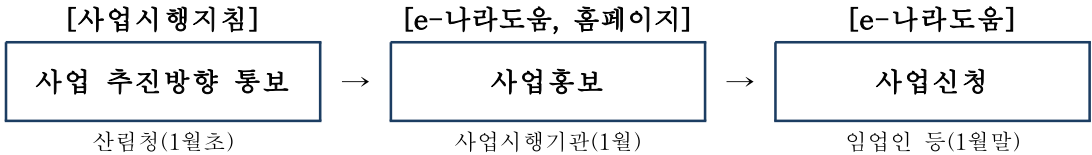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세부 사업명	지원 한도 및 지원 단가
- 산림버섯 재배시설	- 총 사업비 기준(표고재배자 8천만원이내, 생산자단체 1억원 이내) - 재배하우스 시설 : m ² 당(총사업비 기준) 55,000원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가능 - 철골온실은 설계내역 기준으로 하고, 기계·장비는 구입가격을 기준
- 톱밥배지시설	- 톱밥배지시설 : 설계내역 기준 - 중균배양시설 : 설계내역 기준
- 생산기반 조성	
· 밤나무 노령목 관리	- ha당 총사업비 1,292천원 * 숙아베기,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 여건 등을 고려·조정 실행
· 지상방제장비	-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 친환경 방제장비 (포충등, 성페로몬 등)	- ha당 총사업비 10백만원
· 생산 장비 및 시설	- (장비)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 (시설)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 작업로 시설	- km당 총사업비 5백만원 기준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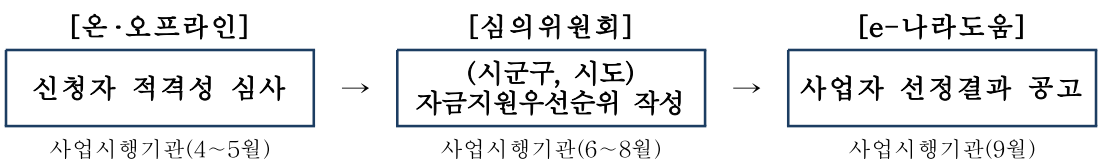
세부 사업명	지원 한도 및 지원 단가
유통기반조성	- 일반차량 : 국고 3백만원/건 - 냉동탑차 : 국고 4백만원/건 - 유통기자재 : 국고 4백만원/건 - 저장·건조시설 : 국고 12백만원/건 * 50m ² 까지 가능하며,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 가공장비 : 국고 3백만원/건 * 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은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탈삼제 : 국고, 4백만원/kl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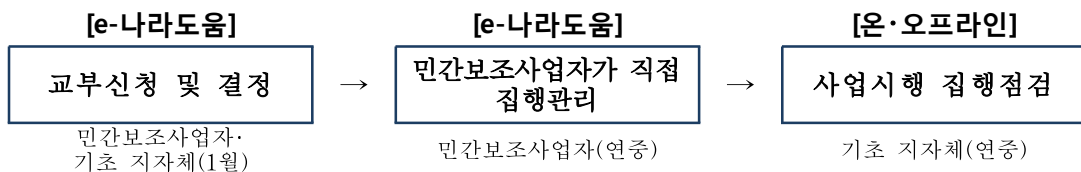
- 산림청은 사업 전년도 1월초에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산림소득사업을 홍보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사용방법을 안내
 - 지자체별 산림소득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공고한 내용을 e나라도움 기관자체공모로 등록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 대행 지원, 교육·홍보 등을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산림소득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 신청 또는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야 한다.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 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 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51조)
 -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총사업비 10%이상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변경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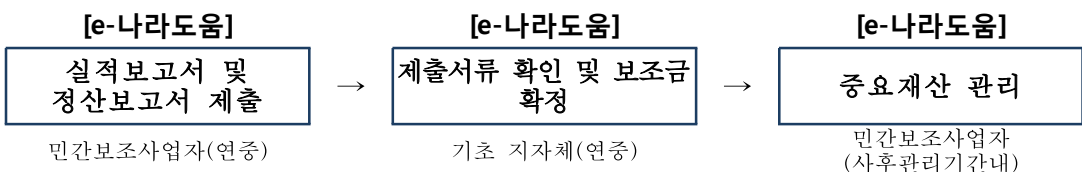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 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할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 등록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산림청장,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의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산림청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산림청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IV /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별 민간보조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실적보고서의 내용, 종류 등(서식 포함)

2. 평가

-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민간보조사업자 또는 사업시행기관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에 대한 설명

세부사업명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청정임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예산 (백만원)	215			
사업목적	○ 임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행사 참여·추진							
사업 주요내용	○ 임산물의 소비심리위축 등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임산물 직거래 장터, 우수임산물 전시회, 홍보사업 등 소비활성화사업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21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단체, 협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 지원조건 : 국고 100%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215	215	215	215			
	국 고	215	215	215	21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박준호		042-481-4207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2월말까지)			사업시행기관		민간단체		
관련자료	청정임산물소비촉진 및 홍보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직거래장터, 우수임산물 전시회 개최
- 소비자 맞춤형 생산·직거래 등 유통과 홍보 방법 등에 대한 교육
- 단기소득임산물 소비촉진 기획홍보물 제작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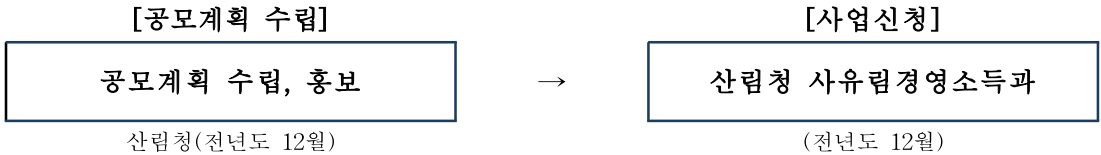
3.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민간경상보조 보조(국비 100%)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국비 기준)

세부사업명	'18 예산 규모	비고
계	215	
임산물 소비촉진사업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한도 : 10~50백만원 ○ 협회·단체 당 1개 사업 신청
①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②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③ 소비촉진 교육 지원		
청정임산물 홍보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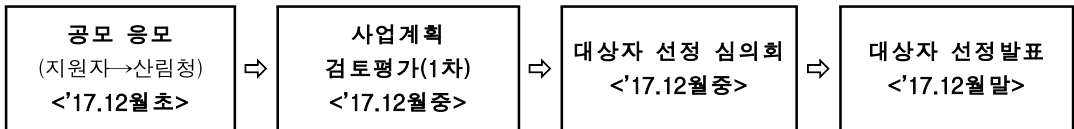
1. 사업신청단계



- 산림청은 전년도 12월까지 임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사업 공모계획을 사업 대상자에게 홍보하고 홈페이지에 공고를 실시한다.

2. 사업자 선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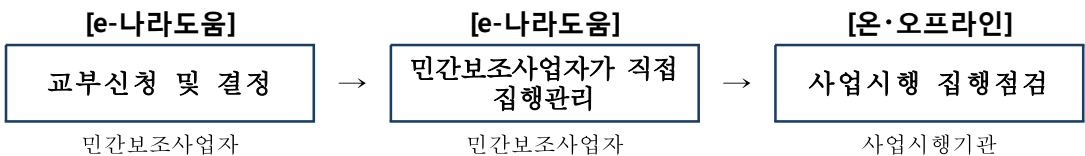
- 추진 절차



- 선정 방법

- 선정심의회 구성 : 7명 이내(외부전부가 50% 이상 포함)
- 신청 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평가
-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
- 단기소득 임산물의 소비촉진 기여 가능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평가
- 심의위원회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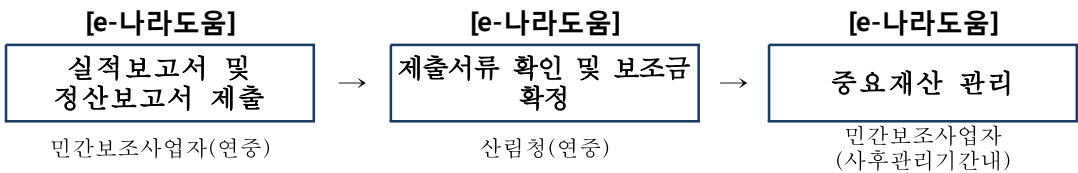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e나라도움을 통해 예약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58조제2호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 등록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처리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할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의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63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산림청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IV /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별 민간보조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실적보고서의 내용, 종류 등(서식 포함)

2. 평가

-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민간보조사업자 또는 사업시행기관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에 대한 설명

세부사업명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예산 (백만원)	3,800		
사업목적	○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보급을 통해 농산어촌 주민의 난방비 절감 및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 주거용(주택, 일반시설),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국고보조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지원자격 및 요건	○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 자부담 능력이 있고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지원한도	○ 1대당 400만원 * 기준단가 및 지원한도액은 보일러 용량에 따라 변경 가능							
재원구성(%)	국고	30 (50)	지방비	40 (50)	용자	- (-)	자부담	30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계(A+B)	62,000	12,400	12,400	12,400	12,400	12,400	12,400
	국비(A)	19,000	3,800	3,800	3,800	3,800	3,800	3,800
	지방비+자부담(B)	43,000	8,600	8,600	8,600	8,600	8,600	8,600
	사업내용	15,500	3,100대	3,100대	3,100대	3,100대	3,100대	3,100대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목재산업과		이선아		042-481-8879		
신청시기	당해연도 1월~2월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이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목재펠릿보일러보급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일반 국민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 건물 임대한 경우 건물주 동의 필요
 - * 폐업업체 보일러 중 수리비 과다 소요 및 수리 불가능으로 부득이 관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기간에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3. 지원대상

-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희망하는 자
 - *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는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목재펠릿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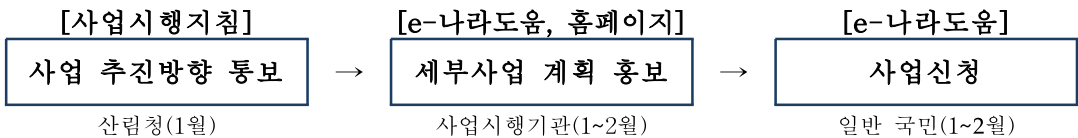
-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
 - * 설치비는 보일러와 온수배관(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설치 장소의 소재지에 신청
 - *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대 당 지원한도액은 400만원이며, 축열조 설치 시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한다. 단, 실제 지원금액은 산림청 원가계산 결과 산정된 금액으로 함
 - (주거용) 보조금 70%(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보조금 100%(국고 50%, 지방비 50%)
- * 기준단가 및 지원한도액은 보일러 용량에 따라 변경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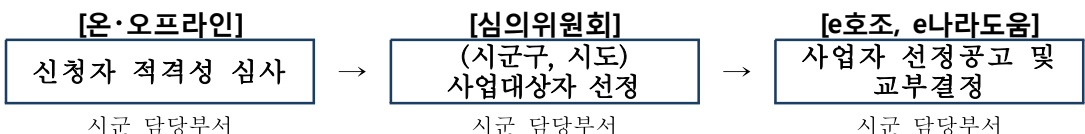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 (산림청)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 시달(1월 초까지)
- (지자체) 시·군·구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1~2월)
 - 공고문에 온라인 사용방법을 안내
 -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절차 등
- (사업신청자) 사업신청자는 별지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군에 해당 사업부서로 제출
 - (신청서)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1호 서식)
 - (제출서류) 건축물 대장, 거주확인 서류, 건물 임대한 경우 건물주 동의서 등
- * e호조(또는 e나라도움)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사업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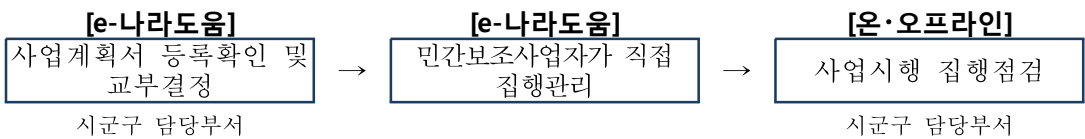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단, 사업규모에 미달될 경우 “목재펠릿보일러 지원기준”에 따른다
 -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6호, '15.1.1.제정)을 따름
- 신청자의 중복편중지원여부1), 지원 제외대상여부2) 등을 면밀하게 검토

1)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2)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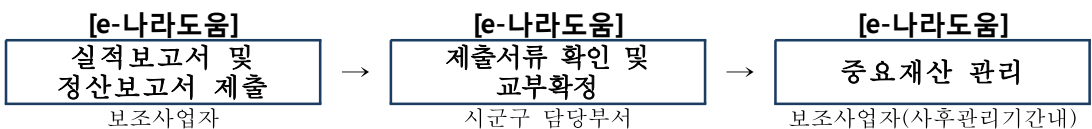
- 시·군·구 해당 부서는 보조사업자를 확인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지원 계획 및 지원대상자 명단을 공문으로 통보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며, 개별적으로 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금지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 (사후관리) 사후관리기간은 준공일로부터 5년간이며, 폐업업체 보일러의 경우 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 및 사후관리기간 내 폐기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시·군·구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정산보고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지원

- 시·군·구 담당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한 서류를 확인 한 후 교부확정
 -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폐기를 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군·구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함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 보조사업자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산림청에 등록하지 않은 보일러를 설치한 행위
-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통보
-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 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보조사업자가 사정으로 인해 사업포기, 사망 등으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군·구 사업부서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환수조치

IV /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및 평가

- 사업평가를 12월말까지 완료한 후 사업성과 등을 자치단체별로 홍보

산림분야

Ⅲ. 경쟁력제고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세부사업명	산림경영계획작성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작성				예산 (백만원)	370		
사업목적	○ 숲을 통한 환경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가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조림, 임목생산 등 5개 사업에 대한 사유림경영 계획 작성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신청자(산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림소유자(작성대가145천원의 16% 국고지원)							
지원한도	○ 인가 면적에 따라 ha당 정액지원(국고 7,600원/ha)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146	1,146	740	740			
	국 고	573	573	370	370			
	지방비	573	573	370	37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정중기		042-481-4195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2.28.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사유림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 소유자(사유림)

2. 지원자격 및 요건

- 경제림육성단지 안에서 연접된 산림을 묶어서 10ha 이상 단위로 작성
- 경제림육성단지에 포함되지 않은 산지는 제외, 다만 산주의 신청 등 사업량이 부족할 경우 아래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에 따른다.
- 시·도로부터 국가 및 시·도 지원예산 확정 통지를 받은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지원을 포함한 세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시행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①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한 산림, 임업진흥권역 내 산림
 - ② 독립가·임업후계자의 소유산림, 협업경영계획구, 대리경영 산림
 - ③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
 - ④ 일단의 면적이 큰 산림
 - ⑤ 기타 산림사업 우선 실행이 필요한 산림
- 시·군에서는 경제림육성단지 안에서 산림경영계획이 작성되도록 대상산림을 파악하고, 산주가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인가를 받아서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하도록 권장
- 산주의 신청 및 동의를 받아 산림경영계획 작성 비용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검토 후 인가하고, 작성경비를 지원
 - 시장·군수가 산주의 동의를 받아 산림조합, 산림기술자에게 위탁하여 수립한 산림경영계획의 경우 산주의 확인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와 동시에 수탁 사업자에게 작성경비 지급
 - 인가한 산림경영계획서는 반드시 산주에게 통지 의무화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방자치단체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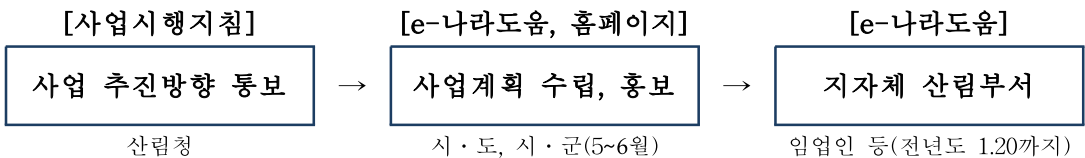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림에 대하여 지원
- 지원단가 : 15,200원/ha(예산단가)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 산림청은 다음 연도의 산림경영계획 작성지원 예산의 요구 및 편성지침을 시·도에 시달하고 시·도로부터 사업량 및 예산 소요액을 신청 받아 예산 확보 추진
- 시·도는 시·군·구(이하 “시·군”이라 한다)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작성 예정 사업량 및 예산의 소요액을 파악하여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산림청에 다음 연도 산림경영계획 작성지원 사업량 및 예산 소요액을 제출(전년도 3.31까지)
 - 시·군에서는 다음 연도 산림경영계획 작성 예정 사업량 및 예산 소요액을 경제림육성단지 안에서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상 산림현황을 파악하여 시·도에 예산지원 요청서를 제출(전년도 2.28까지)
 - 경제림육성단지 안에서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상 산림현황을 파악하고 대상 산림의 산주에게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인가를 받아서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하도록 권장

- 산주는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군(산림부서)에 제출
 - 소유산림에 대하여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예정년도의 전년도 1월20일까지 시·군에 예산지원 요청서(사업 신청서) 제출
 -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서 제출시 경비지원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
- 산주가 직접 작성하지 않고 시장·군수를 통해 산림조합, 산림기술자에게 위탁하여 산림경영계획 작성할 경우 ‘위탁 동의서’를 첨부한 자율사업 신청서를 산림경영계획 작성 인가 신청 예정년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시·군에 제출
 - 이 경우에 산림경영계획 작성 위탁에 따른 작성경비는 위탁사업자에게 지급
 - 인가한 산림경영계획서는 반드시 산주에게 통지를 의무화

2. 사업자 선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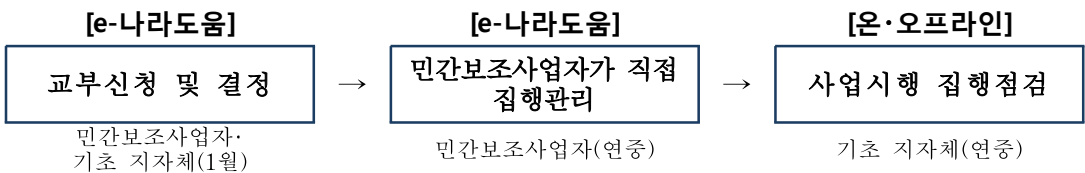
- 산림청은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각 시·도에서 신청한 다음연도 사업량을 기준으로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사업량 및 보조예산을 시·도별로 배분하여 통지
 - 확보 결정된 예산에 대한 분기별 배분계획 시달 및 분기별 예산 배정
- 시·도는 정부예산의 배분계획에 따라 시·도 예산 확정 및 시·군별 예산배분 확정 통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농식품사업자금의 예산 배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정부예산의 배분계획에 따른 예산의 시·군별 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사업 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군에 통지
- 시·군에서는 경제림육성단지 안에서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산주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산주를 결정하여 통지
 -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 지원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경제림육성단지 안에서 산주의 동의를 받아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하되, 다만 산주의 신청 사업량이 부족할 경우는 Ⅱ-2 지원자격 및 요건의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에 따름
 - 산림경영계획 기간이 만료되는 산림, 독립가·임업후계자 소유산림, 협업경영 계획구내 산림, 임업진흥촉진 지역내 산림 등의 산주에게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을 경영할 것을 권장하고, 반드시 작성 의사가 있는 산주의 동의를 받아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탁

* 산주의 동의가 없는 경우 작성경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산주는 시장·군수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작성경비 지원대상자 선정통지를 받으면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고 인가 신청
- 산주는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서 제출시 산림경영계획 작성경비 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
 - 산주가 위탁을 동의한 산림경영계획 작성의 경우 인가신청서 및 경비지원 신청서 제출은 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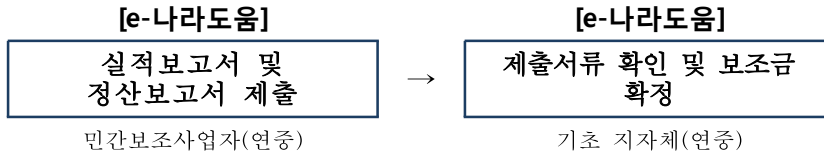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의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산림청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IV /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별 민간보조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실적보고서의 내용, 종류 등(서식 포함)

2. 평가

-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민간보조사업자 또는 사업시행기관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에 대한 설명

세부사업명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임산물 상품화 지원	예산 (백만원)	2,842					
사업목적	○ 임산물표준규격에 따른 포장재 및 포장디자인 개선 비용							
사업 주요내용	○ 지리적표시 등록 임산물 등 임산물 명품화 및 임산물표준규격에 따른 포장재 및 포장디자인 개선사업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21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 지원조건 : 국고 20%, 지방비 20%, 용자 20%, 자부담 40%							
지원한도	○ 총사업비 35백만원/건(국비 7백만원)							
재원구성(%)	국고	20	지방비	20	용자	20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14,210	14,210	14,210	14,210			
	국 고	2,842	2,842	2,842	2,842			
	지방비	2,842	2,842	2,842	2,842			
	용 자	2,842	2,842	2,842	2,842			
	자부담	5,684	5,684	5,684	5,684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박준호		042-481-4207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월말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임산물상품화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단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법인
 -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법인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법인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 포장재 지원
 - * '임산물 표준규격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4-21호(2014.2.21.)
-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법인은 총사업비 30%이내 홍보 및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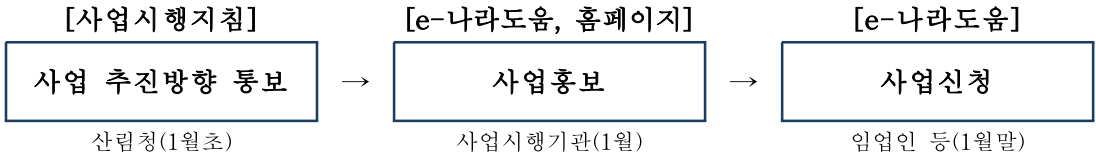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자체 경상보조(국비 20%, 지방비 20%, 용자 20%, 자부담 4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국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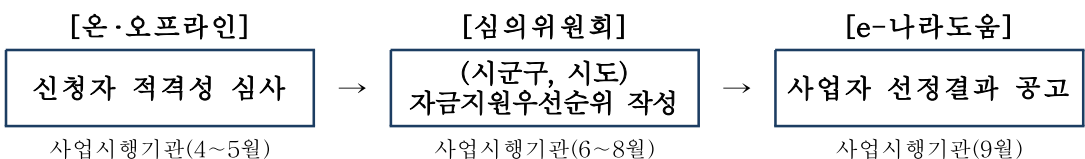
- 총사업비 35백만원/건(국비 7백만원/건)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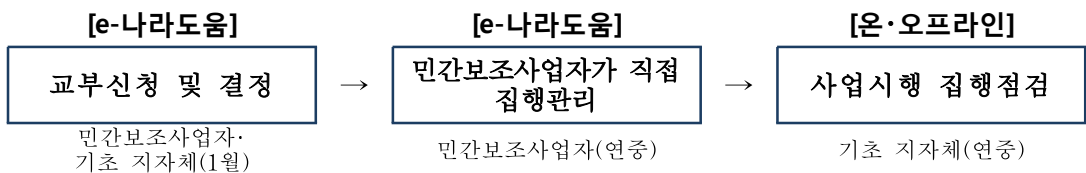
- 산림청은 사업 전년도 1월초에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산림소득사업을 홍보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사용방법을 안내
 - 지자체별 산림소득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공고한 내용을 e나라도움 기관자체공모로 등록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 대행 지원, 교육·홍보 등을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산림소득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 신청 또는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야 한다.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 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51조)
 -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총사업비 10%이상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변경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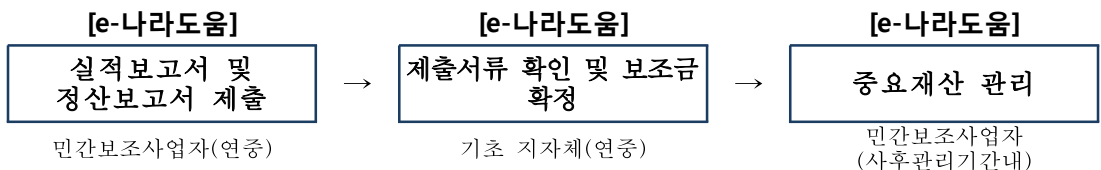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 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 등록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처리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할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 등록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산림청장,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의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산림청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산림청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IV /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별 민간보조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실적보고서의 내용, 종류 등(서식 포함)

2. 평가

-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민간보조사업자 또는 사업시행기관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에 대한 설명

세부사업명	산림경영지도사업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산림조합특화사업		예산 (백만원)	1,000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조합의 자립경영기반 구축 및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특화사업 육성과 지원 ○ 지역여건 및 산림조합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사업발굴을 통해 산주·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의 고용창출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화품목의 생산·판매·이용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 산주·임업인의 소득 향상 및 고용증대를 위한 사업 ○ 산림조합의 자립경영기반 구축 및 「산림조합법」제46조에 의한 산림조합의 사업 							
국고보조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및 시행령 제4조(재정지원) ○ 「산림기본법」 제21조(임업경영기반의 조성) 및 제26조(임업관련 단체의 육성) ○ 「산림조합법」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지원자격 및 요건	○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지원한도	○ 1개소당 5억원 한도 이내 ※ '18년도 사업량 및 개소당 지원예산 규모는 국회 예산 확정시까지 변경될 수 있음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20	용자	-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000	2,000	2,000	계속			
	국 고	1,500	1,000	1,000	계속			
	지방비	600	400	400	계속			
	자부담	900	600	600	계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지자체		사유림경영소득과		정철호		042-481-4155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산림조합특화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및 시행령 제4조(재정지원), 「산림기본법」 제21조(임업경영기반의 조성) 및 제26조(임업관련 단체의 육성), 「산림조합법」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 선정우선순위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적합성, 사업전망, 사업추진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산림청에서 우선 순위 결정

3. 지원대상

- 산림조합의 자립경영기반 구축 및 임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 및 기계·기구 구입 등 산림조합 특화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 단, 부지매입비 및 운영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 보조(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사업범위

- 지역특화품목의 생산·판매·이용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 산주·임업인의 소득 향상 및 고용증대를 위한 사업
 -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정책 수행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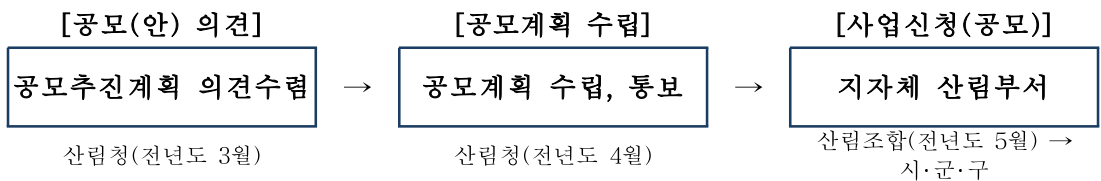
- 산림조합의 자립경영기반 구축 및 「산림조합법」 제46조에 의한 사업
 - * 보조사업 기간(1년)을 감안하여 민원발생 소지가 크고,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지자체 협의, 지역 주민 동의완료(동의를 징구), 사업대상지 확보 등 사전조치가 완료 된 경우에 한해 응모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조합 1개소 당 10억원(국비 5억, 지방비 2억, 자부담 3억원)
 - * 지원예산 규모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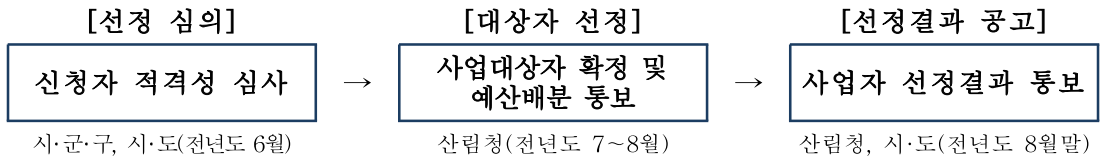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 산림청은 전년도 3월말까지 공모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전년도 4월초에 공모계획을 통보
- 신청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작성 제출(산림조합 → 시·군·구)
 - 사업계획서, 지자체의 사업계획 검토서 등 작성 제출(시·군·구 → 시·도)
- 사업계획서 작성 검토사항
 - 사업부지는 반드시 신청하는 산림조합 명의를 소유 토지
 - 임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작업로 가능)하고, 종자·묘목구입비는 총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
 - 주된 목적사업 용도와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교육장 등은 총사업비의 20% 이내로 제한
 - 기타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18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

2. 사업자 선정단계



○ 심의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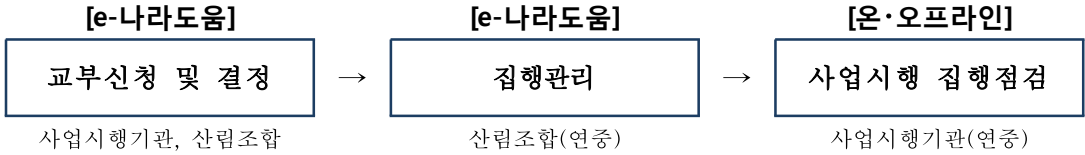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에 상향
 - *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적합성, 사업전망, 중복편중 지원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자의 사업설명,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응답 등을 거쳐 ‘공모사업 선정 심사평가표에 의하여 심사위원 다면평가 실시
 - * 관련단체(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7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
 - * 시·도 심의위원회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를 확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선정결과 통보

(1차, 시·군·구) 서류검토 → (2차, 시·도) 사업계획 발표 및 심의위원회 심사 (필요시 현장심사 병행) → (3차, 산림청) 사업대상자 확정(예산배분) 및 알림(사업 타당성,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도별 예산배분 규모 결정)

○ 심의위원회 심사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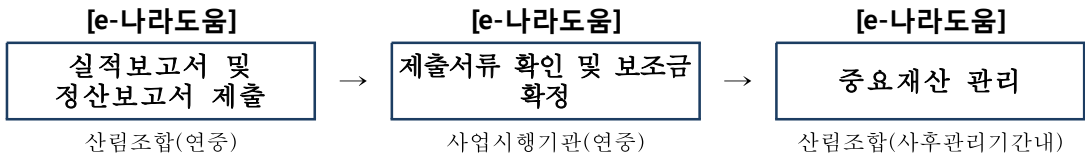
-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 예산확보계획, 사업운영계획(생산·유통·판매 등)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 지역 및 조합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여부, 산주와 조합원의 소득향상에 기여 정도, 사업의 독창성, 조합이미지에 기여 정도 등 사업내용의 적합성
-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 정도, 성공가능성 등 향후 사업전망
- 신청조합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추진의지, 인근 지역조합에서 동일사업 추진 여부, 부지확보 등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재정정보원 가상계좌로 보조금을 교부
- 산림조합은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사업등록을 하고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사업시행기관은 산림조합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 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 시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산림조합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산림조합은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산림조합은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 비예탁의 경우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사업시행기관은 산림조합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산림조합은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 등록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산림조합은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산림조합이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와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산림청에 반드시 통보

IV /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산림조합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

2. 평가

- 시·도, 시·군·구가 상호 협력하여 특화사업이 단년도에 완료 및 사업 성과가 우수한 시·도는 예산배분 시 우선 고려

세부사업명	산림복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예산 (백만원)	4,154					
사업목적	○ 지역주민을 보호·관리 주체로 육성하여 백두대간의 실효성 있는 관리기반 마련							
사업 주요내용	○ 백두대간 내 거주하는 주민 및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증대 기반 조성							
국고보조 근거법령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지원한도	○ [공동사업] 참여 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300백만원 이하로 지원 ○ [개인사업(1가구 참여 사업)] 7.5백만원 이하로 지원 ○ [공모사업] 100백만원 이상 300백만원 이하로 지원							
재원구성 (%)	국고	70	지방비	20	용자	-	자부담	1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5,934	5,934	5,934	29,670			
	국 고	4,154	4,154	4,154	20,770			
	지방비	1,780	1,187	1,187	5,935			
	자부담	-	593	593	2,96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백두대간보전팀		과장 최은형 사무관 박기완		042-481-8811 042-481-8814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20.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1. 사업대상자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군의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단,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79조에 의거 부정수급 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지원을 제한
 - * 보호지역은 핵심·완충구역을 말한다(「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 읍·면·동은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당시의 법정동을 기준으로 한다.
 - * 임산물 생산자단체 세부기준 : 별표 1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주민
 - ※ 거주란 개인의 경우 사업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일(기준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며, 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의 경우 사업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기준일)까지 설립된 경우를 말함. 단, 이 조건은 2019년 사업(2018년 신청분)부터 적용. 수시 신청 시에도 정기 신청 시와 같은 기준일을 적용함.
- 지원요건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지원 : (공모) 임산물 생산자단체, (개인) 주민
 - * 공동사업자(마을공동체, 작목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운반장비는 공모사업 및 '17년 이전 공동사업으로 저장·건조·가공시설을 지원받은 경우에 지원

-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마을공동체 · 작목반 · 임산물 생산자단체 · 주민

* 등기대상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시설대상 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보조사업 신청자 명의의 소유 토지인 경우 지원

* 기본조사설계와 부지 매입 및 조성(절 · 성토 등) 비용은 사업자 부담원칙

○ 선정우선순위

- 1)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거주하는 주민, 마을 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 2)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 · 면 · 동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 3)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포함되는 읍 · 면 · 동에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주민 순으로 선정
- 4)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 · 면 · 동에 거주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을 선정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1의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사업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 표고 생산기반, 밤 생산기반, 대추·호두·뽕은감 생산기반, 고로쇠 등 수액생산기반 등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산가꾸기, 관상산림식물(야생화, 난 등) 생산기반 시설비 등
- 임산물 저장 · 건조시설 · 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기지원한 시설물중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관수시설·하우스시설 등이 사후관리 소요기한이 경과되어 노후화로 인해 위생적 관리가 필요한 희망자에 한하여 보수비 지원

<지원제외 대상>

- 마을회관, 찜질방, 휴게소, 마을길 포장 등 생활편의 및 복지시설
-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
- 종묘비(종자, 접·삼수, 묘목 포함) 등 부대경비
- 부지구입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 산림버섯류 생산기반조성

- 신규 및 보완시설 : 원목표고재배 및 톱밥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표고자목 구입비 포함), 관정·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톱밥배지 생산시설 등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장비
- 톱밥배지 생산시설 :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 배양 시설, 톱밥배지 재배사 등 시설

○ 수실류, 관상수 등 생산기반조성

- 밤나무 노령목 관리 :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숲아베기, 전지전정 등
- 지상방제장비 : 병해충 방제용 방제장비(차량제외)
- 친환경 방제장비 : 친환경 밤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로몬 등 시설비
 -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 되지 않은 제품사용(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 생산장비 : 굴삭기, 4륜구동 오토바이,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깎기, 잔디수확기, 밤 수확망 등 기타 생산장비
 - *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수실류 총 재배면적 15ha 이상인 자에 한함
 - * 4륜구동 오토바이는 임산물 중 어느 하나의 품목 재배면적이 10ha 이상인 자에 한함
 - * 생산장비는 조달청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단가를 적용
 -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표준출하규격(선별 지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준수
- 수실류 냉해예방시설 :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생산시설 : 관수시설, 관정시설, 대추 비가림시설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설
- 작업로시설 :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
-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 밤, 대추, 뽕, 감 등 수실류 생산기반조성사업의 품목별·장비별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여건에 따라 자율적 집행 가능

○ 고로쇠 등 수액 생산기반조성

- 세척기, 호스(주선, 지선에 한함), 집수통 등 안전한 수액채취를 위한 시설

○ 친환경 토양개량

- 수실류, 관상식물, 묘포지 등 토양개량을 위한 토양개량제(입상소석회, 목탄, 목초액, 유기질비료 등)를 지원
- *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실질적인 토양개량을 위한 탄산석회, 목탄 이외의 토양개량제도 가능(토양개량효과가 표시된 것에 한함)

나.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 생산단지 기반시설

- 사업내용 : 낙엽꺾기, 가지치기, 솟아베기, 관수시설 등

○ 관상산림식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 사업내용 : 조경수, 분재, 잔디, 야생화, 난 등의 재배를 위한 시설
- * 관정시설 사업은 조경수, 분재, 잔디, 야생화 등 관상식물류 생산자 또는 임산물 생산자 단체 중 재배 면적이 1ha 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기타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 사업내용 : 산약초·산채 등 단기임산물·산과일(산머루 등)·오갈피 재배단지 기반시설비 등

-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을 위한 품목별·장비별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여건에 따라 자율적 집행이 가능
-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을 위한 작업로 시설은 단기 임산물생산기반 조성 품목 중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보수)에 따름

다.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임산물 저장시설

- 사업내용 : 신선하고 위생적인 임산물 생산하여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고 홍수출하 방지를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속적으로 소득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시설로써 냉동·저온·일반 저장고

○ 임산물 건조시설

- 사업내용 : 꾀감 등 임산물을 건조하기 위한 건조시설 및 건조기 지원

○ 임산물 가공시설

- 사업내용 : 백두대간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 구역을 포함한다)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임산물 가공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가공시설 지원

○ 임산물 운반장비

- 사업내용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에 운영에 필요한 운반 장비·기자재 (차량 제외)
- 공모사업자 및 '17년 이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을 지원받은 공동사업자에 한하여 지원

* 공모사업자가 운반장비만 신청 시 저장·건조·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

* '17년 이전 공동사업자의 경우 기 지원받은 저장·건조·가공시설의 규모 및 운반장비와의 연계활용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여부 결정

* 지게차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3톤 미만으로 하되, 공모 및 공동사업 구성원중 대형면허소지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사업내용 : 백두대간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

구역을 포함한다)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품목에 대한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개발비 및 포장제작비 지원

* 백두대간의 통일된 디자인이 요구되므로 디자인 개발시 산림청과 협의 필수

* 백두대간과 관련이 없는 디자인개발 및 포장제작비 지원 제외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중 공동사업의 경우 공모사업으로 추진

-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당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단가, 세부사업내용 등을 보완하고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추진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비율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3천만원 이상 지원시 사업계획서에 소득창출 효과 분석을 첨부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

○ 등기대상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부기등기 또는 가등기 이행후 자금 지급

○ 동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규정’에 따라야 함

○ 공모사업선정자는 해당 지자체(시장·군수)와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서식 1)’을 체결하고, 백두대간 보전·관리활동을 추진·보고(서식 2)하여야 하며, 지자체는 협약체결 현황 및 추진실적(서식 3)을 제출하여야 함

- 협약은 최종 자금을 지원받기 전까지 체결

- 협약체결 현황 및 추진실적은 결산실적과 같이 제출

○ 공모사업선정자는 산림청 또는 지자체의 사업효과 분석을 위한 관련자료 제출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기본원칙

- 공동사업(공모사업 외)일 경우 마을별 참여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300백만원 이하로 지원

- 개인사업(1가구 사업을 의미)일 경우 7.5백만원 이하로 지원

* 시·군에서 공동사업(공모사업 외)과 개인사업의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한도액 산출에 대한 객관적 근거서류(농협 등 구매 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지원할 수 있음

- 공모사업일 경우 1억원 이상 3억원 이하로 지원

* 임산물 생산자단체인 경우 지원. 공동사업의 참여가구당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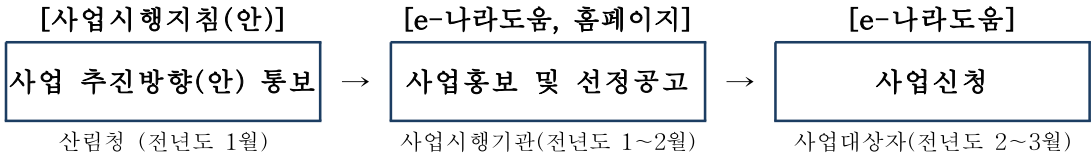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세부 사업명	지 원 단 가
o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표고 재배시설	- 재배하우스 시설 : m ² 당(총사업비 기준) 55,000원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 가능 - 철골온실은 설계내역 기준, 기계·장비는 구입가격을 기준
- 톱밥배지시설	- 톱밥배지시설 : 설계내역 기준 - 종균배양시설 : 설계내역 기준
- 표고자목 구입	- 본당 3,760원(W 10cm× L 120cm) - 면적당 본수 1,000본/330m ² - (임업인) 2,000본(한도액 이내), (공동) 8천본 이내 * 원목표고 재배경력 1년 이상인자, 표고목 단인품목 으로는 연속 지원불가(3년경과 후 지원가능)
- 수실류, 관상수 등 생산 기반조성	
· 밤나무 노령목 관리	- ha당 총사업비 1,292천원 * 숙아베기,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여건 등을 고려·조정 실행
· 수실류 등 지상방제장비	- 조달청 단가를 우선 적용. 조달청 단가가 없는 경우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 친환경 방제장비 (포충등, 성페로몬 등)	- ha당 총사업비 10백만원 * 지역여건·품목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 가능

세부 사업명	지 원 단 가
· 수실류 등 생산 장비 및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 조달청 단가를 우선 적용. 조달청 단가가 없는 경우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시설)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m당 총사업비 5백만원 기준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 경사도 35°이상에 작업로 시설시 가급적 성토를 지양 *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고로쇠 등 수액생산기반조성	- 설계내역 기준
- 친환경 토양개량	
· 토양개량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밤 : ha당 총사업비 504천원 * 밤 이외 수실류 756천원(밤의 1.5배) * 기타 임산물의 경우 “임산물 표준재배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시비량 조정 * 지역여건· 품목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관상산림식물류 및 묘포지 :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 → 입상석회 2,000kg/ha(2,500원/20kg):250천원 → 목탄분말 4,500kg/ha(15,000원/15kg):4,500천원 * 지역여건· 품목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유기질비료(정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질비료 20kg당 → 국고 1,400원, 지방비 600원 - 혼합유박 20kg 당 → 국고 3,500원, 지방비 1,500원 * 다만, 부산물비료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녹색제품(환경표시· GR마크 인증제품) 우선 구매 유도
o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 생산단지 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이산가꾸기사업 실행요령에 의한 실소요액 * 생산기반(60%), 관수시설(40%)의 지원비율은 임내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관상산림식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²당 유리온실 242천원 이내. 단, 아크릴 시설은 303천원, 하우스 시설은 76천원 이내 *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기타 부대시설 추가 시 실단비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세부 사업명	지 원 단 가
- 기타 임산물생산단지 기반 시설	-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하여 실행
o 임산물 저장·건조·가공 시설(공모, 개인)	
- 저장시설	- 개소당 200백만원(250㎡) 기준 *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건조시설	- 50㎡당 12백만원 *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저장고, 건조기	- 조달청 단가를 우선 적용. 조달청 단가가 없는 경우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 가공시설	- 설계내역 기준
- 운반장비	- 조달청 단가를 우선 적용. 조달청 단가가 없는 경우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 박피기 및 탈삼제 등	- 조달청 단가를 우선 적용. 조달청 단가가 없는 경우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o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하여 실행.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1. 사업신청단계



※ 공모사업 선정은 전년도 5월 경 별도 실시

- 산림청은 전년도 1월까지 사업시행지침(안)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30일 이상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고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 사업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사업 우선순위,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을 고지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를 통하여 파악된 사업신청 규모 및 내역을 산림청에 제출
- 산림청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이라 함)」 제34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
 - 공동사업 신청자의 경우 신청서에 공동사업 신청에 대한 참여가구별 동의의사가 포함된 서류를 첨부
 -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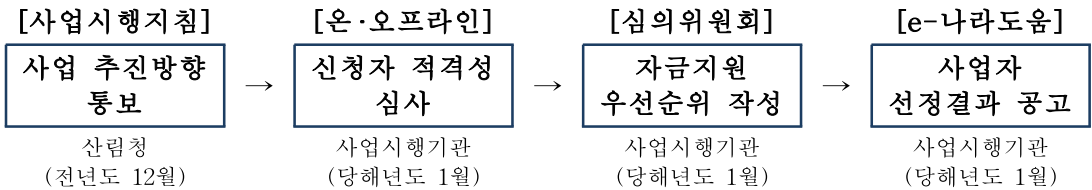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 사업포기자분에 대한 대체사업대상자의 신청은 수시로 접수(공모사업 포함)

* 대체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가 정보취약계층 등 e나라도움을 사용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침’을 참조

2. 사업자 선정단계



○ 산림청은 전년도 12월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1월까지 보조금을 교부결정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정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를 포함)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림조합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재무안정성 :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신용도 조사 등 실시(e나라도움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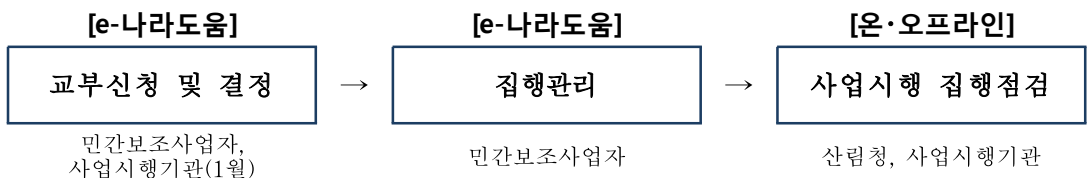
* 사업능력 : 농업법인의 경우 상근 구성원의 수, 각종 의무사항(교부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과거 보조사업의 실적(오프라인 검증)

*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등(e나라도움 검증, 오프라인)

*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당해 연도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민간보조사업자가 공동사업 참여가구로 1회, 개인사업으로 1회 지원받은 경우 2회 지원받은 것으로 간주

- *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 검토 (AgriX, e나라도움)
 - * 사업시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농업기술센터, 대출취급기관 등의 사업검토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해야 한다.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51조)
 -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총사업비 10%이상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변경제출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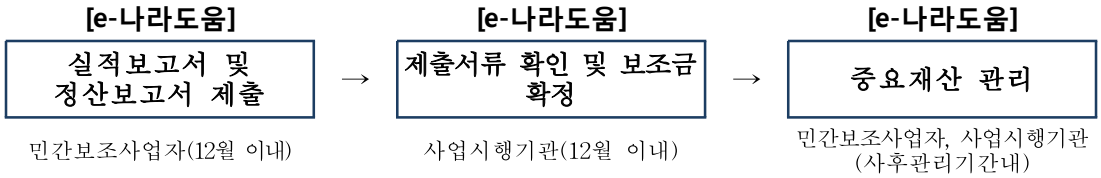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하되, 다음 사항을 반드시 명시한다.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계약)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 경쟁입찰 계약

- (정산보고서 검증)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자부담금(융자금 포함)을 포함하는 경우 주거대출은행을 통해 해당 보조사업용(1사업 1계좌) 계좌 설정 및 보조사업전용 카드 발급요청 가능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법령에 정하는 사항, 사업시행기관의 교부조건 등을 반드시 준수
 - 보조금 집행의 원칙은 집행건별 보조율에 따른 자부담금 동시 집행
 - * 보조율(국고+지방비)이 90%인 사업에서 100원을 집행할 경우 계좌에 자부담금 10원이 있어야 집행가능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e나라도움에 등록 후 집행
 -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전자문서의 형태로 upload하고 사업시행기관 보조사업담당자 확인 후 집행
- 민간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승인 후 처리
 -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산림청에서 사업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사업

시행기관과 합동으로 연 2회 이내 합동점검을 실시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며 산림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가능. 정산지연으로 인한 보조사업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 등록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 보조금 확정 시 안내문 부착 여부, 경영장부 비치 여부 등 사후관리 준비사항 등을 확인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식품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 「기본규정」 제77조제1항 관련 별표4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의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기본규정」 제79조제1항에 따라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사업자금을 지원하지 않음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산림청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산림청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사업수행기관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기본규정」 제73조제1항 관련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민간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의 진행 상황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토록 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

-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홍보, 지도·점검 등 실시
-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성실히 관리

-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등의 입구·몸체 또는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한 여부를 확인
 - * 다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위해가 된다고 시장·군수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실시
 - * 공동(공모 외 사업)으로 운영·관리하는 시설물은 공동보조사업자 단위의 자치규약을 제정하여 공증 등을 거친 후 시행토록 지도

IV / 평가 및 환류

1. 평가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 대상지별 현장점검 자료 및 우수사례를 제출

2. 환류

- '17년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및 보조사업 관리실태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급
 -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차후 해당 시·도에 대해 보조금 교부 시 감액 검토 등

(별표 1)

임산물 생산자단체 세부기준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생산자단체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어야 함
 - 다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으로 농업인 출자 지분이 1/10 이상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농업인 5명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고, 재무재표 등 확인이 가능한 단체
 - 본 공모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대하여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를 적용
- * 기준일자는 사업신청 연도의 6월 30일 기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 사용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생산자단체
-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생산자단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 참고
- ◆ 최근 3년 동안 동일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또는 유사사업(소득관련 사업 등)으로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The Baekdudaegan Mountains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서



사업장명 :

대 표 자 :

○○○○기업은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 보전·관리를 위하여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행정기관은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을 도모한다.

년 월 일

사업장명 :

관할행정기관의 장(인)

대 표 :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내용

◆ 협약 기간 :

◆ 협약 내용

연 도	활동분야	세부활동내용	비 고
○○○○년			
○○○○년			
○○○○년			
○○○○년			
.....			

1. 협약 기간 : 최소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으로 설정

2. 활동 분야

① 보전 : 백두대간 사랑운동(현수막 게시, 홍보물 배포 등 홍보활동 포함), 산림정화, 캠페인, 불법행위 감시·신고 등

② 관리 : 백두대간보호지역내 공용시설(등산로) 정비 등

3. 활동 분야 및 세부활동내용은 지자체(시·군) 지역의 백두대간 보호·관리에 적합한 내용으로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의 공동사업자와 시장·군수가 협의 하여 정한다.

(서식 2)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이행실적 보고서			
① 사업장명칭		② 대표자	
③ 사업장소재지			
④ 담당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연락처	담당자
⑤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내용 이행결과			
기간(일자)			
활동장소			
참여자(명)			
세부활동내용			
비고			
당사의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 첨부서류 :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내용 이행결과 증거서류 (사진, 세부계획 또는 결과문서, 참여자 명단 등)			

(서식 3)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추진실적 보고서

< 기관명 : >

1. 협약체결현황

협약체결일	업체명	협약체결기간	협약분야	비고

2. 협약이행실적

연번	기간(일자)	활동장소	참여자(명)	세부활동내용	비고